2021

법무 연감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2022

法務年鑑

법무부

2021

법무 연감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2022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정목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법무행정비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법무부 기(旗)



법무부장관 박범계



법무부 전경



법무부 간부 일동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법무부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주요 법무행정 활동과 성과를 담아 서른 네 번째 법무연감을 발간합니다.

지난 한 해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변화를 면밀하게 살피며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화된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수사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검찰 조직을 인권친화적·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주요사건 중심 보고체계를 인권보호·사법통제·수사협력 등 국민·인권 중심 보고체계로 바꾸어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새로운 검찰상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하여 사건 발생부터 재판 확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사고 처리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벌칙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중대재해 사건의 신속·공정한 수사기반을 조성하였고,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도록 규정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형사절차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동물의 비(非)물건화'를 비롯하여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상속권상실제도의 도입,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법률지원단에 IT·지식재산 분야 변호사를 추가 위촉하고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스타트LAW(Startlaw)」를 구축하는 등 법률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감독대상자의 장치 훼손과 재범방지를 위해 재범 고위험대상자를 선별하여 관리 역량이 우수한 직원이 집중 관리감독하는 '고위험군 전담제'를 시행하였고,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13개 보호관찰소에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설치하여 지도감독과 수사업무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365일·24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MINISTRY OF JUSTICE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였고,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 및 심리치유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모범수형자·환자·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통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의지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전자여행허가제를 세계 5번째로 시행하였으며, 개방적·포용적 외국인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을 부여해 구제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도착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에 대해 사회통합과 정착을 위한 교육, 법령정비 및 관계부처 협업 등을 주도하였습니다.

최근 심각해지는 디지털성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하였고,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홍보물 가이드라인 제정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을 설치하여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확대 및 중대 아동학대사건 분석 등을 통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연감이 지난해의 성과와 아쉬웠던 부분을 되짚어보고 향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행정에 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법무부장관

2021 법무행정일지

1월

- 1. 2.
  - 장관, 국립현충원 참배
- 1. 3.
  - 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차관, 광주교도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1. 4.
  - 2021년 법무부 시무식
  - 장관, 검찰개혁 등 관련 한겨레신문 인터뷰
- 1. 5.
  - 장관,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
  - 차관, 서울동부구치소·수원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1. 6.
  - 차관,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지원 관계차관회의 참석(영상회의)
- 1. 8.
  - 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1. 11.
  - 장관, 소년보호혁신위원 접견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1. 13.
  - 장관, 화성외국인보호소·직업훈련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1. 14.
  - 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정책현장 방문
- 1. 19.
  - 차관,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
- 1. 20.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개최
- 1. 21.
  - 장관, 검찰개혁 등 관련 경향신문 인터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 참석
- 1. 22.
  - 교정직 임명장 전수식
  - 난민위원회 개최
- 1. 25.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1. 26.
  - 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출입국관리직 임명장 전수식
- 1. 27.
  -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임식
- 1. 28.
  - 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1. 30.
  - 장관, 총리 주재 주요현안 간담회 참석
- 1. 31.
  - 장관,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2월

- 2. 1.
  - 제68대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식
  - 신임검사 임관식
- 2. 2.
  - 차관, 서울소년원·서울남부교도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2. 3.
  - 차관, 온라인 그루밍법 관련 당정회의 참석
  - 법무부 여성과장 간담회 개최
- 2. 4.
  - 장관, CBS 라디오 생방송 출연 및 인터뷰
- 2. 5.
  - 차관, 화성외국인보호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2. 8.
  - 차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접견
- 2. 9.
  -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방문
- 2. 10.
  - 장관, 인천지방검찰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 차관, 안양 삼덕공원 임시선별검사소 격려 방문
- 2. 15.
  - 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최
  - 차관,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 관련 관계부처 회의 참석
- 2. 17.
  - 장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 위원 위촉식 참석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소년 호송조사방식 개선안 마련' 권고안 발표
- 2. 19.
  - 장관, 코로나19 관련 진관산업단지 정책현장 방문
- 2. 22.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2. 24.
  - 장관, 대전보호관찰소·대전고등검찰청 정책현장 방문
- 2. 25.
  - 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접견
  -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식
- 2. 26.
  - 장관, 검사인사 관련 간담회 참석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패 수여
  - 차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2021 법무행정일지

3월

- 3. 3.
  - 차관, 동두천 산업단지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개최
- 3. 4.
  - 차관, 정부업무보고 관련 간담회 참석
- 3. 5.
  - 장관, 목포스마일센터 개소식 참석
    광주고등검찰청 정책현장 방문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개최
- 3. 6.
  - 장관, 총리 주재 주요현안 간담회 참석
- 3. 8.
  - 2021년 법무부·행정안전부 대통령 업무보고
- 3. 9.
  - 장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정책현장 방문
- 3. 10.
  - 장관,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참석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 상담지원 확대' 등 권고안 발표
- 3. 11.
  -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접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접견
- 3. 12.
  - 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정책현장 방문
- 3. 15.
  - 장관, 고등검사장 간담회 참석
- 3. 17.
  - 장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 접견
  - 차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정책현장 방문
- 3. 18.
  - 장관, 경북북부제2교도소 등 정책현장 방문
- 3. 19.
  - 장관, 고위당정협의회 참석
    아동인권보호추진단 전문위원 위촉식 참석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 3. 22.
  - 장관,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참석
- 3. 25.
  - 장관, 4. 7. 재·보궐선거 관련 관계부처 공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제124회 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접견
  - 차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 3. 26.
  - 장관, 안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 차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 3. 27.
  - 장관,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 참석
- 3. 29.
  - 장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3. 31.
  - 장관,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 참석

4월

- 4. 1.
  - 신임검사 임관식
  - 장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 4. 2.
  - 장관, 제주지방검찰청 정책현장 방문
- 4. 3.
  - 장관,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 4. 5.
  - 장관, 한국법학원장 접견
- 4. 6.
  - SNS 홍보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포상식
- 4. 8.
  - 차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참석
- 4. 9.
  - 아동학대관련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 개최
  - 차관, 대한공증인협회장 접견
- 4. 12.
  - 차관, 천안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4. 13.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학대아동 인지 및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권고안 발표
- 4. 14.
  - 장관,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화
청주여자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차관,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촉식 참석
- 4. 15.
  -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개최
- 4. 19.
  - 장관,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참석
  - 차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 4. 20.
  - 장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정책현장 방문
- 4. 21.
  -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개최
- 4. 22.
  - 장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정책현장 방문
- 4. 23.
  -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 차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 4. 26.
  - 장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접견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4. 27.
  - 장관, 이태원 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정책현장 방문
- 4. 28.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4. 29.
  -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4. 30.
  - 장관, 연합뉴스 '뉴스 1번지' 인터뷰
  - 법무부-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업무협약 체결
  - 난민위원회 개최

2021 법무행정일지

5월

- 5. 3. • 신임검사 임관식
- 5. 4. •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개최
- 5. 6. • 장관, 외국인정책 관련 3개 학회 간담회 참석
  JTBC 뉴스룸 인터뷰
  •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방지와 인권개선 방안 발표
- 5. 7. • 장관,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현장 방문
  디지털성범죄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 참석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 5. 8. • 차관, 강릉 외국인밀집시설 방역 관련 정책현장 방문
- 5. 10. • 장관, 신임검사 대상 강화
  • 차관, 서울보호관찰소·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정책현장 방문
- 5. 11. •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5. 12. • 장관, 지자체(시흥시) 연계형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
- 5. 13. • 장관, 춘천지방검찰청 정책현장 방문
- 5. 14. • 장·차관, 제47대 국무총리 취임식 참석
  • 차관, 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 관계 차관회의 참석
  • 2021년 간부 대상 양성평등 세미나
- 5. 18. • 장관,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 5. 20. • 장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접견
  • 제14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5. 21. • 장관, 총리주재 주요현안 간담회 참석
  대법원 주관 상고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 참석
- 5. 22. • 장관, 국무위원 워크숍 참석
- 5. 24. • 법교육위원회 개최
- 5. 26.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청회
- 5. 27. •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
  • 장관,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
- 5. 28. • 장관, 인천 부평 외국인밀집지역 정책현장 방문
- 5. 31. • 장관, 법무연수원·청주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6월

- 6. 2. • 장관, 법원행정처장 접견
  부동산 투기 단속 수사 점검회의 및 합동 브리핑
  현대 아산나눔재단 운영·창업지원센터 방문
- 6. 3. • 장관, 대전시장 접견
- 6. 4. • 교정홍보대사 위촉식
- 6. 9. • 장관, 수원스마일센터 정책현장 방문
- 6. 11. • 장관,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 방문
- 6. 15. • 장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비전선포식 참석
- 6. 17. • 장관, 청년 스타트업 IP 창업 컨퍼런스 참석
- 6. 20. • 장관, 총리 주재 관계장관 현안간담회 참석
- 6. 21. • 장관, 중앙보훈병원 정책현장 방문
  순직 소방공무원 안장식 참석
- 6. 22. • 장관, 총리 주재 오찬간담회 참석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
- 6. 23.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6. 25. • 장관, 국립현충원 참배
- 6. 30. • 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

7월

- 7. 1. • 장관, 제128회 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
- 7. 2. • 신임 교정본부장 임명장 전수식
- 7. 6. •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임명장 전수식
- 7. 7. • 장관, 대림동 차이나타운 정책현장 방문
  부패방지·공직기강 관계장관 회의 참석
  •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 7. 8. • 장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항 정책현장 방문
- 7. 9. • 장관, 부산고등검찰청·부산 쌈지공원 정책현장 방문
- 7. 12. • 장관, 대한법무사협회장 접견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출연 및 인터뷰
- 7. 14. • 장관, 검찰 수사관행 합동감찰 결과 언론 브리핑
  • 제64대 강성국 법무부차관 취임식
- 7. 15. • 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7. 16. • 차관, 포천시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점검 현장 방문
- 7. 19. • 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최
- 7. 20. • 차관, 론스타 ISDS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참석
- 7. 21. • 장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접견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7. 22. • 장관, 수원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7. 23. • 장관, 청년출입국(청출어담)과의 대화 참석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간담회 참석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현장 방문
- 7. 26. • 장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정책현장 방문
  • 제33기 공익법무관 임용식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7. 27.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출범식
- 7. 28.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촉식
  • 장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정책현장 방문
- 7. 29. • 장관, 법무부 법률지원단 간담회 참석(영상회의)
  • 장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

8월

- 8. 2.
  - 신임검사 임관식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개최
- 8. 4.
  - 장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정책현장 방문
- 8. 5.
  - 장관, 순천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8. 6.
  - 차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8. 9.
  - 장관,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접견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8. 10.
  - 장관, 적극행정 챌린지 부서 방문 격려
  - 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임명장 전수식
- 8. 11.
  - 장관, 전자여행허가센터(K-ETA) 정책현장 방문
  - 차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8. 12.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식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 8. 13.
  - 장관, 대전청소년진단센터 개관식 참석
- 8. 17.
  - 장관,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단 접견
- 8. 18.
  - 장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정책현장 방문
  - 남원교도소 신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 교정본부 직원 온택트 워크숍
- 8. 19.
  - 장관, 제131회 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 8. 20.
  - 장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전주지방검찰청 정책현장 방문
  - 차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정책현장 방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 8. 23.
  - 장관, 법무부·한남대 청년 스타트업 정책 간담회 참석
- 8. 24.
  - 제62회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촉식
- 8. 25.
  - 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수용 관련 주민설명회 참석
- 8. 26.
  - 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관련 언론 브리핑
- 8. 27.
  - 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진천 입소 관련 언론 브리핑
- 8. 29.
  - 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 기부물품 전달식 참석
- 8. 30.
  - 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임시생활시설 현장 방문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8. 31.
  - 차관, 외국인종합안내 센터 정책현장 방문
  -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개최

2021 법무행정일지

9월

- 9. 1. • 본부배상심의회 개최
- 9. 2.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개최
- 9. 3. •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 관련 법무부-대한적십자사 간 업무협약(MOU)체결
  • 장관, 전자감독대상자 전자발찌 훼손 관련 대책 언론 브리핑
- 9. 5. • 장관, 총리주재 관계장관 현안간담회 참석
- 9. 8. • 장관,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 접견
- 9. 10. • 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임시생활시설 현장점검
  • 2021년 청렴라이브(법무부 맞춤형 청렴교육) 개최
- 9. 14. • 장관, 분단국의 재산관리 사례와 쟁점 국제학술회의 참석
- 9. 15. • 장관,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현장 방문
  디지털 성범죄 사례 발표 세미나 참석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면담
  • 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임시생활시설 현장 점검
- 9. 17. • 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위한 조계종·대한적십자사 기부금 전달식 참석
  • 차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 9. 20. • 차관, 추석연휴 관련 대림동 차이나타운 정책현장 방문
- 9. 24.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9. 25. • 장관, 2021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국무위원 워크숍 참석
- 9. 27.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9. 28.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장 수여식
- 9. 29. • 리걸테크 T/F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회의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

10월

- 10. 1. • 난민위원회 개최
- 10. 5. • 2021년도 법무부 국정감사
- 10. 6. • 장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정책현장 방문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 지원' 권고안 발표
- 10. 7. • 장관, 창원지방검찰청 정책현장 방문
  •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개최
- 10. 12. • 출입국정책단장 임명장 전수식
- 10. 13. • 장관,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 참석
  • 법무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 차관, 서울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10. 14. • 장관,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무부-국방부 간 업무협약 체결
- 10. 19. • 대검찰청 감찰부장·사무국장 임명장 전수식
- 10. 20. • 법무부 교정홍보대사 위촉식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디지털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 권고안 발표
- 10. 21. • 2021년도 법무부 종합감사
- 10. 22. • 장관, 대전지방검찰청 등 충남지역 정책현장 방문
  • 차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 10. 25. • 장관, 안양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강연 참석
  • 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임시생활시설 방문
  치료감호소 정책현장 방문
- 10. 26. • 장관,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참석
- 10. 27. • 장관, 저스티스 서포터스 간담회 참석
  • 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임시생활 이전 관련 언론브리핑
- 10. 28. •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행사
  • 장관, 법무부-KAIST 우수 외국인재 소통간담회 참석
  • 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수용 관련 여수시장 면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등 전남지역 정책현장 방문
- 10. 29. • 장관, 울산지방검찰청 및 산업안전 우수기업 정책현장 방문
  • 법무시설 건축협의회 개최

2021 법무행정일지

11월

- 11. 1.
  - 제50회 교정작품 전시회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개최
- 11. 2.
  - 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산 관련 축하 방문
  - 차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정책현장 방문
- 11. 3.
  - 법무부-인천시-UNCITRAL MOU 연장 기념식
  - 법무보호복지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 전국 출입국기관장 영상회의 개최
  -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개최
- 11. 4.
  - 장관, 총리 주재 주요현안 간담회 참석
- 11. 8.
  - 2021년 간부 대상 양성평등 세미나
- 11. 9.
  - 장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의료지원 관련 고려대병원 방문
- 11. 10.
  - 장관, 2021년 검사장 리더쉽 교육 대상자 간담회 참석
  - 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최
- 11. 15.
  - 장관,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참석
  - 차관, 제6회 아시아·태평양 국제 조정 컨퍼런스 참석
- 11. 16.
  - 장관,「스타트업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 계획」설명회 참석
- 11. 19.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행정 정책현장 방문
- 11. 22.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안 발표
- 11. 23.
  - 차관, 세계잼버리 제1차 정부지원위원회 참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정책현장 방문
- 11. 24.
  - 차관,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
  - 본부배상심의회 개최
- 11. 26.
  - 장관, 2021년 선진법제포럼 참석
    YTN 이브닝뉴스 인터뷰
- 11. 29.
  - 차관, 서울구치소 모의영상재판 참관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11. 30.
  -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촉식
  -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12월

12. 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개최
- 장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정책현장 방문
- 차관, 채무상속 미성년자 법률지원 추진 관련 합동브리핑

12. 2.
- 장관, 안산 다문화거리 특별 방역점검 정책현장 방문
  인천구치소 정책현장 방문

12. 3.
-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포럼 공동 개최
- 장관,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정책현장 방문
- 난민위원회 개최

12. 6.
- 장관, LG U+·대한적십자사 기부물품 전달식 참석
- 장관, 공정경제 성과보고 대회 참석

12. 7.
- 장관, 서울구치소 「희망커피」1호점 개업식 참관

12. 8.
- 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12. 9.
- 장관,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
  대림동 차이나타운 등 정책현장 방문

12. 10.
- 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 2021년 출입국 행정·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발표회 개최

12. 13.
- 장관, 홍성교도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개최

12. 14.
- 장관, 서울보호관찰소 코로나19 방역 실태 현장 점검
-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개최

12. 15.
- 장관,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식 참석

12. 16.
-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추진 T/F' 결과 발표
- 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화성외국인보호소 정책현장 방문

12. 17.
-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표창장 전수식

12. 20.
- 장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접견
  안양소년원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 기독탄신일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12. 21.
-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 개최
-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12. 22.
- 장관,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 검사 간담회 참석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 참석
-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 개최

12. 23.
- 장관, KAIST 글로벌 인재비자센터 현판식 참석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현장 방문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신청사 개청식 참석
- 차관, 서울남부구치소 등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12. 24.
- 장관, 2022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언론브리핑

12. 27.
- 장관, 서울 이태원 코로나19 방역 점검 및 계도 활동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12. 29.
- 아동학대 관련 협업 우수사례 발표 및 포상식
- 법조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2021년 법무부가 만든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2021년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정의를 지켜온 법무부의 2021년 활동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2021. 01.



2021년 법무부 시무식



제67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임 행사



검찰개혁 등 관련 한겨레신문 인터뷰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진료



소년보호혁신위원 접견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2021. 02.



제68대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식



사공일가(사회적 공존,1인가구)T/F회의



코로나19 관련 진관산업단지 정책현장 방문



서울소년원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안양 삼덕공원 임시선별
검사소 격려 방문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식

2021. 03.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정책현장 방문



아동인권보호추진단
전문위원 위촉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안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코로나19 검사



4. 7. 재·보궐선거 관련 관계부처 공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관리 감독



교정기관 코로나19 방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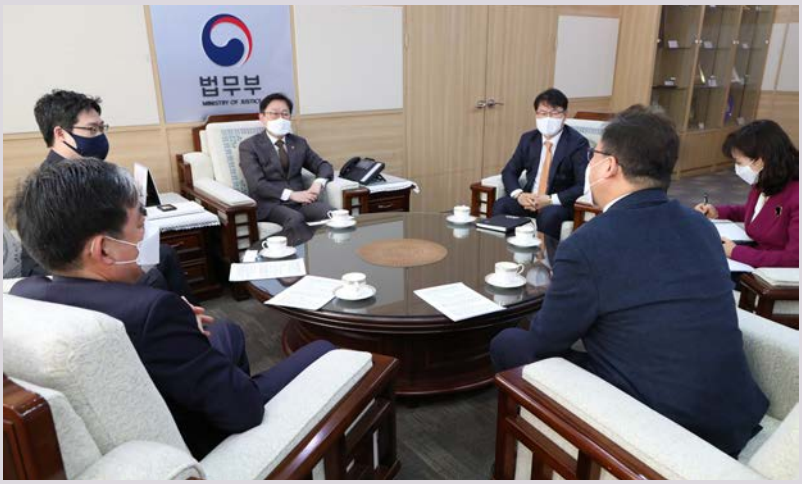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
접견



교정기관 인권친화적
가족접견실 운영

2021. 04.



신임검사 임관식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4월 27일 이태원 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정책현장 방문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체류자 민원 상담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



SNS 홍보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포상식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접견



법무부-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학원장 접견



천안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2021. 05.



신임검사 임관식



디지털성범죄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 참석



사회봉사 집행현장(주민과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현장 방문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지자체(시흥시) 연계형 국적증서 수여식

2021. 06.



법원행정처장 접견



수원스마일센터
정책현장 방문



현대 아산나눔재단 운영·창업지원센터 정책현장 방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보안구역 순찰



교정기관 코로나19 격리수용동 운영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진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비전선포식 참석

2021. 07.



교정기관 기동순찰팀
긴급상황 대응 출동



포천시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점검 현장 방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여권 감식



대림동 차이나타운
정책현장 방문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출범식



제64대
강성국 법무부차관 취임식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촉식

2021. 08.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식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



대전청소년진단센터
개관식



청년 스타트업 현장정책 간담회 참석



전자여행허가센터(K-ETA) 정책현장 방문



교정기관 호송차량
코로나19 방역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관련 언론 브리핑

2021. 09.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태권도 교실 운영



한-미 사이버워킹그룹 설립회의



2021년 청렴라이브
(법무부 맞춤형
청렴교육) 개최



교정기관 수용동 점검



전자감독대상자
전자발찌 훼손 관련
대책 언론 브리핑

2021. 10.



법무부-KAIST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정책현장 방문



아프간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신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방역 계도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법무자문위원회 위촉식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저스티스 서포터스 간담회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행사

2021. 11.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스타트업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



전국 출입국기관장
영상회의



2021년 선진법제포럼 참석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



아프간 특별기여자 유아 학습 지도



법무부 간부 대상 양성평등세미나



제6회 아시아·태평양 국제 조정 컨퍼런스



교정기관-대법원 모의 영상재판 진행



제50회 교정작품 전시회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촉식

2021. 12.



채무상속 미성년자 법률지원 추진 관련 합동브리핑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포럼 공동 개최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개최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식 참석



서울구치소「희망커피」
1호점 개업식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청사 개청식 참석

2021
법무연감

CONTENTS

제1장 총 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58
제2절 기구·인원 65
제3절 예산·시설 84

제2장 업무실적

제1절 기획조정업무 96
1.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탈검찰화 추진 96
2.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99
3.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103
4. 법무행정개선 추진 107
5.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110
6. 규제혁신 적극 추진 112
7.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114
8.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119
9.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121
10. 법무정보화 추진 및 사이버 안전 강화 127
11.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133
12.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135
13. 법무연수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138

제2절 정책홍보업무 154
1. 기관장 소통 154
2. 언론 소통 157
3. 홍보 기획 160
4. 디지털 소통 162
5. 국·내외 협업 홍보 166
6. 홍보 교육 167

제3절 법무업무 168
1.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을 위한 민사법 정비 168
2. 소상공인 영업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법제 정비 170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 법제 정비 171
4.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익법인법 정비 173
5.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를 위한 법제 정비 174
6. 국민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과태료 납부 관련 법제 정비 176
7.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변호사법」개정 추진 177
8.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다양화를 위한「변호사법」개정 추진 178
9. 리걸테크 산업의 안정적 정착 180
10.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181
11. 화상공증제도 활성화 186
12. 국제법무 협력 및 교류 187
13. 국제법무 역량 참여 192
14. 국제법무 역량 강화 193
15.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198
16. 국가송무의 효율적·통일적 수행 202
17.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대응 업무의 효율적 수행 212
18. 통일 대비 법적·인적 기반 구축 217
19. 북한주민 가족관계·상속재산 관리 226
20.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 강화 228
21.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230
22.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231
23. 스타트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233
24.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236
25. 전자어음제도 운영 237
26. 전자증권제도 시행 240
27. 중재산업 활성화 241
28.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243
29.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245
30. 선진법제포럼 개최 246
31. 고금리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8
32.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도모 249

제4절 검찰업무 254

1. 검찰 역량의 강화 254
2. 검찰업무의 추진방향 257
3.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263
4. 국민의 권익 보호 275
5.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278
6. 테러 등 국가안보위해 세력 엄정대처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303
7.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및 침해된 인권 회복 노력 304
8.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305
9.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 307

10.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309
11. 국제공조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엄정 확립 310
1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316
13. 수사권개혁 법령 시행 및 후속 입법 319
14. 포스트코로나 대비 영상증인신문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 320

제5절 범죄예방업무 322

1.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322
2. 전자감독 등 고위험사범 관리 331
3. 감호제도 개선 337
4.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342
5.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346
6. 소년재비행방지 역량 강화 351
7.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전개 356
8.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361
9. 출소자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추진 366

제6절 감찰·감사업무 374

1. 감찰업무 374
2. 감사업무 376

제7절 인권업무 379

1.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379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 386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395
4.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410
5.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412
6.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416
7.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419

제8절 교정업무 421

1.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 421
2. 국민 중심 교정행정 서비스 제공 427
3. 미래를 지향하는 교정행정 구현 432
4. 재범방지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정정책 추진 438

제9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444

1.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444
2.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455
3.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467
4.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472

5.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수요자 중심의 국적정책 개선 477
6.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484
7.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490
8.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494
9.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 501
10.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빅데이터를 통한 외국인정책 추진 지원 503
1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해외유입차단TF 운영 506

제10절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508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508
2. 주요내용 509
3. 향후계획 512

제11절 중대 안전사고 대응 업무 513
1.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 구성 및 운영 513

제12절 디지털성범죄 대응 업무 517
1. 실효적인 디지털성범죄 근절 방안 마련 517

제13절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522
1.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운영 522
2.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523

제3장 법령정비

제1절 개관 530
제2절 법률 531
제3절 대통령령 559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585

제4장 국회업무

제1절 국회업무 618

제5장 통 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626
제2절 검찰업무 통계 640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661
제4절 인권업무 통계 697
제5절 교정업무 통계 699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721

자 료

제1절 직제 740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770
제3절 장관 연설문 786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840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857
제6절 인사 908
제7절 국외훈련·출장 909
제8절 국제교류 현황 910
제9절 상훈 918
제10절 위원회 현황 934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940

부 록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法務年鑑

01



총 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제2절 기구·인원
제3절 예산·시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1. 국정방향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유재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더불어 잘사는 경제' 등을 5대 국정목표로 정하고, 국가비전 및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였으며, 국정전략별로 핵심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정과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528개 실천과제를 세분류하고, 각 실천과제별로 연차별 이행목표와 이행계획 설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정부 출범 5년 차인 2021년에는 '회복', '포용', '도약' 관점에서 성과 창출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표 1-1〉) 및 우리 부에서 추진한 2021년도 국정과제 현황(〈표 1-2〉)은 다음과 같다.

| 표 1-1 |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❶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❶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❶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❶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❶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❷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❷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❷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❷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	❷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❸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❸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❹ 권력기관의 민주적개혁	❹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❹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❺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❺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100대 국정과제 (528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4개실천과제)	26개 과제 (151개실천과제)	32개 과제 (170개실천과제)	11개 과제 (57개실천과제)	16개 과제 (76개실천과제)

| 표 1-2 | 2021년 법무부 국정과제 현황

국정 목표	국정 전략	국정과제 (주관 4개, 협조 5개)	주관 (협조)	실천과제 (16개)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①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권익위 문체부)	1. 국정농단의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2.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등 후속조치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 법무부	2.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의 방지 3.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 5.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가칭)'의 설치
	②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 행안부 인권위	1. 국민 인권 보호 강화 2.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3.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④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 경찰청	1.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2.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협조)	경찰청 (법무부)	8.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및 생활안전분야 역량 강화
더불어 잘사는 경제	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협조)	금융위 (법무부)	4.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대출채권 관리 강화
	②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협조)	공정위 (법무부)	1.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법적기반 구축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협조)	공정위 (법무부)	4. 집단소송제 등 도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협조)	여가부 (법무부)	5.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2. 법무행정의 지표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이강채

가. 개요

법무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및 국정목표 등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 등 법무부 3대 임무를 기본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법무행정 비전으로 삼아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등 국정기조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1년도 법무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본부 각 부서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등 5대 전략목표 아래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등 12개 성과목표 및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등 59개의 관리과제를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2021년도 우리 부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체계 및 전략목표에 따른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는 다음과 같다.

| 표 1-3 | 2021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체계



| 표 1-4 | 2021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Ⅰ.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1.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와 적폐청산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①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실형선고율 제고
		②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③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및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2.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4. 7. 재·보궐 선거 대비, 해당 선거구 관할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하에 신속·엄정하게 수사
		②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한 부정 축재사범 엄단 등 법집행 공정성 강화	• 집중 송환 추진 및 국외도피사범 조기 송환을 위한 여권무효화, 출국금지 강화 등 • 형사사법공조망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등
		③ 감찰·감사활동 강화를 통한 내부 비위근절 및 예방	• 본부 및 소속·산하공공기관 감찰·감사를 강화하고 법무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정정책감사 강화
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1.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에 기여한다	①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효율적·집중적 단속
		② 토착 세력과 결탁한 비위 행위 등 지역 토착비리 척결	•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보조금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 사회 전반의 비리에 적극 대응
		③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④ 부패로 인한 국가재정의 누수 방지	• 입찰담합 및 부패·비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유기적 대응으로 국고손실 환수 노력
		⑤ 국가재정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감독 제도 마련	•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는 국민소송제도 도입
	2. 경제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한다	① 금융·증권·조세 범죄 및 불공정 거래 척결	• 자본시장교란행위, 횡령·배임 등 기업 활동 저해 사범 집중 단속 • 역외범죄 합동단속 협의체,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협력 강화
		②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엄단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 및 공조수사체제 강화 및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강화 • 첨단산업보호 전문검사 TF를 중심으로 수사(단속) 인력 등 전문성 강화
Ⅲ.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한다	1. 인권 보호 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 인권 대응	• 종합적·체계적인 국가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제도화와 이행 노력
		② 인권침해 자체 예방 및 조사·구제 시스템 강화	• 구금·보호시설 실태점검·개선조치 등 인권침해 자체예방 및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③ 통신 및 안보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 인터넷 회선 감청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④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 환경 개선	• 교정시설 신축, 수용동 증·개축, 리모델링 등을 통한 수용환경개선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법률복지를 강화한다	①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추진으로 직접 지원 확대 • 코로나19에 대응한 화상상담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토대로 취약계층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② 여성·아동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필요적 선정 및 지원 확대 및 진술조력 지원 강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통해 아동인권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③ 코로나19에 따른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④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멸시효·기간만료채권 양수 및 변제요구행위 제한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⑤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률 개정	•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구성하여, 상속·유대·보호·주거·친족 분야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1인가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굴
		⑥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	• 「집단소송법」과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Ⅳ.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1. 범죄예방 활동 및 준법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구현한다	①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 전국 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설치·운영하여 관련 범죄 전문 대응체계 내실화 •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범죄 엄정처벌 등 적극 대처
		②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전자감독대상자 관리체계 개선, 특별사법경찰체·신속수사팀 신설 등 전자감독 대상자의 안정적 관리 • 지자체 CCTV 연계 지역 지속 확대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긴급상황 대응력 강화
		③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지속 시행 및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강화 • 백신접종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제도 시행 등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제고
		④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 기능 강화	• 초기단계 위기·비행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 활성화, 비행예방교육의 인력 및 프로그램 전문성 제고
		⑤ 참여형·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함양	•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며, 생활 속에서 법과 질서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2. 실질적인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①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코로나19를 고려하여 비대면 콘텐츠를 제작하여 집중인성교육 운영 • 미성년 자녀 현황 조사, 수용자 자녀지원팀 운영 등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②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지식재산권 교육 및 특허출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사회복귀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작업장려금 활용, 국민연금 가입추진'을 실시하여 출소 후 실질적인 경제적 터전 마련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③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가석방 내실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범수형자, 노약자, 환자 등 면역력 취약자 가석방 확대 • '심층면접관' 제도를 도입하여 강력범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실시
		④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임상심리사 자격 취득 지원 및 비대면 자격취득 과정 신설 등 자체 전문인력 양성 노력
		⑤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 내실화	• 원격의료 확대 운영 및 감염병 예방의료 활동 강화
		⑥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 소년원시설 현대화 추진·소규모 생활실 추가 조성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⑦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의료인력 확충, 의무직 처우개선, 특수장비 도입, 대체복무역 도입 추진 등 치료환경 개선 노력
		⑧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 처우 프로그램 강화	•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검정고시 학습권 무료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보호관찰 프로그램 확대
		⑨출소자 취업 지원 강화를 통한 따뜻한 사회구현	• 양질의 취업지원사업을 확대, 맞춤형 직업 훈련 실시, 출소자 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노력 등 다양한 사업 추진
V. 사회통합과 민생중심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1.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①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 서비스 제공	•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 운영 및 외국인 선원 온라인 상륙허가 시범 시행 등 시스템을 통한 국경관리 실현
		②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 농어촌 및 산업현장에 외국인력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자신청센터 확대 등 개방적이고 질서 있는 비자·체류정책 추진
		③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 '단기체류외국인숙박신고제' 및 '인공지능식별 위치시스템' 구축 사업 등 각종 정보화 사업 진행
		④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 사회통합·국제결혼 안내·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유학생 화상교육 운영 • 아프간 특별기여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민간과 협업하여 초기 사회정착 프로그램 운영
		⑤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 정책 설계 및 추진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1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⑥수요자를 고려한 국적 제도 개선 및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식 실시 및 국민정체성 함양 교육 실시
		⑦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	• 난민제도 남용 차단 및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난민법」 개정 추진 • '난민전문통역인인증제' 사업 등을 통해 난민 심사 전문성 강화
		⑧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 신청 심의 체계 구축	• 관련 법령 개정,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선진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2.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① 법률시장 개방 대비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민·상사 관련 국제 통일규범 성안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법제와의 조화를 도모
		②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법적 기반을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을 위한 법률 지원 내실화
		③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 마련
		④ 공증제도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	• 화상공증 제도의 안전성·편리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공증관계법령 개정, 온라인 공증인 직무 교육 실시, 부적정 공증사무 적발 등을 통해 공증 신뢰도 제고
		⑤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개선	•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 및 「변호사시험법」 개정 추진
		⑥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제고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비위변호사 제재 강화, 마을변호사 제도의 정착 등 추진
		⑦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예방 역량 강화	• 국제투자분쟁대응(ISDS) 대응·예방 및 법적 지원
	3.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SNS채널을 통한 소통, 영상콘텐츠 제작 등 법무정책 대국민 홍보
		②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제고	•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국민이 눈높이에 맞는 법무 서비스를 위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③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 스마트접견 활성화 및 수용(출소)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행 홍보 강화
		④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교도소 24시' 유튜브 게시용 영상 제작, '대국민 공모전' 및 '수용자 대상 공모전' 실시 등 정책홍보 강화
		⑤ 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 강화	• 지하철 광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에게 온라인홍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홍보 제공
	4. 법무행정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①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	• 비대면 온라인민원서비스 확대 도입과 온라인 민원 의견 반영으로 편의성을 제고
		②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 안전 관리 역량 강화	• 법무부 코로나19 총괄 대응 및 체계적인 비상대비 계획 수립·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등

나. 국정과제 등 관리체계

법무부는 국정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주기적 이행점검회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자체평가 등을 통해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2절 기구·인원

제1항 본 부

1. 기구

본부 기구는 2021. 12. 31. 현재 2실 3국 2본부 10관 53과로 편성되어 있다.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을 두고 있으며 법무부 주요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당정협의, 국회업무, 부내 행정개선 총괄·지원 및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사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법무시설 조성, 법무행정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 비상사태 대비업무,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서비스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장관 직속으로 있던 정책기획단을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재편(2021. 6. 8.)하여 법무행정의 개혁 과제 발굴 및 연구, 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신설(2021. 7. 27.)하여 성범죄 대응 체계 확립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나. 법무실

법무실은 법무심의관, 송무심의관, 법무과, 국제법무과, 국제분쟁대응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에 대한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국내외 법무자료의 조사연구와 국제법무 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및 공증인 업무의 감독, 공익법무관의 관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국가배상·헌법재판 관련 업무, 국고손실 환수송무 업무, 남북대화·교류협력 관련 법적지원,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관장, 법조인 양성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다. 검찰국

검찰국은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를 두고 있으며,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검찰공무원의 인사, 검찰청 정원 배정,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형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형 집행 및 압수물 처리의 지휘·감독,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마약류 보상금 및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심의 및 결정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무,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의한 재판관할권 행사문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집행 및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사후관리, 형사관계법령의 입안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라.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예방기획과, 보호정책과, 치료처우과, 보호관찰과, 소년보호과, 전자감독과, 범죄예방데이터과를 두고 있으며, 범죄예방 기획·조직·인사·예산·복무관리 등 범죄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질서 준수의식 고양을 위한 캠페인 전개, '이로운법(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법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법교육 교재·프로그램 보급,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지원, 법질서 실천운동 등을 통해 국민의 법의식을 함양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법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치료감호 정책 기획 및 집행 감독,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및 결정 집행,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위치추적 전자감독·성충동 약물치료·성폭력범죄자의 등록·관리 및 임시퇴원·가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원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재범방지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원생에 대한 적정한 개별처우와 교과교육, 인성교육 및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소년범 사회 내 처우 전담, 소년 보호관찰·조사·수강·사회봉사 등 청소년 비행예방대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출소자·보호관찰대상자·퇴원생에 대한 숙식제공·주거지원·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사회 복귀를 돕는 갱생보호 업무, 강력범죄자 데이터분석 기반의 재범억제 통합플랫폼 구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마. 감찰관실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두고 있으며, 감찰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사정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바. 인권국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를 두고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업무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등을 수행 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관리·감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무행정 수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법무부 공무원의 인권 교육, 검찰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 산하기관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평가,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여성·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중대 아동학대 사건대응 실태를 조사하여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이 신설(2021 2. 22. 차관 직속 임시조직)되어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아동학대 관련 법령정비 및 대응 인력 역량 강화교육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 교정본부

교정본부는 교정정책단에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를 두고 있으며, 보안정책단에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를 두고 있다.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기획, 조직·인사·예산·복무 감독·상훈·홍보·국제관계업무, 교정관련 법령정비, 대체복무요원 복무 및 교육, 교도작업 운영, 취업·창업 지원, 수용자 교육 기획, 출소예정자 사회 적응 지원, 수용자 수용·처우·석방·접견, 참관, 이송, 가석방, 분류처우, 수용자 보건위생, 의료 및 약제, 질병예방, 수용자 청원, 인권 및 소송, 수용자 심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정책단과 국적·통합정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정책단은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적·통합정책단은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정책과, 난민심의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출입국관리 조직·인사·예산·복무관리, 소관법령의 입안 및 외국인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플랫폼 구축,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 왕래자의 출입심사, 사증 및 사증발급 인정서의 발급심사, 출입국 규제,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등록,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관련 조사, 외국인 동향조사, 귀화·국적회복·국적판정 등 국적취득, 국적상실 및 이탈, 난민인정심사 업무 및 출입국항 난민신청 회부심사 업무, 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및 국내 정착지원,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 등 난민의 처우 관련 정책, 재한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 총괄,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정책, 외국 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부여에 관한 정책 총괄, 외국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담당기관과 협력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외국인정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21. 7. 1. 벤처형조직으로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를 신설(2023. 5. 31.까지 존속)하여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 정보를 결합·분석·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자. 기 타

그밖에 대변인실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법무정책에 관한 각종 홍보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운영지원과는 보안, 예산의 집행 및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1. 12. 31. 현재 법무부 기구는 〈표 1-5〉와 같다.

| 표 1-5 | 본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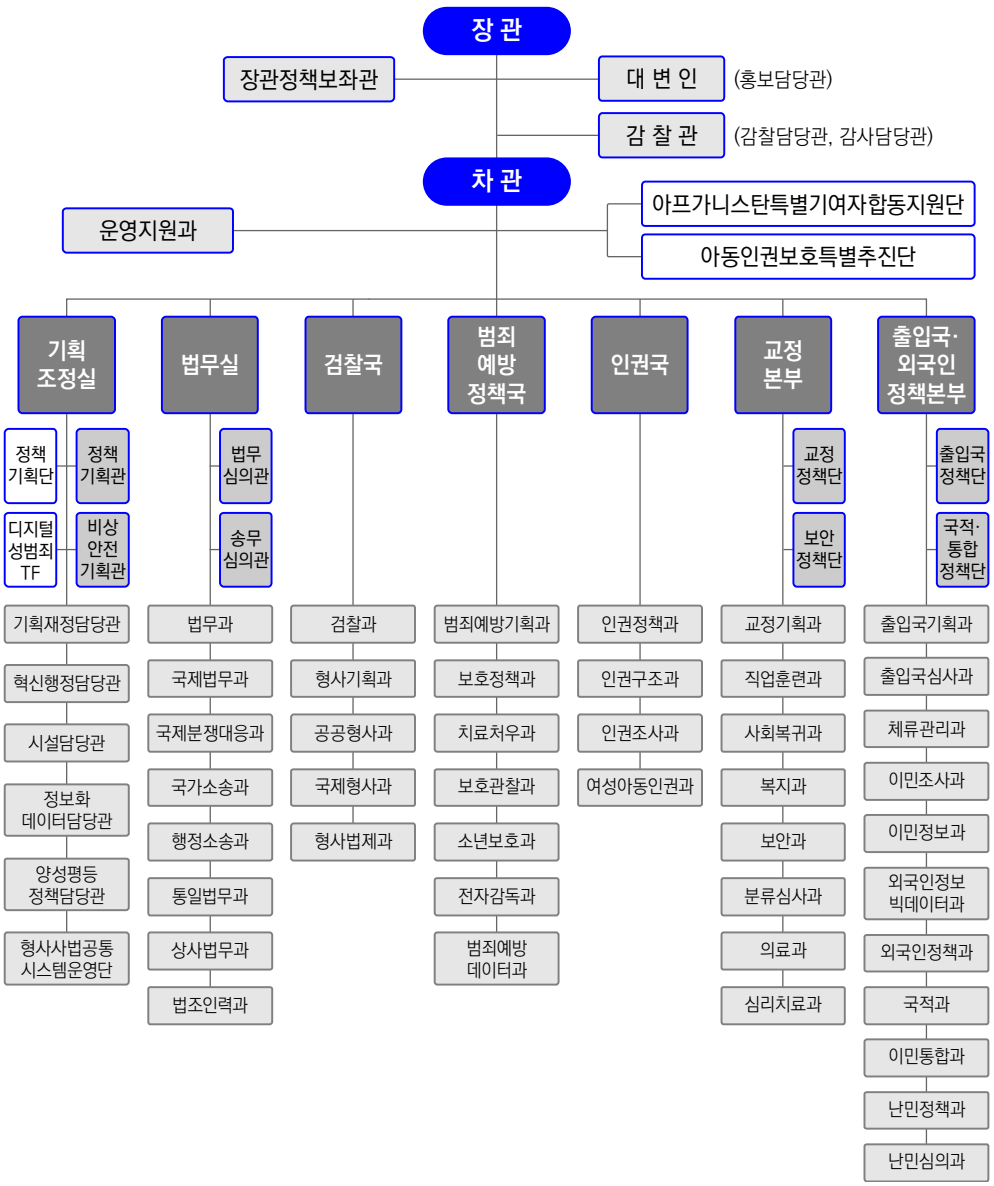
장 관
장관정책보좌관
대 변 인
(홍보담당관)
감 찰 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차 관
운영지원과
아프가니스탄특별기여자합동지원단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기획 조정실
정책 기획단
정책 기획관
디지털 성범죄 TF
비상 안전 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 데이터담당관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형사사법공통 시스템운영단
법무실
법무 심의관
송무 심의관
법무과
국제법무과
국제분쟁대응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
검찰국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범죄 예방 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보호정책과
치료처우과
보호관찰과
소년보호과
전자감독과
범죄예방 데이터과
인권국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
교정 본부
교정 정책단
보안 정책단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 정책단
국적·통합 정책단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보 빅데이터과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정책과
난민심의과

2. 인원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인력, 감찰 업무 전문화 인력, 노사전담 인력, 대체복무요원 교육시설 운영·관리 인력, 데이터 업무 전담인력 등 11명을 증원하여 2021. 12. 31. 현재 본부 정원 763명, 현원 757명으로 직종별 정원 및 현원은 〈표 1-6〉과 같다.

| 표 1-6 | 본부 직종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검사	일반직	별정직
정원	763	2	25	732	4
현원	757	2	31	721	3

제2항 소속기관

1. 검찰청

검찰기구는 2021. 12. 31. 현재 대검찰청과 6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1개 지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청 조직 정원 및 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7 | 검찰청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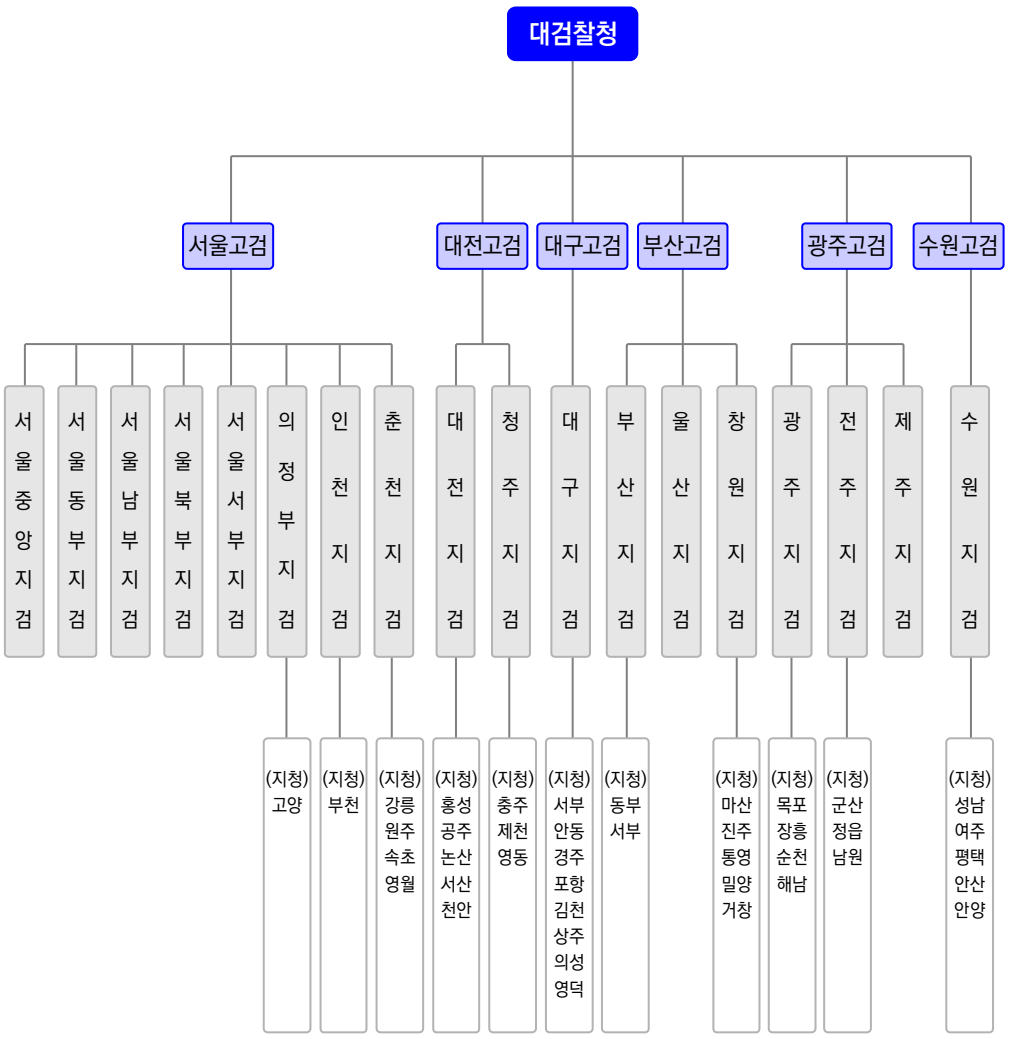

| 표 1-8 |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단위 : 명)

구 분	계	검 사	일반직
인 원	10,772	2,292	8,480

| 표 1-9 | 검사의 직위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위	정 원	현 원
계	2,292	2,143
검찰총장	1	1
고등검사장급	7	7
대검검사급	31	30
검사	2,253	2,105

| 표 1-10 | 검사 외의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8,480	8,398
고위공무원단	26	21
검찰부이사관	17	16
검찰수사서기관	182	162
임기제서기관	1	1
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451	425
검찰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	6	5
검찰주사	1,464	1,447
검찰주사보	1,857	1,842
검찰주사보(속기사)	28	24
검찰서기	1,095	1,102
검찰서기보	859	834
마약수사직	294	262
통계직	1	1
전산·방송통신직	239	224
시설·공업직	92	89
사서직	4	3
임업직	2	2
운전직	275	260
방호직	158	155
위생직	1	1
관리운영직	1,353	1,449
연구직	70	68
전문경력관	5	5
별정직	0	0

2. 보호기관

보호기관은 2021. 12. 31. 현재 18개 보호관찰소, 39개 보호관찰지소, 2개 위치추적 관제센터,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0개 소년원, 1개 소년분류심사원, 18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개 치료감호소, 1개 약물중독재활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표 1-11〉 내지 〈표 1-14〉와 같다.

| 표 1-11 |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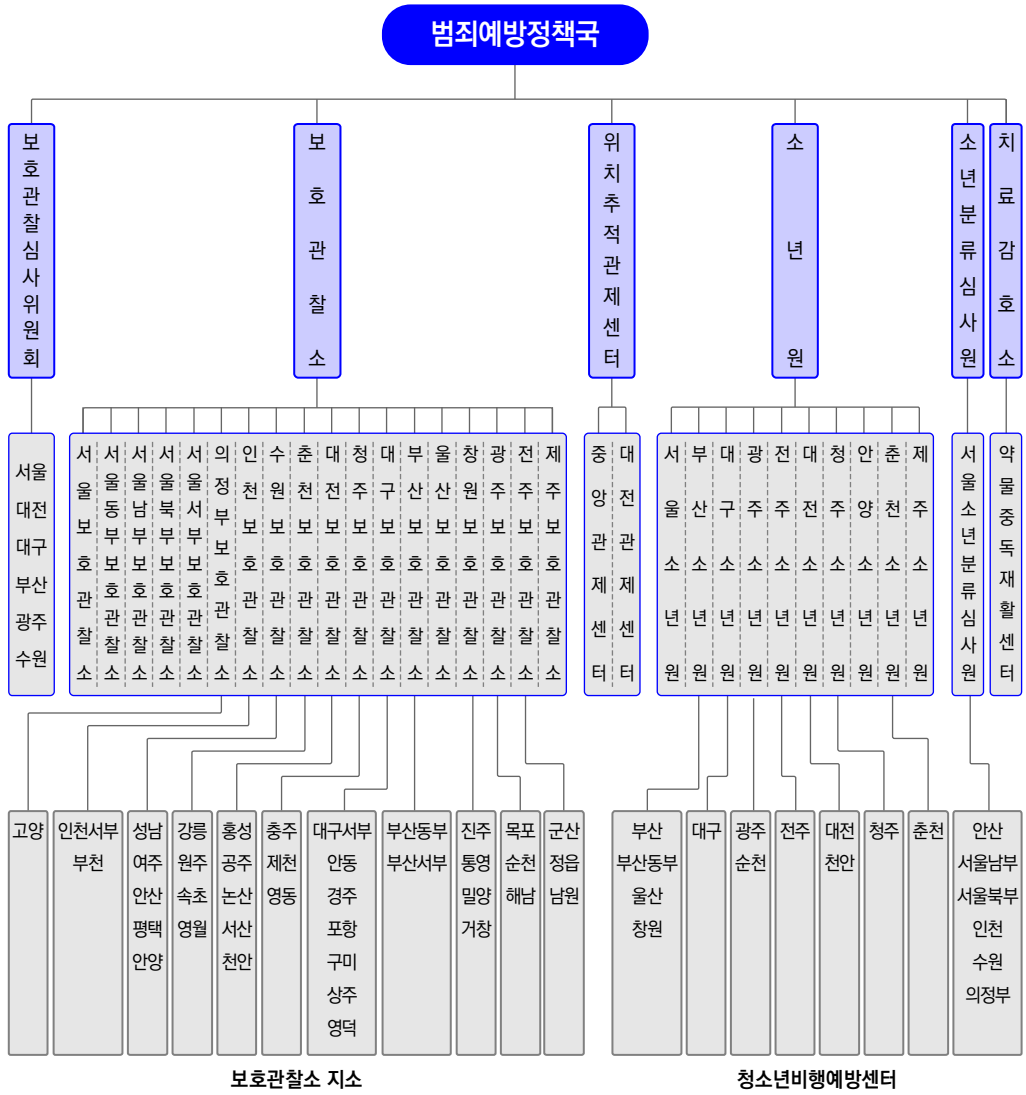

| 표 1-12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1,955	1,941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임기제)	2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4
서기관	29	29
서기관(임기제)	4	4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6	6
보호사무관	190	189
보호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보호주사	325	317
보호주사·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	0
전산주사	2	2
보호주사보	448	448
보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4
보호서기	448	408
보호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공업서기	4	4
운전서기	2	17
보호서기보	401	437
보호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1
공업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61	46
방호서기보	15	15
관리운영직군	3	3

| 표 1-13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982	955
고위공무원단	2	2
서기관	16	15
기술서기관	9	7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9	7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1	1
보호사무관	46	45
의무사무관	12	8
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1	0
보호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1
보호주사	107	102
공업주사	2	2
시설주사	1	1
간호주사	4	4
보호주사·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	0
보호주사보	192	191
공업주사보	4	3
의료기술주사보	1	1
간호주사보	15	15
약무주사보	1	0
보호서기	193	191
보호서기 또는 간호서기	1	1
공업서기	5	5
간호서기	4	4
시설서기	2	2
식품위생서기	7	7
보호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2	2
조리서기	1	1
의료기술서기	1	1
방호서기	1	1
보호서기보	172	169
보호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3	0
공업서기보	14	13
식품위생서기보	4	4
운전서기보	23	23
조리서기보	56	56
방호서기보	19	19
관리운영직군	11	14
전문경력관나군(직업훈련담당)	21	21
전문경력관나군(교과교육담당)	13	13
전문경력관나군(특수교육담당)	3	2

| 표 1-14 | 치료감호소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443	410
고위공무원단	2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	1	1
서기관	1	1
기술서기관	16	6
보호사무관	2	2
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의무사무관	2	1
약무사무관	1	1
간호사무관	2	2
보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	1
보호주사	4	4
보호주사 또는 행정주사	5	6
약무주사	2	2
간호주사	24	24
간호조무주사	2	2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4	4
의료기술주사	1	0
방호주사	1	1
보호주사보	5	5
보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4	4
약무주사보	3	2
간호주사보	56	48
간호조무주사보	7	7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2	2
의료기술주사보	2	2
시설주사보	1	1
전산주사보	1	1
공업주사보	1	0
방송통신주사보	1	1
조리주사보	1	1

직 급	정 원	현 원
기계운영주사보	1	1
보호서기	4	4
보호서기 또는 행정서기	5	5
공업서기	2	3
간호서기	58	54
의료기술서기	3	3
간호조무서기	16	16
전기운영서기	1	1
기계운영서기	2	2
보호서기보	2	2
보호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	2	2
식품위생서기보	1	1
시설서기보	1	1
공업서기보	3	1
운전서기보	3	3
간호조무서기보	133	124
조리서기보	17	16
방호서기보	12	12
관리운영직군	2	5
전문경력관가군(의료시설담당)	1	1
전문경력관나군(작업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나군(사회사업담당)	4	4
전문경력관나군(재활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나군(직업훈련담당)	5	5
전문경력관다군(작업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다군(사회사업담당)	1	1
전문경력관다군(특수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다군(직업훈련담당)	2	2

3. 교정기관

2021. 12. 31. 현재 법무부 산하 전국의 교정기관은 중간 감독기관인 4개의 지방 교정청과 39개의 교도소, 11개의 구치소, 3개의 지소 등 총 57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0. 12. 1. 개청한 국내 최초 민영 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정원은 16,504명이며, 2021. 12. 31. 현재 16,133명의 교정공무원이 수용관리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21년 소속 교정기관 및 교정공무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표 1-15 | 교정기관 조직도



| 표 1-16 |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급별 / 직렬별	정원	현원	고위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연구사	전문경력관
계	16,504	16,133	15	9	116	64	367	1,545	1,991	5,787	6,486	4	120
교정	15,373	15,045	15	5	57	33	325	1437	1807	5604	6090		
의무	117	91		4	59	29	25						
약무	16	14					13	3					
간호	131	127					1	27	44	59			
의료기술	35	35						15	14	6			
식품위생	80	78						12	32	20	16		
행정	0	0											
시설	71	70				2	2	29	22	11	5		
전산	11	11					1	2	5	3			
공업	217	212						17	57	66	77		
방송통신	4	4						3		1			
운전	267	267							5	4	258		
보건	1	1								1			
관리운영	57	57							5	12	40		
기록연구사	4	4										4	
전문경력관(가군)	10	10											10
전문경력관(나군)	110	107											110

4. 출입국기관

2021. 12. 31. 현재 법무부 소속 출입국기관은 6개 출입국·외국인청, 13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개 외국인보호소, 1개 센터 및 24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2,568명이며, 현원은 2,597명이고,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 표 1-17 | 출입국기관 조직도



(6개 청, 13개 사무소, 2개 보호소, 1개 센터, 24개 출장소)

| 표 1-18 | 출입국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2,568	2,597
고 위 공 무 원	3	2
부 이 사 관	3	1
서 기 관	27	23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113	105
출 입 국 관 리 주 사	421	409
출 입 국 관 리 주 사 보	692	697
출 입 국 관 리 서 기	686	689
출 입 국 관 리 서 기 보	509	561
전 산 직	43	44
의 무 직	3	2
간 호 직	4	3
관 리 운 영 직 군 등	64	61

5.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보호·출입국관리직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획부, 교정직 공무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정연수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위원, 원내 일반 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과, 신임검사 교육, 로스쿨 지원, 국제교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국가송무 수행자 등의 교육을 맡고 있는 용인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직급별 정·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19 |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134	180
검 사	14	31
고 위 공 무 원	6	4
서 기 관 · 검 찰 수 사 서 기 관 등	7	7
행 정 사 무 관 · 교 정 관 등	23	27
행 정 주 사 · 교 감 등	26	28
행 정 주 사 보 · 교 위 등	22	40
검 찰 서 기 · 교 사 등	26	41
행 정 서 기 보 · 운 전 서 기 보 등	10	2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등을 수행하며, 2021. 12. 31. 현재 직급별 정·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20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12	11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1	1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검사	3	2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	2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2	2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2	2
전산주사보	1	1
기록연구사	1	1

제3절 예산·시설

1. 예 산

가. 개요

2021년도 법무부 예산은 법무행정의 비전인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정신질환·약물중독 범죄자 관리 강화, 사회적 약자 법률지원 및 인권보호,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법무행정 구현, 출소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및 검찰개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이 전년보다 18.2% 증액된 2조 689억 9,500만 원, 세출이 8.5% 증액된 4조 1,277억 1,300만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지출이 1,099억 8,500만 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표 1-21〉과 같다.

| 표 1-21 | 2021년도 예산 및 기금

○ 총 규 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0 예산		2021 예산 (B)	2020 대비	
		본예산	추경(A)		증△감 (B-A)	%
예산	세 입	1,750,650	1,750,650	2,068,995	318,345	18.2
	세 출	3,935,059	3,805,384	4,127,713	322,329	8.5
기금	수 입	103,543	105,773	109,985	4,212	4.0
	지 출	103,543	105,773	109,985	4,212	4.0

○ 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0 예산		2021 예산 (B)	2020 대비	
	본예산	추경(A)		증△감 (B-A)	%
세 입	1,623,473	1,623,473	1,930,623	307,150	18.9
세 출	3,807,882	3,678,207	3,989,341	311,134	8.5

○ 교도작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0 예산		2021 예산 (B)	2020 대비	
	본예산	추경(A)		증△감(B-A)	%
세 입	127,177	127,177	138,372	11,195	8.8
세 출	127,177	127,177	138,372	11,195	8.8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0 예산		2021 예산 (B)	2020 대비	
	본예산	추경(A)		증△감(B-A)	%
수 입	103,543	105,773	109,985	4,212	4.0
지 출	103,543	105,773	109,985	4,212	4.0

나. 일반회계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이 전년보다 18.9% 증액된 1조 9,306억 원, 세출이 전년보다 8.5% 증액된 3조 9,893억 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 380조 8,509억 원에 대한 점유율은 세입이 0.5%, 세출이 1.0%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 9,893억 원을 프로그램별로 보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된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이 67.4%인 2조 6,902억 원, 교정활동이 9.6%인 3,816억 원, 검찰활동이 8.3%인 3,331억 원, 법무활동이 4.2%인 1,693억 원이며, 기타 인권활동·출입국관리·범죄예방활동·법무교육훈련 등 6개 프로그램이 10.4%인 4,152억 원이다. 주요 경비별·사업비별·프로그램별 예산 내역은 〈표 1-22〉 내지 〈표 1-23〉과 같다.

| 표 1-22 |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0 예산		2021 예산 (B)	2020 대비	
	본예산	추경(A)		증△감 (B-A)	%
계	3,807,882	3,678,207	3,989,341	311,134	8.5
인 건 비	2,369,292	2,315,793	2,450,784	134,991	5.8
기 본 경 비	150,352	149,149	152,541	3,392	2.3
사 업 비	1,205,798	1,130,825	1,279,962	149,137	13.2
기금전출금	82,440	82,440	106,054	23,614	28.6

| 표 1-23 | 사업비 예산내역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0 예산		2021 예산 (B)	2020 대비	
	본예산	추경 (A)		증△감 (B-A)	%
계	1,205,798	1,130,825	1,279,962	149,137	13.2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2,086	2,086	2,434	348	16.7
• 국가배상금지급	150,000	100,000	150,000	50,000	50.0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395	395	355	△40	△10.1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1,205	1,203	1,022	△181	△15.0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77	177	168	△9	△5.1
• 기업환경지수 개선	298	298	283	△15	△5.0
•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 및 대응	4,750	2,834	4,882	2,048	72.3
•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968	968	1,225	257	26.5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3,391	3,391	3,409	18	0.5
•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740	740	731	△9	△1.2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933	933	715	△218	△23.4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관리	3,316	3,316	3,388	72	2.2
• 통일대비법률통합 실질화	642	642	732	90	14.0
• 법률구조	53,619	52,519	53,516	997	1.9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4,549	4,549	4,570	21	0.5
• 인권교육	-	-	219	219	순증
• 아동인권 증진	193	193	218	25	13.0
• 국제인권역량강화	156	156	159	3	1.9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03	203	195	△8	△3.9
• 이민정책개발지원	406	406	395	△11	△2.7
•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2,274	2,274	2,024	△250	△11.0
•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 운영	39,754	39,754	41,222	1,468	3.7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입대체경비	4,467	4,467	4,438	△29	△0.6
•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3,792	13,792	20,980	7,188	52.1
• 외국인보호관리	15,174	15,168	16,665	1,497	9.9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2,800	12,439	13,631	1,192	9.6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8,902	8,902	6,622	△2,280	△25.6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	10,231	8,731	10,789	2,058	23.6
• 검찰청시설운영	69,071	67,648	70,057	2,409	3.6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7,291	6,891	7,291	400	5.8

사 업 명	2020 예산		2021 예산 (B)	2020 대비	
	본예산	추경 (A)		증△감 (B-A)	%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7,541	7,541	8,088	547	7.3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2,696	2,696	2,641	△55	△2.0
•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기술 연구개발 사업(R&D)	1,375	1,375	2,420	1,045	76.0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30,386	28,886	34,191	5,305	18.4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12,538	12,538	10,856	△1,682	△13.4
• 검찰수사지원	27,180	27,180	28,416	1,236	4.5
• 수사일반	87,028	86,138	88,508	2,370	2.8
• 공공수사	5,625	5,625	4,899	△726	△12.9
•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12,924	11,593	13,912	2,319	20.0
• 마약수사	4,923	4,923	4,876	△47	△1.0
• 성범죄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단속	3,005	3,005	3,410	405	13.5
• 민관유착비리 등 사회공정성 저해사범단속	7,403	6,738	7,150	412	6.1
• 공소유지	1,989	1,989	2,010	21	1.1
•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2,197	2,197	4,056	1,859	84.6
• 형사보상	37,313	37,313	40,000	2,687	7.2
• 형사법정비	258	258	295	37	14.3
• 교도소행정지원	40,005	40,005	43,095	3,090	7.7
•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70,396	63,354	79,655	16,301	25.7
•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25,926	25,926	19,786	△6,140	△23.7
•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20,216	213,872	229,255	15,383	7.2
• 교정교화	7,072	7,072	9,775	2,703	38.2
•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8,021	8,021	9,168	1,147	14.3
• 소년원생수용	20,983	20,981	21,796	815	3.9
• 청소년비행예방	6,060	6,060	5,611	△449	△7.4
• 갱생보호활동	33,009	33,009	40,565	7,556	22.9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7,622	7,622	8,641	1,019	13.4
• 보호관찰활동	12,005	11,514	12,780	1,266	11.0
• 전자감독	18,687	18,687	22,215	3,528	18.9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4,691	4,691	4,463	△228	△4.9
• 특별감찰활동	383	383	364	△19	△5.0
• 연수원시설관리 및 운영	4,192	4,192	4,675	483	11.5
•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1,422	1,422	1,445	23	1.6

사 업 명	2020 예산		2021 예산 (B)	2020 대비	
	본예산	추경 (A)		증△감 (B-A)	%
•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460	460	159	△301	△65.4
• 신임검사양성 및 교육지원	894	894	890	△4	△0.4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613	613	613	-	-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120	120	120	-	-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7,309	7,309	8,741	1,432	19.6
• 정보기획지원	33	33	31	△2	△6.1
• 양성평등정책 지원	189	189	253	64	33.9
• 정책연구개발사업(R&D)	48	48	48	-	-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38,859	38,859	36,099	△2,760	△7.1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844	844	821	△23	△2.7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정보화)	9,238	9,238	8,308	△930	△10.1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	19,659	19,659	순증
• 기타법무시설개보수 및 확충	8,302	8,302	12,869	4,567	55.0
• 법무시설행정지원	2,035	2,035	-	△2,035	순감

| 표 1-24 | 프로그램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0 예산		2021 예산 (B)	2020 대비	
	본예산	추경 (A)		증△감 (B-A)	%
계	3,807,882	3,678,207	3,989,341	311,134	8.5
• 법무활동	168,901	116,983	169,344	52,361	44.8
• 인권활동	58,720	57,620	58,877	1,257	2.2
• 출입국관리	107,800	105,933	116,766	10,833	10.2
• 검찰활동	320,743	314,534	333,076	18,542	5.9
• 교정활동	363,615	350,229	381,566	31,337	8.9
• 범죄예방활동	111,078	110,585	125,239	14,654	13.3
• 특별감찰관활동	1,142	1,138	1,073	△65	△5.7
• 법무교육훈련	6,968	6,968	7,169	201	2.9
• 행정지원	2,586,475	2,531,777	2,690,178	158,401	6.3
• 기금전출금	82,440	82,440	106,054	23,614	28.6

다. 교도작업특별회계

2021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1,383억 7,2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작업생산품 판매수익 893억 8,300만 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98억 4,900만 원, 작업부산물 판매수입 등 잡수입 3억 5,900만 원, 기금예탁원금회수 370억 원, 기금예탁이자수입 17억 8,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5억 6,800만 원, 교도작업 561억 1,100만 원, 직업훈련 40억 4,500만 원, 시설보완 89억 900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687억 3,900만 원으로 〈표 1-25〉와 같다.

| 표 1-25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부내역

가. 세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0 예산		2021예산 (B)	2020 대비	
	본예산	추경(A)		증△감 (B-A)	%
계	127,177	127,177	138,372	11,195	8.8
교도작업수입	74,809	74,809	89,383	14,574	19.5
잡 수 입	358	358	359	1	0.3
전년도세계잉여금	9,849	9,849	9,849	-	-
기금예탁원금회수	40,000	40,000	37,000	△3,000	△7.5
기금예탁이자수입	2,161	2,161	1,781	△380	△17.6

나. 세 출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20 예산		2021 예산 (B)	2020 대비		내 역	
	본예산	추경 (A)		증△감 (B-A)	%		
계	127,177	127,177	138,372	11,195	8.8		
교도작업	54,931	54,931	56,111	1,180	2.1	• 작업재료비 • 기타보전금 • 일반수용비 등	25,051 24,095 6,965
직업훈련	5,426	5,426	4,045	△1,381	△25.5	• 훈련재료비 • 자산취득비 • 일반수용비 등	1,740 1,105 1,200
시설보완	9,619	9,619	8,909	△710	△7.4	• 작업장 신축 등 • 작업장비구입비	7,456 1,453
기본경비	568	568	568	-	-	• 운영비 등	568
공공자금 관리기금예탁	56,633	56,633	68,739	12,106	21.4	• 예탁액	68,739

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21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동일하게 1,099억 8,500만 원이며, 수입은 기타재산수입 4억 2,600만원, 변상금 15억 5,600만 원, 기타경상이전수입 19억 4,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60억 5,400만 원, 지출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425억 1300만 원,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보호 323억 6,600만 원,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 287억 3,600만 원,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16억 6,400만 원, 운영비 5,000만 원, 예수원금상환 25억 원, 예수이자상환 2억 4,000만 원, 여유자금 19억 1,6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표 1-26〉과 같다.

| 표 1-26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세부내역

가. 수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0 기금		2021 기금 (B)	2020 대비	
	본예산	추경(A)		증△감 (B-A)	%
계	103,543	105,773	109,985	4,212	4.0
기 타 재 산 수 입	426	426	426	-	-
변 상 금	1,556	1,556	1,556	-	-
기타경상이전수입	1,949	1,949	1,949	-	-
통 화 금 융 기 관 예 치 금 회 수	7,172	7,172	-	△7,172	순감
일 반 회 계 전 입 금	82,440	82,440	106,054	23,614	28.6
예 수 금	10,000	12,230	-	△12,230	순감

나. 지 출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0 기금		2021 기금 (B)	2020 대비		내 역
	본예산	추경(A)		증△감 (B-A)	%	
계	103,543	105,773	109,985	4,212	4.0	
법 무 부 범 죄 피 해 자 보 호	45,877	45,428	42,513	△2,915	△6.4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범죄피해 구조금 등 5개 사업
여 가 부 범 죄 피 해 자 보 호	31,382	31,382	32,366	984	3.1	• 성폭력 피해자 지원
보 건 복 지 부 범 죄 피 해 자 보 호	22,578	24,808	28,736	3,928	15.8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경 찰 청 범 죄 피 해 자 보 호	1,321	1,321	1,664	343	26.0	• 신변보호장치 및 임시숙소 지원
운 영 비	52	52	50	△2	△3.8	
예 수 원 금 상 환	-	-	2,500	2,500	순증	
예 수 이 자 상 환	130	130	240	110	84.6	
여 유 자 금	2,203	2,652	1,916	△736	△27.8	

2. 시 설

시설담당관실 사무관 이인환

가. 개요

법무시설이란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청사시설로 검찰청과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연수원 등을 말하며 법무부에는 검찰청사 67개, 보호관찰소 65개, 소년원 및 비행예방센터 30개, 교정시설 58개, 출입국관리사무소 46개 등 총 268개의 법무시설이 있다.

법무부에서는 5년 단위 중기사업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기관과 노후하고 협소한 법무시설을 우선으로 확충하여 매년 5~6개 정도의 법무시설을 개청해 나가고 있다.

나.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시설 조성

법무시설 조성시 지역주민 및 수요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법무시설 청사 외곽 담장 낮추기, 체육시설 주민개방, 교정시설의 청사 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주벽과 녹지 가꾸기 등으로 주민친화형 법무시설을 조성하였고, 사용자 및 외부전문가 만족도 조사, 소속기관 정책체험 등을 통한 관련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공사관계자 간담회, 시기별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지열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고효율 에너지기기 적용 등 에너지 1등급의 친환경 법무시설을 조성하였다.

다. 법무시설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상황

2021년 신규사업은 서울서부지검 별관 증축, 용인분원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 설치, 천안교도소 수용동 증축, 목포교도소 수용동 증축, 강릉교도소 수용동 증축, 부산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총 6개 사업을 착공하였다. 계속사업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신축, 법무부 기록관 신축, 춘천지검 속초지청 신축, 치료감호소 중증환자 치료병동 신축, 울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신축, 속초법무합동청사 신축, 광주솔로몬로파크 신축, 영월 대체복무교육센터 및 생활관

신축, 거창구치소 신축 총 9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법무시설 조성사업에 투입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비는 총 1,663억 원으로 검찰시설에 666억 원(40.1%), 보호시설에 177억 원(10.6%), 교정시설에 499억 원(30.0%), 출입국관리시설에 188억 원(11.3%), 기타 시설에 133억 원(8.0%)을 집행하였다.

2021년도에 시행한 주요 법무시설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다.

| 표 1-27 | 2021년도 주요 법무시설 조성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공 사 명	규모(㎡)		소요예산 (총사업비)	공사기간
		부지	건물		
신규 (6)	서울서부지검 별관 증축	5,638	2,249	63	'21. 10월 ~ '23. 1월
	용인분원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 설치	-	3,975	67	'21. 10월 ~ '22. 11월
	천안교도소 수용동 증축	143,654	1,800	54	'21. 10월 ~ '23. 1월
	목포교도소 수용동 증축	264,564	1,497	47	'21. 10월 ~ '23. 1월
	강릉교도소 수용동 증축	102,651	1,429	52	'21. 9월 ~ '22. 12월
	부산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	3,332	52	'21. 6월 ~ '22. 11월
계속 (9)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신축	18,000	17,455	835	'20. 6월 ~ '22. 5월
	법무부 기록관 신축	7,048	18,031	464	'20. 12월 ~ '23. 6월
	춘천지검 속초지청 신축	11,091	6,612	188	'19. 12월 ~ '22. 5월
	치료감호소 중증환자 치료병동 신축	303,393	13,857	433	'20. 12월 ~ '23. 10월
	울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신축	11,244	6,876	165	'20. 12월 ~ '23. 1월
	속초법무합동청사 신축	4,455	2,700	62	'20. 11월 ~ '22. 3월
	광주솔로몬로파크 신축	18,946	7,492	187	'19. 12월 ~ '22. 3월
	영월 대체복무교육센터 및 생활관 신축	11,213	3,768	86	'20. 12월 ~ '22. 6월
	거창구치소 신축	160,818	19,844	912	'15. 11월 ~ '22. 11월

法務年鑑

02



업무실적

제1절 기획조정업무
제2절 정책홍보업무
제3절 법무업무
제4절 검찰업무
제5절 범죄예방업무
제6절 감찰·감사업무
제7절 인권업무
제8절 교정업무
제9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제10절 아프간특별기여자정부합동지원단
제11절 중대 안전사고 대응 업무
제12절 디지털성범죄 대응 업무
제13절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제1절 기획조정업무

1.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탈검찰화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승권

가. 추진배경

법무부는 검찰 외에 교정, 출입국·외국인 정책,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다양한 법무행정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실·국·본부장 7개 중 6개 직위에 모두 검사를 보임하는 등 '17년 이전에는 주요 직위에 직제 상으로 검사만 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검사를 보임하였다. 이로 인해 법무부가 검찰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검찰의 시각만을 반영하는 검찰중심의 조직문화가 형성됨으로써 검찰 외 다양한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을 펼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 선정되었고, 그 세부과제로 법무부 탈검찰화도 포함되었다.

'17. 8월 법무부가 법무·검찰의 개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위원들을 위촉하여 발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 한인섭)에서는 제1차 권고안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7. 8월부터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주요 실·국·본부장 모두 외부 인사 또는 검사가 아닌 내부 공무원 출신으로 임명하는 등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나. 추진경과

'17.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직제 개정으로 법무부 검사 직위 61개 중 69%인 42개 직위를 비(非)검사도 보임이 가능하도록 복수직제화 하였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제13차 권고안('18. 6월)을 수용하여 '18. 12월에는 검찰국 2개 과장 직위에도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였다.

직제 개정에 따라 2017년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등 4개 직위, 2018년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 인권구조과장 등 23개 직위, 2019년

감찰관, 국가송무과장 등 10개 직위, 2020년 법무실 2개 직위 등 주요 보직에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검사가 맡고 있던 71개 직위 중 39개 직위(55%)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취지에 맞게 '20. 3.까지 비(非)검사인 외부전문가 등으로 임용하였다(아래 표).

| 표 2-1 | 법무부 검사 보임직위의 비(非)검사 보임 내역

구 분	소속(직위)	직 급	임용일	비 고
실·국·본부장 (4개)	법무실장	고위공무원(가등급)	'17. 08. 22.	외부 전문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고위공무원(가등급)	'17. 09. 04.	외부 전문가
	인권국장	고위공무원(나등급)	'17. 09. 29.	외부 전문가
	범죄예방정책국장	고위공무원(나등급)	'18. 04. 02.	내부 공무원
국장급(2개)	법무심의관	고위공무원(나등급)	'18. 10. 01.	외부 전문가
	감찰관	고위공무원(나등급)	'19. 04. 29.	외부 전문가
과장급(9개)	인권정책과장	부이사관	'17. 11. 16.	내부 공무원
	보호정책과장	서기관	'18. 04. 02.	외부 전문가
	여성아동인권과장	서기관	'18. 04. 02.	외부 전문가
	국제분쟁대응과장	부이사관	'18. 04. 09.	외부 전문가
	상사법무과장	부이사관	'18. 07. 23.	외부 전문가
	범죄예방기획과장	부이사관	'18. 08. 27.	내부 공무원
	치료처우과장	서기관	'18. 08. 27.	내부 공무원
	인권구조과장	서기관	'18. 09. 03.	외부 전문가
	국가소송과장	서기관	'19. 08.19.	외부 전문가
평검사(24개)	법무심의관실 5개 직위	서기관 2, 행정사무관 3	'19. 03. 11.	외부 전문가
	법무과 2개 직위	서기관, 행정사무관	'19. 05. 13.	외부 전문가
	국가소송과 2개 직위	행정사무관 2	'19. 08. 06.	외부 전문가
	국제법무과 3개 직위	서기관, 행정사무관 2	'20. 03. 16.	외부 전문가
	통일법무과 2개 직위	서기관, 행정사무관	'19. 02. 11.	외부 전문가 내부 공무원
	인권구조과 1개 직위	행정사무관	'18. 02. 05.	외부 전문가
	범죄예방기획과 1개 직위	서기관	'18. 02. 05.	내부 공무원
	상사법무과 2개 직위	서기관, 행정사무관	'19. 08. 26.	외부 전문가
	보호정책과 2개 직위	서기관, 보호사무관	'18. 08. 27.	내부 공무원
	치료처우과 1개 직위	서기관	'18. 08. 27.	내부 공무원
	기획조정실 1개 직위	서기관	'19. 02. 11.	내부 공무원
	법조인력과 2개 직위	서기관 2	'20. 02. 25.	내부 공무원

2021년에는 탈검찰화 직위로 관리하고 있는 39개 직위 중 공석이 발생한 법무실장 등 실·국·본부장급 3개의 직위와 과장급 직위인 범죄예방기획과장 직위 및 평검사 직위인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직위 등 8개 직위 등 모두 12개의 직위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와 내부 우수공무원 등 비(非)검사를 임용하여 탈검찰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아래 표).

| 표 2-2 | 2021년 12. 31. 현재 법무부 검사 보임 직위의 비(非)검사 보임 내역

구 분	소속(직위)	직 급	임용일	비 고
실·국·본부장 (3개)	법무실장	고위공무원(가등급)	'21. 08. 06.	내부 공무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고위공무원(가등급)	'21. 07. 02.	내부 공무원
	범죄예방정책국장	고위공무원(나등급)	'21. 08. 06.	내부 공무원
과장급(1개)	범죄예방기획과장	부이사관	'21. 08. 30.	내부 공무원
평검사(8개)	법무심의관실 2개 직위	서기관 2	'21. 03. 15.	외부 전문가
			'21. 05. 17.	외부 전문가
	법무과 1개 직위	서기관 1	'21. 03. 15.	외부 전문가
	통일법무과 1개 직위	행정사무관 1	'21. 08. 16.	내부 공무원
	범죄예방기획과 1개 직위	서기관 1	'21. 08. 30.	내부 공무원
	상사법무과 1개 직위	행정사무관 1	'21. 08. 16.	내부 공무원
	보호정책과 1개 직위	서기관 1	'21. 01. 18.	내부 공무원
	기획조정실 1개 직위	서기관 1	'21. 08. 30.	내부 공무원

다. 향후 계획

기존 탈검찰화 직위에 대해서 현재까지 검사가 아닌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및 내부 우수공무원이 보임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인권보호 등 법무부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검찰국·인권국 등 실·국·본부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탈검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탈검찰화 직위 채용 과정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블라인드 방식 등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내부 공무원을 보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더욱 충실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승권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8. 3월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사회적가치', '참여협력', '신뢰받는 정부' 등 정부혁신의 3대 전략에 따른 법무부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혁신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법무부는 2021. 3월 각 실·국·본부와 협력하여 법무부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체계적인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정부혁신책임관인 정책기획관을 중심으로 실·국·본부 실무진이 참여하는 '정부혁신 추진 실무단'을 구성·운영하였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고 실·국·본부 주무과장이 참석하는 '정부혁신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현황 전체를 점검하는 등 혁신성과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 그림 2-1 | 정부혁신 3대 전략 및 정부혁신 추진 현황 점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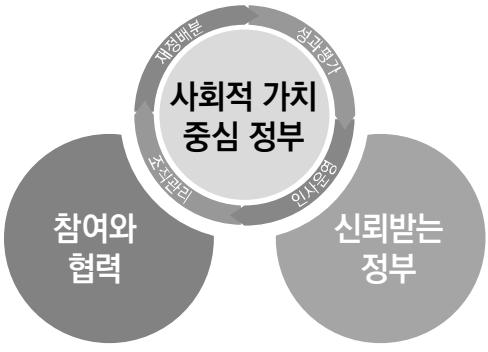

정부혁신 3대 전략



정부혁신 추진 현황 점검회의

| 그림 2-2 | 정부혁신 추진 실무단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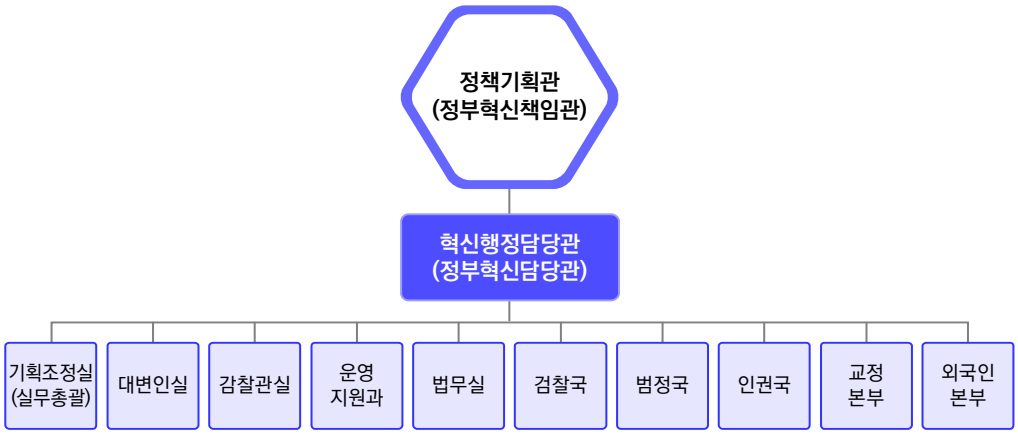

나. 주요 혁신 성과

1)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1인가구 비중이 '00년 15.5%에서 '19년 30.2%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법무부는 기존의 '다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공존, 1인가구) T/F를 발족하여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개 이슈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법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림 2-3 |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제 도	내 용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1인가구 5대 분야별 제도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1 보호 — 스토킹행위 처벌 [스토킹처벌법 '21.10.시행] #2 상속 — 본인 의사에 반하는 상속제도 개선 [구하라법 '21.6.국회제출] /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22.4.국회제출 예정] #3 유대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1.10.국회제출] #4 주거 —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 [입법제안] #5 친족 —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22.4. 국회제출 예정] 추진현황 / 사공일가 TF 입법제안 / 입법추진 및 국회제출 / 입법완료

2)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무사증입국 허용 대상 국가의 지속적 확대로 인하여 비자발급 등 검증장치 없이 국내에 도착함에 따라 불법체류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21.5.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도입, 감염병 유입방지 및 성범죄자 등 고위험군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 '21.5.3. 시행, '21.12.31. 현재 86,211명 이용, 493명 입국 차단

| 그림 2-4 |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시행

제 도	내 용
전자 여행 허가 제도 시행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출발 전 여행정보 제출! 모바일, PC로 신청! 30분 내 위험도 자동분석! 인적사항 / 범죄경력 / 감염병 정보 / 방문목적 / 체류 예정지 촬영만으로 여권정보 자동입력! 대한민국 K-ETA 센터

3) '농협' 협력기관 지정을 통한 농촌 사회봉사 개선

기존 사회봉사 대상자가 도심의 보호관찰소에 집결 후 농촌현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에서 지역 거점농협에 집결하여 곧바로 농촌 현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현장 이동시간이 단축되어 실질적인 농촌 지원 시간이 증대하였고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단위농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영세농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21.1. ~ 12.까지 188,214명 지원, '19년 동기(45,973명) 대비 4배 증가

| 그림 2-5 | '농협' 협력기관 지정을 통한 농촌 사회봉사 개선

제 도	내 용
'농협'협력기관 지정을 통한 농촌 사회봉사 개선	기존 방식: 출근 → 보호관찰소 → 60분 → 단위농협 → 20분 → 대상농가 개선 방식: 출근 → 단위농협 → 대상 농가

4)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전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시행

'21년 7월부터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실시하여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였다.

| 그림 2-6 | 전자감독 생활안전 서비스 실시

제 도	내 용
전자감독 생활안전 서비스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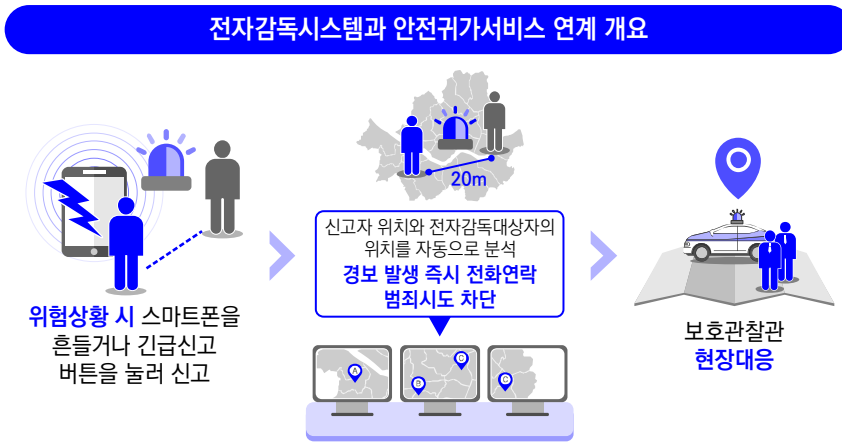

다.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법무부는 법무행정의 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3.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승권

가.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법령과 제도를 유연하게 해석해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졌다. 또한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법무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대 등을 통해 부(部)내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적극행정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무엇보다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방지할 적극적인 정책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 우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코로나19 방역에 기여를 하였다.

| 그림 2-7 | 특별입국절차 간소화 및 전자적 출·입국행정을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입국심사 과정에서 승객이 필경대에 밀집하여 2~5종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성이 높고 인적사항 등을 중복 작성하여 승객들의 불편이 증가

☞ 여권정보를 바탕으로 사전 전산 입력한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 출력·교부토록 개선하여 입국심사 소요시간 단축 및 감염병 예방 기여



심사관이 코로나19 중복 서류를 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교부

| 그림 2-8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출입국심사 음성 안내절차 개선

- 출입국심사 중 심사절차에 대한 안내를 심사관의 구두 안내에 의존, 코로나19 관련 비말감염 위험 및 외국어 전달력 부족으로 민원사례 지속

☞ 구글번역을 활용한 반번사용 문구를 다국어로 녹음 후 단축키를 누르면 음성출력하는 방식으로 개선,비말 전파를 최소화하여 감염병 예방 및 정확한 의사전달로 불만민원 감소



필요한 승객에게만 단축키로 손쉽게 다국어 음성전달

| 그림 2-9 | 중앙부처 최초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 관심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 국민이 법무부 홈페이지 이용 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원하는 정보의 신규 게시글 신속 파악 곤란

☞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법령, 채용, 통계 등 법무정보(51개) 중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직접 선택 및 신청, 매일 오전 이메일을 통해 빠르게 받아 볼 수 있는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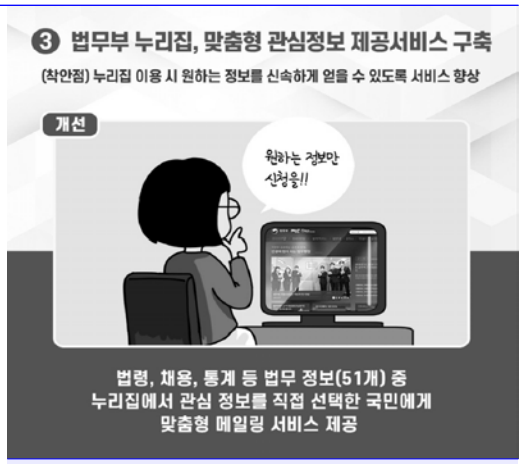

누리집을 통한 관심정보 제공서비스 구축

2) 적극행정 국민 소통창구 마련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감대 확산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였다. 법무행정 분야별 정책고객 및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은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아이디어 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심사 및 개인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적극적 홍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의 국민 체감도 제고에 일조하였다.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 18명을 선발하고, 발굴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 그림 2-10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 표 2-3 | 2021년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18개 사례)

구분	순위	우수사례명	기관(부서)
'20. 하반기 경진 대회	최우수상	특별입국절차 간소화 및 전자적 출입국행정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인천공항(출)
	우수상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출입국심사 음성 안내절차 개선	인천공항(출)
		여권미소지 외국인에 대한 출소 전 선제대응으로 코로나 감염예방 기여	군산교도소
		중앙부처 최초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 관심정도 제공 서비스' 구축	정보화담당관실
	장려상	위기상황에 처한 전자감독대상자 지역사회 협업으로 문제해결	광주(보)순천지소
		행복 브릿지 영상편지(행복을 이어주는 가교)	해남교도소
'21. 상반기 경진 대회	우수상	체류민원 즉시 실태조사 시스템	대구(출)외국인사무소
		1회방문 ▶ ALL-ROUND 민원 서비스 제공	제주교도소
		적극적 발상으로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예방하다(국민추천)	서울남부청소년비행(센)
	장려상	수용자 가족보호를 위한 동행카페 운영	청주교도소
		코로나시대, 대국민 법교육·법질서 사업의 디지털 전환	보호정책과
		지역사회와 협업, 정신질환 보호소년 힐링 공간 조성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안양소년원
소·확·행 공무원	범죄예방 정책국	낙상사고 후 의식을 잃고 방치되어 있던 독거 치료명령 대상자 긴급구조	전주(보)군산지소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 범죄수법분석표 통합 관리를 통해 재범방지 역량 강화	광주보호관찰소
	교정본부	사용불가한 운동장과 공원 정비로 직원 및 주민들의 힐링 공간 제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민원편의 증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상주교도소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장기보호 외국인의 보호일시해제 결정 지원으로 가족관계 회복 및 인권보호	출입국외국인지원(센)
		전자여행허가(K-ETA)센터 민원인 고충해소	김포공항(출)

4) 적극행정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지원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21. 10.) 민간위원의 인원을 확대(8명 → 10명)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1인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였다.

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21. 10.)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추가하여 적극행정위원회 규정을 강화하였다.

5) 적극행정 문화 확산

가) 적극행정 체감 확산

적극행정 우수사례·성과 등을 공유하여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관장의 적극행정 우수현장 방문·격려('21. 2.), 적극행정 챌린지 부서 방문 ('21. 8.)* 등 기관차원에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 정책·서비스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 혁신문화를 추진 중인 부서 방문·격려

| 그림 2-11 | 혁신+적극행정 챌린지 부서 격려 방문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범죄예방데이터과

나) 적극행정 저변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모니터링단 개인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적극행정에 관하여 전달하고 소속기관 청사 전광판을 활용한 적극행정 사례 홍보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자체 동영상 배포 및 언론홍보를 통하여 법무부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였다.

| 그림 2-12 | 적극행정 우수사례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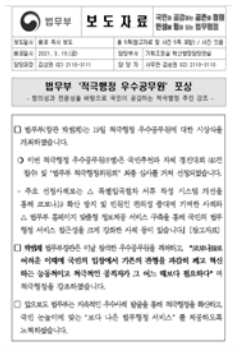
법무부 보 도 자 료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참고자료)



다.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나은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4. 법무행정개선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승권

가. 추진배경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실현 지원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국민눈높이를 충족하고 조직의 변화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 '소통·조화·배려의 조직문화 조성'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창의 및 직무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법무 행정능력 강화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변화관리 교육과정은 '창의 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 '직무역량 강화' 3개 분야 5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9,595명의 직원이 참여하였다.

| 표 2-4 | 2021년도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3개 분야 5개 과정, 9,595명 참여)

구 분		과 정 명	대 상	인원	시기	비고
창의역량 강화		① 오디오북	전 직원	4,500	6~11월	6회
		② 독서증진	전 직원	1,000	5~10월	6회
조직문화 향상(활성화)		③ 정부정책소통	소속기관	1,304	7~11월	60회
직무 역량 강화	교육	④ 전화외국어	전 직원	240	5~10월	3회
	연구모임	⑤ 학습동아리지원	우수 학습동아리(5팀)[1]	2,551	11월	
합계		5개 과정		9,595		

2)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및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가) 행정제도 개선 활성화

현장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하여 자체 '행정개선 관리시스템'을 운영, 2021년 877건의 행정개선 제안을 접수하여 총 179건을 채택하였으며,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안자의 소속기관 행정개선 마일리지 부여 등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관심과 지지 유도를 통한 행정제도개선 활성화에 성과를 거두었다.

1) 우수학습동아리 활동회원(2,551명)
- 바른급식 사랑방: 422명, 전자감독: 760명, 수강명령 전문가: 714명, APIS 정보분석: 427명, 심리치료 연구회: 228명

나) 행정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창의적 분위기 조성

2021년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소년보호기관·검찰청 간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운영',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등 우수사례 13건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행정제도 개선 추진력 확보 및 조직 내 창의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 그림 2-13 |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



| 표 2-5 | 자체 우수사례 내용

번호	분야	우수사례	등급	기관(부서)
1	법무공통	사회적 공존의 확장을 위한 1인가구 제도 개선	최우수	법무심의관실
2	범죄예방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 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시행	최우수	전자감독과
3		민·관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		의정부보호관찰소
4		농협 협력기관 지정을 통한 농촌지원 사회봉사 내실화	우수	보호관찰과
5		소년보호기관·검찰청 간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운영		소년보호과
6		소년보호기관 색채 디자인 사업 프로젝트 도입 추진	장려	안양소년원
7	교정	수용자와 가족 간의 비대면 만남, '화상접견제도' 도입	우수	사회복귀과
8		최초 비대면 온라인 VR교정작품 전시회 개최	장려	직업훈련과
9		수용자 작업장려금 활용, 국민연금·정기적금·주택청약 가입 추진		직업훈련과
10	출입국	전자여행 허가제도 시행, 안전한 국경관리 및 국내 기업활동 지원	우수	출입국심사과
11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코로나19관련 3자 통역 등 서비스 제공	장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2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민정보과
13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체류관리과

3)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및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문화개선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관방문, 정부정책 소통교육', '육아시간 등 가족친화제도 적극 활용', '연가사용 활성화로 쉼표 있는 삶 추구',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 등이 있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조직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구성원의 창의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 등 지속적인 변화관리 추진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5.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주무관 윤영신

가. 추진배경

최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 권익 보호의 중요성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민원서비스로는 국민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요구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해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 개개인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민신문고 민원 등 신속하고 내실있는 민원 처리

법무부에 접수·처리된 민원은 총 30,964건으로, 그 중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된 민원이 전체 민원의 75.2%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표 2-6 | 법무부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2021. 1. 1. ~ 2021.12.31. 기준)

구분	계	국민신문고 접수·처리	우편, FAX, 방문접수 접수·처리	장관과의 대화 접수·처리
건수	30,964	23,313	7,531	120

법무부는 민원의 접수·배부·이송·처리 등 전 단계마다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는 한편, 처리기간 준수 여부 등 민원처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민원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

지역사회단체·대학교 등 민원사무와 관련된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민원 제도 및 정책을 발굴하고,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개선 가능한 민원을 찾아 해결하는 '민원 끝까지 챙기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건의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였다.

| 표 2-7 | 국민불편 주요 개선사례

연번	발굴경로	개선사항
1	국민신문고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자동 로그아웃 개선

3) 국민제안 활성화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및 의견을 법무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2021년 접수된 총 710건의 국민제안 중 '온라인민원서비스 자동로그아웃 기능 개선' 등 22건을 채택, 8건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였고, 국민제안 공모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중앙우수제안」 심사 결과 법무부에서 우수제안으로 추천한 '선원관리업체 재입국허가 전자민원신청 대리허용'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일부항목 영문병기'가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되어 제안자는 장려상을, 제안을 추진·정책에 반영한 직원은 제안활성화 유공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4) 법무부 민원행정서비스 점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민원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위해 '2021년도 법무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및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법무부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68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일반민원에서는 신청편리성(8.54점)이, 인터넷민원에서는 신속정확성(8.44점)이 가장 낮게 나와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민원응대 친절도는 100점 만점 기준 84.8점으로 전년도 대비 3.3점 하락하였으며, 단계별 친절도는 수신단계 94.7점, 응대단계 84.7점, 종료단계 75.3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미흡한 기관은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본부 및 소속기관에 결과를 공유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게 하고 미흡사례는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민원·정책현장 방문을 확대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국민신문고·국민제안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한 국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국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6. 규제혁신 적극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주무관 송기백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민의 불편·부담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며,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한 각종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과 성과

1) 법무 분야 각종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의 권리 보호·불편사항 개선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한 집합건물 관리 투명·효율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한 상가임차인 보호, 「전자문서법」 개정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한도 확대,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출입국사범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을 통해 납부편의 제공, '출입국 기록없음' 사실증명 발급 방법 개선을 통해 동일인 확인 방법의 용이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업무시스템 혁신으로 불필요한 규제 감축

화상공증 본인확인 시 본인인증수단에 여권을 추가하여 재외국민들의 화상공증 이용 편익에 기여, 거동 불편자에 대한 국적취득 신청 우편접수 허용, 형사사법지원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위한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추진,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도입으로 입국자 불편 해소와 국민의 생활안전 도모 등 각종 업무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생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추진,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가계부채 해소 지원을 위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청년층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추진, '리걸테크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TF 운영'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법령, 제도 등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혁신성장 新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 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불편·부담해소, 코로나19 대응 등 규제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7.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유재륜

가. 정부업무평가

국무조정실에서는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등 주요업무 분야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관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는 특정평가와 기관이 소관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부분으로 구분되며, 평가부문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그림 2-14 |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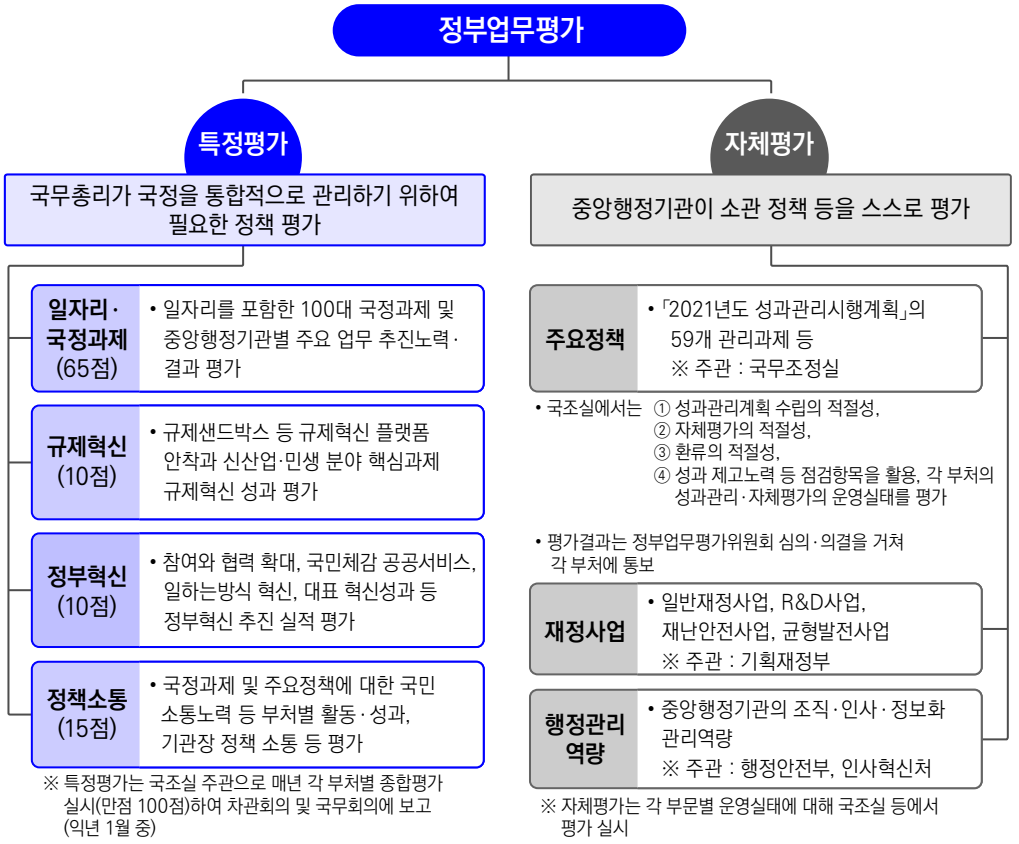

1) 특정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2021년도 평가부문 등을 확정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고, 이에 법무부에서는 평가방향, 부문별 평가방법 등을 검토한 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주관과제)

과제명	주요성과	보완사항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유지 철저 • 최○○ 추징금 63억 원 전액 추징 완료 •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제도 장치 강화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1.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지역토착형 비리, 금융비리 등 중대 부패 범죄에 상향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엄정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 1월)	•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익법인법」 개정 지연 ※ 개정안을 2021. 7월 국회 제출 하였으나 국회 논의 지연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8년 만에 인권위와 합의에 이르러 범정부 차원의 인권정책 추진 동력 확보 • 지속적 제도 개선으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실적 상승 및 심리적 지원 확대 ※ 목포 스마일센터 신규 개소(2021. 3월)	• 긴급통신제한조치 법원 사후영장 필수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지연 ※ 개정안을 2021. 3월 국회 제출 하였으나 국회 논의 지연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 및 관련 하위법령 시행(2021. 1월) • 수사권 조정 관련 「사법경찰직무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공포·시행(2021. 3월) • 검찰개혁 추진 - 검찰기능 남용 통제 방안 구축 ※ 「검찰 직접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 제·개정 (2021. 3월, 6월), 「인권보호수사규칙」 개정 (2021. 6월) -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을 위한 검찰 조직개편 (2021. 상반기) ※ 사법통제 및 수사협력 전담부서 신설 등 - 검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등 ※ 「검사징계법」 개정·시행(2021. 1월)	• 수사권 개혁 이후 국가 범죄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 검·경의 관계가 협력관계로 변화됨에 따라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간의 협력 중요
(주요정책과제) 62. 출소자 취업 지원 강화를 통한 따뜻한 사회 구현	•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양적·질적 취업지원 사업 확대 - 6,888명 참여, 취업률 81.7% • 취업지원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체계적인 취업지원사업 실시(2021. 8월)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9개 지부에 취업지원과 신설 • 출소자 취업처 확대를 위한 고용협력기업 발굴(1,154개) • 취업직종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17. ~ '21. 입교 1,770건, 수료 1,295건, 취업 611명)	• 취업지원사업 수혜인원 확대를 위한 예산 확충 •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법적 우대 조치 기반 확대를 통해 출소자 고용 장려 필요

나) 규제혁신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규제개혁과제 10건 중 10건 완료 • 법무·인권 및 출입국·외국인 정책 분야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 40여건 자체 발굴하여 개선 •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차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완화 • 전자여행허가제도 등 업무시스템 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여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 • 스타트업계에 대한 법률지원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여 추진	•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 과제 발굴 노력 필요 •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수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다) 정부혁신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국민의 참여와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 – 정부혁신 실행계획 : 다른 부처와 차별화되는 우리 부만의 혁신과제 발굴(공통자율과제 3개 분야 30개 과제, 계속추진 과제 2개 과제) – 국민체감도 :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농협' 협력기관 지정을 통한 농촌 사회봉사 개선,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시행	• 법무행정 전반에 걸친 국민 체감 정책 발굴 필요 • 기관 간·부서 간 협업 추진체계 강화 필요 •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 노력 필요

라) 정책소통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언론 및 현장 홍보) 기관장 언론 인터뷰 및 브리핑을 적극 실시하고 특히 현장 소통 중심의 홍보 강화 • (외신 홍보) 외신 대상 영문보도자료 배포 강화, 브리핑 시 외신 초청, 통일 법제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 등 외신 홍보 대폭 강화 • (민관 협업) 민간 영화사 협업 시사회 개최, 뉴질랜드 대사관 협업,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콘텐츠 다각화	•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인지도 조사 부족 –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음

2) 자체평가

가) 주요정책 평가

법무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종합 반영하여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5개 전략목표와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신뢰 회복' 등 12개의 성과목표 및 59개의 관리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였다.

수립된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계획수립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정책 효과성', '정책 소통의 충실성' 등 5개 평가항목과 1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각 관리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체평가결과 매우우수 3개(5%), 우수 10개(17%), 다소우수 8개(14%), 보통 17개(29%), 다소미흡 9개(15%), 미흡 9개(15%), 부진 3개(5%)로 나타났으며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및 '신속수사팀' 신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 CCTV 연계 지역 지속 확대, 전자감독시스템과 지자체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구축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긴급상황 대응력을 높였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벌금 전입비율 상향(6→8%)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을 전년도 대비 29% 대폭 확충하여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구성하였고,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 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나) 재정사업 자율 평가

재정사업 자율 평가는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과결과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 해당된다.

우리 부는 23개의 단위사업에 대해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상대평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4개(20%), 보통 15개(65%), 미흡 4개(15%)로 3단계 등급화 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실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대외에 공개하였고, 미흡사업은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성과관리 개선대책 및 지출구조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다) 행정관리역량 평가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는 조직, 인사, 정보화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직 분야에서는 내·외부 환경 분석 및 SWOT 분석 등을 통해 재배치 계획 등을 수립, 한정된 기구와 인력 범위 내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고, 내·외부전문가, T/F, 일반국민 참여심사 등을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인식개선 및 부처업무 이해도 제고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사 분야에서는 법무부 훈령 반영 등을 통해 필수보직기간을 엄격히 유지하였으나 교정시설 등 특수환경에 근무하는 공안직 업무 특성상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직위 지정 추진실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와 중복투자 예방 등을 통해 디지털정부 성과관리 수준을 제고하였고, '전자감독 제도 확대에 따른 위치추적시스템 고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유능한 디지털 정부 구현에 앞장섰으며,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및 사이버공격 모의훈련 등의 다양한 보안 강화 노력 이행으로 사이버 안전수준이 보다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이란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에 이르기까지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주요정책 부문(국무조정실 주관)과 행정관리역량 부문(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주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2021년 '주요정책' 부문에서 법무부는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법무부는 최근 5년 동안 '환류의 적절성' 등 일부 항목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통' 등급으로 평가받았으나, BSC 성과급 반영비율 상향, 주요정책 만족도 조사 방식 개선 등 적극적인 성과관리 실적을 인정받아 '15년 이후 6년 만에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행정관리역량 부문에서는 평가운영(자체평가 운영의 충실성, 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 우수사례의 탁월성) 항목은 '보통', 평가환류(환류의 적절성) 항목은 '우수'로 평가를 받았다.

나. BSC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

1) 개요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평가제도)는 조직의 임무, 비전, 전략·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를 고객, 정책, 행정개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개인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인사, 성과급 등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BSC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정책 수립, 실적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직 및 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BSC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추진내용

법무부(본부 및 소속기관) 주요 정책 업무 추진을 위해 372개의 BSC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총 909개 부서 및 2만 3천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및 개인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승진에 10%, 성과급에 20%~30%, 교육훈련에 10% 각각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국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그림 2-15 | 성과관리와 BSC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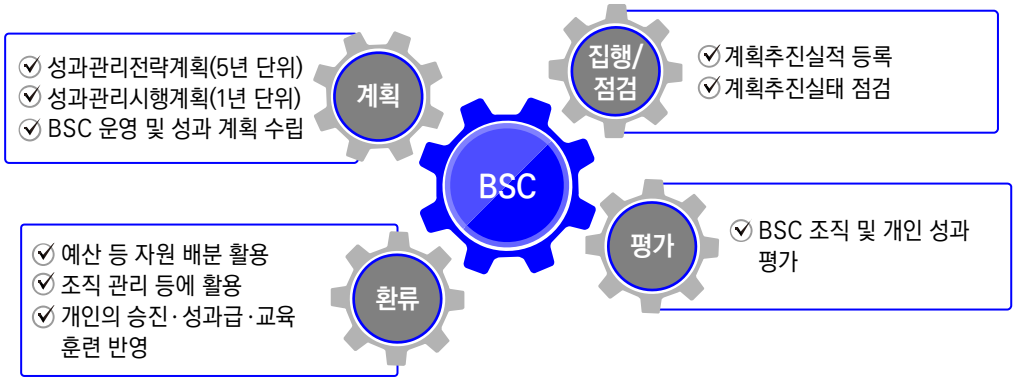

8.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이강채

가. 개 요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는 대통령이 회의·행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한 지시를 정리·분류·전달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함으로써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시와 의견이 정책과 업무추진 과정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시사항 시달 시 소관부서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지시사항별 추진계획 수립 및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기한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에 시달되어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 지시사항은 2021. 12월말 기준, 총 35건으로 법무부 주관 지시사항은 24건으로 20건을 이행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타부처 협조 지시사항 11건 중 7건은 이행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다.

나. 지시사항 현황

1) 법무부 주관 지시사항(24건)

연번	지시일자	지 시 사 항	이행상황
1	2017. 5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	종 료
2	2017. 7월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찰개혁	종 료
3	2017. 8월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관련	종 료
4	2017. 8월	국적취득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 지원(국적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종 료
5	2017. 8월	과거사 진상규명 및 사과	종 료
6	2017. 8월	근로감독관과 검찰 간 긴밀한 협력	종 료
7	2018. 1월	상가임대료 부담 경감 대책의 조속한 추진	종 료
8	2018. 2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	종 료
9	2018. 2월	검찰 관련 현안에 대한 엄정한 진상규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종 료
10	2018. 4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양형 기준 상향	종 료
11	2018. 4월	범죄수익 환수 방안 마련	종 료
12	2018. 10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종 료
13	2019. 5월	정부·공공기관 부과금 연체가산금 등의 법정이자율에 대한 형평성 검토	추 진 중
14	2019. 12월	형집행법 제71조제1항 신설로 인한 취사 등 작업 사용자 건강권 보호방안 마련	종 료
15	2020. 2월	ISDS 대응 진행 경과에 대한 설명	추 진 중
16	2020. 4월	ISD 전담팀 위상 및 처우개선	종 료
17	2020. 7월	ISDS 대응	종 료
18	2020. 10월	학대 아동 보호제도 개선	추 진 중
19	2021. 1월	동부구치소 재소자 이송 관련(청송 주민)	종 료
20	2021. 1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종 료
21	2021. 1월	교정시설 방역 관련 설명	종 료
22	2021. 1월	시설 집단감염 관련(신속검사)	종 료
23	2021. 4월	스토킹범죄처벌법 실효성 있는 시행 점검	종 료
24	2021. 10월	미성년자 빚 상속 관련	추 진 중

2) 타부처 협조 지시사항(11건)

연번	지시일자	지 시 사 항(주관부처)	이행상황
1	2017. 10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권익위,기재부,행안부)	추 진 중
2	2017. 10월	평창올림픽에 대한 전방위 홍보 (문체부)	종 료
3	2018. 3월	금융혁신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 (금융위,중기부)	추 진 중
4	2018. 3월	평창올림픽·패럴림픽 후속대책 마련 (국조실)	종 료
5	2018. 4월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의 반부패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금융위)	종 료
6	2018. 4월	장애인 대책 점검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복지부,고용부,문체부)	종 료
7	2018. 5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관한 명확한 통계 확인 및 홍보 (교육부)	종 료
8	2019. 4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유입 차단과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불법적 반입에 대한 처벌 강화 (농식품부)	종 료
9	2019. 12월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 브랜드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필요 (문체부)	추 진 중
10	2020. 12월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문체부)	종 료
11	2021. 9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부)	추 진 중

9.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

● 비상안전기획관실 사무관 이동주

1) 을지태극연습 실시

2021년 남북관계는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통신연락선의 두절, 철도기동·극초음속·SLBM 등 신형 전략무기들의 연이은 공개 등으로 교착상태가 지속되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대북정책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대미 협상에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 핵무기 시험을 통한 핵 능력 과시 및 군사 분계선 인근 지역 소규모 도발 등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국면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비상대비 훈련이 제한된 상황에서,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시 기본임무 수행을 위한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위주의 을지태극연습을 실시(2021.10.27. ~ 10.29.)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을지태극연습을 통해 전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조치하고, 비상대비시스템 및 위성통신망 등 국가지도통신망 점검 및 사용법을 숙달함으로써 중앙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결과를

획득하였다.

법무부는 을지태극연습을 통해 비상대비계획 체계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고,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 법무행정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국가 안보태세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 그림 2-16 | 2021년 비상대비 훈련



중앙통제단 메시지 토의



위성통신망 설치 훈련

2) 비상대비 계획 수립·실시

북한의 군사위협 등 안보환경의 변화와 업무수행간 도출된 법무·검찰·보호·인권·교정 및 출입국관리 전시 업무 계획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충무3600 법무부 집행계획」, 「충무6000 자체충무계획」 등 법무부 비상대비 계획을 개정하였고, 본부 및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함으로써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

3) 소속 국가중요시설 지도·감독 강화

법무부 소관 총 54개 국가중요시설의 관리를 위해 충무계획 시행태세 및 방호실태를 점검하여 대상 소속기관의 충무계획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호실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규 개청 기관을 통합방위본부와 협의하여 국가중요시설로 추가 지정하여 법무부 방호태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소속기관을 지역 내 인근 부대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굳건한 통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나. 재난 안전관리 효율성 강화

비상안전기획관실 사무관 이동주

1) 법무시설 위기관리 메뉴얼 체계 정립

적용 대상이 교정시설로 한정된 기존의 매뉴얼을 확대 개편하여, 소속기관 전체를 포함하는 「법무시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1.1.)을 제정하였다. 발생 가능한 7개 유형의 재난을 선정하고, 위기경보 단계별로 가동할 운영기구를 설치하는 등 체계성 있는 매뉴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하였다. 이후 표준매뉴얼을 기초로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실국별 특성을 반영한 「법무시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21.3.)을 수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부 224개 소속기관에서 「법무시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1.5.)을 마련하면서 향후 법무시설 재난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대국민 서비스 및 범부처 협력 업무 등 갑작스럽게 중단될 시 큰 불편이 초래되는 핵심 업무가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능연속성 계획'('21.12.)을 수립하여 핵심 기능의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소요 인력 및 자원 분석, 실효성있는 계획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는 등 재난 및 위기 상황에도 업무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전 법무시설로 대상이 확대된 「법무시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제정됨을 근거로 2021년도부터는 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순환훈련을 추진하였다. 교정시설에 편중된 훈련을 벗어나 2021년에는 안양소년원을 훈련의 장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진에 의한 안양소년원 시설붕괴 및 화재 발생과 이로 인한 소년원생 매몰 상황'을 설정하여 지자체,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통합상황조치능력을 배양하는 등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점검하였다. 2022년도는 출입국기관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여 외국인보호소 등 재난에 취약한 기관의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 그림 2-17 |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안양소년원 현장대응반 운영

3)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27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안전 관련 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과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C등급 이하 위험시설과 핵심시설 위주 159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합동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치료감호소·목포교도소 등 일부 기관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경사지붕과 같이 평소 인력으로 접근이 어려운 취약 장소까지 점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용동 지반침하 및 보 균열여부 점검, 구조체 균열 확인, 건축마감 확인, 옥상 방수 점검 이었으며 재난 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비하였다.

| 그림 2-18 | 법무부 안전대진단 추진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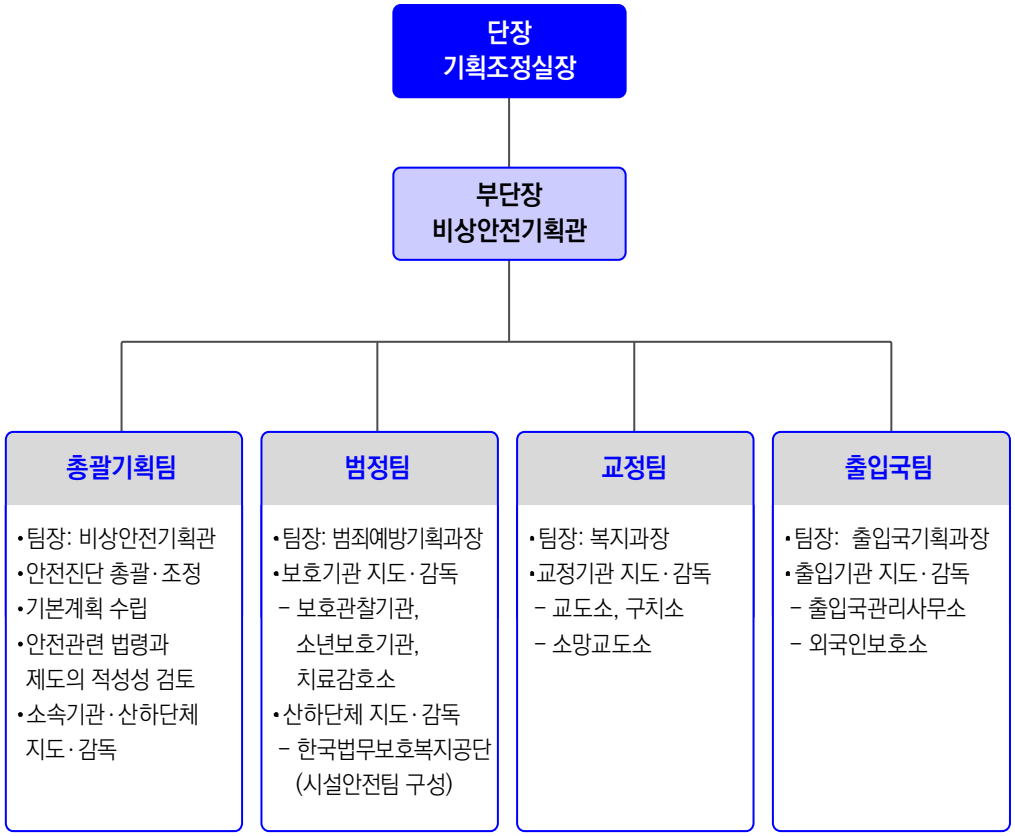

4) 일일재난안전결산 제도 운영

매월 시의적절한 점검 테마를 선정하여 전 소속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평시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일일재난안전결산 점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6월 중점점검 테마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물 및 장비 점검'을 선정하여 침수·누수 대비 시설 보강 및 산사태 및 붕괴 대비 점검을 실시하였고, 11월은 '폭설·한파 대비 시설물 및 장비 점검'을 선정하여, 동파대비 시설을 점검하고 제설장비를 구비하였다.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던 여름철 집중호우와 겨울철 대설로 인한 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지정된 테마 외에도 일반 시설물·장비점검 및 매뉴얼 점검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다. 코로나19 대응 체계 운영

비상안전기획관실 사무관 이동주

1) 소속기관 방역관리 체계 구축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에 취약한 수용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도 한 해 5회에 걸쳐 생활방역팀 회의를 개최하여 소속기관 방역 정책을 논의·수립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체 수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응매뉴얼을 제정(교정기관 54개, 소년보호기관 12개, 외국인보호시설 21개)하였으며, 마련된 매뉴얼을 기반으로 월 1회 확진자 발생 모의훈련을 실시함을 통해 수용시설 방역 태세를 강화하였다. 또한 기관별 방역위험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상황관리지표'를 관리·운영함으로써 매주 전체 소속기관의 방역수준을 모니터링하여 미흡기관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2) 코로나19 방역점검 지속 실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직원들의 방역긴장감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코로나19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2020년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을 계기로 실·국·본부의 자율에 따라 실시하였던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8주간 집중 점검 기간('21.1.18. ~ 3.14.)을 운영하여 코로나19 방역 취약요인 파악과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교정시설 107회, 보호관찰시설 59회, 외국인밀집지역 3,715회의 방역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현장 미흡사항을 계도하는 한편 방역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의 실효성을 갖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법무부 특별 방역 긴장감 제고 기간('21.4.1. ~ 4.9.)을 설정하여 크로샷 1,115회와 기관장 서한 134회 발송, 직장교육 645회 실시, 현장점검 429회 실시 등 소속기관장 주도의 방역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대응 매뉴얼의 현장적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수용시설은 월 1회 코로나19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이 매주 1회 모의훈련을 참관함으로써 각 기관이 코로나19 확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기반을 마련하였다.

12월은 범정부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3밀 환경으로 인해 감염확산 위험도가 높은 소관 수용시설을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였다. 교정시설과 출입국·외국인시설, 범죄예방시설 등 법무시설과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장관님을 방역책임관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되, 소관 실·국·본부장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하여 별도 점검을 병행하였다. 해당 기간 중 장·차관님 19회, 실·국·본부장 69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본부 과장급 또한 33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부는 총 8차례에 걸친 비상안전기획관실·운영지원과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마스크 착용과 소독, 환기 여부 등을 점검 및 계도하였고, 7월부터는 실·국·본부장이 소관 부서를 직접 점검하는 '실·국·본부장 방역책임제'를 실시하여 방역 관심도를 끌어올렸으며, 연간 세 차례('21.4.9., 7.9., 12.1.)에 걸쳐 장관님 명의의 서신을 전파하는 등 법무부 코로나19 방역 업무는 장·차관님과 실·국·본부의 지대한 관심 내에 이루어졌다.

| 그림 2-19 | 코로나19 방역점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방역점검



이태원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계도 활동

10. 법무정보화 추진 및 사이버 안전 강화

가.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법무행정으로의 변화 시작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김종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데이터 3법 개정 시행(2020.8.5.)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12.10.)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법무행정으로의 변화를 시작하였다.

법무·인권·범죄예방·교정·출입 등 실·국·본부 보유 법무데이터 분석·연계·활용을 통해 법무행정 효율화, 대민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과학적·객관적 정책결정을 뒷받침하고자 데이터 기반의 행정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법무행정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법무부 데이터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총괄 수행을 위해 정보화담당관실을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로 부서 명칭을 변경(2021.12.14.)하고, 데이터 업무 수행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였다. 둘째, 보유 빅데이터를 분석·처리·활용할 수 있는 「법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 예산을 확보하였고, '22년에는 업무 분야별 데이터 분석 서비스 발굴 및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셋째, 법무연수원에 '법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3회)하여 총 91명이 이수하는 등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 97.19점을 획득하여 '21년도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또한, 공공데이터 분야에서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법무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법률 사각지대 마을에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상담사례 웹툰 시리즈」,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현황」 데이터,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 교화프로그램 현황과 교육 이수 현황」, 법무분야의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정보」, 범죄예방분야의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현황」 등 총 19종을 개방하였다.

| 표 2-8 | 2021년도 법무부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개방 데이터 수	주요 개방 내용
19종	• (인권분야)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처리 현황 • (법무분야) 범죄피해자 지원 정보 및 대국민포털 민원정보 등 • (범죄예방 분야)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황 • (교정분야) 수용자 교육 이수 및 교화프로그램 현황 등 • (출입국분야) 제주 무사증 예멘 입국자 현황 • (비정형 데이터) 마을변호사 상담사례(웹툰)

3) 발전방향

2022년에도 데이터기반 법무행정 추진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전담팀 구성 및 전담인력 충원, 「법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ISP 수립, 빅데이터 분석·활용 교육 및 직원 역량진단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분야 및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국민이 원하고 이용가치가 높은 법무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하여 개방할 예정이다.

나. 국민 중심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강화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서종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 하는 국민 중심의 안정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친화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 신속·정확한 법무정책정보 제공, 국민들의 의견을 홈페이지 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등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무부는 대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법무정책 및 평가결과, 공공데이터, 통계, 보고서 등 활용도가 높은 정보의 개방을 확대하였으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무부와 소통하고 법무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법무정책제안, 법무·검찰개혁, 국민신문고 등의 분야로 확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국민소통' 게시판을 신설하였고, '변호인 접견예약', '본인인증 수단 확대', '치료감호 화상면회 예약' 등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온라인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더불어 장애인·노약자 등 정보 접근 소외계층이 불편함 없이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 및 실국본부 7개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갱신하였고, 이런 노력으로 '홈페이지 품질관리 수준' 평가에서 94점(중앙부처 평균 86점)을 획득하여 웹사이트 관리 우수 평가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 및 홈페이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인정받아 행정관리역량평가 '웹사이트 관리 우수성' 분야에서 만점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 그림 2-20 | 법무부 열린장관실 홈페이지 메인



| 그림 2-21 | 법무부 코로나19 국민소통 게시판



3) 발전방향

2022년도에도 국민 중심의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강화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및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치료감호소 대면·화상면회 예약시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등 온라인민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대국민 신뢰도 및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 고품질 법무지식 생산·활용으로 법무행정 역량 제고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서종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노하우·보고서·연구논문·수범사례 등 고품질의 법무지식[1] 등록·검증·활용을 통해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성과를 창출하는 등 법무 지식행정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법무지식 : 법무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개인 또는 부서의 경험, 노하우 등 유·무형의 실천적 정보

2) 추진내용과 성과

2021년 1월 지식행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법무부 지식행정의 정책방향을 신속·명료하게 제시하였으며, '지식등록 주간', '최초 등록 시 마일리지 점수 상향'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유지·발전시킴으로써 법무지식 등록건수가 전년대비 9.2%(5,678건 → 6,201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식검증 측면에서는 지식검증자로 지정된 실·국·본부 직원(81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독려 등을 통해 검증기간이 4일에서 3.3일로 단축되고, 기한(7일)을 초과하여 검증한 지식비율이 12.8%에서 8.3%로 감소하는 등 지식검증의 신속성이 2년 연속 향상되었다.

또한 분기별 우수지식인 및 연말 지식행정 우수직원 선정 시 양적 활동이 아닌 질적으로 수준 높은 지식활동을 전개한 직원을 선정·포상함으로써 고품질 지식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2021. 7. 12. ~ 10. 1. 개최한 '법무지식 컨테스트'(개인 7명, 단체 4팀, 상금 220만원)에서 입상자 가점, 응모 마일리지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및 전화·메일 독려 등을 통해 응모 건수가 전년 대비 28.5%(28건 → 36건) 증가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마지막으로 우수 학습동아리 5개(수강명령전문가 등)를 자체 선정하여 활동지원을 통해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비 지원' 경진대회에 1개 학습동아리(바른급식사랑방)가 입상하는 등 학습동아리를 통한 집단 지식 창출 노력을 전개하였다.

3) 발전방향

앞으로도 고품질 법무지식 등록·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 제고 및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실질적·실효적 지식행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식사회에 적합한 명품 법무지식 발굴 및 활용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라.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정보보호 역량 강화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김시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1년도는 해킹 그룹의 APT(Advanced Persistent Treat) 공격 일상화, 국가 핵심 인프라를 위협하는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사이버공격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법무부는 보호관찰, 교정행정, 외국인 관리, 출입국심사 등 치안 유지 및 국경관리를 위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어 정보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무행정 정보 유출 등의 보안 위협을 체계적으로 예방·차단하기 위해 법무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각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등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을 통하여 법무부 정보보호 역량을 지속 강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무사이버안전센터는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보안관제 등 주요 정보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24시간 365일 해킹·정보유출 등 위협에 대한 실시간 대응력을 강화하였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시스템(6개)의 사이버 보안강화, 대민서비스 홈페이지 위변조 및 개인정보 노출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해킹 공격과 정보 유출을 예방 및 차단하고 있다. 법무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22개)에서 운영하고 있는 44개 홈페이지 및 399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조치하는 등 보안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신규 구축 중요 시스템(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선제적 취약점 점검으로 개인정보 유출 예방 등 보안성을 높였다.

한편,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보안 의식 제고를 위하여 법무부 BSC 공통지표에 '정보보안 예방활동'을 반영하였고, 정보보호 법무연수원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총 22,955명이 수강하였다. 아울러 모든 직원에게 매월 1회 보안뉴스·동향 등 다양한 보안자료를 담은 보안 소식지를 제작하여 메일로 제공하였으며, 본부 및 소속기관 정보보안 담당자에게는 매일 1회 보안 관련 주요 뉴스·핫이슈 등의 보안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최신 보안 동향 전파 및 보안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3) 발전방향

법무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직 및 인력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강화' 사업을 통해 4명의 정보보호 전문가를 투입하여 침해사고 대응, 취약점 분석·조치, 정보보호 컨설팅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개선 등 보안 수준을 더욱 높여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마.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 추진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김시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사이버안전센터는 법무부 본부 및 205개 소속·산하기관 보안·통신장비로부터 로그를 수집·분석하고, 해킹·정보유출·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침해 시도에 실시간 대응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법무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도입된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이 노후화되어 기술지원 종료와 제품 단종으로 인한 보안취약점을 해소하고,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장비 교체를 추진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보안관제 통합분석시스템 및 자동화 S/W 도입으로 서버·보안장비 등 이기종 장비에서 수집한 대량의 로그를 분석하여 웹해킹·악성코드 등 다양한 침해 시도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자동 구성하는 등 자동화 프로세스에 의한 보안관제가 가능한 체계가 마련되어 증가하는 사이버 침해 시도 로그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용자 PC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법무연수원 등 165개 기관 인터넷PC(논리적 망분리)의 운영체제를 Windows 10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구축하였고, 위협관리 수집 센서, 보안관제 스토리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S/W,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상황모니터시스템, CCTV 및 출입통제시스템 등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반시설을 교체하여 보안관제 업무환경을 대폭 개선하였다.

3) 발전방향

보안관제 통합분석시스템 안정화 및 보안관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위협 탐지·분석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을 더욱 신속하게 탐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보안관제 등 차세대 보안 대응 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1.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공동활용정보 항목 확대 및 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사무관 윤정희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은 법무부·법원·검찰·경찰·해양경찰 등 5개 형사사법기관이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공통 표준의 전자 업무시스템(형사사법정보시스템,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KICS')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하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2021년에는 경찰과 국방부 간 신분 확인을 위한 연계, 법무부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및 보호관찰 이동통신사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등 기관 간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연계 확대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공통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형사사법 전자문서 서비스 개선 지속 추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 증설 사업, '경찰-이동통신사' 이중화 구성을 위한 연계용 보안소프트웨어 구매 등의 과제를 수행하여 최적화된 업무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법무부·법원·검찰·경찰·해양경찰 간 406종의 정보를 하루 210만 건 상당 처리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전자문서 누적 유통건수 약 7,274만 건, 사건정보 등 누적 유통건수 약 68억 4,500만 건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이용자의 증가 및 모바일 사용자의 증가에 따른 인터넷 접속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하여 로그인 방식에 대한 확대 적용, 보안성을 확보하면서 사용자 스스로 비밀번호 변경 시기를 알려주는 알림 기능 제공, 형사사법포털에 등록된 공동인증서의 갱신·변경 시 ID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는 등 모바일 기반 서비스 강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하는 데 힘썼다.

| 표 2-9 | 형사사법포털 운영 현황

구 분	'21 운영 현황	누적 건수('10. 7. ~ '21. 12.)
포털 접속	5,255만 건	3억 4,813만 건
모바일 앱 다운로드	74만 건	351만 건
사건진행 상황 조회	1,437만 건	9,021만 건
벌과금 조회	225만 건	2,008만 건
민원서비스	6만 건	59만 건

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및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 추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사무관 오은정

현재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KICS”)은 2010년 구축으로부터 11년이 경과된 노후 시스템으로, 눈부신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결과물들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갈수록 높아지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18년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해양경찰 4개 기관이 차세대 KICS 구축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 2018년 『차세대 KICS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19년 1월에 기획재정부에 차세대 KICS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같은 해 4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2020년 7월에 최종 통과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법무부는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차세대 KICS 구축 사업』 발주 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2021년 8월말 사업 발주, 2021년 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2024년까지 시스템 구축 후 2024년 하반기에 서비스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21년 10월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형사분야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법률을 마련하였고, 해당 법률안은 2024년 10월 시행 예정이다.

차세대 KICS는 3대 전략 14개 과제로 구성되며, 구축이 완성되어 새롭게 시행될 경우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신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스템 구축 후 10년간 총 3조 3천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기존의 종이기반 수사 및 소송자료 작성·유통을 탈피하여 전자화된 형태의 수사 및 소송자료를 작성·유통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추진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크게 증대되고 국민들에게 편리한 형사사법환경이 구축되어 인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22 | 사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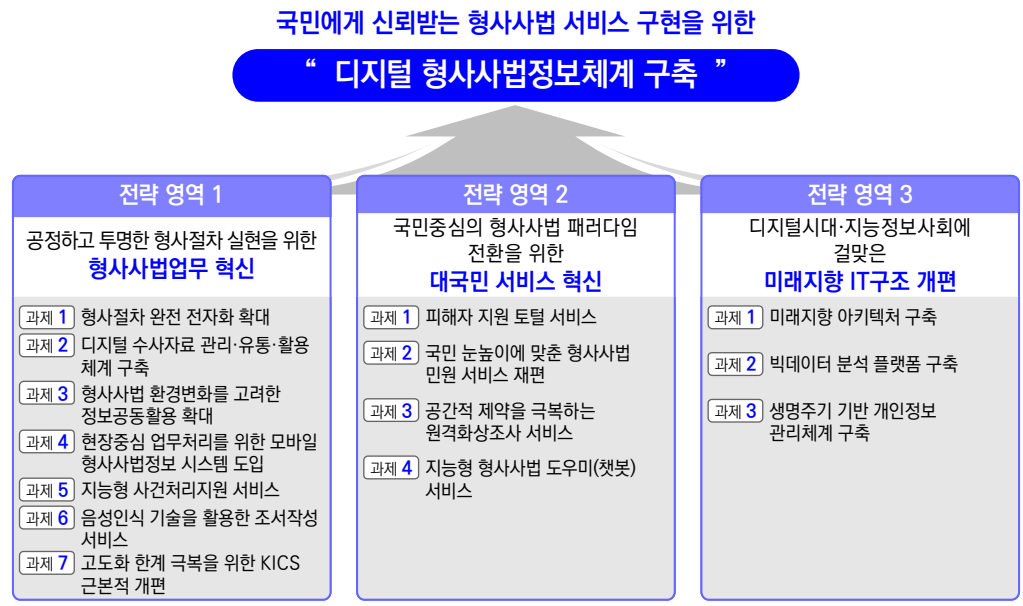

12.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주무관 이윤혜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9.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조직 신설 이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0년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19. 12월에 처음으로 수립·시행하였다. 2021년도는 ’20년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과 「법무부 양성평등 수준진단 및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은 교육 및 콘텐츠 홍보를 통한 의식 개선 분야,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및 법무시설 개선 등 정책·제도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분야 등 크게 3가지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의식 개선 분야

양성평등교육 실시 및 성인지 콘텐츠 제작·배포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양성평등교육은 집합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소속기관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의 3가지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집합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실시간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의 형태를 병행하였으며 총 11회, 31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법무연수원 연계교육'의 경우 승진자 및 신규자 과정 등에 양성평등 과목을 편성하여 9회, 346명을 교육하였다.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부분 소규모 교육으로 운영하였으며 73회, 2,31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이 외에 본부 간부 및 직원 89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세미나, 자녀와 소통하는 성교육 등 소규모 대면교육을 3회 실시하였다.

또한, 직원의 교육 접근권 보장을 위해 성인지 교육(1차시) 및 양성평등교육(3차시)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개발,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에 탑재하였다.

| 그림 2-23 | 양성평등교육



실시간 온라인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본부 양성평등세미나

한편,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양성평등의 날'에 성인지 카드뉴스 및 성인지 콘텐츠를 법무샘에 게시하고, 본부에 양성평등 실천을 독려하는 음성방송을 송출하였고 9월 첫째 주 양성평등 주간에 법무가족 양성평등정책·콘텐츠 공모전과 양성평등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여 구성원의 관심을 제고하였다.

또한, 일과 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임신·출산 및 돌봄 지원』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하였으며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재인증 심사에 통과하여 향후 3년간 가족친화 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21.12.1. ~ '24.11.30.).

2) 정책·제도 분야

법무부 내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 등에 대한 자문기구인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20. 4월 발족하고 총 8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21년 회의에서는 '법무부 양성평등 수준진단 및 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4. ~ 9.) 용역 제언 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및 '법무부 양성평등 인사관리 방안'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양성이 공존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성인지적 정책집행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규칙」(법무부훈령 제1390호)을 제정하여 양성평등업무의 추진력을 제고하였다.

| 그림 2-24 | 양성평등정책 및 제도 추진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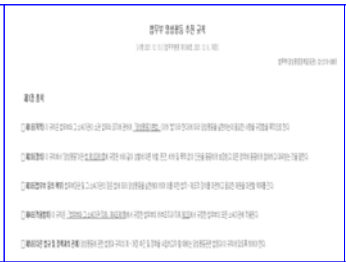

「법무부 양성평등추진규칙」 제정



양성평등 공모전 시행

한편, 직원들의 다양한 양성평등정책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법무샘 게시판을 운영하고, '정책 아이디어 및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직원 의견을 수렴, 우수 정책제안 및 작품 12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다.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분야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리플릿 발간, 피해자 중심의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개정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센터 홍보리플릿'을 전 소속기관에 발간·배포('21.1.)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방법과 처리절차,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 등을 안내하였고,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법무부 훈령)'을 개정·시행('21.6.)하여 2차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피해자 등이 요청한 보호조치 실시 등)을 추가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체계를 정비하였다.

아울러 폭력예방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직원 집합교육이 불가하여 소규모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개선과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 여성직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인식, 피해 혹은 목격경험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18년 이후 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였다.

| 그림 2-25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센터 홍보 리플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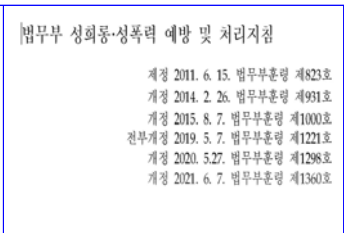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성희롱고충상담센터

다.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코로나-19로 폭넓은 교육이 제한되는 상황임에도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발, 맞춤형 소규모 대면교육(간부급, 직원)실시 등으로 구성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양성평등의 날 운영, 공모전 실시 등 다양한 형태로 양성평등 정책을 홍보하여 법무부 직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홍보하고, 그간의 업무추진 과정, 실태조사 등에서 도출된 개선점 등을 양성평등 정책 수립·추진 시 반영하여 양성평등 문화가 더욱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양성평등 추진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3. 법무연수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가. 교육훈련 개요

●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정영인

2021년, 법무연수원은 「인권과 법치에 투철한 법무·검찰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와 함께 '교육생들의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올바른 공직 가치관 확립'이라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근본적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검사, 검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총 772개 과정, 6,201회, 385,897명(집합교육 160개 과정, 251회, 10,005명 / 사이버교육 612개 과정, 5,950회, 375,89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교육인원 기준 전년 대비 38.2% 증가(집합교육 1,992명, 사이버교육 104,658명 증가)한 수치이다.

연간 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집합교육의 경우 연초 계획 대비 달성률이 약 85%로, 전년 달성률(약 63%)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은 지속되었으나, 대면 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대체하거나 실시간 화상교육과 병행하는 등 교육과정 특성과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방식을 채택하여 안정적으로 교육을 운영하였다.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경력단계에 따른 직무전문성·리더십 배양 교육과 사례·실습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경력단계에 상응하는 전문역량 함양을 도모하였으며, 수요자 중심 교육과 현장 대응 역량향상에 중점을 두어 학습 의욕 및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창의적·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다. 이와 함께 각 직렬 단계별 교육과정에 적극행정, 남북관계 발전, 반부패·청렴 교육 등을 편성하여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인권과 법치에 투철한 법무·검찰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였다. 단계별 교육과정 내 관련 교과목을 필수 편성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교정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직렬별 실무와 연계된 인권 교육으로 법 집행 전반에 걸쳐 인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복잡한 경제·민생사건 및 고질적·구조적 경제 비리 대응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년차 검사 대상 「경제범죄 심화」 과정을 신설하는 등 민생범죄 교육을 강화하였고, 신임 검사 대상으로는 사법연수원 판사 교수를 초빙하여 민사법 강의 등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사 및 검찰수사관 대상 단계별 교육과정에 개정 형사법령 관련 교과목을 필수 편성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하고 일선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검사 교육과정 개편

●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한민규

1) 변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응한 과목 신설 및 '경제범죄' 교육 확대

가) 추진배경

2021년 개정 형사법령 시행으로 인한 일선 검사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 관련 과목을 필수 편성하였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처음 진행한 '경제범죄 심화과정'의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사기죄 유형을 추가 편성하여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나) 상세내용

작년 하반기 신설된 '경제범죄 심화과정' 대상을 경력 4~6년차 검사에서 7년차 이상 검사도 수강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사기·횡령·범죄수익환수 등 사기죄 관련 과정을 추가하여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변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의 이해', '개정 형사법령의 이해' 를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및 경력검사 리더십 과정 등 단계별 교육과정에 필수 편성하여 공수처, 경찰, 검찰청법 등 각 관련 사항으로 나누어 교육을 및 토론을 실시하였고 변화된 검찰 업무 시스템과 개정법령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작년 하반기에 실시된 '경제범죄 심화과정' 교육생의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진행한 바, 교육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업무능력 향상 또는 자기계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평이 대다수였다. 추후 '경제범죄 심화과정' 진행에 있어 교육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민생범죄유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2) 신임검사 통합 교육 실시

●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주무관 심규식

가) 추진배경 및 경과

법무연수원은 사법연수원 교육 폐지를 대비하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으로 이원화된 교육과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법시험 출신 신임검사 교육과정을 종래 8주에서 5개월 교육과정으로 확대·개편하고, 변호사시험 출신 신임검사와의 통합교육('18. 최초 신설)을 실시하였다.

통합교육 시 예상되는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변호사시험 출신 검사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결정문 작성방법 등 사법연수원 과정을 3~4월 집중 교육하는 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조서 작성방법, 각종 영장 작성 등 수사·조사기법 교육, 일선 기록 연습 및 첨삭, 각종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한 실전 훈련 강화 등 통합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출신과 기수 등이 다양한 신임검사들이 함께 교육을 받아 상호 교류하고 연대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신임검사 통합교육은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신 신임검사 총 101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쿼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 중 사법시험 출신 및 변호사시험 경력 신임검사 8명은 2021년 9월 2쿼터까지 5개월 간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변호사시험 10회 및 변호사시험 7회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93명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쿼터 일선 청 실무수습까지 종료하였고, 이후 2022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쿼터 과정을 거쳐 수료하였다.

기존의 법리·판례 암기 및 결정문 작성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체험형 실습 교육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직무교육 분야에서는 사건 처리 기본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을 적극 발굴하여 사례 중심 기록실습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증대하였다.

사기 등 민생 범죄 사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강사로 섭외하여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등 민사법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회계지원팀의 교육지원을 받아 총 20시간의 회계원리 강의 등을 진행하였다.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에서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간병살인과 혐오표현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인권감수성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롤플레잉 조사실습」, 「공판 롤플레잉 실습」 등 체험형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사건 쟁점 파악능력 및 조사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롤플레잉 조사실습을 통해 신임검사가 피조사자 역할을 담당해 봄으로써 조사능력 제고뿐만 아니라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공감·소통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문학 강의 영역을 과학기술, 사회 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확대하고, 사회 저명인사 등 우수한 강사풀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인문학 토론 등의 소양교육, 멘토-멘티 방식으로 직무교육, 생활 상담 전반을 밀착 지도하는 1:1 튜터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무역량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갖춘 신임 검사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교육 실시

●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심규식

가) 추진배경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소속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개설 요청에 따라 법무교육과에서는 공수처 검사교육을 진행하였다.

나) 상세내용

5.31. ~ 6.25. 4주간의 기간동안 공수처 검사 6명을 대상으로, 결정·조사·공판실무 등의 '신임검사 교육' 교과목을 기준으로 금융·입법·교육·공직 비리에 대한 특별수사 직무과목을

일부 추가하여 교과목을 편성하였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변화된 형사사법시스템의 이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수처 신임검사들은 실제 사건기록을 실습, 조사 롤플레잉 및 영상녹화조사 실습을 통해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의 조사기법을 습득하였으며, 공소장·불기소장 작성법 등 유형별 사건 결정실무를 비롯하여 공소장 변경, 국민참여재판 실무 등 공판 절차상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또한 대검 과학수사부 및 반부패·강력부의 교육지원을 받아 디지털 증거·음성·통신·영상분석·문서감정 등 과학수사기법 강의와 기업회계 범죄수사를 위한 자금추적기법, 자산·부채·재무제표 등과 관련된 회계원리 기본 강의를 수강하여 과학·경제 범죄 수사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고 실무대응 능력을 함양하였다.

다) 향후계획

이번 신규자 교육은 각종 조사기법 실습뿐만 아니라 과학수사 및 경제범죄수사 이론습득을 통해 공수처 신임검사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도 연수원은 공직사회 특혜·비리 근절 및 국가 투명성·신뢰성 제고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공수처의 교육 요청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 법무·검찰공무원 교육과정 개편 및 제도개선

1) 국정철학 및 주요시책 교육 내실화

●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주무관 정영인

가) 추진배경

국정철학 및 주요시책 교육을 통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 및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도모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뢰받는 공직자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 내용

각 직렬 단계별 교육과정에 다양한 국정철학 및 주요시책 교육을 편성하여 교육하였다. 특히,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은 단계별 교육과정이 아닌 타겟형 교육과정에도 일부 편성하여 교육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2021년 총 72개 과정(135회)에서 법무·검찰 공무원 6,18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국민 의식이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수사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 교육을 강화하였고, 정신질환자·성소수자 등 수용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정 인권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례 중심

인권강화 방안 등 사례 중심 인권교육을 추진하여 법무·검찰 공무원의 실질적인 인권 의식 제고를 도모하였다. 추가로 '인신매매 수사 실무' 등 인신매매 관련 교과목을 확대하여 인권 침해적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발전 및 통일정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무·검찰 공무원 315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통일법무 역량강화를 위해 검사 및 검찰수사관 대상 교육과정에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제와 정책' 등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여 교육하였다.

수사권 조정 등 변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응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 1,377명을 대상으로 17개 과정(39회)에 개정된 형사법령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하였다. 또한 업무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교육 교재를 전면 개편하고 개정 형사법령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실무교육을 강화하였다. 검사 대상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교육을 참여·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하여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새로운 업무시스템의 운영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 밖에 반부패·청렴 교육,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포함한 갑질 예방 교육으로 갑질 근절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전환 추진에 부응하여 빅데이터 교육과정을 신설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직무역량과 공직 가치를 배양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2년에도 각 직렬 단계별 교육과정에 각종 국정철학 및 주요시책 교육 운영을 포함하고, 직렬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교과목을 편성하여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2)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주무관 김해경

가) 추진배경

2021. 1. 1. 개정·시행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2021. 10. 12. 설치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등 급변하는 형사사법제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실무교육을 강화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맞춰 검찰은 형사·공판부 강화, 직접수사부서 축소, 그에 따른 대검찰청 지휘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법무연수원에서도 관련 과목을 신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먼저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였다. 「검찰직 신규자」 및 「검찰 4급 승진자」 과정 등 단계별 교육과정에 '인권보호 수사규칙',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헌법 가치와 인권수사' 등을 편성하여 인권친화적 수사절차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검찰 6급 승진후보자 수사역량향상」 과정에 '개정 형사절차의 이해', '양형 개관', '양형조사 실무' 과목을 신규 편성하였고, 「8급 수사관 역량 강화」 과정에 '공판절차 개관, '개정 형사절차의 이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와 검찰 수사관의 역할' 과목을 편성하여 교육하는 등 검찰직 대상 25회 과정에서 928명의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편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관련 사이버교육 콘텐츠도 대거 정비하였다. 「영장실무 개요 및 심화」, 「압수 실무」, 「영치 실무」, 「수사 실무」 등 7개 과정의 콘텐츠를 신규 제작 완료하였으며 2022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2) 법무부는 연이어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자 등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을 위해 2021. 10. 12. 전국 권역별 13개의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설치하였고, 이에 법무연수원은 수사팀 실무자의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해 전담자 76명을 대상으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실무」 과정을 새롭게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과정에서는 전자감독 관련 현안 및 주요 추진정책을 공유하고 소재 추적 및 증거수집 수사기법, 체포·구속영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기법, 위반 사례별 처리 절차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또한 보호직 사이버 교육에도 전자감독 특사경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실무」 과정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2022년 초에 게시할 예정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급변하는 법무검찰 관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절차 및 전자감독 업무 수행 필수 과목 등을 시의적절하게 교육함으로써 제도 변화로 인한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법무 행정 구현에 기여하였다.

2022년도에는 기 편성된 개정 형사법령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제도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회·제도 변화를 주시하여 수요 발생 시 적극 교육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3)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실무교육 실시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 교사 이호섭

가) 추진배경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방안 일환으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설치하였다.

※ 신속수사팀 : 준수사항 위반 대응, 조사, 체포, 신문, 송치 등 전자감독 관련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팀 (지도감독 업무에서 분리)

나) 상세내용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76명을 대상으로 10. 5. ~ 10. 6, 10. 7. ~ 10. 8. 두 번에 걸쳐 9개의 소양·직무과목을 교육하였다.

| 표 2-10 | 신속수사팀 직무 직목

소양과목	신속수사팀 직무 과목	
• 특사경 자세·윤리	• 전자감독 주요 정책 • 소재추적 및 증거수집 • 위반사례별 모의실습 • 피의자 신문조서 • 체포구속 영장 작성	• 전자감독 현안 •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작성 • 특사경 관련 형사소송법 주요 쟁점 및 판례 분석

다) 향후계획

2022년부터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실무 교육과정을 연 2회 운영하고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추가 제작하여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에 게시할 예정이다.

4) 신규 교정직 대상 「인권 감수성」 교과목 신설 등 수용자 인권 교육 활성화

●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 교감 최혜정

가) 추진배경

수용자 인권을 중시하는 교정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신규 교정직 공무원들의 수용자에 대한 인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실습형 수업으로 구성된 인권감수성 교육을 도입, 신규 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항상 수용자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추진내용

인권감수성 교과목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교안을 개발하여 2021년 신규 교정직 9급 과정부터

편성, 신규 교정직 9급 5회, 신규 교정직 7급 1회 등 총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총 1,193명의 교육생에게 「인권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정시설을 재현해 놓은 교정훈련센터의 모의수용동에서 교육생들이 수용자 또는 교도관의 역할을 직접 연기하도록 하는 역할연기법(role-playing) 수업 방식을 도입하여, 입소부터 출소까지 수용 절차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수용자 인권에 대한 이해도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감수성 과정의 교육 취지 및 수용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양질의 수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수용 절차와 유사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육생들에게 인권 중심적 교정행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역할변경을 통한 수용 절차를 직접 체험하는 실습형 교육을 통하여, 일선 교정기관에서 수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적 어려움 및 갈등 상황에 대한 예측이 수월하게 되었고 수용자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 및 공감대 형성으로 수용자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나은 인권 친화적 교정행정 달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신규 교정직 과정의 인권감수성 교과목 시간 확대 및 재직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 실습 교과목 편성 등으로 인권 전문 과정을 더욱 적극 강화하여 현장의 인권중심적 실무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5) 「교정역량평가팀」 설치 및 운영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 교사 김우겸

가) 추진배경

승진시험제도 하에서 나타났던 승진 경쟁 과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 직급 시험승진제도가 폐지되고 심사승진제도가 도입된 바, 승진심사 평가구성을 역량평가·교정실무평가로 함에 따라 역량평가의 연간 실시계획 수립·진행 및 교정실무 평가 교재의 현행화를 위해 연수원 교정연수과 내에 교정역량평가팀을 신설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5급 승진심사 시 자격요건인 교정역량평가(P/F) 제도를 용역업체에 역량평가 교육·운영을 위탁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확보하였으며, 위탁업체와의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2021. 2. 1. ~ 2. 3. 2020년도 교정공무원 5급 승진시험 합격자 중 35명을 대상으로 모의 역량평가 시범 운영 후 평가내용을 근거로 교정공무원의 역할 사례 수집 및 과제 유형(상황형

또는 중립형)을 선정하고, 평가기법 선정 및 핵심역량 매칭 실시, 모의 과제를 개발하였다. 이후 역량평가팀을 운영하여 총 5회(상반기3회, 하반기 2회)에 걸쳐 총 288명의 평가를 진행하여, 228명이 통과(약 80%)했으며, 개인별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교정실무 교재의 개정을 위해 2021. 3. 추록본 및 정오표 발행을 시작으로 보안실무 등 13개 과정 17명의 집필진을 구성하고, 교정관계 법령·훈령·예규·판례 등 자료를 수집하여 집필하고, 검토 후 교정교수와 교정본부의 검수를 거쳐 교정실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다) 향후계획

5급 승진 역량평가 문제점을 보완하고 당해년도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10회(1회 24명)에 걸쳐 과장 후보자 역량평가 통합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이정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 추진을 위해 법무연수원은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과 연구과제 심의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 표 2-11 | 2021년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고
위 원 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윤대진	
위 원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김도형	
위 원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백수진	
위 원	법무연수원	검사교수	김지영	
위 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효원	
위 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우	
위 원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형관	
위 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노공	

2) 평가 및 향후계획

법무연수원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1년 『선진 각국 범죄통계정책, 운용실태 및 활용방안』등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주제 4건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2021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은 강의자료와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연수원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과 연구과제 심의기능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법무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표 2-12 | 2021년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구분	용역 과제명	책임연구원
1	선진 각국의 범죄통계 정책, 운용실태 및 활용방안	아주대 이진국 교수
2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충남대 도중진 교수
3	신임검사 교육 관련 교재 개발 [과학수사 표준교개 개발]	성균관대 임시근 교수
4	신임검사 교육 관련 교재 개발 [인권교육 표준교개 개발]	아주대 이진국 교수

마. 지역사회 및 아프간 특별기여자 대외교류 추진

1) 법무연수원 체육시설 지역사회 개방 운영

● 법무연수원 총무과 주무관 안효준

가) 추진배경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의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검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 운영 중이다.

나) 상세내용

2021년을 시작으로 충북혁신도시 및 진천군 지역주민과 진천군 소재 단체, 직장, 학교 등에 소속된 사람에게 대운동장(축구장), 테니스장 2면, 풋살장 2면, 야구장, 부대시설(주차장)을 주말·공휴일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개방하고 있다. 진천군체육시설 유지·관리업무 지원협의에 따라 사용료는 100% 감면 중이며, 이후 코로나19 관리·정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보다 많은 개방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림 2-26 | 법무연수원 체육시설 지역사회 개방



〈다목적 구장〉



〈테니스 코트〉

2)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청소년 태권도 교실 운영

●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 주무관 박정수

가) 추진배경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을 피해 '21. 8. 26. 한국에 들어온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과 자립을 위하여 '21. 8. 27. ~ 10. 27. 2개월 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임시 수용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법무연수원은 미성년 자녀의 심신안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태권도 교실을 시범 운영하였다.

나) 상세내용

'21. 9. 14, 9. 16. ~ 17. 3일 동안 진천 소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 생활 중인 특별기여자 미성년 자녀 100여명을 대상으로 태권도 품새 시연 및 기본 동작 지도 등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러운 한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 '21. 9. 27.부터 시행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초기 사회 정착교육프로그램에 태권도 교육이 정규 편성되었다.

| 그림 2-27 | 태권도 교실 운영



〈태권도 품새 시연〉



〈태권도 기본 동작 지도〉

바. 법무한류 확산 및 국제협력 강화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신유나

1) 추진배경

법무연수원은 1997년부터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형사사법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외교·경제 협력 공간 확대'라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국가 대상 국제연수과정을 확대하여 왔고, 해당 국가의 비상임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법무행정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2)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촉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운영하여 위촉대상국을 확대하고, 전담 교수를 지명하여 대검찰청 및 법무부 연수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선진 법·제도들이 자국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위촉 비상임 연구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2-13 | 2021년 비상임 연구위원 위촉내역

	비상임 연구위원	국가	위촉기간
14대	아이마토프 엘베크(Aymatov Elbek)	우즈베키스탄	'20.11.09 ~ '21.02.08
15대	응웬 둑 하잉(Nguyen Duc Hanh)	베트남	'20.11.23 ~ '21.02.22
16대	에르데네투야 울람바야르(Erdenettuya Ulanayar)	몽골	'21.08.02 ~ '21.11.01
17대	프린세스 록산느 수코르(Princess Roxanne L.Sucor)	필리핀	'21.08.02 ~ '21.11.01
18대	땅 억 김 미(Tang Ngoc Kim My)	베트남	'21.11.01 ~ '22.02.07

위촉된 비상임 연구위원들은 신임검사를 대상으로 자국의 사법제도를 강의하는 한편, 법무부 국제형사과, 전자감독과,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이하 'NDFC'라 한다) 및 수원지검 검사실, 디지털포렌식팀 등을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의 선진 법·제도들을 경험하고 연구하였다.

2021년 법무연수원은 '필리핀 출입국관리 시스템 운영('19 ~ '21)', '케냐 NCRC 보안시스템 체계 구축 및 범죄수사 역량강화 사업('21 ~ '23)', '라오스 ASEAN 출입국관리 행정역량강화('20 ~ '22)' 등의 국제연수과정을 진행하여 65명의 국제연수생을 배출하고, 이들에게 국내 법무행정제도를 바탕으로한 자국의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황철규 연구위원이 국제검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의 회장 자격으로 2021년 3월 제14차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총회, 7월 유럽 검찰총장회의, 9월 CIS(독립국가연합) 검찰총장회의, 10월 IAP 제52차 집행위원회 및 제26차 전체회의, 제1차 터키어권 검찰총장협의체 회의, 12월 제27차 세계 법률가 대회, 제9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등에 참석하여, 국제검사협회 및 한국과 각 국 검찰 간 상호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3) 향후 계획

법무연수원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정부의 신북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과 법무·검찰 교육 관련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 교육 몰입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정영인

1) 추진배경

법무연수원은 교육 만족도 제고와 교육생들의 힐링 및 재충전을 위해 매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진천본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이루어진 넓은 교육환경을 교육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였다. 또한, 용인분원은 1988년 준공되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누수, 배관 부식 등의 문제가 있어 시설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2)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법무연수원 시설관리위원회를 2021년 8~9월 총 2회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항을 발굴한 후 진천본원 함박천 주변 친수공간을 정비하고 옥외운동기구 설치, 둘레길 소나무 숲길 조성, 공작체험장·야생화단지 조성, 자작나무숲 조성, 국궁장 주변 산책로 가로등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불충분한 난방, 실내습도 저하 등 교육생 불편 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진천본원 생활관의 천장형 온풍난방 시스템을 바닥난방 시스템으로 교체하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생활관 6개동(537실)에 바닥난방 설치 예정이며, 2021년에는 설계용역 및 검사 완료 후 생활관 2개동(131실)에 대해 1차 공사를 진행하였다. 향후 완공 시 겨울철 교육생 건강 증진과 교육시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천본원 본관 전면 화단부에 회양목 식재 방식으로 우리 원 교육이념이 담긴 '정의'와 '인권'을 새겨 법무연수원 상징 공간을 조성하였다.

| 그림 2-28 | 진천본원 교육환경 개선



〈공작체험장〉



〈야생화 단지〉

용인분원은 황철규 연구위원의 국제검사협회(IAP) 회장 취임에 따라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 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에 걸쳐 소강당, 생활관 등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센터 설치를 통해 노후화된 용인분원 시설을 지속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2021년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2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미관 개선 및 교육생 이용 편의를 위하여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정문 진입로 보·차도 토목 공사, 생활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실내체육관 옥상 방수 공사를 시행하였다. 특히, 생활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는 교육생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장애인 교육생 및 직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29 | 용인분원 교육환경 개선



〈정문 진입로 보·차도〉



〈장애인 엘리베이터 전경〉

3)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교육생들이 학습에 매진하면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법무연수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진천 본원은 2023년까지 생활관 6개동(537실)에 바닥난방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용인분원은 2022년까지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 설치를 완공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법무연수원은 교육생들에게 직무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생들의 만족도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검찰 공무원을 양성해 나갈 것이다.

제2절 정책홍보업무

1. 기관장 소통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가. 방송 출연 및 인터뷰(14회)

법무부장관은 법무 정책 홍보를 위해 CBS〈김현정의 뉴스쇼〉(2.4.), KBC광주방송(3.3.), TBS〈김어준의 뉴스공장〉(3.11.), 제주MBC(4.2.), 연합뉴스TV〈뉴스1번지〉(4.30.), JTBC〈뉴스룸〉(5.6.), YTN〈뉴스가있는저녁〉(7.12.), YTN〈이브닝뉴스〉(11.6.), KBS〈일요진단〉(12.26.) 등에 출연하였고, 한겨레신문(1.4.), 경향신문(1.21.), 매일경제신문(7.13.), 로이터통신(8.11.), 법률신문(11.4.) 등과의 지면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검찰개혁 성과 △스타트업 창업 지원 △전자여행제도 시행 등 법무부의 핵심적 정책들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유의미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 그림 2-30 | 법무부장관 방송출연 및 인터뷰



KBS 〈일요진단〉



JTBC 〈뉴스룸〉



YTN 〈뉴스가있는저녁〉



CBS 〈김현정의 뉴스쇼〉



매일경제신문



법률신문

나. 언론 브리핑(5회)

기관장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요 현안 및 법무 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였다. 장관이 직접 △합동감찰 결과 발표(7.14.) △광복절 가석방 발표(8.9.) △ 아프간특별기여자 입국 브리핑(8.26.) △전자발찌 훼손 탈주사건 관련 브리핑(9.3.) △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12.24.) 등 총 5회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차관 역시 △ 아프간특별기여자 진천 임시생활시설 입소 관련 브리핑(8.27.) △아프간특별기여자 임시생활시설 변경 관련 브리핑(10.27.) △ 미성년자 채무상속 법률지원 추진 관련 합동브리핑(12.1.)으로 이슈에 적극 대처하였다.

| 그림 2-31 | 법무부장관 언론브리핑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7.14.)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8.9.)



아프간특별기여자 입국 브리핑(8.26.)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12.24.)

다. 기자 간담회 및 장관 출근길 인터뷰를 통한 대국민 소통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 '법조출입기자 간담회'(6회)를 진행하고, 지역 현장방문을 계기로 대전 및 춘천지역 기자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법무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성과를 설명하였다.

이에 더하여 평상시에 출근 시 청사 현관에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정 1개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방식의 인터뷰 이외에 이처럼 불특정 다수 언론을 대상으로 장관의 출근길 간이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민과 언론에 다가가는 소통을 구현하였다.

| 그림 2-32 | 법조기자 간담회



법조기자 간담회(12.29.)

| 그림 2-33 | 출근길 인터뷰



출근길 인터뷰(8.10.)



출근길 인터뷰(12.13.)

라. 언론 기고

주요 법무정책 홍보를 위해 법무부장관 명의의 언론 기고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사공일가 TF를 만든 이유”(동아일보, 7.5.)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경향신문, 8.2.) 등 기고문을 통해 법무정책의 내용와 의의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그림 2-34 | 법무부장관 언론 기고



'사공일가' TF를 만든 이유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 기고

최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무브 투 헤븐'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유품정리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이고 안타까운 장면은 '고독사'에 대한 것이다.

지난달 동아일보의 '고별: 아무도 울지 않은 코로나 고독사' 시리즈가 세간의 화제가 된 것도 미증유의 감염 재난이 1인 가구의 고독사 발생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심층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큰 공감을 얻는 이유는 그만큼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었고, 홀로 맞이하는 죽음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900만 명을 넘어선 1인 가구의 현실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흔히 1인 가구는 대부분 청년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 몇 년간 이혼이나 사별, 기러기 부부생활 등으로 중장년층 이상의 1인 가구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법무부 장관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지시한 일들 중 하나가 법무심의관실 주도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를 발족한 것이었다.

먼저 '유류분' 축소를 핵심 안건으로 삼았다. 유류분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후 강제로 분배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1인 가구로 사는 사람에게는 기존 가족이 아닌 새로운 유대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철저히 혈연에 근거한 재산분배보다 망자의 의사를 더욱 존중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제도'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자녀 등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이 있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과거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인연을 끊다시피 했던 가족이 다시 나타나서 재산을 상속받는 일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제는 새로운 가족 형태의 등장과 함께 오로지 혈연이라는 이유로 사후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행위는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게 됐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것도 TF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반려동물은 이미 가족이고, 1인 가구에게는 함께 사는 유일한 가족이기도 하다. 여태껏 민법에서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 전체를 '일반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해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부부여야만 가능한 친양자(親養者) 입양을 1인 가구도 충분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단순히 정책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법제도적으로 근본적인 틀을 개선해나가고자 한다.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TF 내 민간위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인 개선을 검토해갈 예정이다.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존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겠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동아일보(7.5.)



기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영화 <재심>의 한 장면. 희미한 불빛 아래 한 형사가 불러주는 진술을 다른 형사가 받아 적고 있다. 소년은 맞으면서 거짓 진술을 강요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인권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 15세 소년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오토바이 배달을 하며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 그는 택시기사가 살해된 거리를 지나던 목격자일 뿐이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

영화의 배경이 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관련, 누명을 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형사들은 잠을 재우지 않고 발바닥을 경찰봉으로 때리는 등 영화보다 더 가혹하게 대했다. 피해자는 강압수사를 못 이겨 허위자백을 하고 10년의 옥살이를 했다. 다행히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으로 누명을 벗었다.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연간 1000건이 넘는 재심사건 중 10% 내외의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는다. 2016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중 대다수가 허위자백에 의한 경우라고 한다. 2000년대가 되어서도 자백 위주인 예전의 수사 관행이 여전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도왔다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 피의자 신문 절차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하다고 한다. 반면 재판 단계에서는 그 비율이 약 54%에 이르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재판 단계와 달리 수사 단계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OECD에 속한 35개 국가 중 29개 나라가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했다.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제공은 이미 국제 기준이 되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등 수많은 재심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자들이 소아마비, 지적장애, 미성년자,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약자들은 수사 초기에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된 수사는 재판에서 뒤집기가 매우 힘들다.

1999년 '삼례 나라슈퍼사건' 1심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했다. 비록 주심은 아니었지만 나에게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걸 알게 된 직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을 국회에서 만나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아프다.

사회적 약자들이 수사 단계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줄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자 등 사회적 약자들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달 13일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변론을 받고, 수사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인권침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향신문(8.2.)

2. 언론 소통

●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가. 국민-법무부-언론 간 소통의 공간「의정관」브리핑

법무부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 내에 설치한 법무부 대변인실의 분실 '의정관'에서 법무부 간부 브리핑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의정관에서는 각 실·국·본부·과장이 2021년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하여 법조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총 24회의 브리핑 및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대변인, 2.26.)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법무실장, 3.9.)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 합동 결과 발표(인권국장, 3.11.)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검찰국장, 8.18.)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탈주사건 관련 대책(범죄예방정책국장, 8.30.) △가족관계 등록법, 민법 및 가사소송법 법령 개정 관련(법무심의관, 11.9.)등이 있다.

| 그림 2-35 | 의정관 브리핑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
(법무실장, 3.9.)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검찰국장, 8.18.)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탈주사건 관련 대책」
(범죄예방정책국장, 8.30.)



「가족관계 등록법, 민법 및 가사소송법 법령 개정」
(법무심의관, 11.9.)

나.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배포

법무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실질적인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언론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법무 정책에 대한 언론의 취재 요청 940건에 응대하였고, 보도자료 408건을 배포하여 법무 정책 및 장·차관 참여 행사, 실·국·본부의 다양한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언론의 왜곡 보도·비판 보도에 대해 93건의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법무부 입장을 신속하고 상세하게 전달하였다.

다. 오보 대응

법무부는 대변인실 및 각 실·국·본부별 모니터링을 통해 오보 및 과장·왜곡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사실관계 오류에 대해서는 언론사와 협의하여 즉시 수정 조치하는 등 잘못된 보도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오보대응의 대표적인 사례로, 모 언론사에서 온라인 속보로 보도한 “마트에 조두순떴다” 기사에 대하여 신속하게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문자공지를 하였으며, 해당 언론은 홈페이지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시하여 마무리되었다. 다수 언론들이 이를 바로잡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또한 보도설명자료를 한 컷 이미지로 제작하여 SNS에 게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라. 오보 대응 SNS 콘텐츠 제작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함과 동시에 온라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기 위하여, SNS 한 컷 이미지를 법무부 공식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게시하였고,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좋은 호응을 얻었다.

| 그림 2-36 | 오보대응 카드뉴스(사실은 이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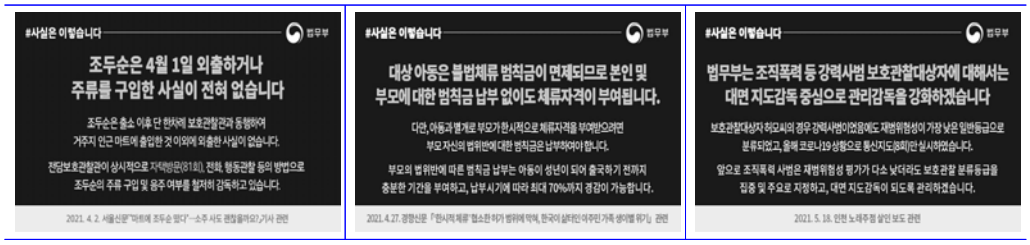

3. 홍보 기획

●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최성우

가. 전략적·체계적 홍보기획 강화

전략적 홍보기획 강화를 위해 부대변인 주재의 '홍보기획 협의회'를 신설하여, 주요 정책 담당자들과의 추진 정책에 대한 홍보 방안과 전략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대변인실과 실·국·본부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대변인실 내부에 홍보기획팀장 주재 '주간 홍보기획회의'를 신설하고 매주 개최하여 법무부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나. 대·내외 홍보협의체 운영 및 대응

법무부는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매주 차관 주재의 '정책홍보전략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꾸준하게 실시하였다. 협의회는 차관을 비롯하여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정책기획단장, 장관정책보좌관, 실·국·본부장(6인)으로 구성되며, 2021년에는 총 41회를 개최하여 법무부 전반의 정책 홍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통해 △스타트업 △아동학대 예방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스토킹처벌법 시행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 정책 등 주요 법무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대외 홍보협의체인 정책홍보전략회의, 대변인협의회, 온라인대변인협의회, 외신대변인협의회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및 법무부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한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입체적 홍보를 진행하였다.

| 표 2-14 | 대내·외 홍보협의체

구분	홍보협의체	참석 대상	주재
외부	정책홍보전략회의	각 부처 차관	국무조정실장
	대변인협의회	각 부처 대변인	문체부 2차관
	온라인대변인협의회	각 부처 온라인대변인, BH디지털소통센터장(행정관)	문체부 차관보
	외신대변인협의회	각 부처 외신대변인, BH해외언론비서관(행정관)	해외문화홍보원장
내부	정책홍보전략 실무협의회	실국본부장, 대변인, 정기단장, 정책보좌관 등	차관
	홍보기획협의회	홍보기획팀장, 실국본부 홍보담당자 및 정책담당자 등	부대변인
	홍보기획회의	홍보기획 관련 사무관, 주무관 등	홍보기획팀장

다. 외신소통 활동 강화

2021년에는 국내 상주 외신과의 소통 활동을 강화하여 해외에서 관심있는 법무부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장관 브리핑 3회 및 인터뷰 2회 등을 실시하고, 아프간 특별기여자 관련 외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개최하는 등 주요 브리핑에 외신기자를 초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출입국·외국인 정책 등 법무부 주요 정책을 영문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문체부 등록 외신기자 및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소속 기자들에게 총 12회 배포하였고, 주요 정책 책임자 인터뷰 및 대변인과 홍보기획팀장(외신대변인)의 간담회 등을 통해 외신기자와 소통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 그림 2-37 | 외신 소통 활동



장관 로이터와 인터뷰(8.11.)



아프간 특별기여자 관련 외신 초청 브리핑(10.13.)



대변인과 외신기자 간담회(8.9.)



K-ETA제도 시행 관련 정책담당자 외신 인터뷰(8.11.)

4. 디지털 소통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최성우

가.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화

2021년은 질적·양적인 면에서 법무부 디지털 콘텐츠가 도약하였고, 법무부 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한층 더 높아졌다. 무엇보다 인권, 공존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콘텐츠로 제작해 법무부 추진 정책의 인지도를 제고했다.

이미지 콘텐츠 중에서는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스토리텔링형 사례로 소개하는 '웹툰'을 제작, 호소력 있는 내용을 담아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 그림 2-38 | 웹툰 "우리들의 영웅은 어디에?" (법무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 그림 2-39 | 웹툰 "어려운 형사절차를 한 번에! (법무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웹툰과 카드뉴스뿐 아니라 기획 영상 또한 법무부 정책의 호감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관련한 주변 인물을 인터뷰한 영상 시리즈물이 대표적인 사례로 간호장교, 소방교, 통역사 등 호감도 높은 직군으로 구성된,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을 돕는 한국인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우호적 정서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 그림 2-40 | 류소영 간호장교 편 (법TV 유튜브)



| 그림 2-41 | 김호산나 통역사 편 (법TV 유튜브)



나. SNS 채널 활성화

법무부 공식 SNS 채널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모두 구독자 수가 가시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페이스북 팔로워 수는 2020년 대비 132,680명(2020.12.31.)에서 157,529명(2021.12.31.)으로 약 2만 명 이상 늘었으며 트위터 팔로워 수 또한 77,077명(2020.12.31.)에서 93,765명(2021.12.31.)으로 1만6천 명 이상 늘었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52,800명(2020.12.31.)에서 59,865명(2021.12.31.)으로 소폭 증가했다.

법무부 채널은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정보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확산함으로써 지속적인 팔로워·구독자 수 확보에 주력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콘텐츠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

다. 디지털 소통 대상 확장

2021년은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에 법무부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3차에 걸쳐 불법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독려에 대한 단계적 홍보를 추진했다. 무엇보다도 효율적 정보 확산을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비중이 높은 6개 국가 언어(국문, 영문, 중문, 베트남어, 러시아어 및 태국어)로 카드뉴스와 영상을 제작해 핵심 메시지 전달력을 제고했다.

다국어 홍보물은 법무부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확산시켰다. 영상의 경우 한국어를 제외한 5개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광고하여 각각 17만 회 열람되었다.

| 그림 2-42 |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백신 접종 독려 광고(카드뉴스 및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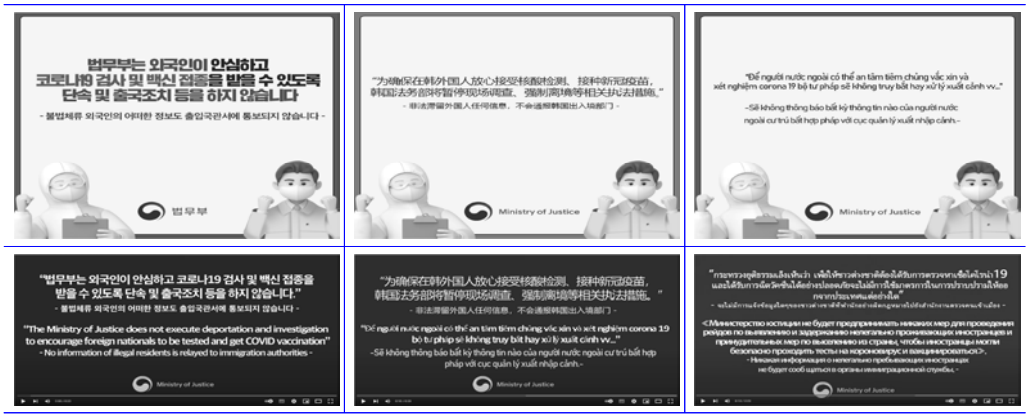

라.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 운영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제1기를 시작으로 총 13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법무부 블로그기자단은, 2021년에 초·중·고·대·일반성인부 총 40명을 선발하여 12개월 간 주요 법무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하였다.

법무부 블로그기자는 법무현장 취재, 법무정책을 소재로 한 기획기사(카드뉴스 등) 제작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지만, 2021년은 코로나19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K-ETA 시범시행 현장 및 아프간특별기여자 관련 현장 취재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춰 제한적이지만 가능한 현장 취재 활동을 열심히 하였다. 블로그기자가 12개월 간 생산한 기사는 총 676건으로 법무부 대표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과 기자 개인 블로그를 통해 게재 되었다.

| 그림 2-43 | 법무부장관과 블로그 기자단 간담회



장관과 법무부 블로그기자단 간담회(7.23.)

5. 국·내외 협업 홍보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최성우

가. 국내 협업 홍보

2021년 법무부는 국내의 다양한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업홍보를 추진했다. 홍보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수 부처와 함께 홍보 콘텐츠를 제작·확산했다.

특히 법무부는 '아동인권 보호'를 주제로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캠페인'을 기획하여 주도적인 협업홍보를 진행했다. 아동학대, 학교 안전사고, 온라인 상의 위험(랜덤채팅) 등 주제에 따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정보력이 뛰어난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였다.

| 그림 2-44 |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캠페인" 카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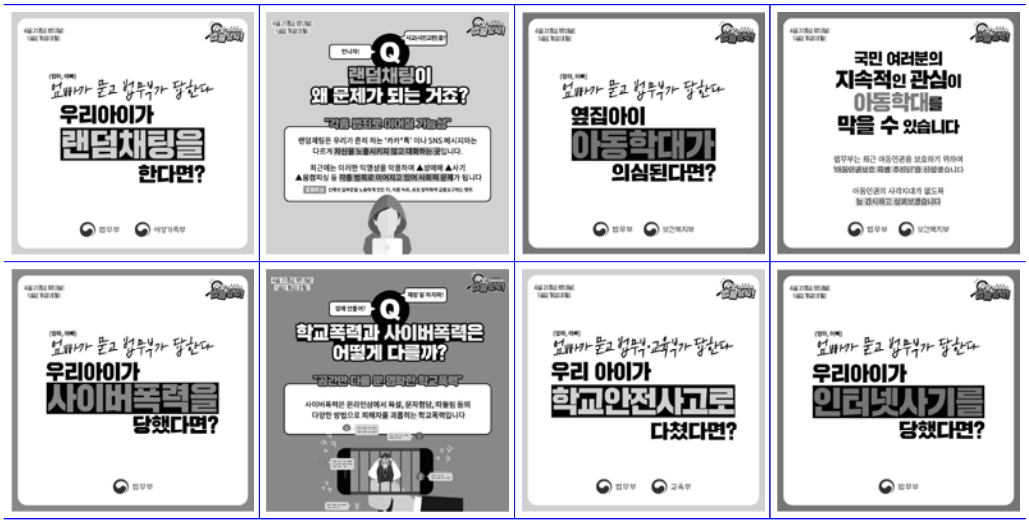

나. 국외(뉴질랜드 정부) 협업 홍보

법무부는 '아동인권 보호'를 주제로 국내외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아동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뉴질랜드 내부무와 공동으로 "Keep It Real Online" 캠페인을 진행했다. 국내에서도 신종 악성 범죄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에 대해

신선하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영상을 제작, 법무부 유튜브와 뉴질랜드 내무부 홈페이지에 각각 올려 확산시켰다.

| 그림 2-45 | 법무부-뉴질랜드 정부 협업 영상 콘텐츠



6. 홍보 교육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최성우

법무부 직원들의 홍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총 3회에 걸친 홍보 교육을 진행하였다. 1차(5.10.)는 '위기·이슈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차(6.8.)는 '보도자료 집중과정', 3차(11.22.)는 '언론의 보도시스템과 보도자료 작성·배포방법'을 주제로 밀도 있고, 홍보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홍보담당관이 직접 언론 대응 및 홍보 업무 전반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제3절 법무업무

1.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을 위한 민사법 정비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허창환

가. 추진배경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동물과 관련된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1인가구에게 그들의 반려동물은 단순히 동물이 아닌 떨어져 사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동물학대, 유기행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의 변화에는 모두 '동물은 물건이다'라는 민법적 시각이 기저에 있다.

예전부터 민법 학계에서는 우리 사람들과 같은 생명을 지닌 존재인 동물들에 대해 생명이 없는 다른 물건과 법적으로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외의 경우에도 1988년부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을 신설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33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야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므로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9명은 물건과 동물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이제라도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하고, 동물에 대한 잔인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는 미래시민사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주요 개정 내용

법무부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특히 이 법안은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도 논의되어 만장일치로 제안된 법안이다.

현행 민법은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 및 그 장착물은 부동산이고,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은 '유체물'에 해당하므로 '물건'인 동산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물은 다른 물건과 달리 생명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선언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동물이 물건이 아니므로 다른 물건과는 어떻게 다른지 여부에 대한 문제, 즉 그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규정도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선언적 규정을 두되,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민법 제252조는 "무주물의 귀속"이라는 제목하에, "야생(野生)하는 동물(動物)은 무주물(無主物)로 하고 사양(飼養)하는 야생동물(野生動物)도 다시 야생상태(野生狀態)로 돌아가면 무주물(無主物)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인없는 물건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므로, '무주물'이라는 말은 체계상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위 규정을 "야생(野生)하는 동물은 소유자 없는 동물로 하고,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동물로 한다."라고 개정하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므로,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동물자유연대, 카라 등의 동물보호단체 뿐만 아니라, 수의사협회 및 수의대학생협회 등 관련단체의 전폭적인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또한 개정안을 근거로 사회 전 영역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예컨대, 펫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또한 언론에서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예컨대, KBS 환경스페셜에서는 "민법 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고, 세계적인

통신사인 로이터 통신사에서도 취재 및 보도를 하였다.

본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소상공인 영업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법제 정비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김상이

가. 추진배경

2021년도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 제약이 가장 중대한 문제였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차인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였고, 최우선적으로 임대료 부담의 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가임대차 관련 주요 업무를 부동산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동산정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며 긴밀히 협조하였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부처와도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나. 주요 개정 내용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상가임차인이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고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으나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으로부터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결과 올해 국회를 통과('22. 1. 4.부터 시행)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이미 기존의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이 차임감액을 청구할 있도록 법률 개정('20. 9. 29. 상임법 개정)을 하였고, 금번 개정을 통하여 폐업에 이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상가임차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폐업에 이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 법제 정비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김민지

가. 추진배경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을 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정폭력행위자 등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발급 등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나. 주요 개정 내용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 등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발급 등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교부제한대상자)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교부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발급받을 수 없거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할 수 없다.(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4조의2제3항 신설)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 포함)을 지정(공시제한대상자)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등록부등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공시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 ⅰ) 공시제한대상자 명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하여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교부·발급을 허용하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하고, ⅱ) 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하여는 공시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교부·발급을 허용하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하였다.(제15조의2 신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가정폭력은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심각한 문제로,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완전한 관계 단절이 어려워 추가적인 폭행, 협박, 보복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에 대한 교부·열람·발급 등 일정한 제한을 설정한 것은 가정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다.

이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익법인법 정비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김훈주

가. 추진배경

지금까지 전국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장이 제각기 주무관청이 되어 공익법인을 관리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통일적인 관리가 어렵고,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특혜나 비리, 회계부정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총괄기구로서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나. 주요 개정 내용

1) 총괄기구(시민공익위원회)의 설치

공익법인의 총괄기구로서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공익위원회 위원들 중 다수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2)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지원 강화

시민공익위원회 산하 사무기구에 공익법인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향후 시민과 시민공익법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운영 경비 보조,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익법인을 지원하게 한다.

3)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시민공익위원회로 하여금 위법한 활동을 한 시민공익법인의 인정을 취소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시민공익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시정·해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거나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시민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개정안은 시민공익법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정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투명성. 보장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민공익위원회를 발판으로 시민공익법인들이 보다 활력있고 투명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가 보다 활기를 띠게 되고, 시민 개개인의 삶도 보다 풍요롭고 윤택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5.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를 위한 법제 정비

●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모승규

가. 추진배경

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비의 거품을 걷어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15. ~ '16.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여 21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고, 지자체·학계·시민단체 등과 8회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8. 8.에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서울시과 공동으로 현장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부는 '19. 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에서 대안으로 가결되어 '20. 2. 법률 제16919호로 공포되어 '21. 2. 시행되었다.

나. 주요 개정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② 집합건물 이용·관리 효율화, ③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이다.

1)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0세대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2) 집합건물 이용·관리 효율화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분점포 성립에 요구되는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3에서 3분의2로 완화하되,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여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를 신설하여,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투명한 관리비로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소규모 집합건물의 소상공인들도 구분점포 형태의 매장을 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법무부는 일정 규모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 3.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6. 국민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과태료 납부 관련 법제 정비

● 법무심의관실 공익법무관 하정엽

가. 추진배경

과태료 부과·징수와 납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일반 국민은 과태료 부과 불복 절차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방어권을 충분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였고,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 자진 납부의 법적 의미를 사전적으로 충분히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주요 개정 내용

법무부는, '감경된 과태료를 스스로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위 사항을 명확히 알리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질서위반행위자가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그동안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이러한 점을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자진 납부의 의미를 오인하거나, 납부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고자 하여도 권리 구제를 할 수 없고 헌법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과 사법력이 낭비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스스로 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을 통지사항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질서위반행위자로 하여금 감경된 과태료 납부행위의 법적 의미와 효력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금번 개정을 통하여 질서위반행위자가 감경된 과태료 납부 행위의 법적 의미와 효력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국민의 절차적 방어권 행사의 충실한 보장이 기대된다. 또한, 감경된 과태료를 스스로 납부한 국민들이 제기할 소로 인한 행정력·사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

● 법무과 서기관 설기석·법무관 임유송

가. 추진배경

법조계 전관특혜는 공직퇴임변호사가 과거 경력을 이용하여 사법절차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법조계 병폐로 지적되어온 바,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한 수임·변론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의뢰인 95.1%, 변호사 77.8% 전관특혜가 있다고 인식('19. 12. 형사정책연구원 설문조사)

나. 추진내용

법무부는 '19. 5.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 '20. 3.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하였고, '21. 1. ~ 5.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21. 6. 국회에 제출되었고, '21.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다. 「변호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표 2-15 | 「변호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기간을 퇴직 시 직급 등을 고려하여 차등 연장

구 분	예 시	수임제한기간		수임자료제출기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재산공개대상자 (공직자윤리법§10①)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차장 등	1년	3년	2년	3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공직자윤리법§17③)	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		2년		2년
그 외	위 재산공개대상자 및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년		2년

• '몰래변론'등 법조환경 투명성 저해 행위 근절

– ① 전관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몰래변론')에 대한 처벌 강화(징역 1년, 1천만원 이하 벌금→징역 2년, 2천만원 이하 벌금), ② 목적 증명 어려운 일반범 처벌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2천만원 이하)

라. 기대효과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어,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사법시스템 정착이 가능해질 것이다.

8.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다양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

● 법무과 서기관 설기석·법무관 정영욱

가. 추진배경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아야만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데, 현재 연수기관은 대한변협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모든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연수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대한변협 외로 법원·검찰청·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으로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대한변협은 '21. 3. 8. 연수 내실화 등을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21. 4. 29. 대한변협에 연수인원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다양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위 발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연수기관을 법원·검찰청·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으로 확대하고 법무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21. 12. 31.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 「변호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표 2-16 | 「변호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table>
<tr><td>연수기관 확대 및 지원</td><td>•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
<table><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tr><td>대한변협</td><td>① 법원, ② 검찰청, ③ 대한변협, ④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곳</td></tr></table>• 연수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법무부장관이 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 과정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td></tr>
<tr><td>연수기관 관리·감독</td><td>• 연수기관에 대한 서면·현장조사 및 개선·시정명령
– 법무부장관이 연수기관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서면·현장조사 실시하고, 조사 결과 원할한 연수 위해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개선·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함</td></tr>
<tr><td>연수기관 연수계획 제출 등</td><td>• 연수기관의 연수계획 제출, 법무부장관의 검토
– 연수기관은 연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에 수정·보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의 연수기관 확정·고시
– 법무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에 연수를 실시할 연수기관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함</td></tr>
</table>

라. 기대효과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연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리걸테크 산업의 안정적 정착

법무과 서기관 설기석·법무관 이계민

가. 추진배경

최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률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한편으론 전문성 및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변호사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리걸테크 산업이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정착할 수 있도록 리걸테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 기존 산업과의 제도적·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리걸테크 산업과 관련하여 변호사단체와 리걸테크 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1. 8. 온라인법률플랫폼 관련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21. 9. 리걸테크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리걸테크 산업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신산업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하였다.

| 그림 2-46 | 법무부 온라인법률플랫폼 언론브리핑 및 리걸테크 TF 출범(화질개선)



▲ 법무부 온라인법률플랫폼 언론브리핑('21. 8.)



▲ 리걸테크 TF 출범식('21. 9.)

다. 기대효과

변호사검색플랫폼, AI·빅데이터 활용 법률서비스 등 리걸테크 산업 분야의 법적 규제를 검토하여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리걸테크 TF를 운영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신산업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0.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법무과 행정사무관 유희원

가. 개요

법무부는 전국의 변호사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각 편중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변촌(無辯村) 등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의 법률안전망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3. 6월 대한변호사협회·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을변호사 제도를 출범시켰다.

다만, 제도 출범 이후 ① 마을변호사가 위촉된 사실을 모르는 주민이 많고, ②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더라도 공무원이 제도를 모르거나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법무부는 2020. 7월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마을변호사가 위촉된 모든 지역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마을주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나. 제도의 의의

1)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마을주민이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을 통해 마을변호사 정보 및 현장상담 가능 여부 등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 표 2-17 |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성과

구 분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 전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 후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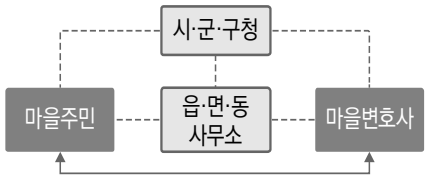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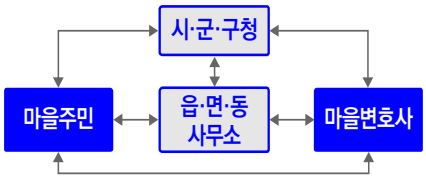
마을주민	• 마을변호사 정보 알기 어려움 • 주로 전화·이메일 등 유선상담만 가능	•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에서 마을변호사 정보 편리하게 안내받음 • 현장상담 기회 확대
마을변호사	• 제도를 잘 모르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음 • 마을에 찾아가 현장상담 하고 싶어도 마을의 협조가 부족	• 지역 단위의 적극적 제도 안내·홍보로 변호사 재능기부 기회 확대 • 상담 장소 마련되어 마을변호사 희망 시 정기적인 현장 상담 가능

2) 변호사의 공익활동 장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공익활동에 종사할 의무가 있으나 실제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의 순수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운영되므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

3) 민·관의 모범적 협력 모델

행정안전부·대한변호사협회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으로 정착했고, 그 결과 범정부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우수등급' 평가를 받고(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범정부 협업과제'로 선정(2020년)되는 등 민·관의 모범 협력모델 사례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4)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2019. 4월 강원도 산불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였고, 2019. 8월에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전국 14개의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였으며, 2020. 4월에는 코로나19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틈새 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하였다.

다. 마을변호사 배정·상담 현황

2013. 6월 250개 읍·면에서 415명의 제1기 마을변호사로 제도를 출범하였으나, 배정지역 및 마을변호사 인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결과, 2021.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359명의 제5기 마을변호사와 1,636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이 1,491개 읍·면·동(517개 무변촌 포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한, 무변촌(無辯村)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강원 고성군 간성읍 등 전국 517개 모든 무변촌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여 2년 연속 '무변촌 제로(ZERO)'를 달성했다.

| 표 2-18 |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

구 분	제1기 ('13. 6. ~ '14. 6.)	제2기 ('14. 6. ~ '16. 6.)	제3기 ('16. 6. ~ '18. 6.)	제4기 ('18. 6. ~ '20. 6.)	제5기 ('20. 7. ~ '22.7.)
배정지역수	250개 읍·면	1,412개 읍·면	1,413개 읍·면	1,442개 읍·면·동	1,491개 읍·면·동
마을 변호사수	415명	1,455명	1,519명	1,444명	1,371명

| 표 2-19 |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현황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상담건수	232	311	811	2,060	1,125	1,323	1,607	2,120	2,389

제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집계된 누적 상담건수는 12,000여 건에 달하며, 마을변호사가 상담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상담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

1) 마을변호사·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제5기 마을변호사의 활동을 돕고, 읍·면·동 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 마을변호사를 위한 '마을변호사 활동 가이드라인'과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을 위한 '마을변호사 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행정안전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였다.

| 그림 2-47 | 마을변호사·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



마을변호사 가이드라인 | 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

2) 다양한 홍보 컨텐츠 제작·배포 및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캐릭터를 활용한 포스터, 달력, 우수상담사례집, 활동물품 등 전통적인 홍보수단에도 충실하면서 동시에 영상을 비롯한 뉴미디어 중심의 홍보컨텐츠 제작에도 힘썼다. 이외에도 마을변호사 화상상담창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지역버스 광고를 진행하는 등 지역 맞춤형 홍보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던 블로그(blog.naver.com/mabyun),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mojmabyun)와 카카오톡 채널 외에도 마을변호사 캐릭터인 '마우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마을변호사 캐릭터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배포하는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3) 마을변호사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매년 12월 마을변호사 기념식 및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도 발전에 기여한 마을변호사·공무원·지자체를 표창하고,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2021년도 제8주년 기념식에서는 모범마을변호사, 공무원 및 지자체에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장관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했고, 2021년도 마을변호사제도 실적을 소개하고 사례 영상을 발표하였다.

| 그림 2-48 |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

4) 마을변호사 화상상담창구 시범사업 시행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마을변호사들의 현장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의 제도 이용 보장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와 적극 협력하여 마을변호사 화상상담창구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경기도 광주시 민원실에 마을변호사들과 화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태블릿과 헤드폰 등 기기를 설치하였고,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화상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21. 11. 경에는 경기도 광주시를 방문하여 화상상담창구 시범사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 그림 2-49 | 마을변호사 홍보 컨텐츠



홍보포스터 | 마을변호사 카드뉴스 | 마을변호사 버스 광고

11. 화상공증제도 활성화

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홍정

가. 추진배경

법무부는 2010년부터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전자공증을 이용하더라도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8년 6월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해 비대면으로 전자문서를 인증할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공증인이 없는 지역 주민이나 재외국민의 공증서비스 접근이 용이해졌다.

나. 추진내용

화상공증 과정에서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과거에는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신분증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재외국민 대다수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여권만 소지하고 있어 사실상 화상공증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2021년 여권을 통해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화상공증 시스템을 개편하였고, 이로 인해 여권만 소지 중인 재외국민도 문제없이 편리하게 화상공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대폭 증진되었다.

더불어 법무부는 늘어나는 비대면 공증 수요에 대비하여 공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공증제도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 화상공증 이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홍보영상을 3부작으로 제작하여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법무부TV)에 게시하였고, 화상공증 이용 매뉴얼, 활용 사례 등을 담은 화상공증제도 가이드북을 전국 공증사무소 등에 배포하였다.

| 그림 2-50 | 화상공증제도 홍보영상 제작 및 가이드북 배포

			
1부(공증이 어렵다는 편견은 OUT! 6분 안에 공증 톺아보기)	2부(화상공증? 이 영상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하면 "야 너두 공증 할 수 있어!")	3부(아포스티유? 이것만 기억하자! #양재역 #12번_출구 #외교타운 #6층)	화상공증제도 가이드북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국민을 생각하는 제도 개선,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의 결과 매년 화상공증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고(2021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40%이상 큰 폭으로 증가), 이에 따라 국민 편익도 큰 폭으로 증대되었다.

법무부는 향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12. 국제법무 협력 및 교류

가. 법무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법률지원

●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최승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사법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회의와 자유무역협정(FTA), 양자투자협정(BIT) 등 통상분야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 참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및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회의 13회, OECD 경쟁위원회 2회,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1회,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일반사무정책이사회, 관할권 작업반 회의, 아동보호협약 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통일규범과 국내규범의 조화 및 발전을 도모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1년 한-중(4회), 한-우즈백(1회), 한-칠레(2회), 한-미 서비스·투자이행위원회(1회), 한-EU 서비스무역위원회(1회) 등 여러 국가와의 FTA 체결 및 개정을 위한 서비스·투자분과 협상에 참석하고, WTO 전자상거래협정 등 다자 협정 개정 과정에도 참여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다.

| 표 2-20 | 2021년도 법률자문 현황(22회)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자
1	1. 7.	OECD 경쟁법 집행 투명성 및 절차적 공정성 권고문 검토	공정위	최승은 사무관
2	1. 20.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검토	외교부	최승은 사무관
3	2. 19.	WTO 서비스 국내규제 참조문서 초안 검토	산업부	김하영 사무관
4	2. 26.	헤이그아동탈취협약 가입수락 검토	외교부	김하영 사무관
5	3. 15.	한-중 FTA 협상 관련 법률서비스 분야 리퀘스트 초안 검토	산업부	김하영 사무관
6	3. 15.	WTO 제8차 한국 무역정책검토(TPR) 사무국 보고서 검토	산업부	김하영 사무관
7	3. 15.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검토	외교부	최승은 사무관
8	3. 16.	한-우즈백 STEP 협정문 초안(지식재산권 부분) 검토	산업부	김하영 사무관
9	3. 24.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검토	외교부	공보영 법무관
10	4. 6.	WTO 전자상거래 협정문 초안 규정 중 전자계약 규정 검토	산업부	김하영 사무관
11	4. 15.	RCEP 분쟁해결조항 용어 사용에 관한 검토	외교부	최승은 사무관
12	4. 16.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검토	외교부	김하영 사무관
13	5. 28.	한-우즈벡 무역협정문 초안 상품챕터 규정 검토	산업부	김하영 사무관
14	5. 31.	한-메르코수르 TA 초안 지재권 챕터 집행 규정 관련 검토	산업부	공보영 법무관
15	6. 18.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 의제 검토	외교부	최승은 사무관
16	6. 21.	한-칠레 FTA 제5차 개선협상 대비 노동 챕터 관련 검토	산업부	임세영 전문위원
17	7. 6.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총칙 분쟁해결 챕터 관련 검토	산업부	임세영 전문위원
18	7. 6.	국제해사기구 제108차 법률위원회 의제 검토	해수부	임세영 전문위원
19	9. 15.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검토	외교부	최승은 사무관
20	9. 15.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검토	외교부	김하영 사무관
21	11. 19.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 회의 의제 검토	외교부	공보영 법무관
22	11. 21.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자료작성 관련 검토	산업부	김하영 사무관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도 법무부는 통상, 국제거래 등 다양한 국제법무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요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단으로 참가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부처의

법률적 자문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FTA와 BIT 체결 및 기체결 조약에 기초한 분쟁 상황의 예방 및 대응 등 국제법적 쟁점이 점차 강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통상 분야에 대한 전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적시에 자문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

나. 국제법무교류 및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국제법무과 전문위원 임세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국익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외국 법조인들과의 교류 및 법무협력협정, 상호 자료교환협정 체결과 같은 실무적 교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나아가 주요 개발도상국에 국제거래규범 및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법제도를 소개하여 입법 작업을 지원하는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UN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 및 발전에 기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 교역대상국과 우리나라 법제의 간극을 최소화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다 유리한 통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 여러 국가들과 체결한 법무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간 법무 협력 및 인적 교류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홍콩과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현재 이라크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사업(ODA)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캄보디아의 대체적 분쟁해결(ADR) 관련 법제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캄보디아를 비롯하여 여러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국제규범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손잡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에는 UNCITRAL, 인천시와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지원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연장함으로써 아태지역 내 UNCITRAL의 역할 확대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역내 선진 국제거래규범의 정착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2021년 11월에는 2, 3일 양일간 제10회 ADR 스페셜 세션을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개최(온라인)하여 아태지역 개도국 공무원 및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중재·조정 및 디지털경제에서의 분쟁해결 등에 관한 UNCITRAL 상거래규범을 전파하고 관련 실무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은 팬데믹의 장기화 및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따라 국제거래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국제상거래규범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원활한 국내 도입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1년 12월에는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및 캄보디아 법무부와 함께 아태지역 조정법제 개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조정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양국 공무원들이 관련 국내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적인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2020년 하반기에는 ASEAN 국가들의 UN국제물품매매협약 도입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교육 프로그램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 그림 2-51 | 법무협력사업 및 법제정비지원사업



제10회 UNCITRAL ADR 스페셜 세션



아태지역 조정법제 개선 세미나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나 비대면 방식을 적극 도입·활용하여 개도국의 법제 정비 지원에 대한 차질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방식을 새로운 사업 수행방식으로 정착시켰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국제법무교류와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 사업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 편의를 더하고 주요 개도국 법제의 현대화로 현지인들의 인권 및 법률 복지 향상을 꾀함으로써 보편적인 인류애와 국제공동체 정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 우수성 등을 홍보하고 지원 사업 대상 국가 및 법제 분야(중재법, 조정법, 형사법, 지식재산권법 등)를 확대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주요 지원요청국의 법제 개선을 통하여 신남방·신북방정책 등으로 표현되는 정부의 외교적 방향과의 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이익 보호와 국격 향상에 기여하려 한다.

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역할 수행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최승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나라는 2012. 12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약칭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였다. 위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절차와 재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이행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위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중앙당국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탈취부모와 해외 중앙당국의 연결, 탈취아동의 한국 입국 사실 확인 및 소재 파악 등 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기존 가입국이 신규 가입국의 가입을 수락해야 양국 간 발효되는데, 2022. 1월 현재 기존 가입국 101개국 중 63개국이 우리나라의 가입을 수락하였고, 지속적으로 수락국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13년부터 누적된 지원 신청 접수 건수는 2022. 1월 현재 총 76건을 기록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일방 배우자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국민과 결혼하는 사람이 많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과 같은 나라의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우리나라와 상호 수락국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협약상 지원이 불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법무부는 부부 일방이 아동을 국외로 무단 탈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심판절차 도입을 연구하여 2020. 8월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이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3. 국제법무 역량 참여

●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최승은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제교류 증대와 민·상사 규범의 세계적 통합 양상에 따라 각종 규범의 통일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이러한 현상은 중재, 도산, 운송, 담보,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제 신인도 제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법제 선진화를 위해서 국제규범의 도입 및 수용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민·상사 통일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협상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반영하고, 논의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에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등 사법 분야의 국제통일규범 성안 회의에 활발하게 참석하고 있는 바, 2021년에는 총 13회의 UNCITRAL 본회의 및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하고, HCCH 관할권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법제의 관점과 국제적 표준규범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진적 글로벌 통일규범 마련 작업에 일조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02년부터 UNCITRAL 6개 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대표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등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 세계 최초로 UNCITRAL의 지역사무소를 인천에 유치하였고, 이를 통하여 아·태지역에서 국제거래규범의 연구·전파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 UNCITRAL,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기관이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 관련 국제회의(SAF, Seoul ADR Festival)를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는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여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였다. 특히 법무부는 SAF 기간 중 제10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2021. 11. 4. ~ 5.)를 개최하여 한국의 국제중재 분야 성과에 대하여 공유하고 국제적 석학·실무가들과 국제중재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국제적 회의의 주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국내 법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2002. 2월 변호사, 교수, 판·검사 등 각 계의 전문가를 망라한 '국제거래법 연구단'을 발족하여 여러 분과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위 연구단은 이미 제정된 국제규범의 도입을 위한 연구뿐 아니라 새로운 규범의 제정을 위한 각종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제규범의 제정단계에서부터 우리의 국익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도 법무부는 대한민국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제거래규범의 조화 및 통일화 과정에 국내 법체계의 입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뿐만 아니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국제통일규범 협상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폭을 넓혀갈 예정이다.

14. 국제법무 역량 강화

가. 법률시장 개방 법제화 및 관리·감독제도 구축

국제법무과 전문위원 임세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은 2016. 3. 2. 공포된 이후 2016. 7. 1.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최초로 적용되었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통하여 국내 로펌과 외국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외국법 사무 및 일부 국내법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3단계 개방은 2017. 3. 15. 미국, 2018. 12. 20. 베트남, 2019. 12. 12. 호주, 2020. 1. 1. 캐나다, 2021. 1. 1. 영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1년 12월 현재 자격승인심사를 신청한 외국변호사는 212명, 설립인가심사를 신청한 외국로펌은 36개이며, 그 중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법자문사는 207명(미국법자문사 105명, 영국법자문사 36명, 프랑스법자문사 1명, 호주법자문사 10명, 중국법자문사 8명, 뉴질랜드법자문사 1명, 싱가포르법자문사 1명),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로펌은 28개(미국 로펌 21개, 영국 로펌 4개, 중국 로펌 2개, 호주 로펌 1개)이다.

2016 ~ 17년에 걸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총 27곳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도 꾸준히 개별 사무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갔다. 2019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각국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관련 법제를 연구하였으며, 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를 방문하여 법률시장

개방 정책 및 협의 과정 등을 조사하는 등 향후 법률시장 개방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우리나라의 추세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법률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각국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2020년에는 그간의 법률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법률시장 개방 10주년을 맞아 관리감독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추후 시장 현황 및 정책 방향에 맞추어 실행할 예정이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 법률시장 개방 법제 관련 세계 동향을 꾸준히 살펴 우리나라의 법제를 개선하고, 심사업무의 처리 속도 및 정확성을 높여 더욱 완성된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이미 승인된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하여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등록말소 규정 및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로써 안정적인 법률시장 개방 제도를 구축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률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국제법무과 공익법무관 공보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 5월과 2015. 4월에는 중국 상해에서, 2012. 12월과 2014. 4월에는 홍콩에서, 2016. 5월에는 UAE에서 각각 국내 로펌 합동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청년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을 해외 로펌, 국내 로펌 해외사무소 및 국제기구 등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하반기에 14명, 2013년 46명, 2014년에 84명, 2015년에 47명, 2016년에 46명, 2017년에 38명, 2018년 38명, 2019년 45명을 선발·파견함으로써 국내 신규 법조인들이 해외에서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인턴을 파견하지 않음).

2014. 9월부터는 청년법조인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O.K. Academy)'를 개설하여 국제

법무에 정통한 변호사들을 강사진으로 섭외해 청년법조인들을 교육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아카데미(제7기)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3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특히, 올해 아카데미부터 국제법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내용을 국제법무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개편하고, 활동이 활발한 중진 실무가들을 초빙하여 강사진을 보강했으며, 주니어 변호사, 국제기구 진출 전문가(JPO) 등 다양한 층위의 변호사들을 섭외하여 온라인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한편, O.K.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해외 로펌, 국내 로펌·해외 사무소 등 여러 기관에 장기(3개월 ~ 1년) 인턴으로 파견하여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2015년 7명, 2016년 5명, 2017년 3명, 2018년 2명, 2019년 1명을 선발 파견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청년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은 O.K. 아카데미 및 해외 인턴 파견을 통해 국제법무 관련 전문지식을 배우고,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청년법조인의 취업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법조인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추진하는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아카데미 수료를 통해 해외로펌 또는 국제기구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성공 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청년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 국제법무과 공익법무관 공보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국제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필요해짐에 따라,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교수, 변호사 등 자문위원 243명)의 운영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영문계약서 검토, 현지 법령 해석 등의 무상 자문을 제공하고, 『국제투자·비즈니스 가이드』와 『알기 쉬운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 등 총 26종을 발간·배포하고 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법률자문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04건을 기록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법률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다(4월, 5월, 6월).

특히, '스타트업' 집중 법률지원으로 질적 성장을 추진하였다. '21. 4.부터 무역협회 '스타트업 브랜치'와 공동으로 스타트업 대상 1:1 온라인 법률상담회를 진행(약 100건의 법률자문 제공)하였고, 스타트업 실무자를 위한 교육 콘텐츠 "스타트업 법률클래스" 촬영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법률지원 서비스 홍보를 위해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에 배너 광고를 시행하였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준법경영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중소기업을 위한 준법경영 가이드북」을 공동 발간하기로 2020년 1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올해 발간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그림 2-52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설명회



법무부-무역협회 화장품 뷰티제품 법률설명회('21.5.26.)



법무부-무역협회 스타트업 1:1 법률상담회('21.4.16.)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스타트업 법률지원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업 다각화를 통해 진출 기업의 다양한 법적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혁신성장을 장려하는 한편, 스타트업 창원 지원 법무플랫폼에 기존 법률자문단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법률자문과 스타트업 1:1 법률상담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연간 정기간행물로 발간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 전문학술지 및 연구자료 발간

국제법무과 전문위원 임세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1995. 2. 1. 국제통상 전문학술지인 『통상법률』을 창간하여 연 4회 발간해오고 있는 바, 매 권호마다 국제법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1995년 제1호부터 2021년 12월 현재 통권 제153호에 이르기까지, 『통상법률』은 국제통상법 및 국제거래법, 국제투자법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다룸으로써 국제법무 분야의 연구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기획논단을 신설하여 시의성 있는 연구 논문을 집중적으로 게재하였고, 2021년에는 게재 논문의 집필진 및 연구주제의 다양성 및 균형성에 중점을 두고 발간하였다.

그 결과 2021년 실시된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결과, 등재후보지로 재선정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2010. 7. 13. 영문 법률 계간지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Business and Investment(한국법령의 최신 동향 : 기업과 투자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를 창간한 이래로 2021년 통권 36호까지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오고 있다. 본 저널은 '한국의 법동향', '법무부 정책소개', '외국투자자를 위한 출입국 정보' 코너를 통해 기업·투자 활동과 관련된 법령 재·개정 사항, 판례 동향, 정부 정책과 외국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출입국 정보를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투자관련 법규, 정책을 해외에 알리는 영문 정기 간행물로서 외국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53 | 통상법률 통권 제153호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자체 학술지 및 영문 저널의 발간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의 도입 및 이행에 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발행하여 실무자 및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통상법률은 학술지로서 위상을 제고하여 국제법무 분야 연구자들이 논문을 게재할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해당 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문저널은 편집 노트, 법무부 소관 개정 법령의 소개를 추가하는 등 개편을 통해 국내외 독자에게 법무부 관련 다양한 정보를 충실히 홍보하고 전달하려 한다.

15.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 국제분쟁대응과 행정주사 양수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이하 ISDS)'는 투자보장협정(BIT)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국제중재제기 합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ISDS는 국가마다 다른 법 체제와 정책 상황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투자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하는 자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2021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3,238개 투자협정 중 대부분이 ISDS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BIT 84건, FTA 17건(발효 기준) 중 독일, 튀니지, 프랑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BIT를 제외한 모든 BIT와 FTA에 ISDS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ISDS 중재 제기 당시부터 ISDS 사건에 적극 대응하여 왔다. 론스타는 2012. 11. 21.「한-벨기에 BIT」 위반을 근거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S 중재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관계부처 T/F'에 참여함은 물론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분쟁대응단'(단장 : 법무실장)을 통하여 실제 소송업무의 수행,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자료수집 및 정리, 대응논리 개발, 관계 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진행하였다.[1] 론스타 사건은 2016. 6. 2. ~ 3.최종변론이후 2020. 3. 6.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하여 2020. 6. 23. 신규 의장중재인으로 이안 비니가 선정되었고, 새 의장중재인의 요청으로 2020. 10. 14. ~ 15. 양일간의 질의응답세션 이후 현재 판정 선고를 앞두고 있다. 론스타 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사건으로, 제출된 서면과 증거의 양이 매우 방대

1) 관계부처 TF(41회), 분쟁대응단(42회) 등 총 83회의 대응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반박 준비서면 2회(총 1,464면), 서증 59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55건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자료 제출

하므로 현 시점에서 판정 시기나 그 결론에 대하여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론스타 사건이 개시된 지 9년이 경과하였고, 서면공방절차 및 심리기일도 지난 2016년 마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 의장중재인이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판정 선고와 관련된 상황을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에는 「한-미 FTA」 및 「한-이란 BIT」 위반을 근거로 2건[1]의 ISDS 중재가 제기되었으며, 「한-이란 BIT」을 근거로 1건[2]의 ISDS 중재의향서가 접수되었다. 법무부는 위 각 사건의 중재의향서 및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직후 청구의 근거가 된 처분을 담당하였던 처분청 및 기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분쟁대응단(단장 : 법무실장)을 구축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재 사건과 관련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전개하여 왔다. 향후 론스타 사건의 판정 선고와 관련하여 후속 조치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신규 제기된 중재사건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나. 지자체·해외진출 우리기업 국제투자 분쟁 예방과 해결 적극 지원

국제분쟁대응과 행정주사 양수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주요 ISDS 사건들이 접수 및 진행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ISDS 제기 및 그 결과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들이 대규모 해외투자를 다수 유치함에 따라 사업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외국인 투자자의 ISDS 제기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ISDS 예방을 위해 투자유치 MOU 작성단계부터 중앙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기업·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ISDS 대응방안 교육,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투자유치 단계에서부터 분쟁을 예방하려 노력하고 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2021. 5. 10. 부산투자자 ISDS 중재 제기, 2021. 10. 18. 다야니(2차) ISDS 중재 제기
2) 2021. 9. 2. 이란중앙은행 ISDS 중재의향서 접수

(KOTRA) 등과 연계하여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찾아가 ISDS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현지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한 법적 지원활동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2009. 10월부터 2021. 12월까지 총 117회에 걸쳐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및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ISDS 제도 소개, 발생 경위 및 사례 검토, 예방 및 대응 전략을 교육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다수, 다중 행사 및 회의의 최소화를 위하여 화상 등 비대면 진행 방식으로 한국수자원공사,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 대하여 3회 실시하였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Zoom 회의 등 비대면 교육 진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기별 ISDS 예방 교육 안내 공문 발송 등 주기적으로 홍보를 실행하여 국제 소송으로 인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거나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ISDS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고, 범부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선제적 ISDS 예방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부처에 대한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조치 시행, 기타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제투자법 일반 원칙 및 관련 투자협정의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제공하고 있고, 2021년에는 총 11건의 투자협정 위반 및 ISDS 제기 가능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예방·협력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업무협약을 체결(4.30.)하였으며,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개정(10. 5.)하고, '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 분쟁 사례'를 발간·배포(4.30.)하여 범부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분쟁 발생 위험을 조기 탐지하고 분쟁의 확대를 차단하는 등 선제적 분쟁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 법무부는 정부부처·공기업·지자체·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ISDS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ISDS 교육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관계자, 공기업, 해외진출기업 등의 ISDS에 대한 이해도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하여 「ICSID 업무 매뉴얼」, 「국제투자분쟁 사례연구」 등 ISDS 예방 및 대응 관련 서적을 지속적으로 발간·개정할 예정이고, 해외투자유치 관련 전문가(교수, 변호사 등)들의 법적 자문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근거인 「국제투자분쟁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 접수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 민원 중 ISDS 제기 위험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ISD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 공공기관의 ISDS 예방 및 대응역량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법무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법률지원

국제분쟁대응과 행정주사 양수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및 투자보장협정(BIT) 회담에 참석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우리나라 내 외국인투자 증대와 외국에 투자하는 우리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 및 ICSID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ISDS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UNCITRAL 본회의 및 제40차 후속·제41차 제3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총 6회의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ICSID 규칙 개정에 대한 1회의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오만, 한-UAE, 한-멕시코 BIT 개정 및 한-조지아, 한-투르크메니스탄, 한-바레인 BIT 제정 회담에 총 6회 참석하여 외교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고, 한-중 서·투 후속협상 및 한-러 FTA 비공식 협상에 3회 참석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ISDS 조항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다.

| 표 2-21 | 2021년도 정부의견서 제출 현황(10회)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자
1	2. 23.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작업계획에 관한 정부의견서 제출	외교부	엄영신 서기관 김아주 전문위원
2	3. 15.	한-이라크 투자보장협정 검토의견서 제출	외교부	서기관 이현송 사무관 강지아
3	6. 17.	한-조지아 BIT, 한-투르크 BIT 협정문 관련 검토의견 송부	외교부	서기관 이현송 사무관 강지아
4	7. 1.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행동규범 2차문안에 대한 정부의견서 제출	외교부	엄영신 서기관 김아주 전문위원
5	7. 12.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제3자 자금지원에 대한 정부의견서 제출	외교부	엄영신 서기관 김아주 전문위원
6	7. 12.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자문센터 설립여부, 서비스 및 수혜자의 범위에 대한 정부의견서 제출	외교부	엄영신 서기관 문희조 사무관, 김아주 전문위원
7	9. 9.	ICSID 규칙개정에 대한 정부의견서 제출	ICSID	엄영신 서기관 김아주 전문위원
8	9. 15.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 검토의견 송부	외교부	서기관 이현송 사무관 강지아
9	11. 1.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상설 다자기구 설립시 판정부 구성원의 선정에 대한 정부의견서 제출	외교부	엄영신 서기관 문희조 사무관
10	12. 22.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조정제도의 활용을 통한 대안적 분쟁해결(ADR)에 대한 정부의견서 제출	외교부	엄영신 서기관 문희조 사무관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도 법무부는 한-중 FTA 서·투 후속협상, 한-러 FTA 협상에 정부대표단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비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가입 결정 시 협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한-오만, 한-UAE, 한-멕시코, 한-나이지리아, 한-이라크 BIT 개정 및 한-조지아, 한-투르크메니스탄 BIT 제정 등 투자보장협정 회담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UNCITRAL 본회의 및 제42차·제43차·제44차 제3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공하고, 신규 사무국 문건 발행 시 정부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16. 국가송무의 효율적·통일적 수행

가. 국가송무체계 개선 추진

●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윤경식

1) 추진배경

국가는 1951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소송은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행정소송은 법무부장관이 행정청의 장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교통·통신 인프라로는 법무부가 전국의 각급 법원에 산재한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1970년 법률개정을 통해 법무부장관이 국가·행정소송을 수행·지휘하는 권한을 전국 검찰청에 분산 위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송무체계로는, 국가송무의 규모 증대 및 전문화,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통신수단 발달 등 현대의 급변하는 송무환경에 효율적·통일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청에 분산 위임되었던 송무역량을 50년 만에 다시 법무부로 집중함으로써, 급변하는 송무환경에 효율적·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송무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성과

국가송무체계는 급작스러운 체계 변화로 인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업무 수행

인력과 조직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는데 있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다. 1단계에서는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우선 이관하고, 2단계에서는 국가소송 지휘 권한까지 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9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선 작업을 추진하였고, 검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끝에, 2020년 12월 28일 국가송무체계 개선 방안 1단계를 시행하게 되었다.

3) 주요 내용

국가송무체계 개선 방안 1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모든 행정소송에 있어 법무부장관이 각 행정청의 장을 지휘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소송은 기존과 같이 검찰에서 수행 및 지휘하되, 소송 지휘 중 법령에 따라 상급 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소가에 따라 승인권자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나뉘어있던 과거와 달리 법무부장관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법무부에서 국가송무 업무를 수행하던 1개 과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법무부로 이관되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검찰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공익법무관 및 수사관들을 법무부로 옮겨와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기존의 1개 과였던 국가송무과를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송과로 분리하여 확대·개편하였고,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을 신설하여 2개 과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4) 평가 및 향후계획

국가송무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소송 지휘의 통일성·효율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의 송무 전담 인력을 통해 소송지휘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전문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소송의 경우, 현재에도 검찰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소송수행청을 지정하여 지휘하는 형태로 수행 중에 있으나, 그 중에서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대상 사건이 소가 10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 사건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무부에 의해 통일적으로 지휘될 수 있는 사건 영역이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종전의 “소송수행청 ⇨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 법무부”라는 승인 절차에서, “소송수행청 ⇨ 관할 검찰청 ⇨ 법무부”로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승인·지휘체계를 구축하였다.

실례로, 약촌오거리, 삼례슈퍼 살인사건과 같이 위법수사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경우 소가 10억 원 미만 사건이었지만 국가송무체계 개선에 따라 모두 법무부 승인 대상 사건이 되었고, 법무부는 1심 국가 패소 판결에 대해 통일적으로

항소 포기 승인을 지휘한 바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종전의 "소송수행청 ⇨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 법무부"라는 지휘 체계가 "소송수행청 ⇨ 법무부"로 일원화되어 소송수행청과의 직접 교류를 강화함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검토 및 통일적 소송 지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지휘 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의 지역적 관점에서 벗어나 조세·공정거래 등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법무부의 내부 지휘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소송지휘의 전문성 향상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출범한 국가송무체계 개선 방안 1단계가 안착되도록 하는 한편, 검찰이 수행 중인 국가소송의 지휘 권한까지 법무부로 이관하는 국가송무체계 개선 방안 2단계 개편을 관련 실무·제도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나.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 시행

●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배정범

1) 추진배경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의 관행적 상소를 방지함으로써 소송 지연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과거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인권침해 관련 배상소송의 경우 무리한 상소를 자제하고 소송의 조기종결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을 통한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2)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 시행

2018년 1월부터 재심 무죄 확정된 과거사 국가배상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전보를 위해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의 시행을 위해서 과거사 사건의 패소원인 및 위자료 금액을 사건 유형별로 분석하고, 배상책임의 성부 및 적정 위자료 금액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일선에 배포하였다. 또한 자체 기준에 따라 무리한 상소를 자제하고, 화해·조정·청구인낙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상소기준 정비

2018년 1월 최근 3년간 주요 패소사례에 대한 법리를 분석한 소책자를 발간, 소송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배포 및 교육하였으며, 최근 5년간 과거사 국가배상 판례의 위자료 금액 분석을

통해 유형별 적정 위자료 기준을 수립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주요 패소사례 및 위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소권 적정행사 업무처리 지침」(상소기준)을 개정하였다. 현재 법무연수원에서는 각 소송수행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가·행정소송 주요 패소사례 및 공통법리'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4) 중요사건 관리 강화

2017년 11월부터 일선청 실정에 맞도록 중요사건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향후 중요사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시하였으며, 소송개시 단계부터 소송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수시보고 체계를 갖춤으로써 지휘청의 소송지휘권을 강화하였다.

한편 2018년 2월부터는 법무부에서 직접 취합·정리한 전국 중요사건 목록을 토대로 하여 중요사건의 소송진행상황 점검 및 소송지휘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5) 추진성과

절제된 상소권 행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면서 자연스레 상소율이 감소하였고('16년 국가소송 상소율 31.4%, 행정소송 상소율 45.0% → '21년 국가소송 상소율 22.7%, 행정소송 상소율 38.6%), 현재까지 상소율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의 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불필요한 상소를 자제하는 등 적정한 국가소송 승인권한을 행사하였다. ('21년 주요 사례: ①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지급의 재판상 화해 효력이 정신적 손해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 및 그 기속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상소취하 승인 등 조치, ② 약촌오거리, 삼례슈퍼사건 등의 항소 포기 승인, ③ 故김홍영 검사 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1심의 조정 이의신청 포기 승인 등)

6) 향후계획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관행적 상소를 방지하고, '국가송무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송무의 수행·지휘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상소권의 적정행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상소권 행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일선청을 지휘·감독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송무 교육 출강, 송무지도점검, 소송총괄관 회의 및 송무 담당 법무관 워크숍 등 일선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소권 적정 행사 관련 선순환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합리적 상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다. 송무업무 실적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강형광

1) 국가소송

국가송무 체계 개선 이후 법무부 승인대상 사건은 전체 국가소송 사건 중 24.9%를 차지하게 되어 국가송무 수행에 있어서 법무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한편, 국가소송 패소율은 검사·공익법무관 등 법률전문가에 의한 국가소송 직접수행, 전국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법무연수원 국가송무과정 소송수행자 교육, 소송총괄관 회의, 송무지도점검 등 송무수행 역량 강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9년과 2020년 각각 전년대비 0.4%p, 0.3%p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0.9%p 감소하였다.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12〉와 같다.

2) 국가배상 신청사건

국가배상신청사건(「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사건 포함)은 1992년 이후 다소간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 12. 29. 「국가배상법」 개정(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이후 대폭 감소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7,394건을 접수하여 그 중 779건을 인용하고, 2,253건을 기각하는 등 총 3,228건을 처리하였다.

라. 소송수행 역량 제고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강형광

1) 국가송무 수행자 교육 실시 및 출판물 개정·발간

법무부는 국가송무 수행자의 송무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예정되었던 집합교육이 취소되는 등 교육 실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에 대응하여 온라인 기반으로 교육 방식 전환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에 강의를 등록하고, 우정공무원교육원, 해양수산부 등에서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실시하는 등 중단없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2021년에는 국고손실 환수소송 매뉴얼과 국가송무 현황 등 출판물을 개정·출간하고, 각급 검찰청 및 소송수행청에 배포하여 국가송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송무지도점검 실시

소송업무 수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송무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인천지검(5월), 대전고검(6월), 청주지검(6월), 울산지검(10월), 서울고검(11월), 대구고검(12월) 총 6개 검찰청에 대하여 국가소송·국가배상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지도점검을 통하여 각 고·지검이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법무부의 훈령·예규 및 지시·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고 미비점을 찾아내어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수검대상 고·지검은 법무부의 지적 사항을 수용, 개선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소송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제고하였다.

3) 전국 소송총괄관 회의 개최

2021. 12. 15. 전국 중앙행정기관 소송총괄관 33명이 참석하여 일선 소송수행청의 송무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송총괄관 회의를 진행하였다. 법무부에서는 국가송무체계 개선의 성과와 국가송무 최신동향, 소송비용 회수 지휘 절차 개선, 국고손실 환수송무 활성화 방안 등의 관하여 설명하고 각 기관 소송총괄관들의 질의에 답하였다. 또한 국가송무 수행 관련 애로사항·건의사항을 기탄없이 논의하여 법무부와 일선 소송수행청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송무업무유공자 포상

각급 행정청 소송수행 공무원을 격려하고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2011. 5. 3. 시행)에 따라 송무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송무업무유공자 총 101명(국가소송 55명, 행정소송 46명)에 대하여 3,0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5)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2008년 출범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행정·민사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의 수행을 통하여 국가재정 손실방지 및 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에 기여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공단의 2021년 수임사건은 1,802건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고, 본안 사건 평균 승소율은 73.5%로 전년 대비 2.1%p 감소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단의 전문적인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마. 국고손실 환수송무 적극 추진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강형광

1) 개요

2015. 9. 22. 출범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환수소송의 적극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 상대 입찰담합 사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등 의결서 및 부패비리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을 검토하고 환수가능 사례를 발굴하는 등, 국고손실 환수소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환수실적

2021년,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환수가능 사례 발굴 및 소송 지원 등을 위해 우정사업본부 등 유관기관과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각급 검찰청 등의 업무협조를 통해 입찰담합 관련 의결서·판결문 및 형사판결문 등 기록을 검토하여 입찰담합 사건 2건, 부패·비리 사건 36건 등에 대해 소관 행정청과 협의하여 환수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2021년에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공사 입찰담합 사건, 국가인터넷지도사업 입찰담합 사건, 지자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담합 사건, 국군재정관리단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 우체국 보험사기 사건 등에서 합계 102억 3,994만원을 환수하였다.

3) 향후계획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수사례 발굴을 위해 소관부처, 관계기관 및 각급 검찰청과 상시적 협업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학계 등과의 교류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환수소송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바. 코로나19 컨트롤 타워 구성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서려

1) 개요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하여,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위반, 방역 방해 등을 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등 엄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기하는 소송의 경우 국가소송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권한은 없으나, 법무부는 손해배상청구의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정한 소권의 통일적 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추진현황

법무부는 2020년 4월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매뉴얼을 유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고, 2020년 12월 개정판을 추가 배포하였다. 2020년 9월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소권 행사에 있어서 적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2021년까지 총 4번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법무부 및 협의체 구성원들은 위 전체회의에서 통일되고 적정한 소 제기 기준 마련, 입증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2021년 3월, 소송에서의 쟁점이 유사한 기관 간에 별도의 소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 및 필요 입증자료 확보 논의를 진행하였고, 2021년 5월, 6월 두 번에 걸쳐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소개하고 코로나19 소송 관련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코로나19 관련 적정한 손해배상 청구 기준 정립을 위하여,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협의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2021년 12월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을 마련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관련 책자를 배포하였다.

3) 향후계획

향후 코로나19 관련 소송 선고 결과, 변경된 방역수칙 내용, 협의체 참여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 및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 참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별·지역별 소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가소송의 지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송에 대한 법률지원 등 손해배상청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정부법무공단을 통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선

국가소송과 검찰사무관 유영걸

1) 개요

국가송무는 매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사 소송, 비행장 소음소송, 세월호 사건 관련 소송, 구로농지 관련 소송 등과 같이 국가재정이나 중요 정책, 국민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2011년 5월 민사소송에 이어 2013년 1월 행정소송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국가송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NDSL)'을 구축하고, 2012년 12월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전면 시행하였다.

| 그림 2-54 |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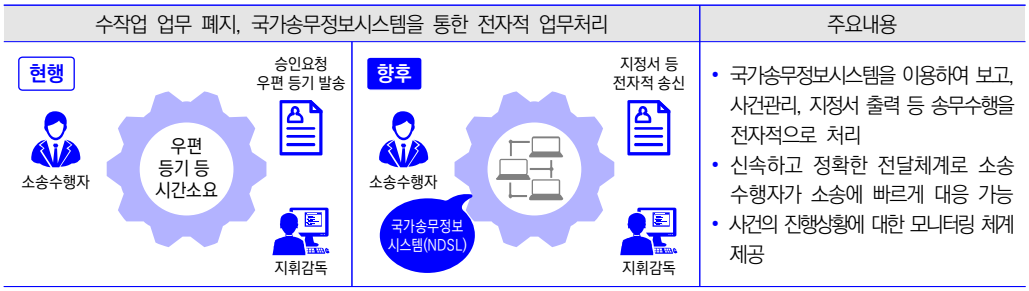

2) 추진내용

법무부는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업체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계약을 체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소송수행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소송수행 역량을 제고하여 왔고, 2021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소송 지휘권한이 각급 검찰청의 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송무정보시스템 데이터 현행화(검찰 사건번호→법무부 사건번호) 및 기능 개선을 수행하였다.

3) 기대효과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기반구축 및 행정기관 확대·시행으로 국가송무의 통일적·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송무 관련 법령·판례·선례·논문 등 정보의 축적을 통하여 소송 대응 및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송수행청의 국가송무 수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그에 따른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고도화 사업 등 사용자 편의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의 오류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즉각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활용률을 제고하는 등 대국민 송무 관련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아. 친일재산 환수송무 적극 추진

●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강형광

1) 개요

법무부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담당해왔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10. 7. 12. 이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업무를 승계하여 수행하고 있다.

2) 추진내용

위원회 활동 종료 후 법무부가 수행한 친일재산 환수소송(국가소송) 23건 중 18건이 국가승소로 종결되었으며, 5건이 진행 중이다.

2021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총 4건을 제기하였으며, 그 중 1건이 승소 확정되었고 나머지 사건은 진행 중이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보유 토지에 대한 보전처분 5건을 신청하여 모두 인용결정을 받았다.

3) 향후계획

법무부는 정확한 법리검토를 통한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환수소송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하여 친일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17.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대응 업무의 효율적 수행

행정소송과 행정사무관 최신아

가. 개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절차로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처럼 행정소송은 소송의 형태가 다양하고 소송유형별 독자적 법리가 적용되는 등 다른 법률분야에 비해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나아가 행정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소송 사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법무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행정소송의 주무부처로서 급변하는 행정소송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 12. 28. 전국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에 위임된 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였으며, 송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행정소송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원적이고 통일적인 소송지휘를 통하여 각 행정청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소송지휘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행정법 검토 등 유관 행정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송무업무 실적(일관성·통일성에 기한 행정소송 지휘·관리)

1) 개관

국가송무체계 개선으로 전국 검찰청에 위임되어 있던 행정소송 승인·지휘 권한이 모두 법무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행정소송 지휘, 중요 사건 지정 관리, 정보 보고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가 직접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10. 국가송무의 효율적·통일적 수행 – 가. 국가송무체계 개선 추진 부분 참고)

2021년 진행 중인 행정소송 사건은 약 41,000건 가량으로, 이 전체가 법무부의 지휘 대상이다. 종전 14개 각급 검찰청이 중요사건으로 관리하던 사건들을 일별하여 법무부 중요사건으로 전환하고, 2021년 말 기준 본안 사건 160여건을 지정하였으며, 각 지역별 중요 현안 중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쟁점·법리가 요구되는 사안, 통일적·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주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2021년 행정소송은 40,978건으로 전년 대비하여 8.6% 증가하였다. 행정소송사건 접수건수는 2013년 일부 감소한 것 외에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16〉과 같다.

2) 주요 수행·지휘 사례

가) 故 OOO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1) 개요

피고 육군참모총장은 원고 故 OOO 하사가 이른바 '성확정 수술'을 통해 고환 및 음경을 제거하자 원고의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을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최종 3급으로 판정하고 동 규칙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심신장애 전역(퇴역)'으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전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경과

○ 2020. 8. 11. 원고 소 제기

○ 2021. 10. 7. 제1심 판결선고기일 **[원고 승소]**

(3) 법무부 지휘 사항

수행청(피고) 측은 당초 제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지휘를 요청하였으나, 법무부는 사안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처분의 적법성, 항소 시 승소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소 포기를 지휘하였다.

(4)《국가송무 자문위원회》설치 추진

이후 본 사안과 같이 법적 쟁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 송무심의관 뿐만 아니라 국가소송 등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법리적 적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국가송무 자문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설치·운영할 것을 추진하였다. '22. 1. 24. 「국가송무 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이 발령·시행 중이다.

나) △△ 그룹 부당지원 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1) 개요

원고인 △△◇◇ 동제련 등 △△ 그룹 계열사들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법인을 신설하고 위 신설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약 237억 원의 부당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약 2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는 위 시정명령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경과

○ 2018. 9. 21. 원고 소 제기
○ 2021. 7. 22. 판결선고기일 **[피고 일부 패소*]**
○ 2021. 7. 30. 피고 상고 제기**
○ 2021. 8. 11. 원고 상고 제기

*** 처분사유 인정, 과징금 일부 감액 취지**
**** 과징금 산정 방식 부분 상고**

(3) 법무부 공동수행 내용

법무부 행정소송과는 동 사건이 이른바 '통행세' 관련 유형의 리딩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공동 수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소송수행자로서 수 회 서면을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측 소송대리인 뿐만 아니라 동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와 함께 소송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처분의 적법성 입증에 만전을 기하였다.

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 개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에 대하여 舊「법인세법」제93조 제8호를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기업이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국내원천소득이 아님을 이유로 위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다수 제기되었다.(■■전자, ◆◆인코퍼레이티드, ▽▽▽▽ 소프트, A▼▼▼ 등)

(2) 법무부 지휘 내용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의 특허권의 "사용"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이 선고되었고 각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여 수행청(피고) 패소 취지의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으나,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관련 규정의 문언과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행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상소 지휘하였다.

라) '제19대 대선 후보 캠프 사찰 의혹 문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 개요

원고는 피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게 제19대 대선 당시 舊 국군기무사령부가 각 후보 캠프를 사찰하여 작성하였다고 의심되는 문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경과

○ 2020. 3. 4. 원고 소 제기
○ 2021. 6. 25. 제1심 판결선고기일 [피고 일부 패소]
○ 2021. 7. 8. 원고 항소 제기
○ 2021. 7. 11. 피고 항소 제기
○ 2022. 1. 14. 항소심 판결선고기일 **[항소 기각]**

(3) 법무부 지휘 내용

수행청(피고) 측은 당초 제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취지로 지휘를 요청하였으나, 법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 제기의 실익이 없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특수성,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고 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상고 포기를 지휘하였다.

3) 소송수행청과의 교류 강화 (지도 점검 강화)

소송수행청의 송무업무 적정성을 지도·감독 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청을 정기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소송업무의 적정성·적법성을 제고하고 있다. 주요 소송수행청을 방문하여 소송업무 수행 실태(기록관리상황 확인,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소송비용 회수현황 점검 등) 를 조사·점검하고, 의견 청취를 통하여 수행자의 건의·개선 사항 파악하여 소송 수행청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도를 지향하고 있다.

2021년도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7개 기관에 대한 송무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주요 소송수행청, 소송수행해태가 빈번한 기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송무지도점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송무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송수행청과의 교류 및 송무지도점검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다. 헌법재판 업무

1) 개요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의 해석·적용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헌법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내리는 판단으로서 이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확립하여 왔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헌법소송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뿐만 아니라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사건에서도 의견서 작성 및 검토 등을 담당하며, 권한쟁의 사건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정부를 대표한다. 또한 의견서 작성, 각종 회의 개최 및 참석 등 유관 행정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재판에서 정책과 입법의 정당성 등 정부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왔는바 앞으로도 국가정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그것이 헌법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2) 헌법재판 직접 수행

법무부 알림 제2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주요 심의결과 위헌확인(2021헌마125),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위헌소원(2020헌마1298),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등(법률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사건, 2021헌마619) 사건에서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법무부의 자체의견 제출은 총 72건이다.

3)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로서, 2021년에는 총 19건이 처리되어 그 중 합헌 9건, 각하 2건, 위헌 6건, 헌법불합치 2건이 선고되었으며, 그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법원의 치료감호 청구 요구에 대해 검사가 응할 의무 규정하지 않은 조항) 위헌제청 (2021. 1. 28. 2019헌가24, 2019헌바404 병합) : 합헌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훈련 미참여 처벌 조항) 위헌제청 (2021. 1. 28. 2013헌가13, 2013헌가 6 병합) : 각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최연장자 한정 조항) 위헌제청 (2021. 3. 25. 2018헌가6) : 헌법불합치
-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공단 직원 전원 선거운동 금지) 위헌제청(2021. 4. 29. 2019헌가11) : 위헌

4) 헌법소원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21년에는 총 2,600건이 처리되어 그 중 합헌 등 333건, 각하 등 2,210건, 위헌 등 57건이 선고되었으며, 그 주요사건은 다음과 같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2021. 1. 28. 2020헌마264) : 기각
- 〈2021년도 검사 신규임용 계획〉 공고 위헌확인 (2021. 4. 29. 2020헌마999) : 기각
- 「변호사법」 제32조 (계쟁권리 양수 금지) 위헌소원(2021. 10. 28. 2020헌바488) : 합헌
- 舊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만 19세 미만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물의 신뢰관계인 진정성립 인정 조항) 등 위헌소원 (2021. 12. 23. 2018헌바524) : 위헌

18. 통일 대비 법적·인적 기반 구축

가. 통일 대비 법제연구 지속

통일법무과 서기관 한경태

1) 추진배경

비록 남북관계의 정체 국면이 계속되고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남북간 교류협력이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준비하고 주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선제적인 법제 정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추진내용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를 통일법무 자문,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개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주제로 3개의 소위원회 체제로 운영하며 각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2021년 12월에는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제49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각 소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다.

| 그림 2-55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통일법무 자문 소위원회 대면 회의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개정 소위원회 화상 회의

| 그림 2-56 |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법무부장관 강연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관련 법령 제·개정안 90여건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남북관계와 교류협력 법제 정비에 참고하고자 키프로스의 통일협상과 교류협력 경과를 충실히 분석하여 「분단국 통일협상 연구: 키프로스 편」을 발간하였고, 북한의 체제 전환 및 통일 대비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The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의 2020년 활동내역을 검토하여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2020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통일법무과는 2017년까지 7차례에 걸쳐 남북관계의 현황, 남북합의서와 공동보도문, 통일방안,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 등을 상세히 담아 「통일법무 기본자료(남북관계)」라는 자료집을 발간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2017년 이후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합의서와 그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 남북교류협력 법제의 개정내용을 보완하여 「2022 통일법무 기본자료(남북관계)」를 발간하였다.

| 그림 2-57 | 연구자료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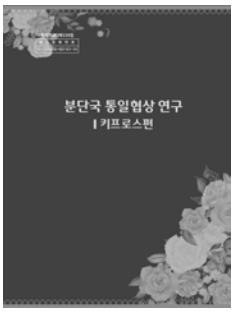

분단국 통일협상 연구: 키프로스 편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2020년 연례보고서



2022 통일법무 기본자료(남북관계)

한편, 2010년 2월 창간한 통일법 전문 학술지(계간지) 「통일과 법률」을 2021년 2월 제45호부터 11월 제48호까지 발행하여 통일법제 연구의 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특별히 「통일과 법률」은 2021년 11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결과 국내 통일법 분야 학술지 중 최초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2021년 11월, 디자인, 구성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통일과 법률」 제48호를 발행하였다.

| 그림 2-58 | 「통일과 법률」 등재학술지 선정



「통일과 법률」 제48호


법률신문

법무부

'통일과법률', 통일법 분야 첫 등재학술지 선정

「통일과 법률」 등재학술지 선정 관련 언론보도

3) 주요성과 및 평가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남북관계 관련 법령 제·개정안 검토, 「통일과 법률」 발간 등을 통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대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나.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통일법무과 행정사무관 장윤정, 행정주사 박보경

1) 추진배경

남북관계의 변화와 통일에 대비하여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룰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하여 통일법제 연구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통일법무과는 매년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진행하며 통일법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2) 추진내용

법조인, 로스쿨생 등을 대상으로 통일법제를 교육하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의 제10기(2021년 5 ~ 6월)와 제11기 과정(2021년 10 ~ 11월)을 운영하였다. 특별히 제10기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설 8주년을 맞아 심화과정으로 구성하여 '통일 대비 입법정책 구상', '남북한 분쟁 해결방안' 등 통일법제 관련 심화교육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前 북한 검사와의 소통 시간도 마련하였다.

일반 과정으로 진행된 제11기 과정에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통일에 대한 법무부의 비전을 공유하였다. 이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설 이래 최초의 법무부장관 강연이었다. 두 기수의 아카데미가 운영되며 수강생은 제10기 68명, 제11기 72명이 수료하여 2014년 개설 이후 누적 수료생이 총 547명에 이르게 되었다.

| 그림 2-59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포스터



제11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포스터



제11기 통일과 법률 법무부장관 강연



"통일법제 연구에 법률가들 적극 동참해야"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朴 법무장관, 첫 날 강연

제11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언론보도

2021년 6~10월에는 '제3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1회 개최되는 논문 공모전은 통일법제 및 남북교류협력법제 관련 자유 주제로 응모가 가능하다. 약 4개월간 다수의 논문들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거쳐 2021년 10월 최우수상 1편(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남북한 법적 협력 방안)과 우수상 2편(유럽연합 특허패키지를 통해 살펴본 남북 특허 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북한의 「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수상작들은 「통일과 법률」 제48호에 게재하였다.

| 그림 2-60 |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제3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포스터



제3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시상식



제3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 관련 언론보도



법률신문

'남북통합해양오염관리법제' 서하정씨 등, 통일법제 우수논문전 최우수상

제3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
최우수상
2,000,000원

제3회 통일법제 논문 시상 관련 언론보도

3) 주요성과 및 평가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하여 통일 대비 법률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하고 통일법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대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다. 통일법제 네트워크 국제화

통일법무과 행정사무관 이예은

1) 추진배경

북미관계 등 국제적 역학관계의 영향을 받는 통일 준비 환경을 고려하여, 그동안 국내에 축적된 남북 법제통합 연구 실적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연구의 전문성 홍보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법제 구축을 위한 공감과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추진내용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의 영문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2021년 2월 개발을 시작하여 업로드할 주요 연구자료를 추출하고 그 초록을 영문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2021년 12월, 약 530여 건의 논문 및 연구자료의 영문초록을 게재한 영문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더불어,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관련 정책, 법제연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통일법제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 5월에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통일법의 국제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및 통일법제 국제화 기반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다수 수행하였다.

| 그림 2-61 |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영문사이트 개설 및 통일법제 국제화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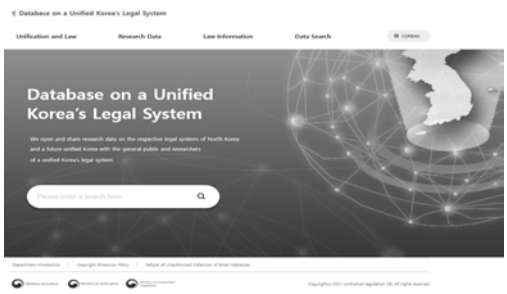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영문 사이트



학술대회 개최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국제화 기반 구축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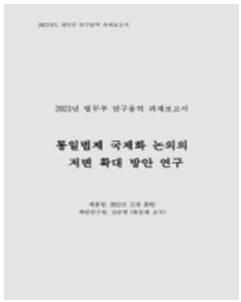

통일법제 국제화 논의의 저변 확대 방안 연구

한편, 법무부는 2006년부터 '베니스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참가하여 유럽의 법률가, 법학자, 관료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왔다. 2021년 10월, 대면과 화상회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된 제128차 정기총회에는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참석하여 세르비아, 헝가리를 비롯한 유럽 체제전환국의 헌법, 국민투표 관련법 등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 그림 2-62 | 베니스위원회 제128차 정기총회



베니스 현지 회의 모습



법무부차관 화상 회의 참석

나아가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주한 독일 및 오스트리아 대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통일법무 수행을 위한 양국간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였고, 특별히 통일의 경험을 가진 독일과 동서독간 통합법제의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비하는 법무부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 그림 2-63 | 주한 독일 및 오스트리아 대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주한 독일·오스트리아 대사 업무만찬



주한 독일 대사 관저 초청 오찬

2021년 11월에는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한반도와 통일 문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우드로 윌슨 센터의 관계자들과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국제화와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 그림 2-64 | 미국 워싱턴 D.C. 국외출장



우드로 윌슨 센터 관계자 면담



CSIS 관계자 면담

특별히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미국 출장을 기획하여, 2021년 11월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초청 강연, 맨스필드 재단 대표와의 대담, 코리아소사이어티 임원진과의 간담회 등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유수의 학술·연구기관과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 통일법무를 소개하고 법률과 법률가들이 견인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였다.

| 그림 2-65 | 법무부장관 미국 국외출장 기획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초청 강연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초청 강연



맨스필드 재단 대표 대담



코리아소사이어티 간담회

3) 주요성과 및 평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관련 정책, 법제연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통일법무와 관련 연구자료를 영문으로 공유하고 관련 학술회의, 연구용역, 공무출장 등을 진행하여 통일법제 국제화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19. 북한주민 가족관계·상속재산 관리

통일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태희, 법무관 송현석

가. 추진배경

법무부는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형성된 북한주민의 재산에 대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2012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8년이 경과하며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규모가 증대하고 재산관리인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법령 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나. 추진내용

2021년 3월부터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산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운영하며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과 유사 입법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추가적인 자문 및 연구용역을 통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2021년 5월에는 재산관리인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계좌와 부동산 관리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금융기관과 재산관리인 간 표준계약서를 도입·시행하였고, 2021년 8월에는 법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각종 불허가 통보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였다.

2021년 9월에는 남북한 주민의 공존을 위한 법무부의 역할과 이산가족 재산권 문제의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분단국이었던 독일의 재산관리 사례 등 분단국 주민간 재산관리 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다.

| 그림 2-66 | 법무부장관-주한 독일대사 간담회 및 국제학술대회



법무부장관-주한 독일대사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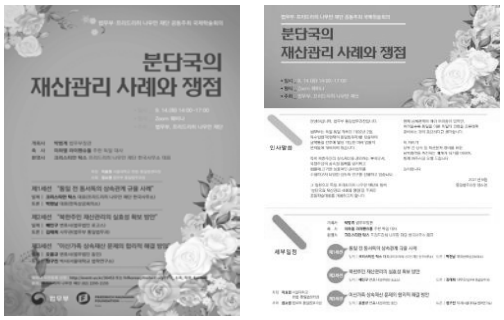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및 초청장



법무부-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법무부-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법무부-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북한주민 재산관리 관련 언론보도

다. 주요성과 및 평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 운용상 확인된 제도 보완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소위원회 운영, 연구용역, 학술대회 등을 통해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의 입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이산가족 재산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20.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 강화

통일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태희, 행정사무관 이예은

가. 추진배경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이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이다. 특히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 생활에 밀착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내용

1)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 정식 시행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곤란, 질병,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변호사를 1:1로 매칭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생활 속 법률문제를 파악하여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0년 7월에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1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7월, 21개 하나센터에 34명의 지원변호인을 위촉하며 정식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2021년 8월 지원변호인과 하나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진행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와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구체적인 법률지원의 수요와 내용 등에 대한 강의 등을 통해 1:1 밀착 지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지원 변호인들은 최소 2주에 1회 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연락하여 당면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필요한 법적 지원은 물론 지원대상자의 일상을 공유하며 미처 파악하지 못한 법적 이슈를 파악하였다. 2021년 12월 기준 전국 총 25개 하나센터에 43명의 지원변호인이 위촉되었고, 북한이탈주민 27명이 매칭되어 있다(종결 건 포함 29건).

| 그림 2-67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 정식 시행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촉식



언론보도

2)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및 법률교육 제공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무담당관'이 전화 및 통일법제 DB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국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상시 제공하였다. 2021년 8월에는 신규 상담내용을 반영하여 『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하여 통일부, 하나재단 및 하나센터, 하나원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 및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교육을 위하여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들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법의 중요성', '민사·가사 관계에서의 권리구제' 및 '조심해야 하는 범죄유형' 등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 그림 2-68 |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홈페이지 및 법률상담 사례집



북한이탈주민 온라인 법률상담 홈페이지



202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다. 주요성과 및 평가

지원변호인 제도의 정식 시행을 통해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법률복지를 확대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방문 교육, 유선·온라인 법률상담,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치주의 적응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21.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윤화섭

가. 상법개정

1) 주요 추진 경과

법무부는 경제민주화와 혁신성장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기 위한 '공정경제'를 실현하고자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을 위하여 2017. 10월 ~ 2018.12월 '상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5차례에 걸친 회의 후에 마련된 상법특별위원회안을 참고하여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무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2020. 8. 31.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0. 12. 9.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해 12. 29. 개정 상법이 공포·시행되었다.

2)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법무부에서 추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개정 상법의 주요 쟁점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정비 등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 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나, 감사위원 중 일부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선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정비는 감사위원 등 선임시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및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개선이다.

나. 개정 상법의 안정적 시행

1) 상법 개정 후 주주총회 현황

'21년 주주총회 개최 현황을 살펴 보면, '21. 3. 31.까지 2,103개(유가 757, 코스닥 1,346)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중 93.6%에 해당하는 1,953개사가 정상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주총 안건이 부결된 회사는 총 135개사(6.4%)로, 최근 3개년 현황 중 가장 양호한 수치이다. 한편, 부결 안건(135개사) 중, 감사(위원) 선임의 안건이 부결된 회사는 75개사인데, 이는 '20년 315개사에서 대폭 감소한 수치로, 개정상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는 감사(위원) 선임시 완화된 의결권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위원) 부결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 평가 및 발전 방향

기업지배구조 개선「상법」개정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의 정상화,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실현하여 기업의 투명경영·책임경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실무적으로도 '21년 주주총회 등을 통해서 소수주주들이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개정상법의 안정된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기업하기 좋은나라', '투자하기 좋은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2.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효선

가. 기업환경지수 개선 목적 및 필요성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190개국의 기업환경지수를 평가하여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환경지수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소수투자자보호, 계약분쟁해결절차, 자금조달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지수화 한 것으로 매년 10월 경 분야별 순위 및 종합 순위가 발표된다. 법무부는 10개 분야 중 4개 분야(소수투자자보호, 계약분쟁해결절차, 자금조달, 도산)를 담당하고 있다. 기업환경지수는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국 선택과 관련한 주요 참고 자료로 해외

자금의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

2019. 10.까지 발표된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대상 190개국 중 6년 연속하여 종합순위 5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어 세계 190개국 중 2위를 지켰다. 이는 법무부가 2011년부터 기업환경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세계은행에 개선 내용을 설명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다.

한편, 법무부는 독일, 일본, 뉴질랜드 등 각 분야에서 순위가 높은 국가를 선정하여 해당 국가 및 국내 법률전문가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회의를 진행하였고,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의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해외 입법 사례들을 참고하여 기업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와 같은 법제 개선 현황을 국제기구 및 여러 국가 전문가들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였다.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와 의견교환 등 노력의 결과로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표 2-22 | 2020년 기업환경지수 주요 국가 종합순위

국 가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일본
순위	1위	2위	3위	5위	6위	8위	29위

| 표 2-23 | 2020년 기업환경지수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 주요 국가 순위

국 가	싱가포르	대한민국	노르웨이	미국	러시아	영국	일본
순위	1위	2위	3위	17위	21위	34위	50위

* 2021년 기업환경지수 결과 미발표

나.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방안 모색

법무부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1. 12. 3.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2021년도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다.

본 회의에는 유엔상거래법위원회 관련 전문가, 세계은행그룹 전문가, 국제사법위원회 등 여러 국제기구 전문가와 독일, 일본 및 뉴질랜드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 등 총 40여 명이 현장 및 화상으로 참석하여 기업환경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각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림 2-69 | 2021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법무실장 축사

23. 스타트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상사법무과 서기관 강신형

가.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법무부는 경제 주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 1. 21. 상사법무과장을 단장으로 하여 검사 1명, 사무관(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3명으로 구성된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였다. 그 후 법무부는 2009. 3. 12.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구성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법무부는 2020. 7.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여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도산 관련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산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 25명을 추가 위촉하였다. 그리하여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2009년 법률상담 484건을 시작으로, 매해 수백건의 전화·인터넷을 통한 법률

상담을 처리해오고 있다. 그 중 실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자문단에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 23건(2019년 12건, 2020년 7건, 2021년 4건)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법률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수동적 법률지원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2010. 1월부터는 중소기업의 일선 경영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법무지식 강연 및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현장방문 강연 및 법률상담'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법률분쟁 상황에서 상시 참고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 단행본, 9988법률지원단 절차 안내 리플렛, 『법률분쟁 상황에서 점검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소책자들을 꾸준히 개정하여 발간하고, 이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대표적인 우수지원 사례로서 납품 업체의 계약 의무 위반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중소기업이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손해배상 및 계약이행 청구에 관한 지원을 통해 납품 업체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등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활동은 기업의 경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중소·벤처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법률리스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고 대응 능력이 떨어져 법률분쟁 발생 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용하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법률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2015. 8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였다. 특히 판교테크노벨리 등 법률지원 수요 증가가 집중되는 지역에 스타트업 관련 기업법무에 능통한 자문 변호사 37명을 추가 위촉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1.9월 스타트업 법률지원 수요가 높은 IT·지식재산 분야의 전문변호사 21명을 추가 위촉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자문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중이다.

우수지원 사례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이 경영 초기 단계에서 창업자간 동업 계약서,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아 이후 경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위험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다. 스타트업 법률지원 활성화

최근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제4차 산업혁명·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 육성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도 청년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조력하여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스타트업 법률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먼저 스타트업 CEO·대학창업지원단(한남대, 강원대 등) 등 창업 청년들과의 현장 대화를 통한 수요조사를 시작하여,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정부-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시스템 강화라는 명제로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시 필요한 법률지식 교육과 실제 발생사건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스타트업 법률지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그림 2-70 | '21. 7. 29. 〈스타트업 법률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간담회〉 개최



| 그림 2-71 | '21. 8. 23.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개최



24.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윤화섭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주행 중 차량 화재' 등을 계기로, 집단적 피해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현대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정보처리의 산업구조에서 위법행위 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 피해 구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시간·비용상 등의 한계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다수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예방하고자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증권 분야 외에도 확대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구제를 현실화 하여 이윤추구를 위해 위법행위를 감수하는 유인을 제거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국정과제).

법무부는 2020. 9. 28.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전면 확대도입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개시제·국민참여재판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안」과, 상인의 고의·중과실 행위에 대하여 실손해 대비 5배 한도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후 2020. 12. 1. 현장·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은 우리사회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사전 방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높여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엄격한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정부안으로 인해 촉발된 집단 소송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5. 전자어음제도 운영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윤화섭

가. 전자어음제도 개관

법무부는 2005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전자어음을 도입한 이래 전자어음의 정착을 추진해오고 있다. 기존 어음은 실물종이 어음으로 발행·유통되어 거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변조 위험과 보관·이동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전자어음제도는 2009. 11. 9. 및 2014. 4. 6.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약속어음 발행 시 전자어음 형태로 발행해야 하는 의무발행사업자의 범위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종이어음의 전자어음으로 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법령 정비와 홍보를 통해 도입 10여 년이 넘는 2021년에는 건수 기준으로 전자어음이 전체 어음 발행 건수 중 86.4%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만기와 배서횟수에 제한이 있는 전자어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단계적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현행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에서 5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시행하였다. ('21. 10.15. ~ 11. 29.)

나. 2021년도 전자어음 관련 통계

2021년도에 전체 전자어음은 133만건(전년대비 약 7% 감소), 1,432조원(전년 대비 60.26% 증가)이 발행되었고, 같은 기간 종이어음을 포함한 전체 약속어음에서 전자어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 86.5%(전년대비 0.93%p 증가) 금액 기준 70.87%(전년대비 10.86% 증가)의 추이를 보였다. 참고로 종이어음은 20만건(전년대비 13.8% 감소), 588조원(전년대비 1.25% 감소)이었다. 약속어음 전체 발행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전자어음의 활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1년의 경우도 역시 금융조달 수단으로 전자어음이 활발히 쓰여 그 발행금액이 전년 대비 큰폭으로 증가하여, 전자어음이 금융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수한 기업 간 결제 과정에서도 전자어음의 대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그림 2-72 | 종이어음·전자어음 발행건수 추이

(단위: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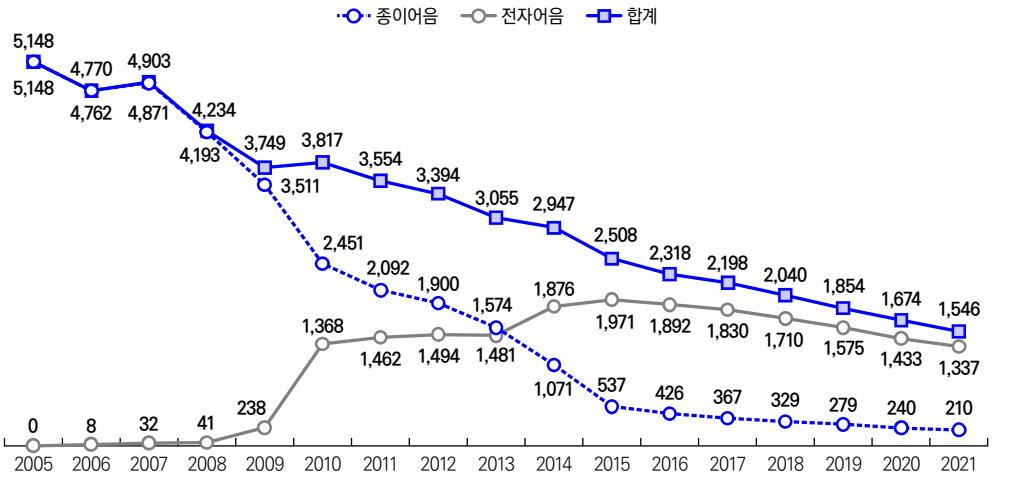

| 그림 2-73 | 종이어음·전자어음 발행금액 추이

(단위: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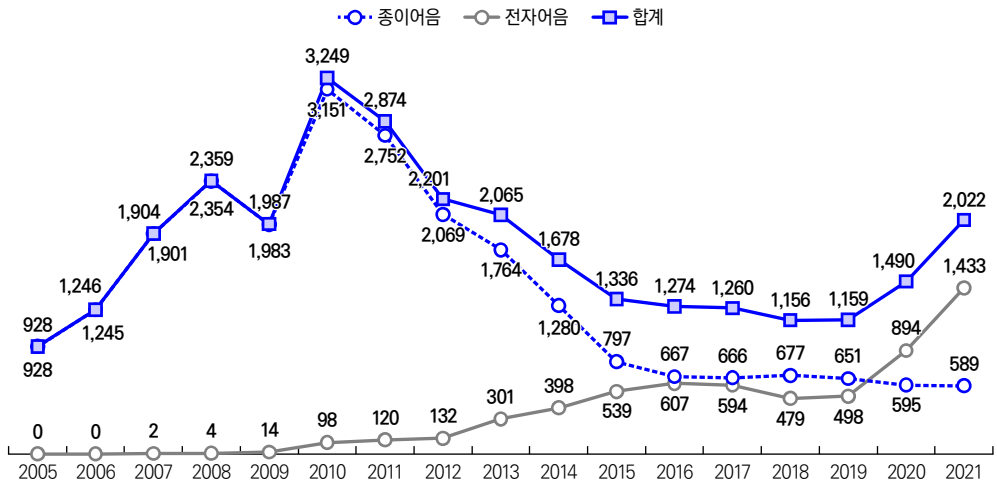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도입의 취지에 따라 전자어음의 종이어음 대체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전자어음을 포함한 약속어음 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 간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6. 전자증권제도 시행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윤화섭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19. 9. 16.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식·사채 등에 관하여 종이 실물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 및 거래현상을 선진화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 증권을 전자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2016. 3. 22.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을 제정하였고, 2019. 6. 25.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2019. 9. 16.부터 상장주식·사채 등을 전면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등 실물 없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였다.

2020. 9. 16. 전면 시행 후 법무부는 전자증권제도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 전면 시행 2년이 지난 이래로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제도 도입('19.9.) 후 2년 간 성과('21. 8. 31. 기준,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① 전자등록 자산 총 6,156조원 달성(시행 당시 대비 1,376조원 증가)
(전년 대비 1,055조원 증가)
② 전자증권 이용 발행회사(상장사 등) 총 2,831개사
③ 상장주식 실물주권 발행률 감소(2.8억주 감소; 발행주식총수대비 0.68%➜ 0.33%)
④ 비상장회사 이용 증가(616개사; 전체 비상장회사수 대비 4.0% ➜ 12.8%)
⑤ IPO 및 주주총회 등 절차 단축에 따른 비용 감소(약 58억원)
⑥ 실물주권 발행 절감액 약 185억원 절감

| 그림 2-74 | 전자증권제도 홍보 내용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차명주식 및 탈세 방지 등 권리관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회사 및 증권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ICT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전자증권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그림 2-75 |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 추정(출처: '14. 자본시장연구원)

연간 경제적 가치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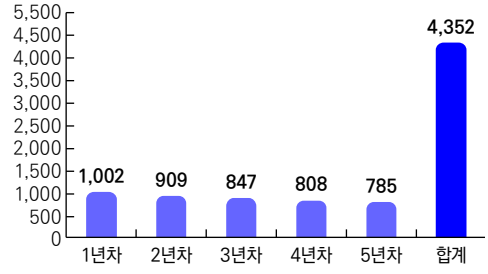

주요 비용절감 요인

구 분	주요 비용절감 요인
운용비용	• 실물증권 제조·교부·보관 • 실물 입출고 • 주주명부작성, 명의개서
위험비용	• 실물증권의 도난, 위변조
기회비용	• 신규발행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27. 중재산업 활성화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홍주영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내 및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하고,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법무부는 2016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2017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중재산업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여 세계적 규모의 분쟁해결시설인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중재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19. ~ '23.)」을 수립해 2019. 1. 1.부터 시행하였다.

| 표 2-24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
목표	중재산업 진흥을 통한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의 도약
4대 추진전략	9대 추진과제
1. 중재산업 기반 강화	1. 중재 전문인력 양성 2.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2. 국내중재 활성화	1. 중재제도 인식 개선 2. 중재제도 이용률 제고
3.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	1. 세계적 수준의 분쟁해결시설 운영 2. 중재기관 역량 강화 3. 신규 중재분야 발굴·육성
4. 국제중재 유치 확대	1. 국제중재 유치 전략 수립 2. 국제중재 유치 지원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는 현재 중재사건 심리장소, 중재 교육 및 각종 행사 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중재산업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1년에는 화상중재의 뉴노멀(New Normal)화에 대응하여 화상중재심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중재교육원 내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여 중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저변을 확대하였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 비대면·온라인 홍보를 더욱 강화하였고, 국제중재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21년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하여 실적이 개선되었다. 향후에도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중재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28.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상사법무과 서기관 강신형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4. 2. 29.「공익신탁법」을 제정하여, 2015. 3. 19.부터 시행하였다.「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법무부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해 TV·웹툰·해피빈 공익신탁 캠페인·라디오 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였다.

이에 2021년 말까지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 지원, 환경보호, 생활 SOC 등 다양한 목적의 공익신탁이 총 33개 설정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공익신탁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 11. 14.「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2019. 12. 6. 학계·실무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공익신탁제도는 보다 간이한 절차로 보다 투명하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법무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 개선 노력으로 보다 다양한 공익신탁 사업이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공익신탁 제도로써 기부문화가 활성화하고 결국 사회계층간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76 | 공익신탁 홍보 관련





| 그림 2-77 | 2021 공익신탁자문위원회



29.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상사법무과 전문위원 이보미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상사법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상사법제 마련을 위하여 전국의 상사법 연구자와 실무가들에게 관련 원고를 모집하고 이를 심사하여 1·4·7·10월 네 번에 걸쳐 『선진상사법률연구』 학술지(KCI 등재지)를 발간하였다.

2021년의 경우 1월에 발간한 통권 제93호는 홍복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2020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와 김경일(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회사의 대응책에 관한 연구』 등 논문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4월에 발간한 통권 제94호에는 이철송(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대표이사의 전단행위의 효력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판결"의 평석-』 논문 외 5편의 논문이 수록되었고, 7월에 발간한 통권 제95호는 현낙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의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에 관한 연구 -상법 제814조 제소기간 도과의 이익 포기 가부를 중심으로-』 논문을 비롯하여 총 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마지막으로 10월에 발간한 통권 제96호는 안태준(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의 『ESG 또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관련한 증권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이론과 사례 및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기고를 포함하여 4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선진상사법률연구는 발간 시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각 대학도서관, 경제단체·경제부처, 국회, 로펌 등에 약 600여부를 배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사법 연구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78 | 선진상사법률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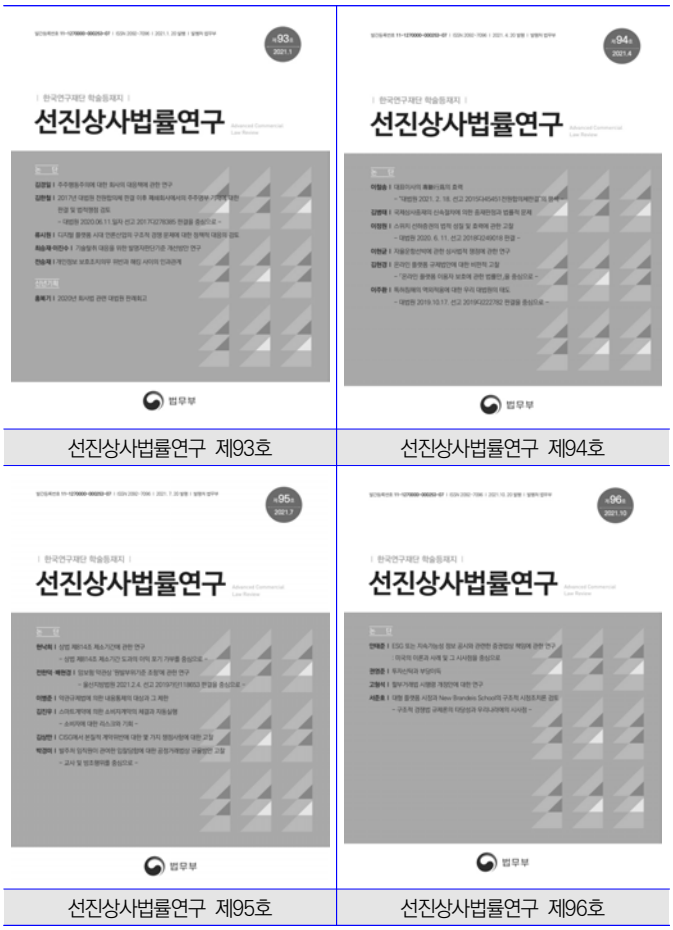

선진상사법률연구 제93호 | 선진상사법률연구 제94호

선진상사법률연구 제95호 | 선진상사법률연구 제96호

30. 선진법제포럼 개최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효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선진법제포럼'은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정보 수집을 위해 2007. 11. 결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학계·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가치를 선점하기 위해 스타트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1. 11. 26.「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와 사회자, 토론자 및 포럼 회원으로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오프 하이브리드 포럼으로 진행하였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포럼에서는 권종호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정대익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 안수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연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움), 전화성 대표이사(씨엔티테크 주식회사), 노미리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토론이 있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한회사제도 개선 등 상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그림 2-79 | 2021 선진법제포럼 개최



선진법제포럼 법무부장관 개회사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

31. 고금리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상사법무과 행정주사 박성원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코로나 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채 해소를 지원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기존 연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2020. 11. 여당 및 금융위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모색하는 당정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2020. 12. 30. 위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금융위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 시행령')과 동반하여 입법절차를 거쳐 2021. 4. 6. 개정된 후, 2021. 7. 7.부터 시행되었다.

나. 추진내용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혼란 방지 및 시장안정과 조속한 인하 효과 달성의 조화를 위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시행 전 기존 법률관계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시행 후 새로이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의 동반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인하되면서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39만명(2020. 3.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 추산). 법무부는 이번 법령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정 최고금리를 고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32.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도모

● 법조인력과 행정사무관 양동규

가.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

1) 시험 문제 합숙 출제 및 시험 시행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문제출제를 위하여 2020. 12. 23.부터 2021. 1. 9.까지 18일간의 합숙출제를 실시하였다. 변호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 출제를 위하여 교수, 실무가 등으로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적합한 합숙환경 및 보안을 위한 합숙시설·보안업체의 선정을 거쳐 합숙출제를 시행하였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전국 법전원 소재 대학 25개 시험장에서 2021. 1. 5.부터 1. 9.까지 시행되었고 3,497명이 출원하여 3,156명이 응시하였다.

양질의 법조인을 선발·양성하고 선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실 있는 변호사시험 제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 온 이전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관리 및 사전 준비로 단 한 명의 확진자·자가격리자 없이 안전하게 시행되었다.

2) 채점 및 합격자 결정

2021년도에도 채점위원별 채점편차의 최소화, 채점기준의 객관화를 위해 세트반복형 가채점 방식의 채점기준표 작성회의를 3일간 개최하였다.

그 외에 시험위원을 상대로 한 출제오류 사례 교육, 출제 과정에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분리를 통한 상호검증, 시험 정답 가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정답을 확정하는 등 문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법무부는 2021. 4. 21.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2021년도 제21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시자의 법률사무 수행 능력 검증 및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기수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표 2-25 | 역대 변호사시험 현황

변호사시험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응시자(명)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3,240	3,330	3,316	3,156
합격자(명)	1,451	1,538	1,550	1,565	1,581	1,600	1,599	1,691	1,768	1,706
응시자 대비 합격률(%)	87.2	75.2	67.6	61.1	55.2	51.4	49.4	50.8	53.3	54.1

| 그림 2-80 | 역대 변호사시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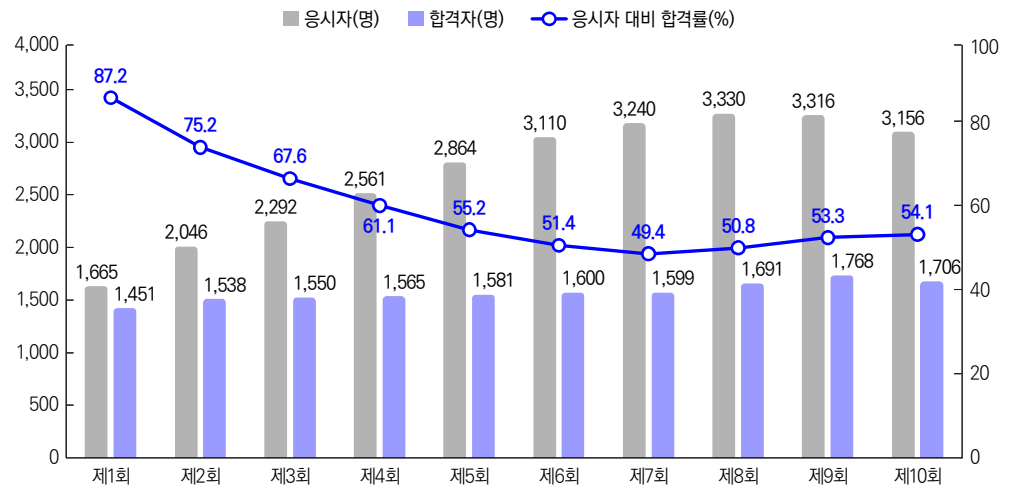

| 표 2-26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 합격률

입학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합계
석사학위 취득자 (누적, 명)	1,835	1,961	1,957	1,950	1,996	1,945	1,908	1,894	1,794	1,482	18,722
합격자 (누적, 명)	1,674	1,736	1,717	1,690	1,738	1,706	1,667	1,552	1,475	1,094	16,049
누적 합격률 (%)	91.23	88.53	87.74	86.67	87.07	87.71	87.37	81.94	82.22	73.82	85.72

| 그림 2-81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 합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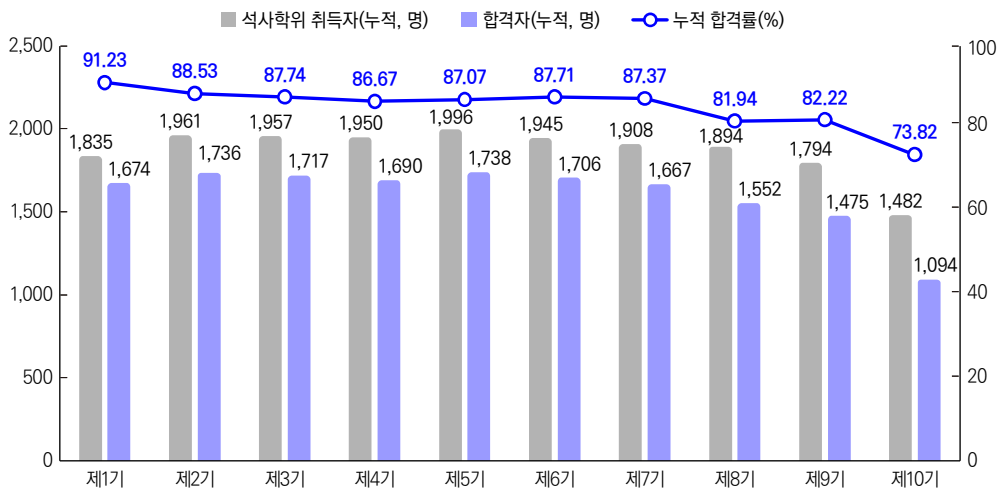

나. 제12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2021년도 제12회 법조윤리시험은 2021. 8. 7. 전국 10개 시험장(서울 5,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에서 실시되었다. 수험생들의 학업 부담을 고려하여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면서도 지엽적이지 않고 중요한 쟁점 위주의 출제를 통하여 시험의 안정적 운영 및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였다.

변호사윤리, 법관윤리, 검사윤리 등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기초적 직무윤리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변호사법, 법관징계법, 변호사 윤리장전 등)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직역윤리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총 2,299명이 출원하여 2,256명이 응시(응시율 98.1%)하고, 2,177명(합격률 96.5%)이 합격하였다.

※ 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 2,129명 응시, 1,981명 합격(합격률 93.05%)

| 표 2-27 | 역대 법조윤리시험 현황

	1회 (2010)	2회 (2011)	3회 (2012)	4회 (2013)	5회 (2014)	6회 (2015)	7회 (2016)	8회 (2017)	9회 (2018)	10회 (2019)	11회 (2020)	12회 (2021)
응시인원(명)	1,930	2,124	3,182	2,430	2,816	2,422	2,188	2,007	2,863	2,160	2,129	2,256
합격자(명)	1,919	1,571	3,107	1,858	2,444	2,328	2,149	1,192	2,724	2,053	1,981	2,177
합격률(%)	99.43	73.96	97.64	76.46	86.79	96.12	98.22	59.39	95.14	95.05	93.05	96.50

| 그림 2-82 | 역대 법조윤리시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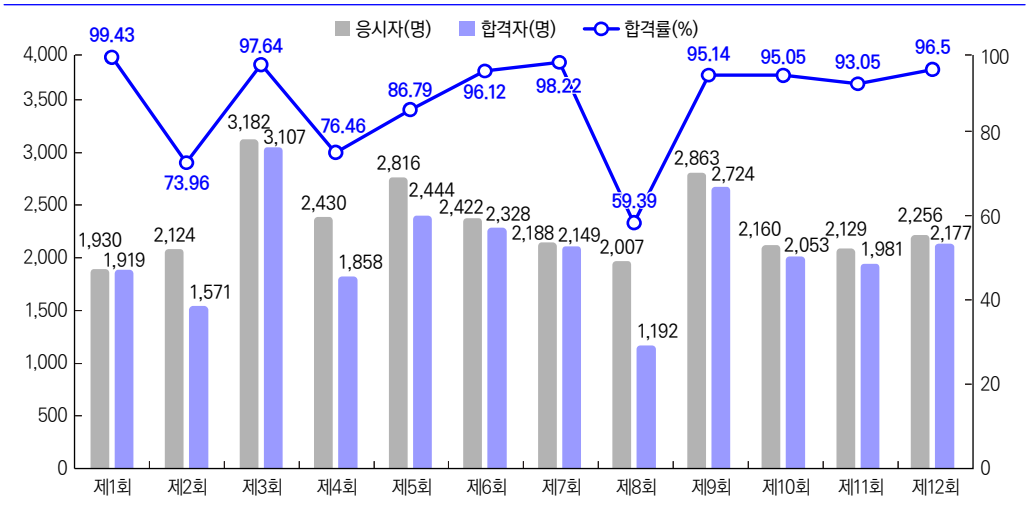

다.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전개

1)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추진

변호사시험 실시 10주년을 즈음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수험생의 지속된 요구사항 등 외부의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고 변호사시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 2. 대한변호사협회(3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3인), 법무부(2인)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개선 TF」를 발족하였다. 2021. 4.까지 총 5회에 걸쳐 변호사시험의 출제·집행·채점 분야 전 과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과목별 출제위원장 위촉,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법전 사용방식 개선, 필기시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CBT(컴퓨터 기반 시험) 도입 등 세부 개선방안을 최종 도출하였다.

또한, 2020. 9. 국민권익위원회의 응시수수료 반환 불합리(시험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 개선 권고 및 2020. 10. 대법원 판결 이후 응시자들의 석차를 공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1. 12. 22.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결원보충제 연장, 온라인·야간로스쿨 도입 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교육부의 법학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간담회, 대한변협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의 법무부장관 예방 등을 통한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험제도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시험행정 서비스 강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기존에 시험을 실시하던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외에 전국 법전원 소재 대학 25개 시험장으로 전면 확대하여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응시자의 편의 강화를 위해 모든 과목에서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하였으며, 기존 국·한문 혼용 법전을 완전 한글화하여 응시자에게 제공하였다.

제4절 검찰업무

1. 검찰 역량의 강화

검찰과 검사 김봉경

가. 검사 인사제도 개선

1) 추진배경 및 경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 및 시행하고,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를 우대하여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였으며, 우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하는 한편,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확대 적용 등 개선된 인사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검사들의 인사 고충과 희망 사항을 적극 고려하였다.

- 2021. 1. 21. 여성 검사 발탁 및 출산·육아 등 인사고충을 적극 반영한 검사 인사 실시
- 2021. 6. 4.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실시
- 2021. 7. 23.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검사 인사 실시

2) 주요내용 및 성과

2021. 1. 21. 상반기 검사 인사 시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외부기관 파견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하였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하는 등 인사 고충을 적극 반영하였다.

2021. 6. 4.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시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2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의견이 최종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가 공식화·실질화된 인사를 2021. 6. 11.자로 단행하였다.

2021. 7. 23. 하반기 검사 인사 시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인사 대상자의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인사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하였으며, 청별 인력 수요를 고려해 검사를 균형 배치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사를 2021. 8. 2.자로 단행하였다.

나. 검찰 조직 개편

1) 추진배경

2021. 1. 1.부터 개정「형사소송법」및「검찰청법」등 수사권 개혁 법령이 시행되어 검찰 업무를 비롯한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인권보호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을 위해 검찰의 조직과 기능 정비가 필요하였다.

그간 수 차례의 조직 개편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면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격적인 수사권 개혁 법령 시행에 맞춰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인권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무연수원에서 우수한 전문 교수요원 확보를 통한 검찰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검찰직 교수 정원 증원을 요청하여 검찰청의 의견조회와 필요성 검토를 거친 후 검찰청의 검찰사무관 정원 4명을 법무연수원의 검찰사무관 교수 정원으로 이체하였다.

2) 추진경과

2021. 1. 1.「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및「검찰청법」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에 맞추어「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090호)과「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089호)도 제정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21. 7. 2. 수사권 개혁 법령 시행 이후 업무 전반에 나타난 변화를 반영하여 검찰조직을 인권친화적(인권보호부 신설)으로 바꾸고 수사기관 간 협력을 통한 충실한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등 신설)할 수 있도록「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863호)을 개정·시행하였다.

2021. 11. 23. 검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찰청 검찰사무관 정원 4명을 법무연수원으로 이체하여 교수요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143호)을 개정·시행하였다.

3) 주요내용과 성과

2021. 7.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국가 범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사건에 대해 다른 기관과의 협력·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며, 인권보호부의 신설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등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 공공수사부, 외사범죄형사부 등을 통폐합하는 등 지방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였다.

또한,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반부패·강력수사부, 공공수사부 등 전담부서에서 담당하고, 전담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수사개시가 필요할 경우 마지막 순위의 형사부에서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외 형사부에서 민생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사부 분장사무를 정비하였다.

2021. 11. 법무연수원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찰사무관 정원 4명(대검찰청 형사2과·법과학분석과·집행과 각 1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실 1명)을 법무연수원 검찰사무관(교수) 정원 4명으로 이체하였다.

4) 평가 및 기대효과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장 심사 및 시정조치 사건 처리와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로 인한 국민의 권익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의 불송치 송부기록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인권보호부를 신설함으로써 수사절차 상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고,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개시한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유기적인 협력을 전담하고, 검사가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전담하도록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비직제)을 각 신설함으로써 수사권 개혁 이후 국가 범죄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였다.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일부 직접수사부서 및 전담형사부를 인권보호부와 형사부로 전환하고, 일부 지검의 반부패·강력, 공공·외사 수사 기능을 통합하며, 형사부 등 수사부서를 3원화함으로써 검찰 직접수사는 꼭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고, 그 외 수사역량은 인권보호와 민생사건 수사 및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현하여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실현하였고, 새롭게 시행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중심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었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찰사무관 정원 4명을 법무연수원으로 이체함으로써 오랜 경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 교수의 영입으로 검찰공무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인권 친화적 수사환경 및 검찰 고유 업무 지원 확대

법무부는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인 수사환경을 구축해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련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내 검찰의 역할을 반영하여 고유

업무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검찰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 장애인 전용 조사실 설치 및 구치감 환경개선 예산 증액

장애인 복지법 개정 등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검찰청에는 장애인 전용 조사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 구비가 미흡하여 장애인 인권 보호 및 권익 보장에 취약하였다. 이에, 장애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배려를 위한 별도 조사 공간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리증폭기 등 보조기기를 비치하여 인권친화적 수사환경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구치감 내 노후된 냉·난방 시스템을 교체하고, 조사대기 중 심적부담이 큰 수용자가 도기형식의 변기나 세면대 등을 자해 또는 자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파손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변경하는 등 인권친화적 구치감 환경개선 예산을 편성하여 수용자의 실질적인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2) 검찰 고유 업무 지원 확대

법무부는 검찰의 변화된 업무환경 및 개정 형사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직접수사 관련 예산을 감축하고, 인권보호·사법통제, 범죄수익환수, 형집행 등 검찰 고유의 업무 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마약수사관 및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수사관에 대한 현장대응력 강화 지원, 차명재산 범죄수익환수 기법 DB 구축, 재산형 집행 활동비 증액 등 검찰 본연의 업무 지원 확대를 통해 변화된 수사환경 속 검찰 역할 재정립을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였다.

2. 검찰업무의 추진방향

● 형사기획과 검사 문종배

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제반 법령을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주의 구현이 요구되어 수사과정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설치, 수사과정에서의 녹음·녹화제 활용도 증대, 신뢰관계자의 동석 범위 확대 등을 각종 법령·지침 등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4. 12월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4대 지검에 녹음·녹화실, 편면경(one-way mirror) 등을 완비한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에 여성·아동 조사실을 설치하였고, 2013. 7월 종전의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침'과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지침'을 통합하여 성폭력사건 처리 관련 세부내용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기 위하여 사건의 성격 및 피조사자에 따라 적합한 조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친화적 조사 환경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법무연수원에도 여성·아동관련 범죄 수사실무 교육 프로그램 및 성폭력피해자 조사기법 강좌를 개설하여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한편,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 성폭력문제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2. 12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하여,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3세 미만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 10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아동성폭력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3.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조회 및 법정 증언 관련 절차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성폭력범죄전문가 의견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2014. 4월부터 다년간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또는 치료 업무에 종사하여 온 소아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범죄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을 대검찰청 성폭력범죄 전문가로 선정, 위촉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해 진단하고 진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및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 9월 서울중앙지검에, 2016. 1월 대구·광주지검, 2017. 2월 대전·부산지검, 2018. 2월 수원·인천·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등 현재 총 11곳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각 지역의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자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015. 11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검사 지정·운영 및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는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시행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결혼이민 여성을 상대로 여성 범죄예방위원과의 결연사업, 지방자치단체와의 다문화가족 보호지원 업무협약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주 여성들이 국내 연고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정폭력과 국내정착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8. 12월 법률 개정에 따라 업무상위력간음·추행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였고, 특히 새롭게 사회문제로 대두된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8. 10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유포 사건처리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 개정·시행하였고, 2018. 12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사건처리 기준을 재개정하여 불법촬영·유포 사범을 엄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18. 12월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공동 대처 및 연구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실효적 대응을 강화한 이후, 이 협약에 따라 2018. 12월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19. 7월에는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각 공동포럼을 개최, 2019. 11월에는 「가정폭력 상해 사건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관련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020. 4월 대검찰청은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각종 성범죄·폭행·협박 등의 범행과 결부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이를 SNS 대화방 등에 공유하는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범죄군에 대하여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여성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검찰의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0. 5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20. 6월 불법동영상 유포 차단·삭제 지원 매뉴얼 배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1. 2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처리기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관련 사건처리기준」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을 개정·시행하여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였고, 2021. 7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로 2021. 12월 성폭력, 가정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수사매뉴얼을 제정, 일선 청에 배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2021. 7월 대검찰청은 사법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관내 학대 아동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 청에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2021년 12월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 가정폭력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 7월에는 흉기 휴대 또는 상습적 가정폭력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기준을 강화한 「가정폭력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15. 9월에는 친족간 성폭력·가정폭력 등 가정 내 범죄에 대해 기 시달된 사건처리기준 및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 및 경위, 재범의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9. 6월에는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관련, 보호관찰소를 통해 위탁 절차와 상담 관리를 함으로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사후 관리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법무·검찰은 서민 다중 피해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 불법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다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특정 사기범죄들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맞춰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20. 11.부터 시행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회복 절차 규정이 완비되었는바, 개정 취지에 따라 시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였다.

또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인 유사수신범죄에 대한 사법통제·수사·공판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철저한 판례분석을 토대로 유사수신범죄 매뉴얼을 제작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검찰청은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1. 6. 소년사건의 수사와 처분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한 「소년사건 처리지침(대검예규)」을 개정하였고, '21. 9. 소년원생 인권보호 및 신속·적정한 소년사건 조사 및 처분을 위해 검찰청과 소년보호기관(전국 11개) 간 원격화상조사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시범실시 후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거쳐 '21. 11. 전국 확대시행하였다.

나.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법무·검찰은 수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법 집행의 엄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먼저, 진술에 의존하는 기존의 수사기법이나 조사방법을 탈피하여 물적 증거 수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 12월경부터 총 144억 원을 투입, 2008. 10. 31.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지상 6층, 지하 1층, 연면적 7,844㎡ 규모)를 완공하여 그동안 분산되었던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및 감정·감식 업무를 한 곳에 집중시켜 효율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 DNA 및 법생화학 감식,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사이버범죄 대응 등 전방위적인 과학수사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2007. 4월 서울중앙지검, 2008. 6월 부산고검, 2009. 9월 대구고검, 2010. 4월 광주고검, 2010. 12월 대전고검, 2011. 5월 인천지검, 2012. 6월 수원지검(2019. 3월 수원고검으로 이전), 2014. 11월 서울고검·서울남부지검·창원지검, 2017. 12월 서울북부지검·춘천지검 등 일선 청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운영하여 급증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업무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권존중 수사관행을 정착하고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 12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 2006. 6월 전면적으로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2019. 12. 1. 위 준칙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법무부령으로 승격하여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시행하였다.

대검찰청은 수사절차 변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 10.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을 공개예규로 전환하여 새롭게 제정하고, 변론을 포함한 모든 변호활동 내역 입력 및 관리를 전산화하였으며, 수사담당자 상호간 입력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사건처리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 12. 변호인에 대한 사건진행 상황 문자통지를 당사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KICS 기능개선을 완료하고 대한변협과 문자통지 수신용 변경된 변호인선임서 적극 활용 홍보에 관하여 협력하면서 변호인 문자통지 확대에 따른 업무매뉴얼을 일선에 전파하였다. 이로써 검찰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조력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되었다.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의 일환으로 2004. 6. 1. 4개 검찰청 12개 검사실에 영상녹화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2021. 12. 31.까지 전국 65개청에 총 890실로 확대 설치하여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대한 불식시키고 수사 인력 및 조사시간 단축을 통해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에서 2006. 6월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구속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위 지침은 그동안 각급 검찰청에서 관행적·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기준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지침화하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2011. 12월 구속수사의 일반적 기준과 범죄유형별 기준을 좀 더 세분하여 위 지침 제정 이후 구속수사 실무 기준을 반영하였다.

2021. 9월에는 「직접수사 개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을 마련하여, 인권보호관이 검찰 직접수사 사건의 체포·구속·압수·통신 영장 청구, 출국금지·정지, 연장, 통지유예, 공소제기,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각 단계에서 '인권보호에 관한 법령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용자 소환 및 조사 과정에서의 수용자 인권보호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2.

1월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대검찰청은 2008. 6월 형법범(208개 조문, 293개 범죄유형), 가중사범(4개 법률, 101개 범죄유형), 특별법범(232개 법률, 1,149개 범죄유형) 등 총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 구공판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 등을 규정한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1. 12월에는 시행 3년을 맞아 그간 폐지되거나 변경된 법령과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비 하였다. 또한 2012. 9월에는 지역적 범죄 특성과 당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선 청에서 사건처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월, 포항 등 9개청에서 산지관리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9개 특별법범에 대해 지역의 특수성과 경제적 사정 등을 반영한 자체 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다.

2016. 9월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 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고, 사건 및 피의자 관련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 구형 원칙을 「검찰 구형 및 항소에 관한 업무지침」에 반영하였으며, 3차례 개정된 형법 개정 사항 〈유사강간죄 신설, 혼인빙자간음죄 등 삭제('13. 6월 시행), 범죄단체조직죄, 약취와 유인의 죄 등 정비('14. 4월 시행), 특수상해·강요·공갈죄 등 신설, 간통죄 삭제 등('16. 1월 시행)〉을 반영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추가하여 가중사범을 총 6개 법률로 확대함과 동시에, 총 42개 특별법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교통사고·음주운전 등 대검의 강화된 신병 및 구형 기준을 반영하였다. 2019. 6.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 12. 18. 시행), 도로교통법('19. 6. 25. 시행) 등의 개정에 맞추어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 전면 시행하였고, 2020. 4. 9.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 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제정, 시행하였다.

2021. 5월 '검찰사건처리기준' 3차 개정 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관련 형법 및 특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가중사범'을 6개 법률로, '특별법범'을 260개 법률로 정비하였으며 신병 및 구형과 관련된 대검의 최근 주요 지침·지시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42개 범죄군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 7. 2.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하여, 2013. 5. 22. 전국 5대 고검에 추가 설치 현재 전국 65개청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고·지검 및 지청 소속 위원회의 경우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담·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상설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들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되,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다.[1)]

아울러 2004. 7월부터 항고심사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사실상 동일하여 위원회 중복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제기로, 기존의 항고심사회 기능을 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① 공소제기의 적정성, ②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③ 구속취소의 적정성, ④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이외에도 최근 심의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5년 검찰시민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은 〈표 2-28〉과 같다.

| 표 2-28 | 최근 5년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실적

구 분 / 연 도	개최횟수	심의건수						
		합계	기소	불기소	재청구	구속취소	영장청구	항고
2017년	956	2,086	557	971	66	5	390	70
2018년	1,078	2,324	618	1,180	277	1	277	94
2019년	1,082	2,324	587	1,341	26	1	167	110
2020년	376	701	186	420	19	0	33	26
2021년	178	347	89	211	4	0	12	14

3.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 형사기획과 검사 문종배

가. 개요

법무·검찰은 권력형 비리 등 사회지도층 비리를 중점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지역토착비리와 보조금 비리·조세포탈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패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였다. 또한 불법수익의 철저한 박탈로 부패범죄에 대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검 반부패부·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를 통해 일선청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지원하여 범죄수익환수 기능을 제고하였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 배제

법무·검찰은 국민생활 안정의 위협요소를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위사업 분야의 고질적·구조적 비리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비리, 국가 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공기업·공공기관 민관유착 비리, 법조 브로커 등 법조비리, 언론비리, 교육비리, 경제 질서 저해 사범 등 금융·증권비리, 조세포탈 비리, 재벌총수일가의 횡령·배임 범죄 등의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였으며,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1. 9. 1.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출범하였다.

또한 불법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가상통화·P2P 관련 사기, 재개발·재건축 비리, 유해화학물질 등 불특정 다수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고 있던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팀'을 2020. 8.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3과로 제도화하여, 일선 검찰청의 서민다중피해범죄 사건 수사 및 범죄피해재산 환수·회복 업무 관련 지휘·지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검찰은 최근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배출가스·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환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범죄 수사매뉴얼 T/F를 구성하였고, 2019. 7월 환경범죄 일반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매뉴얼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2020. 10월 대표적인 환경범죄에 대한 일선청의 우수수사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작하여 전국청에 배포함으로써 환경 분야 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다.

나. 부정부패사범의 척결

1) 부정부패 척결 지속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부정부패 척결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2021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작년(23위)과 동일한 23위를 기록하며 2011 ~ 2013년까지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22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2020년 기준 180개국 중 33위(OECD 37개국 중 23위)에 그치고 있어,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 법무부는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먼저 검찰에서는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 전문직역 숨은 비리를 중점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특히 2021년에는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 등을 반영하여 기존 주요 수사대상이었던 부정부패 범죄와 함께 국가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강화된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엄정 적용하여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범 305명을 기소(95명 구속)하였고, 전국 검찰청의 부패범죄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지역 토착비리 단속, 보조금 비리 수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증권·금융범죄 관련 수사 등 각종 부정부패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전국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을 중심으로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 179억 1천 4백만 원을 환수 조치함으로써 부패범죄 사범에 대한 범죄유발동기 차단에 주력하였다.

2021년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은 〈표 2-29〉 내지 〈표 2-30〉과 같다.

| 표 2-29 | 2021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구분 / 유형	단속인원	구속인원
인사	5(2)	1(0)
건축	2(1)	1(1)
토지	7(3)	2(2)
공사	4(1)	2(1)
보건·환경	1(0)	1(0)
교통	0(0)	0(0)
소방	0(0)	0(0)
노동	2(0)	0(0)
수사	3(3)	1(1)
세무	13(0)	3(0)
교육	1(0)	0(0)
병무	0(0)	0(0)
금융	95(2)	19(1)
법조주변	24(7)	9(4)
납품	4(2)	1(1)
사이비언론	0(0)	0(0)
기타	86(25)	31(15)
합계	247(46)	71(26)

( )는 공무원

| 표 2-30 | 2021년 공직자비리 단속실적

(단위 : 명)

죄명 / 직급별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기타	계
3급 이상	2(1)	0(0)	0(0)	0(0)	2(1)
4급 이하	24(13)	4(1)	6(1)	27(6)	61(21)
합 계	26(14)	4(1)	6(1)	27(6)	63(22)

( ) 구속인원

2)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부패 관련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클린피드백 유관부처 회의를 통해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2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제도개선 발굴, 건의 실적	• 클린피드백 회의 건의 실적 - 별건 수형자에 대해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 집행불능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법무부 보호관찰과, 2021. 6.) - 스티커 등을 이용한 교통수단 광고를 처벌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행정안전부, 2021. 6.) [2021. 12. 31. 기준 2건]

다. 엄정한 사회질서의 확립

1) 교통사범 엄정 대응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상습 음주 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음주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또는 3년 이상 구형 등」,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의율」 등 다양한 사건처리 방안을 각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2018. 9월 故 윤창호 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법무부 장관은 2018. 10. 19.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철저 이행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엄정 대처」, 2019. 3. 18.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검찰에 「음주운전 사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구형 및 치료감호 적극 청구」를 지시하였고, 2019. 3. 29.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에 음주운전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구형 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음주 금지 등의

특별 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 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부과 의견 개진토록 하고, 알코올 습벽 있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 적극 청구 등을 지시하여 각 검찰청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8. 12. 18. 시행], 도로교통법['19. 6. 25. 시행](일명 '윤창호 법')에 따라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강화, 음주운전 재범방지의 실효적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각 검찰청에 전면 시행하였고,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의 실현을 위해 음주운전 관련 범행에 엄정한 기준으로 신병처리, 구형, 적극적 항소 등으로 대처하였다.

'20. 10월 ~ '21. 12월 기간 동안 음주운전사범 총 120,257명 중 37,286명을 구공판하여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8. 12. 18. 시행], 도로교통법['19. 6. 25. 시행](일명 '윤창호 법') 시행 후 구공판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표 2-31 |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구공판율

통계산출 기간	음주운전 관련 사건 전체 피의자 수	구공판 피의자 수(구속)	구공판율 (구속구공판율)
'18. 10월 ~ '19. 12월	148,609명	26,525(615)명	17.84(0.41)%
'19. 10월 ~ '20. 12월	132,103명	40,132(453)명	30.37(0.34)%
'20. 10월 ~ '21. 12월	120,257명	37,286(251)명	31.01(0.21)%

한편,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위헌 결정함에 따라 신속히 각 검찰청에 조치사항을 시달('21. 11. 26)하고,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후속조치('21. 12. 6)를 지시하는 등 상습 음주 운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검찰청에 조치하였다.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사건 엄정 대응

2020.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가 국내에 최초로 발생하고, 국내외 확산이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대검찰청은 2020. 2월 「감염병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 등 수사참고자료」 및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기준」을 전파하면서 엄단 지시하였고, 2020. 3월 ~ 9월 「코로나19 역학조사 정부합동지원단」에 2차에 걸쳐 검사, 수사관 및 포렌식 요원을 파견하여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적극 지원하였고, 2020. 8월 코로나19 재확산 직후 대검찰청 형사부 주관으로 방역당국 등 담당자 핫라인 구축 및 방역저해사범 엄정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 화상회의를 개최하였고, 2020. 8. 25.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시행 2020. 4. 5.] 내용을 반영하고

방역저해 사범 구공판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각 검찰청에 전면 시행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1. 3. 18.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대응 방역조치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조치와 방역지침의무화 조치를 명확히 구분(법적근거, 위반시 제재 등)하여 행정명령 발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3) 강력범죄 엄정 대응

살인(변사) 사건의 암장 방지 및 사인 규명을 위해 2021. 1. 제3기 법의학 자문위원회를 출범하였고,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한강 토막살인 사건 등 살인범죄가 빈발하여 2021. 8. 각 검찰청에 '살인범죄 철저 수사 등 엄정 대처'를 지시하였다.

또한, 2021. 10.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전국 59개청 73명을 '스토킹범죄 전담검사'로 지정하고 처리기준을 전파하였으며, 2021. 12.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엄정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라. 쾌적하고 안정된 국민경제생활의 확보

1) 조직폭력사범 엄정 대응

진화하는 조직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통적 조직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기존 사람을 추적하는 수사에서 범행 자금, 범죄 수익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수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며 조직폭력사범이 연계된 기업·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고, '21. 1. 개시된 UN초국가조직범죄방지 협약(UNTOC) 이행점검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여 국제 조직범죄에 대한 세계 각국의 동향 파악 및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원활한 협약 이행점검을 위한 대응태세를 갖추었다.

주요 수사 사례로 ▲경기도 이천 지역 신흥 범죄단체 '장호원식구파', 경상북도 경주 지역 '통합파', 전라남도 목포 지역 '서산파' 등에 대한 전통적 조직폭력 사건, ▲광주 재개발 철거 사업에 개입한 '학동파', '신양OB파' 등 폭력조직의 각종 이권사업 개입 사건, ▲대구 '영대파'의 집단폭력 및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가담 사건 등이 있으며, 검찰은 이와 같은 각종 폭력조직 연관 사건에 대하여 범죄단체활동 등 적극 의율을 통해 엄단하는 한편, 특히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으로의 폭력조직 진출 차단을 위해 폭력조직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엄단하였는바, ▲중국 강소성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수사 관련 안산 '원주민파' 조직원 구속, ▲광주 '신양OB파'와 고양 '원당식구파' 조직원 연합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조직원 구속 등 폭력조직의 보이스피싱 연관 범죄를 엄단하였다. 범죄

단체 등 기소현황은 〈표 2-32〉와 같다.

| 표 2-32 | 범죄단체 등 기소현황

(단위 : 명, 괄호 안은 구속구공판 인원)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소	332(94)	363(87)	278(119)	278(107)	345(91)	178(43)	226(33)

2) 부동산 투기 사범 엄단

'21. 3.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촉발된 이른바 'LH 사태'로 인하여, 공직자들과 LH 임직원들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 범행을 발본색원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공직자들과 LH 임직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이고,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범죄 또한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국가경제에 해악을 가할 뿐만 아니라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므로 엄정한 대응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① 대검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 총력 수사 체제로 전환하고, ② 기획부동산, 탈세 등 최근 5년간 송치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 하여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 · 분석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직접 수사하였으며, ③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담 검사가 신속히 검토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 의견을 개진하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 사범에 적극 대처하는 등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위와 같이 역량을 집중한 결과, 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하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다음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3 ~ 6배 부풀려 판매한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 29명을 인지하여 2명을 구속하는 등 총 79명을 인지하고, 19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 283억 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하는 한편, ②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한 일명 '강사장' 등 LH 현직 직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 총 62명을 구속하였고, 범죄수익 1,506억 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1. 12. 말 기준, 부동산 투기사범 주요 단속 실적은 〈표 2-33〉과 같다.

| 표 2-33 |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실적

기관	중간수사발표 ('21. 5. 말 기준)		주요 성과 ('21. 12. 말 기준)
검찰 전담수사팀	단속인원	14명 구속, 50명 인지	19명 구속, 79명 인지
	금액	257억 원 보전조치	283억 원 보전조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단속인원	20명 구속, 529명 송치	62명 구속, 4,120명 송치
	금액	651억 원 보전조치	1,506억 원 보전조치

3) 서민다중피해범죄 엄정 대처

불법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불특정 다수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집중 대응을 위해 전국 28개 차치지청 이상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다수 서민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가상통화 범죄 근절을 위해 ① 경찰 신청 영장 신속·엄정 처리 및 송치 사건에 대한 신속·철저 수사, ② 관련 사범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 적용, ③ 범죄수익의 근원적 박탈, ④ 정보보고 및 공보 철저 등을 일선청에 전파하였다.

4) 불법 사행행위 관련 범죄 집중 단속

검찰은 불법 사행행위는 지하경제, 서민생활침해범죄의 대표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사행산업의 수익금은 상상을 초월하며 형사처벌만으로는 근원적 차단이 어렵다고 판단,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범죄동기 차단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된 국세청과의 '민생침해 탈세사범 단속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재개하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조세포탈 범죄로도 수사를 전개하여 과세처분 및 환수절차를 통한 세금징수, 세금 미납 시 경제적 활동의 제약, 조세포탈로 인한 고액 벌금 미납 시 장기간 환형유치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박탈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특히, 기업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적극 의율하고, 불법 도박장 운영 및 상습·고액 참여자 집중 단속, 범죄수익 철저 환수로 도박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였으며, 청소년 등의 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도박이 위험수준인 것을 감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업하여 도박 예방 포스터 등 제작·홍보 방안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박금액이 크지 않고 형법상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도박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전과자 양산방지 및 재범방지에도 노력하였다. 사행행위사범 단속 현황은 〈표 2-34〉와 같다.

| 표 2-34 | 사행행위사범 단속 현황

(단위 : 명)

연도 / 죄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도박 등	33,153	29,031	27,462	26,239	28,119	20,582	17,441	18,568	19,243	12,814
게임산업법	12,811	11,003	9,682	11,771	12,403	10,233	7,837	7,580	6,226	4,434
국민체육진흥법	815	1,391	4,032	4,742	15,467	8,342	4,757	7,658	7,889	1,088
사행행위규제법	3,738	2,559	2,082	1,815	1,321	757	493	473	359	205
한국마사회법	1,057	859	1,122	1,049	1,266	906	1,127	1,210	852	393
합계	51,574	44,843	44,380	45,616	58,576	40,820	31,655	35,489	34,569	18,934

5)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 지식재산권 관계 법령 정비 및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질적인 상표 도용, 서적·음반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미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통상 마찰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창작 의욕을 저해하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유통 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아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국내 지식재산권보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우리 국익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치하고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기반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전국 28개 검찰청에 설치된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전담수사반」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신속한 권리구제 및 분쟁해결 요청에 부응하고 검찰 수사역량을 전문화·집중화하는 차원에서 '15. 11월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17. 12월 수원지검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운영하고, '18. 2월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로 중소·벤처기업 권리보호 강화에 힘쓰고 있다. 첨단·지능화하고 있는 지식재산침해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중점 검찰청인 대전지검과 특허청 MOU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전문인력 지원 등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였고, MOU에 따라 '18.부터 특허청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전국 청의 검사·수사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18. 12. 특허정보진흥센터와 '특허정보제공 업무협약' 체결하여 '선행기술조사의뢰' 및 'KIWEE 검색서비스'를 활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였다.

나아가 디지털 대전환, 국가 간 패권경쟁 및 기술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 전략산업 기술의 신속한 확보 및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 경제성장이 제조업 기반 설비·건설 투자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지식재산권의 역할 및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우리 국익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치하고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기반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위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전담수사반」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전문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산업기술 보호 및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공적 진입과 문화콘텐츠 산업 등 지식재산의 건전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온라인 환경 발달에 따라 첨단·지능화하는 지재권 침해사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 발달로 온라인상 지식재산침해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현황은 〈표 2-35〉와 같다.

| 표 2-35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죄명 / 연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영화및비디오진흥법위반, 음악산업진흥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계
2012	6,003 (106)	46,707 (1)	15 (0)	29,550 (845)	1,726 (1)	84,001 (953)
2013	6,316 (106)	37,182 (4)	3 (0)	25,068 (641)	1,827 (0)	70,396 (751)
2014	6,611 (110)	41,900 (9)	9 (0)	21,935 (518)	1,624 (0)	72,079 (637)
2015	7,398 (144)	52,196 (4)	2 (0)	23,262 (586)	1,390 (1)	84,248 (735)
2016	8,012 (104)	33,808 (2)	1 (0)	24,598 (491)	1,481 (0)	67,900 (597)
2017	6,293 (73)	24,533 (4)	1 (0)	21,817 (322)	1,513 (0)	54,157 (399)
2018	5,861 (47)	18,638 (13)	0 (0)	16,805 (259)	1,354 (0)	42,658 (319)
2019	7,941 (24)	16,285 (12)	2 (0)	16,532 (195)	1,382 (0)	42,142 (231)

죄명 / 연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영화및비디오진흥법위반, 음악산업진흥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계
2020	6,207 (26)	13,747 (7)	0 (0)	12,759 (147)	1,427 (3)	34,140 (183)
2021	4,636 (7)	5,695 (7)	0 (0)	10,992 (84)	884 (2)	22,207 (100)

( )은 구속

6)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방안 수립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수법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면서 범죄 태양이 다양해지고, 해외 콜센터 등 해외조직과 국내조직이 연계한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면서 범행 규모 및 피해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단속 범위는 대부분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 접근매체 양도자 등 단순 가담자만에 그칠 뿐, 주범인 해외 콜센터 등 해외 조직은 거의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검찰은 국내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단속 뿐 아니라 해외 보이스피싱 거점까지 타격하는 종합적·근본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검찰은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내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설치하고, ▲일선청에 대한 효과적 수사지원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대국민 홍보, 각종 제도개선 등 국내 대응책 마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해외 거점 타격을 위한 수사관 해외 파견 추진 등 국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일선 청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변경된 법률과 최신 판례가 반영·업데이트 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실무 자료집』을 일선청에 배포하였고, 전국 59개 검찰청에 보이스피싱 전담검사를 지정·운영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수사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21. 8.),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대포폰 불법 생성유통 엄단 및 통신사 등의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21. 12.), 『검·경 합동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특별자수기간』('21. 10. ~ '22. 1.) 운영 등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였다.

한편, 증가하는 현금수거책 범행 가담사례에 대한 효과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국 고용센터 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일자리 고르기 유의사항' 안내문을 비치하여 홍보하고('21. 8.),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자동화기기(ATM) 무통장입금 거래 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를 대상으로 한 경고메시지가 노출될 수 있도록 개선('21. 12.)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책을 마련·시행하였다.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은 〈표 2-36〉과 같다.

| 표 2-36 |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출처 : 경찰청)

구 분 \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발생건수	17,040	24,259	34,132	37,667	31,681	30,982
검거건수	11,386	19,618	29,952	39,278	34,051	27,647
검거인원	15,566	25,473	37,624	48,713	39,713	26,397
피해금액(억원)	1,468	2,470	4,040	6,398	7,000	7,744

마. 형집행 지휘·감독

1) 벌과금 집행

가) 집행실적

2021년 세입예산액은 1조 8,589억 9,080만 원이었고, 세입예산액의 64.25%인 1조 1,944억 5,732만 원을 집행하였다. 2021년 말 현재 전국의 벌과금집행 미제액은 총 32조 4,221억 3,341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보다 1.06% 증가되었다.

2021년말 현재 벌과금집행 및 집행 미제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48〉과 같다.

나) 벌과금집행 우수기관 등 포상

2021. 12. 31. 벌과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청을 선정하여 수원지방검찰청 등 6개 청을 집행유공기관으로 표창하였고, 집행유공공무원 18명에 대하여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집행유공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검찰청은 다음 〈표 2-37〉과 같다.

| 표 2-37 | 2021년도 벌과금 집행 유공 표창기관 현황

순 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6그룹
1위	수원지검	부천지청	순천지청	춘천지검	해남지청	제천지청

※ 실적산출 방법 : 현년도 집행률(40%) + 과년도 집행률(30%) + 세입예산액 달성도(20%) + 강제집행실적(10%)

2) 사형 확정자 관리

2017년 말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총 57명(군형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미집행자 제외)이며, 1997. 12. 30. 23명을 집행한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3) 형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관리

형집행정지자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및 보석자 관리에 대해 분기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2021년 한 해 동안 형집행정지자 472명 중 106명에 대하여 잔형집행 등을 하였고, 구속집행정지자 760명 중 661명에 대하여 구속집행 등을 하였으며, 보석으로 석방된 2,143명 중 238명에 대하여 보석취소를 청구하여 구속집행 하였다.

4. 국민의 권익 보호

●형사기획과 검사 문종배

가. 개요

법무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인권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제·개정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법무부는 2003년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국민의 변화된 인권의식에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약 2년여 동안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2006. 6월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여 2006. 7. 1.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위 준칙에 따른 일선 검찰의 인권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7. 8월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7년부터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청을 포상하고 있다.

나.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3. 1월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 준칙」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준칙의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제 수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준칙 시행 이후 제·개정된 법령이나 각종 제도개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작업에 착수, 다양한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06. 6. 26.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 준칙은 개정 전과 달리 준칙이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검 지침 등을 참조하여 가급적 구체화하였으며, 그 내용에 따라 장·절을 세분화하였다. 그 결과, 개정 전에는 총 3장 35개 조문에 불과하였으나 개정 후 3장 8절 73개 조문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준칙의 인권보호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제 및 조문 내용을 수요자 관점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2018. 2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권고에 따라, 2018. 4. 16. 출석요구 시 죄명 및 피의사실 사전고지, 조서 미작성시에도 변호인 참여 배제 불가, 피의자에게 메모 허용, 심야조사 시 심야조사 허가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분기별 보고를 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령·시행하였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8. 7. 23.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인권보호수사준칙」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철저준수 등을 지시하였다.

그 이후, 법무부는 2019. 12월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중요 수사 관련 보고, 압수수색 시 준수사항, 피의자 출석조사 최소화, 장시간조사·심야조사 제한,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피해자·참고인 출석요구 및 조사시 유의사항,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전용조사실 이용,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1호)」 제정안을 마련하여 발령·시행하였다.

참고로 2021년 중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26,984명 중 22.9%에 해당하는 6,174명을 기각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구속 장소가 없는 수사관서를 포함하여 2021년에 모두 2,104회에 걸쳐 구속 장소 감찰을 실시하였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 이후,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실은 점검반(인권감독담당관을 반장으로 총 4명으로 구성)을 편성하여 일선 청의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국 23개 검찰청(지검 및 지청)에 대하여 인권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인권업무 이행실태 점검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심야조사 개선 방안, 인권보호수사규칙 고지 표준화 방안, 인권 관련 실태조사 표준화 방안, 수용자 소환 시 인권 개선 방안 등을 기준으로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에는 기존 점검사항에 더하여 '반복 출석조사 적정성, 수용자 소환 후 수사과정의 기록, 압수수색 관련 인권보호관 기록 열람 및 의견 제시' 등을 추가하여 점검하였다. 이행실태 점검결과는 해당 청에 송부하여 향후 인권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특히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구치감 수용거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을 점검한 후 인권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표준안을 마련·배포하여 관련 시설을 정비토록 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1. 9. 1.부터 인권보호관이 배치된 전국 34개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검찰 직접수사 개시사건에 대해 영장, 출국규제, 기소의 각 단계에서 수사절차의 적법성·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검찰 직접수사 개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시행

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영장 청구, 출국금지 및 정지, 공소제기의 결정 등 각 단계에서 수사팀과는 별도로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인권보호관이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관련 각종 법령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검찰청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검찰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전환하고, 인권중심의 수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수사 관련 제도와 실무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하여 2020. 6. 16. 검찰인권위원회 산하 연구조직으로 '인권중심 수사TF'를 발족하였다. 위 TF 발족 이후 법무부의 '인권수사 제도개선TF'와 총 7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2020. 10. 12. '인권중심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수용자 출석요구 개선, 반복 출석조사 점검 강화, 참고인 조사방식 다양화, 일선 인권교육 강화, 압수수색 영장청구 및 절차 개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 1차 시행계획'을 일선에 전파하였다.

대검찰청은 '21. 1. 종전 지시로 시행하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사전 영장까지 확대 실시하고, 요건과 절차를 규범화하여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의 사경 인신구속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되었다.

대검찰청은 '21. 3.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수사개시 요건·승인절차·수사주체의 분리 등을 규정하여 직접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대검찰청은 '21. 6. 검찰-교정시설 KICS 개선으로, 수용자용 출석요구서를 KICS로 발송, 수용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법령상 출석의무가 없는 피의자가 아닌 수용자의 임의 출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도관을 통해 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였다.

다. 형사보상의 신속·적정 도모

구속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2021년 피고인 보상은 1,303건에 378억 4,471만원, 무죄비용 보상은 2,058건에 50억 4,873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의자 보상은 53건에 14억 9,351만원이 지급된 바, 피고인 보상금 및 무죄비용 보상금 지급현황은 〈표 2-38〉과 같고, 피의자 보상금의 지급현황은 〈표 2-39〉와 같다.

| 표 2-38 | 2021년 피고인 보상금 및 무죄비용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피고인 보상			무죄비용 보상	합계
	소계	구속사건 무죄	재심사건 무죄 (양벌규정 및 과거사 등)		
건수	1,303	229	1,074	2,058	3,361
금액	37,844,709	9,223,603	28,621,106	5,048,725	42,893,434

※ 피고인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구금에 대한 보상

※ 무죄비용 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변호사비용, 여비, 일당 등) 보상

| 표 2-39 | 2021년 피의자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접 수 (신수+구수)	처 리			처리중 (미결정)	지급
		인 용	기 각	계		
건수	53	53	·	53	·	53
금액	1,493,510	1,493,510	·	1,493,510	·	1,493,510

※ 피의자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구금에 대한 보상

5.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형사기획과 검사 문종배

가. 기본방향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현 시대에서,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달리 사이버범죄 등 다양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범죄의 성격도 지능화·흉포화·조직화·광역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인권보장을 위해 조직·인원 정비, 시설 확충, 첨단 과학수사장비 도입 등 다각적으로 과학수사 운영체제를 확충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를 첨단화하는 등 검찰 수사업무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나. 과학수사 운영체제의 확충

검찰수사의 과학화는 1978. 3월 중앙수사부에서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한 이래로 1984. 7월 중앙수사부 과학수사운영과 설치, 1991. 8월 과학수사지도과 설치, 1998. 2월 두 과를 통합한 과학수사과를 설치하여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04. 12. 31.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해 기존의 과학수사과는 폐지되고, 2005. 4월 과학수사기획관 및 과학수사제1담당관, 과학수사제2담당관이 신설되어 과학수사 담당부서가 확대 개편된 후 2007. 3. 8. 과학수사제1담당관을 과학수사담당관으로, 과학수사제2담당관을 디지털수사담당관으로 변경하였고, 2010. 7. 26.「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8. 4.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디엔에이수사담당관이 추가 신설됨으로써 과학수사기획관 산하에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등 3담당관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5. 2. 11. 종전 3담당관 체계로 운영되던 과학수사기획관 체제를 검사장 중심의 '과학수사부'로 승격시키면서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을 담당하는 과학수사1과, DNA·법생물·법화학 감식 등을 담당하는 과학수사2과,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디지털수사과, 사이버범죄 수사지원을 담당하는 사이버수사과와 이를 총괄·관리하는 과학수사기획관 등 1기획관, 4과로 조직 체계를 확대·개편으며, 2018. 2월 과학수사1과를 법과학분석과로, 과학수사2과를 디엔에이·화학분석과로 과명칭을 개정하여 담당업무가 명칭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2018. 6. 21.「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2020. 2. 4. 검찰청법, 형소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개정 법 시행(2021. 1. 1.) 등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사무분장 조정과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일부 조직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2020. 9. 3.)됨에 따라 과학수사기획관을 폐지, 4과 조직 체계로 개편되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법과학분석과는 총괄운영실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기존 과학수사기획관실의 행정통합 관리·운영 업무의 공백이 없이 계속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1. 4월 부산고검에 마약감식팀을 신설하여 영남지방의 마약범죄 수사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지원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원거리 압수수색 지원에 따른 수사지원의 적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인천지검에 이어 2012년도에 수원지검, 2014년도에는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2017년도에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에 디지털 포렌식팀을 신설하였고, 2019. 3월 수원고검 개청으로 수원지검 포렌식팀이 수원고검 포렌식팀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디지털증거 압수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자체의 무결성 등에 대한 법정 공방이 점점 더 치열해짐에 따라, 2021년에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에 공판업무 지원을 위한 공판지원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화학·마약·DNA·문서감정 분야에서 2007. 10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받은 이래로 2009. 2월(문서감정, 국내 최초), 2017. 11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사후평가 통과, 2019. 12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갱신 및 인정범위 확대 등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수사 분야에 있어서도 2020. 11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음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전문 감정기관으로서의 그 위상을 공고히 하였으며, 2021. 11월 정기검사를 통과함으로써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다.

2014. 5월경에는 현대 범죄 수사에 있어서 CCTV 등 멀티미디어 증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삭제 또는 손상된 멀티미디어 파일을 복구하여 제대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복원 업무를 새롭게 도입하였고, 포렌식 오디오 신호 처리 장비, 음성 자동식별 시스템, 음질 특성 분석 시스템, 포렌식 영상분석 시스템, 영상아카이빙 시스템 등 감정 장비와 수사지원장비 총 1,052점(멀티미이더 복원실 88점)을 새롭게 도입, 배정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심리 분석 분야와 관련하여 2014. 12월에는 급증하는 묻지마 범죄 및 살인, 아동학대 등의 강력사건에 대응하고자 임상심리평가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인지적·성격적 특성, 사이코패스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16. 5월부터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를 상대로 '판결 후 성범죄자 심리생리검사(Post-Conviction Sex Offender Testing, PCSOT)'를 실시하여 성범죄자 재범 방지에 앞장서고 있으며, 2020. 11월에는 1:1 전자감독 대상자, 2021. 11월에는 고위험 피부착자로 PCSOT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심리생리검사관 양성 교육의 국제 규격화 및 표준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국 폴리그래프협회(APA)의 교육기관 인가를 추진, 2015. 9. 7. 대검찰청 심리분석실(Korean Supreme Prosecutor's Office Polygraph Academy)은 아시아 비영어권 최초로 APA 교육기관 인가를 취득하고, 2018. 4. 2. 인가를 갱신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심리생리검사관 교육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진술 분석 분야와 관련하여 2021. 8. 27. 진술분석 규정(대검 예규 1225호)을 개정하여 기존 13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외에도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에게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음성 분석 분야와 관련하여 2016. 11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등 증거 녹음자료에 대한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인 표본 음성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완료하였고, 2018. 11월 신원 미상 음성의 성, 연령, 지역을 추정하는 자동 화자 프로파일링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

하였다.

2019. 11월에는 '자동화자 확인 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녹음 채널별 화자 내부 음성 변이 연구'를 완료하여 연구결과를 업무에 활용 중이며, 2020. 11월에는 AI를 이용한 한국인 표본 음성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자동 화자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21. 12월에는 '스마트폰 녹음파일의 위변조 여부 분석 기법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녹음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영상 분석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2017. 11월 영상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 현장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동일인 식별을 위한 얼굴 표지점 자동 추출 및 분석 기법 연구를 완료하였고, 2021. 12월 저화질의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AI를 이용한 차량번호 인식 기법을 개발하였다.

멀티미디어 복원 분야와 관련하여 차세대 표준 영상 코덱인 H.265 코덱의 보급이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8. 11월 자체연구를 통해 H.265 영상 복원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2020. 4월에는 데이터가 손상된 증거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손상된 압축파일에서 동영상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2021. 12월에는 소형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등에서 사용하는 FAT32 파일시스템에서 삭제된 파일의 생성시간, 수정시간, 파일이름, 파일 크기 등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2021년도 감정처리실적은 법화학감정 67,053점(전년 대비 38.5% 증가), DNA감식 31,610점(전년 대비 1.53% 감소), 심리분석 1,885명(전국), 진술분석 180명 문서감정 4,320점, 음성분석 2,145점, 영상분석 3,309점, 멀티미디어복원 1,857점으로 전년 대비 31.4%가 감소하였다.

게다가 2016. 1월경부터는 성충동 억제약물 투여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약물치료 확인검사(호르몬 및 상쇄약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분야는 2010. 1월 디스크분석도구인 CFT 1.0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현재 네트워크 공유 폴더 수집 기능, 윈도우 10메일 분석 기능, Virtual Box 가상 디스크 분석 기능 등을 반영하여 국세청·관세청·해양경찰청 등 30개 법집행기관에 배포된 CFT 3.10.2.1을 운용 중이고, 2012. 11월 이메일 전용 압수도구인 라이브 e-mail 압수도구를, 2015. 2월 손상파일 복구도구를 개발하였으며, 2015. 12월 급증하는 모바일 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에서 자체 개발한 모바일 포렌식 도구인 MFA를 전국청에 보급하였다. 또한 포렌식어카운팅 기반의 회계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2016년 중소기업 대상 회계 도구 FAST를 개발하고, 2017년에 중견기업 대상으로 연구를 추가 진행하여 118개의 부정적발 시나리오기능을 가진 통합 회계 분석도구인 FAAT을 개발, 2018. 5. 최종 검증 후 배포하였고, 세계 최초로 개발 적용한 데이터베이스 삭제 레코드 복구 도구인 MSR, MYR을 지속적으로 안정화 하여 활발히 활용 중에 있다. 2019년도에는 포털사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속하게 선별압수가 가능한 eFA를 개발하고,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접목시켜 구축하고 있는 인공지능비서 서비스에 대한 저장 데이터 체계를 연구 및 분석 가이드를 제작 및 배포하였다. 2020년에는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의 표준화에 의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맞춘 인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디스크 이미징기법, 모바일데이터 획득기법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2021년에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디지털 현장 압수수색 프로그램인 DFT 프로그램(버전 1.0.9)의 성능진단과 시험사용에 협력하고 국세청, 특허청 등 26개 유관기관에 302점을 배포하였다.

또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시스템 등 자동차 내부의 전자장치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연구하는 등 자동차포렌식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다. 검찰 등 법집행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조직 설계 및 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표준랩 구축 모델을 개발·공유하는 등 검찰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디지털 증거분석기법에 대한 연구·개발 등으로 2021년도에는 1,568건의 현장 압수수색과 4,815건의 증거분석(법정증언·기술자문 포함)등 총 6,383건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0. 7. 26.부터 시행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강도, 성폭력범 등 강력사범에 대한 DNA감식시료 채취·감식과 DNA-DB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강력미제사건 해결 및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6. 5월 무학산 여성 등산객 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갑 등에서 DNA형을 검출하고 DNA-DB검색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함으로써 6개월 이상 일선 경찰에서 밝히지 못하였던 진범을 밝히는 성과를 이루었고, 2018. 5월 국과수 감정결과 DNA 및 혈흔이 불검출된 범행도구 바벨봉에서, 대검찰청의 재감정을 통해 피의자 혈흔 및 DNA형을 검출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강도살인사건 피의자를 구속기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8. 10월 2003 ~ 2006년 사이에 광주 및 대전 일대에서 총 10회에 걸쳐 발생한 연쇄특수강도강간 피의자와 2001년 4세, 10세의 여아를 연속적으로 성폭행한 미제사건 피의자를 DNA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특정하고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9년에는 화성연쇄살인범이 수형인등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여 범인을 특정하여 국내 최장기 미제사건의 진범을 밝히는 데 일조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내었다.

2021년 9월에는 2001년 발생된 강간사건에서 정액이 묻은 수건으로부터 확보된 피의자의 DNA형이 20년 만에 대검 수형인등 DNA DB 일치로 확인됨에 따라 공소시효를 불과 5개월 가량 앞두고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였고, 2001년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의 피의자가 별건으로 수형인등 DNA DB에 수록되면서 2019년에 검색 일치가 통보된 사건은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시효가 임박한 2021년 3월에 구공판 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18년 전 거제시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서, 피의자의 별건 범죄로 DNA정보가 수형인 등 DNA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었고, DNA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구속 기소하는 큰 성과를 내었다.

한편 DNA·화학분석과에서는 검찰의 식·의약품 수사 및 다양한 수사영역의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법생물 감정실 및 화학감정 파트를 신설하여 '가짜 백수오 사건' 과 같은 가공식품, 한약재, 식물성 마약 원료의 진위여부 판단 및 강력사건 현장의 비인체 유래물에 대한 종판별을 통해 인간 DNA 외에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증거분석으로 관련 범죄 수사를 적극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대검이 보유한 'DNA를 이용한 마약성 양귀비 판별방법' 특허 기술 및 마약성 대마 분석법을 관세청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법생물DNA 감식업무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2021년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성분 불상의 수입물품에 대한 성분확인 검사를 요청받아 NGS를 이용한 첨단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환각버섯 및 다양한 식물 성분의 혼합 여부를 확인하였다.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중국산 발암성 항생제 닭꼬치 사건',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체중감소제 등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적으로 첨가될 수 있는 식품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감정 지원 및 환경사건과 관련하여 폭발성 휘발물질, 산·염기성 물질에 의한 토양·수질오염, 기름유출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미술품 위작 사건, 성충동 억제약물 투여 대상자에 대한 확인검사(호르몬 및 상쇄약물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 5월 허위 신기술 낙뢰보호기를 조달청 등에 납품하여 28억 원 상당을 편취한 고발사건에 대한 화학감정을 지원함으로써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021년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연구비 187억 원을 받아 진행한 차세대 CO2분리막 개발사업의 재료비 124억 원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개발된 시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어야 할 팔라듐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중금속 분석을 통해 밝혀낸 것을 포함하여, 금세공 관련 사기사건과 관련한 순금 함량 측정, 특허출원한 액정보호필름의 특허 등록 내용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점도 측정 등 다양한 감정 기법을 활용하여 범죄 수사를 지원하였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18. 12월부터 약물치료 집행명령에 대한 확인 검사 기법개발에 착수하여, 2019. 1월 서울, 수원, 부산 지역 보호관찰소의 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복약검사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9. 9월부터 권역별로 복약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러한 복약검사는 치료명령이 부과된 정신장애범죄자가 처방받은 약물을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인 약물 검사를 통해 치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치료명령 대상자의 소변 시료에서 항정신성 약물(antipsychotic drug)을 주기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치료 도중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DNA감정실은 긴급한 시일을 다투는 긴급 DNA감정이나 기존에는 DNA 확보가 어렵다고 여겨졌던 감정물에 대한 정밀 재감정을 통해 사건 수사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9년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가 없는 살인사건에서 흉기인 과도에서 피의자와 그 가족의 DNA를 검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칼을 준비하여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다가 살인하게 되었다는 피의자의 증언을 탄핵함으로써 구속 기소한 사건이나, 24시간 이내 살인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하여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속하게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긴급 감정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을 살포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제보자가 제출한 지폐 및 선거공보 등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함으로써 지문으로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DNA 정밀감정을 통해 증거물에서 피의자의 연관성 입증이 가능함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필로폰에 대한 DNA감정을 통해 제보자 진술에 의존하던 마약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필로폰 소지 범행을 규명하고 마약사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2020년 '구리선관위 잔여투표용지 은닉 등 사건'에서는 주요 증거물인 찢어진 서류봉투의 흔적에서 피고인의 DNA를 효과적으로 검출하여 선거범죄 실체 규명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2020. 9월부터 법무부(이민통합과)와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신청자들의 혈연관계 확인 업무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기존 2011년 법무부(국적과)의 '국적 취득 신청자등에 대한 DNA검사 협조체계' 구축 이후 혈연관계 확인 업무가 추가로 확대되었다. 2021년 '구미 3세 여아 사건' 관련 DNA 감정을 통해 피의자(할머니)와 사망한 여아(손녀)의 친모녀 관계를 규명하였고, '제주 조천읍 10대 중학생 살인 사건' 관련 피해자(15세)를 목졸라 살해한 범행 도구인 허리띠에서 피의자 2명의 DNA를 검출해냄으로써 혐의 규명에 기여하였다.

과학수사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90.4억 원의 예산으로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 기술 연구개발」이라는 명칭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법과학 증거의 증명력 검증체계 고도화' 연구를 통해 법과학 증거의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증명력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 최종 단계로서 기소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재판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의 대량화, 스마트기기 확대에 따른 압수대상의 다양화, 암호화 등 보안기술 강화, 5G, AI기술로 인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 과학수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신 분석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과학수사부는 '법과학분야 기술수준 분석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정책연구를 통해 현재 과학수사부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동등(영상분석 분야)하거나 20 ~ 30% 이내의 기술격차로 진단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는데, 2022년부터 수행하게 될 3단계 연구에서는 2단계 연구에서 추진된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고도화함으로써 검찰 과학수사 기술의 도약과 '객관적 증거 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보호' 달성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11. 10월 일선 검사 및 수사관의 과학수사 활용 증대와 과학수사 활성화를 통한 SMART 수사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과학수사책임관(부장검사급), 부책임관

(검사), 책임수사관을 지정하여 과학수사 관련 교육과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과학수사책임관' 제도를 시행하였고, 2015년부터 분기별(연4회)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한 우수 수사사례를 발표하고, 대검·일선 청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의 과학수사 지원을 위한 전국 청 과학수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다. 영상녹화시스템 구축

영상녹화제는 기존의 조서 위주의 수사관행에서 탈피, 수사과정 전반을 영상녹화하고 이를 CD로 제작 고착화 하여 수사 및 재판 등에 활용하는 제도로, 피조사자의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진술증거 수집을 과학화하여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수사절차의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 6월 구성된 수사과학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법무연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하게 된 것이며, 2004. 3월 수사과학화추진단의 녹음·녹화팀 구성으로 본격화되었다. 2004. 3 ~ 4월 영상녹화장비를 선정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고검 소재지 5개청, 수도권 3개청(서울서부, 인천, 수원지검), 기타 2개청(청주, 울산지검)을 시범 실시청으로 지정하였다. 같은 해 5월 시범 실시청 담당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운영지침을 시달하여 2004.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시범실시 하였다. 같은 해 12월 시범실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범실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토론·분석하여 영상녹화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2008.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하여 기존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401호, 2006. 6. 20.)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대검 예규 제425호, 2007. 12. 11. 대검 예규 제519호, 2009. 11. 3. 대검 예규 제625호, 2012. 11. 3. 대검 예규 제651호, 2013. 6. 27. 대검 예규 제682호, 2013. 12. 11. 대검 예규 제711호, 2014. 3. 31. 대검 예규 제759호, 2014. 12. 29. 대검 예규 제798호, 2015. 7. 16. 대검 예규 제982호, 2019. 3. 15. 대검 예규 제1131호, 2020. 12. 30. 대검 예규 제1220호, 2021. 8. 11.)하여 전국 청에 시행하였으며, 일선 청 검사 및 수사관들의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 12월에 영상녹화조사업무 실무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2014년에는 영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피조사자의 인권을 고려한 영상녹화 조사기법 등을 연구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2014. 12월경 「영상녹화 실무 매뉴얼」을 전국청에 배포하였다.

2019. 3월부터 4월까지 주무과장이 전국 28개 지검 및 차치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영상녹화조사 현장 설명회」 개최하여 영상녹화의 필요성 및 활용기법을 공유하여 영상녹화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9. 5월에는 일선 청 영상녹화 실적 우수

검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영상녹화 활용 노하우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논의 내용 중 실무 활용사례 중심으로 영상녹화조사 활용 TIP을 제작하여 전국 검사들에게 배포하였다. 2019. 6월에는 현장 설명회 일선 청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주임검사 승인 없이 결재자가 영상녹화물 열람할 수 있도록 영상물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열람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2020. 12월에는 검찰청 외 제3의 장소에서도 영상녹화조사가 가능하고 휴대와 설치가 편리한 이동형 영상녹화조사장비 18대를 도입하여 장소적 제한 없이 영상녹화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피의자, 수용 중인 참고인,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였다.

2021. 12월에는 개정 형사소송법(2022. 1. 1. 시행)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영상녹화조사를 유죄 입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법령 및 지침 상 필요적 영상녹화조사 사건, 사건 유형별 영상녹화물 증거 활용 사례, 새로운 방식의 영상녹화조사 사례를 소개한 「영상녹화조사 수사·공판 실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일선 청 영상녹화조사 활용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상녹화 조사 시 조서 작성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영상녹화 조사과정 전체를 문서화하여 수사 및 재판에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고자 영상녹화제도 시행과 병행하여 2009. 2월 일반임기제 속기사 28명, 2013. 8월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54명, 2019. 5월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24명 등 총 106명의 전문 속기사를 채용하여 전국 청에 배치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의 속기·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기사 운영준칙」(대검 예규 639호, 2013. 3. 11.제정, 대검 예규 제791호, 2015. 7. 16. 개정, 대검 예규 제934호, 2018. 3. 2. 개정, 대검 예규 제1215호, 2021. 8. 11. 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효율적인 영상녹화조사를 위해 모든 영상녹화조사실은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한 후 즉시 CD로 제작하고, 조사실 밖에서는 조사 장면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아동조사실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고 휴게실에서는 부모 등이 모니터로 편면경을 통해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신문실은 법정에 준하는 외관을 갖추고 고소사건의 경우 민사사건처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영상녹화조사실은 2004. 12월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4개청을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하여 12실을 설치·운영한 이후 2021. 12. 31.까지 전국 65개청에 총 890실을 운용하고 있다. 조사실 설치현황은 다음 〈표 2-40〉과 같다.

| 표 2-40 | 조사실 설치현황(2004 ~ 2021년)

종 류 / 연 도	계	검사 신문실	여성·아동 조사실	일반 조사실	일체형	분리형
2004	12	1	4	7	-	-
2005	42	4	9	29	-	-
2006	70	1	6	63	-	-
2007	242	9	7	226	-	-
2008	212	4	5	135	51	17
2009	77	2	2	35	26	12
2010	94	-	23	41	-	30
2011	38	-	1	24	-	13
2012	15	-	2	13	-	-
2013	10	-	2	8	-	-
2014	15	-	1	14	-	-
2015	0	-	-	-	-	-
2016	8	-	-	8	-	-
2017	73	-	3	70	-	-
2018	3	-	-	3	-	-
2019	82	-	5	77	-	-
2020	5	-	-	5	-	-
2021	-	-	-	-	-	-
계	998	21	70	758	77	72

※ 전국 수사검사(995명, 2021. 12. 31. 현재) 대비 89% 설치

※ 설치 누계는 998실이나 신청사 이전 등의 사유로 현재 총 890실 활용

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DNA감식 연구사업의 수행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시료를 사전에 채취하여 DNA형을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건발생시 현장검증물과 비교·검색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검찰은 2010. 1. 25. 공포되고 2010. 7. 26.부터 시행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들의 DNA신원확인정보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취대상자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DNA인적관리시스템에 2021. 12. 31.기준 202,177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고, 그 중 193,189명에 대한 DNA분석결과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였으며, DNA검색을 통해 살인, 성폭력, 강도 등 총 2,457건의

미제사건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수사 재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강력사범에 대한 DNA데이터베이스 자료가 훨씬 더 축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거를 통해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미제사건의 현장 증거물 DNA와의 원활한 상호검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9. 6월부터 2020. 6월까지 검찰은 경찰 국과수, 국방부와 함께 DNA DB 연례 운영보고서를 발간하여 법무부 등 유관기관 및 검·경등 실무부서에 배포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업무 참고 및 국민들이 DNA-DB운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0. 12월 검찰은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DNA-DB 운영성과를 담은 DNA-DB 10주년 백서를 발행하여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검·경등 실무부서에 배포하였다. 2021. 6월에는 제4차 연례 운영보고서를 제작·배포하였다.

한편, DNA감식과 범죄자 DNA-DB에 사용되는 고가의 외국 상용분석키트를 대체하는 국산화 기술을 연구하고 외국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차세대 분석 기술을 국내에 조기 정착시켜 국내 DNA감식기술의 역량을 제고하고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한 'DNA감식의 국산화 및 선진화 연구사업'이 3년 계획으로 2012년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대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용역의 형태이며 총 15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서울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의 학계·연구 전문가 그룹이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유 특허 12건, 저작권 2권을 등록하고, 이 중 3건을 관련 업계에 기술 이전하였다. 그리고 연구논문은 42편, 학술발표는 94건이 수행되어 관련 분야에 참고·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2. 11월, 2014. 2월, 2015. 3월, 2016. 7월, 서울대, 연세대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움(ISFDL :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rensic DNA in Law)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2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DNA-DB 및 선진 DNA감식 기술 등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6. 7월 연세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움에는 2017. 8월 ISFG 서울총회 개최를 앞두고 ISFG 부회장 메키 프린츠 박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2017. 8. 28.~9. 2.까지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국제법유전총회(ISFG : International Society of Forensic Genetics)를 통해 법과학 관련 감정관 및 연구자 771명이 참석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수사의 과학화'를 지향하는 검찰 DNA감식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감식 기술 세계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다.

2018. 4월에 개최된 제5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에는 DNA 감정관 및 경찰 과학수사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이태원 살인사건의 현장분석에도 참여한 범죄 전문가 David J Zeliff(미국)가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을 주제로 하여 증거물채취 주의사항, 증거를 기반으로 한 사건현장의 재구성 등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2019. 3월~12월 DNA 분야 자체시험연구 '차세대염기서열 분석방법(NGS)에 대한 유효성 평가연구'를 수행하여 최신기법을 감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하였다.

2019. 4월과 9월에 개최된 한국법생물연구회는 2014. 4월 대검찰청 등 11개 유관기관이 각자 전문 분야별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발족하였고, 그간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원산지와 종판별을 통한 관세포탈 방지, 특정 동·식물의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2회 연구회까지 1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모범적인 정부 기관 간 협업 모델로 발전하였다.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11회 연구회에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현황 및 생명윤리적 관점에서의 논란'이라는 주제로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국립 종자원에서 개최한 12회 연구회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대검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같은 감식 기관들이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한 여러 협력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서는 법생물연구회에서 구축된 각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사에 필요한 관련분야 전문가 추천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0. 6. 2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하여 R&D 및 과학수사기법 신규 콘텐츠 발굴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등 교류를 강화하였다.

2021. 3월 ~ 12월 DNA 분야 자체시험연구 '상용화된 정자 DNA분리 추출 기법에 대한 유효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여 성폭력 사건 증거물에서 정자DNA를 효과적으로 분리 추출할 수 있는 분석기술을 축적하였고, 비대면 온라인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19개 기관 70여명이 참여하는 제13회 한국 법생물연구회를 '사건현장의 e-DNA 증거'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마.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따라 수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중요성이 확대되고 피의자의 인권 보장,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 증거취득 후 진술조사」로 검찰수사력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05. 4월 대검찰청에 과학수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2005. 5월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에서는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 증원,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용 장비 및 시설 확충,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센터 신축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분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2006. 3월 설계 발주를 거쳐 2006.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8. 10. 31. 대검찰청 부지에 지상6층 지하1층(건물연면적 7,844.88제곱미터, 공사비 143억 8,200만원) 규모의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준공되었다. 그 뒤 마약감정실을 제외한 과학수사부 산하의 모든 감정·감식·분석실이 디지털포렌식센터로 집중되어 법화학 감정·문서감정, 심리·영상·음성분석 뿐만 아니라 화재수사·DNA 감식 등 명실공히 검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과학수사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후 2012. 11월 단순히 수사지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감정기법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선도적 과학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명칭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변경하였고, 2013. 8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개소하여 디지털 포렌식 도구 및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 등 개발에 집중하고 안티포렌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08. 10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준공 이후 정원 약 102%, 감정건수 약 450%, 감정장비 약 200% 등 인력 및 장비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심지어 일부 감정실은 개방된 별관 건물(예식장, 강당)을 임시 사용하고 있어 시설 보안 및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어 해결이 시급하였다.

더욱이 2020.부터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국가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센터'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각종 R&D 사업 및 과학수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증축이 절실하였다.

이에 2020. 5월부터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및 국회 심사를 거쳐 2020. 12. 2.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설계비 약 14억 원, 총 사업비 약 325억 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하3층·지상 6층(건물연면적 12,455제곱미터) 규모의 증축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2021. 12월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전방위적인 감정·감식·분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하나의 과학수사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 증거물에 대한 신속·정확한 분석으로 일선 수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바. 과학수사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1) 과학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

대검과 일선청에 분산 관리중인 과학수사장비의 체계적 관리 필요와 수사장비 관리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06. 7월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수사장비관리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06. 8월 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6. 9. 1. 시범 운영을 시작하면서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대장을 토대로 전국청 수사장비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또한 전국청 수사장비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사장비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대출·회수 등 업무처리 메뉴얼을 제작·배포 하였다.

이 시스템은 전국청의 수사장비 관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권한이 허용된 대검 또는 일선청 장비관리 담당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실시간으로 장비보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기존 수기 기재 장부를 통해 관리하던 수사장비 대출·회수업무를 바코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정확성을 높였으며, 대검의 메인관리자가 수사장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e-PROS 과학수사홈페이지에 연동시켰으며, 기존 e-PROS 과학수사홈페이지에 장비지원 게시판을 신설하여 일선청 장비지원 요청 및 문의에 즉각 응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수사 활성화 및 수사장비 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 6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의 노후와 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사장비 활용 커뮤니티 제공, 통계 및 조회, 관리 기능 강화 등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0. 10월 성능 및 기능이 더욱 개선된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2)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시스템 구축

2006. 6월 디지털 압수수색 및 분석 지원요청, 디지털 관련 자료, 각종 공지사항, 통계 활용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여 실무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수사지원업무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하고, 수사질의어프로그램이 분석관의 PC에서만 구동되어 대용량 파일 등에 대한 검색이 어렵다는 등의 서비스 불만이 초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포함시켜 「전국 디지털수사망 구축사업(D-NET)」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하여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을 연계하였다.

이와 함께 대검, 각 거점별 디지털포렌식팀(서울중앙, 수원고검,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과 일선 수사팀 간의 효율적인 수사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지원업무관리, 연구개발관리, 디지털수사장비관리, 통계관리, 외부전문가 관리, 운용시스템 관리 등을 위한 「디지털 수사 통합 업무 관리시스템(DFIS II)」, 분석결과의 온라인 송부 및 검색, 이메일, 회계데이터, 전자결재 데이터,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통합분석할 수 있는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 대검찰청과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폐기가 가능한 중앙집중형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디지털포렌식 온라인교육시스템」, 그리고 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정보보안 체계를 설계하고, 구축 운영하고 있다.

2017. 8월 「디지털증거 확보(송치)체계(KD-NET) 구축사업」을 최종 완료하여, 1차 참여기관(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차 참여기관[(경찰청(대전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3차 참여기관[(경찰청(서울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과 디지털 증거 데이터패키지 국가 표준(KS X 1220)을 활용한 디지털증거의 무결한 송치·수리 등, 처리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체계를 구축하였다.

검찰·경찰 간 디지털증거 송치를 위하여 네트워크(초고속 국가망)를 연결하였고 검찰·특사경은

국가행정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디지털증거를 송치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 디지털포렌식팀은 5개 고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및 6개 지검(서울중앙, 수원, 인천, 서울남부, 창원)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폭발적인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분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7. 12월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2019. 3월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수원지검 포렌식팀이 수원고검 포렌식팀으로 이전하여 6개 고검 및 6개 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운영 중이다.

2018년에는 디지털증거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국가형사사법기록관'에 디지털증거 백업 센터를 구축하여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2019년도에는 디지털 증거의 생애주기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와 긴밀하게 연동, 디지털증거물의 등록 및 폐기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또한 급격하게 발전하는 IT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디지털증거분석 체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검 자체 개발 모바일분석도구(MFA)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기능 개선, 압수된 대용량 디지털증거에서 범죄 단서를 식별할 수 있는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 회계부정 적발 시나리오 기반의 대용량 회계데이터 분석 기법 연구 및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 빅데이터기반 지능형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플랫폼 개발 사업(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 3개년, 2022년도 완료 예정)을 착수, 현재 17개 유관기관에 디지털증거 데이터 통합 분석 서비스(NDFaaS)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참여 기관 확대를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원활한 시스템 운영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3)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의 운영

법화학, 마약, DNA, 문서 감정분야에 있어서 감정물의 접수에서부터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서 작성 및 발송까지의 세부사항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는 감정정보관리 시스템은 감정절차의 연속성 및 무결성(chain of custody)을 담보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개발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사용되고 있다. 2018. 10. 29.에는 수사기관이 대검 과학수사부에 의뢰하는 감정물에 대한 접수를 일반 우편물과는 별도로 NDFC에 신설된 중앙감정물접수실에서 전담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도록 절차를 개편하였으며, 이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감정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을 2018. 11. 1. 개정하여 중앙감정물접수실의 운영 근거마련, 감정물 이동의 소급성을 관리하는 감정의뢰서 양식 개정, 감정물 채취 및 이동 중 발생한 훼손된 감정물에 대한 반려 조항을 강화하는 등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9. 10월 정확한 감정의뢰 방법 교육을 위해 '감정의뢰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검찰방송 온라인 교육자료에 게시하였다. 중앙감정물접수실의 신설에 따른 감정의뢰 절차의 변화 및

DNA 감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DNA감정 의뢰 시 감정물 확보부터 포장까지의 유의사항, 감정의뢰서를 작성하는 방법, 지문-DNA-법화학 공동 감정 의뢰 방법 등을 동영상 자료와 설명 자료로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감정물의 훼손 및 오염을 방지하고 감정물의 채취 단계부터 감정 완료시까지 감정물의 소급성을 유지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등기 및 사송으로 중앙감정물접수실을 통해 접수되는 감정물(9개 분야 : 문서, 영상, 음성, 복원, 화재, DNA, 법화학, 모바일, 컴퓨터포렌식)은 2019년 2,243건, 2020년 3,552건, 2021년 3,963건으로 점차 증가하여 감정물 소급성 유지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검찰업무 정보화

1) 검찰업무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

검찰업무 정보화를 위하여 1980년대부터 통합사건관리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2000년 「검찰 정보화 장기발전계획(ISP)」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지식관리시스템(e-Pros), 검사실 수사정보 시스템 등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검찰업무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킹, 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수사 자료 등 중요 문서들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 대전고·지검 등 6개청, 2017년 서울고검 등 10개청, 2018년 대구고·지검 등 13개청, 2019년 광주고·지검, 전주지검, 수원고·지검 등 5개청, 2020년 포항지청 1개청, 2021년 제주지검 등 12개청에 망분리를 적용하여 총 49개청에 대한 네트워크 망분리를 완료하였고, 향후 5년내에 전국 67개 검찰청의 망분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검찰 정보통신 인프라 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해 노후 네트워크장비 및 전화교환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대검찰청 등 5개청, 2008년 춘천지검 등 6개청, 2009년 대구고·지검 등 5개청, 2010년 서울동부지검 등 6개청, 2011년 대전고·지검 등 9개청, 2012년 서울남부지검 등 5개청, 2013년 김천지청 등 3개청, 2014년 서울고·지검 등 2개청, 2015년 창원지검 1개청, 2017년 천안지청 등 2개청, 2019년 수원고·지검 등 5개청, 2020년 인천지검 등 2개청, 2021년 서울서부지검 등 8개청에 대한 정보통신 인프라 성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검찰 전화교환기 성능 개선 및 보안 강화를 위해 IP교환기 OS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하여 2020년에는 대검찰청 등 48개청에 대한 IP교환기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다.

검찰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향후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 및 신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여 검찰 정보통신망의 대역폭을 약 3배 이상 확대하였고, 각 고검의 관내 지청 정보통신망을

이중화 구성하여 네트워크 장애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정보유출 위험 방지 등을 위한 대용량 자료 임시보관소(1인 20GB)를 구축하였다.

2016년 기존 기계식 팩스의 자료 유실·훼손 방지와 팩스 관련 업무 경감을 위해 대검찰청 등 21개청에 전자팩스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등 44개청으로 확대하여 전국 65개 검찰청에 전자팩스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8년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팩스시스템을 이중화하여 도입사업을 완료하였다.

검찰 지식의 효율적인 축적과 협업 기반 강화를 위해 차세대 검찰 지식포털을 2014년 구축하고, 검찰 지식 백과사전인 프로스피디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보다 효율적인 지식생산 및 활용을 위해 2018년 e-PROS 내 지식저장고와 프로스피디아를 일원화하였다.

한편, 2018년『경조사 알림 등 지침』개정에 따라, 퇴직자의 혼례 및 상례를 게시할 수 있는 퇴직자 경조사 게시판을 신설하고, 성추행·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창구로 작성자가 익명으로 게시글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만 볼 수 있는 '#WeTogether' 게시판을 신설하였다.

2019년 검사 전문분야 개편에 따른 관련 기능을 개선하였고, '프로스피디아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로 도출된 개선방안 및 실행과제를 토대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통합검색의 정확도 향상 및 결과 화면 개선, e-PROS 메인 메뉴 정비, 사용자 화면 개선, 훈령·예규/지침·지시/매뉴얼 메뉴 통합 등을 통해 지식의 효율적 사용과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전자문서관리 및 검찰정보시스템들 간의 연계 확장을 위해 2010년 검찰 자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른 문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처리 용량 확장 및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실시간으로 직원간 상호 업무공유 및 각종 업무시스템과의 연계로 신속한 정보전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3년 신기술이 적용된 검찰 메신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검찰 소통문화를 강화하였으며, 2019년 안정적인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안이 강화된 신규 전자우편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정과제에 따라 ActiveX 제거 및 호환성 확보 등으로 사용자 편의기능을 보다 향상시켰다.

검찰은 전자정부법 등에 의거, 검찰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 행정전자서명시스템 및 사용자 조직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0년 검찰 행정전자서명시스템 장비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 등 시스템 구성을 변경하여 재구축하였고, 현재 검찰 업무시스템 뿐만 아니라 타기관 제공 시스템까지 연계하여 검찰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사용자 업무 활용도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검찰청 홈페이지는 1996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으로, 2002년 전국 검찰청별 홈페이지 구축, 2005년 민원증명발급 서비스 제공, 2007년에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개선 등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모바일 홈페이지도 구축하여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2014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 사전정보공표 대상 메뉴를 추가하였다. 2019년 대검찰청 등 전국 66개청 홈페이지,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홈페이지, 역사관체험관 홈페이지의 메뉴 및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향상하였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검찰청 대표 1301 검찰콜센터 소개와 이용안내 메뉴, 국가형사사법기록관 견학안내 메뉴를 추가하였다. 2021년에는 연간 품질관리 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웹사이트 품질개선을 통하여, 웹 호환성·접근성·개방성을 강화하고 웹 표준 등을 준수하였으며, 7년(2014년 ~ 2021년) 연속 웹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하여 모든 국민에 대한 차별 없는 이용환경 조성 및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다.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형사사법업무를 표준화·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민중심의 e-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21세기형 e-형사절차 구현을 목표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수사 프로세스 348종, 재판 프로세스 260종, 집행 프로세스 380종 및 압수업무 등 기타 프로세스 34종 총 1,022종의 형사사법업무 프로세스를 수작업 기반 업무 환경에서 전자적 업무 프로세스로 대체하고, 형사사법 문서 총 1,361종의 서식을 표준화하여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형사사법기관이 사용하는 공통 코드 25종을 표준화하여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형사사법정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의 약 74개 접점을 대상으로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약 48종의 민원 업무에 대하여 온라인 발급·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형사사건처리 진행상황조회 서비스, 재판서·통지서 조회, 벌과금 조회·납부 서비스 등 총 11종의 대국민 형사사법 통합 서비스를 2010. 7월부터 개시하였다.

2008. 12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사업의 쟁점에 대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도출하고, 법무부 장비 도입을 위한 4차 사업을 발주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각 기관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운영하되, 대국민서비스시스템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통시스템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운영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09. 2월 기관 간 정보공동활용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도출하였고, 2009. 12. 2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0. 5.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7. 12.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약식사건 전자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대국민 통합포털 신설 등으로 검찰 사건처리 업무 효율화와 국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2011년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안정성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조회 및 영장정보 조회 권한 부여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권한관리 체계를 정비하였고, DB접근제어 도입 및 사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발맞추어 팀제 수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 사건부 기능 개선, 직접경정 및 겸방 업무 시 검사실별 시스템 접속 방식 개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미제사건부 개선, 재기·이송 시 기록목록 및 증거목록이 연계되도록 하고 사용자가 직접 기록목록 등 편집·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 개선, 영장집행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전자팩스 기능 향상, 공무원연금공단 연계를 통한 공무원 신분확인 자동화 기능 구현으로 공무원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신속한 통지, KICS에 입력한 출국규제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및 체포·구속 통지서, 노역자유치집행 및 형집행통지서, 항고사건 처분결과통지 등 매년 송달건수가 많은 통지서 선정 후 우정사업본부와 연계하여 우편송달 업무를 전자화 처리, 적용법조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향상된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판결문·결정문 검색기능을 개선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등 업무에 유용한 컨텐츠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에도 벌금납부 사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납부내역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한 벌과금 수납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수기 입력으로 인한 과오납 등의 민원 및 사고 발생요소를 차단, 민원인의 민원서류 신청 시 수기 작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구술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에 기여하였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지휘·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기능 구현, 주요 사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 등 주요정보 통합검색 기능을 구축, 형사사건 및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관리시스템' 및 '강력사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사력 향상을 도모하였고, 범죄피해자 권리강화를 위해 피해자지원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직관사건부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직관사건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감인 소환 또는 검사 직접청구 구속영장 발부·기각 시 변호인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는 기능 구현,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 관련 기능 등 신설하였고, 민원 관련 시스템 장애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민원인 통지 장애예방체계를 구축, 벌과금 수배자의 납부사실을 인지하여 불법 구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재산형 인치 업무 개선, 피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처분결과 통지방식 개선, 특사경 송치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용노동부 송치사건 정보를 온라인으로 유통함으로써 업무 전자화 및 절차 간소화에 기여하였다.

2021. 1. 1.부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 요구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서식 및 신설 제도에 따른 기능을 검찰 KICS에 신속히 반영하였고,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전자송달기능을 추가하여 사건 관계인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개선하였다.

피해자지원시스템도 전면 재정비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메뉴를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자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사, 수사지휘, 공소제기·유지, 재판집행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전관예우' 등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여 변호사의 변론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활동 관련 절차를 시스템화 하였으며,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및 기지국 수사'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일부 개정(시행 2019. 12. 31.)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업무효율성 향상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2021년에는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특정경제사범 관리 대상 사건 관련 보고 내용이 자동으로 전송될 수 있게 개선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하여 이첩사건, 형의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기존 적용 중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28종 외에 추가로 항고사건결정결과통지서 등 총 44종에 대하여 음성 변환 바코드를 삽입하는 등 업무투명성 확보 및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차별 해소에 기여하였다.

3) 검찰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검찰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날로 지능화하는 DDoS 등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기초하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91호, 2012. 1. 2.)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2012. 12월 검찰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완료하였고, 2013. 1월부터 본격적으로 대검찰청 및 63개 일선청에(현재 65개청) 대한 사이버위협 정보를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검찰업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관제를 통하여 대용량의 로그정보 수집 및 다양한 상관분석으로 각종 사이버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관리 능력을 강화하였다.

검찰정보시스템의 중요 업무자료 유출 예방을 위해 각종 정보보호시스템(백신, 방화벽, IPS, 유해사이트차단, 인터넷 자료저장방지, DB 및 서버 접근제어, 스팸메일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킹메일의 유해성 분석·대응 및 네트워크와 전자우편을 통한 APT공격 차단, 악성코드 유입 탐지 및 차단을 위한 악성행위탐지시스템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업무용 PC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정보보호 교육(알면 편한 보안상식 웹툰 제작·인트라넷 게시) 12회, 가상의 악성메일을 이용한 해킹메일 모의훈련 6회 실시, 보안뉴스레터·보안권고문 등 최근 보안이슈를 e-PROS 게시판을 통해 신속히 전달하는 등으로 사용자 정보보안 의식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2021년도에 침입방지시스템의 탐지정책 개발 및 보안 이슈 제공 등 예방활동 655건, 유해의심사이트와 유해의심 IP 차단 등 침해분석/대응활동 12,495건, 악성코드, 바이러스 감염 PC 탐지 등 침해탐지활동 422건의 각 업무를 수행하였고, 노후된 보안관제모니터링시스템을 교체하는 등 안전한 업무 환경 마련 및 사이버위협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각종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PC 해킹 차단, 악성코드 감염 방지,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보안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각종 정보보호 규정 정비 등 노력을 통해 안전한 검찰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사이버공격의 양상은 국가 주요 산업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만큼 대담해지고 국민생활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피싱, 스미싱, 파밍에서부터 랜섬웨어, 비트코인, IoT공격 등 사이버범죄 수법 역시 한층 진화하고 있으며,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사이버범죄자들이 급증하며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검찰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된 업무와 기능을 추진·관리함으로써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1. 11. 1. 대검찰청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설치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단은 한수원 대상 사이버테러 사건을 계기로 2015. 2. 11. 과학수사부 출범과 함께 사이버수사과로 정식 직제화 되었고, 공공전산망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적·조직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수사 필요분야 증가에 따른 일선청 수사역량 확대를 위하여 서울동부지검을 사이버범죄 수사 중점청으로 지정하여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대중화로 거의 모든 수사 영역에서 사이버 증거자료 수집·분석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수사과는 일선 검사·수사관에 대한 전문교육,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연구·개발, 일선 사이버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을 통해 검찰 전체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해외 서버를 경유하여 공격하는 수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므로, 국가 간 신속한 공조가 수사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수사과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세계 89개국이 가입하여 활동 중인 G7 24/7 High Tech Crime Network의 한국 접촉점으로서

국내 수사기관을 대표하여 국제공조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7 24/7 Network를 통해 회원국들은 실시간 정보교환 및 소멸되기 쉬운 사이버 증거보존 요청을 진행함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2019. 11월 사이버수사의 국제공조 다변화를 위해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 유로폴의 사이버범죄센터(EC3) 등을 방문하여 공조 강화에 힘써 왔으며, 특히 2019. 11. 20.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허브(APC-HUB) 설립을 위해 대검찰청-월드뱅크-GFCE, 3자 MOU를 체결하였다. 후속 조치로 2020. 1. 9.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센터에 허브 사무국을 개소하여 대검은 허브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되었다. 2021. 2.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허브 파트너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세부 운영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21. 5. 허브 전문인력 채용, 허브 로고 제작, 홈페이지 구축 개시 관련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집행하였다. 이와 같이 검찰은 아태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통해 글로벌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실 및 국정원, 과기정통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을 본격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 관련 유관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국가적 사이버 위협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분석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주한 미 FBI 사이버협력관과는 매월 회의를 실시하여 사이버범죄정보 교환 등을 통해 미국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1. 12월경에는 미 FBI와 긴밀히 협력하여 리플(Ripple) 가상화폐 피싱 사기 사건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환부함으로써 범죄 척결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하였다.

연구·개발로 구축된 악성코드시스템 THEMIS는 악성코드에 대한 추출, 분석, 범죄자 추적 등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12년 구축 이후 매년 고도화를 거듭하며 악성코드 제작·배포 사범 단속을 위한 검찰수사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및 스미싱 범죄 등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신종 악성코드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증거 분석을 위하여, 모바일 기반 악성코드 등 신종 악성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순차적인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구축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는 일선 청에서 악성코드분석시스템에 접속하여 분석결과(관련 IP·도메인 등)를 손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2017년에는 기존 악성코드분석 시스템의 데이터와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위협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2018년에는 사이버위협자원의 정보 중 국내 위협정보를 선별하고, 정규화 등을 통해 수사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불법 촬영물 유포·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웹 자동화 분석, 동영상 콘텐츠 특정점 추출 등)을 개발하여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검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사전 탐지하여 채증 및 차단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2013. 3월경에 자체 개발하여 2021. 12월까지 총 52,535건을 차단하였다.

사이버수사과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종 사이버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유포탐지를 위한 도메인 추적기술의 실무적용방안', 'AI를 이용한 인물기반 동영상 DNA 추출 및 비교방안',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사이버수사 조직진단 및 개편방향 연구' 등 다양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R&D에 관련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과제(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사이버범죄 활동 정보 추적기술, 4년)를 발굴하고 직접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술 개발에 노력하였다.

또한 자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수사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 수사관련 국가연구개발과제('사이버범죄 수집정보의 증거화 방안', 3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여건을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탁월한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와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상을 구현하고자 힘쓰고 있다.

자. 감정·분석기법 특허출원 및 등록

최근 들어 특허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학수사부는 특허를 통해 과학수사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최신 감정·분석기법개발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 분야는 분광법을 이용한 볼펜 서명 감식 방법(2011. 10월), 분광법을 이용한 인주 및 서명 감식 방법(2012. 5월), 음성분석 분야에서는 신원확인을 위한 발성유도 방법 및 장치(2011. 12월), 오디오 파일의 위변조 검출 장치(2014. 4월), 주파수대역의 분석을 통한 디지털오디오파일의 위변조 검출방법(2015. 10월), 녹음 인증 시스템 및 그것을 이용한 녹음 인증 방법(2016. 1월), 음질특성을 이용한 화자인식장치 및 방법(2017. 11월), 영상분석 분야에서는 렌즈 왜곡 보정에 사용된 보간 패턴 검출을 통한 촬영카메라 식별 방법 및 장치(2013. 1월), 멀티미디어 복원 분야에서는 손상음성파일 복원 장치 및 그 방법(2014. 11월), 녹음 인증 시스템 및 그것을 이용한 녹음 인증 방법(2016. 1월), 디지털 녹음 파일 위변조 식별을 위한 헤더 및 파일구조 비교 프로그램(2016. 2월),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이미지 정렬 장치 및 그 방법(2016. 11월), 손상된 멀티미디어 파일의 음성 복원 장치 및 그 방법(2017. 7월), 영상녹화분야에서는 영상 녹화 조사 시스템(2011. 10월)을 특허 등록하였다. 심리분석 분야에서는 심리생리검사 관리시스템(PMS: Polygraph Management System)(2015. 10월)을 저작권 등록하였고, 피검사자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뇌파분석 방법 및 그 장치(2017. 11월)를

특허 등록하였다. 영상녹화분야에서는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2010. 2월)와 컴팩트디스크용 라벨지(2010. 3월)를 디자인 등록하였다.

디엔에이·화학분석과 법화학감정 분야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암페타민 및 대마 유도체의 다성분 동시 분석방법(2008. 7월),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디메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유도체의 다성분 동시분석방법(2009. 6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모발 중 암페타민 유도체 및 케타민 대사체의 다성분 동시분석법(2009. 11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소변 중 60종 이상 마약성분의 다성분 동시분석법(2010. 12월), 대마 대사체 분석방법(2011. 4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기체상 혼합물로부터 목적물질의 선택적 분취방법(2012. 2월) 메탐페타민의 신규한 제조경로 특정 불순물(2013. 1월), 면역 반응 측정법을 이용한 모발 중 마약 성분 신속 분석법(2014. 3월), 고온 기체상 크로마토그래프 분석법을 이용한 발기유발제의 고감도 신속 검출법(2014. 7월), 화학적 프로파일링에 기초한 메스암페타민의 분류기법(2014. 8월), 탄소수 6이하의 알코올류 다성분 동시분석법(2015. 7월), 혈액 중 성충동 억제약물 및 남성호르몬 다성분 동시분석법(2015. 8월), 하이드록시펜터민, 펜터민 및 메펜터민 동시 신속분석법(2017. 3월), 암페타민 검출 방법(2019. 6월), ADB-푸비나카의 대사체 합성 방법(2019. 11월), 쿠밀 페가클론의 대사체 합성 방법(2019. 11월), GC-MS 주입구 유도체화를 이용한 대마 대사체 분석 방법(2020. 7월),메트암페타민의 제조방법을 추정하는 방법(2020. 12월)을 특허 등록하였다. 또한 2021. 1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나 성범죄에 악용 빈도가 높은 약물인 졸피뎀에 대한 대사체 성분에 대해 세계 최초로 모발 분석법을 개발함으로써 감정기간을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실효성 있는 범죄수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DNA-DB운영 및 DNA감정분야에서는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에스티알 유전자들로 구성된 콰드루플렉스 피씨알시스템(Quadruplex PCR system)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00. 10월),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16개의 짧은 반복 단위 유전좌위들 및 성염색체 유전좌위를 포함하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11. 1월), 체액식별용 키트 및 이를 이용한 체액 식별방법(2012. 12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을 이용한 분석대상의 인간 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4. 10월), miRNA를 이용한 체액 식별용 조성물·키트 및 체액 식별방법(2014. 10월), DNA메틸화 마커를 이용한 체액식별방법·체액 식별용 조성물 및 키트 방법(2014. 11월), NGS기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5. 6월), 마약성 양귀비류의 판별방법(2015. 9월)을 특허등록 하였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인간객체의 확장 상염색체 STR분석방법(2015. 10월), 인간객체 염색체 상의 STR분석방법 및 이를 이용한 분석키트(2015. 10월)를 특허 등록하였으며, STR 유전자와의 분별 선행 증폭을 통한 유전자감식 방법(2015. 7월)을 특허 출원하였다. 또한 법과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시도된 생물종 고유의 DNA바코드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법생물 디엔에이 바코드 수사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프로그램(2014. 6월)을 저작권 등록하였다. 2018. 8월에는 저명한 국제 학술논문지인 Electrophoresis에 한국인에 대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를 활용한 STR분석 결과가 게재 되었다.

혼합형 DNA프로필 분석을 위해 자체시험연구를 진행하였고 과학수사학회지에 논문 'EuroForMix를 이용한 혼합형 DNA프로필 분석연구'를 발표하였다(2019. 9월).

2021년에는 '마약성과 비마약성 대마의 식별을 위한 칸나비노이드 생합성 유전자 유래 분자마커 및 이의 용도' 1건, 신속한 증거물 수집 및 교차 오염 방지능이 우수한 핀셋 등 2건(2021. 10월), 신속한 증거물 수집 및 교차 오염 방지능이 우수한 핀셋 캡 탈리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핀셋(2021. 10월) 1건을 특허 출원하였다.

디지털수사과는 암호분석 분야에서 다수의 암호설정 파일에 대하여 암호를 한 번에 해제할 수 있는 '다수의 이기종 암호파일에 대한 자동화된 패스워드 해제시스템 및 방법'(2011. 12월), '착발신 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는 통화 내역 추출-추적 시스템 및 그 방법'(2013. 3월), '디지털 증거 분석시스템 및 그 방법'(2013. 7월), '디지털 증거 수집 방법, 그리고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2013. 11월), 문서의 암호를 해독하는 'ASIC 칩을 이용한 암호 탐색 장치'(2016. 4월)를 발명하여 특허 등록,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는 '문서 파일의 포렌식 분석 방법 및 시스템'(2014. 3월), 이메일, 전자결재, 회계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손상된 레코드를 복원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5. 8월)과 'DB2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 및 장치'(2015. 12월)를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획득장치 및 방법'(2015. 10월)을,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손상된 레코드를 복원하는 'Mysql MyISAM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6. 9월), 'Mysql INNODB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6. 10월),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부분 데이터 획득 장치 및 방법'(2017. 10월), 인공지능비서 서비스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써 '클라우드 기반의 IoT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장치 및 방법'(2020. 9월)을 발명하여 특허 등록하였다.

6. 테러 등 국가안보위해 세력 엄정대처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 공공형사과 검사 조현웅

가. 추진배경

2021년 법무·검찰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헌법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테러 범죄 엄정 대처

2021. 3.경 미국 애틀랜타에서 아시아계 증오범죄로 4명의 한국인이 총격 사망하였고, 2021. 5.경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선원 5명이 해적들에게 납치되었다 석방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향한 테러사건이 발생하였고, 국내에서는 직접적인 테러로 이어진 사건은 없었으나 해외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사건을 적발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3명을 기소(2명 실형 선고, 1명 1심 재판 진행 중)하였고, 테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미국 등 4개국과 국제 형사사법공조 7건을 이행하는 등 테러위협 제거 및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 노력하였으며, 테러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는 등 테러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다.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수사

北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한 후, 4년간 충북 지역에서 암약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수수,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간첩행위를 한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4명을 입건하여 그중 3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하였고, 北 공작원들과 회합, 지령을 받아 입국 후 국내 금융기관 해킹 협의를 위해 알아낸 국가기밀 등 정보를 北 공작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간첩행위를 한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4명을 입건하여 그중 3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 신중한 입건,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국가보안법 남용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국가안보 수사체계를 운영하여 35명의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을 입건하여 그중 20명을 기소(구속기소 11명)하였다.

라. 인권보장 철저

또한 안보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심야조사 자제, 영상녹화 활용 등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진술증거의 확보시에도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나아가 경찰의 장기 내사 사건을 점검하여 입건 가능성이 낮은 사건들은 적극적으로 종결토록 지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건 위주로 안보수사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내사 장기화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

7.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및 침해된 인권 회복 노력

공공형사과 검사 조현웅

가. 추진배경

법무·검찰은 2017년부터 과거사 재심사건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인권침해 등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발굴하여 직권 재심을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나. 지속적 직권재심 청구

2017년 이후 총 56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였고, 2021년에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피고인 72명을 추가 발굴하여 직권재심을 청구하였으며, 2021년 11월 22일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권고에 대비하여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설치하였다.

다. 진실규명 및 인권회복 노력

직권 재심 사건 외에 당사자 청구 재심 사건도 공소유지 중심에서 벗어나,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은 재심개시 의견을 개진하고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며, 불법구금 등 적법절차 미준수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구형하고, 상소권 역시 적정하게 행사하는 등으로 진실규명과 침해된 인권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8.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공공형사과 검사 이주현

가. 추진배경

2021년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었으나, ’21. 4. 7.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광역시장 등 총 21곳(광역단체장 2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는데,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인식되어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였다. 또한, 재보궐선거 이후 자연스럽게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대립적 정치환경이 계속되어 유튜브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치활동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아 허위사실공표 등 불법행위의 만연이 우려되었다.

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노력

검찰은 재보궐선거 관할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철저한 선거 대비체제를 확립하고, ’21. 10. 7.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3대 중점 단속대상(금품수수, 거짓말선거, 여론조작)을 비롯한 선거범죄 수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검찰은 2022년 실시 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고자, ’21. 12. 7. 경찰청과 함께 「’22년 양대 선거 대비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검·경 수사실무협의회 정례화, 수사준칙 규정상 협력절차 활용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였고, ’21. 12. 13. 「전국 18개 지검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절제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경찰 및 선관위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등을 논의하였다.

다. 수사성과 분석 및 선거범죄 적극 대처

’21. 4. 7. 재보궐선거에서는 총 339명이 입건되고, 당선인 5명(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등 107명을 기소하였다. 유형별로는 ▲선전시설손괴·폭력행사 등 폭력선거사범 32명,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불법선전사범 16명, ▲금품선거사범 9명,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50명이었다.

| 표 2-41 | 선거별 입건 및 처리 현황

[공소시효 만료일 기준, 단위: 명]

구 분	입 건	처 리		
		소계	기소	불기소
광역 단체장	274	274	71	203
기초 단체장	21	21	6	15
광역 의원	39	39	27	12
기초 의원	5	5	3	2
합 계	339	339	107	232

| 표 2-42 | 범죄유형별 입건 및 기소 현황

[공소시효 만료일 기준, 단위: 명(기소인원)]

구 분	흑색·불법선전	금품선거	선거폭력·방해	기 타
광역 단체장	113(12)	9(0)	70(32)	82(27)
기초 단체장	10(1)	7(2)	0	4(3)
광역 의원	7(3)	7(5)	5(0)	20(19)
기초 의원	2(0)	2(2)	0	1(1)
합 계	132(16)	25(9)	75(32)	107(50)

특히, 당선인 중 7명이 입건되어 5명을 기소하였는데, 그 중 4명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1명은 '호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 유형이었다. 검찰은 당선인에 대한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되,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국민의 상식에 맞는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검찰은 공직선거 외에도 민간선거인 협동조합 관련 선거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여 지역축협의 임원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들을 구속 기소하는 등 공정한 선거문화 구현에 기여하였다.

9.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

●공공형사과 검사 오창명

가. 추진배경

법무·검찰은 2021년도에도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각종 산업재해 사건도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나.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

현대중공업에서 '19. 9.경부터 '20. 6.경까지 발생한 5건의 중대재해 및 4건의 특별점검 안전조치위반 사건과 관련, '21. 3. 현대중공업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현대중공업 사고 부서 관리감독자, 안전부문임원 14명을 포함한 총 28명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산업재해 사고의 근본원인 및 책임자를 규명하였으며, 각 회사의 대표이사 및 법인 등을 기소하여 엄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21. 7.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5,000명이 종로 2, 3가 전차로를 점거, 행진하는 등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주최자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 구공판 처분하는 등 코로나19 상황하에서 방역수칙을 엄수하며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대응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대양판지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이 노조의 교섭권을 빼앗고자 어용노조의 설립을 지시하며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와의 신속한 보고지휘 체계를 통하여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엄정 수사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6명을 불구속 기소하여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할 의무를 부과하며 합리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수사역량 및 연구활동 강화 노력

일선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법리 및 수사 노하우를 체계화한 벌칙해설서 등을 집필·발간하였고, 외부 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업무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 및 각종 노동·산재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 그림 2-83 | 중대재해 대응 공동학술대회, 대검찰청·고용노동부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 대응 공동학술대회〉





〈대검찰청·고용노동부 간담회〉

10.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공공형사과 검사 오창명

가. 추진경과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처하였다.

나. 불법폭력집회·시위 건수 추이

노동·시민단체들의 다양한 권리 주장과 상반된 의견 표출 심화 등으로 집회·시위 신고 건수가 증가하였고, 여의도 공원 '전국노동자대회' 등 일부 불법집회가 있었으나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회제한 등의 이유로 대규모 집회·시위에서의 불법폭력집회·시위는 다소 감소하였다.

| 표 2-43 | 최근 5년간 불법·폭력 집회시위 추이 (출처 : 경찰청)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요 집회·시위(건)	10,438	9,613	13,864	12,465	13,000
집회신고(건)	68,905	81,358	129,642	138,636	150,729
현행범 체포(명)	270	112	342	256	188
입건자(명)	1,440	602	1,515	1,488	1,380

* 주요 집회·시위란 경력이 배치된 집회·시위를 말함

| 표 2-44 | 2021년 발생 주요사건 현황

구 분	주요사건	비 고
안보사범	• 北 연계 국내 금융기관 해킹, 정보제공(간첩) 등 사건	서울중앙지검
	•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충북지역 간첩단 사건	청주지검
	• 국내체류 외국인의 테러단체 자금지원 사건	서울중앙지검 등
선거사범	• 서울특별시장 선거 당선인 및 후보자 허위사실공표 사건	서울중앙지검
	• 부산광역시장 선거 당선인 허위사실공표 사건	부산지검
	• 지역축협 임원선거 후보자들 금품제공 사건	수원지검
	• 남양주시장 등 공무원 지위이용 당내경선운동 사건	의정부지검
	• 광주서구을 국회의원 등 기부행위제한위반 사건	광주지검
노동·집단사범	• 현대중공업 산업재해 사망 사건	울산지검
	• 민주노총 위원장 불법 집회 사건	서울중앙지검
	• 대양판지(주) 어용노조 설립 등 부당노동행위 사건	광주지검

11. 국제공조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엄정 확립

국제형사과 검사 윤기선

가.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국제수형자이송 관련 국제협력강화

1) 개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국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로 잠입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991년 범죄인인도조약, 1993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2011년 유럽평의회(49개국)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대폭 확대되어 현재 범죄인인도조약은 79개국(발효 79개국), 형사사법공조조약은 77개국(발효 77개국), 수형자이송조약은 74개국(발효 74개국)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전 세계 주요국들과 해외도피 범죄인의 강제송환과 수사공조에 관한 협력 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국제사법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범죄인인도

범죄인인도법은 1988. 8. 5.에 제정 및 발효되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법 제정 이후, 그간 축적하여 온 제도적 기반과 경험을 집약하여 주요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강제추방 등 국가별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송환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표 2-45 | 범죄인 송환 현황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수	45명	48명	55명	74명	70명	85명	60명	73명

3) 형사사법공조

형사사법공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21년 중 외국에 총 741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하였고, 외국으로부터 285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받아 처리하였다.

| 표 2-46 | 형사사법공조요청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한국 요청	181	236	220	240	320	375	420	741
외국 요청	80	111	137	160	195	235	202	285

4) 국제수형자이송

2005. 11월 국내에서 발효된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의거하여, 2006년에는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등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부터 수형자이송이 실시되었고, 2021년에는 심사대상자 14명 중 국내이송 신청자 4명, 국외 이송 신청자 4명에 대하여 이송승인을 하였다. 한편 2012. 12. 18. 한-태국 수형자이송조약, 2014. 6. 13. 한-홍콩 수형자이송조약, 2015. 10. 22. 한-쿠웨이트 수형자이송조약, 2021. 6. 5. 한-카자흐스탄 수형자이송조약 및 2021. 9. 11. 한-키르기즈스탄 수형자이송조약이 각 발효되는 등 국제수형자이송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나라는 74개국으로 확대되었다.

| 표 2-47 | 국제수형자 이송 현황

구 분 / 연도별	국내이송	국외이송
2014	12명	5명
2015	11명	1명
2016	3명	1명
2017	1명	4명
2018	2명	6명
2019	6명	3명
2020	1명	0명
2021	1명	0명

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업정처리

1) 개요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은 1966. 7월 체결되어 1967. 2월부터 시행된 뒤, 1999. 2. 1. 및 2001. 1. 18.에 개정되었다. 2001. 1. 18.자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를 기소하는 경우 해당 피의자에 대한 신병인도를 받게 되었다. 또한 2012. 5. 23.에는 합동위원회 합의사항(Agreed View) 개정을 통해 위 12개 중대범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미국 당국은 수사기간 중에도 대한민국의 구금 인도요청 자제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2) 사건 처리 현황

SOFA 합의양해사항의 개정 이전에는 미군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이 1.0% 미만이었으나, 2002년부터는 재판권 행사율이 증가하여 2021년에는 77.2%에 이르고 있다.

한편, SOFA 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397건, 2012년 344건, 2013년 365건, 2014년 405건, 2015년 387건, 2016년 388건, 2017년 374건, 2018년 351건, 2019년 444건, 2020년 541건, 2021년 457건이다.

| 표 2-48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통계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발생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	주한미군지위 협정사건 전체범죄에 대한행사
		총계	미측 관할 제외 총계	미군인				미군속 등		
				계	미측 관할	공소권 없음	미측관할 및 공소권 없음 제외			
'11	건	397	380	298	17	158	123	99	81(65.9%)	180
	명	456	439	341	17	177	147	115	92(62.6%)	207
'12	건	344	322	264	22	158	84	80	64(76.2%)	144
	명	379	357	294	22	175	97	85	70(72.2%)	155
'13	건	365	354	273	11	134	128	92	89(69.5%)	181
	명	403	392	305	11	163	131	98	98(74.8%)	196
'14	건	405	388	286	17	146	123	119	93(75.6%)	212
	명	433	416	300	17	152	131	133	97(74.0%)	230
'15	건	387	370	265	17	138	110	122	78(70.9%)	200
	명	419	402	289	17	152	120	130	82(68.3%)	212
'16	건	388	339	293	49	170	74	95	68(91.9%)	163
	명	426	377	326	49	198	79	100	71(89.9%)	171
'17	건	374	340	265	34	153	78	109	58(74.4%)	167
	명	415	381	295	34	169	92	120	62(67.4%)	182
'18	건	351	312	296	39	186	71	55	69(97.1%)	124
	명	378	339	319	39	202	78	59	70(89.7%)	129
'19	건	444	417	395	27	212	156	49	106(67.9%)	155
	명	477	450	426	27	232	167	51	107(64.1%)	158
'20	건	541	508	392	33	231	128	149	69(54.0%)	218
	명	587	554	426	33	258	135	161	70(51.9%)	231
'21	건	457	428	313	29	161	123	144	95(77.2%)	239
	명	487	458	337	29	172	136	150	104(76.4%)	254

※ '공소권없음'은 미군인 범죄로 집계는 되었으나,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교통사고의 종합보험 가입의 사유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임

※ 2003년부터는 재판권행사율 산정 시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분모에 산입하지 않음

다. 불법수익환수를 위한 노력

선진일류국가 진입에 장애가 되는 부패범죄·경제범죄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서는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 박탈로 부패행위에 대한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1. 9. 2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1. 9. 27.부터 시행하였다. 현행법은 '범죄수익' 개념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중대범죄에 주식회사 외부 감사인 등의 금품수수 행위 및 이에 대한 공여행위, 사회적 약자를 감금하여 강제노역을 시키는 행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행위 등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16. 9. 2.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9. 4. 5. 국회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입법 개정안과 함께 대안 가결되어 2019. 4. 23. 공포·시행되었다.

한편, 범죄수익환수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의 조직적 사기범행의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사단계에서 발견된 피해재산을 법원의 몰수·추징보전 명령으로 보전하여 재산은닉을 막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없이도 수사기관이 동결해 놓은 재산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2018. 11. 29. 국회에 제출하여 2019. 8. 2. 공포·시행되었다. 그리고, 관련 몰수·추징, 환부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환부 절차와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020. 11. 24. 공포·시행되었다. 또한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 확대를 위해 법정형(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을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2021.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 1. 4. 공포·시행되었다.

라.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1)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

우리나라는 2002. 11월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 비준함으로써, 동 규정의 당사국이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의해 2003. 3월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법원으로서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 등 반인륜범죄의 수사 및 소추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한 후 2004. 5월 입법예고, 같은 해 6월 공청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2006. 12월 국회에 이행입법안인 「국제

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였고, 2007. 12. 21. 동법률이 공포되었다.

2)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이행

초국가적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처벌하기 위한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이 2003. 9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 12. 13. 위 협약 뿐 아니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불법이민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고, 총기류자제의정서는 2001. 10. 4. 서명하였다. 법무부는 협약 비준을 위하여 2007. 9월 이행입법 T/F를 구성하고 2008. 12월 법무부 초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2010. 11월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등 불법이민 관련된 범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2. 1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2. 1. 17. 공포, 2012. 4. 18. 시행되었다. 또한 2012. 8월 포괄적 인신매매죄 신설, 범죄단체조직죄 개선 관련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13. 4. 5. 공포·시행되었다. 이러한 이행입법의 시행에 따라 2013. 10월 법무부는 외교부에 비준 추진을 의뢰하였고, 2014. 7월 외교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5. 5. 29. 국회를 통과하여 2015. 11. 5. UN에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당사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이행입법으로 시행된 법률들을 충실히 시행함으로써 국내 법제도 운영에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UN부패방지협약' 이행

'UN부패방지협약'은 공공·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포괄적 부패방지 국제협약으로서 동 협약의 제정으로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 간 공조와 부패자산 환수를 위한 총체적인 국제규범이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2005. 11월 이 협약의 비준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국제범죄 분석기획단에 적극 참여하였고 2006. 10월 'UN반부패협약 이행입법 추진반'을 발족하였다. 이후 동 협약 이행입법안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2007. 10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8. 2월 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동 협약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2008. 4. 26. 비준·발효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2012. 11. 20. 부패범죄피해자의 피해재산 복구절차를 구체화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하였고,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 참가하여 협약 이행의 의지를 피력하며 우리나라의 추진 제도 및 사례, 성과를 소개하고 있으며, 동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다른 당사국에 대한 동 협약 이행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 국제협력성과

| 그림 2-84 | 국제협력성과



한-미 사이버워킹그룹 설립회의(2021. 9.)



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 회의(SOMTC) 및 고위급 준비회의(Preparatory SOMTC)(2021. 9.)

1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형사법제과 검사 장태형

가. 추진배경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살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스토킹은 개인 간 문제라는 인식,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율이 낮아 경찰이 개입·대응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범죄가 지속되거나 강력범죄화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에는 스토킹의 정의 및 처벌 법규의 부재로 개별 사안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으로 처벌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처벌 수준이 경미하였다. 이에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스토킹 등 새롭게 대두된 젠더폭력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을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하여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17. 8. 법무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법원, 경찰청, 대한변협, 여성단체(한국 여성의전화)가 참여한 '스토킹처벌법 제정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2018. 2. 14. 관계부처(국조실,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위 대책의 일환으로 2018. 5. 10.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법률안 발의를 추진하던 중 관계부처 등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2020. 11. 27. 재입법예고를 하였고, 2020. 12. 30.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위 정부안을 비롯하여 총 10개의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2021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발의된 총 10개 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정부안을 수정한 대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4. 20. 공포되었다.

그 후 2021. 7. 6. 법률 위임 사항 및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스토킹처벌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공포하였고, 2021. 9. 24.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 관련된 수사절차 및 서식을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령안을 공포하였다. 2021. 10. 21. 개정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시행령」, 「검찰사건사무규칙」이 각각 시행되었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 훼손하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스토킹행위 발생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스토킹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 나아가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검사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판사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종전에는 스토킹을 애정에서 비롯된 지나친 집착 정도로 치부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데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대해 범칙금이 아닌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 억제력을 제고하고 사전에 강력범죄로의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규정을 둠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일상 생활과 영혼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는 '스토킹'에 대해 우리 사회가 엄정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 수사권개혁 법령 시행 및 후속 입법

형사법제과 검사 김진우

가. 추진배경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검찰상 정립을 위해서 검찰이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구현하고자 수사권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18. 6.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이 합의문을 기초로 마련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 2. 공포되어 2021. 1. 1. 시행되었다. 또한 해당 법률 시행에 맞추어 변화된 수사권 제도를 반영한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이 입법되어 2021. 1. 1. 시행되었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법률 개정을 통해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경우 종전에는 불복방법이 없었으나,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불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일부 범죄로 제한하였다.

한편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②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③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상 대통령령)을 제정하였고, ①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②검찰사건사무규칙(전부개정), ③영장심의위원회 규칙, ④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⑤경찰수사규칙, ⑥해양경찰수사규칙(이상 각 부령) 등을 제·개정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법령 입법을 통해 협력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하였으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를 세밀히 가다듬고, 기타 필요한 절차와 규정 등을 마련 또는 정비하였다. 변화된 형사사법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 제도보다 복잡하고 불편해진 측면, 사건처리 지연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어 지속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14. 포스트코로나 대비 영상증인신문 확대「형사소송법」개정

형사법제과 검사 김진우

가. 추진배경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형사절차를 활성화하고 증인의 원거리 출석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형사소송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20. 12. 7.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64호)이 발의되었고, 2020. 12. 22.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832호)이 발의되었다. 2021. 7. 15. 및 같은 달 22.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안을 법사위 1소위에서 심사하였고, 2021. 7. 22.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2021. 7.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21. 8. 17. 공포되어 3개월 뒤인 2021. 11. 18. 시행되었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피고인 구속 시 구속이유 등의 고지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가능

하도록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제72조의2 제2항 신설),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 대상을 '증인이 거동불편·교통두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까지 확대하였다(안 제16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66조17 신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영상재판 방식으로 증인신문 또는 구속이유 등 고지절차를 진행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을 확대하였다.

제5절 범죄예방업무

1.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가.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업무시스템 개편

보호관찰과 서기관 김충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1988. 12. 31. 제정·공포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9. 7. 1.부터 범법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시작한 이래 「형법」 개정을 통해 1997. 1월에는 성인범까지 전면 확대되었으며, 2004. 9. 2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성매매 사범에까지 확대되었다.

2009. 11. 2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별준수사항 부과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법제화되어 사범별 맞춤형 보호관찰이 가능해지면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주취, 정신장애 상태에서 경미한 폭력범죄 또는 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및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명령을 실시하여 치료 여부를 형사사법 집행 과정으로 포섭하였으며, 더 나아가 2018. 6월부터 치료감호 기간(3년)이 만료되어 출소한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치료 중단으로 인한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표 2-49 | 연도별 보호관찰 대상자

(단위 : 명)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 원	49,335	49,048	48,729	49,178	52,387	55,784	52,580	50,269	49,560	47,921

2) 추진내용

보호관찰관과 대상자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독립된 면담 공간 확보로 면담 분위기를 조성하고 면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주, 서울남부, 안양 등 총 6개 기관에서 독립면담실

25실을 추가 설치하여 2021. 12. 기준 전국 44개 기관에서 총 241실의 독립면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6개 사범에 대해 전담 직원제를 지속하는 한편, 기관 규모가 작으나 관할구역이 넓은 지소의 경우 전담제를 폐지·축소하여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이 지역별로 전담사건을 맡는 등 재범 방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범죄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월 2회 이상 피해자와 면담 등을 통해 재범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사례관리·공동출장 및 수사기관과 유기적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기관 자체 불시검사 외 본부 불시검사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재범억제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재범위험 요인에 대한 근본적 개입,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1:1상담 지원 및 집중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제적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가정폭력·마약·성폭력 및 기타사범 중 집중 대상자에 대해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를 통해 주취·정신질환 의심자로 확인될 경우,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전문가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활용한 연계상담 및 병원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메뉴얼을 제작, 개시·집행·재범시 조치사항 등 각 단계별 프로세스를 제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표 2-50 |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황

(단위 :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재범률	7.9	7.6	7.4	7.6	7.9	7.8	7.2	7.2	7.3	6.4

| 그림 2-85 | 보호관찰 실시현장



출석면담



정신건강 선별검사

3) 평가 및 발전방향

이러한 다양한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재범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는 전년도 보다 0.9% 낮은 6.4%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신질환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강화, 사범별 전담 보호관찰제 개편 및 지도감독 매뉴얼 개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활용 및 분류처우 적정성 제고,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면담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보호관찰제도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 조사 업무

보호관찰과 보호사무관 정유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조사제도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법원 및 검찰의 요구에 의해 보호관찰관이 범죄인의 인격, 환경에 관한 상황, 재범위험성의 양태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양형 및 처우 개별화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보호관찰관은 피조사자의 범행동기, 피해회복 여부, 직업, 가족사항,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 대인관계, 정신상태, 성격,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하여 통보한다.

보호관찰 조사제도는 1989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소년 판결전조사'와 석방 전 조사인 '환경조사'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 보호관찰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 범주도 넓어졌다. 1997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성매매 보호사건 결정전조사, 2007년 「소년법」 개정에 따른 검사 결정전조사가 도입 되었다.

2007년에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폭력사범에 대한 청구전조사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2010년 이후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전조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 아동학대(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 피해자(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전조사, 이행실태조사, 치료명령 판결전조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조사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귀주환경조사는 가출소 및 가석방 심사가 신청된 대상자 중 귀주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귀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표 2-51 | 조사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판결전조사	2,385	2,159	2,257	2,166	1,901	2,003	2,053	1,797	1,596	1,618	19,935
법원결정전조사	12,719	12,141	12,399	17,678	16,931	16,606	19,662	19,007	17,813	18,096	163,052
검사결정전조사	5,547	5,084	5,855	3,805	4,379	3,626	1,678	1,092	909	932	32,907
청구전조사	1,696	2,497	2,511	2,352	2,619	1,783	1,600	1,468	1,456	1,311	19,293
소급청구전조사	354	247	192	119	79	86	39	52	37	33	1,238
환경조사	1,715	1,701	1,594	1,561	1,555	1,920	1,496	1,442	1,356	1,185	15,525

2) 평가 및 발전방향

조사업무는 제도 시행이후 근거 법령의 확대를 통해 매년 꾸준하게 업무가 증가하며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2020. 1월 한강 시신훼손 사건, '15년 친딸 성폭행 사건, 무의도 시신 유기 사건, 일명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방 사건 등 그동안의 축적된 신뢰도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는 등 대외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2020. 8월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보석 결정전조사가 시행되는 등 향후에도 조사업무는 보호관찰제도 영역 확대와 함께 활용도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구전조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2013. 4월부터 운영해 온 27개 청구전조사 전담기관을 2019. 12월 21개로 조정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조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대외신뢰도 제고의 일환으로 2010. 8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관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19년부터는 전문조사관 제도까지 시행함으로써 조사관의 전문성을 한층 제고하고 우수한 조사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12월 현재 883명의 조사관과 22명의 전문조사관을 선발하였으며, 전문조사관에게는 조사 담당 직원을 슈퍼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향후 조사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양질의 조사서 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보호관찰과 사무관 한상경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사회 내에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소년법 대상자를 시작으로 1997년 성인범에게까지 확대되었다.

2009. 9월부터 생계곤란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벌금미납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0. 1월부터는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2010. 4월 법무부-농협중앙회 간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농촌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평균 약 18만8천 명, 총 89만여 명을 투입, 영농철 일손 돕기, 영세농가 환경개선, 태풍·폭설·폭우 등 피해복구,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농촌지원 활동을 전개하였고, 2013. 5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분야를 신청받아 대상자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집행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18. 1월부터 벌금형 집행유예가 도입되어 벌금형을 받은 대상자에게도 사회봉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봉사는 이처럼 사회내 처우의 대표적 제도로서 범죄자 처벌과 사회에 대한 배상 및 속죄,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등 사회 재통합 기능을 수행하면서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표 2-52 | 사회봉사 실시사건

(단위 : 건)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건 수	45,842	46,179	51,058	55,581	58,287	63,050	60,286	58,497	62,009	76,784

| 표 2-53 |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실적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연인원	110,243	115,536	103,511	106,864	97,188	76,118	65,712	78,015	188,214	941,401

| 표 2-54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실적

(단위 : 건, 명)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건수	2,249	2,964	2,992	1,974	1,667	1,626	1,113	14,585
연인원	22,569	26,522	26,338	16,591	13,855	13,849	20,304	140,028

| 표 2-55 | 사회봉사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봉사	접수	38,153	41,435	44,386	42,249	40,279	41,943	35,954
	실시	45,549	48,395	53,231	51,224	49,788	51,448	65,693
벌금대체	접수	8,554	8,530	8,282	7,624	7,413	9,097	7,207
	실시	10,032	9,892	9,819	9,062	8,709	10,561	11,091
계	접수	46,707	49,965	52,668	49,873	47,692	51,040	43,161
	실시	55,581	58,287	63,050	60,286	58,497	62,009	76,784

2)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적 약자지원 사회봉사'는 중증장애인·고령자·저장강박증 가정의 청소·도배·장판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폭설·폭우·화재·지진 등 재해 피해지역 긴급지원,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진료·마사지·장수사진 촬영·이미용 봉사·학습봉사를 실시하는 특기집행 및 고독사 유류품 정리·민요공연·급식봉사·연탄배달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법무부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연인원 28,013명, 영세·고령 농가 등 농촌일손 돕기에 연인원 188,214명 등 연인원 총 216,227명을 투입 지원하여 국민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법무부 대표적 친서민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추진결과 2021년 기준 사회봉사명령이 완료된 자 중 94.2%의 대상자가 계속 자원 봉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사회적 약자지원 사회봉사'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98.2%가 만족을 나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사회봉사 전담인력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위탁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직접 집행의 내실화는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 집행 확대, 탄력집행 확대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될 것이다.

아울러 대상자에게는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의 참가치를 깨닫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사랑받고 희망을 주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그림 2-86 | 사회봉사 집행현장



국민공모제(주민과 함께하는 벽화그리기)



저장강박 장애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주민과 함께하는 벽화그리기)



저장강박 장애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라. 수강명령 집행 전문성 강화

보호관찰과 보호사무관 정유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역할극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해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 7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되어 소년에게 시행하였고 1997년 형법 개정에 따라 성인에게도 확대 실시하였다.

근거 법률의 확대에 따라 수강명령 부과의 양적 확대와 함께 폭력치료, 정신·심리치료 등 분야가 세분화되었고, 수강명령 집행의 효과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2009년 '성범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2011. 8월 '준법운전 수강명령 표준 프로그램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전문교육 이수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도모하여 2010년 수강전문 직원 108명을 양성하였고, 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성폭력·

가정폭력·약물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력자 등을 특별 채용해 전문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범죄인의 재범예방에 교육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10년 이수명령이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필요적으로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성폭력·가정폭력·알코올·약물 등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전문분야의 집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2년 수원에 수강집행센터를 시범 운영한 후, 2013년 서울, 대구, 광주, 2014년 인천, 대전, 부산, 2017년 서울남부, 의정부, 창원 등 총 10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실형 판결 선고 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거 법률의 확대로 수강 분야와 대상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 표 2-56 | 수강명령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수강명령	33,513	38,857	45,459	41,884	42,408	50,357	68,422	287,387
이수명령	5,571	5,073	6,290	7,999	7,808	8,225	9,200	44,595
기소유예 등	19,155	36,889	27,564	20,897	19,173	16,139	18,471	139,133

2) 평가 및 발전방향

수강집행센터는 전문성과 강의역량을 겸비하고 제도 이해가 높은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친범죄적 사고와 행동을 수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문처우 프로그램을 집행함으로써, 외부 강사의 형사절차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운영상 단점을 보완하였다.

담당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법무연수원 사내강사 양성과정 등을 통해 57명의 전문분야 강사를 양성하였고,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범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2020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 수강·이수명령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률이 시행되는 등 수강명령의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수강명령 전문성 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대상자의 사고와 행동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와 정상적인 사회적응 지원을 도모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그림 2-87 | 수강명령 집행현장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심성개선 소집단 수강프로그램

마.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보호관찰과 보호사무관 권은아

범죄예방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직 발전에 기여한 우수직원, 자원봉사자, 민간인 및 단체를 발굴, 포상하여 격려하고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21. 6. 24.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을 개최하였다. 전수식에는 박범계 장관,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전국 보호관찰관, YTN 상무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의 범죄예방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선진 범죄예방을 위한 미래를 다짐하였다.

박범계 장관은 기념사에서 “전국의 범죄예방 관련 민간자원봉사자들의 지원과 협조, 보호직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고 하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예방에 기여한 민간인, 직원 등에 대한 포상이 있었는데,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익성 보호관찰위원이 국민훈장 목련장, 평택보호관찰소 김기성 보호관찰위원, 대전소년원 故 전충열 소년보호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였으며, 서울보호관찰소 권오혁 계장이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25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2. 전자감독 등 고위험사범 관리

가. 전자감독 고위험사범에 대한 밀착 감독감독으로 국민 안전 강화

● 전자감독과 보호사무관 김충원

전자감독제도는 법원 등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08. 9. 1.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부착 대상이 성폭력으로 한정되었으나 '09년 미성년자유괴, '10년 살인, '14년 강도사건으로 확대되었고, '12. 12월 헌법재판소의 성범죄자 소급 부착 합헌 결정으로 대상자 수가 급증하였다.

'20. 8. 5.부터는 같은 해 2월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기존 4대 특정사범에 한정해 부착하였던 가석방 전자감독을 모든 가석방자로 확대하고,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도입되는 등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전자감독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 표 2-57 | 연도말 전자감독대상자 현재원

(단위 : 명)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현재원	1,032	1,703	2,119	2,313	2,696	2,981	3,126	3,111	4,052	4,316

'19. 4월 「전자장치부착법」(일명 조두순법) 개정을 통해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해 일정기간 1:1 전담 보호관찰을 시행하여 고위험사범에 대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및 매일 생활실태 점검 등 강화된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24시간 중단 없는 밀착 지도감독 및 경보상황 대응을 위해 '13년 신설된 전자감독 범죄예방팀(보호직 공무원, 무도실무관 각 1명으로 구성)은 신설 초기 26개 팀에서 현재는 57개 전 기관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재범방지를 위해 경찰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매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전자장치 훼손자 검거 합동 모의훈련 실시,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1. 9월부터 제한된 인력으로 전자감독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감독하는 '고위험군 전담제'를 도입하였고, 관리역량이 우수한 보호관찰관을 배치하였다.

성폭력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1:1 전자감독 확대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19년 1.70%에서 '20년 1.27%, '21년 1.40%로 낮아지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08년 전자감독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 제도는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수단을 넘어 그 활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 표 2-58 |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 동종 재범률

(단위 : 명,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성폭력 실시사건	874	1,747	2,370	2,650	2,894	3,046	3,270	3,239	3,239	3,279
재범자	21	30	48	53	58	66	83	55	41	46
재범률(%)	2.40	1.72	2.03	2.00	2.00	2.17	2.53	1.70	1.27	1.40

나. 신속수사팀 운영을 통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범죄 신속 엄정 대응

전자감독과 보호사무관 김용권

'20. 12월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으로 '21. 6월부터는 전자장치 훼손범죄,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대해 그동안 경찰이 수사하던 것을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보호관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21. 8월 전자장치 훼손 전후 두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21. 10. 12.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신설하여 전자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특사경 업무가 분리되어 주·야간 상관없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파악하고, 위반 시 현장출동을 통해 현행범체포 등 즉각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사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대상자의 행동통제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22. 7월 기존 13개팀에서 18개팀으로 신속수사팀이 확대될 예정이다.

다. 전자 장치 및 시스템 고도화

● 전자감독과 보호사무관 한상경

전자감독에 사용되는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 피부착자의 발목에 부착하여 전자발찌라고 칭하기도 한다. 전자장치는 피부착자에게 부착되어 운영되면서 여러가지 개선되어야할 사항들이 나타났고, '08년부터 현재까지 전자장치 훼손 방지 등 내구성 강화, 위치측정 기능향상, 측위방식의 다각화 등 전자장치의 고도화가 지속 추진되고 있다.

전자감독제도가 재범방지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재범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위치추적 시스템에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알려주는 지능화된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었다. '19년 피부착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생활환경 변화 등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 분석하여 이상징후를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통해 경보처리, 고위험자 분류, 이동경로 분석 등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전자감독시스템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정보만 확인 가능하여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등 긴급상황 시 현장출동 외에 현장 확인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년부터 전자감독 시스템과 지자체 CCTV의 연계사업을 실시하였다. '21년 기준 서울 등 11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활용되고 있고, '22년에는 미연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한편, 보호관찰관이 태블릿 PC로 현장에서도 직접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20. 2월에는 기존 범죄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에 한정해 가해자(전자감독대상자)의 접근을 차단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든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를 본격 시행하였다. 또한 '21. 7월부터는 경기도와 서울 등 일부 지자체의 '안전귀가서비스'와 연계하여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일반 국민의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재범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전자감독은 일반 국민이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어 그 효용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라. 성충동 약물치료 안정적 집행

치료처우과 서기관 김택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호르몬 치료제)을 주사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성범죄 증가와 조두순, 김수철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2010.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2011. 7월 시행).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전담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지도감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2011. 7월 제도 시행 이후 2021. 12월까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대한 판·결정 현황은 총 86건으로, 이중 28건(검사 청구 68건, 기각 37건, 미결 3건)은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고 58건은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최초 집행은 2012. 5. 30. 시행(치료감호심의위원회 2012. 5. 21. 결정)되었고, 2021. 12월까지 총 63건이 집행되었으며 이중 29건이 집행 종료되었다. 2021년 성충동 약물치료 개시 사건은 14건이며, 집행 인원은 총 40명이다.

| 표 2-59 | 연도말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집행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현재원	3	7	8	14	17	22	39	33	40

2) 평가 및 발전방향

제도시행 이후 총 63명을 집행하였으나 2021년까지 재범한 사람은 없으며,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경미한 사례 이외에 특이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료기관의 의사, 심리치료 전문가,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관, 보호관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집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협의체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과 부작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치료 대상자의 안전과 치료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전문적·통합적 처우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그림 2-88 |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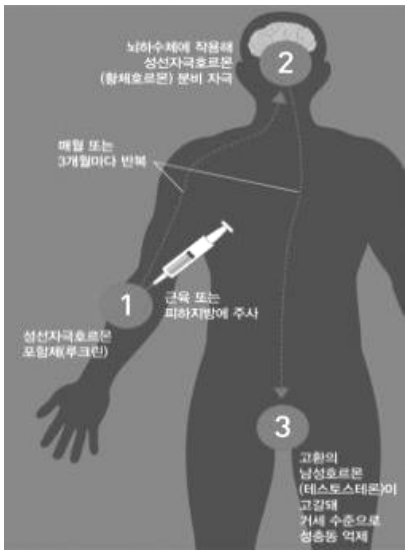

마.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 체계적 관리

전자감독과 보호주사 박지훈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등록정보 중 일부를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에 공개·고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11. 4월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업무가 확대되면서 법무부에서 성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를 실시하였고, '13.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업무는 법무부,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로 운영 주체가 재편되었고 등록 대상 성범죄도 확대되었다.

법무부에서 등록·관리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공개·고지 집행을 위해 여성가족부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경찰 전산망을 통해 전달되어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21년 말 기준 총 105,445명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11년 대비 337배 증가) 중이고, 그 중 6,614명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6,355명이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 표 2-60 | 연도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건수

(단위 : 건)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등록건수	2,337	13,628	23,874	36,267	46,415	58,053	71,012	82,647	94,160	105,455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상정보 미제출자, 소재불명 대상자 또는 허위 정보 제출자 등에 대해 상시 자체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자(공개·고지)는 신상 등록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에 즉시 통보하여 등록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게 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감독대상자는 실시간 확인 가능한 보호관찰 정보와 비교·검토하여 명백히 잘못된 거주지 정보는 법무부가 직권으로 정정하여 신속히 공개정보에 반영함으로써 오(誤)정보가 공개·고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업무의 신속·정확한 집행을 위해 여성가족부·경찰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직원의 업무 이해도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실무에 필요한 표준화된 신상정보 등록 절차를 담은 '21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일선 경찰관서 및 교정기관에 배포하였다.

'20년에는 그 동안 누적된 데이터를 기초로 성범죄자 7만5천여명의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하였다.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범죄자의 절대다수는 과거의 성범죄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범자(2,901명)의 36.5%(1,058명)는 지하철, 찜질방, 버스, 공중화장실 등 원죄명과 동일한 장소를 범죄지로 다시 선택하는 등 범죄유형과 범행시간도 반복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강간 등'이 30.5%, '강제추행'이 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로 전체 등록 대상의 약 87%를 차지하여 이들 성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2020성범죄백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범죄예방 활동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22년에는 「성범죄백서」 제2호를 발간하여 성범자 및 성범죄 특성 등을 분석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성범죄 예방정책 수립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2020 성범죄백서」는 법무부 홈페이지 통계자료실에서 열람 가능)

또한 누적된 성범죄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형데이터를 DB화하여 종이기록물을 이미지로 변환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항상 시키고 있으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21. 10. 19.)됨에 따라 '24년 10월부터는 신상등록분야

에서도 현행 '우편송달' 방식에서 '전자적 송달'로 개선될 예정으로 효율성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그림 2-89 | 신상정보등록제도 홍보





3. 감호제도 개선

가. 국립법무병원 중증 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형식

1) 추진배경

국립법무병원 수용인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효과 제고와 수용 안정화를 위해 선진국과 같이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집중치료 시설의 조성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국립법무병원 유휴부지에 400병상 규모의 중증 환자 집중치료 병동을 신축하기 위해 정부 예산에서 중증 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을 위한 사업비(총 492억 원)를 확보하여 2019. 12월 실시설계 완료, 2020. 9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 2020. 12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에 들어갔다.

3) 향후 추진계획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선진국과 같은 1인실 위주의 소규모 병실에서 중증 환자를 집중치료하고 수용환경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나. 의료 전문인력 확충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형식

1) 추진배경

국립법무병원은 살인 등 중범죄 정신질환자 관리, 격오지, 낮은 보수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2021. 12월 기준 의사 정원 20명 중 8.5명(충원율 42.5%)이 근무하며 1인당 환자 158명을 담당하는 만큼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한 문제이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의사처우 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 협상을 통한 의사 보수 인상(기준급 150%→최대 200%), 의료인력을 위한 노후된 비상대기소 리모델링, 의료수당가산금 신설과 해외학회 참가 지원, 법정신의학 연구소 운영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한 국립법무병원의 위상 강화로 우수의료인력 확보를 지속 추진한 결과, 치과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각 1명 배정, 정신과 전공의 2명 확보, 의사 3명을 채용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의사채용 안정을 위한 의사 직급 상향 및 연봉인상, 수당 신설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민간스카웃 제도를 활용한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여 치료감호의 안정적 운영 도모, 의협신문 등에 채용 홍보도 강화하여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계속 확충할 예정이다.

다. 보호감호자 수용시설 독립운영

치료처우과 검찰사무관 박두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감호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산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특정범죄를 범한 때, 특정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특정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보호감호 선고를 통해 보호 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0. 12. 18.「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시행된 보호감호 제도는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2005. 8. 4.자로「사회보호법」폐지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집행은 구「사회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보호감호자는 원래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만 관리하였으나, 보호감호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2010년부터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간 협의로 천안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이원화하여 관리하여 왔다.

보호감호 입소자 중 처우성과를 반영하여 자치 처우 대상자로 선정되면 천안교도소로 이감하여 자치 처우를 실시하였으나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처우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8. 12월 천안교도소로 수용시설을 다시 일원화하여 2021. 12. 31. 현재 12명을 수용·관리 중에 있다.

| 그림 2-90 | 천안교도소 피보호감호자 생활복지관



생활관 입구 모습



생활관 내 독서실

| 표 2-61 | 피보호감호자 집행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집행인원	31	24	18	20	22	31	17	31	30	32

2) 평가 및 발전방향

독서실, 체력 단련실, 휴게실, 종교 집회실, 위탁 작업장 등 복지·종교·근로 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수용동에서 자치생활을 하면서 피보호감호자의 처우 만족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전 적응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력 배양

치료처우과 검찰사무관 박두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피보호감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교도소 내 검정고시·학사고시 교과 과정을 설치하였고, 〈표 2-62〉 같이 2014년과 2016년 각 1명, 2018년 2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아울러 자동차 핸들 커버 제작, 정수기 부품 조립 등 위탁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 표 2-62 | 피보호감호자 검정고시 합격 현황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	-	1	-	1	-	2	-	-	-
중입자격	-	-	-	-	-	-	-	-	-	-
고입자격	-	-	-	-	-	-	-	-	-	-
고졸자격	-	-	1	-	1	-	2	-	-	-

| 그림 2-91 | 위탁 작업장





2) 평가 및 발전방향

중단된 학업을 지속함으로서 지적 자존감을 향상시켰고, 위탁 작업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위탁 작업을 발굴하여 피보호감호자의 실질적 사회정착금 마련에 기틀을 다지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다.

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치료처우과 검찰사무관 박두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판사·검사·법무부 고위공무원·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치료감호, 보호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고 있다.

재범위험성이 낮아진 피치료감호자와 피보호감호자에게 치료감호 가종료 및 보호감호 가출소 결정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스스로의 갱생 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가종료자·가출소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하여 가종료·가출소를 취소하고, 치료감호·보호감호를 다시 집행하게 함으로써 사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 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 치료감호 기간만료 시 보호관찰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집행면제에 관한 사항,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하며, 결정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70, 표 5-71〉과 같다.

치료감호 가종료의 경우 치료경과가 양호하여 약물 또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될 때 병과된 징역형 등의 형기와 상관없이 가종료를 허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70명이 가종료되었다.

장기 피치료감호자의 가종료 시 사회보호시설 연계를 확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위원들의 정신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심사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2018. 12. 1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보호처분 전문가인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한편, 보호감호 가출소 인원은 2005. 8. 4.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보호감호 수용자의 자연 감소와 잔류 강력사범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으로 인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1년에는 15명이 가출소되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정신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발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가종료자 등의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증상악화 등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가종료를 취소하여 치료감호를 다시 집행하도록 하는 등 가종료자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하였고, 향후 피치료감호자 및 피보호감호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보호를 위해 재범위험성, 치료경과, 사회복귀가능성 등 실질적 평가를 통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4.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가. 범법 정신질환자 사법적 치료관리 강화

●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형식

1) 추진배경

연이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의 발생으로 정신질환범죄자 관리강화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보다 강화된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시행하여 증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입원 등 맞춤형 처우를 실시하였고, 치료명령 대상자의 치료약 복용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복약검사를 의무화하였으며, 1회 주사로 1 ~ 3개월 치료효과가 지속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적용을 확대하였다.

치료감호 출소자에 대해 최대 20년 동안 전국 5개 국·공립 정신병원에서의 무상 외래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법무병원 간호인력 증원을 통해 유휴병동 1개 동을 재운영하여 과밀수용을 해소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경찰,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실형을 선고 받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등의 원활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등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나. 치료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치료처우과 보호사무관 임합격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6. 12월 개정 「치료감호법」의 시행으로 경미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사회 내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더불어 경미한 강력 범죄를 범한 정신질환자에게 검사가 정신과 상담·치료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대검예규 제873호를 제정하여 치료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6년 16명, 2017년 606명, 2018년 572명, 2019년 750명, 2020년 572명, 2021년 453명이 치료명령 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치료명령 협의체를 구축하였고, 서울대병원, 중앙대 병원 등 치료 기관을 지정하여 임상치료 및 인지행동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표 2-63 | 치료명령 사건 접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집행유예	415	446	584	473	338
선고유예	7	5	6	0	8
기소유예	184	121	160	99	107

2) 추진내용 및 성과

2017. 12월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주취·정신질환 이외 재범위험성이 높은 '마약중독'을 치료명령 대상에 추가하였고,(2018. 6월 시행)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하여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마약류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도입하는 등 치료명령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치료기관을 확대한 결과 현재는 전국 261개의 치료기관이 지정되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 내 사법적 치료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치료 및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미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조기 개입을 보다 확대하여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重)범죄로의 전이를 차단하는 한편 치료명령의 실효성 제고와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다. 정신질환 소년원생 치료·관리 강화

소년보호과 사무관 김인수

1) 추진배경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원생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여 다른 학생들의 교육, 수용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정신질환 소년원생 치료·관리를 위한 근본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전국 11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의무과장 11명, 정신과 전문의 12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9명을 배치하여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관찰을 하고 있다. 한편,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간호사를 2명 이상 배치하여 의료만족도를 증진하고자 간호인력 증원을 계속 추진 중이다.

3) 향후 추진계획

2021년에는 정신질환자 의료재활 처우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소년원에 의료전담인력 8명(간호사 4, 약사 1, 특수교사 2, 작업치료사 1)을 배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료재활 처우를 제공하였고, 2022년에는 간호사 4명을 추가로 증원하여 간호사가 부족한 기관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직급 상향, 특수교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증원을 지속 추진하여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전에 의료소년원을 신설하여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정신과 약을 복중 중인 소년원생들을 집중 치료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근본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라. 소년원생 정신건강증진 프로세스 시행

소년보호과 서기관 김지수

1) 추진배경

최근 소년원 내 정신질환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전 의료재활소년원은 7호 처분자 위주의 운영이 불가피하여, 9호·10호 정신질환소년에 대한 각 소년원별 자체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2021년 3월부터 모든 소년원 학생을 대상으로 입원 시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료 및 개입의 필요에 따라 치료군을 4단계로 분류하여 심신건강회복 프로그램, 정신과 상담 등 단계별 맞춤형 처우를 제공하는 '소년원생 정신건강증진 프로세스'를 시범 운영하였다.

시범운영 결과, 정신질환소년을 조기에 선별하여 사전에 개입함으로써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었으며, 체계적인 치료군 분류를 통해 증상에 따른 맞춤형 개입이 가능하여 학생의 비행성 교정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도울 수 있었다. 시범운영 기간의 정신질환소년 징계율은 이전 3년(2018 ~ 2020년) 평균 대비 16.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수용 안정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3) 향후 추진계획

2022년에는 소년원생 정신건강증진 프로세스를 전면 시행한다. 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에 따른 처우계획을 세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년원생 개별처우 시스템'과 정신건강증진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보다 다각적인 처우를 제공,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5.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가. 청소년 초기비행예방 강화

소년범죄예방팀 사무관 장윤정

1) 추진배경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위기청소년 및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전문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초기비행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 인구감소로 소년 비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비행청소년의 저연령화 및 재범률 증가 등으로 초기비행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2018년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프로그램', '가족문제 해결중심 보호자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2020년 '절도예방 통합프로그램' ,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2021년 위기·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문학 기반 참여형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18년 역할극·진로체험·모의법정·가족교실 프로그램, 2019년 폭력예방·보호자교육 프로그램, 2020년 사이버 비행예방·청소년폭력예방 프로그램 고도화 발표회를 개최하여 비행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사이버폭력예방 강의역량 향상 등을 위한 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계획'을 시행하여 신규개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 11월 '상담전문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초기비행예방 강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9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시범사업 운영 중이다.

| 표 2-64 | 비행예방교육 실적

(단위: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89,342	154,934	196,798	267,979	371,625	402,513	310,206	333,351	119,141	173,999
청소년 대안교육	30,122	23,013	23,630	36,638	49,317	54,019	50,635	48,698	17,179	19,820
심리검사	9,445	9,377	10,020	11,046	12,473	12,933	10,868	12,322	3,871	4,488
보호자교육	8,101	8,246	9,192	8,964	9,465	6,977	7,046	7,320	3,341	4,071
법교육	41,674	114,298	153,956	211,331	300,370	328,584	241,657	265,011	94,750	145,620

3) 평가 및 발전방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교육 의뢰기관 및 교육생 특성을 반영한 비행예방교육과정 운영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직원교수 역량 강화로 비행예방교육의 전문화·내실화를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초기비행소년 대상 개별면담 강화 및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연계 등 선제적·지속적 개입을 통해 초기비행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나. 소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타당화 및 통합평가도구 개발

소년범죄예방팀 박길수 사무관

1) 추진배경

최근 소년 사법에서의 최대 화두는 증거기반 교정정책(Evidence-based Corrections)의 실현을 위한 위험성-욕구-개별성(RNR Principles) 원칙의 현장 구현으로, RNR원칙은 비행청소년의 재비행방지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선별해서 대상자의 범죄유발 욕구(Criminogenic needs)에 체계적 개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범죄예방정책국도 2016년부터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에 착수하여 그해 9월부터 「소년대상자 정적 재비행 위험성 평가도구(JDRAI-S : 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Static)」를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이 평가도구는 전형적인 제2세대 평가도구로서 성별, 연령, 범죄경력 등을 포함한 총 10개의 정적도구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결정전조사 및 판결전 조사

단계에서 활용되는 것은 물론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의 분류등급 결정을 위한 분류평가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범죄유발 욕구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소년 대상자 동적 재비행 위험성 평가도구(JDRAI-D : 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Dynamic)」를 개발, 2018년 2월부터 실무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으로 소년 대상 동적 재비행 위험성 평가도구는 총 7개의 재범위험요인과 35개의 문항으로 분류평가 도구의 개발이라기보다는 처우계획의 수립에 목표가 맞추어져 있다.

이들 정적,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실무 적용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분류절차가 객관화되고, 그동안 형식적으로 수립되어 온 처우계획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수립되는 등 소년 보호관찰 업무가 진일보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처럼 괄목할만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정적·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들의 실무 도입 후 약 3~5년 이상이 경과되면서 도구의 재 타당화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특히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경우 소년의 결정전 조사 등 각종 조사서 작성 시에 절단점을 활용하여 재범위험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어 과연 그 절단점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후속 검증 작업이 절실했고, 더 나아가 그동안 정적 도구와 동적 도구로 이원화되어 있던 평가도구 통합에 관한 필요성도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 추진경과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에 대한 타당도 검증작업을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은 경기대학교 김병배 교수진과 공동으로 2019년 보호관찰이 개시된 3,300명의 대상자를 약 2년간 추적조사하는 한편 기초통계량 파악과 교차분석 등 기술통계와 집단간 차이분석, 상관, 로짓분석, ROC분석의 추론통계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JDRAI-S)의 경우 ROC분석을 통해 검증한 재범예측력 총점은 AUC=0.641로 중간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2016년 개발 당시 타당도 분석 결과(AUC=0.763)에 비해 재범예측력이 현저히 감소한 수치였으며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JDRAI-D)의 경우 ROC분석을 통해 검증한 재범예측력 총점이 AUC=0.618로 낮은 수준으로 정신질환, 성 관련 문항과 요인들의 예측력이 현저히 낮게 나와 재범여부와 통계적 관계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통합도구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도구 개발을 위해 2021년 보호관찰이 개시된 약 700여명의 대상자를 4~6개월간 추적 조사를 통해 성별, 연령, 범죄경력, 제재 횟수, 개시 전 재비행 등 정적요인 8문항, 반사회적 성향, 학교, 가족, 친구 요인 등 4가지 요인별 각 4문항씩 16문항으로 총 24문항의 통합 재범위험성 평가도구(JDRAI-Ⅱ)를 개발하였고, 통합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예측력(AUC=727)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표 2-65 | JDRAI-II의 각 요인별 상관관계와 재범에 대한 설명

	재범 여부	총점	범죄경력	반사회적 성행	학교/직장	가족	친구
재범여부	1						
총점	0.2435*	1					
범죄경력	0.2158*	0.8394*	1				
반사회적 성행	0.1382*	0.4525*	0.1736*	1			
학교/직장	0.1465*	0.6253*	0.2829*	0.3087*	1		
가족	0.1131*	0.3719*	0.1534*	0.3170*	0.3354*	1	
친구	0.1342*	0.6545*	0.3337*	0.2255*	0.3924*	0.1639*	1
AUC	-	.721	.695	.611	.645	.607	.629

3) 평가 및 발전방향

기존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타당화 작업을 통해 보다 정교해진 통합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통합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활용으로 보호관찰 초기분류 및 처우계획 수립 절차가 한층 체계화되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적용한 엄정한 분류체계로 고위험 대상자 선별 절차가 보다 정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고위험군에 대한 차별화되고 밀도 있는 지도감독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감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보호소년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강화

● 소년범죄예방팀 김경홍 사무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 재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세계적·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소년원 출원생 등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보호소년법」에 근거하여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설립된 이후 보호소년 등의 선도·보호, 사회정착 지원, 장학·원호, 연구활동 등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2001년 5월 기숙사 형태의 생활시설인 경기(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 신축·개관을 시작으로, 2005년 9월까지 부산·광주·대구·대전·안양(여자전용)등 전국 5개 지역에 건립하였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복권기금 16억1,500만 원과 21억 2,0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아 전주·춘천지역에 그룹홈(Group Home)형태의 자립생활관을 추가로 신축하였다. 2011년과 2012년

에는 복권기금 7억 1,400만 원과 6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설보수가 필요한 노후된 자립생활관 중 경기·경기여자·부산·광주·대구자립생활관 시설을 리모델링 하였다. 2014년과 2016년에는 복권기금 6억 4,200만 원과 12억 원을 지원받아 노후된 경기여자(의왕)·부산·대전자립생활관 등 3개 생활시설을 증·개축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다. 청소년자립생활관에는 2008 ~ 2021년 최근 14년간 총 2,027명이 신규 입주하였고, 입주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주거지원, 취업알선, 학업지원, 심리치료, 가족찾기, 자원봉사자 결연 등 다양한 사회정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4. 12월에는 남자 위기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는 기숙형 직업훈련학교를 복권기금 57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아 경기도 화성에 대지면적 9,989㎡(약 3천 평) 건축연면적 3,289㎡(약 1천 평) 규모의 YES센터를 신축하였다. 2019. 2월에는 기존 'YES센터'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자동차정비, 용접, 골프매니지먼트, 커피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5개 직업훈련 과정으로 교육생 정원 60명, 직원 20명, 1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100% 취업을 목표로 삼고 전문 직업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8. 12월에는 여자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는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설립을 위해 복권기금 28억 3,400만 원을 지원받아 경기도 안산에 대지면적 261㎡, 건물면적 615.56㎡ 규모의 4층 건물을 매입하였다. 2019년 2월 안산센터는 뷰티, 스킨케어 등 2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고, '20년 운영비 예산 2억 4천만 원 및 인력 5명(정원 23명, 시간강사 2명)을 확보하였다.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2020년 3월 5일 개청, 2020년 4월 13일 뷰티학과(네일아트 및 메이크업, 정원 20명) 과정 직업훈련을 추가 개설하여 자격증 취득반과 취업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6월 2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오션빌딩 본관에 상상드림카페 1호점 설립을 시작으로 2020년 7월까지 의왕시, 화성시, 서울시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 '상상드림카페' 4호점을 설립하여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LH공사 매입임대주택사업에 선정된 후 2021년까지 대전·대구·광주·수원·전주·의왕·군포·거제 등 전국 8개 지역 25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총 37명의 보호소년에게 안정된 주거지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호소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1,484백만원을 지원받아 2022년부터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개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의 조직 및 인력(직원 정원 75명), 국고보조금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소년원 출원생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협회 본부 및 소속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활동 지원 및 업무 지도를 실시하여 협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회 조직·인력·예산·사업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장기간 보호기관 출입이 통제되어 입주생 확보 및 홍보 활동이 제한되어 보호소년의 사회정착지원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운영 규정 재정비, 다양한 홍보방안 모색, 교육생 욕구에 충족하는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사회정착 및 비행예방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6. 소년재비행방지 역량 강화

가. '교육·수용 전담제' 시행 등 소년원 교정교육 전문성 강화

● 소년보호과 사무관 김인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소년원은「소년법」제32조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후 꾸준히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한식조리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및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과 의료재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소년원은 비행청소년 교육기관인 동시에 수용기관으로 24시간 감호근무가 필수적이나,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소년원 교사들이 교육과 수용관리 업무를 병행하여 왔다. 최근 인력충원을 통해 소년원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비행청소년 교정교육에 내실을 기하고자 소년원

근무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전국 소년원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증원된 감호전담인력(2020년 42명, 2019년 34명, 2018년 38명)을 활용하여 주간 교육전담팀과 야간·휴일 수용전담팀(4부제)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는 '교육·수용 전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부산과 광주 2개 소년원에 이어 2019년 서울, 전주, 청주, 안양 4개 소년원, 2020년 대구, 대전, 춘천 3개 소년원에 확대 실시하여 전문화된 처우 제공 등으로 교정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 그림 2-92 | 교육·수용 전담제 언론보도



세계일보

소년원 교육·수용 업무 분리...교정교육 효과 거둬

기사입력 2019-09-28 11:28

소년원의 교육·수용 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근무체계를 개편하자 교정교육 효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러한 근무체계를 정착시켜 교정교육 전문성을 높여 재비행 방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년원 '교육·수용 전담제'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수용 전담제는 주간에 소년원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전담팀과 야간·휴일에 4부제 교대 근무로 당직을 전담하는 수용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는 업무체계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소년원 교육과 교대 근무 인력 40명을 충원해 근무체계개편을 시작했다. 잇따라 청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소년 재범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주간 교육과 야간 수용관리 업무까지 담당하는 소년원 교사들이 장시간 연속 근무에 시달리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1개 소년원 중 부산·광주 2개 소년원에 교육·수용 전담제를 우선 도입해 운영한 결과 학생 1인당 자격증 취득 건수는 2.9건에서 3.3건으로 14% 증가했다.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85시간에서 27시간으로 감소했다.

법무부는 올해도 증원 인력 47명을 4개 기관(서울·전주·청주·안양소년원)에 배치해 교육·수용 전담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47명 중 13명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로 채용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소년원에 교육·수용 전담제를 정착시킬 방침이

법무부 | 보다 나은 정부 | 보 도 자 료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19. 9. 9.(월)	담당부서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담당자장	소년보호과장 김용환 0212110-3346	담 당 자	보호사무관 김희섭 0212110-3344

소년원 교정교육이 더욱 충실해집니다.

- 2020년까지 전국 소년원 '교육·수용 전담제' 전면 실시 -

☐ 매일 비행청소년과 상담을 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바로 소년원 교사입니다.

☐ 비행청소년을 교육하는 일이란 많은 열정을 필요로 함에도 그동안 소년원은 **인력부족으로 소년원 교사들이 교육과 야간감호 업무를 병행하며 근무해 왔습니다.**

※ 2016-2017년 전국 소년원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83.5시간에 달함

☐ 법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올해 **증원된 인력 47명을 전국 11개 기관 중 4개 기관(서울·전주·청주·안양소년원)에 배치하여 교육전담과 야간감호전담(4부제)을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교육·수용 전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소년원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원된 인력 47명 중 13명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로 채용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전국 소년원학교의 명칭 및 2021년 소년원 교육과정은 〈표 2-66〉과 같다.

| 표 2-66 | 전국 소년원학교의 명칭 및 2021년 소년원 교육과정

기 관(학교명)	설립일	개교일	대상	교 육 과 정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1942. 4. 20.	2000. 8. 30.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한식조리, 헤어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1947. 1. 18.	2000. 8. 31.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용접,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대구소년원 (읍내고등학교)	1945. 11. 21.	2000. 8. 31.	9호 10호	• 고등학교 교과교육('고'자 파란색->검정으로)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커피바리스타)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1946. 11. 7.	2000. 8. 31.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 (자동차정비, 에너지설비,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전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	1967. 3. 25.	2000. 9. 1.	8호 9호 10호	• 8호(男) 교육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1998. 7. 1.	2002. 3. 4.	7호 9호 10호	• 의료·재활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1978. 7. 8.	2009. 7. 1.	8호 9호 10호	• 8호(女) 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예술분장, 커피바리스타, 헤어디자인, 제과제빵)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중고등학교)	1963. 7. 2.	2000. 8. 30.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女) • 직업능력개발훈련(피부미용, 제과제빵)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1966. 4. 16.	2000. 9. 4.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디저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1987. 11. 9.	2000. 8. 30.	8호 9호 10호	• 8호(제주지역 男) 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골프매니지먼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0년부터 제주소년원을 제외한 전국 소년원에서 '교육·수용 전담제'가 전면 시행되어 안정된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등 소년원 교육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교육·수용 전담제'가 학생과 직원 모두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2021년에는 대구소년원에 고등학교 교과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학업연계 학생들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초·중등교육 소년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영남권 학생들의 장거리 이송 및 보호자의 면회 불편 문제를 개선하였다.

이와 같이 소년원 교정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을 통해 향후 소년원생 재범률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소년원생 수용환경 개선 등 인권처우 확대

● 소년보호과 사무관 김인수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소년원생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유도하는 인권적 처우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수용소년의 인권보호와 개별처우를 위해 1인실 사용 권장)에 따라 10 ~ 15인 규모의 대형 집단 생활실을 4인 이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는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을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생활실 내 화장실·세면실 설치, 개인별 침대·책상 제공 등 수용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현재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 중 6개 소년원(대구·광주·춘천·청주·전주·대전)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었다. 2021년에는 부산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2022년에는 춘천소년원 교육관 및 부대시설 재건축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 그림 2-93 |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



집단 생활실



4인 이하 소규모실



개방형 Hall식 생활관

이와 더불어 수도권 2개 소년원(서울·안양소년원)의 생활실 리모델링,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축을 통해 과밀수용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소재 기관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고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 그림 2-94 | 생활실 리모델링



2) 평가 및 발전방향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과 함께 집단 생활실을 4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여 인권보호와 개별처우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소년원생의 정서적 안정과 비행학습 방지에 기여하였다. 이후에도 시설 리모델링이 미완료된 기관의 생활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비행 초기단계 위탁소년 비행원인진단 및 교육 강화

소년보호과 서기관 김지수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최근 20년 간 누범 청소년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비행 초기단계인 위탁소년 전담 시설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전국에서 유일하며, 소년분류심사원 미설치 지역의 위탁소년 교육은 해당 지역 소년원에서 대행함에 따라 위탁 기능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으로, 위탁소년 진단과 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대전소년원 본관 시설을 리모델링한 '대전청소년진단센터'를 개관하여 위탁소년 전담 교육시설을 확충하였고, 수도권 위탁소년의 만성적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과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신설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위탁소년 비행원인진단 내실화를 위하여 분류심사관 보임자격 기준과 평가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전국 분류심사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분류심사 지침서를 발간·배포하였다. 또한 실효성 있는 비행예방교육을 위하여 위기개입 중심의 위탁소년 교육 편제를 마련하고 필수 인성교육 과목을 지정하였으며, 2022년에는 강절도예방, 폭력예방, 성폭력예방, 민주시민교육, 기초상식, 피해자공감, 인권교육, 진로교육 등 8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할 계획이다.

| 그림 2-95 | 대전청소년진단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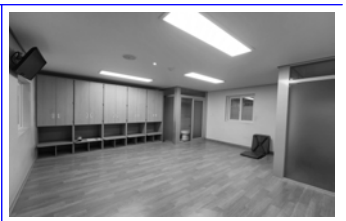

2) 평가 및 발전방향

과학적 비행원인진단과 전문적 인성교육 환경 조성, 위탁소년 전담 시설 확충을 통하여 비행 초기단계인 위탁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위탁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교육과 분류심사, 생활지도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7.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전개

보호정책과 사무관 김동하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민의 법의식 개선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의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체계적인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중점 사항은 법무부 내부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교육위원회의 회의 개최,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수요자별 맞춤형 법교재 개발,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지역 법교육 인프라 확산을 위한 법교육 관련 유관단체 협력 및 민간 법교육 지원, 법체험 기관인 '솔로몬로파크(대전, 부산)' 운영 및 광주·전주솔로몬로파크 추가 건립 등이다.

나. 추진성과

1) 법교육 체계 구축

2005. 3월 법조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법교육 6대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2006년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6. 7월 17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관 협력방안 등 법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2008. 6월「법교육지원법」시행 및 법교육위원회 구성을 통해 법교육 연구 및 추진 체계 구성을 마무리하였으며, 2009. 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법교육위원회를 총 26차례 개최하여 법교육 프로그램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심의하였다.

| 표 2-67 | 법교육 6대 연구과제

법교육 6대 연구과제	① 국내·외 법교육 실태 점검 및 법교육 추진방향 ②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③ 법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방안 ④ 교사 등 법교육 관련자 전문성 강화 지원방안 ⑤ 법조계, 법과대학 등 법교육 지원방안 ⑥ 평생교육,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연계 방안

2) 수요자별 맞춤형 법교재 개발

2005. 9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상생활과 법, 법의 기본원리와 가치, 경제생활과 소비자, 범죄와 형사절차, 직장 생활과 근로자, 가정생활과 가족, 국가와 국민 생활의 영역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법과 생활'을 시작으로, 2005. 12월 대학생 및 시민 대상 '한국인의 법과 생활', 2006. 1월 법교육 프로그램 강사·교사용 지도서 '법은 내 친구', 2006. 4월 어린이용 법교육 교재인 '나는야 법짱'을 발간하였으며, 이후 대상을 확대하여 2012. 3월에 다문화가정 대상 'Fun Fun 대한민국의 법'과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우리법 바로알기', 2018년에는 일반 시민 대상 '클릭, 안전한 사이버 세상으로(LAW)'를 발간·배포 하였고, 2019년에는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해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수어영상도서로 개발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DREAM)에서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 직후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Law) 및 전자책자(e-book)를 제작하여 무료 배포하였고, 2021년에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개정판 '디지털 소통로(Law)Ⅱ'를 발간하였다.

| 표 2-68 | 대상별 법교육 교재

대 상	도서명(발간일)
중·고교생	청소년의 법과 생활('05.12./'07.2./'08.1./'10.3./'11.3./'13.3./'14.2./'16.3./'18.10./'19.10.),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09.7.), 헌법재판소 판례로 사회 교과서 200% 활용하기('10.2.),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알고보니 든든한 축구비법('12.10.), 장난과 범죄사이('13.), 디지털 소통로 중·고등용('20.), 디지털소통로Ⅱ('21.10.)
대학생·시민	한국인의 법과 생활('05.12./'07.2./'08.2./'09.2./'10.2./'11.3./'13.3./'15.9./'17.9./'18.10,/'19.2./'21.8.),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09.2.), 아뿔싸!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범죄('09.4.), 알면 힘이 되는 알짜배기 생활법률('10.6.), 축구 잘하는 법(法)('11.12.),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어르신을 위한 알면 알수록 좋은 법('12.8.), 희망을 만드는 법('13.9.), 보배야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줘(점자 및 음성도서)('13.9.), 클릭, 안전한 사이버 세상으로(LAW)('18.10),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19.12./'21.6.)
법교육 강사·교사	Law Educator Ⅰ·Ⅱ, 법은 내 친구('06.1.), 학교폭력예방 가이드북('08.3.), 학생자치법정 가이드북('08.5.), 학교폭력 OUT('09.12.),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활용한 수업지도안('12.1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의안('12.6.), 강력범죄 예방 강의안('13.3.) 및 가해방지 강의안('13.10.), (헌)법교육 종합 콘텐츠 DVD('13.10.), 쉽게 가르치는 우리헌법(중·고 사회용)('15.12.),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교재 및 리플릿('16.9.)
어린이	나는야 법짱(06.4.), 손오공 무법소탕기Ⅰ·Ⅱ('06.9.) 및 Ⅲ('11.6.), 함께하는 법이야기('07.11.), 법에게 물어봐('08.4.),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09.1.),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홍비홍시와 함께하는 소중한 나와 우리('12.11.), 우리 공주의 나를 사랑하는 법('13.3.), 헌법아! 놀자Ⅰ·Ⅱ('13.9.), 손오공 무법소탕기 Ⅳ('13.11.), 나는야! 법짱('13.12.), 내친구 LAWⅠ·Ⅱ('15.2.), 조선은 법치국가다('15.5.), 우리 모두가 주인이에요 및 일곱 난쟁이 집에도 규칙이 필요해('15.12.), 우리곁엔 헌법('16.7.), 생각이 자라나는 솔로몬의 학생법정('16.8), 교과서 속 법이야기('17.11.), 어린이로스쿨('19.5.), 디지털소통로 초·중등용('20.4.), 이야기로(Law)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①·②('21.9.)
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Fun Fun 대한민국의 법('12.3.), 우리법 바로알기('12.6.),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법세상 및 다문화 사회 청소년의 법과 생활('15.6.), 대한민국으로 온 청소년을 위한 우리법 이야기 초·중급('16.7.) 이민자 생활법률강연 소책자('20.6.)
장애인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 수어영상도서('19.12.)

3)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05년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법 관련 전문성을 함양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2006년 '북한이탈 청소년 법교육', '법교육 출장강연', '학생자치법정', 2009년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2010년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2011년 스포츠 법교육, 2014년 '헌법토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일상생활 속 법교육 확대를 위해 2007년 '시민법률콘서트', 2013년 '시민로스쿨' 및 2013년 '법사랑학교', 2015. 12월부터 '유아법교육'을 실시하였고, 2016. 11월부터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를 도입해 법적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독후 활동을 결합한 유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9년에는 블라인드 변호인 제도, 참관인 제도 등 학생인권의식 향상을 강화한 학생자치법교육 운영매뉴얼 4.0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생자치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그동안 실시해 왔던 각종 경연대회(생활법퀴즈, 모의재판, 헌법토론 등)가

과도한 경쟁으로 법교육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우려에 따라, 대회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중·고교생 법체험 캠프로 개편하였고, 2020년에는 일회성 법체험 캠프를 확장하여 법과 인권 체험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는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4) 법교육 유관단체 협력 및 민간 법교육 지원

2006. 3월 법교육 수업모형 개발 등 청소년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서울대학교(사범대학)와 체결한 MOU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대, 2007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여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2009년 초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교육대학교, 준법풍토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MOU를 추진하였다.

또한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부산 솔로몬로 파크 건립 및 지역 법교육 인프라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다.

| 표 2-69 | 연도별 MOU체결 현황

연 도	MOU체결 대상
200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 서울시립대학교(법정대학)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이화여자대학교
2009년	서울교육대학교, 대한변호사협회·동아일보, 법학전문대학원 6개교 (고려대, 부산대, 전북대, 경희대, 전남대, 성관관대)
2010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법학전문대학원 3개교(이화여대, 중앙대, 연세대)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 3개교(제주대, 경북대, 한양대)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2개교(충남대, 동아대)
2016년	한국프로농구연맹(KBL), 한국야구위원회(KBO)

그 밖에 민간의 법교육 연구활동을 위해 약 30여명으로 구성된 '법교육학회' 창립을 지원하였고, 법교육의 확산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의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법교육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역량있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한국법교육센터, 청소년 희망재단, YES21청소년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등 민간기관 15개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였다.

5) 법 체험기관 '솔로몬로파크' 운영

2007년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도록 대전에 솔로몬로파크를 설립하였다.

대전 솔로몬로파크는 법연수관(2008. 1월 개관)과 법체험관(2009. 3월 개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2019년에는 노후화된 법체험관 전시 시설물 개선 및 후생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체험객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했다.

법연수관에서는 어린이 법탐험캠프, 중학생 법사랑캠프 등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법체험관은 법역사관, 모의국회, 모의법정, 어린이 법짱마을 등으로 구성되어 생생한 법률 현장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016년에는 증가하는 법체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산 솔로몬로파크를 건립하였고, 부산 솔로몬로파크는 대전 솔로몬로파크와 차별화하여 헌법배움터, 선거체험관, 법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 충청권(대전 로파크), 영남권(부산 로파크)과의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고 호남권 법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광주 솔로몬로파크가 2020년 착공, 2022년에 준공 및 2023년 개관 예정이며, 전주 솔로몬로파크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그림 2-96 | 대전·부산 솔로몬로파크 전경



대전 솔로몬로파크



부산 솔로몬로파크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21년에 법교육 정책 방향 설정과 주요 사업 심의를 위해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교육 위원회 정기회의를 2차례 개최했고,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공공안전연구원 등 3개 법문화진흥센터를 발굴하여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였다.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출장강연형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시설 법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법과인권 체험 동아리 지원 사업 개발과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 법교육 활성화를 도모했고, 국민들이 법교육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법교육 프로그램을 편재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소통로' 교재를 발간하는 등 법교육 사업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과 인프라 확대에 힘썼다.

2022년에는 법교육 대상을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등 법적 보호로부터 소외된 계층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탈북청소년, 이민자,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방과후 시설을 위한 맞춤형 법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매년 40만명 이상의 많은 체험객들이 방문하는 법체험 테마파크인 솔로몬로파크 또한 2022년 완공될 광주솔로몬로파크와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인 전주솔로몬로파크 등 전국 4개 솔로몬로파크 시대를 앞두고 솔로몬로파크 별 특색을 살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법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다.

8.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보호정책과 사무관 김영남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범죄는 개인의 재산이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 저하는 물론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에서 빈발하는 기초 법질서 위반 사례를 찾아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생활 속에서 법질서를 체감하게 할 수 있는 실천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4년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던 활동들을 심화, 확대한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2014년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기초 법질서 지키기', '안전법규 준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등 3개 분야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전국 지역공모를 거쳐 모두 33개 지역에서 특성에 맞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시민참여 법질서 실천운동의 전형을 만들고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저스티스 서포터스'를 조직하여 법질서 준수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지난 2008년 이후 2021년까지 약 2천 8백 명 이상의 시민이 '저스티스 서포터스'의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2014년 14개 지역, 2015년 11개 지역에서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사업 규모 확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과의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법무부의 색채를 가미한 범죄예방 환경개선(법사랑타운)을 시작하였다. 범죄예방 환경개선과 더불어 주민공동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는 '법사랑타운' 사업을 경기 안성과 전남 광양에 시범 실시하는 등 모두 12개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경기 광명 등 3개소 '법사랑타운'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 경기 남양주 등 5개소와 행정안전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선정지역 광주 남구 등 5개소 등 모두 13개소를 선정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국민들의 범죄 불안감 감소와 부처 간 협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 경기 용인 등 7개소, 해양수산부(어촌뉴딜사업 300) 선정 경남 남해군 등 3개소와 법무부 갈등지역 경기 성남 등 2개소를 추가, 총 12개소를 선정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국토교통부(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경기 용인시 등 3개소, 해양수산부(어촌뉴딜사업 300) 선정 강원 삼척시 등 2개소에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지 경기 안산시 등 2개소를 더한 총 7개소를 선정하여 중·장기 범죄예방 계획 및 기초설계안 등을 제공하고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환경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셉테드를 진행하였다.

나. 추진성과

1)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2021년에는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학생 및 청년으로 구성된 저스티스 서포터스 40개 팀, 182명이 실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캠페인 및 홍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범죄 예방 등의 주제로 375회의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고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활동 1,309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21년에 강원도 삼척시, 전라남도 여수시 등 7곳에서 지역당 평균 13회, 146명(총 93회, 1,025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컨설팅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도심 노후화로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정비가 필요한 강릉보호관찰소와 거주여건이 열악한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지역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셉테드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 불안감 감소 및 주민친화 제고로 지역 사회에 기관 이미지를 개선하였다.

| 그림 2-97 |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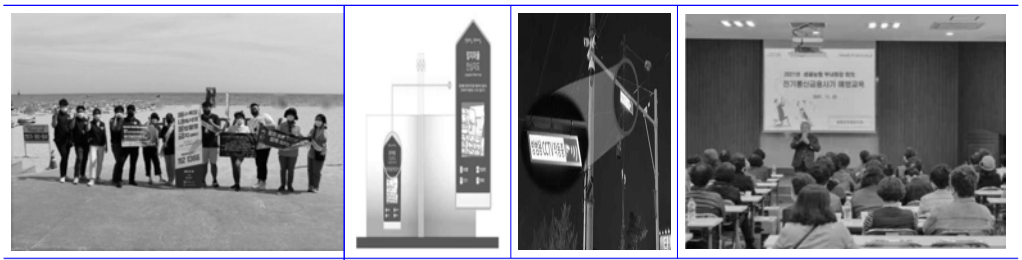

법질서 캠페인 | 범죄예방 환경개선

2) 생활 속의 범죄예방 인식 개선 활동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 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공익광고(제목 : 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이 되지 마세요)를 제작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하철 2호선 행선안내기와 유튜브 광고(조회수 약 374만 회, 2021. 1. 21. 현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광판 국가광고 표출대상으로 선정되어 전국 약 115개 전광판을 통해 공익광고를 송출하였는데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법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였다.

| 표 2-70 | 연도별 홍보 현황

연 도	홍보 내용
2012년	공익광고('언어순화', '강력범죄예방-돌려주세요', '학교폭력예방-거품편') 제작 TV·라디오·지하철·영화관 등에 홍보, BGF리테일(구, 훼미리마트)과 연계하여 전국 7,000여 CU점포 계산대 및 수도권 지역 대형모니터 1,060개에 공익광고를 무료 송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송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부활 김태원 작사·작곡)' 제작, EBS '폭력 없는 학교-법질서선진화과편' 방송('12.7.)
2013년	4대악 근절을 주제로 TV, 라디오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각 1편을 제작하여, KBS, MBC, YTN, MBN, 서울·경기 전광판, 영화관 등에 홍보('13. 9. ~ 12.),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와 협력하여 4대악 근절 공익광고 2편을 제작, KBS를 통해 송출('13. 9. ~ 12.), '폭력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육부, 전국 초·중·고등학교,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총 2만 부를 배포
2014년	SBS TV, 채널A, YTN, MBN, TV조선 등에 법질서 실천운동 공익광고 '행복 비법' 편을 방영, '법질서 실천송'(카라)을 제작·배포, 법질서 실천운동 로고와 슬로건 '법질서 실천, 나부터 릴레이' 포스터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각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 총 1만부를 배포
2015년	KBS 특집다큐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와 KTV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이 방송, 채널A, YTN 등 TV·라디오에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가 총 332회 송출, '법의 날', '호국의 달', '광복절' 등 기념일을 주제로 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법사랑사이버랜드, 유튜브 등에 게시, LGU+ 승강기 광고보드와 미디어라이프 광고보드(3,287대, 콘텐츠 당 300여 회)에 송출, SNS 홍보를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 '나부터릴레이' 개설('15.8.)
2016년	페이스북에 법사랑서포터스가 제작한 '법무정책 카드뉴스' 및 '삼국지 웹툰' 등 300여개 콘텐츠 게시
2017년	우리사회 나눔 문화 정착과 불우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집중 홍보(페이스북에 재능나눔을 주제로 웹툰과 카드뉴스 제작·배포, 팟캐스트와 'SBS 이숙영의 파워FM'에 음성 광고 실시, 스포츠동아, 매일경제에 우리사회 재능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고, 연합뉴스TV, 채널A에 공익광고를 송출)
2018년	범죄예방 및 기초법질서 준수 포스터 제작('나 이런 사람이야!', '관심이 곧 예방')하여 지하철 스크린도어·객차 및 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 등에 게시,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명예보호관찰관 등을 소개하는 라디오광고를 제작·송출 ('MBC 굿모닝 FM김재동',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9년	범죄예방 및 기초법질서 준수 포스터를 제작('당신은 부끄러운 어른이 아닌가요?' 등)하여 수도권 1 ~ 4호선 지하철 출입문, 수서역 수서평택고속선 옥외매체, 서포터스 활동, 사이버랜드 등 다양한 캠페인 콘텐츠로 활용
2020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이 되지 마세요)를 제작하여 수도권 지하철 2호선 행선안내기(승강장, 대합실) 및 유튜브, 전국 약 115개 전광판 국가광고 송출
2021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을 주제로 5개월간 매월 영상컨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광고,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을 버스 내부, 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 유트브 채널(누적조회수 127만회)에 게시

| 그림 2-98 | 2021년 홍보



아동학대 예방 광고





유튜브 광고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21년 법질서 실천운동은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활동을 병행하였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캠페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비대면으로 배포하는 방식의 캠페인으로 전환하였고, 카드뉴스, 웹툰, 동영상, SNS 캠페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법질서 실천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여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펼칠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타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과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사업 선정지역 및 지방자체단체 협력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범죄예방 컨설팅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지역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각종 법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및 연대의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국민 불안감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년 법질서 홍보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이 되지 마세요' 공익광고를 제작하였다. 광고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법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기존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법질서 실천운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홍보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하고,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홍보매체를 선정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9. 출소자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추진

보호정책과 사무관 이승원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산하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하여 2006년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한 「출소자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로 2010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출소자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 ~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의 「출소자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을 통해 총 16,071명의 출소자를 참여시켜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55억여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이 아닌 법무부 직접사업으로 출소자 특화 취업지원사업인 「허그(HUG)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021년까지 출소자 41,113명을 참여시켜 취업역량을 강화시켰다.

가정 해체 위기에 처해 있는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과 출소자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2014년 경기도 오산시에 건립된 법무보호교육원 가족희망센터에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가족상담, 가족캠프, 가족교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부터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전국 지부(소) 단위로 확대하였고, 2021년까지 갱생보호대상자 70,579명에게 117,044건의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갱생보호대상자 가족 2,231명에게 241회에 걸쳐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 참여를 높이고자 2006년부터 정계, 학계, 자원봉사자, 유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허그(HUG) 후원의 날'[1]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행사의 취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행사 명칭을 '법무보호복지의 날'로 변경했다. 전국 각 지역별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추천받아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취업지원, 재정지원, 주거지원, 종교, 사전상담, 여성, 대학생 등 기능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지부(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1) 허그(HUG) 후원의 날 : 갱생보호사업 유공 자원봉사자 노고를 치하하고 출소자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후원행사

| 그림 2-99 | 법무보호사업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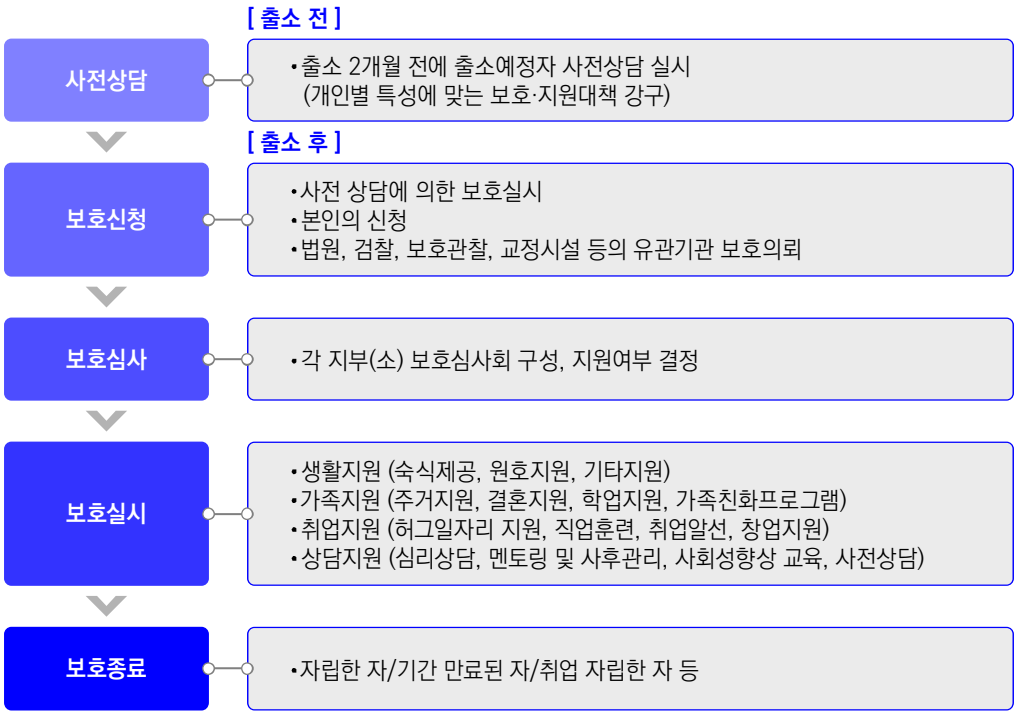

나. 추진성과

1) 출소자 취업 역량 강화 및 사회복귀 조기 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대면 취업지원서비스(서면상담 등) 도입하여 교정기관 및 소년원과의 협력을 통해 출소(퇴원)예정자 대상 서면상담을 실시하였고, 비대면 소통창구 카카오채널(HUG)을 개설하여 실시간 취업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공단·교정·보호관찰소 간 3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간담회를 개최(59회)하는 등 취업지원 수혜자 확대 및 코로나19 공동 대응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7,019명(전년 동기 대비 414명 증가)이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였고, 2,480명이 수료(4,539명 진행 중)하였으며, 이 중 2,032명(81.9%, 전년 동기 대비 127명 증가)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 표 2-71 |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실적

참여연도	참여인원(명)	수료인원(명)	수료자 취업현황	
			취업 인원(명)	취업률(%)
2016	4,997	4,619	2,797	60.6
2017	5,655	5,241	3,021	57.6
2018	5,726	4,915	2,630	53.5
2019	6,117	4,904	3,144	64.1
2020	6,605	5,011	3,338	66.6
2021	7,019	2,480	2,032	81.9
계	36,119	27,170	16,962	68.3

| 그림 2-100 |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 노력



공단 비대면 소통창구(카카오톡채널 허그)



공단·교정·보호관찰 3자 협의회

출소자의 안정적 취업처 확보를 위해 2008. 6월 전국취업위원연합회를 구성하여 1기업 1출소자 고용운동을 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고용협력기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정례화를 통해 1,208개 업체에 출소자 2,940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2009년부터 2021년까지 60개의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체'를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대출시 보증한도비율 10% 상향(80%→90%) 및 보증보험료 0.2% 할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소자 고용에 대한 기업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1. 9월 출소자고용 우수기업체에 대한 대외 공신력 강화를 통한 우대조치 도입 환경 제고를 위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주체(공단 이사장→법무부장관)를 상향하였다.

| 그림 2-101 | 일자리 기반 활성화 노력





제1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공단은 2011년부터 용접 등 취업이 용이하고 지역산업에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울산(용접), 전주(영농), 창원(기계가공), 서울동부(미용, 제과제빵 등), 충남 홍성(자동차정비), 경북 예천(전기) 등에 위치한 7개 기술교육원은 출소자 등 갱생보호대상자를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하여 안정된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20. 1월부터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공단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이 포함됨에 따라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수료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표 2-72 | 기술교육원 운영실적

(기준 : 2011. ~ 2020.)

구 분	입교(명)	수 료		취 업		비 고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울 산	1,033	829	80.2	428	51.6	
인 천	956	844	88.3	423	50.1	
서울동부	593	431	72.7	119	27.6	
충 남	408	372	91.2	130	35.0	
전 북	509	419	82.3	120	28.6	
경 남	592	483	81.6	112	23.1	
경 북	212	159	75.0	25	15.7	
계	4,303	3,537	82.2	1,357	38.3	

또한 매년 지역별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출소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공단 창업지원은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창업에 곤란함을 겪는 출소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최대 6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출소자 206명에게 80억 8,055만원을 지원, 출소자 자립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

2) 출소자 가족지원 사업 강화

가족지원사업은 2021년 한 해 주거지원 156호, 심리상담 13,816회, 수형자 가족지원 971명 지원 등 갱생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연계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출소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21년까지 총 2,534호의 임대주택을 지원, 3,472가구의 출소자 가족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았다.

출소자 및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 진단·치료, 대인관계 개선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26명을 각 지부,지소에 배치하여 2021년까지 70,579명에게 117,044건의 전문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법무부와 공단은 수형자 가족 및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 학업지원 1,159건, 주거지원 37가구, 심리상담 775건, 긴급지원 791건, 접견지원 700건, 장학금 지원 72건 등 활발한 지원을 통해 수형자 가족해체 및 자녀의 범죄 대물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표 2-73 | 주거지원사업 관리주택현황

(기준 : 2006. ~ 2021.)

연번	기 관 명	관할지역	관리주택(호)
1	서 울 지 부	서울 서남부지역	193
2	서 울 동 부 지 부	서울 동부지역	43
3	인 천 지 부	인천, 부천	272
4	경 기 지 부	수원, 경기 남부(경기남부 관할 제외)	295
5	경 기 남 부 지 부	경기 남부(오산, 평택, 화성, 안성)	80
6	경 기 북 부 지 부	경기 북부	181
7	강 원 지 부	강원 서부지역(원주, 춘천 등)	90
8	강 원 동 부 지 부	강원 동부지역(강릉, 동해, 삼척 등)	4
9	대 전 지 부	대전	180
10	충 남 지 부	충남 전지역	34
11	충 북 지 부	충북 전지역	79
12	대 구 지 부	대구, 경주, 포항	217
13	경 북 지 부	경북 전지역(경주, 포항제외)	23
14	부 산 지 부	부산	136
15	울 산 지 부	울산	116
16	경 남 지 부	경남 전지역(부산·울산 제외)	141
17	광 주 전 남 지 부	광주·전남 전 지역	183
18	전 북 지 부	전북 전지역	108
19	제 주 지 부	제주	35
20	서 울 북 부 지 소	서울 북부지역	124
합계			2,534

| 그림 2-102 | 출소자 가족지원 사업 활동



수형자 가정방문 및 환경조사



수형자 미성년자녀 장학금 전달

3) 지원 인프라 확대 및 홍보 강화

2021. 11월 법무부장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정부포상 수여식(과천정부청사)과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식(공단 본부)로 나누어 행사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의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표 2-74 | 법무보호복지의 날 추진경과

일 시	장 소	내 용	참석인원
2006. 10. 26.	전국거점도시	• 발대식, 헌혈운동, 가두캠페인	2,800여명
2007. 06. 14.	라비돌리조트	• 전진대회, 노란리본, 가두캠페인	3,000여명
2008. 08. 29.	백범기념관	• 전진대회, 노란리본, 청계천 가두캠페인	4,000여명
2009. 09. 02.	올림픽홀	• 바자회, 콘서트, 사회적비용 컨퍼런스	4,000여명
2010. 09. 10.	장충체육관	• 바자회, 콘서트, 취업박람회(교정기관 합동)	3,000여명
2011. 10. 31.	코 엑 스	• 전진대회, 바자회, 축하공연(난타, 샌드 애니메이션)	1,500여명
2012. 10. 30.	국립중앙박물관	• 전진대회, 바자회, 성과경진대회(영상물 상영 등)	1,000여명
2013. 10. 30.	안양아트센터	• 전진대회, 바자회, 노란리본기	1,000여명
2014. 10. 29.	안양아트센터	• 전진대회, 기업홍보 축하공연(타악, 대학생 & 보호청소년)	1,000여명
2015. 11. 18.	과천정부청사	• 전진대회, 사료전시, 축하공연(국악, 대학생 & 청춘합창단)	1,000여명
2016. 11. 16.	과천정부청사	• 전진대회, 사진전, 축하공연(음악축제 수상자(합창, 난타))	1,000여명
2017. 11. 16.	과천시민회관	• 자원봉사자 포상, 역사관 개관 기념 기록물 전시, 축하공연	1,000여명
2018. 11. 07.	과천시민회관	• 자원봉사자 포상, 축하공연(홍보대사 등), 공단가 제창	1,000여명
2019. 11. 08.	과천정부청사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기념공연, 손피켓 퍼포먼스	200여명
2020. 11. 04.	공 단 본 부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후원금 전달식, 손피켓 퍼포먼스	70여명
2021. 11. 03. 2021. 11. 10.	과천정부청사 공 단 본 부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후원금 전달식, 손피켓 퍼포먼스	70여명

아울러, 2013년부터 갱생보호사업·기술교육원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법무부 보라미 방송을 통해 각 교정기관에 송출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터나눔 허그(HUG)기업 수기집 「희망으로 다시 시작하다」를 제작·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는 모바일을 통해 공단 동향과 소식을 알리는 「월간 뉴스레터」와 자원봉사자 미담사례, 출소자 성공스토리 등을 담은 소식지 「아름다운 동행」을 활용하여 공단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출소자 포용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70여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역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7년 법무보호교육원 내에 역사관을 설치하고 공단에서 보관 중인 시대별 사료를 정리하여 전시함으로써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 그림 2-103 |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4) 전국 자원봉사 조직 개편

2019. 3월 기존 법사랑위원과 보호위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법무보호위원으로 일원화하여 법무보호위원전국연합회, 전국취업위원연합회, 대학생 법무보호위원전국연합회, 가정복원위원회 등으로 자원봉사자 조직을 개편하였다. 2021년 현재 법무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조직 339개, 자원봉사자 7,495명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75 | 공단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운영 위원	취업 지원	재정 지원	주거 지원	종교 교화	여성	사전 상담	대학생	기타
위원회수	339	8	38	29	26	16	20	26	31	145
인원	7,495	20	821	681	648	180	451	621	1,160	2,913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일자리지원 사업은 출소자들의 구직기회 및 고용협력기업 인프라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출소자 고용 우수사례 등의 관련 모바일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국민 친화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출소자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2022년까지 허그일자리프로그램 참여자 1만명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출소자 고용을 희망하는 지역사회 내 협력기업을 지속 발굴,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등 출소자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단 일자리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 광주, 전라남도 목포 등에 보호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가족지원사업은 주거지원, 심리상담, 자녀학업지원 등을 통해 갱생보호대상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친화프로그램 확대 실시 및 내실 있는 주거지원 운영으로 사업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해 교정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2021년 신문(619회), 방송(49회), 인터넷매체(3,028회), 온라인매체(18,941회) 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앞으로 출소자 우수사례 수기집 제작 및 유관기관 배포 등을 통해 홍보 역량을 집중하고 교정본부의 협조를 통해 보라미 방송에 송출하던 취업지원 관련 홍보 영상 외에도 생활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 법무보호사업 안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법무보호위원으로 새롭게 출발한 자원봉사조직은 전문화교육 강화, 자원봉사활동분야 지속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제6절 감찰·감사업무

1. 감찰업무

◎감찰담당관실 검찰사무관 이기용

가. 개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부 감찰활동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비위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예방적 감찰활동의 전개 및 집중적인 점검, 비위 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사·조치함으로써 유사 비위 차단에 주력하였다.

특히,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감찰활동을 위해 파견 직원에 대한 정식 직제화를 도모하였으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상시 운영으로 직장 내 부조리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및 각 고등검찰청 감찰부서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효과적인 내부 감찰을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한편, 감찰위원회 최초로 청년위원이 위촉된 감찰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감찰 결과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나.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찰 활동 전개

1) 비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상시적인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해 비위 발생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다각적으로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비위공무원을 직접 조사하는 등 비위 발생의 진상을 규명하여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과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에 기여하였다.

2) 비위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둔 예방적 감찰 활동 적극 전개

취약 분야, 과오 다발 분야, 중점 점검 대상자, 다수 민원을 야기한 직원에 대한 비노출 관찰활동, 부장·차장검사 승진대상자 인사검증 제도 등의 선제적 감찰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단순히 비위나 과오를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업무 개선을 통해 비위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감찰활동을 추진하였다.

3)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21. 04. 27.)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인해 공·사익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가 관련 분야의 주식을 신규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 감찰담당관실을 비롯한 관련부서 재산등록의무자의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사전적·주체적으로 비위 근절 예방에 노력하였다.

다. 감찰 업무를 통한 법무부 내 인권증진·공직윤리 확립

1)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갑질 피해자 구제, 갑질 피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2차 피해 모니터링, 갑질 신고 사건 종결 이후 갑질 신고(피해)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피드백 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내 인권 증진을 도모하였다.

2)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

법무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에 청탁금지법에 관한 안내와 교육 실시,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등록절차 안내 및 심사, 퇴직 공직자 취업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공개대상자에 대해 병역 신고 안내 등을 통해 비위 발생에 대한 일반예방 및 공직윤리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공무원의 청렴한 윤리의식을 고취하였다.

라. 감찰업무의 객관성 제고

1) 검찰의 감찰업무 효과적 지휘·감독

코로나19로 연기 되었던 대검찰청 감찰본부 및 고등검찰청의 감찰부서 업무에 대한 정기 사무감사를 하반기에 일제히 실시하였고, 대검찰청 감찰본부 등으로부터 감찰 착수·진행·결과 등 감찰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 보고를 통해 법무부 감찰관실로 하여금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감독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2) 법무부 감찰위원회 전면 개편 및 감찰위원회 개최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구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최초로 청년위원

2명을 위촉하였으며 법무부 감찰위원 13명 중 12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찰위원회를 연간 3회 개최하여 감찰 결과에 대한 검증 및 감찰사건 처리방향 등을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징계 권고 의견을 제시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찰 기능을 도모하였다.

2. 감사업무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서혜주

가. 자체감사체계 역량 강화 및 반부패·청렴도 제고

1) 추진개요

2021년도에는 '적극행정 확산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및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여 현장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신설, 시민의 역할 강조 및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조사팀을 운영하여 비위신고 사건의 직접 처리 등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고려하여 감사일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고 102개 소속기관과 1개 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연말연시 등 근무기강 취약시기 특별 복무감사, 내부비위 제보 조사(청렴감사) 및 법무시설 공사현장 대상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총 466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여 관련자 216명에게 징계·경고 등 신분상 조치하였고,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5,639만원을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다.

2) 추진실적

| 표 2-76 | 실시현황

구 분	내 용	실시기관 수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점검	102
특정감사	특정업무·사업 등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 마련	7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 직원의 비위, 근무실태 등 점검	전 소속기관·산하공공기관

| 표 2-77 | 조치내역

(단위 : 건, 명, 천원)

조치결과 / 종별	계			신분·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징계		경고		주의 등		회수		감액 등	
	건	인원	금액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금액	건	금액
합 계	466	216	25,639	3	3	12	13	420	200	30	21,199	1	4,440
종합감사	383	199	21,115	3	3	10	11	342	185	28	21,115	-	-
특정감사	19	7	4,440	-	-	2	2	16	5	-	-	1	4,440
복무감사	64	10	84	-	-	-	-	62	10	2	84	-	-

나. 반부패 시책 적극 추진으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1등급 달성

1) 추진개요

공공부문의 높은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7년 반부패·청렴 전담팀을 신설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반부패·청렴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017년부터 우수기관으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최초로 1등급으로 평가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에도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0년에는 장관 주재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의체를 발족하여 반부패 시책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였고, 2021년에는 소속기관으로 확대 적용하여 123개 기관에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자체 반부패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반부패 추진동력을 확보함으로써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1등급으로 평가받아 역대 최고의 성과를 얻게 되었다.

2) 주요 반부패·청렴 추진 활동

가)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청렴LIVE) 실시

2021. 9. 1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초청하여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본부장 참여하에 2022년 5월 19일부로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중계되어 소속기관 직원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므로써 새롭게 도입되는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전 직원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 “같이하는 청렴, 가치있는 청렴” 청렴멤버스 발족

청렴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시책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직원 중 반부패·청렴업무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2021년 7월 ‘청렴멤버스’를 발족하였다. 직렬·직급·연령·성별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총 42명을 제1기 청렴멤버스로 위촉하였으며 청렴워크숍 및 갑질설문조사 등 다양한 청렴시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였고, 청렴화면보호기 제작에도 참여하였다. 활동실적을 토대로 최우수 참여자를 1명 선정(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주사 송지희)하여 2021년 연말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다) “국민참여 2021년 청렴문예대전” 개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2021년에는 “내가 바라는 청렴한 사회”를 주제로 청렴이모티콘, 시·서·화 분야에서 2021. 10. 27.부터 12. 17.까기 개최하였으며 총 149점이 접수되었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교사, 퇴직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에서 참여하였다. 제출된 작품은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6점, 참가상 20점을 선정하였으며 수상작 모음집으로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그림 2-104 | 2021년 주요 반부패·청렴 추진 활동



2021년 청렴L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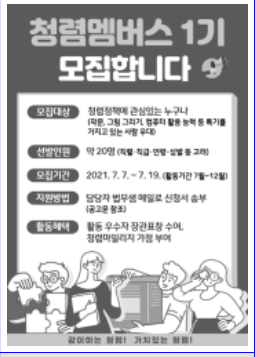

청렴멤버스 선발



2021 청렴문예대전

제7절 인권업무

1.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가. 인권보장 수준의 향상을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인권정책과 사무관 유원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07년부터 5년 단위 범국가적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으나, 기본계획 수립의 법률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2006년 대통령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의 협의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인권정책은 그 성격상 여러 부처와 연관된 과제가 대다수이나 법무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는 동등한 위상을 갖고 있어 인권정책 추진과제의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7개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여 주기적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심의와 권고를 받고 있으나,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과 심의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이 없어서 국제기구의 권고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정하는 등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국제인권규범이 국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2021년 2~3월 시민단체 간담회와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 법안에 반영하였고 같은 해 5월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전체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법무부는 8년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합의한 법안을 마련하였고, 2021년 6월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법 제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노력 끝에 인권정책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다. 2021년 8월 온라인 공청회 개최 후 같은 해 12월 「인권정책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그림 2-105 | 2021년 법무부장관-국가인권위원장 면담



기념사진



법무부장관-국가인권위원장 면담

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강화

인권정책과 사무관 이동훈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에서는 2018. 8. 7.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18. ~ '22., 272개 과제)을 수립한 바 있으나, 기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는 각 부처가 제출한 전년도 이행결과에 한하여 사후에 논평을 하는 것에 그치고 평가기준 등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쉽게 측정 가능한 정량적 산출물에 치중하는 문제가 있어 각 부처의 이행계획 수립단계 및 이행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정책자문단의 자문 및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선정된 중점과제에 관한 과제별 이행 가이드라인 및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각 부처가 이를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행계획 및 이행과정에서부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체계 강화를 추진하였다.

2019 ~ 20년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제1차 17개, 제2차 13개 시범과제에 관해 별도 집중점검 및 점검결과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19년도 이행상황은 총 272개 과제 중 완료과제 15개를 비롯하여 '정상추진' 중인 과제 250개를 포함한 이행률은 97.42%이고, '20년도 이행상황은 완료과제 19개를 비롯하여 '정상추진' 중인 과제 248개를 포함한 이행률은 98.16%이다.

또한, '2020년도 이행상황' 책자 700부를 발간하여 행정부, 국회, 지자체, 연구기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인권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홍보하고 전국민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체계 강화를 통하여 분야별 추진 과제의 적극적 이행으로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인권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는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권 증진의 법률적 근거 마련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과제 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과 이에 근거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 간담회, 공청회 등 수차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국회 법사위 등을 방문하여 입법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그동안 논의가 중단되었던 인권위와 업무협의를 이끌어내 법안 마련에 성공하여 2021. 12. 30. 국회에 제출하였다. 향후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다. 인권 모니터링 제도 운영

인권정책과 사무관 이정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에서는 2021. 3. 30.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법무부훈령 제1351호)을 제정하였다. 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법무부 소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인권 관련 국내·외 규정 및 권고를 준수하고 재량권 행사 시 적절한 보호방안이 있는지를 사전 평가한 후, 개선책을 미리 반영하는 제도이다.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청주외국인보호소부터 취침시간(22:00 ~ 익일 07:00)에는 영상비표출로 운영하고 향후 화성·여수외국인보호소까지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사건·사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침해 예방을 위해 수용자 간 발송할 수 있는 편지의 범위를 좁게 해석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해 그 개념을 명확화하도록 개선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1년 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법무행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구금·보호 시설'에서는 외국인, 수용자, 보호·위탁소년 등 처우를 개선하고 '형사절차'에서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시설 이외'에서도 인권침해 소지 개선을 통해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법무행정 내에서 법령등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경우 모니터링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라. 국제인권기구 대응 업무 강화

◎인권정책과 사무관 유원정, 박상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1년의 주요 성과로서 법무부 소관 인권조약인 유엔「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제6차 국가보고서를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하였고,「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등 타 부처 소관 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작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나아가 2021년에도 유엔 인권기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진정 사건 및 유엔 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 요청 서한이 다수 접수되었는바, 법무부는 관련 우리 정부 답변서 작성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청취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우리 인권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2021. 10. 제48차 유엔 인권이사회 사형제 문제 결의안(사형제 폐지와는 별개) 찬성 표결을 통해, 2020년 제75차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 찬성 표결에서 밝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나아가 미 국무부의 대한민국 연례 인권보고서 작성 시 자료 제공, 유엔 인권이사회 주제별 특별절차 공동서한 답변서 작성,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 참석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 인권증진에 기여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2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기구 업무의 전반적 위축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시민사회가 국내 인권정책 현안을 유엔에 진정하는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국제인권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시민사회·국회·인권위·관련 전문가와의 소통을 양적·질적으로 모두 제고하여 국제인권기구 대응업무를 내실화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국내 인권정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주요 국제인권보장 체제인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의 우리나라에 대한 제4차 심의가 2023년에 이루어질 예정인바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국가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다.

마. 국제인권기준에 발맞춘 인권정책 발전 방안 모색

인권정책과 사무관 박상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부처로서의 적극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과제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중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시민사회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신규 정책 도입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였다. 대표적으로 주요 국제인권조약 중 아직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약칭: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관련 관계부처·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가입안을 마련하였고, 협약 가입 관련 국내절차를 외교부에 공식 의뢰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2020. 11. ~2021. 9. 국내 형사법,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를 10차례 운영하여, 동 협약의 국내 이행법률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관행을 국내 기업에 확산하기 위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성평등 해설서」 및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유관협회 등에 배포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앞으로도 시민사회·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수립 및 새로운 인권문제 대응에 힘쓸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심의·권고이행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바. 제58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인권정책과 서기관 김에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제58회 '법의 날'인 2021. 4. 25.에 즈음하여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기념식을 취소하고 2021. 4. 23.(금)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였다.

2) 추진내용

이번 정부포상 전수식에서는 40여 년간 법조인으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공익활동과 고령사회 법률지원 및 시민운동 활동으로 인권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공헌하고 「조세소송」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해 법률문화 발전에 진력한 소순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명이 포상을 수상하였다.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하여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이루기 위해 '인권·정의·공정'이라는 법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법무부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로서의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다짐하였다.

| 그림 2-106 | 제58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장관 축사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

사.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공동개최

인권정책과 사무관 박상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1. 12. 3.(금) 13:30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호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포럼 개최는 2020년도에 법무부와 국가

인권위원회가 체결한 인권경영 확산 업무협약(MOU) 이행의 일환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채택 10주년을 기념하여 동 이행원칙의 세 가지 축인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구제에 대한 접근 보장'의 국내이행을 각 점검하였다. 금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발표자의 경우 영상으로 참석하였으며, 발제자·토론자 위주의 대면 토의 및 일반 참석자의 온라인 참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추진내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 관련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에서의 인권경영 관련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국가의 인권보호를 강조하였다. 또한, 단테 피스(Dante Pesce) 前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10년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각 정부 간 이행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관련 인프라 및 역량 구축이 전제조건임을 강조하였다. 포럼 제1부에서는 존 보가츠(John Bogaerts)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대리,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관련 국내 이행점검 및 주요 과제를 논의하였다. 이어서 제2부에서는 임성택 변호사, 정신영 미국 변호사 등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한 국내 이행점검 및 주요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제3부에서는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이상희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 등이 '구제조치에 대한 접근성' 관련 국내 이행점검 및 주요 과제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인권경영 촉진·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 그림 2-107 |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법무부 장관·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포럼 참석자 단체사진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

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 인권구조과 사무관 윤지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 이래 구조금 지급을 시작하여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 통합이후 지속적으로 그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왔다. '20. 11월 적법체류 결혼이민자를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고 구조금 분할지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총 202건, 98억 원의 구조금을 지급하여 범죄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피해구조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범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향후에도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구조금 지급 방법 다양화 등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범죄피해자 우선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범죄피해자 심리적 지원 강화

●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찬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설립하였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심리평가, 심리치유, 집단프로그램, 사회적 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범죄발생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에게 임시거주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10. 7월 서울동부 스마일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16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18년에는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을 설치하여 전국 센터의 심리치료 서비스 전문성 강화, 표준 프로그램 개발·보급,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전국 스마일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 표 2-78 | 연도별 설치현황

구분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설치 지역	서울 (동부)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춘천 전주	서울 (서부) 수원	의정부	청주 울산	창원	제주	목포

| 그림 2-108 | 목포스마일센터 개소식('21.3.5.)





스마일센터의 외형 확대에 맞추어 질적 성장을 기하고자 지속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및 센터 이용자에 대한 분석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혐오와 트라우마'를 주제로 혐오 범죄 트라우마의 피해 특성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방안과 치료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년 범죄피해자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표준 평가 프로토콜 및 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21년 스마일센터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및 표준화 연구

스마일센터에서는 '21년 말까지 19,974명의 강력범죄피해자에게 심리치료(376,647건), 임시주거 제공(27,553건), 사회적 지원(23,413건) 및 법률적 지원(28,444건) 등을 제공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 표 2-79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단위 : 명, 건)

연 도	신규접수 (명)	서비스 지원					교육홍보
		계	심리지원	사회지원	법률지원	임시주거	
2019	2,630	74,556	59,571	5,172	5,113	4,700	2,128
2020	2,402	66,993	55,659	4,122	4,992	2,220	3,632
2021	2,630	72,398	59,664	4,369	5,281	3,084	5,080

2) 평가 및 발전방향

'21년 한 해 동안 전국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을 지원 받은 대상자들의 치료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PDS), 사건충격척도(IES), 한국판 벡우울척도(K-BDI), 한국판 벡불안척도(K-BAI) 평균값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하단 표 참조) 이는 범죄피해자들이 스마일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우울 및 불안 증상이 크게 완화되어 심리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앞으로도 스마일센터는 개소 등 외형적 확대에 맞추어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 국내 유일의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유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 표 2-80 | 심리치료 효과 검증 결과

(단위 : 명, 건)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결과해석
외상후스트레스 진단척도 (PDS)	치료 전	244	**29.5**	3.3	• 10점이하 : 낮은 수준 • **11~20점 : 중간 수준** • 21점이상 : 높은 수준
	치료 후	244	**12.3**	2.8	
사건충격척도 (IES-R)	치료 전	244	**50.7**	5.8	• 기준점 25점 • 25점 초과 시 외상과 관련된 증상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
	치료 후	244	**20.5**	4.4	
벡우울척도 (K-BDI)	치료 전	244	**28.4**	12.3	• **13점이하 : 증상 없음** • 14~19점 : 경미한 우울증 • 20~28점 : 중간정도 우울증 • 29점이상 : 심각한 우울증
	치료 후	244	**12.2**	9.7	
벡불안척도 (K-BAI)	치료 전	244	**24.8**	13.8	• 7점이하 : 불안증상 거의없음 • **8~15점 : 경미한 불안** • 16~25점 : 중간정도 불안 • 26점이상 : 심각한 불안
	치료 후	244	**8.8**	8.8	

※ 출처 : 2021년 스마일센터 백서

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윤지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은 범죄피해자의 주거 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서 '10. 8월부터 시행되었다. '20. 5월 주거지원 공고문 개정을 통해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범죄를 추가하여 얼굴 공개, 보복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지원 대상자에 관하여 과실에 의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주거지원 공고문을 개정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 이후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 표 2-81 | 주거지원 대상 확대(2020. 5.)

종 전	개 선
1. 사망, 장해, 5주 이상의 상해	좌동
2.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주거지원 필요성 인정시 지원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친족간 성폭력, 약취·유인, 체포·감금 피해자 3.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한 피해자 범위 확대 - 보복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아동학대 - 장애인·아동·청소년·업무상위력 강제추행 - 실화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좌동 ※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범죄 추가 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유포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배포 의율 대상 피해자까지 확대 -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과실범죄가 제외되는 점 명시 -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반영 및 지원규모 및 대상주택 상세 기술

2) 평가 및 발전방향

주거지원은 범죄로 주거를 상실하거나 보복위험 우려, 친족 간의 범죄 등으로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21년에도 총 39가구가 주거지원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각지대 해소 – 스마일공익신탁

인권구조과 사무관 윤지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6. 4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설립하였다. 법무부 장관과 직원 일동이 제1호 위탁자로 참여하여 3,000만 원을 기탁하였으며,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로 모아진 기탁금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21년에는 친부 성폭력 피해자, 학대피해 아동 및 친족 간 살인으로 가정이 파괴된 피해자 유가족 등 23명에게 총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여 2016년 출범 이후 총 127명에게 6억여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스마일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회복과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직원들이 직접 모아준 천사공익신탁에서 스마일공익신탁으로 매년 재원을 출연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생계비·학자금 등의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활동 지원

인권구조과 주무관 윤형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단체로서 2003. 9월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17. 9월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별로 6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포함)가 활동 중이다.

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한 해 총 36억 1,914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60개 센터는 피해자 상담 84,752건, 경제·의료 지원 18,476건, 신변보호 604건, 기타 15,788건 등 총 119,620건의 각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 표 2-82 | 최근 3년간(2019 ~ 2021) 지원실적

(단위 : 건)

연 도	합 계	상 담	경제·의료지원	신변보호	기 타
2019	117,896	82,569	17,313	485	17,529
2020	122,121	85,464	18,416	526	17,715
2021	119,620	84,752	18,476	604	15,788

2)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 지역사회에서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자조모임 및 자체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당 지역사회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수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총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고, 향후에도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109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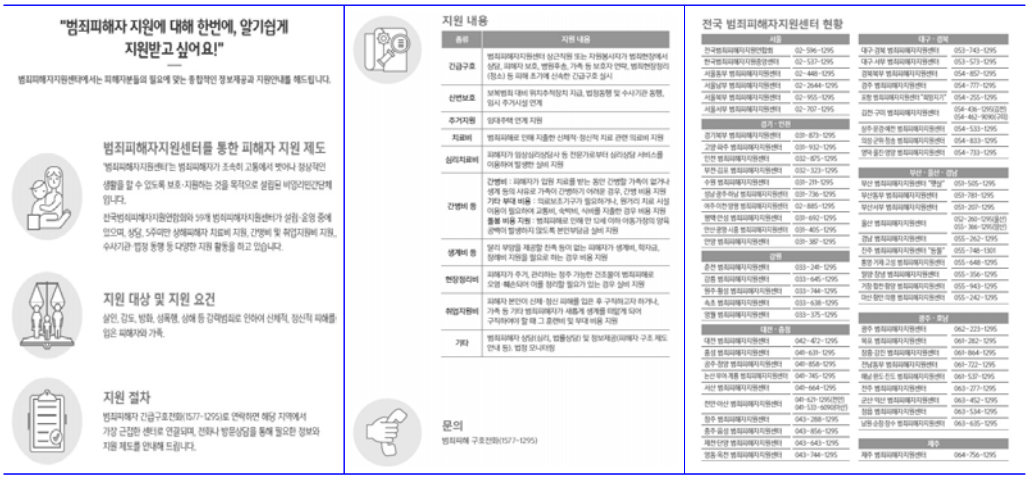

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대국민 홍보 강화

● 인권구조과 주무관 윤형식

1) 제8회 다링안심캠페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고통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무관심과 보호·지원의 소홀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신변위협 등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입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1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여덟 번째 다링안심캠페인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본 행사는 2014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범죄피해자와 가족,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와 일반 시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하는 범국민적 행사이다. 다만, 2021년 행사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6월 한 달간 「방구석 탈출 다링」을 부제로 하여 '너와 나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자'는 구호를 웹·모바일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전파하고, 참가자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와 더불어 새롭게 「자체 비대면 걷기, 워크온 어플리케이션」 홍보방법을 새롭게 도입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캠페인 기간 동안 웹·모바일 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하여 이벤트에 참여한 인원이 49,322명으로써 전년(7,380명) 대비 41,942명이 증가하였고, 인스타그램 계정 공유 인원만 1,617명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상시 접근 및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향후, 법무부는 온라인 캠페인의 장점을 적극 살려 관련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 그림 2-110 | 제8회 다링안심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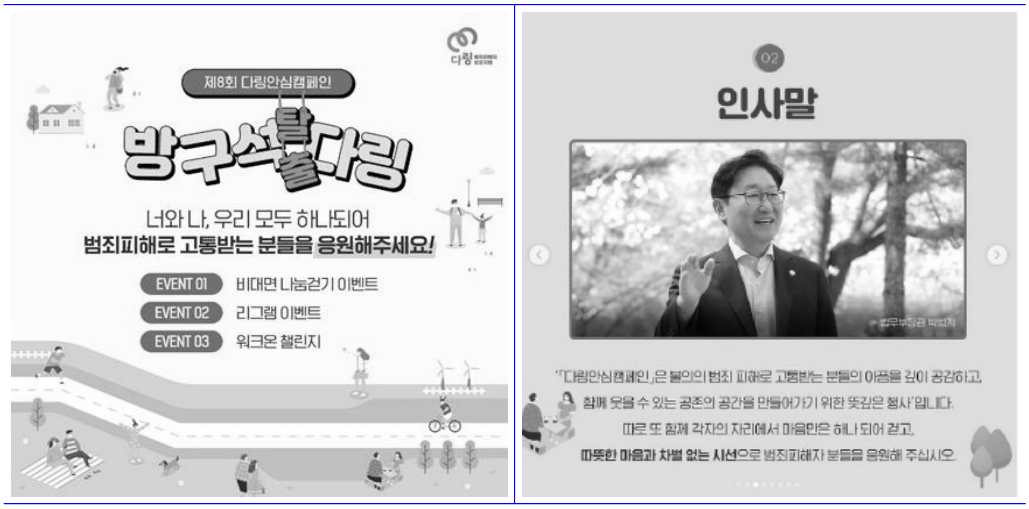

2)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 및 관심 제고, 범죄피해자 지원 관계자에 대한 사기 진작과 피해자의 참여와 소통의 기회 마련을 위해 2021. 11. 30.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2008년 '1985. 11. 29. UN의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을 기념하여 처음 개최된 후 14회째를 맞는 행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피해자 및 가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 등 99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이바지한 7명에게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2명) 및 국무총리표창(4명)이 전수되었고, 특히 국민포장은 경주 지역 범죄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한 (사)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정우 고문에게 수여되었다.

특히, 영화배우 이제훈과 그룹 '블락비' 멤버 가수 재효가 (사)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홍보대사로서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고, (사)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및 종사자로 구성된 공연팀의 공연 및 토크콘서트 등 소통의 시간을 통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으며, 행사 최초로 '법TV(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중계방송을 통해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오늘의 미소가 내일의 희망이기에 앞으로도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고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를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지속적으로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다.

| 그림 2-111 | 제14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국민포장 전수



기념촬영

3) 홍보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법무부는 전년도에 이어 2021년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광고(공익영상)를 제작하여 국민생활 밀착형 홍보 매체를 통해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였다.

2021년 연간 네이버·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키워드 검색광고」를 진행하였고, 상반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책자 및 리플릿 배포, 전국 1,000여개 병·의원 키오스크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KTX, SRT 및 서울역 전광판 공익영상 광고'를 추진함으로써 연간 균형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 그림 2-112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키오스크 광고 디자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공익영상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의미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

인권구조과 주무관 문성우

우리 헌법은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2010. 5월 연간 1조 5천억 원이 넘는 벌금의 4%를 주요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2011. 1월)하였다. 이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2013. 1월)하여 집행된 벌금의 5%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개정(2015. 1월)하여 벌금의 6%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였으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2021. 1월)하여 집행된 벌금의 8%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등

안정적인 기금재원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1년도 기금 편성 현황은 〈표 2-83〉과 같다.

| 표 2-83 | 2021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액	총액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8,013	36,202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5,122	
	범죄피해자구조금	11,650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1,417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106	40,341
	성폭력 피해자 지원	32,366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6,869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8,736	28,736
총 계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105,279	

※ 여유자금 및 기금관리비 제외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가. 소외계층에 대한 능동적 법률구조 지향

●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지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사건 증가와 법률구조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격차 발생 등에 따라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적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정부정책에 따른 법률보호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차원에서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법률서비스 문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의 법률구조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무변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75개 지역에 공단 지소를 설치하였다.

공단은 민사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확대·강화하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차상위계층과 경찰·소방공무원으로 확대하였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0. 1월부터 불법사금융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사업과 '21. 5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새로 실시하였으며, 구체적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4 | 민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확대·강화 추진 실적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건	실시 시기	법률구조사업 실적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 지원	2018. 1. 1.	9,896건, 261,158백만 원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 지원	2018. 9. 1.	71건, 2,624백만 원
불법사금융피해자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사업 실시	2020. 1. 28.	채무자대리인선임 5,640건, 소송구조 52건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법률구조사업 실시	2021. 5. 10.	37건, 6,465백만 원

3) 평가 및 발전방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규범개정과 업무협약 등을 통한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대 및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진과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다.

나.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

●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지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여 금융소외자의 부채형 빈곤추락을 예방하고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200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7개 지부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위와 같은 전담팀 구성 후 각 7개 지부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과 연계하여 법률구조, 신용회복,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 맞춤형 One-Stop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였으며, 그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5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실적

지원확대 내용	시기	추진 실적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09. 1. 21.	센터 개소 이후 개인회생·파산사건 실적 (법률구조) 131,630건 (법률상담) 1,031,892건
대구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0. 6. 1.	
부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1. 5. 27.	
광주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2. 8. 27.	
대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3. 7. 23.	
수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4. 6. 5.	
울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4. 6. 12.	

한편, 공단은 법원 등과의 융합행정 구현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패스트 트랙[1] (Fast-Track) 제도를 실시(2014.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범 운영)하여 이용실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2021년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6 | 패스트 트랙 이용실적 증대 현황

구 분	'20년		'21년		증 감 률	
	개인회생(건)	파산(건)	개인회생(건)	파산(건)	개인회생(건)	파산(건)
실 적	229	3,188	201	3,491	△12.2	9.5

3) 평가 및 발전방향

공단은 2013. 5. 15. 법원, 채무조정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이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서울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 적용 후 2017.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전국 9개 지부로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패스트 트랙을 통한 소요기간 단축으로 금융소외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및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 결과 2021년 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종합만족도가 96.2점으로 평가되는 등 이용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1) 패스트트랙 : 법원·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한 법원 신청 절차의 간소화

다.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활성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지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05.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의 협약에 따라 체불임금 피해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시작하였고 2017. 4월부터는 다부처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개시로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법률구조를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9. 8월부터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등 6개 기관에 방문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신청사건을 접수받는 등 One-Stop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공단의 체불임금피해 근로자에 대한 최근 5년간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7 |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실적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명)	143,095	150,447	162,977	137,637	116,465
건수(건)	90,151	95,137	106,249	90,174	77,668
금액(천원)	965,727,546	983,438,918	1,118,822,106	1,009,918,012	830,382,985

| 표 2-88 |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건수	64,425	66,706	67,338	73,244	89,759	90,151	95,137	106,249	90,174	77,668

공단은 2017. 4. 24.부터 '다부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곧바로 제공받는 등 One-Stop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9. 8. 26.부터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업무지원(출장)하여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 제공하는 등 체불임금피해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였으며, 2020년 대비 실적 증감률은 구조인원 대비 15.4%, 구조건수 대비 13.9%, 구조금액 대비 17.8% 각 감소한 실적을 보였다. 이는 2021. 10월 개정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판결 없이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공단은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공단 지부 등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체불근로자들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임금체불근로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면 신속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체류의 적법성을 불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무료법률구조 혜택을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라.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 상담 실시 등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지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거주자나 수용시설의 수용자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공단에서는 2001년도부터 공단 지부나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44개 농어촌 지역을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강연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도부터는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등의 수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출장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서신, 인터넷, 전화, 원격화상상담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법률상담과 홈페이지에서의 법률정보 제공을 통하여 장애, 질병, 원거리 등의 사유로 공단에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공단의 최근 5년간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상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9 |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상담 현황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횟수	303	287	300	135	141
건수	1,251	1,151	2,267	696	684

마. 이동법률상담차량 운영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지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0. 7월부터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법률상담 및 조사, 사건접수까지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그림 2-113 | 이동법률상담





2) 추진내용과 성과

이동법률 상담버스 운영 이후 총 1,733개 지역을 방문하여 법률상담 17,884건, 법률구조 711건, 강연 349회를 실시함으로써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90 | 이동법률상담버스 연도별 사업실적

연 도	방문지역	법률상담(건)	소송대리 등(건)	강연(회)	수강인원(명)
2019	226	2,072	73	26	2,912
2020	95	609	33	6	560
2021	128	656	7	12	530

2021년의 경우 이동법률 상담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무변촌, 산업단지, 농·어촌, 산간벽지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에 참여하여 국민의 생활 현장에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였다.(이동신문고 19회, 법률상담 90건 실시)

3) 평가 및 발전방향

법률구조 수요자 편의를 위해 공단은 2014. 10월 이동법률 상담차량을 기존 1대에서 2대로 확대 운영하고, 2019. 8월 1대를 교체하여 무변촌, 산업단지, 농·어촌, 산간벽지, 도서 지역 등에 찾아가는 법률상담으로 법률구조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상담과정에서 소송 등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바로 법률구조와 연계함으로써 법률구조 수요자의 공단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공단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바.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법문화교육 실시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지항

1) 추진배경 및 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1. 6월 김천시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법문화교육센터를 개소하여 대한민국의 기본 법질서, 국적, 혼인과 상속, 기초질서 등에 관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문화교육센터 개소 이후 최근 5년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청소년 등 권리보호를 요하는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법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91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문화교육 추진실적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명)	3,193	3,361	4,273	2,347	3,615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 등)하에 코로나 발생률이 낮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나센터·지역아동센터·학교 등을 찾아가 학습자의 수요에 맞추어 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법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여 진로체험학습,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학교폭력예방교육 362회, 9,502명)

법교육 대상자를 다변화하여 노인·취업준비 및 자활 청년·농아인·재소자 등 법교육 기회가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 찾아가는 법교육을 추진하여 국민의 권리보호 및 법교육 대상자 다변화를 모색하였으며 2021년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92 | 법교육대상자 다변화 추진실적

구 분	노인	청년	농아인	재소자
추진노력 대상	괴산 노인복지관	인천 유유기지 등	광주 농아인협회	김천교도소
추진실적	84명	737명	27명	68명

3) 평가 및 발전방향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법문화교육은 다문화가족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고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청소년 등에 대한 법교육은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사.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지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사절차 등에서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하여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을 위해 2012. 3월부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법률구조를 시행하였고, 2013. 6월 형사법률구조 대상자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였으며, 2021. 6월에는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까지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또한 2013. 7월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력업무를 전담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6명을 채용하여 6개 지부에 배치하였고, 2014년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9명을 증원하였다. 2015.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아동 학대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까지 국선변호 업무를 확대 실시하고, 2015. 4월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6. 1월 국선전담변호사 2명을 증원하였고, 2019. 3월 국선전담변호사 4명, 2020. 4월 국선전담변호사 2명을 증원하여 2021. 12월 현재 전국 23명의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2. 3월부터 2021. 12월까지 총 77,474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건을 수행하였고 국선전담변호사의 연도별 추진실적은 〈표 2-93〉과 같다.

| 표 2-93 |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실적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구조건수	4,062	4,221	5,534	5,682	5,916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2021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절차 및 변호사 윤리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각 회당 2일간 총 4회 (제1차 : 135명, 제2차 : 94명, 제3차 : 122명, 제4차 : 126명)에서 477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지원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나아가 원스톱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피해자 특성에 맞는 상담을 위해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 주택임대차분쟁조정

●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지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정하는 서울중앙지부(2017. 5. 30.),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2017. 7. 1.) 등 총 6개 지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착을 위해 공단은 2017년부터 다음 〈표 2-94〉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0년 및 2021년 업무추진 실적은 다음 〈표 2-95〉와 같으며, 2021년 조정종결(미조정결정,각하,취하,이송 제외) 사건 중 조정성립 비율은 40. 8%를 달성하여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2021년 조정종결사건 중 조정성립 및 화해취하 비율은 85.6%

| 표 2-94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착 사업추진 실적

추 진 내 용	추진시기
• 2017년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예산 및 설치지부 확정	2016. 12월
• 개소를 위한 소관부서별 준비절차 이행 → 제 규범 정비, 상임위원 및 사무국 인력채용, 교육훈련, 홍보 등	2017. 3월 ~ 6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직원 워크샵 개최	2017. 11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관련 규범 재정비	2017. 12월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책자 발간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무부장관 방문 현장 간담회	2018. 5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업무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개설	2018. 6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강화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안내문구 삽입 → 시내버스 외벽 광고, 지하철 역사 내 포스터 게시 등	2018. 7 ~ 12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18. 6월,12월 2019. 4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범 정비관련 사무국장 간담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관련 규범 재정비	2020. 12월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건 업무처리 기준 시달 → 자동조정개시 도입에 따른 조정절차 처리, 수수료 면제 처리방법 등 시달	2021. 6월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강화 → 조정위원회 설치 전국 6개 지역에 버스 외부 래핑 광고를 통한 사업 홍보	2021. 7월 ~ 8월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실무 협의회 개최 → 성과 :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통일적인 분쟁조정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자료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2021. 8월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장 간담회 개최	2021. 11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관련 규범 재정비	2021. 9월, 12월

| 표 2-95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추진 실적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률		
	접수	조정처리	조정성립	접수	조정처리	조정성립	접수	조정처리	조정성립
실 적(건수)	1,536	1,373	238	1,635	1451	263	6.4 %	5.7 %	10.5%

※ 처리건수에 구수사건(전년도 이월 사건)제외

※ '20.12.1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동조정개시제도 도입에 따라 조정미개시 사건 없음

3) 평가 및 발전방향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지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국민 생계안정을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정하는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2019. 4. 17.) 등 총 6개 지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착을 위해 공단은 2021년 다음 〈표 2-96〉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0년 및 2021년 업무추진실적은 다음 〈표 2-97〉과 같으며, 2021년 조정종결(미조정결정,각하,취하,이송 제외) 사건 중 조정성립 비율은 39.3%를 달성하여 국민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2021년 조정종결사건 중 조정성립 및 화해취하비율은 81.5%

| 표 2-96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착 사업추진 실적

추 진 내 용	추진시기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TF 가동 → 개소를 위한 소관부서별 준비절차 이행(제규범 정비, 개소식 준비, 시스템 정비 등)	2019. 3 ~ 4월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업무프로그램 개발 및 홈페이지 개설	2019. 4월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 개시	2019. 4월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강화 → 서울시 희망광고를 통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 홍보 등	2019. 4 ~ 12월
• 서울보증보험과의 협약으로 임대차분쟁조정신청사건 수수료 무료 지원 → 권리금보호신용보험 및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무료 지원	2019. 9월
•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규범 재정비	2020. 12월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서울 제외) 공정임대료 시범실시 → 목적 : 상가건물 임대료에 대해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하여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	2021. 11월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 목적 :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차원의 대책 마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관련 규범 재정비	2021. 12월

| 표 2-97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추진 실적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률		
	접수	조정처리	조정성립	접수	조정처리	조정성립	접수	조정처리	조정성립
실 적(건수)	482	439	59	493	463	66	2.3%	5.5 %	11.9%

※ 처리건수에 구수사건(전년도 이월 사건)제외

※ '20.12.1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동조정개시제도 도입에 따라 조정미개시 사건 없음

3) 평가 및 발전방향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차.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인권구조과 사무관 차유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변호사 수의 양적 확대와 다양한 법률구조제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체계, 법률복지를 위한 전달체계 미비, 소송구조에 집중된 운영 등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주치의 개념의 '법률홈닥터' 사업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12년 20명의 변호사를 채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하였으며, 2014년 40명, 2017년 60명, 2018년 65명으로 확대하여 무변촌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들과 취약 계층에게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2-98 | 2021년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권역	배치기관(65개)
서울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13)
인천·경기	고양시 덕양구, 광명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광주시,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 강화군, 인천 미추홀구, 인천 서구,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15)
강원	삼척시,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태백시 (3)
충북	충북사회복지협의회(청주), 충주시 (2)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대전 동구,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6)
전북	익산시, 전주시, 전북사회복지협의회(전주) (3)
광주·전남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광주 서구, 순천시, 전남사회복지협의회(무안) (5)
대구·경북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경산시, 영주시, 포항시, 구미시 (8)
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 부산 남구, 부산 사상구, 부산 수영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9)
제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1)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률홈닥터는 소송 이전의 1차적 무료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구조 인프라와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서민들 가까이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력기관과 연계함으로써 법률복지에 있어 모세관과 같은 네트워크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그림 2-114 | 법률홈닥터 업무 처리절차 및 조력기관 연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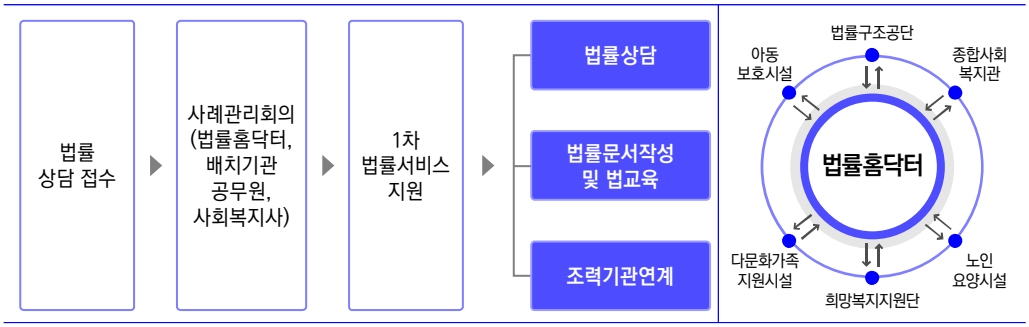

법률홈닥터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면서 각 지역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취약계층이 직면한 다양한 법률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지원하였다.

전국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률홈닥터간 법률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 17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및 161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법률홈닥터 제도 홍보 강화를 위해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을 제작·발간하여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서, 노인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고,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는 포스터·리플릿·동영상을 배포하였다. 또한, 홍보 방법을 다각화하여 생활밀착형 매체(지하철 전자종합게시판, 버스 배너) 및 인터넷 매체(검색 포털 배너) 등을 활용한 홍보도 추진하였다.

| 그림 2-115 | 법률홈닥터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홍보동영상







2021년 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상담, 법교육, 유관기관 연계, 법률문서 작성 등 법률서비스 제공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상담, 법교육 등 대면서비스 제공의 제약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한 41,500건이었으며, 법률홈닥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87.8점으로 '만족'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표 2-99 | 법률홈닥터 지원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실적	11,792	17,611	28,563	37,663	39,361	55,439	59,201	56,145	47,172	41,500

* 지원실적 : 법률상담, 법교육, 유관기관 연계, 법률문서 작성

3) 평가 및 발전방향

그동안 법률홈닥터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가까이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이와 함께 법률홈닥터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법률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법률복지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2-116 | 법률홈닥터 도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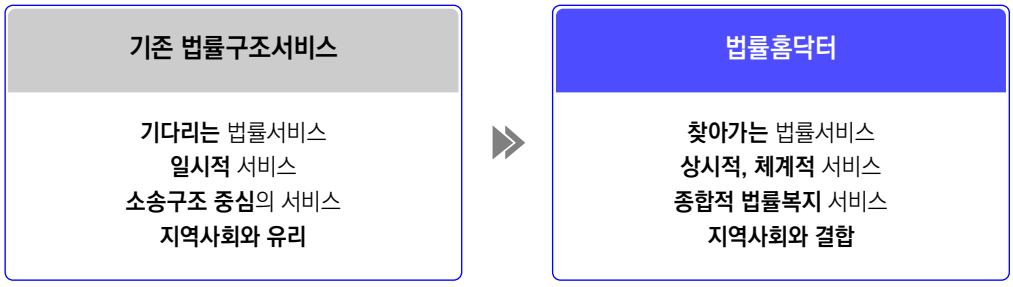

2022년에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률홈닥터 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법률복지 전담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4.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인권구조과 서기관 김건수

가. 추진배경

형사절차상 초동수사 단계에 수사의 방향이 결정되므로 초동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국선변호 제도 아래에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를 제공받을 수 있어, 피의자신문을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 등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입법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도 2011년 양천경찰서 고문사건(강·절도 피의자 22명에 대한 소위 '날개꺾기 고문'), 2017 ~ 2018년 광주지방경찰청 불법체포사건(마약던지기 수법 알고도 불법체포)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화하고,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로 인한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변호제도를 수사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내용

법무부는 2021년 7월 기존 국선변호 대상(구속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적부심)이 되는 피의자 외에도 체포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에게까지 국선변호 제도를 확대하고, 형사공공변호인 운영주체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인 형사공공변호공단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표 2-100 | 법안 주요 내용

법안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 **(대상범위)**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중죄 피의자 중 ①미성년자 ②70세 이상 또는 농아자 ③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선정 절차)** ① 필요적 국선의 경우, 수사기관이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체포할 경우 형사공공변호공단에 통지, 공단이 국선변호인 선정하고, ② 신청에 의한 국선의 경우, 피의자가 형사변호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이 경제적 요건 등을 심사 후 선정 • **(활동기한)** 형사공공변호인은 ①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시, ②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확정 시 ③ 피의자가 구속영장 청구 또는 체포구속적부심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 받겠다는 의사 통지 시 ④ 피의자가 별도로 변호인 선임 시까지 활동 **【법률구조법】** • **(운영방식)** ① 형사공공변호공단은 국선변호인 명부작성 및 평가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② 이사회 이사는 법원·법무부·대한변협이 각 3인, 학계에서 2인 추천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로 이사 중에서 선출 • **(비용부담)** 형사공공변호인의 조력에 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의자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받거나 그밖의 착오 등으로 선정 받은 경우 등에는 피의자로부터 비용을 환수 • **(기 타)** 형사공공변호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① 이사의 임기 및 연임, ② 이사의 직무상 독립, ③ 이사 해임시 법원, 대한변협의 사전 의견 청취 등 규정

이에 법원, 대한변협 등 일각에서는 검찰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무부가 제도 운영의 주체가 될 경우 독립성·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공공변호공단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아울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지원 제도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사법지원 일원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공공변호공단은 변호사 명부 작성, 선정 등 행정절차를 담당할 뿐 국선변호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공단의 운영 역시 법원·대한변협·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법무부는 오랜기간 법률구조법인을 관리·감독하는 등 법률구조 영역에서 전문성이 있으므로 형사공공변호 업무의 주무부처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법지원 일원화와 관련하여는 추진방향에 대한 유관부처 등의 의견이 다양하므로 전면 추진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마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여 안착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이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 기대효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이 사건에 관여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의자를 조력함으로써,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어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다 실질화 될 것이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은 수사 기관이 고문 등 위법한 수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수사 절차상 위법 논란이 사전에 예방되고,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5.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인권조사과 검사 강명훈

가. 인권침해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화상조사시스템 강화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원거리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0년부터 인권침해신고센터와 각 수용시설에 네트워크 연결망 및 화상모니터를 설치하여 조사관과 수용자 사이에 1:1 원격 화상면담이 가능하도록 한 원격조사시스템인 화상조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 구금·보호시설에 관련 장비를 설치 중에 있고, 2021년에 2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현재 법무부 인권국(2대)과 총 57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그림 2-117 | 화상조사시스템 활용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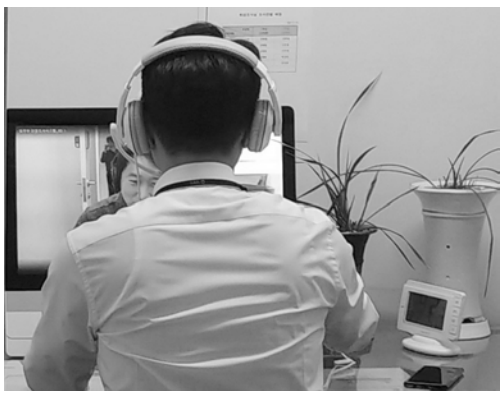

2)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화상조사시스템을 통해 조사관은 기존에 서면 또는 출장조사만으로 수용자의 진정내용을 파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 접수 시 신속하게 화상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수용자와 마주 보고 수용자의 목소리를 통해 진정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수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화상조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면전진정제도를 통해, 수용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면전진정 신청서'만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법무행정에 대한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진정 등의 경우에는 조사관의 상세한 설명이나 안내만으로 진정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도 상당하였다.

| 표 2-101 | 연도별 화상조사 실적

(단위 : 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적	125	189	358	354	462	602	567	559	918	742

2021년까지 법무부 소속 전국 교정시설 53개소와 소망교도소(민영), 국립법무병원(구 공주치료감호소), 국립부곡법무병원, 제주소년원 등 57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소년보호시설에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나. 충실하고 적정한 인권침해사건 처리

2021년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은 총 4,062건으로, 그 중 진정사건은 3,984건(전화 8건, 우편 2,670건, 인터넷 200건, 팩스 1,105건, 방문 1건), 인지사건은 78건이다. 2021년 4,030건을 처리(인용 및 구제 84건, 이첩 1,557건, 각하 1,973건, 기각 416건) 하였다.

또한, 접수된 진정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사건 발생 시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보호장비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방안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외국인 보호 절차에서의 적법절차 강화 방안 및 외국인보호소의 실질적인 보호시설로의 전환 방안 등 개선방안까지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공동으로 언론브리핑을 실시하여 외국인보호소 개선 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구금·보호시설 감독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감독을 통해 법무행정 과정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2006년부터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인 교도소·구치소, 외국인보호소, 검찰청 구치감, 소년원 등의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021년에는 광주교도소 등 총 19개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 대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접적인 인권실태 점검을 통해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고, 수용자(피보호자 포함, 이하 같음) 설문조사(2021년 781명), 개별면담(2021년 164명)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표 2-102 | 2021년 인권실태 점검현황

(단위 : 회)

점검기관	교정시설	검찰청 구치감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시설	합계
횟수	4	4	4	7	19

특히 2021년에는 종래 대상기관의 인권상황 전반을 일반적으로 점검하던 정기 실태조사 이외에, 인권 사각지대에 있거나 인권향상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다수기관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점검하여 제도개선안을 도출하는 방식의 '주제별·집중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소년보호기관의 의료처우 실태'를 제1차 주제로 선정하고,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와 협업하여 서울소년원 등 6개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방문점검(의무과장 5명 등 직원 60명, 보호소년 525명 설문조사 및 158명 직접 면담조사, 의무과 시설 및 의료장비 등 점검)을 실시하였고, 간호사 정원 확대, 의무과장 결원 해소(여성 의무과장 적극 배치), 의료장비 관련 규정 마련, 의료장비 개선 및 현대화, 외부진료 감호 전담 인력 배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연계 추진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권고한 후, 개선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라.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2021년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훈련, 검사·검찰수사관 대상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등 기존에 실시해오던 인권교육

프로그램 외에 시설 내 수용자·보호청소년과 대면하여 수시로 상담요청을 받는 교정·보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심리상담 교육과정', 내부인권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인권강사 역량강화 과정'을 신설하는 등 직렬별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존에 시행해오던 인권교육 전반을 진단·분석하고, 교육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신규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인권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 표 2-103 | 2021년 인권교육 현황

(단위 : 회)

교육 기관	찾아가는 인권교육			인권일반 교육				인권동영상 교육(교정)	기타	합계
	교정	보호	출입국	검찰	교정	출입국	군검사			
횟수	6	4	1	4	2	3	11	4	11	46
인원	128명	75명	15명	81명	166명	36명	103명	81명	475명	1,160명

마. 인권보호 평가 및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

2007. 8.부터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평가를 실시하였고, 2011년 하반기부터 인권보호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내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인권보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에 대한 인권보호 평가를 실시하여 검찰 8개 기관, 교정 8개 기관, 범죄예방 10개 기관, 출입국 3개 기관 등 총 29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 업무과정에서 정성과 배려를 다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격려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 10.)에 즈음하여 우수인권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2021년에는 검찰 6명, 교정 4명, 범죄예방 2명, 출입국 2명 등 총 14명을 우수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하였고, 인권침해사건 처리와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이 큰 조사관과 충실하고 성실한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증진의 공이 큰 내부 강사를 격려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 2명(조사 1명, 인권교육 1명)을 선정하고 표창하였다.

바. 기타 인권침해 예방 및 제도개선 노력

1) 전국 교정시설 수용처우 관련 수용자 전수조사 실시(교정혁신추진단과 협업, 약 5만 1천명 수용자 전수조사) 및 개선안 마련

교정본부와 함께 수용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익명 설문조사 실시['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만델라 규칙)'을 바탕으로 우리 교정행정에 맞게 설문 구성]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수용시설·운동·의료처우·급양·보호시설·작업 및 직업훈련·청원 처리 절차 개선, 외부교통권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였다.

2)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 구성, 운영, 개선안 마련 등

노역장 유치집행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노역수형자 사망 사고 방지를 위한 단계(수사·공판 단계,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단계, 노역장 유치 단계, 출소 등 석방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권고(검찰국,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권고안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인권국은 매 3개월 도과 시마다 중간 점검 실시)하였다.

3) 검찰 인권감독관 제도 개선을 위한 인권국 내부 TF

검찰 인권감독관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인권감독관 명칭 및 지위 변경(기존의 인권감독관을 '인권보호관'으로 격상), 인권감독관 업무 및 권한 확대·강화, 검찰 인권업무 전담조직 강화(인권보호관을 고·지검 및 차치지청 전체로 확대 배치) 등 인권감독관의 역할 및 위상 강화 방안을 마련·권고하였다.

6.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아동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상 지원 강화

●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조병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2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도입하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중 아동, 장애인과 수사기관, 법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도 양질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근 진술조력인 1명을 인천 권역에 1명 추가 배치(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였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예산을 2020년 대비 약 7억 원 증액하였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지원하게 되었고, 2021년 6월부터 장애인학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지원하게 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인식 변화로 2021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전년 대비 47.8% 증가한 38,446건을 지원하였고, 진술조력인은 전년 대비 55.9% 증가한 4,184건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 표 2-104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피해자 국선변호사	8,084	13,363	16,106	19,336	19,903	22,755	25,487	26,007	38,446
진술조력인	-	386	727	1,203	1,381	1,722	2,226	2,684	4,184
합계	8,084	13,749	16,833	20,539	21,284	24,477	27,713	28,691	42,630

3) 평가 및 발전방향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상근 진술조력인을 지속적으로 추가 배치할 예정[1]이다. 특히 2021년 6월부터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2022년 1월부터는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 진술조력인이 지원됨에 따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수사기관, 유관기관 대상 제도 활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 2022년 전국 권역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2명, 상근 진술조력인 2명 추가 배치 계획

나. 장애인차별시정명령 활성화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조병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008. 4. 1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무부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차별로 인한 '침해의 심각성', '공익의 중대성' 가중요건을 삭제하고, 국가인권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정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2021년 6월부터 시행하였고, 그 결과 2020년까지는 총 18회의 심의를 수행하여 총 2회 시정명령을 발하였는데 2021년에는 총 3회의 심의를 수행하여 총 4회 시정명령을 발하는 등 시정명령이 활성화되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은 '장애'라고 하는 하나의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등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시정명령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점을 검토·반영하는 등 시정명령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여성아동인권과 주무관 엄재성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미등록 특성상 실태조사가 어려워 정확한 수조차 알 수 없으므로, 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아동 인구에 대한 기본 정보 취득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가칭)」 초안을 마련하였고 관련 시민단체 및 법무부 내의 유관 부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을 추진 중이다.

2) 향후 추진계획

2022년 연내에 입법이 되도록 추진 중이며, 출생등록이 누락 없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출생통보제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7.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관 차현지

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2016. 9. 4. 시행, 2016. 3. 3. 제정)에 따라 2016. 10. 11. 개소하여,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하고 기록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 자료 등을 3개월마다 이관받아 보존·관리한다.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가 기록·보존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하여 북한 내 인권침해행위를 간접 억제하고, 향후 통일 단계에서 가해자 처벌, 공직자 재임용 심사, 피해자 보상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2017. 4월부터 현재(2021.12.31.)까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받은 북한인권 관련 자료는 총 2,026건으로, 이에 대한 분석을 100% 완료한 후 가해자 인명카드 등 사건 카드를 서고 및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에 저장 후 보존·관리하고 있다.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화상세미나를 2회 개최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였으며, 서울유엔인권사무소와 〈인권모니터링에서의 검증 및 분석〉을 주제로 화상세미나를 진행하여 북한인권기록의 신뢰성·신빙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은 2021 공공데이터 품질진단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값 진단 오류 데이터에 대해 도메인을 기준으로 3개의 개선과제를 수립하고 오류 개선을 완료하는 등 오류 데이터를 최소화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였다.

| 표 2-105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자료 이관 현황

이관시기	2017(3회)	2018(4회)	2019(4회)	2020(4회)	2021(4회)	합계
건 수	355	457	700	411	103	2,026

2) 평가 및 발전방향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수가 급감*함에 따라 통일부 이관자료의 양 또한 영향을 받았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이에 신규 이관자료의 분석·보존·관리와 함께 기존 자료의 고도화를 통해 자료적 가치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의 분석·관리 역량을 강화하였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기록의 증거가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자료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북한인권기록의 신뢰성·신빙성 강화를 위한 검증절차에서 활용 가능한 서브 자료의 축적을 목적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 내 디지털아카이브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및 연구 및 학술활동을 강화하여 향후 다각도의 자료 활용 방안에 대비하는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하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통일부 집계기준 입국인원 '19. 1,047명, '20. 229명, '21. 63명(잠정)

제8절 교정업무

1.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

가. 친사회적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생방송 시간 확대

사회복귀과 교정관 김세정

1) 추진배경

수용자들은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된 이후 접견, 직업훈련, 교화프로그램 등 처우가 제한되어 외부와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거실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게 되었다.

미디어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수용자의 정서안정 유도와 교양습득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TV 시청 시간을 연장하고, 급변하는 사회 상황을 보여주고 대내외 주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장르를 편성하고 있는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 운영 시간을 확대 편성하였다.

2) 추진경과

2019. 12. 9. 저녁 시간(18:00 ~ 21:00) KBS1, MBC, SBS 채널의 생방송을 시작으로, 2020. 8. 1. 공휴일 전면 생방송(09:00 ~ 21:00)을 실시하였다.

2021. 5월 인권 친화적 교정행정 개선과 관련하여 실시한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처우 관련 설문조사 결과 TV 방송시간 및 생방송 확대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어 2021. 9. 6. 교화방송 개편과 함께 시청시간 2시간 연장과 생방송 편성 시간 4시간을 연장하여 교화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 표 2-106 | 교화방송 운영시간

구 분	일반채널 (KBS1,MBC)	교육채널 (SBS)	생방송	자체제작 방송	라디오채널
평 일	09:30 ~ 21:00		09:30 ~ 12:00 13:00 ~ 16:00 18:00 ~ 21:00	16:00 ~ 18:00 (2시간)	07:00 ~ 08:00 12:00 ~ 13:00 21:00 ~ 21:05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21:00			없음	없음

3) 성과 및 기대효과

교화방송은 수용자가 일과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 필수적인 외부환경 접촉 매체 중 하나로서 생방송 편성 확대는 뉴스 등을 통해 최신 정보 습득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장르(교육, 교화,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정서안정과 심성 순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사회와 유사한 교화방송의 지상파 채널 운영은 사회와의 단절이 아닌 시설 내에서 사회 내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연결 역할을 하여 수용자의 궁극적인 목적인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 천안개방교도소 기능 전환

교정혁신추진단 서기관 허영열

1) 추진배경

교정본부는 전국 교정기관 여성수용자의 심각한 과밀상태를 해소하고 시설적 제한 등으로 소외되었던 여성수용자의 처우 강화를 위해 천안개방교도소를 여성수형자 개방시설로의 기능 전환을 추진 중이다.

2) 추진경과 및 내용

유아양육생활관 운영, 전 수용자 침대 사용, 자유로운 분위기의 거실환경 조성 등을 통해 여성친화적 시설을 마련하고, 자율 보행 및 자율 출·퇴근, 수형자 자치제 등을 실시하여 수형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주말 귀휴·외출, 사회봉사·견학, 외부 종교행사 참석, 사회 내 직업훈련 참가 등으로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시킬 계획이다.

| 표 2-107 | 천안개방교도소 기능전환 세부 이행 계획

추진일자		주요 추진 내용
2021	9월	• 기본계획 수립, 천안개방교도소 수형자 이송
	10월	• 세부 이행 계획 수립, 시설개선 설계 착수
	11월	• 천안개방교도소 직원 및 대체복무요원 전보
		• 천안개방교도소 잔류 수형자 이송
		• 시설 개선
2022	2월	• 수용정원 240명 기준 여성 수형자 선발
	3월	• 여직원 전입, 여성수용자 이입 및 본격 운영

2) 향후 추진계획

여성수용자의 과밀 완화 및 실질적 개방처우를 확대하고 특화된 개방처우 프로그램 운영, 사회와 가장 유사한 환경 제공 등으로 여성수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다.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설치

교정기획과 교정관 권혁규

1) 추진배경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 집단감염으로 교정시설 방역 및 의료대응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고, 지역사회 감염 우려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고조되었다.

또한 법무부 교정본부 내 감염병 관리에 관한 컨트롤 타워 부재는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구조적 환경과 결합하여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켜 효과적인 관리 전담조직 및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추진경과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자 2021. 5월 법무부차관 직속으로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운영하며 단장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고위공무원단)이 겸임을 하고, 긴급대응 반장(4급) 이하 총 7명을 배치해 확진자 발생 규모별 전략적 대응과 취약 부분에 대한 핀셋 대응, 긴급현장 지원, 직원 및 수용자 백신접종·PCR검사 등 방역업무의 컨트롤 타워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신입수용자 입소 절차를 강화하여 1차 PCR검사와 14일 격리 수용 및 격리해제 전 2차 PCR검사 결과를 통해 외부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최대한 통제·관리하여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그림 2-118 |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현장대응





3) 향후 추진계획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등 향후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신입수용자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확진 수용자에 대한 단계별 자체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발생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증축

복지과 시설사무관 손영조

1) 추진배경

2012년 이후 급격한 수용인원 증가와 과밀수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출소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 확인'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함에 따라 교정본부는 2023년 말까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2016. 12. 29 결정 -	국가는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 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을 촉구한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교정본부는 2021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499억 원을 편성하여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2021년 예산 20,595백만 원) 등 아래의 사업을 추진하여 과밀 수용 해소에 기여하였다.

| 표 2-108 | 2021년 국유기금 사업 현황(예산편성 기준)

구 분	기 관 명	사업기간		시설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21예산 (백만원)	비 고
				부지	건물			
이전	원 주 교 도 소	'14	'25	190,510	41,789	156,433	9,192 (공사비 등)	설계
	창 원 교 도 소	'18	'23	215,844	45,817	129,089	5,292 (공사비 등)	설계
신축	거 창 구 치 소	'15	'22	160,818	19,844	91,275	20,595 (공사비 등)	공사
	경 기 북 부 구 치 소	'20	'25	116,000	38,524	115,262	1,146 (설계비)	설계
	화 성 여 자 교 도 소	'20	'25	41,930	19,833	60,002	1,191 (설계비)	설계
수용동 증축	천 안 교 도 소	'20	'22	부지 내	1,800	5,318	5,081 (공사비)	공사
	목 포 교 도 소	'20	'22	〃	1,513	4,474	4,274 (공사비)	공사
	울 산 구 치 소	'21	'23	〃	2,000	5,909	263 (설계비)	설계
	제 주 교 도 소	'21	'23	〃	2,000	5,909	263 (설계비)	부지검토

또한, 과밀해소 사업을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를 별도로 확보하여 청주교도소 및 군산교도소 등 3개 기관의 수용동 내 노후·유휴공간에 리모델링(증축 포함)을 시행하여 수용정원 84명을 확대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 그림 2-119 | 교정시설 신·증축 현황



거창구치소 신축(공정율 48%)



화성여자교도소 신축(신규)



청주교도소 수용동 증축



군산교도소 수용동 증축(여성)

3) 향후 추진계획

교정본부는 수도권과 대도시 그리고 여성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신·증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백교도소 신축(수용정원 1,500명) 등을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래와 같다.

| 표 2-109 | 교정시설 신·증축 사업계획

구 분	기 관 명	사업기간		시설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22예산 (백만원)	비 고
				부지	건물			
이전	전주교도소	'12	'23	198,348	54,545	156,433	9,192	설계
	대전교도소	'22	'27	546,178	76,320	224,274	-	협의
신축	태백교도소	'22	'28	444,187	59,560	194,309	400	설계
	남원교도소	'22	'27	150,600	21,185	72,936	1,177	설계
	대전구치소	'22	'27	364,119	42,350	126,170	-	협의
	광주구치소	'23	'28	156,000	36,686	119,300	-	협의
수용동 증축	울산구치소	'21	'23	부지내 증축	2,000	5,909	5,646	공사
	제주교도소	'21	'23	〃	2,000	5,909	5,646	설계
	진주교도소	'22	'24	〃	1,800	5,199	257	설계
	군산교도소	'22	'24	〃	1,800	5,456	257	설계

또한, 교정본부는 2022년도에 인천·밀양(구), 순천(교)·논산(지)·서산(지) 등 구내 유휴부지를 이용한 수용동 증·개축(일반회계 사업)을 통해 수용환경 개선 및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목표로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2. 국민 중심 교정행정 서비스 제공

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행사 기술 지원

사회복귀과 교정관 김세정

1) 추진배경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비대면 활동이 확대되면서 유튜브 생중계 서비스와 줌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의 활동이 콘텐츠 이용의 주된 운영 방식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교화방송센터 역시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한 실시간 중계방송 및 화상회의 방식과 연계한 온택트 워크숍 개최를 기술 지원하여 교정의 대·내외적 홍보에 기여하였다.

2) 추진경과

2021. 8. 18.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한 교정 온택트 워크숍을 개최하여 직원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교정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 등을 실시간 채팅을 통해 들어보았다.

2021. 10. 28.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생중계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함과 동시에 유튜브를 이용한 생중계로 국민과 직접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 그림 2-120 | 온라인으로 진행된 온택트 워크숍과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3) 성과 및 기대효과

유튜브를 활용한 생중계 서비스와 온택트 워크숍과 같은 양방향 화상회의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수용자 가족이나 일반 국민이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양방향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폐쇄적 문화를 극복하고 직원 간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정행정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교정 온택트(ontact)워크숍 개최

교정혁신추진단 교정관 강홍석

1) 추진배경

코로나19 상황의 비대면 시대에 미디어를 활용하여 박범계 장관, 유병철 본부장과 교정본부 직원들과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대·내외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 토론으로 교정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교정 온택트(Ontact)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 추진내용

2021. 8. 18.과 9. 13.에 진행된 두 차례의 워크숍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회의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기획되었으며, 참여 직원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정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교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교정본부 직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활발한 논의를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그림2-121 |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 (박범계 법무부장관 및 유병철 교정본부장)





3) 평가 및 향후계획

직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온택트(Ontact) 워크숍을 일선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소통을 활성화하고 향후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제 선정, 참여 인원 다양화 등을 할 예정이다.

다. 수용자 미성년 자녀 지원 강화

사회복귀과 교정관 김도균

1) 추진배경

교정본부는 2018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체계 구축방안」을 통해 부모의 수용생활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엄마의 목소리' 등 수용자 자녀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부모의 범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추진경과

2019. 4월에는 교정정보시스템인 보라미시스템을 통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관리를 시행하여 미성년 자녀 보호방안 시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9. 10. 24. 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2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하여 수용자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다.

2020. 6월에는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를 발족하였고,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정례적 현황조사' 시행, '토요 아동접견의 날' 시행 등 미성년 자녀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교정위원, 직원회, 교화법인 등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수용자 미성년자에 대해 장학지원, 생계비지원, 학업지원, 상담·멘토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엄마의 수용생활로 단절될 수 있는 엄마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엄마의 부재에서 오는 자녀의 상실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 8월 여성수용자가 자녀를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는 목소리를 녹음하여 자녀에게 전달하는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2021년 12월까지 116명의 수용자가 356회 참여하였다.

| 표 2-110 | 2021년 미성년 자녀 지원 실적

지원내용	장학금	생계비 등	상담·멘토링
지원실적	2억946만원	2억4,379만원	382명

한편, 수용자 자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 9월부터 직원, 외부 지원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서울지방교정청에 구성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같은 해 12월까지 28가구 48명의 자녀에게 정부지원연계, 긴급 후원물품, 장학금 등을 지원하였다.

3) 평가 및 향후계획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의 현황관리 및 정례적 현황조사, 아동을 위한 온라인 접견의 확대 등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엄마의 목소리와 같은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및 가족관계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부모의 수용생활로 인해 단절될 수 있는 자녀와 부모의 유대관계가 유지·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전국 지방교정청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수용으로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 대체복무제의 안정적 정착

교정기획과 교정관 김봉영

1) 추진배경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 복무를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2020. 1. 1.)이 제정되어 2020. 10. 26.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대체복무요원은 소집과 동시에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하여 3주간 신규교육을 받고, 교육수료 후 복무기관(교정기관)에서 복무하게 된다. 2020. 10월 첫 소집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548명을 소집하여, 현재 13개 복무기관에서 648명이 복무하고 있다.

| 표 2-111 | 대체복무요원 소집·교육 현황(2021년)

(단위: 명)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548	54	48	46	40	86	45	38	46	43	48	54

교정본부는 2020년부터 대체복무 생활관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0개 교정기관에서 옛 경비교도대 생활관을 리모델링하여 대체복무 생활관을 구축하였다.

생활관에는 휴게실,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등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쾌적한 복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그림 2-122 | 대체복무제의 안정적 정착



대체복무 생활관 생활실(천안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 휴게실(군산교도소)

시설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계·시민단체·병역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상·하반기에 각각 개최하여 합리적인 대체복무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을 개정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3) 향후계획

2022년도에는 신규 대체복무요원 403명을 소집·교육하여 8개 교정기관에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며, 향후 2023년까지 32개 복무기관(교정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하반기에는 강원도 영월에 대체복무 교육센터가 완공된다. 현재는 대전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을 임시 교육센터로 활용하고 있지만, 정식 교육센터가 완공되면 더욱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대체복무요원이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미래를 지향하는 교정행정 구현

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원격영상재판 시행

보안과 교정관 이형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및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수용자의 법원 출석을 최소화하는 영상재판 도입을 검토하였고, 원격영상재판의 활성화로 원거리 법정에 출석하는 수용자의 인권 증진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마련하였다.

2020. 8월부터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정기관과 법원 간 영상재판 도입을 추진하였다.

제1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2021. 4월에 각급 법원 재판부별 '영상 법정'을 개설하였고, 서울구치소 및 서울남부교도소와 법원행정처 간 영상법정 테스트를 거쳐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 관련 설비를 구축하였다.

| 그림 2-123 | 영상재판 도입



교정기관 과 대법원 간 모의 영상재판 진행



교정기관 영상재판실

2) 향후 추진계획

교정본부는 '21. 11. 18. 전국 교정기관과 법원 간 영상재판 전면 시행을 계기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수용자의 인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또한 영상재판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보안과 교정관 유동윤

1) 추진배경

지난 2003년 구축된 교정정보시스템은 약 15년 이상 큰 변화 없이 기존 시스템의 개선 작업을 통해 사용되어왔다.

이에 노후화 문제로 인한 각종 오류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게 되어, 내·외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면 개편을 하였다. 교정본부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적용하여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고, 총사업비 312억 원을 투입하여 3개년 계획(총 3차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①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개발·도입(1차 사업), ②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구축(2차 사업), ③ 지능형 계호시스템 구축 (3차 사업) 등을 핵심 목표로 하여 총 3차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1·2차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사업】(2020. 3. ~ 2021. 5.)
-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개발·도입
- 다기능 민원 단말기(KIOSK) 개발 및 시범운영

【2차 사업】(2021. 6. ~ 2022. 2.)
-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 다기능 민원 단말기(KIOSK) 전국 교정기관 확대 구축
- 급양 및 차량관리 시스템 구축

3) 향후 추진계획

2022년에는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사업을 완료하고 교정기관에서 시범운영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5월부터는 지능형 계호시스템 구축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용관리 등을 목표로 하는 3차 사업을 진행하여, 2020년부터 시작되어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 그림 2-124 |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1차 사업 관련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성(안)



교정정보시스템 메인화면



교정정보시스템 업무화면

| 그림 2-125 |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2차 사업 관련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메인화면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업무화면



모바일 수용생활기록부



다기능 민원 단말기(KIOSK)

다. Post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활성화

● 의료과 교정관 최장훈

1) 추진배경

현재 전국 교정시설은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부속의원을 두고 있으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으로 대면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한계를 보완하고 교정시설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증진)할 수 있는 비대면 원격의료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그림 2-126 | 원격의료시스템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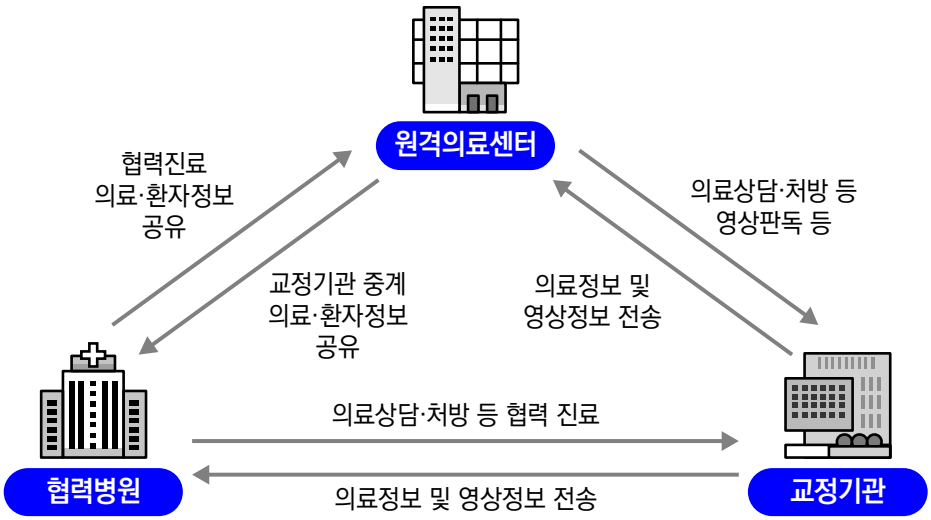

2) 추진경과 및 성과

원격의료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매년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2021년 수원구치소 등 6개 기관에 원격의료시스템을 설치하여 전국 54개의 모든 교정기관에서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격진료 협력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보·지정하여 서울대병원 등 34개 외부 협력병원, 원격의료센터 전문의의 다양한 과목의 진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부의료시설 이송 진료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의의 진료기회를 확대하였다.

| 그림 2-127 | 원격의료시스템 활용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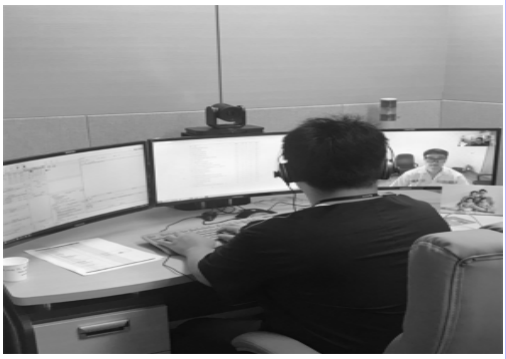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3) 평가 및 기대효과

법무부는 원격의료센터 및 협력병원을 통한 다양한 진료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비대면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진료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 등 다자간 진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Post-코로나 시대에도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및 교정행정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고위험군수형자 정밀분류심사 시스템 구축

분류심사과 교정관 고재익

1) 추진배경 및 경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 수형자 등의 출소는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교정본부에서는 이러한 고위험군 수형자들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2015년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를 시작으로 광주지방청, 대전지방청 분류센터를 차례로 신설,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심층 심리검사를 통한 정밀분류심사 등을 수행하여 재범위험성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2) 추진성과

2021년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을 통해 전국의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권역별 통일된 정밀분류심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 표 2-112 | 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현황

구 분	서울(청)	광주(청)	대전(청)	대구(청)
운영기관	서울남부구치소	정읍교도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개 원 일	'15. 11. 23.	'17. 3. 2.	'18. 3. 2.	'21. 7. 19.

분류센터 신설로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및 집중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교육·심리치료 등 처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출소 예정 수형자의 석방 전 위험관리수준 평가,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심층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표 2-113 | 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운영실적 ('21년 실적 기준)

(단위 : 건)

구 분	서울(청)	광주(청)	대전(청)	대구(청)
정밀분류심사	233	164	204	214

3) 평가 및 발전방향

교정본부는 권역별 분류센터 신설을 완료하여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출소 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의 경찰 등 사회 유관기관과 공유·협조 체계를 마련하여 우범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4. 재범방지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정정책 추진

가. 신규 이수명령 집행을 위한 핵심(Core)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심리치료과 교정관 박경식

1) 추진배경

최근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재범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제도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추어 별도로 적용 가능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없는 소수의 다양한 이수명령 집행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Core)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핵심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심리치료 대상자가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인지·정서·행동 문제 개선에 효과가 있는 근거 기반(Evidence-based) 프로그램이다.

2) 추진내용과 성과

2021. 2월 핵심(Core)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T/F를 구성하여 2021. 9월 프로그램 매뉴얼 초안을 개발하였다.

2021. 9월부터 12월까지 대전교도소 등 7개의 교정시설에서 대상자 24명에 대해 시범 운영한 결과, 대상자들에게 실시한 사전·사후 척도 검사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치료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2021. 12월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을 완료하였다.

| 그림 2-128 |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추진



핵심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요



시범운영 사진

3) 평가 및 향후계획

이수명령 병과 제도 도입 확대 추세에 맞춰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한 이수명령 대상자라도 일반적 주제를 내용으로 하는 핵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과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교정기관의 심리치료 담당 직원이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핵심(Core) 프로그램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여 교정기관에 배부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교정본부는 재범방지 실효성 향상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나. 마약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본 및 비대면 워크북 개발

◉심리치료과 사무관 이현진

1) 추진배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2.4.)으로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이수명령 집행의무가 발생하였다. 교정현장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이수명령 집행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2) 추진경과

법령 개정으로 이수명령 집행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2020. 12월 프로그램 개발 계획 수립 및 T/F를 구성하였다. 재범의 위험성과 병과된 이수명령 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지정하였다. 또한 과정별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등 치료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원활한 이수명령 집행을 위해 2021. 6월 치료프로그램 기본과정을 개발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재유행 등 비대면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비대면 워크북을 개발·배포('21.6.)하였다. 이를 서울남부(교)등 8개 교정시설*에 대해 시범운영('21.7. ~ 12.)을 실시하여 비대면 상황에서의 활용 가능성 및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 서울남부, 의정부, 진주, 경주, 홍성, 군산, 장흥(교), 충주(구)

3) 향후 추진계획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이수명령 집행을 통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방지에 힘쓰고, 투약사범을 제외한 마약류사범(마약류 소지, 제조, 판매, 유통 등)에 대해서도 시설 내 심리적 개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 작업장려금을 활용한 국민연금·주택청약·적금 가입

◉직업훈련과 교정관 박성현

1) 추진배경

작업장려금은 취업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 시키고 출소 후 생계를 고려하여 국고에 귀속된 작업수입의 일부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등을 참작하여 국가가 정책적·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 작업장려금은 출소 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수용 중에는 단순 계산고로만 관리하고

있어 안정적 사회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업장려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작업장려금 활용 방안으로서 국민연금·주택청약·적금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경과

2021년 4월부터 가입을 추진한 이 제도는 작업장려금을 지급받는 전국 수형자에게 적용되어, 2021년 12월 말까지 총 353명의 수형자가 가입하였다.

| 표 2-114 | 국민연금·주택청약·적금 가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국민연금	0	1	41	23	7	3	2	6	2	85
주택청약	29	29	89	29	42	6	7	4	6	241
정기적금	2	4	2	7	2	3	3	2	2	27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하여 수형자 노후생활 안정과 사회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그림 2-129 | 국민연금관리공단과 MOU체결 언론보도

정보가 정확한 신문 충청뉴스 since 2005 CCNNEWS

HOME > 경제/건설/과학

국민연금 대전세종, "전국 최초, 교도소 수형자 노후생활 안정 MOU 체결"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5.25 16:28

대전교도소 수형자들에게 국민연금 및 노후준비 정보 제공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이여규)는 25일 북대전지사(지사장 조경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수형자들이 출소 후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대전교도소(소장 서호영)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수형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MOU 체결식 모습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공단이 법무부와 함께 노후준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형자들에게 연금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형자들은 국민연금을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도소의 작업장려금**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노후준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북대전지사와 대전교도소는 서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연금 가이드북」교도소 내 비치, 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를 통한 강의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이여규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수형자가 국민연금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 정책성과 및 평가

수형자에게도 국민연금·주택청약·적금에 가입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움과 희망을 주는 제도라 평가되며, 더 많은 수형자가 동참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실효적인 재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가석방 확대 시행 및 심층면접관제도 도입

분류심사과 서기관 정혜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교정본부는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예비심사 선정 기준' 등을 완화하고, 모범수형자 및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였다. 또한, 「심층면접관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층면접관이 강력사범 등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대면면접, 심리검사, 담당교도관 면담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가석방심사에 반영하였다.

성폭력사범 등의 강력사범, 아동학대, 음주운전·가정폭력 등의 상습범,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 그림 2-130 | 연도별 가석방 인원 및 출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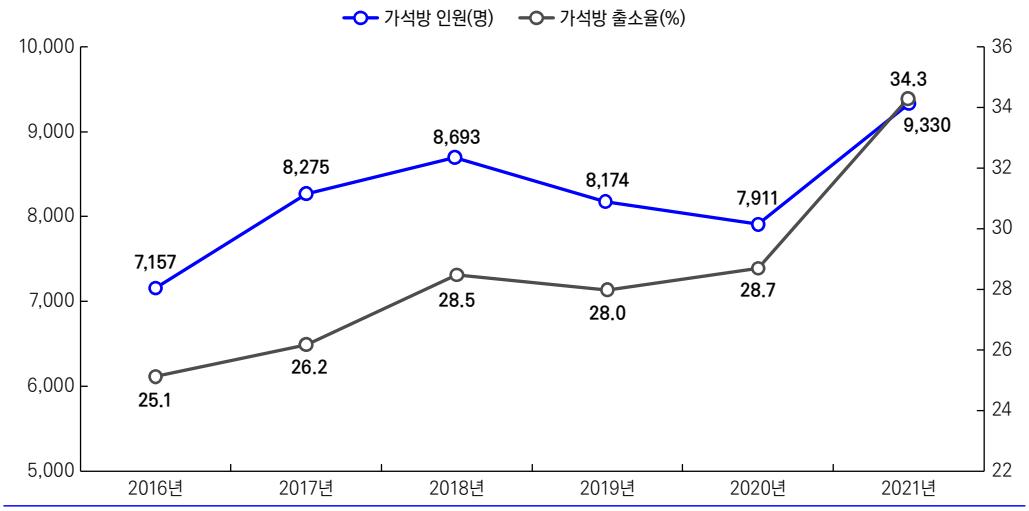

2) 평가 및 발전방향

교정본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모범수형자 및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여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과밀수용 해소에 기여하였고, 「심층면접관제도」 도입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제9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1.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가.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안전한 국경관리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류재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가) 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경관리 필요성 증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감염병의 해외 유입 억제 조치와 함께 필수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선별적·선제적 국경관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나) 무사증 입국 정지 등 대응 조치 실시

2020. 2. 4.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국에서의 항공기 탑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였고, 2020. 3. 9. 일방적인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대응하여 일본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정지, 2020. 4. 13.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90개 국가에 대해 사증면제·무사증 입국 정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후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및 백신접종율 등을 고려하여 무사증입국허용 국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21. 9. 1. EU 28개국가 및 '21. 11. 8. 싱가포르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여 '21. 12. 31. 현재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는 50개국으로 증가하였다.

다) 공항만 출입국심사관의 특별 입국절차 수행

'20. 3. 17.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여, 격리에 동의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 불허하였고, 외국인의 체류자격·코로나19 증상 등에 따라 시설·자가 격리 대상자 선별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격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국 심사 과정에서 모든 국민 및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통지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회수하였다.

| 표 2-115 | 공항만 격리통지서 교부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인천공항	기타 공항만
합 계 (2021. 1. 1. ~ 12.31.)	906,390	855,274	51,116

2) 평가 및 발전방향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I-PC)을 활용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염 위험성이 높은 외국인 8,635명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공항만 출입국심사관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검역소의 입국불허 요청자 726명을 특별입국 불허하였고, 906,390건의 격리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검역업무 지원으로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기여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염병력 등 위험 외국인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탑승 전 사전정보 분석·심사를 통해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전자여행허가제(ETA)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전염병 발생 시 국내 유입 차단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나. 전자여행허가제(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행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류재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코로나19 발생 이전 3년간 불법체류자는 연평균 23.8% 증가하였고 2019년도 공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총 75,001명에 달하였으며 전체 불법체류자 중 무사증입국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2.9%였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 불허에 따르는 외교적 마찰을 감소시키고 불법체류,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고위험군 외국인과 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며 입국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하였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019. 5월 제도 기획 및 해외사례 연구를 시작으로 2019. 7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0. 2월 출입국관리법 개정 후 2020. 10월 예산확보 및 시스템 구축 및 2021. 5. 3.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21. 9. 1.부 본격 시행되었다.

*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무사증입국가능 국가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K-ETA 홈페이지(k-eta.go.kr)나 모바일 앱(K-ETA)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를 제출하여 미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사증입국이 중단된 62개 국가를 제외하고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한 결과 8개월 동안 총 86,211명이 K-ETA를 신청하였고 그 중 마약사범, 성범죄자 등 고위험군 외국인에 해당하는 493명의 입국을 항공기 탑승 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국경관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 표 2-116 | K-ETA 신청 현황 (2021. 5. 3. ~ 12. 31.)

(단위 : 명)

구분	합계	자동심사 (OK)	분석관 심사			
			소계	허가 (OK)	조건부허가 (SEL)	불허 (NOT)
합 계	86,211	74,404	11,807	10,840	474	493

※ K-ETA로 인한 세외수입(2021.9.1 ~ 12.31.) : 약 6억원

또한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전자여행허가(K-ETA) 이용 대상 국가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자여행허가(K-ETA) 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무사증 입국자의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향후 출입국심사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사증발급, 조사 등 다양한 출입국업무 수행에 있어 비교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선량한 외국인에게는 보다 빠르고 편안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익위해자는 탑승을 차단하여 안전한 국경관리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 공·항만 확대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병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자동출입국심사는 사전에 지문과 얼굴사진을 등록하고, 본인이 여권과 지문을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인식시켜 간편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를 종료하는 출입국심사 제도이다. 2008. 6월 인천공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 제도를 시행한 이래 국민 및 외국인의 사전등록절차 생략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이용자가 증가하였다. 자동출입국심사대 36대를 신규 설치하여 12개 공·항만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공·항만을 확대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입국 자동출입국심사 전면 제한(2020. 4. 11.) 및 출국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제한(2020. 6. 1.)이 2021년에도 지속되어 전체 출입국자 대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자 비율은 전년(37.3%) 대비 16.6%감소하여, 전체 출입국자의 20.7%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였다.

| 표 2-117 |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현황

(기준 : 2021. 12. 31., 단위 : 대)

구분	합계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양양공항	무안공항	인천항	부산항	평택항	군산항
설치 대수	238	159	21	8	8	4	8	3	4	9	5	5	4

| 표 2-118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출입국자	계	80,407,702	88,908,420	93,548,093	14,701,839	4,391,173
	국 민	53,445,030	57,859,670	57,795,389	9,171,423	2,326,774
	외국인	26,962,672	31,048,750	35,752,704	5,530,416	2,064,399
자동심사대 이용자	계	24,620,574	30,466,946	37,697,784	5,490,622	908,914
	국 민	23,810,124	29,420,061	32,093,114	4,729,477	800,626
	외국인	810,450	1,046,885	5,604,670	761,145	108,288
전체 대비 자동이용율(%)		30.6%	34.3%	40.3%	37.3%	20.7%
국민 자동이용율		44.6%	50.8%	55.5%	51.6%	34.4%
외국인 자동이용률		3.0%	3.4%	15.7%	13.8%	5.2%

| 그림 2-131 | 추진경과



2) 평가 및 발전방향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국가 간 교류제한이 지속됨에 따라 전년대비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 4,581,708명 감소하여 83.4%의 감소세를 보였다. 또,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이용이 제한되어 전체 출입국자 대비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비율은 20.7%로 전년 대비 16.6% 감소하였다. 2022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이용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 되면 비대면 심사에 대한 선호도가 이전보다 증가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이용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된 자동출입국심사대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등록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가능 연령을 국민과 동일한 7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라. 출국금지제도 개선(출국금지심의위원회 활성화)

출입국심사과 서기관 이상목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가) '21.7.19. 김홍걸의원 출국금지 제도 관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출국금지 제도 개선 관련 법무·검찰개혁위원회(2020.6.8.) 및 국가인권위원회(2020.7.15.)의 권고가 있었으며, 출국금지 제도 전반에 대해 심사 절차 재검토 및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심사 절차, 사후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김홍걸 의원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의원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 출국금지 대상 명확화 ▲ 통지 유예 기간 축소 ▲ 출국금지 통지 대상 확대 ▲이의신청 기간 확대 ▲ 심의위원회 상설화 및 법적근거 법률로 상향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출국금지 제도의 사후통제를 위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위원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나) 이에 우리 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전체위원회와 분야별 소위원회(수사, 조세, 기타)로 나누고 ▲이의신청건 ▲1년 이상 기간연장건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건을 심의하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소위구성에 따른 증가)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표 2-119 | 출국금지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검 찰	6,137	5,569	5,539	7,268	11,598
경 찰	2,107	2,325	2,525	3,293	3,167
관세청	73	66	78	63	32
국세청	5,670	6,503	2,220	1,994	728
병무청	391	253	159	90	123
보호관찰기관	-	-	-	4,292	8,951
기 타	508	376	681	23,457*	665
계	14,886	15,092	11,202	40,457	25,254

* '20년 '기타' 출국금지자 중 22,613명은 코로나19 관련자임

2) 평가 및 발전방향

가) 현재 동 법안 국회 법사위 1소위 계류 중이며, 법안 통과 시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등을 정비하여 전문성있는 심의를 할 예정이다.

나)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활성화 되면 출국금지 이의신청건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기간 연장건도 심의함으로써 본인의 규제 사실을 모르거나 구제절차를 몰라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던 사람을 선제적,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던 관계기관도 앞으로는 신중하게 출국금지 요청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확대 시행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병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 공헌자, 기업인, 참전용사 등에게 보다 나은 출입국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 12월 개정된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조건부 고액투자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상생협력우수기업 종사자, 국가보훈처장이 선정한 한국전 참전용사 및 직계 자녀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총 1,337건의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하였다.

〈우대 관련 카드 제도 현황〉

가)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 1996. 11월 APEC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 시행을 선언 후 한국, 호주, 필리핀 회원국 간 합의에 의해 1997. 5월 최초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현재 19개국의 APEC 회원국 기업인에 대해 입국비자 대신 동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카드 소지자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회원국 입국 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제공 받는다. 2021. 3월부터 호주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버전의 ABTC(모바일 ABTC)의 발급을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2021. 12월 현재, 9개 APEC 회원국에서 모바일 ABTC를 발급하고 있다. 2021. 12월 말 기준, 19개국의 총 카드 발급 수는 298,518개이며 이 중 한국인은 47,132개로 회원국 중 2위이다.

| 표 2-120 |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활용카드 현황

(기준 : 2021. 12. 31., 단위 : 개)

국가 / 카드수	중 국	호 주	한 국	싱가폴	홍 콩	베트남	타 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298,518	49,375	16,422	47,132	43,782	35,807	13,076	7,663	8,116	18,933
일 본	대 만	인도네시아	페 루	칠 레	멕시코	필리핀	브루나이	파푸아 뉴기니	러시아
31,282	15,523	3,436	1,216	2,332	1,498	731	135	159	1,900

나) 출입국우대카드(Immigration VIP Card) : 국가·사회발전 공헌자에게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교통약자 배려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출입국심사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카드 소지자는 출입국 시 동반 3인까지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2013. 12월 시행 후 2021. 12월 말 현재 19,989명에게 출입국우대카드가 발급되었다.

다) 한국방문우대카드(Korea Priority Card) :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외국인 관광객에게 사증 발급 등 출입국절차를 우대하고 관광 위락시설·면세점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 소지자에게는 출입국 우대 서비스뿐만 아니라 단기방문(C-3) 복수사증 발급, 자동심사대 이용 및 의료, 통역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된다. 2021. 12월 말 현재 2,927명에게 카드를 발급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출입국우대카드 발급을 통하여 기업인 및 사회발전 공헌자 등 국민에게 더 나은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가 간의 교류 재개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바일 ABTC 도입 준비 등을 통하여 기업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교류하며 투자,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바. 국경 안전 강화

●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류재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4. 3월에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건의 원인으로 도난·분실여권소지자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위험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탑승자 사전확인제도(IPC : I-PreChecking)”를 시행하게 되었다.

2015. 2. 16. 일본 나고야 공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국적항공기를 대상으로 처음 시범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7. 4. 1.부터는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하였고, 2020. 12월 말부터 ’21.12.31까지 48개국, 100개 항공사, 185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17. 4. 1.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후 2021. 12. 31.까지 입국금지자 3,623건, 인터폴 수배자 정보 38건, 분실 또는 무효 처분된 여권 정보 34,220건 등을 포함한 총 132,426건에 대하여 탑승불가를 통보하여 위험인물의 대한민국 입국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욱이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험지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현지 공항에서 탑승을 차단하여 대한민국 영토 진입 전 감염병력 등의 위험 외국인의 선제적 입국제한 조치가 가능하였다.

감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국가 간 인력이동의 제약이 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필수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선별적 입국 허용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을 통해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필수인력의 입국 허용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로 국가 간 인력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필수인력 입국을 지원하고, 안전한 국경을 관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사. 범정부 코로나19 대응 적극 지원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류재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가) 범정부 통합대책(정보공유 등) 총력 지원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개선, 인천공항 24시간 콜센터 설치 등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기반 마련하였으며, 격리기간 중 국내 감염자 및 접촉자의 국외 이동 차단을 위한 출국제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나) 방역관련 세부 정보 대내외 적시 제공

보건소 등에서 제공받은 격리면제자, 중도출국자 및 생활치료시설 퇴소자에 대한 방역 관련 정보를 출입국심사관에게 적시 제공하여 출입국심사에 활용하였으며, 질병관리청·경찰청·지자체·보건소 등 유관기관에 출입국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역 역학조사 업무를 지원하였다.

다) 방역 관련 지침 및 규정 전파

중수본 및 중대본의 방역 관련 출입국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소속 직원 및 관계기관(특히 항공사 및 선사)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방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대국민 창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 입국자를 통한 감염병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단계에서 정확한 격리 예정 주소지 확인 및 지자체 검역당국 정보를 공유하여 격리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코로나19 대응 검·방역 제도시행 실효성 확보를 지원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역당국과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하고, 입국하는 모든 승객의 국내 체류지 파악 및 관계기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외국인의 국내 유입 차단에 적극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아. 출입국자 현황

출입국심사과 주무관 김지연

2021년도 전체 출입국자는 전년도의 14,701,831명 보다 69% 감소한 4,559,693명을 기록하였다. 국민은 2,432,517명으로 전년도 9,171,481명에 비해 73.5% 감소하였고 외국인은 2,127,176명으로 전년도 5,530,350명에 비해 61.5% 감소하였다.

| 그림 2-132 | 출입국자 증감 추이

(단위 :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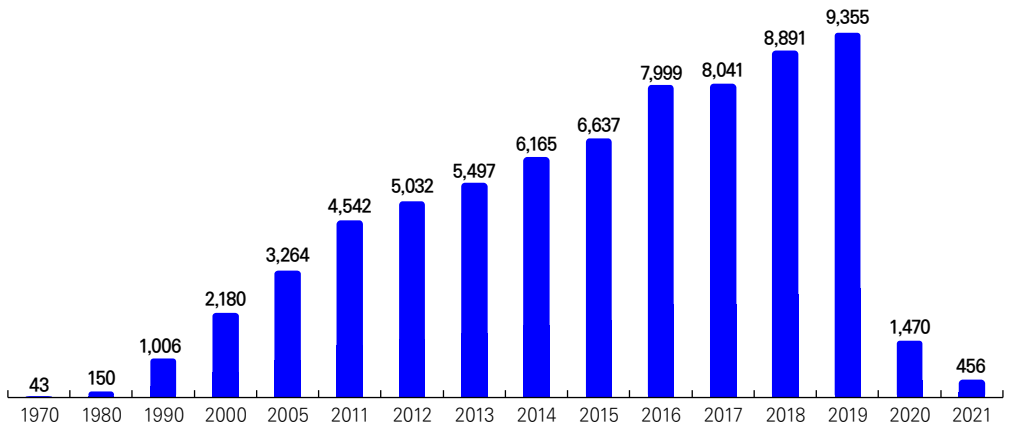

1) 외국인 입국자

2021년도 외국인 총 입국자는 1,044,545명으로 전년도 2,659,845명에 비해 60.7% 감소하였다.

국적별 입국자 수는 미국 25만 명(24%), 중국 12만 명(11.7%), 필리핀 11만명(11.2%) 순이다.

입국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방문이 22만 명(21.4%)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6만 명(6.2%), 방문취업 5만 명(5.2%)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2-133 |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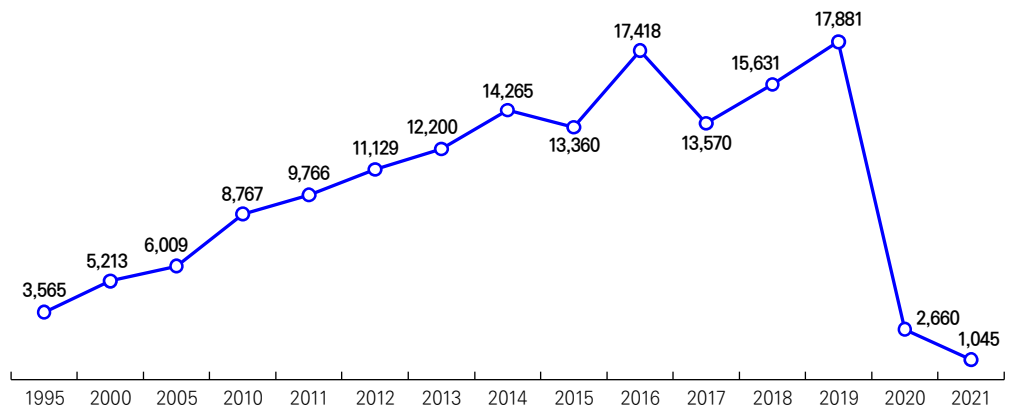

2) 국민 출국자

국민 출국자는 1,234,697명으로 전년도 4,301,903명명 대비 71.3% 감소하였다. 2007년 이후 감소하던 국민 출국자가 2010년 국내 경기회복 및 환율안정 등으로 대폭 증가세를 보이며, 빠르게 증가하던 국민의 출국자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1980년대 이전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 그림 2-134 | 국민 출국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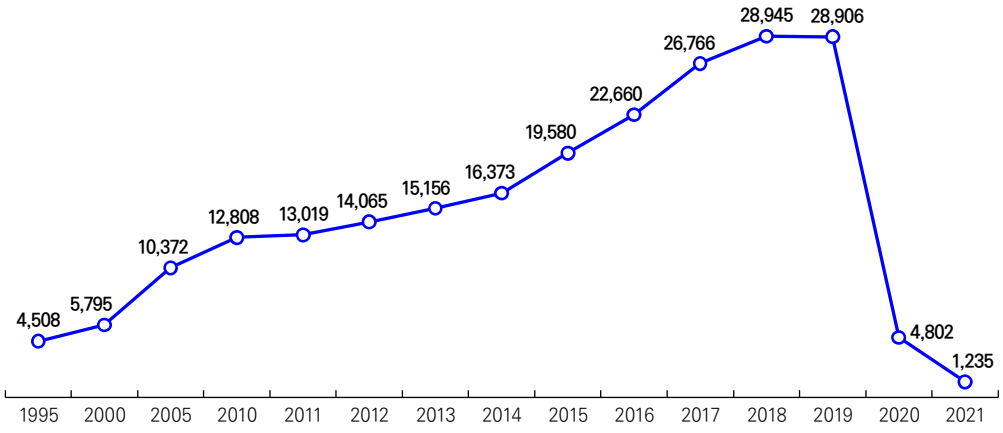

2.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가.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 시행

체류관리과 사무관 배덕환

1) 추진배경

그간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혼잡도 완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외국인 체류허가 심사 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 여권을 새로 발급받도록 하였으나, 여권을 재발급받지 않고 출입국을 하려다 불편함을 겪거나 여권 재발급에 따른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여권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줄이고, 체류외국인 정보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7.1.부터 외국인의 각종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경과 규정을 두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가) 2022.6.30.까지는 체류허가 신청인의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1년 이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 사례 1) 외국인이 체류기간 2년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인 경우, 체류기간을 1년 부여

사례 2) 외국인이 체류기간 2년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2개월인 경우, 체류기간을 1년 2개월 부여

나) 제도 시행 1년 후인 2022.7.1.부터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잔여 체류기간 내에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체류기간을 6개월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사례 1) 외국인이 체류기간 2년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인 경우, 체류기간을 6개월 부여

사례 2) 외국인이 체류기간 2년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8개월인 경우, 체류기간을 8개월 부여

한편,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 외국인,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무국적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이와 같은 정책 시행으로 외국인이 여권을 재발급받은 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여권 정보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향후 출입국 자동화 시스템 도입 및 체류민원 온라인 신청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앞으로는 국내 체류외국인이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여권을 재발급 받아 체류허가를 신청하여야 법정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100조(과태료)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성명, 성별, 여권번호 등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나.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확대 설치

체류관리과 사무관 배덕환

1) 추진내용

법무부는 재외공관 비자발급 업무 능률성 향상 및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외교부와 협의하여 2015. 9월 중국 광저우, 칭다오 비자신청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개국 12개 지역에 비자신청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는 민간 전문기관인 비자신청센터에 비자접수, 정보 입력, 교부 등의 단순 업무를 위탁하여 비자 발급업무의 능률성을 강화하고 재외공관 업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이후의 관광, 취업, 유학의 비자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전 세계 각지에 비자신청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2. 1. 17. 유럽지역 중 영국 런던에 비자신청센터를 개소하였다.

| 그림 2-135 | 유럽지역 비자신청센터 전경



파리 KVAC



베를린 KVAC

2) 평가 및 발전방향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국가의 민원인들은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비자신청을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었으며, 해당 국가 재외공관은 비자신청 접수 및 교부 등의 단순 업무를 비자신청센터로 위탁하게 되어 비자 심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비자 심사에 전문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법무부는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에게는 비자신청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공관에서는 비자 심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지로 비자신청센터 추가 개소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격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 체류관리과 사무관 배덕환

1) 추진배경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류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밀집도를 낮추고 민원 대기 시간을 감축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방문예약제를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확대 시행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무부는 2016. 2. 1.부터 체류 민원의 수요가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예약제를 시행하였으며, 2021. 4. 1.부터는 19개 기관*을 추가하여 전국 모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 15개 기관: 서울, 부산, 인천, 수원(청), 서울남부, 양주, 청주, 대구, 울산, 광주(사무소), 안산, 세종로, 천안, 평택, 고양(출장소)
** 19개 기관: 제주(청), 대전, 춘천, 창원, 여수, 전주(사무소), 김해, 통영, 사천, 거제, 광양, 구미, 포항, 동해, 속초, 서산, 당진, 군산, 목포(출장소)

다만, 외교 및 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 사실증명 등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 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방문예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에 따라 민원인 입장에서 방문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그림 2-136 |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관련 언론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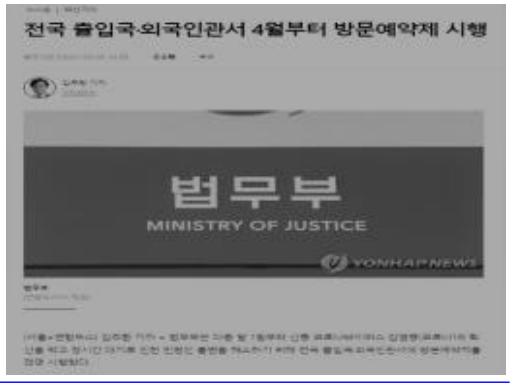

라.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박창두

1) 추진배경

법무부는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90일, 5개월) 동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 표 2-121 | 계절근로제 연도별 운영 현황

구 분	2015 ~ 2016년 (시범운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운영인원	219	1,085	2,824	3,497	223* (국내 체류자)	1,798 (국내 체류자 1,255 +해외입국자 543)

* 2020년 2월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

그러나 2021년부터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해외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고,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하여 농어가의 인력난이 심해졌다.

2) 추진성과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에서 도입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 참여 대상을 다음과 같이 대폭 확대하였다.

2021년 2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기한유예·출국기간연장 상태인 동포와 그 가족(H-2, F-1)에게 계절근로 참여를 허용하였고, 2021년 4월에는 기타(G-1) 자격 특별체류허가 받은 미얀마인,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단기방문(C-3-1) 자격자, 모든 출국기한유예·출국기간연장 상태인 사람까지 추가 확대하였다.

※ 2020년에는 방문동거(F-1)자격 체류자, 취업기간 만료된 비전문취업(E-9)자격 체류자만 계절근로 허용

그 결과, 2021년 한 해에 국내 체류 외국인 1,255명이 계절근로에 참여하여 농어가의 일손을 도왔다(해외 입국자는 543명).

또한, 2021년 11월부터는 강원도 등 외국인이 계절 근로 중인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태조사와 함께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관계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거쳐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가의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하였으며 주요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 근로 참여를 상시화하여 농어촌에서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며 농어가의 작물요건은 폐지하고, 최소 고용기간 단축(1개월→1주일), 농어가당 최대 고용 가능 인원수를 확대(9명→12명)한다.

둘째, 외국인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의 계절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체류자격별로 혜택을 부여**하고, 성실히 근무한 해외 입국 근로자는 재입국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존)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자, 특별체류허가 받은 미얀마인, 불법체류 선순환 재입국자, 출국 기한유예 등을 받은 외국인
(추가) 동포, 유학생, 기타(G-1)자격 아프간인,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등

** (유학생) 점수제우수인재(F-2-7)·구직(D-10) 자격변경 시 가점 부여(60일 이상 참여)
(동포) 재외동포(F-4) 자격 부여(6개월 이상 참여) 등

셋째, 송출국가에서 귀국보증금을 예치 받도록 하고, 무단이탈한 근로자를 불법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하여 농어가에서 피해를 보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인력 도입의 어려움을 국내 체류외국인을 활용한 한시적 계절근로제로 확대 시행하여 농어가 일손 부족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주로 대도시에 거주 중인 국내 체류외국인을 계절근로 분야에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해외 계절근로자 입국은 여전히 어려워 농어가의 완전한 인력난 해소에는 미흡하였다.

향후,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국내·외 지자체간 MOU 체결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주한공관원 및 관련 지자체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과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농어가에 안정적인 인력공급 구축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및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계절근로 인력 도입부터 체류관리, 인권침해 방지 교육, 농어가 공급까지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 인력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마. 미얀마, 아프가니스탄인 특별체류허가 조치

● 체류관리과 사무관 박창두

1) 추진배경

2021. 2월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군경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과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으로 정국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후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철수와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정권 장악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과 아프간인은 자국으로의 출국이 어려워졌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우리 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와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나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임시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였고,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이 인계된 외국인에게는 강제출국 조치를 지양하고 출국명령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표 2-122 | 국내 체류 및 특별체류허가 현황

'21.12.31. 기준, (단위:명)

국적(체류인원)	체류자격변경(G-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출국명령 출국기한유예
미얀마(26,096)	714	481	74
아프가니스탄(449)	10	0	3
합 계(26,545)	724	481	77

3)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자국의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지속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며, 개별적인 심사과정을 통해 특별히 배려하여야 할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바. 우리 정부 협력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거주자격 부여

● 체류관리과 사무관 박창두

1) 추진배경

2021. 5월 미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철수 방침 발표 이후 미군의 전격 철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바그람시 미 공군기지 내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우리 정부 시책에 협력해 온 현지 종사자들은 대사관을 통해 체류지원을 요청해왔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우리 부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21. 8월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에게 단기방문(C-3, 90일) 사증 부여 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하였다.

이후 2021. 10. 26.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거주 자격을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거주자격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2022. 1월까지 진천과 여수에 소재한 임시 생활 숙소에서 6개월에 걸쳐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 한국어 교육 등 단계적 사회 정착 교육을 수강하게 되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 활동이 자유로운 장기 체류자격인 거주자격을 부여하여 국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아프간 내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KOICA 등에서 근무하며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력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여 특별기여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나아가 특별기여자가 국내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국내법 위반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취득요건을 완화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담 센터 개소 및 비자제도 개선

● 체류관리과 사무관 박창두, 박지원

1) 추진배경

인구 감소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방안 마련은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도 해외 우수인재 유입 촉진을 위한 전담센터 개소 및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 추진내용

우리 부는 2021. 10. 28. 법무부-한국과학기술원(KAIST)간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덕특구 거주 외국인의 민원불편 해소 및 우수인재 유치 확대를 목표로 카이스트 내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개소하였다.

| 그림 2-137 | 글로벌인재비자센터 개소식('21.12.23.)



법무부장관 개소식 축사



현판식 행사

또한, 해외 우수인재 지원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첫째,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국내 37개 연구기관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유학생에게 최대 5년간 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을 부여하여 우수인재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기존에는 외국인 연구자(E-3)가 동일 근무처에서 강의(E-1)를 할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했다. 이런 절차로 불편함을 겪는 외국인 연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신생 직종들이 나타남에 따라 사전 도입 직종 중심으로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현 전문인력 비자 체계로는 다변화된 분야에 종사하는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소득 외국인과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하는 유망산업(IT, 바이오 등) 분야에 종사할 외국인이 직종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취업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수인재 취업비자 개편안'을 외국인정책실무분과위에 상정하였다.(2021. 12월)

넷째, 또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우수인재들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정착하는 조건으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지역특화형 장기체류비자 도입안을 외국인정책실무분과위에 상정하였다.(2021. 12월)

3) 평가 및 발전방향

글로벌인재비자센터 개소로 대덕특구에 거주하고 있는 우수 인재들의 민원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화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수인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37개 연구기관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연구자(E-3)들이 보다 자유롭게 강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학 교육의 다양화에도 일조를 하였다. 또한 현재 검토 중인 우수인재 취업비자 제도 개편과 지역특화형 장기체류비자 도입이 이루어지면 해외 각 국의 우수인재들의 국내 유입과 인구감소 지역의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기간 직권연장 시행

● 체류관리과 사무관 최준호

1) 추진배경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비전문취업 근로자(E-9)는 2020년 41,992명 대비 2021년 16,732명으로 지난해보다 60.2%가 감소하였으며, 방문취업(H-2) 동포도 2020년 58,992명 대비 2021년 53,799명이 입국하여 지난해보다 8.8%가 감소하였다.

항공편 감축, 국경이동 제한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되어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외국인력을 구할 수 없는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2021. 4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를 대상으로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무부는 상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2021.4.13.부터 2021.12.31. 사이에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에게 체류기간 1년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에게 최대 50일의 체류 기간 연장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최대 1년간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방문취업 동포(H-2)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취업개시신고를 한 경우에 체류 기간 1년을 직권으로 연장 조치한 결과, 비전문취업 근로자(E-9)는 약 6만 명, 방문취업(H-2) 동포는 약 1만 명 등 전체 7만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외국인근로자의 신청 없이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한 것으로 민원인은 별도로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었으며, 연장된 체류기간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체류만료일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의 이번 직권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하지 못하여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에 다소 도움이 되었으며, 민원인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지역사회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 재외동포 포용정책 추진

체류관리과 사무관 최준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재외동포를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모국과 동포사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 포용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동포 간 차별 완화,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과 자립 지원, 사회통합 강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동포의 고충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2021년 1월에 동포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완화하여 소득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신청인, 배우자, 자녀, 부모 중 소득산정기간 기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자녀양육·취업으로 인한 주말부부 등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소득합산을 인정해 주었다. 2021년 6월에는 방문취업제 허용업종을 확대하여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취업 허용업종에 과실류 도매업, 물류터미널 운영업 등 7개 업종을 추가하였다.(기존 39개→46개)

2021년 6월, 기존 7개였던 동포체류지원센터를 11개로 확대·지정함으로써 국내체류 동포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체류 동포의 고충 해소를 위해 방문취업(H-2) 동포가 만기출국 후 제때 입국하지 못하더라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 국내 체류를 허용하였고,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체류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2021년 12월에는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을 허용하여, 부모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 표 2-123 | 중국·고려인 동포 현황

(기준: '21.12.31. 단위: 명)

국적별 \ 자격별		계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영주 (F-5)	동포결혼 (F-6)	방문동거 (F-1)	기타
중 국		628,491	107,592	354,539	111,115	17,136	19,483	18,626
고려인	러시아	27,488	11	25,660	726	97	905	89
	우즈베키스탄	32,216	10,592	18,052	711	0	2,861	0
	카자흐스탄	13,993	4,575	7,567	105	0	1,746	0
	키르기스	2,764	899	1,484	34	0	347	0
	우크라이나	2,390	874	1,050	17	0	449	0
	타지키스탄	317	66	216	0	0	35	0
	투르크메니스탄	250	76	157	1	0	16	0
	소계	79,418	17,093	54,186	1,594	97	6,359	89
합 계		707,909	124,685	408,725	112,709	17,233	25,842	18,715

| 표 2-124 |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자녀 현황

(기준: '21.12.31. 단위: 명)

구분	계	초등학교 학령기 (만 6세 ~ 12세)	중학교 학령기 (만 13세 ~ 15세)	고등학교 학령기 (만 16세 ~ 18세)
재외동포(F-4) 자녀	16,456	11,479	3,128	1,849
방문취업(H-2) 자녀	4,177	2,623	887	667
총 계	20,633	14,102	4,015	2,516

3)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의 재외동포 포용정책은 재외동포가 우리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 동포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동포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등 인권보호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재외동포를 우리 미래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적극 포용하여, 국민과 재외동포가 상생하는 동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이민조사과 주무관 신철승

2021년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지속에 따른 국제선 항공편 축소·중단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출국이 제한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2016년 이후 급증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2019년도와 비슷한 39만 명 선 이하로 유지하며 증가세를 차단하였다.

| 그림 2-137 | 총 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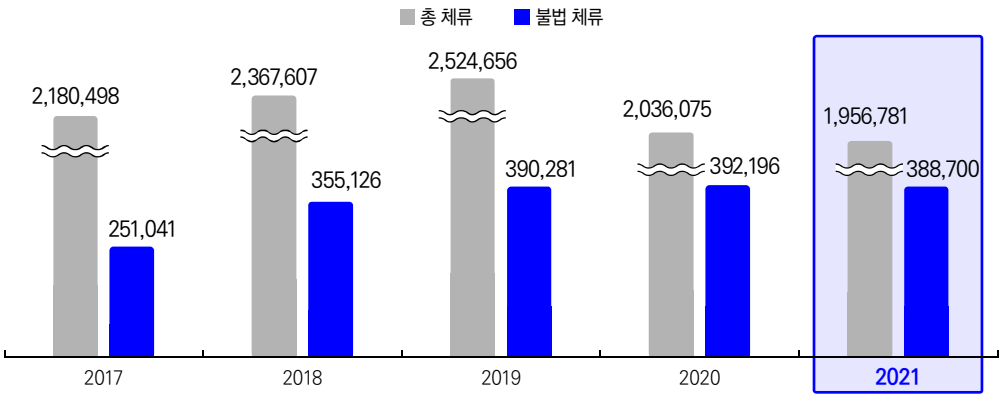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전국 36개 특별단속지역과 61개 외국인 밀집지역을 지정하고,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산하 이민특수조사대 및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 기획조사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불법취업 알선브로커 등 주요 출입국사범, 국민안전 분야와 서민일자리 잠식 분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새로운 감염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검진을 위한 단속 잠정 유예 및 관계기관 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와 백신접종 독려를 위한 백신접종 인센티브 제도 홍보, 외국인 밀집시설(벌집촌, 인력사무소 등) 점검·계도, 설·추석 전후나 연말연시 국가별 행사·모임 자제 홍보 및 방역점검 강화 등 방역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대규모 단속활동이 제한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는 외국인 전용클럽, 마사지 등 유흥업소에 대한 집중단속(5 ~ 6월)을 실시하였고,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및 국민안전과 서민일자리 침해 출입국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1. 12월 현재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121,225명 가운데, 강제퇴거 3,116명(2.6%), 출국명령 1,560명(1.3%), 출국권고 2,911명(2.4%) 등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총 7,587명이며, 고발된 사람은 1,303명(1.1%), 그 밖에 통고처분 17,880명(14.7%), 과태료 22,756명(18.8%) 등 처분받은 사람은 총 113,638명이었다.

| 표 2-125 |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천 원)

연도	총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		고발	과태료		기타
					명	금액		명	금액	
2019	175,609	34,557	5,852	2,687	26,106	49,564,840	4,552	14,330	1,960,670	87,525
2020	118,829	5,867	2,062	2,097	17,863	25,114,680	2,605	21,358	3,033,820	66,977
2021	121,225	3,116	1,560	2,911	17,880	33,586,490	1,303	22,756	3,929,390	71,699

※ 기타 : 처분면제 등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불법체류 외국인 대책 운영

연중 코로나19 무료 검진과 백신접종 독려를 위한 계도 및 자진출국유도 등 홍보활동에 집중하였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4차 확산속에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의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을 크게 상승시키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 '21. 8. 28.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접종 완료율은 5.7% 불과, '21.12.31. 1회 이상 백신 접종률 87.2%, 완료율(2차) 83.4%로 향상, 방역사각지대 예방에 기여

또한, 코로나19 상황의 진정추세와 보호시설 과밀화 여부를 고려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2021년 한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 11,544명을 적발하여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단속활동 위축 및 '방역우선'의 정부시책에 따라 단속실적은 전년대비 81.5%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 그림 2-139 |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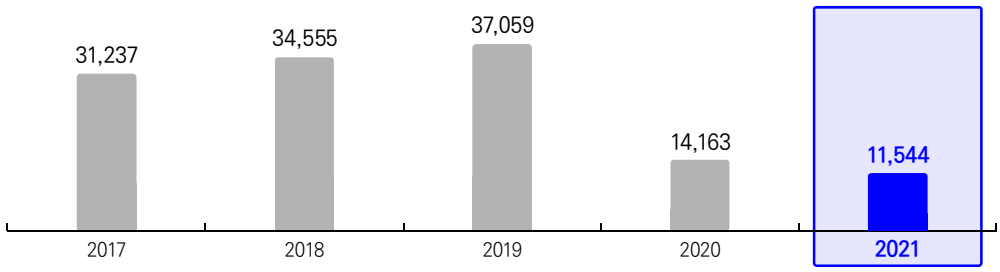

2021년도에도「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의 시행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하거나 단속된 경우 범칙금 부과 등으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였고, 2021.10월부터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 10.12. ~ 12.31.까지 총 8,510명 자진출국(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

자진출국 신고자의 코로나19 감염전파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및 대면신고를 지양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연중 재시행 하였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외국인 밀집시설(벌집촌,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여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방역 실태 점검·계도, 방역 홍보 활동 및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고, 설·추석 전후 방역 점검 및 이동 자제 홍보활동, 핼러윈데이 대비 특별 방역계도 순찰활동 등 연말까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지속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2차례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하였으며(1차 : 3.8. ~ 3.26., 2차 : 6.14. ~ 8.31.),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인센티브 부여 제도 시행(10.12. ~ 12.31.)에 따른 외국인 백신접종률 상승 견인과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 지원(11.4. ~ 12.31.) 및 오미크론 신종변이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계도 활동(12.15 ~)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방역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 벌집촌·밀집시설 등 25,812개소(외국인 고용사업장 6,677 포함) 점검, 마스크 40만여 개 배부(1. 1. ~ 12. 31.)

| 표 2-126 | 자진출국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 대비 2021 실적
자진출국자	39,513	64,814	71,663	55,260	32,867	22,393↓ (40.5%↓)

2)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 이민조사과 주무관 장기연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지로 등의 방식으로 부과받은 범칙금을 현금 일시불로 납부만 가능하였으나,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21. 1. 21.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범칙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범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범칙금에 대해 현금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범칙금을 분납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납부 편의 제공 및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분납 또는 납부 연기 등의 효과가 있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불법고용주 등 영세 사업자 고충을 해소하고,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 건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전과자 양산 방지에 노력을 기울였다.

3) 기획조사 및 격리위반 집중단속

● 이민조사과 주무관 황규택, 빈중찬

2021년도에 기획조사를 추진한 결과,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자 등 1,099명(522건)을 적발하여 그 중 56명을 구속, 20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554명의 외국인을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인터폴 적색수배 불법취업 알선 태국인 브로커 및 살인미수 혐의 인터폴 적색수배 카자흐스탄인 검거, 무면허·대포차 이용 불법고용 알선 태국인 구속, 사업을 빙자하여 베트남인 161명의 허위초청을 알선한 한국인 및 베트남인 구속, 80여명의 파키스탄인들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파키스탄인 2명 구속, 코로나19로 출국 항공권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는 베트남인 104명에게 위조 항공권을 제공한 브로커 송치, 불법체류 외국인 92명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활동범위제한 명령 위반자 등 격리이탈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여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 171명을 적발하여 1명 구속, 4명 출국조치(강제퇴거2, 출국명령2), 116명 범칙금 처분, 50명을 경찰처분 등 조치하고,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 9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3, 출국명령6) 하였다.

기획조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체류외국인 동향조사·사범·보호 기법연구 발표회, 유관기관·단체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한 동향조사 기법 및 관련 정보 공유로 기획조사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불법체류 유발 환경 차단 및 외국인 밀집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단속을 통해 국민 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 표 2-127 | 기획조사 추진 실적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계		위변조 여권		허위초청		불법취업		기타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2020년	595	2,338	44	118	44	98	146	755	361	1,367
2021년	522	1,099	27	72	24	33	120	290	351	704
전년대비(%)	87.7	47.0	61.4	61.0	54.6	33.7	82.2	38.4	97.2	51.5

※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단속활동이 자제되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실적 32.5% 감소

4)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이민조사과 주무관 윤동운

단속·보호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간 3명의 직원을 국군의무사령부의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 위탁교육을 받게 하는 등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2021. 9. 24. ~ 10. 18. 인천출입국·외국인청,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와 2021. 6월과 7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법무부 인권국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별로 관할 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기관별 실정에 따라 소방·전기시설 및 장비를 자체 또는 위탁 점검하였다.

2021.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출입국 기관장 및 조사과장 영상회의 등을 실시하여 외국인 보호시설 및 보호외국인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외국인 고충상담관을 지정·운영하여 강제퇴거를 앞둔 보호외국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이들의 체불임금 979건, 의료구호 3,498건 등의 고충을 적극 처리하였다.

한편, 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언론, 국회 등을 통해 대중에 알려졌고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 보호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다. 향후 추진계획

외국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발생 예방을 위해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보호장비 및 사용방법 등 관련 법령 개선과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해 코로나19 확산·전파되지 않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격리 위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대규모 단속활동을 재개하는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4.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가. 아프간 특별기여자 초기 사회정착 교육프로그램 마련

이민통합과 사무관 이향숙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1. 8월, 아프가니스탄의 급격한 현지 상황 발생으로 아프간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등 우리 정부 사업에 협조한 특별기여자들이 '미라클 작전'을 통해 입국하게 되었다.

갑작스런 국내 입국으로 정서적 고통, 사회적응의 어려움 등 초기 사회정착 교육·지원이 필요하여 법무부는 2021. 9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초기 사회정착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등 사회통합의 핵심교육인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부의 학령기 아동 및 유아 교육, 문체부의 생활체육활동, 방통위의 미디어 교육·체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관계 기관이 협업하여 긴박한 상황 속에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한국사회 적응, 자립을 위한 교육을 적시에 마련·시행하여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2021. 11월, 국무총리 훈령 시행으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이 출범한 후에도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지역사회 정착 전까지 진천, 여수 등 임시생활시설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나. 사회통합 중앙협의회 출범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은숙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정부 주도의 이민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이민자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별로 '사회통합협의회'를 구성해왔다.

한편, 2021. 12월 법무부는 전국 단위의 이민자 정착 지원과 지역 사회통합협의회의 연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서별 사회통합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통합중앙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그림 2-140 |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





2) 평가 및 발전방향

지역 단위로만 구성되었던 사회통합협의회의 외연을 확장하여 전국 단위의 이민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각 지역협의회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사회통합협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정상화

이민통합과 사무관 전강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09년부터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등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집합교육 운영이 불가한 상황에서 2020. 4월부터 허용한 화상교육 방식을 상황을 고려하여 유지하였다.

화상교육 방식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연중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고, 2021년 10월부터 다른 체류유형에 비해 한국어능력을 갖춘 동포, 유학생들을 위해 3~4단계 과정에 한국사회이해(5단계)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과정'을 개설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 그림 2-141 |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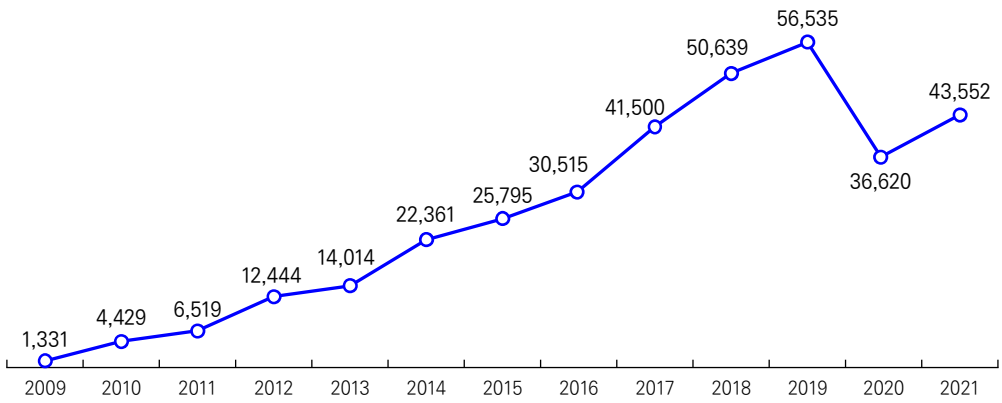

| 그림 2-142 | 체류자격 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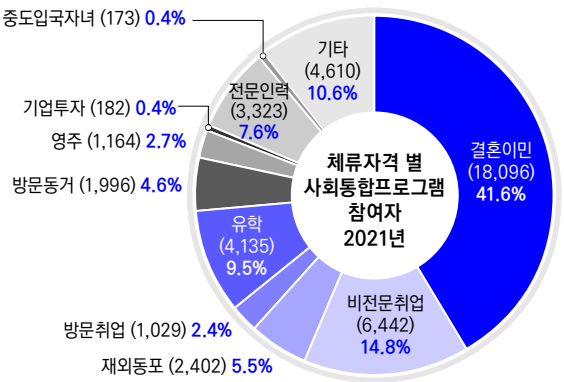

2) 평가 및 발전방향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화상교육 지속 허용 등 교육방식 다변화, 참여자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 참여자들의 행정 수요를 충족하였다.

다만,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단계 배정 평가(사전평가) 및 영주·귀화 적격시험(종합평가) 등 시행이 어려워져 보다 탄력적으로 평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평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라.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책자 개편

● 이민통합과 사무관 황선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여자(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혼인상대방 국가의 사회와 문화, 그 밖의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국제결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아시아연구소)을 과업수행자로 지정하여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국가별 책자(7개국 사회문화의 이해와 행복한 결혼생활)를 제작하였다.(2021.12월)

차별적 표현이 포함될 경우 외국인 또는 출신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과업수행자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 및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부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책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과업수행자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아시아연구소)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7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활발한 융복합적 연구 등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바, 그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 배우자 맞춤형 책자 발행할 수 있었다.

또한, 「법무부 발행 간행물에 대한 외국인 차별표현 방지 방안」을 적용,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3단계 검수를 거침으로써 사회통념 상 부적절하다고 인식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국민과 혼인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정보 위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 제작하였다.

마.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이민통합과 사무관 최은숙

2021. 5. 2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는 제14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한 유공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박범계 장관은 기념사에서 “다양성이 존중되고 국민과 외국인이 화합을 통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 신학원장이 대통령표창인 ‘올해의 이민자상’을 수상하였다.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은 빈민과 노동자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지구생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공생을 통한 사회통합과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삼혁 센터장과 사단법인 너머(단체)가 대통령표창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최병규 사무국장, ㈜디케이알텍 김현기 대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 김영배 회장,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명숙 사무처장과 사회복지시설 여수다문화복지원,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3개 단체가 국무총리 표창을, ㈜창우섬유 박창숙 대표 등 5명과 진주YWCA 등 2개 단체는 이민자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 그림 2-143 |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바.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지침 정비

이민통합과 사무관 황선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영주자격 요건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며 오랜기간 국내에 거주한 결혼이민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결혼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 출생자녀 중 중증질환이나 장애가 있고 신청인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생계유지능력과 기본소양 요건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는 등 인도적·포용적 결혼이민 체류관리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0년 발표한 '한부모 결혼이민자 거주(F-2)자격 신설'에 이어 결혼이민자의 권익과 체류권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마련하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체류권 보장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국제결혼 가정의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과 결혼이민자의 체류권익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5.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수요자 중심의 국적정책 개선

가. 다양한 방식의 국적증서수여식 개최를 통한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국적과 사무관 정금심

1) 추진배경 및 경과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1. 21. 최초로 국적증서수여식(국립한글박물관)이 개최된 이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제도를 통해 새로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약 4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은 전국 18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재외공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 방식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 결과 연중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2021년에도 13,636명이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를 수여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특히 외국인은 귀화를 통해 외국인에서 국민으로, 국민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자리잡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에는 최초로 중앙정부인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국적증서수여식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주민이 귀화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그림 2-144 | 법무부·시흥시 지자체 연계형 국적증서수여식 개최('21. 5. 12.)





법무부-시흥시, 귀화자 31명에 국적증서 수여 – 포토뉴스 제공

또한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년에 도입한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가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였고, 200번째 우수인재가 국적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2021. 4 .21. '200번째 우수인재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하여 그 취지를 되새기고 기념하고자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이 날 법무부 대강당에서 서울대 교수 등 총 9명의 우수인재에게 직접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함으로써 우수인재 귀화자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귀화자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그림 2-145 | 200번째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박범계 장관,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포토뉴스 제공

이에 더하여 올해에는 광복절을 기념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동포들에 대한 인식을 환기할 수 있는 더욱 뜻깊은 기회를 마련하고자 독립유공자 후손 25명을 새로 발굴하여 지방사무소와 연계한 릴레이 국적증서수여식을 새롭게 기획하여 시행하였다.

2021. 8. 12.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대강당에서 일제강점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이명순 선생 등 독립운동가 후손 10명에게 직접 귀화증서를 수여하였다. 이 날은 특히 2012년 3월 21일 국가유공자 후손으로서 최초로 특별귀화한 인요한 의학박사의 축사, 독립유공자 후손 피아니스트 두닝우가 해외에서 송부해온 축하 연주 영상 감상 등 뜻깊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법무부의 국적증서수여식을 시작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법무부장관을 대행하여 릴레이로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을 진행하여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국민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고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은 시행 후 3년을 맞이하였으며 올해 기획한 '법무부-시흥시 지자체 연계형 국적증서 수여식'과 '200번째 우수인재 국적증서수여식' 및 '지방사무소 연계형 독립유공자 후손 릴레이 국적증서수여식'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20. 3월 코로나19 심각단계 상향 이후 대규모의 국적증서수여식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적법에 따른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여건에 따라 기존의 참여형 방식 외에도 비대면 또는 개별방문 국적수여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적취득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일률적인 식순에서 벗어나 귀화자 및 국민 모두에게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가 기념일·지역 특성화 축제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연계 행사 참여형 수여식을 기획하고 코로나 상황 등 다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원래 국적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복수국적제도 확대 시행

● 국적과 사무관 정금심

1) 추진배경 및 경과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 5. 4. 국적법을 개정하여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간이한 요건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우수인재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국적취득 후 원국적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국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2020년에는 2020. 6. 26.「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를 개정하여 우수인재 대상을 확대(4개→10개 분야)하고, 경력 및 소득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민자 및 귀화자 증가에 따른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가 신설된 이후 2021. 12. 31.까지 총 231명의 우수인재가 특별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2021년에는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 설명회는 법무부가 학술 현장을 방문하여 현행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 및 대상 확대에 따른 새로운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에 따라 2021. 3. 23. 경북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소속 외국인 교수 및 대학원생 약 6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1년 10월 28일에는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이 직접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를 방문하여 '법무부-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위 간담회에는 카이스트총장, 외국인 석·박사 연구원 등 카이스트 관계자, 외부전문가(이민정책연구원장)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에 있어 법무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그림 2-146 | 법무부-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 개최



법무부-카이스트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포토뉴스 제공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국가간 이동이 활발해진 국적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국가성장동력으로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영주·국적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과 소통을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우수 외국인재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활동 및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 수요자 중심의 국적 제도 개선

●국적과 사무관 홍창기, 최종원

1) 추진배경 및 경과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신청한 사람의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2011. 7. 18.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831호)을 시행하여 민간면접관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21. 1. 27.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면접관 선발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규정을 정비하여 귀화 면접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귀화 면접심사의 공정성을 기하여 국가관, 외국인 관련 이해도, 퇴직자

일자리 제공 등의 측면을 고려해 귀화 민간면접관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교사·교원,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강사 경력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귀화 면접심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민간면접관 선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면접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면접 참관을 통한 평가 강화로 귀화 면접심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제2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현재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남성은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그러나 2020. 9. 24. 헌법재판소가 복수국적자 남성에 대하여 예외없이 국적이탈 시기를 제한한 위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라 법무부는 기한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2021. 4. 26. ~ 6. 7.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는 한편, 2021. 5. 26.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 국민과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 그림 2-147 | 온라인 공청회 개최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청회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수요자 중심의 국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국적 행정 개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적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적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 방식을 모색하여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3) 국적업무 처리현황

귀화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법상 법률행위이며 국적회복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 취득 등으로 우리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다시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귀화신청은 2017년 17,765명에서 일반귀화 신청 시 종전에는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적법 시행(2018. 12. 20.)을 앞두고 폭증하여 2018년 22,153명에 이르렀다. 2019년에는 16,852명으로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으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였음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16,529명, 2021년 18,091명을 유지하면서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에의 의지를 꺾지는 못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외국인의 귀화 신청 건수의 증가에 따라 2021년에도 꾸준히 귀화심사 T/F팀을 유지하며 귀화 신청에 대하여 집중처리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우리 국적을 원하는 외국인이 조속히 국적을 취득하여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하면서 안전한 방식의 국적증서수여식을 통해 총 13,636명의 외국인이 귀화(10,895명), 국적회복(2,741명)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 표 2-128 | 유형별 국적취득(귀화,회복) 현황

(단위 : 명)

종류별 / 연도별	총 계		귀화		국적회복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17	20,244	12,861	17,765	10,086	2,479	2,775
2018	25,014	14,254	22,153	11,556	2,861	2,698
2019	19,952	12,357	16,852	9,914	3,100	2,443
2020	18,899	15,649	16,529	13,885	2,370	1,764
2021	21,160	13,636	18,091	10,895	3,069	2,741

라. 향후 추진계획

2022년에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국적법 조항 관련 그간 수렴된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등을 최종 검토하여, 병역의무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적이탈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을 신속 추진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 지속 실시 및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특별

공로자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꾸준히 발굴, 격려하는 행사를 매년 추진하여 귀화자 등에 대한 국민정체성을 함양하고, 수요자를 중심으로 국적제도를 개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6.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가. 추진배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전 세계 난민 발생 위기 상황은 가중되었으나,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으로 사증면제 협정 등에 대한 잠정 정지 조치가 이어져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난민신청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매년 증가 추세였던 난민신청 건수가 2020년, 2021년 감소하였으나 난민인정결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난민심사의 성격과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심사 적체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난민심사 운영과 난민통역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등 난민심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에 대한 비대면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된 난민전문통역인을 선발하고 교육하기 위한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실시하여 난민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나아가 난민심사 및 처우 등 현행 난민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국민, 관계부처,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난민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 표 2-129 | 난민신청 및 심사 대기 현황

(매년 12. 31. 기준, 단위 :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난민신청		9,942	16,173	15,452	6,684	2,341
대기	1차	7,317	16,887	22,321	14,976	7,643
	이의신청	2,325	2,747	3,253	5,118	4,526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나. 추진내용

1) 2021년 난민업무처리 현황

난민정책과 사무관 홍인표

1994년 난민업무를 최초 시행한 이후 2021년까지 총 73,383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철회된 19,805건을 제외한 총 41,409건에 대하여 난민심사를 완료하였다. 심사 결과 총 1,163명에게 난민인정 지위를 부여하고 2,412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여, 결과적으로 총 3,575명에게 「난민법」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였다.

2021년 난민신청 건수는 총 2,341건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위기로 인해 대폭 감소(2019년 총 15,452건, 2020년 총 6,684건)하였고 난민심사 대기 건수도 총 12,169건으로 전년 대비 7,925건 감소하였다. 2021년 난민심사결정 건수(1차 심사 후 이의신청까지 완료한 건수)는 총 7,109건으로 전년도 6,243건 대비 13.8% 증가하였으며, 난민인정은 72건으로 전년도 69건 대비 4.3% 증가하였으나, 인도적 체류허가는 45건으로 전년도 154건 대비 70.8% 감소하였다.

2) 「난민법」 개정 추진

난민정책과 사무관 홍인표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이후 2013년에는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 난민발생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국내 난민신청자 유입 증가 등 「난민법」 시행 이후의 난민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난민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또는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난민신청 및 난민제도 남용 방지,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효율성 확보 등에 따른 난민신청자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난민의 국내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12월 입법예고 실시, 2021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2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3) 난민심사 전문성 제고

난민정책과 사무관 구성림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의 진술내용과 출신국의 정황정보, 기타 사실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법무부는 전문적인 난민심사를 위해 매년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의 집합교육과 사이버강의 외에도 관련

국제기구(유엔난민기구)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한 전문교육을 총 7회 실시하는 등 국내외 난민심사이론과 실무 심사기법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있다.

| 표 2-130 | 2021년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

회차	교육과정	주요 내용	주최
1차 (1. 25. ~ 1. 26.)	신규 (35명)	• 난민이론 개관(박해 등 기초이론) • 난민면접 및 심사기법 •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편람 및 지침해설 – 유의미한 진술 도출법과 진술의 신빙성 분석	법무부
2차 (3.18.)	초급 (60명)	• 난민면접 및 심사기법 •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이론(종교에 기반한 난민신청) – 종교박해 난민신청 관련 국내외 판례 분석 – 기독교 등 종교의 이해	법무부/UNHCR
3차 (4.23.)	중·고급 (41명)	• 전문가 초청 강연 – 국제협약 이해 – 난민이론(박해와 난민의 개념) – 인권감수성 교육	법무부
4차 (5.27. ~ 5.28.)	초급 (54명)	• 출입국항 난민심사제도의 이해 •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이론(젠더와 관련된 박해) – 여성 관련 특정국가 국가정황정보 – 할례 등 여성에 대한 박해 사례 연구	법무부
5차 (7.23.)	신규 (56명)	• 난민면접 및 심사기법 •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이론(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본 박해의 개념)	법무부
6차 (9.28. ~ 9.29.)	중·고급 (38명)	• 난민이론의 실제(국내 사례 공유) •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이론(배제조항의 해석 및 해외사례연구) – 국제 난민심사 동향	법무부/UNHCR
7차 (11.9. ~ 11.10.)	초급 (50명)	•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이론(인신매매의 피해와 사례) – 라포형성과 면접 기법 향상	법무부/UNHCR

4) 난민통역 제도 보완

난민정책과 사무관 구성림

2021년 한 해 동안 난민신청자의 국적은 72개, 난민통역 언어는 42개에 달하는 등 난민신청자의 국적과 구사언어가 다양해지며 소수·특수 언어에 대한 통역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다양한 언어권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난민전문 통역인

풀(Pool)을 구축하였고, 2021년 12월 현재 29개 언어 205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이 난민면접 과정에서 통역을 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2019년에 실시한 난민통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의 내용을 기반으로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실시하여 30개 언어, 160명의 통역인을 인증하였다. 인증된 통역인은 2022년 1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되어 3년간 난민면접 통역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난민전문통역인의 통역품질을 검증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1년에는 4차에 걸쳐 통번역대학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해 난민(전문)통역인 102명에 대한 통역능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매년 난민전문통역인에게 난민제도와 통역윤리, 난민통역실습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 난민전문통역인의 역량강화 및 통역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5)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난민정책과 사무관 최명호

「난민법」 제18조(난민의 인정 등)는 기본적으로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를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금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출신국의 박해로부터 긴급히 피난해오는 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생계비는 난민신청자 중 별도로 지원신청을 한 사람들 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소득·자산, 주거현황, 자녀동반 또는 임신여부, 중대한 질병 유무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난민신청일로부터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로 지급된 비용은 총 5천 2백만 원이며, 가구당 1회 생계비 지원 금액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131 | 2021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비(非) 입주자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주자	216,450	368,600	476,950	585,200	693,450

2021년 한 해 전체 난민신청자 2,341명 중 78명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이 중 43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6)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

난민정책과 사무관 최명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숙식·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고,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로 2021년 신규 입소자는 총 22명이다.

지원센터에서는 난민 등의 초기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별 한국어 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등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도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 정착에 있어 중요한 한국어 교육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운전면허 특강 또한 실시하였다.

한편 2021년 4월 박범계 장관은 지원센터에서 생활 중인 미얀마인들을 만나 이들의 한국 정착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길 기원하였다.

| 그림 2-148 | 박범계 장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방문



박범계 장관, 난민 아동수업 참관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간담회 실시

7) 재정착난민 수용

난민정책과 사무관 최명호

재정착난민 제도는 「난민법」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따라 해외 난민캠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수용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닫는 상황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등 25개국은 재정착 난민 수용에 참여하며 국제사회 내 난민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재정착난민은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추천을 받은 난민 중 서류심사, 현지면접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현지에서 건강검진 및 사전교육 후 입국하여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 초기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법무부는 2015년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된 '재정착 난민 수용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태국 내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 총 86명(16가족)을 수용하며 1차 시범사업을 종료하였다. 이어 2018년 6월 사업국을 말레이시아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2차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26명, 2019년 37명, 2020년 17명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하였다. 2021년에는 2020년에 추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었던 재정착난민 대상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후속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 표 2-132 | 재정착난민 수용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원(가구수)	22(4)	34(7)	30(5)	26(8)	37(15)	17(5)
사업수행국	태국	태국	태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다. 향후 추진계획

2022년에는 난민통역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 질적인 측면의 향상과 더불어 양적인 측면에서 난민전문통역인 후보군 확대를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며,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의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난민심사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난민법」 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난민법」 개정 대비 「난민법 시행령」 및 「난민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동시에 준비하고,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적절한 처우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 내 난민문제 해결에 기여할 예정이다.

7.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가. 추진배경

중동지역의 무슬림 간의 종교 분쟁, 아프리카에서 계속되는 종족 간의 분쟁, 미얀마에서 발생한 쿠데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집권 등으로 인해 전 세계 난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난민 문제는 계속해서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2020년 5,956건으로 2013년「난민법」시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방역수칙 준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난민심사 중단 및 면접 인원 제한 등)로 1차 심사기관의 심사결정건수가 감소(2020년 8,104건 → 2021년 5,982건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함에 따라 이의신청 건수 또한 4,717건으로 전년 대비 21% 정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 1차 난민심사가 정상적으로 수행된다면 이의신청 건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2-133 | 난민 이의신청 및 심사결정 현황

(매년 12. 31. 기준,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이의신청	5,277	3,723	3,113	4,067	5,956	4,717
심사결정	4,276	4,415	2,584	3,434	3,792	4,967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특별행정심판절차인 이의신청 절차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준사법절차보장이 필수적이나, 그간 인력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특별)행정심판에서 보장하고 있는 구두 의견 진술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이 미흡하여 심의의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0. 2. 25. 법무부 〈난민과〉 내 '난민위원회팀'을 분리하여, 난민위원회 운영 등 사무처리 및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로서 〈난민심의과〉가 신설되었다.

〈난민심의과〉가 신설되면서 이의신청 심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며,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이의신청 제도 운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20년에는 난민신청 추이 및 지리적 여건, 사회·문화적 환경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기존 3개(아시아권, 중동권, 아프리카권) 분과위원회의 심의 대상 국가를 조정하였고, 1개(중앙아시아권, 러시아) 분과위원회를 추가하여 총 4개 분과위원회 체계를 구축하였다.

| 표 2-134 | 난민위원회 조직도(분과위원회별)



또한, 최근 난민 신청 국가 및 사례는 복잡·다양해진 반면, 난민 이의신청 심의위원은 15명으로 제한되어 전문적인 심의에 한계가 있고, 종교·젠더 폭력·성소수자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 관련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외부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학교수, 연구원 등 난민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관계부처 및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을 구축하고 전문가의 추가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하는 등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표 2-135 | 난민위원회 자문위원단

총계	국가정황 전문가			종교 전문가	특정집단 전문가	
	아시아권	중동권	아프리카권		여성인권	성 소수
35명	8명	8명	9명	4명	4명	2명

나. 추진내용

1)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체계 구축

● 난민심의과 사무관 조승래

2021. 2월 긴급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이의신청인에 대한 난민위원회 신속 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이의신청 심사기간을 전년 311일에서 금년에는 280일로 단축함으로써 진정한 난민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1. 7월 신청인이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두 의견진술 및 추가 입증자료 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다 보장하기 위해 이의신청서 서식을 개정(난민법 시행규칙 개정)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원 혼잡도 완화 및 감염병 전파 위험 최소화, 신청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도 이의신청 접수 및 송달을 할 수 있는 근거(난민법 시행령 개정)를 마련하였으며, 이의신청 제기 기간 도과 등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접수 후 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하 결정을 통지하는 절차(난민법 시행령 개정) 및 서식(난민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련하였다.

2) 국가정황정보(COI) 조사 전문 인력 확보

난민심의과 사무관 조승래

난민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인류학·지역학·국제관계학 등 관련 학문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 실무 경력을 보유한 국가 정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조사 전문인력(非 공무원)을 2021. 7월 채용하여 각 분과에 배치하였다.

국가정황정보 조사관들은 난민심사 담당자의 조사 의뢰에 대한 회신, 자료집 발간, 데이터베이스 관리, 유관기관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평소 국내외 난민 관련 뉴스·동향, 정책·지침 등을 주기적(주간, 월간)으로 발간하여 전국의 난민담당직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난민심사 및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021.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결정한 후, 탈레반이 예상보다 빨리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내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조사관들을 활용하여 아프가니스탄 국가보고서를 발간토록 하였고, 이를 난민심사 및 특별기여자의 국내 정착 지원 업무 등에 활용하였다.

3) 난민위원회 위원 및 난민조사관 전문성 강화

난민심의과 사무관 조승래

그간 난민조사관 뿐만 아니라 난민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사회의 난민동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난민조사관과 난민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였다. 강의는 총 12강으로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이해, 난민법, 그리고 1~4 분과에 대한 소개 등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2021. 12월 법무연수원과 협업하여 제작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4) 난민조사관 연구모임 개설

난민심의과 사무관 안재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국내에 유입되는 난민신청자 출신국가 및 신청사유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국제적 난민심사 기준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고도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난민조사관의 사실조사 전문성 배양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에 더불어 유엔난민기구(UNHCR),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집단과의 상호 소통·이해 확장을 통한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필요성도 대두되어 2021. 2월 난민조사관 연구모임을 개설하였다.

금년에 '성소수자 난민', '난민의 가족결합', '난민판례 분석' 등 다양한 주제로 총 7회에 걸쳐 연구모임 난민조사관과 일선 난민업무 거점기관 실무 담당자와의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난민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는 민간 난민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전문가 그룹 워크숍을 2회 개최하는 등 난민업무 관계자 간 상호 연구자료 공유 및 토론을 통해 난민조사관의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이해·소통도 확장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불어의 6개국 언어로 「난민 이의신청 절차 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난민위원회가 특별행정심판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등 인프라 확보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1차 심사과정에서 미진했던 점이나 추가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난민위원회에 이의신청인이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난민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난민 신청 다발국가에 관한 국가정황정보를 신청 사유별로 통합·정리한 국가보고서 발간 및 배포,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국가정황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외사례 연구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8.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가.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노종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외국인정책[1]은 그 특성상 관련 분야가 많고 정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소관부처별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 ~ 2022년)의 연도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1. 3. 31. '제25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조정을 거쳐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그림 2-149 | 외국인정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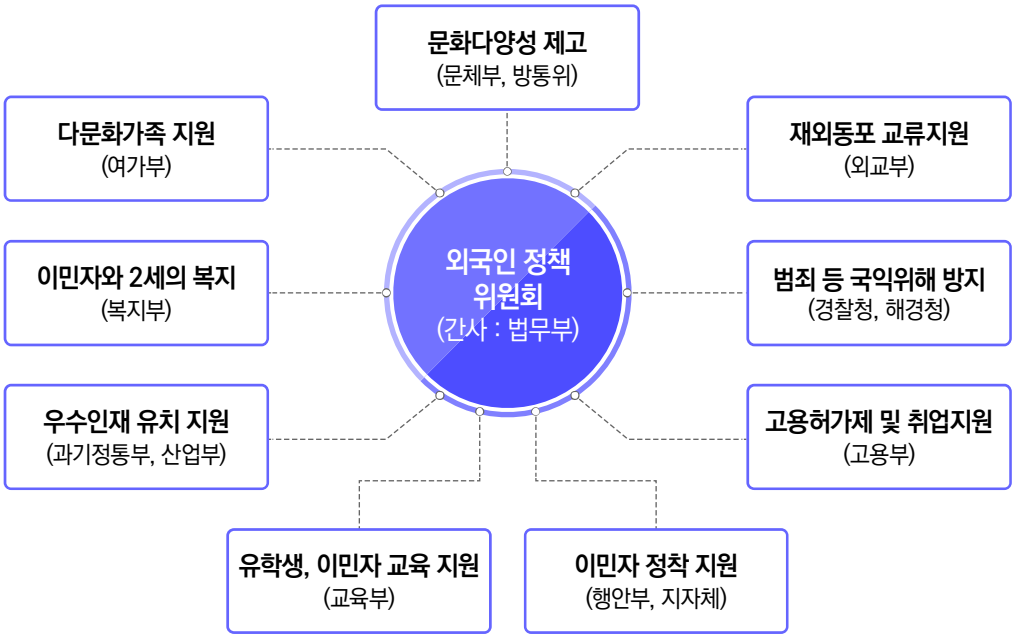

1)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를 의미하며,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국민이 '해외 이민'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민정책' 대신 「외국인정책」으로 호칭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하여 사용

2) 주요내용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5개 정책목표(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를 중심으로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215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5,519억여 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 안내 시스템 구축 및 정주 관련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헬프 데스크(GHD) 운영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를 통한 대학의 국제화 역량 제고 및 다양한 방식의 국내대학 해외 진출 지원제도 마련
- 고용주당 배정인원 상향 등 계절근로자 수혜 범위 확대,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도입 불가 시 대안 마련, 외국인력 신청 사업장의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예: 50이상) 기업에 대한 알선 및 취업 지원을 강화
- 도쿄 및 베이징올림픽 연계 환승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환승프로그램 운영, 포스트 코로나 대비 수요 회복 활성화

나)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방문예약 운영기관 확대,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전자민원 확대를 통한 업무 효율성 및 민원 편의 제고
- 사회통합 관련 강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원,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고품질 교육 인프라 구축
-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 공교육 진입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업 강화, 학교생활 및 사회 적응 지원 확충
-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의 위원에 외국인주민을 위촉하여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활동 기회 확대

다)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 바이오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바이오정보 활용 체계 강화,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및 이용 대상 확대
- 코로나19 상황 고려한 광역단속팀 주관 범정부적 단속체계 구축 추진
-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및 순찰 강화, 외국인 주민단체 등과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라)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이민자 차별 유형 및 구제 수단 등에 대한 구체적 제도 마련, 인권침해·차별·역차별 조사 및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 외국인선원 근로 실태조사, 농축산어업 외국인 근로자 대상 범죄피해 예방 교육, 외국인 인권보호 센터 및 외국인 인권자문단 운영을 통한 농축산어업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및 선도교사 역량강화 등 세계시민교육 지속적 확산
- 동포밀집지역 동포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확대, 고려인 동포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등 재한 동포지원 인프라 확충

마)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 송출국의 귀국 촉진 노력을 송출국별 도입규모 결정과 연계하는 등 송출국의 책임성 강화, 원활한 귀국을 위한 홍보 강화를 통한 단순직 종사자 귀환체계 강화
- 중앙부처·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사회 발전과 국익에 기여한 특별공로자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외국인정책 협력 증진
-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이해 과정 교육 기회 확대,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국가·지자체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등 공무원 교육 강화
- 각종 이민행정 기록을 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이민행정 통계 및 정책기초 정보로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 정보분석 및 통계시스템 구축

| 표 2-136 | 과제 및 예산규모 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2021년 / 정책목표	합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합계	1,215	551,905	170	306,147	1,045	245,758
1. 개방	117	220,340	42	176,101	75	44,239
2. 통합	698	178,875	38	30,398	660	148,477
3. 안전	43	17,618	24	17,086	19	532
4. 인권	287	51,462	43	16,668	241	34,794
5. 협력	73	83,610	23	65,894	50	17,716

나. 2021년 정책발표회 개최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박래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1. 12. 10. 외국인정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출입국행정의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 직원이 참여하는 정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 이래로 매년 출입국·이민실무 정책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출입국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정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1년 정책발표회에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총 51개 과제를 제출할 정도로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였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 과제가 본선에 진출하였다. 2021. 12. 10. 개최된 정책발표회에서는 '가상계좌 활용 현금 온라인거래 서비스'이 최우수상을, '출입국외국인 행정업무 효율성 강화 방안'과 '통계 정비를 통한 데이터 가치 사슬 구현'이 우수상을, '우범선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항만보안 강화 방안'과 '장기보호외국인 등에 대한 대안적 보호제도 검토', 'K-ETA정보 ICRM연동을 통한 업무효율성 확대 및 K-ETA 정보 빅데이터 구축 방안 '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정책발표회는 장관님이 참석하시어 정책에 대한 조언과 함께 발표자들을 격려하셨다.

| 그림 2-150 | 제24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발표회





다. 2021년 이민정책포럼 개최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박래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2007. 8. 29.부터 수요정책포럼이 시작되었다. 2016. 3. 24. 이민정책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제 및 발표방식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였고, 2017. 9월부터 외부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하여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 e나라도움 화상회의를 활용하여 일선 기관 직원들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하반기 부터는 기존 대면방식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운영하였다.

2) 주요내용 및 평가

2021년 이민정책포럼을 통해 학자, 연구원, 정책담당자 등 외국인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하였고, '인구학 이론', '인구전망과 한국사회의 미래', '중국의 해외동포정책', '귀환이주와 재외동포 정책 방향', '세계미래보고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인재' 등을 주제로 초청 강사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이민정책 환경과 세계적 이민정책 동향을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듣고 토론을 함으로써 정책추진 역량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는 등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그림 2-151 | 2021년도 이민정책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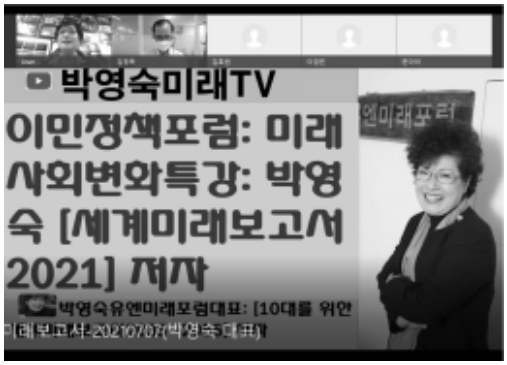



라. 국제협력 강화

출입국기획과 주무관 송지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의 이민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여 대혼란의 시기에 대비하였고, 코로나19로 급변한 국제사회 속에서 이민당국으로서 내국인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GCM 이행점검 회의, OECD 라운드테이블, IOM 고위급회의 등에 참여하여 전 세계적인 이민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정착난민 실무회의에 참석하여 재정착 난민 관련 사례를 공유하였다.

코로나19 발생 후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전한 체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국공관과의 업무 협의를 지속해 나갔고, 초국경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 대테러실과 회담을 갖고 대테러 협력 분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 주요내용 및 평가

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국제이민협력

급변하는 세계이민동향에 발맞춰 국제기구에서 이민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개선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 동향 파악 및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21년 한 해 동안 제6차 ANDEX 회의,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GM 회의, GCM 이행점검 회의, ACTR회의, OECD 라운드테이블, IGC 실무회의, IOM 고위급 회의, GCR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그림 2-152 | 국제회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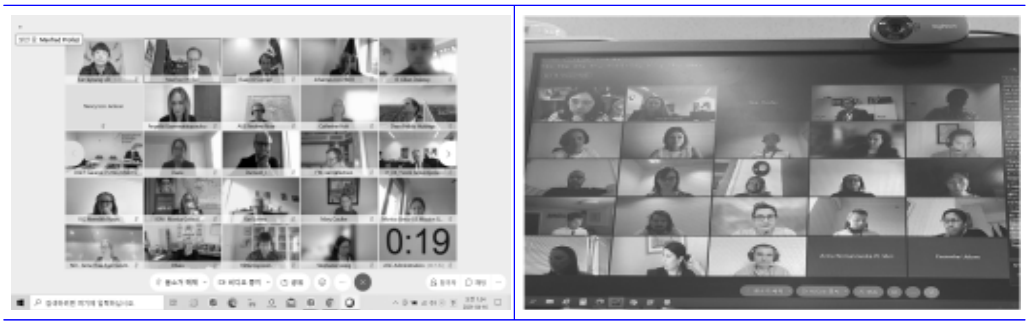



IOM 총회(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GOM 이행점검회의(국적·통합정책단장)

나) 양자협력 강화 및 교류 다양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해외 이민당국과 실질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주요 협력국 이민당국의 수장을 초청하여 출입국관리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후 대면 회의가 불가능해져 실무진들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업무 협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외국의 유관 기관과의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현안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다발국가, 인력 송출국가 등 우리나라와 이주 관련 현안이 많은 국가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국제이민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편의를 지원하고 이민당국 간 현안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시적 공식채널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유엔대테러실(United Nations office of Counter Terrorism, UNOCT)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국경의 경계가 불분명한 현대사회에서 초국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선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대테러 분야의 전세계적 공동 대응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 그림 2-153 | 고위급 회담



출입국본부장-우즈베키스탄 노동부장관 고위급 회담



출입국본부장-유엔대테러실(UNOCT) 센터장 면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하자 코로나19의 사각지대로 평가받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돕기 위하여 주한 외국공관원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무료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 홍보를 하고 해당국 자국민들로 하여금 접종 독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한 공관은 우리와의 면담 후 대사관내 자국민과 소통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자국민들에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등 자국민 보호에 힘썼다.

| 그림 2-154 | 주한 공관원 면담



주한태국대사관 면담



주한중국대사관 면담

9.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

● 이민정보과 사무관 임동영

가. 외국인 명의 휴대폰 보이스피싱(대포폰) 악용 사전 방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20년 한해 약 4만여건, 피해액은 7,000억원 발생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고, 단기체류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가입하는 선불폰은 한번 개통하면 외국인이 출국해도 정지되지 않고 사용 가능하여 이를 악용한 휴대폰 범죄 차단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1. 4. 1.부터 출국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

통신진흥협회)와 공유하여, 외국인 가입자가 출국하면 즉시 차단 되도록 하여 대포폰 등으로 악용을 방지하였다. 그 결과, 시행일 이후 총 172,412건의 외국인 명의 휴대폰을 해지 및 정지 조치하였다.

| 그림 2-155 | 외국인 휴대폰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정보연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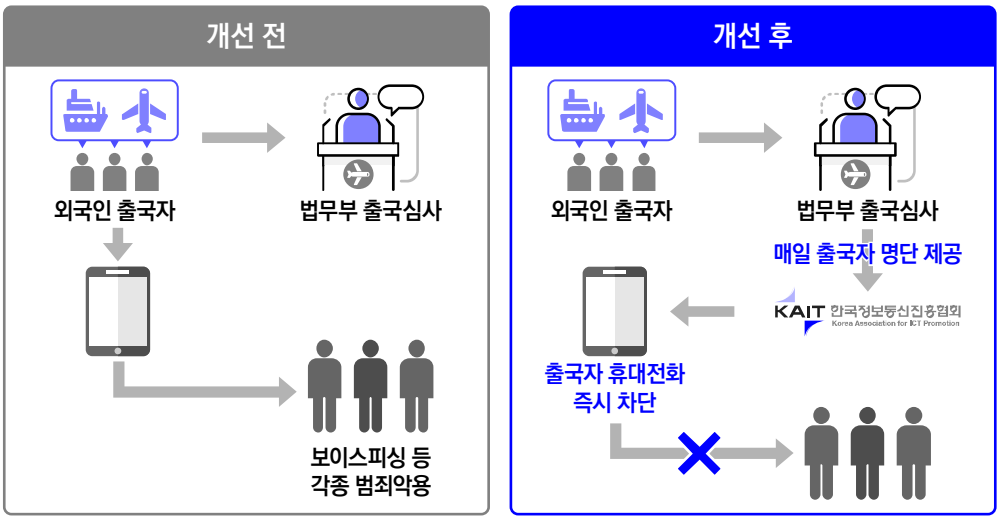

| 표 2-137 | 외국인 휴대폰 차단 조치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계	선불폰	후불폰
	차단조치	정지(출국)	해지(완전출국)
합 계 (2021. 4. 1. ~ 12.31.)	172,412	26,116	146,296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휴대폰 가입 외국인의 출국정보를 매일 공유하여 외국인 명의 휴대폰 부정 사용 원천 차단에 기여하였고, 후불폰 가입 외국인뿐만 아니라 선불폰 가입자의 휴대폰도 출국 즉시 차단 조치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기부와의 정보연계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연계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22년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의 휴대폰 가입과 관련한 명의도용 차단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10.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빅데이터를 통한 외국인정책 추진 지원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사무관 최성은

가.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신설

외국인 신원정보를 표준화하고 외국인 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생성·관리하기 위하여 2021. 7.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벤처형조직으로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를 신설하고(~ 2023. 5. 31. 존속), 과장(4급) 이하 총 7명(5급 3명, 6급 1명, 7급 3명)을 배치하여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 정보를 결합·분석·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 표 2-138 |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신설 경과

시기	신설 경과
2021. 1.	• 「외국인 신원확인 및 정보공유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신원정보 통일적 기준 마련 권고
2021. 2.	• 2021년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혁신과제로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구현」 제출
2021. 4.	• 2021년 벤처형조직 아이디어 혁신과제로 선정(행안부)
2021. 7.	•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신설

| 그림 2-156 | 법무부장관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방문 및 직원 일동



법무부장관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방문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직원 일동

나. 주요 추진내용

1) 외국인 빅데이터 분석과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출입국·외국인정책 현장에서의 외국인 빅데이터 분석 수요, 현안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2021. 9. 8.부터 2021. 9. 24.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빅데이터 분석과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2021년 빅데이터 분석과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총 19개의 과제가 제출되었으며, 참신성, 내용의 충실성, 적용 범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그 중 '통계정비를 통한 데이터 가치사슬 구현'이 최우수상, '외국인 공공 마이데이터를 위한 전자문서지갑 도입', '민원데이터분석을 통한 출입국 FAQ 개발'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공모받은 빅데이터 분석과제는 실현가능성, 효과성, 과제 융합 가능여부 등 검토하여 2022년 외국인 정보 종합플랫폼 ISP 사업에 반영할 과제 선정에 참고할 계획이다.

2) 맞춤형 외국인 빅데이터 교육과정 운영

2021. 10. 18., 11. 15. 총 2차례에 걸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업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대상으로 외국인 정보 빅데이터 분석 교육과정을 5일간 운영하였다. 1, 2차 교육과정에 총 40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열의를 보였으며,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외국인정책 추진에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표 2-139 | 2021년 외국인 빅데이터 교육과정 운영 현황

일자	교육주제	교육내용
1일차	데이터과학 기초 사례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	• 데이터에 대한 정의 • 데이터과학 및 연구데이터의 중요성
2일차	메타버스의 이해 빅데이터 분석 개론 데이터 활용 교육	• 메타버스의 개념과 동향 • 사례 기반 빅데이터 분석 이해 •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방법
3일차	데이터 분석도구 이해 (기초 분석 및 활용 이해)	• R 소개와 활용 사례 소개 • R 및 R Studio 설치 및 활용 실습 • 데이터 구조 이해, 전처리 과정 실습
4일차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분석 및 활용 실습)	• 빅데이터 가시화 실습 • 빅데이터 분석 실습 • 빅데이터 활용법 실습
5일차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분석 및 활용 실습)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전처리 실습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변환 및 검색처리 실습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통계 분석 및 가시화 실습

3) 범정부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1차 협의체 구성

각 부처·기관 등의 외국인 신원정보 입력·표기 방식이 상이함에 따라 업무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1. 12. 14. 형사사법기관[법무부(보호, 교정, 출입), 검찰청, 경찰청, 법원,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범정부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추진을 위한 1차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2022년에는 1차 협의체에 이어 주요 외국인정책 관련 기관(고용부, 복지부, 교육부, 국세청, 국정원 등)을 대상으로 2차 협의체를 추가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외국인 신원정보 생성, 관리 등 현황 조사, 외국인 신원정보 표준화 실현 가능성 등을 활발히 협의하여 국제표준화된 외국인 신원정보를 각 부처·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4) 「외국인 종합정보플랫폼 구축 ISP」 사업자 계약

관계부처 외국인정보의 생성, 관리, 이용, 변경, 폐기 등을 표준화하고, 데이터 결합을 통한 외국인정보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외국인 종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2021. 9월 정보화 전략계획(ISP) 사업 계획 및 제안서 작성, 2021. 10월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 추진, 2021. 11월 조달청 조달 공고를 거쳐, 2021. 12월 ISP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ISP 사업은 2021. 12. 24.부터 2022. 5. 20.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 그림 2-157 | 외국인 종합정보플랫폼 목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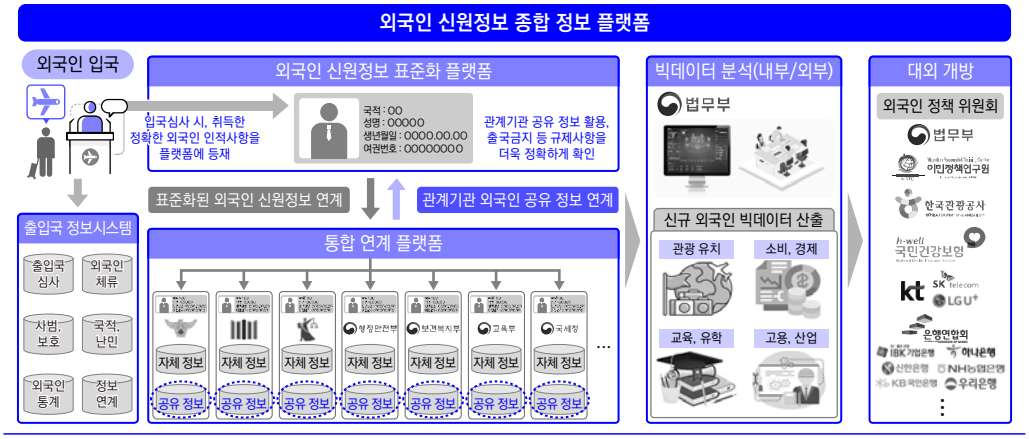

1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해외유입차단TF 운영

● 해외유입차단TF 팀장 이상배

가. 해외유입차단TF 운영

2021. 3. 31. '코로나19 이민 국경안전긴급대응단'에서 출입국기획과 소속 해외유입차단TF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업무는 해외유입차단TF에서 총괄하게 하였다.

해외유입차단TF는 팀장(5급)이하 총 8명을 배치, 주말·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운영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 등 범정부 회의 관리, 대외 협의, 감염병 대응 출입국절차 마련·관리, 방역목적 출입국·외국인 정보 대외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진행상황

해외유입차단TF는 매일 수십여 종의 정형 통계와 비정형 통계를 작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방역 당국에 제공하고 해외 감염병 확산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관계기관 협의체인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 부처 회의'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인 해외 감염병 유입 차단 조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세부 방역절차 마련 시, 탑승객 사전정보시스템 등 전산인프라와 숙련된 출입국심사인력을 활용,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외 감염유입원을 선별적·선제적으로 차단하는 K-방역 업무를 적극 분담하였다.

| 표 2-140 | 해외유입차단TF 주요 조치 사항

연번	일자	내용
1	4. 19.	코로나19 관련 사증발급 통합 기준 시행
2	5. 5.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제도 시행
3	7. 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시행
4	7. 15.	모든 입국자 대상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항공기 탑승 제한
5	10. 7.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접종확인서 발급 시행
6	10. 12.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방안 시행
7	11. 1.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14일→10일)
8	11. 28.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시행

다. 주요지시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4. 19.	75세 이상 외국인 예방접종 관련 신청안내문 등 배포	• 75세이상 외국인 대상, 예방접종 안내문 번역본(8개 언어), 예방접종 신청안내문(13개 언어) 배포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4. 19.	코로나19 관련 사증발급 통합 기준 시행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관련 장·단기사증 발급기준을 일부 개선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5. 4.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검역 및 입국절차 시행' 알림	• 국내에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1회 접종 백신은 1회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국내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6. 1.	외국인 보호시설 월1회 코로나19 대응 모의훈련 실시 및 결과 제출 지시	• 외국인보호시설이 있는 전 기관 대상, 주기적 훈련을 통한 대응 매뉴얼 숙지 및 개선사항 발굴 목적 모의훈련 실시와 그 결과를 제출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6. 15.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환타 510 캠페인」 준수 지시	• 하절기 냉방기기 운용에 따른 환기 지침 미준수 우려에 따라 「환타 510 캠페인」 준수 재송부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7. 15.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변경 사항 알림	• PCR음성확인서 미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을 제한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7. 28.	방역수칙 준수 등 공직기강 확립 및 통보의무 면제 제도 홍보 지시	•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홍보,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 또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8. 20.	방역강화 대상국가 정부초청 장학생 입국 시 방역강화 협조를 위한 업무 지시	• 방역강화 대상국가의 정부초청장학생 및 KOICA(교육부, 외교부) 유학생에 대해 사증을 발급하되 방역강화 방안으로 입국 시 시설격리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9. 3.	국내체류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제고방안 알림	• 다국어 예방접종 홍보자료(13개 언어)를 제작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 및 외국인보호시설 등을 통한 홍보·안내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10. 29.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에 따른 출입국·외국인기관 운영 계획 시행 알림	• 기존 지역별, 단계별 거리두기 체계가 해제되고 '단계적 이행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 기관별 운영계획 개편	비상안전기획실,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10. 29.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4일 → 10일 단축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11. 3.	코로나19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 인센티브 부여 방안』 12개 외국어 안내문 송부 및 협조 요청	•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금지 유예 안내문(12개 언어) 배포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11. 9.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여행객 방역조치 계획 알림	•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여행안전권역을 이용하여 국내 입국한 사람에 대한 방역조치 계획 송부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11. 30.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등 방역관리 강화 관련 안내 알림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에서 체류·출국·경유한 외국인의 항공편 탑승 차단, 공항·만 도착시 입국불허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12. 2.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에 따른 출입국·외국인기관 운영 계획 변경 알림	• 외국인 보호시설 면회 운영, 소속기관 국적증서 수여식 운영 관련 변경사항 안내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12. 3.	『한국-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여행객 방역조치 안내 알림	• 사이판 또는 국내예방접종완료자로서 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자 격리면제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12. 16.	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자 방역조치 계획 알림	• 여행안전권역(싱가포르, 사이판)를 이용하여 국내 입국자 대상, 사전 PCR 검사 기준 강화 및 자가검사 추가 실시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12. 2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입국제한 등 강화조치 연장(2차) 안내	• 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해 입국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연장 ('22. 1. 7. ~ '22. 2. 3.)	본부 각과, 소속기관	해외유입 차단 TF

제10절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

정부합동지원단 주무관 강지훈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1. 8. 26. “미라클” 구출 작전을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 및 가족 390명(9. 4. 특별기여자 1명(남성) 추가 입국하여 총 391명)이 입국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내 정착지원 업무를 위해 법무부 지원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 표 2-141 | 아프간 특별기여자 입국자 현황

(단위 : 명)

연령 / 성별	합 계	미성년(238)			성년(152)	
		0 ~ 5세	6 ~ 11세	12 ~ 18세	19 ~ 64세	65세이상
합계	390	99	80	59	151	1
남 성	198	58	36	26	77	1
여 성	192	41	44	33	74	0

2021. 8. 27.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긴박하게 대피한 상황, 장기간 이동 및 자가격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가격리 이후, 한국어와 한국사회의 이해 교육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및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2021. 9. 30. 정부합동지원단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훈령 제정에 착수하여 2021. 11. 1. 국무총리 훈령이 시행되었으며, 2021. 11. 8. 정부합동지원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지원단의 단장은 법무부차관, 부단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맡게 되었으며, 법무부 출입국공무원을 주축으로 교육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외국인등록, 각종 체류허가 등 체류자격 취득 지원, 한국사회 이해 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등 사회적응 지원, 국내 교육시설 진학, 학력인정 등 관련 지원, 국내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등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국내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 그림 2-158 | 정부합동지원단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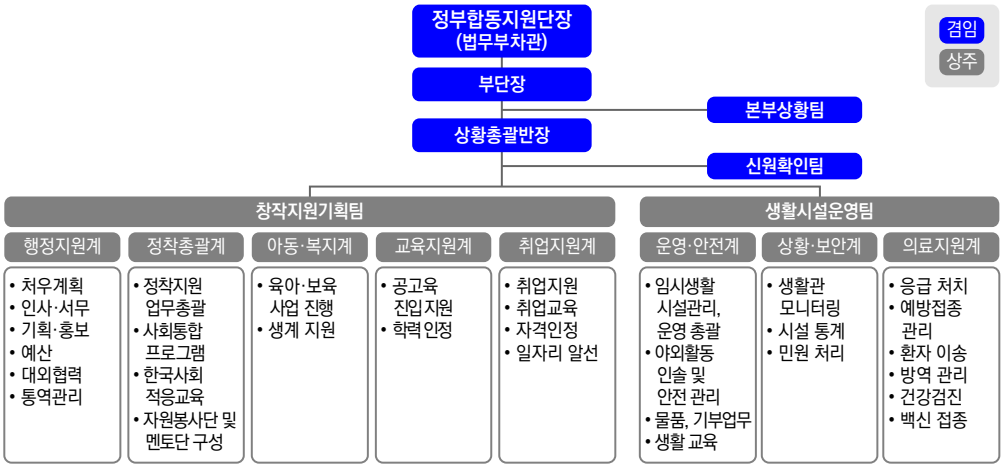

2. 주요내용

가. 아프간 특별기여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추진 현황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사회통합이 핵심이 되는 한국어와 한국사회의 이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정서안정을 위해 심리안정 프로그램과 야외활동을 실시하였다. 사회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등 정착교육 지원은 법무부(성인), 교육부(미성년)가 나누어 진행하고 다양한 문화 체육 및 미디어 교육을 관계부처에서 지원하였다.

| 표 2-142 | 사회적응 교육 추진실적

일자	교육내용
9. 10.	• 전체 교육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9. 11.부터	• 초·중등 아동을 위한 축구교실 시범실시 후 정규교실로 전환
9. 14 ~ 17.	• 초·중등 아동을 위한 태권도교실 시범 실시(93명 신청) ※ 시범실시 이후 추가 수요 발생(총 120명)으로 태권도 협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
9. 18.	• 직능별 취업멘토링 실시 ※ 아프간 바그람 한국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진으로 구성된 단체('바그람 프렌즈')와 함께 근무한 아프간인 대상

일자	교육내용
9. 22.	• 쓰레기 분리수거, 소방교육 등 1일 1 생활교육 시작
9. 22.	• 법무부 교육 반 배정 후 반장 선출을 통한 자치활동 교육
9. 23.	• 성인 대상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시작
9. 23.부터	• 성인 대상 심리지원
9. 25.	• 직능별 취업멘토링 실시 ※ 아프간 바그람 직업훈련원 자문관 초청, 함께 근무한 아프간인 대상
9. 28.	• 가구별·개인별 교육 시간표 배부
9. 29.부터	• (성인)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매일 2시간) 교육 재개
9. 29.부터	• (미성년) 교육부 프로그램(주 2회 일일 2시간) 교육 시작
10. 6.	• 태권도 협회 지원을 받아 아동 대상 태권도 정규프로그램 운영
10. 14.	• 방송통신위원회「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행사
11. 8. ~ 9.	• 국립청소년수련원「찾아가는 가족캠프」운영

| 그림 2-159 | 특별기여자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성인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미성년 대상 교육부 프로그램



태권도 정규 프로그램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행사

나.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한 기부금품 전달

2022. 8. 26. 아프간 특별기여자가 입국한 후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도움이 손길이 이어졌고, 투명한 기부금품 전달을 위해 법무부는 9. 3. 대한적십자사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식적인 기부금품 접수창구를 개설하였다.

이 창구를 통해, 8. 29. 극동방송의 생필품 기부를 시작으로 유아용품, 의류, 학업용품, 노트북, 기부금,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으며, 뿐만 아니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건강한 체류를 위하여 의료봉사의 손길들도 제공되었다.

| 그림 2-160 | 기부 및 의료봉사



법무부-대한적십자사 MOU 체결식



조계종 기부금품 전달식



LG 유플러스 기부금품 전달식



의료 봉사

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취업이 자유로운 장기체류자격 '거주(F-2)' 자격 부여를 위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2022. 10. 26. 개정 및 시행하였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와 관련하여 거주(F-2) 체류자격에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를 개정하여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최단기간 내 자립하여 스스로 경제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같은 처우 및 초기 정착에 필요한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부합동지원단 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취업 지원과 시설 퇴소 이후에도 멘토링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직원 1명당 4 ~ 5가구를 편성, 운영하였다. 부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가구별 정착지원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문 상담 등 수시 면담을 통한 멘토링 결과는 정부합동지원단 참여부처(교육부, 고용부, 복지부)와 공유하였다.

그 결과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 상 긴급지원 대상자로 아프간 특별기여자가 추가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긴급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경력, 희망 직종, 희망 급여 등 심층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지역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취업을 희망하는 업체를 공모하여 특별기여자의 경력을 기초로 각 기업별, 직종별로 개별 채용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차례의 취업설명회와 1차례의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취업 지원을 지속하였다.

3. 향후계획

퇴소 이후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및 지자체 외국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며, 생활법률(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 교육·의료(초록우산어린이재단), 종교·구호(적십자사 등) 민간단체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 서포터즈를 출범할 계획이다.

또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주거 등 복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제11절 중대 안전사고 대응 업무

1.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 구성 및 운영

정책기획단 검사 이수창

가. 구성배경

국민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중대 안전사고 사건 처리 全 과정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21. 7.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하였다.

나. 운영성과

1) 2021. 7.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 구성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하여 3개 분야(총괄 분야, 산업재해 분야, 시민재해 분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 그림 2-161 |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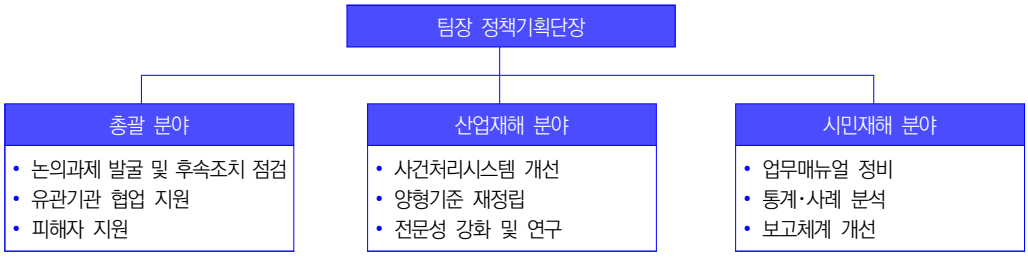

2) 2021.8.~2022.2. 내부 회의(6회), 유관기관 간담회(10회) 등 개최

TF 구성 이후 6회의 내부회의, 10회의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대검 및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국토건설부) 주무부서 등과 TF 구성 취지 및 운영 방향 등을 공유하였으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 TF 주요활동

1) 사건처리 프로세스 점검

발생 단계(보고)에서부터 재판(확정)에 이르기까지 중대 안전사고 사건의 全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처리 과정이나 처벌 수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재점검하였다.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 설치('22. 1.), 대검·고용노동부·경찰청 '중대재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22.1) 등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하였으며, 변사사건 처리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정한 수사를 위한 프로세스 검토하였다.

한편, 대검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과 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강화된 양형기준안을 제정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을 제작하여 일선 검찰청에 배포하였다.('22. 1.)

2)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정립

유관기관과의 협의 하에 강화된 현장 감독·감시 등을 통해 동일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의 자율적 안전체계 마련을 촉진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중대재해 사례 분석집'을 제작·배포하여 현장에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동일 유형 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2. 1.)

※ 법무부, 대검에 '근로자 추락 산업재해 사건 엄정 대응' 지시('22. 1.)

3) 전문성 강화 · 연구

중대재해처벌법의 제대로 된 시행 · 안착 및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하여 검찰 내부의 전문성 및 근로감독관 역량을 강화하였다.

법무부는 법무연수원·대검·고용노동부와 협의 하에 전담 근로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형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22. 1.), 대검에서는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및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중대재해 수사·공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있다.('22. 2.)

| 표 2-143 | 2021년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 주요활동

구분	추진 과제	주요 활동 성과
사건처리 프로세스 점검	보고체계 개선	• 중대 안전사고 보고 방식 · 절차 등 대검 · 고용노동부 협의
	변사사건 지침 개정	• 부검 대상 정비 · 부검시 유족 의사 반영 등 대검 지침 개정 완료('21. 11.)
	양형 기준	• 대검, 일선청 「산재 사망사건 양형기준 준수 등 엄정 대응 지시」('21. 10.) • '양형기준 재정립' 관련 형정원 연구용역 발주('22. 1.)
	피해자 지원	• 법률지원단 상설화를 통한 중대재해 피해 즉각적 · 상시적 지원('21. 10.)
중대재해 예방시스템 정립	사례 분석	•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 발간 및 관련 카드뉴스 제작 · 홍보('22. 1.)
	유관기관 협업	•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 실무진과 핫라인 구축
	기업·현장 방문	• 이천 물류창고, 울산 삼기산업,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현장 점검('21. 9. ~ '22. 1.)
전문성 강화·연구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 법무연수원에 중대재해 전담 근로감독관 심화 교육과정 개설('22. 1.)
	전문가 의견 청취	• 고용노동부와 공동학술대회 및 수사검사 간담회 개최('21. 12.) • 광주 건물 붕괴사건 수사팀 간담회('21. 9.)
	연구 등 전문성 강화	• '새로운 안전주의의무 및 인과관계 검토' 관련 형정원 연구용역 발주('21. 8.) • 대검, 일선청에 중대재해 전담검사 지정 · 운영 지시('22. 2.)
공보 활동	보도자료 배포	•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 구성('21. 8.) ▸ 중대재해 법률지원단 운영('21. 10.) • 울산지검 방문('21. 10.) ▸수사검사 간담회 개최('21. 12.)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개최('21. 12.) 등
	홍보 동영상 제작	• 중대 안전사고 예방 홍보영상 제작·유튜브 게시('21. 12.) • '중대 안전사고 TF' 캠페인 영상을 전국 38개 민간 · 지자체 전광판에 송출('22. 1.)

라. 향후계획

검찰 및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 예정이다.

마. 참고사항

1)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

'17 ~ '18년 900명 중·후반대에서 '19년 855명 → '20년 88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1년은 전년대비 54명 감소하였다.**(882 → 828명)

* 사고사망자(만인율): ('16) 969(0.53) → ('17) 964(0.52) → ('18) 971(0.51)→ ('19) 855(0.46)→ ('20) 882(0.46)→ ('21) 828(0.43)

** 건설업: △41명(458 → 417명), 제조업: △17명(201 → 184명), 기타업종: △4명(223 → 227명)

| 그림 2-162 |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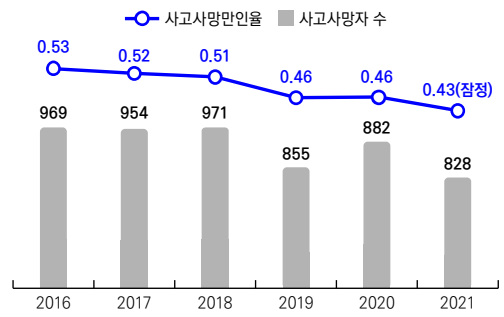

연도별 사망사고 추이('21. 12. 고용노동부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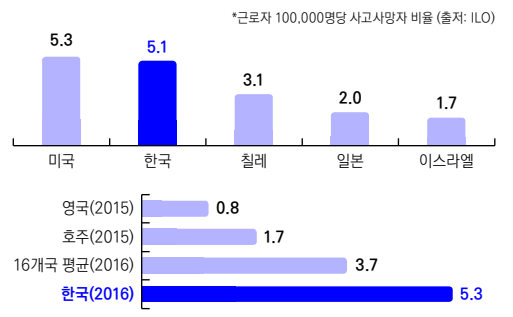

사망사고율 OECD와 비교('18.)

업종·유형별로는 건설업에서 절반 이상 발생하였으며*, 필수보호구 착용으로 예방 가능한 추락·끼임의 재래형 사고**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 건설업 비중(%): ('16) 51.5 → ('17) 52.5 → ('18) 49.9 → ('19) 50.1 → ('20) 51.9 → ('21) 50.3

** 추락+끼임(%): ('16) 48.3 → ('17) 48.5 → ('18) 50.4 → ('19) 53.0 → ('20) 48.3 → ('21) 53.

규모별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의 대부분 발생

* 건설 50억 미만(%): ('16) 65.3 → ('17) 66.2 → ('18) 66.6 → ('19) 66.1 → ('20) 72.3 → ('21) 71.5
제조업 등 50인 미만(%): ('16) 73.2 → ('17) 76.2 → ('18) 77.6 → ('19) 82.2 → ('20) 80.9 → ('21) 78.6

2) 중대 안전사고 관련 형사사건 통계

가) 검찰 사건 처리('21. 대검 통계 기준)

(1) 약식기소 : 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단순 안전조치위반 사건 포함)의 약식명령 청구비율이 '19년 기준 94.3%에 해당 ② 산재 사망사건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비율은 '19년 58.66%, '20년 50.0%임 ③ '21. 4. 개정 양형기준 시행 이후 산재 사망사건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비율은 29.59%(436건 중 129건, '21. 10. 기준)로 대폭 감소하였다.

(2) 기소유예 : 최근 5년간 전체 기소사건 대비 기소유예의 비율이 약 6 ~ 10% 정도로 재범 및 사망사고 발생 개연성에 비추어 그 비율이 높은 측면이 있다.

나) 법원 선고형('15. ~ '19. 중대재해 사망사건 통계 기준)

(1) 대부분의 중대재해사건(약 85%)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2) 벌금형의 양형 또한 대부분(약 83%) 벌금 500만 원 이하에 그쳤다.

제12절 디지털성범죄 대응 업무

1. 실효적인 디지털성범죄 근절 방안 마련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 사무관 정길수

가. 추진배경

202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흉악) 중 성범죄 비율이 91.7%, 그 중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약 24%일 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는 급성장 중인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하여 더욱 음성화·다양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일명 'N번방 사건' 이후 잠시 주춤했던 디지털성범죄는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 표 2-144 | 강력범죄(흉악) 죄명별 발생 현황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단위 : 건)

연도	합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2015	35,139	958(2.7)	1,472(4.2)	1,646(4.7)	31,063(88.4)
2016	32,963	948(2.9)	1,181(3.6)	1,477(4.5)	29,357(89.1)
2017	36,030	858(2.4)	990(2.7)	1,358(3.8)	32,824(91.1)
2018	35,272	849(2.4)	841(2.4)	1,478(4.2)	32,104(91.0)
2019	35,066	847(2.4)	845(2.4)	1,345(3.8)	32,029(91.3)
2020	32,817	805(2.4)	692(2.2)	1,215(3.7)	30,105(91.7)

| 표 2-145 |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단위 : 건)

연도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강간 등 살인/치상	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도 강간 등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 장소추행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등	촬영물등 이용협박·강요등	계
2011	4,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6.7)	285 (1.3)	1,565 (7.1)	-	911 (4.1)	1,750 (7.9)	-	-	22,168
2012	4,349 (18.6)	10,949 (46.9)	1,937 (8.2)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	917 (4.0)	1,332 (5.7)	-	-	23,376
2013	5,359 (18.4)	13,236 (45.5)	1,186 (4.0)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	-	29,097
2014	5,092 (16.7)	12,849 (42.2)	624 (2.0)	8 (0.0)	872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	-	29,863
2015	5,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	-	31,063
2016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	-	29,357
2017	5,555 (16.9)	15,981 (48.7)	144 (0.4)	7 (0.0)	716 (2.2)	34 (0.1)	6,615 (20.2)	422 (1.3)	1,265 (3.9)	2,085 (6.4)	-	-	32,824
2018	5,826 (18.1)	15,672 (48.8)	182 (0.6)	8 (0.0)	655 (2.0)	43 (0.1)	6,085 (19.0)	646 (2.0)	1,378 (4.3)	1,609 (5.0)	-	-	32,104
2019	5,845 (18.2)	15,766 (49.2)	157 (0.5)	2 (0.0)	653 (2.0)	42 (0.1)	5,893 (18.4)	685 (2.1)	1,454 (4.5)	1,532 (4.8)	-	-	32,029
2020	5,825 (19.3)	14,486 (48.1)	102 (0.3)	9 (0.0)	574 (1.9)	274 (0.9)	5,005 (16.6)	697 (2.3)	2,070 (6.9)	906 (3.0)	32 (0.1)	125 (0.4)	30,105

나.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구성 및 운영

법무부는 기획조정실 산하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전담팀)를 구성, 검사 2명(팀장 1명 포함),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을 배치하여 디지털기반의 신종 성범죄 등 성범죄 전반에 대한 형사사법 대응 체계를 피해자 인권 관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TF는 ① 효과적인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 대응체계 확립 ② 효율적인 피해 영상물 삭제·폐기 ③ 맞춤형 피해자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성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대응 전반에 걸친 단계별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이를 위해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그 후 1년' 화상세미나를 개최하여 법무부 간부, 검찰청 전담 검사, 판사 등이 함께 디지털성범죄가 더욱 다양화된 플랫폼에서 음성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행해지는 현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하였고, 군(軍)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무부-국방부 업무협약식 체결을 통해 국방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다.

| 그림 2-163 |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



국방부 업무협약식

또한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행동 유도를 위해 직접 캡처하여 신고하자는 메시지의 '캡처 합시다' 캠페인용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세바시 정책 강연을 통해 대국민 인식변화를 이끌어 왔다.

| 그림 2-164 |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및 정책 강연



법TV 디지털 성범죄 근절, 국민과 법무부가 함께 합니다. "캡처합시다."
법무부TV · 조회수 2.7만회 · 2주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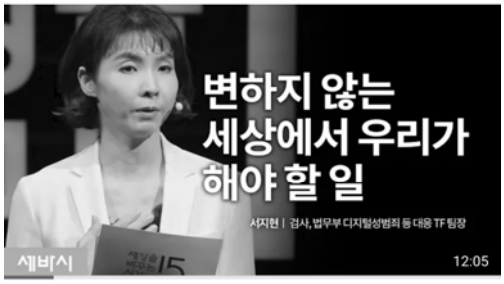

세바시 바뀌지 않는 세상 앞에서 절망하지 않으려면 | 서지현 검사,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 |…
세바시 강연 Sebasi Talk · 조회수 2.5만회 · 3주 전

이와 더불어 'YTN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21.8., 12. 2회), 경향신문('21.8.),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21.9.), 'KBS 시사기획 창'('21.10.) 등 기획 인터뷰와 언론사 토론회('21.11.) 개최로 국민들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상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다.

| 그림 2-165 | 디지털성범죄 예방 관련 기획 인터뷰



YTN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MBC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다.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활동

디지털성범죄는 정보네트워크(ICT) 기술을 악용하여 반사회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그 주된 피해자는 청소년과 청년들인바, 피해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열정 있는 청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평균나이 36세)를 발족('21.8.13.)하였다.

IT·시민사회·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전문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였고,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 및 자문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21.10.6.)하여, 법률·기술 1·2·3분과위원회, 교육홍보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총 22회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처벌의 실효성 강화와 피해자 지원 제도 분야에서 다양한 개선안을 전문위원회에 제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총 8차례 전체 회의를 통해 모두 3차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ONE-STOP) 시스템 구축」(1차권고), 「불법 영상물 등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수사기관의 응급조치 조항 신설」(2차권고), 「성범죄 관련 보도시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콘텐츠 제작시 가이드라인 및 사전 감수 방안 마련」(3차권고)이 그 권고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무부·여가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간 벽을 허물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일명 '응급조치 신설' 관련 3법 개정은 의원(홍정민) 입법으로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한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보도 등 기준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주요 언론사의 성범죄 보도 관련 실태 점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감수를 위한 '인권·젠더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듯 법무부와 국회에서는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성범죄 전반의 형사사법체계 시스템을 점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피해자 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실효적인 디지털성범죄 등 근절 대책을 위한 법제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 표 2-146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활동

회차	일자	제목	권고요지	진행상황 등
1차	10. 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ONE-STOP 지원	• 성범죄 피해자 원스탑(ONE-STOP) 지원 체계 정비 및 각 부처간 협의체 구성 (중장기적 피해자 중심 통합 지원 가능 별도 독립기구 신설) • 법무부 내 피해자 지원 신청 접수창구 일원화 시행 • 각 부처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책 협의체 구축 및 통합 안내문 제시 등 ※ 현행 법제상 법죄피해자보호법, 법률구조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 방지법 등 피해자 개별 지원 중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등 각각 업무 수행)	'21.12. 사회관계 장관회의 안건상정 '22. 1/4분기 실무협의체 구성
2차	10. 28.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차단을 위한 '응급조치' 신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피해영상물 삭제·차단과 관련된 응급조치 규정 신설 • 수사기관 직접 해당 영상물 채증,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및 경고 권한 • 전기통신사업법에 삭제·차단 요청 불응시 제재 조항 신설 • 플랫폼 등에 범죄행위 제지 및 처벌 경고 현출 위한 기술적 조치 점검, 개발 및 세부 매뉴얼 마련	'21.12. 홍정민 의원 입법 발의
3차	11. 22.	법무부 홍보물 성폭력 가이드라인 제정	• 법무부 내 성범죄 관련 간행물, 보도·홍보물 기획·제작·발행 전 과정에서 준수할 구체적인 기준 명시한 가이드라인 필요 • 각 단계마다 보도·홍보 준칙 실천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사전점검 수행 및 선제적 대응 가능 전담 창구 마련	'22.1. 부내 의견조회 '22.2. 가이드라인 제정 및 감수 절차 (인권·젠더데스크) 운영

제13절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1.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운영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서기관 조연호

가. 배경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정부의 계속되는 아동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불안 증대에 따른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21. 2. 22.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책임기관인 법무부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중대 아동학대 사건대응 실태를 조사하여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기구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하였다.

나. 구성 및 업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장(고위공무원)이 단장을 겸임하고, 여성·아동범죄 전문가인 검사를 팀장으로 하여 행정·검찰·보호·교정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하였으며,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아동학대 관련 법령정비 및 대응인력 역량 강화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그림 2-166 |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현판식





2.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가. 중대 아동학대 사건 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검사 서혜선

1) 개요

「아동학대처벌법」상 법무부장관의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권한을 근거로 중대 아동학대 사건 관련 통계 등 자료를 취합·분석하고, 사건관계인 면담·질문권을 적극 활용하여 '19년 ~ '20년에 발생한 중대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여 기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실패한 구조적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21. 3.부터 5.까지 중대 아동학대 사건 조사를 위한 사건 선정 및 기초 사건자료 분석 등을 위한 계획수립,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업무협의, 아동학대 사건 통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21. 3.부터 9.까지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지자체·경찰·검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사건 관련 기관에 수사·재판 자료를 요청·확보하여 검토·분석한 후, '21. 7.부터 10.까지 사건관계인과 기관에 대한 서면·대면조사를 진행하였다.

'21. 6.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보호 및 가해자 관리 등을 위한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1. 12. 중대 아동학대사건 보고서와 관련한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단[1]'의 의견 청취 후 이를 반영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나. 아동인권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사무관 박상열

1) 개요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법 체계에서 초기대응은 경찰과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수사-기소-재판-재범방지-친권제한 등

1) 2021. 3. 19. 법조계·학계·의료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16명을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아동인권보호에 전문위원단의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 활용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대책은 부재하였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건 중 약 70%는 형사사건화 되지 않아 재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 보호처분, 형사판결 등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사법적 조치가 미흡한 상황임을 판단, 지역사회 다양한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참여하는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아동학대 가해자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정한 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그림 2-167 | 아동학대 형사사건화 비율 및 사건관리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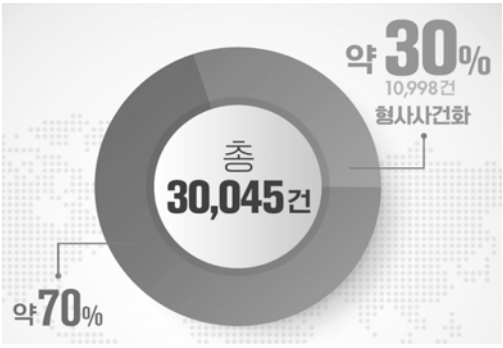

아동학대 형사사건화 비율



사건관리 회의

2) 추진내용과 성과

’21. 3.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하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권고하였으며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21. 5. 아동학대 가해자의 재범방지 역할을 하는 보호관찰관과 피해아동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해자의 효과적 관리 및 피해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간 MOU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 협업 우수사례들을 발굴하여 ’21. 12.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지역사회 아동학대 대응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업을 유도하였다.

| 그림 2-168 | 현장방문사진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방문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방문

다. 선진적 아동인권 보호체계 구축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사무관 박천성, 김경모

1) 개요

아동학대 대응인력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및 경찰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상대로 권역별 합동교육을 실시하였고,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정비도 적극 실시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21. 1. 26.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서 사법경찰관리로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단일 집합교육에서 권역별 유관기관 합동 교육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 향상과 대응 주체 간 소통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21. 5.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주요 책임자인 검사를 상대로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 전문성 및 공익의 대표자 역할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21. 11.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위탁시설 종사자의 법적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추진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이러닝(e-learning)으로 전환하는 대신 교육 대상 인원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실시하였다. 교육집중도가 저하되는 이러닝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일방향 교육에서 쌍방향 실시간 교육으로 교육방법을 변경하였으며, 강의 시간 내 질의·응답시간을 운영하고 교육대상자의 질의에 전문강사진이 즉시 피드백하는 등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살해죄 및 피해아동 국선변호 의무화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1. 3.) 및 현장조사 거부 과태료 상향(500→1,000만원) 등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였다.

| 그림 2-169 | 교육 진행경과

- '21. 4. 27. 충청권 아동학대 대응인력(28명) 교육(법무연수원)
- '21. 5. 27. ~ 28. 전라·경상권 아동학대 대응인력(145명) 교육(온라인)
- '21. 5. 31. ~ 6. 1. 전국 아동학대 전담검사(31명) 전문교육(법무연수원)
- '21. 6. 24. ~ 25. 경기·인천권 아동학대 대응인력(63명) 교육(온라인)
- '21. 8. 26. ~ 27. 서울권 아동학대 대응인력(49명) 교육(온라인)
- '21. 10. 28. ~ 29. 전국권역 아동학대 대응인력(77명) 교육(온라인)
- '21. 11. 25. 피해아동 보호위탁 시설 종사자(73명) 교육(온라인)

| 그림 2-170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



아동학대 전담검사 교육



아동학대 대응인력 온라인 교육

法務年鑑

03



법령정비

제1절 개관
제2절 법률
제3절 대통령령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제1절 개관

구분 / 연도	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소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소계	부령
2010	72	16	9	4	3	56	19	12	25	-	-
2011	67	9	1	3	5	58	11	21	26	-	-
2012	58	7	2	3	2	51	10	24	17	-	-
2013	59	3	1	1	1	56	14	14	28	-	-
2014	83	8	1	4	3	75	27	26	22	-	-
2015	59	4	1	2	1	55	10	19	26	-	-
2016	80	5	3	1	1	75	24	26	25	-	-
2017	70	3	-	2	1	67	23	20	24	-	-
2018	58	1	-	1	-	57	19	23	15	-	-
2019	51	2	-	1	1	48	9	24	15	1	-
2020	71	2	-	1	1	69	27	25	17	-	-
2021	86	9	2	3	4	76	27	24	25	1	1

제2절 법률

Ⅰ. 제정법률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12. 30. 정부안 제출
2021. 3. 24. 국회의결(수정 가결)
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공포
2021. 10. 21. 시행

다. 주요내용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그림·부호·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함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함
-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의 스토킹행위를 금지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이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함
-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도록 함

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종이 기반의 현 형사사법절차는 사건관계인의 기관 방문을 필요로 하고 열람·복사 불편 등으로 기록검토가 어려워 방어권 보장에 취약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 필요성 대두

나. 추진경과

2021. 1. 29. 법률안 국회 제출
2021. 9. 28. 법률안 국회 통과
2021. 10. 19. 법률 제18185호로 공포(공포 3년 후 시행)

다. 주요내용

- 전자화된 기록을 제조·유통
  - 모든 사건 진행내역이 시스템에 저장되어 절차가 투명화
- 증거제출, 증거기록 열람 등 온라인을 통한 업무처리 도입
  - 사건관계인 출석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업무가 확대되어 편리한 형사사법환경 조성
- 전자기록을 기관 간 송부하고, 사건관계인에게 전자적 송달·통지
  - 종이기록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신속한 형사절차 진행

Ⅱ. 개정법률

1. 형사소송법(1)

가. 추진배경

○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4. 26. (채이배 국회의원) 제안
2020. 1. 13. 국회의결(수정 가결)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공포
2021.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함
○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가 하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경무관, 총경 등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함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함
-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음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2. 출입국관리법(1)

가. 추진배경

- 2020년 2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조항 삭제

- 출국명령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는바, 출국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 범칙금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일시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구제책 마련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6. 16. (백혜련 국회의원) 제안
2020. 9. 24. 국회의결
2020. 10. 20. 법률 제17509호로 공포
2021. 1. 1. 시행(일부 1. 21. 시행)

다. 주요내용

-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검사의 수사지휘서가 아닌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
- 출국명령시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납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가. 추진배경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경과

2020. 10. 27. (이형석 국회의원) 제안
2020. 12. 9. 국회의결(수정 가결)
2021. 1. 5. 법률 제1782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이 법의 목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를 명시하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 추진배경

○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강화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족폭력의 심각성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하지 않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6. 12. (김도읍 국회의원), 2020. 6. 16. (정춘숙 국회의원), 2020. 6. 19. (양경숙 국회의원), 2020. 9. 1. (서영석 국회의원) 제안
2020. 9. 2. (송기헌 국회의원) 발의
2020. 9. 24.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등을 추가함
-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그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함
-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 조치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조치에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함
- 검사도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며,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추가하는 한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을 연장함
-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 추진배경

-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바, 현행 법무부령에 규정된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자질이 우수한 진술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 배치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또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의 공개·누설죄는 강력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비하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는바,

성폭력범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 처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6. 2.(백혜련 국회의원), 2020. 6. 17.(신동근 국회의원), 2020. 7. 8.(송갑석 국회의원) 제안
2020. 9. 24.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0. 10. 20. 법률 제17507호로 공포
2021. 1. 21. 시행

다. 주요내용

- 진술조력인 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를 규정함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6. 민법

가. 추진배경

-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10. 16. 국회제출
2021. 1. 8. 국회의결
2021. 1. 26. 법률 제1790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조항 삭제(제915조)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

가. 추진배경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현장출동,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

나. 추진경과

2020. 6. 23.(서영교 국회의원), 2020. 7. 21.(최혜영 국회의원), 2020. 8. 3.(신현영 국회의원), 2020. 11. 5.(강기윤 국회의원), 2020. 10. 28.(김미애 국회의원), 2021. 1. 5.(김병욱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제안
2021. 1. 8. 국회 의결(대안 가결)
2021. 1. 26. 법률 제17087호로 공포·시행(일부 조항 2022. 1. 27. 시행)

다. 주요내용

-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
- ○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장소 확대
- ○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분리조사
- ○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조사 결과 상호 통지
- ○ 아동학대행위자 등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 응급조치 기간 연장,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권한 명시
- ○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종료 사실의 통지
- ○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 추가
- ○ 벌금 및 과태료 법정형 상향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합리화하고,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등을 신설하여 집합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 ○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전유부분이 일정 수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영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경과

2019. 7. 19. 정부안 국회 제출
2021. 1. 9.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1. 2. 5. 법률 제16919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는 등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
-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를 신설하여,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함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이 자신의 선임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 및 행정청의 감독 가능성을 제고함
-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경과

2020. 11. 26. (박주민 국회의원) 제안
2021. 2. 26. 국회의결(수정 가결)
2021. 3. 16. 법률 제1793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함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결정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11. 26. 송기헌의원 등 10인 제안
2021. 2. 25.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2021. 2. 26. 국회 본회의 의결
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제1조 중 "「형사소송법」 제197조"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으로, 제3조 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을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형사소송법」 제196조제5항"을 "「형사소송법」 제197조제2항"으로 각각 개정

1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3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11. 26. 소병철의원 등 10인 제안
2021. 2. 25.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2021. 2. 26. 국회 본회의 의결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경미사건(장기 2년 미만 사건)이나 소년사건 불송치 수사경력자료를 4~6개월 후 삭제

1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경과

2020. 11. 26. (백혜련 국회의원) 제안
2021. 2. 26. 국회의결(수정 가결)
2021. 3. 16. 법률 제1793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집행의 금지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함

13. 출입국관리법(2)

가. 추진배경

○ 2020년 2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나. 추진경과

2020. 11. 26. (박범계 국회의원) 제안
2021. 2. 26. 국회의결
2021. 3. 16. 법률 제1793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의 출국 금지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추가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가. 추진배경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가중처벌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6. 9.(김원이 국회의원), 2020. 6. 11.(정춘숙 국회의원), 2020. 7. 8.(이원욱 국회의원), 2020. 7. 16.(태영호 국회의원), 2020. 7. 27.(신동근 국회의원), 2020. 9. 16.(인재근 국회의원), 2021. 1. 5.(노웅래 국회의원), 2021. 1. 6.(이주환 국회의원), 2021. 2. 10. (전주혜 국회의원) 제안
2021. 2. 25.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가결
2021. 2. 26. 국회의결
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아동학대살해죄 신설(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화

1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11. 26. 국회제출
2021. 2. 26. 국회의결
2021. 3. 16. 법률 제1793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간주 사유에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를 추가하되, 사건이 재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 간주 사유 적용에서 제외(제13조 제7항)

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수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소년 등이 공동생활 외에 1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는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며, 의료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에서 출원(出院)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외래진료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도 매주 1회 이상의 체육활동을 보장하여 보호소년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7. 3. 국회제출
2020. 9. 24. 국회통과
2020. 10. 20. 법률 제17505호로 공포·시행(제54조 즉시 시행)
2021. 4. 21. 법률 시행

다. 주요내용

○ 보호소년 등 1인 생활의 근거 마련
- 보호소년·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 희망하거나 특별히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근신 중인 보호소년 등의 체육활동 보장
- 보호소년 등이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개별 체육시간을 보장하고,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
-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처우심사위원회에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였으나, 보호소년 등의 징계결정 시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둠

○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소년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하여금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 출원생을 위한 무료 외래진료 제도 도입
-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의료재활소년원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소년원장이 검사·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을 법무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근거 마련
-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이 소년원 수용 중에 22세가 되거나 같은 법에서 정한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하여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이후 3년 간 법무부장관이 관계기관에 그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조회를 요청 가능하도록 하여, 소년원 퇴원생의 재범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육이 재범 방지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17. 출입국관리법(3)

가. 추진배경

○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97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

나. 추진경과

2020. 9. 29. (권인숙 국회의원), 2020. 11. 5.(양금희 국회의원) 제안
2021. 6. 29. 국회의결
2021. 7. 13. 법률 제18295호로 공포
2021. 7. 13. 시행

다. 주요내용

○ 출국금지 사유에 개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을 추가하여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

1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종료사실 관련 정보를 경찰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20. 12. 11. 국회제출
2021. 6. 29. 국회의결
2021. 7. 20. 법률 제18299호로 공포·시행(2022. 1. 21.)

다. 주요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진단 또는 감정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제36조의2제1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에 관한 사항을 보호관찰심사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제36조의2제2항)

19. 형사소송법(2)

가. 추진배경

- ○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됨에 따라 법관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이른바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됨
- ○ 1954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나. 추진경과

2020. 7. 1. (박주민 국회의원), 2020. 7. 29.(윤한홍 국회의원) 제안
2020. 11. 19.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공포
2021. 12. 9. 시행(일부는 최초 공소장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

다. 주요내용

- ○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를 제척사유에 포함시킴
- ○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

20. 형사소송법(3)

가. 추진배경

-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
- 최근의 전자통신·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재판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비대면' 방식으로 각종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그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영상재판 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거나 증인신문 또는 고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12. 7. (최기상 국회의원) 제안
2021. 7. 23. 국회의결(수정 가결)
2021. 8. 17. 법률 제18398호로 공포
2021. 11. 18. 시행

다. 주요내용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구속이유 등의 고지절차, 증인신문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21. 형법

가. 추진배경

- 1953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형법은 형사실체법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많은 형사 관련 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형법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은 형사 관련 특별법 등 다른 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7. 22. (윤한홍 국회의원), 2020. 11. 5. (민홍철 국회의원) 제안
2020. 11. 19.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공포
2021. 12. 9. 시행

다. 주요내용

-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

22. 형사소송법(4)

가. 추진배경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개정「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법률 제16924호, 2020. 2. 4. 개정, 2022. 1. 1. 시행)의 적용과 관련하여,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경과

2021. 9. 30. (박주민 국회의원) 발의
2021. 12. 9. 국회의결(수정 가결)
2021. 12. 21. 법률 제1859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개정「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이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도록 함

2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가. 추진배경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신속·공정·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
○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공소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1. 6. 28. (송기헌 국회의원) 제안
2021. 12. 9. 국회의결(수정 가결)
2021. 12. 28. 법률 제1865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함

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을 함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 등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발급 등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1. 11. 11. 국회제출
2021. 12. 9. 국회의결
2022. 1. 1. 법률 제1865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명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 제한(제14조제8항)
-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교부제한대상자)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교부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제한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발급받을 수 없거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함

○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제15조의2)
-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 포함)을 지정(공시제한대상자)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등록부등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공시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제한대상자 명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하여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교부·발급을 허용하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함
-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공시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하여는 공시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교부·발급을 허용하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함

25. 국제사법

가. 추진배경

○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으로서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선언하는 조문과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규정 외에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현행 국제사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법의 체계를 완비하고, 국제거래 및 다문화가정

등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해결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0. 8. 7. 정부안 국회 제출
2021. 12. 9. 국회 본회의 의결
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공포(2022. 7. 5. 시행 예정)

다. 주요내용

- 국제재판관할 결정을 위한 실질적 관련성 판단기준의 구체화
- 일반관할 및 유형별 국제재판관할 규정 신설(35개 조문)

26. 공탁법

가. 추진배경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나. 추진경과

2020. 12. 16. (김도읍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
2021. 12. 8. 본회의 의결
2022. 1. 4. 법률 제18669호로 공포, 시행

다.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

2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 추진배경

○ 동(洞) 지역 묘지에 대해서도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나. 추진경과

2020. 10. 21. (위성곤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
2021. 12. 8. 본회의 의결
2022. 1. 4. 법률 제18673호로 공포, 시행

다. 주요내용

○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의 경우, 본법 적용대상을 '농지 및 임야'에서 '농지·임야·묘지'로 변경

제3절 대통령령

Ⅰ. 대통령령[제정]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을 규정함으로써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8. ~ 9.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9호로 공포
2021.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제3조, 제15조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등)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수사의 기본원칙을 규정
- 심야조사와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자 등에게 조사 도중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강화(제6조부터 제9조까지)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나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함
-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나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결과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고, 협의를 통해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르도록 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에 관한 절차(제16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즉시 입건하도록 하고,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지 못하도록 함

○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제41조 및 제42조)
-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정보저장매체의 소재지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서면으로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도록 함
-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시정조치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검찰총장 등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요구 사유를 적은 서면에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을 검찰총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관해서 필요한 경우 송치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검찰송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 검찰총장 등이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에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직무배제의 요구를 통보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검찰총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 규정(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외교부령, 법무부령 및 외교부예규 등으로 나누어져 규정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과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이 영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집행의 통일성을 높이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 함

나. 추진경과

2020. 3. ~ 2020. 10.	공동소관 부처인 외교부와 협의
2020. 10. 27.	대통령령 제31121호로 공포
2021. 4. 28.	규정 시행

다. 주요내용

○ 발급 주체(제3조)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는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되, 법무부 또는 그 소속 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및 공증문서 등의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수행함

○ 발급 절차(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함
2)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으면 공문서의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함
3)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발급 거절 사유(제7조)
-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출한 공문서가 명백하게 거짓이거나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음

○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제8조)
- 공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이 용이한 일부 공문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서명·직인의 인영 관리(제11조)
-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문서의 발행기관 등으로부터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을 미리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음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법률 제18083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은 ①긴급응급조치 불이행, ②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법 제21조제3항)
- 이에 따라 시행령에 스토킹처벌법 상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하고,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토킹처벌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1. 5. ~ 6.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21. 7. 6. 대통령령 제31866호로 공포
2021. 10. 21. 시행

다. 주요내용

- 스토킹처벌법 제21조제3항상 대통령령 위임 사항인 ①긴급응급조치 불이행, ②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
- 법무부장관이 '수강명령·이수명령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범 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집행 등)에 관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Ⅱ. 대통령령[개정]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조성을 위한 주요 재원인 벌금 수납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기금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기금 조성을 위하여 납입하는 벌금 수납액의 비율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인상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

나. 추진경과

2020. 8. 28. ~ 9. 17.	입법예고
2020. 10. 13.	국무회의 통과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6호로 공포
2021.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기금 조성을 위하여 납입하는 벌금 수납액의 비율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인상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1)

가. 추진배경

◦ 2020년 2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

나. 추진경과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37호로 공포
2021.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영 제5조의3제1항 중 “수사지휘서”를 “검사의 검토의견서”로 한다.
- 영 제36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중 “기소중지결정이”를 각각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소중지 결정된”을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으로 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

나. 추진경과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제11조의 제목 “(집행권원 이첩 및 집행)”을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체없이 이를 소관행정청”을 “지체 없이 이를 소관 행정청”으로, “이첩하여야”를 “이관해야”로 개정
  -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이첩”을 각각 “이관”으로 개정

4. 국가배상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

나. 추진경과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별표 2 제6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중 “이각”을 “귓바퀴”로, “해득”을 “이해”로 하고, 같은 표 제7급의 신체장해란 제2호 중 “해득”을 “이해”로 하며, 같은 표 제10급의 신체장해란 제4호 중 “이각”을 “귓바퀴”로, “해득”을 “이해”로 하고, 같은 표 제11급의 신체장해란 제4호 중 “해득”을 “이해”로 하며, 같은 표 제12급의 신체장해란 제4호 중 “이각”을 “귓바퀴”로 개정

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

가. 추진배경

○ 출국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범칙금 납부자의 납부 편의 등을 위하여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

나. 추진경과

2021. 1. 19. 대통령령 제31400호로 공포
2021. 1. 21. 시행

다. 주요내용

-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등이 출국명령서를 발급하면서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통고받은 범칙금의 결제를 수행할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금융결제원과 그 밖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납부대행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으로 정함
-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 범칙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6. 상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기업지배구조 개선「상법」개정안 국회 통과('20. 12. 9.) 및 시행('20. 12. 29.)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법 시행령을 개정

나. 추진경과

2021. 1. 21. 제3회 차관회의 통과
2021. 1. 26. 제4회 국무회의 통과
2021. 2. 1. 대통령령 제31422호로 공포 (시행)

다. 주요내용

○ 상법 제542조의12 개정 사항 반영

- 상법 제542조의12 개정에 따라 감사 등 선임·해임 시 의결권 제한 관련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문 변경 및 자산규모 관련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법률에서 의결권 제한시 합산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질서위반행위자가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스스로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어 혼란이 있는바,

- 감경된 과태료를 스스로 납부하면 더 이상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한편,
-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법률 제16950호 2020. 2. 4. 공포 및 2021. 2. 5. 시행)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8. ~ 9. 관계부처와 협의
2020. 9. ~ 10.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 2. 5. 대통령령 제31412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안 제3조제1항제5호의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서 인용하는 「자동차관리법」 해당 조항들의 현행화(안제14조제1항제3호)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함)’이 개정(’21. 2. 5.시행)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

나. 추진경과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3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수선적립금의 산출기준, 수선주기, 예치방법 등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시 필요한 절차를 정함
-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 또는 누적된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 등을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건물로 정함
- 관리단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소관청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9.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0.9퍼센트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봉급에 반영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을 조정하고, 정액급식비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액에 맞춰 지급하도록 개정 필요

나. 추진경과

2021. 4. 6. 대통령령 제3159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21. 1. 1.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
- 단, 3호봉 이상의 검사의 경우에는 별표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1. 12. 31.까지는 부칙 규정에 의해 봉급을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정액급식비 조정
- 국외 소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검사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21. 1.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공무원수당규정」 개정되어 국내학교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근거 삭제
- 「공무원수당규정」 반영하여 정액급식비를 월 14만원으로 조정

1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20. 10. 20.「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피치료감호자가 수용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담당 의사의 지시로 격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 필요

나. 추진경과

2021. 4. 6. 대통령령 제31595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담당 의사 의견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 격리 연장 조치(제7조의3제2항 개정)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담당 의사의 지시로 피치료감호자등을 격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격리 연장 시에도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개정

11.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해 수사 단계에 있는 공무원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지원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이나 소송수행 지원을 의뢰하는 경우에 정부법무공단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2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5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수행 지원사업
5. 법무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하는 제4호 각 목의 사업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요청은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추진경과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25호로 공포
2021. 4. 21. 시행

다. 주요내용

○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 위원장은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 맡도록 하고, 위원은 해당 소년원 등의 각 과장, 6급 이상의 공무원 및 소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되도록 하고, 위원이 제척 사유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의 범위
-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간호사가 실시할 수 있는 경미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상처의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환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등으로 정함

1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개정(법률 제17504호)으로 변경된 과태료 상한액 기준에 맞도록 같은 법 시행령 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1. 4. 6. 대통령령 제31596호로 공포
2021. 4. 21. 시행

다. 주요내용

○ 위반행위별 단일금액 설정
○ 개정 법률에 따른 부과금액 설정
○ 시행령 내 과태료 부과 가중·감경기준 신설

1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등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지역군을 조정하며, 최우선변제금액을 증액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 확대
  - 보증금의 일부를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과밀억제권역 등은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 1억 3천만 원이하인 임차인으로 각각 증액함
- ◦ 최우선변제금 증액
  -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상한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3천7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과밀억제권역 등의 경우 3천400만 원에서 4천30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함

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 ’21. 1. 26.과 ’21. 2.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사유의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피해아동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21. 2. 10. 입법 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21. 5. 18. 대통령령 제3168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개정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을 과태료 부과대상에 신설
-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 금액 개정(1차 위반 100 또는 150만원 → 3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500만원, 3차이상 위반 500만원 → 1,000만원)

○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1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3)

가. 추진배경

○ 택배 상차·하차 인력 부족,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농산물 선별·포장 인력 부족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21. 6. 22. 대통령령 31795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방문취업(H-2) 장기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범위를 확대

1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1)

가. 추진배경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국가 범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사건에 대해 다른 기관과의 협력·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며, 인권보호부의 신설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등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 공공수사부, 외사범죄형사부 등을 통폐합하는 등 지방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 및 지청 형사부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 직접 수사개시를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1. 7. 2. 대통령령 제3186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인권보호부 설치
-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대구·인천·수원·광주·대전지검 등 8개 검찰청에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설치

○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비직제)' 등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

○ 수사부서 기능 통·폐합 및 분장사무 정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의 반부패·강력 수사기능을 통합하여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부산지방검찰청의 공공수사·외사범죄 수사기능을 통합하여 '공공·외사수사부'로 각 개편
-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반부패·강력수사부, 공공수사부 등 전담부서에서 담당하고, 전담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수사개시가 필요할 경우 마지막 순위의 형사부에서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외 형사부에서 민생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사부 분장사무 정비

18.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코로나 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채 해소를 지원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반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

나. 추진경과

2021. 3. 25. 제11회 차관회의 통과
2021. 3. 30. 제13회 국무회의 통과
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공포
2021. 7. 7. 시행

다. 주요내용

○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기존 연 24%)
-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혼란 방지 및 시장안정과 조속한 인하 효과 달성의 조화를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기존 법률관계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시행 후 새로이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분부터 적용

19. 난민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등에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통지나 송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와 이의신청 절차의 효율성 도모
-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이의신청임에도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인 기각으로 결정해야 하는 미비점 보완

나. 추진경과

2021. 7. 27. 대통령령 31907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서류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로 통지나 송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 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20. 12. 15.「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 내용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정비할 필요
- 보호관찰소의 장이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에게 부과된 보석조건(주거제한 등)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조회·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78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제3조, 제12조의2, 제14조 등)
  - 위치추적 관제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가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기존 설치·운영 근거 조항 삭제
  - “피부착자”외에 “피부착명령자”에 대해서도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준수사항 추가 등 신청 서면의 내용 및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
-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에 대한 조회 등 근거 마련(제23조의5 제4항 신설)
  - 보호관찰소의 장이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4)

가. 추진배경

○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장기체류자격 중 거주(F-2)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제한 없는 취업활동 등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1. 10. 26. 대통령령 3209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거주(F-2) 체류자격의 세부 항목 대상에 추가

○ 특별기여자 등이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외국인에게 허용된 모든 취업활동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해당 취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은 받을 수 있음

22.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가. 추진배경

○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수사 사건의 경우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 사건 기록만을 이송하고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검사직무대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불송치 사건 기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 등은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벌금, 소송비용 등의 재판에 관한 집행사무 중 지금까지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없었던 사실조회와 자료송부요청 사무를 앞으로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1. 11. 16. 대통령령 제3212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 검사직무대리 직무범위 조정(안 제5조제1항제5호)
  - 개정「형사소송법」시행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불기소의견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고 검찰청에 송부한 기록에 대한 처리 근거 마련
- ○ 집행사무 관련, 검사직무대리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외사무에서 '사실조회 및 자료송부요청' 삭제(안 제5조제3항제5호)
  - '사실조회 및 자료송부요청'은 공무소 등에 사실조회, 자료회신을 요청하여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반복적인 통상 업무이므로, 이를 집행사무 관련 검사직무대리 제외사무에서 삭제하여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 추가
- ○ 검사직무대리 처리불가 사무 등 정비(안 제5조제4항~제6항)
  - 개정「형사소송법」시행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 수사관서의 체포·구속 장소의 감찰, 변사체의 검시 등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

2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

가. 추진배경

○ 검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찰청의 정원 4명(5급 4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법무부 법무연수원으로 이체하여 법무연수원의 교수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4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찰청의 검찰사무관 정원 4명을 법무연수원 검찰사무관(교수) 정원 4명으로 이체
- 대검찰청 검찰사무관 정원 3명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사무관 정원 1명을 법무연수원 검찰사무관(교수) 정원으로 이체함

24.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경기도 남양주시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23호 2013. 1. 23. 공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중 경기도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을 새로 설치할 근거 마련 필요

나. 추진경과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3호로 공포
2022. 3. 1. 시행

다. 주요내용

○ 별표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란 다음에 남양주지청란을 신설함
-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22년 2월 28일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함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Ⅰ. 규칙[제정]

1.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면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수사준칙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11. 17. ~ 12. 28.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21. 1. 1.	법무부령 제99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수사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함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고,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함

○ 인권보호 강화(안 제10조, 제12조, 제39조 및 제40조)
-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
-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와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자 등에게 조사 도중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함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피의자 등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수사 개시에 관한 절차 규정(안 제19조)
- 피혐의자에 대한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 영장의 신청 등을 한 경우 즉시 입건하도록 하고, 수사 중인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지 못하도록 함

○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일반원칙 규정(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하도록 함
-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면 수사지휘 건의서로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

2.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가. 추진배경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그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심의를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20. 11. ~ 12.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21. 1. 1. 법무부령 제99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위원의 위촉방법(안 제3조 및 제5조)
-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각 고등검찰청에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로 후보단을 구성하고,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후보 중에서 후보단의 추천을 받아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사법경찰관의 심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후보단 중에서 추첨 등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여 위촉하도록 함

○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유지(안 제12조)
-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할 때 공정성·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검사·사법경찰관 및 피고인·변호인의 의견 개진 보장(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도 영장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심의 관련 사항의 비공개(안 제27조 및 제28조)
- 누구든지 심의 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영장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관련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심의에 관여한 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도록 하며, 영장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함

3.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과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121호, 2020. 10. 27. 공포, 2021. 4. 28. 시행)됨에 따라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신청과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서식,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절차를 정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신청을 제외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건당 1천원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추진경과

2020. 3. ~ 2021. 4.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21. 4. 27. 법무부령 제1007호, 외교부령 제93호로 공포
2021. 4. 28. 시행규칙 시행

다. 주요내용

○ 발급신청 및 발급(안 제2조, 제3조,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절차·발급절차 및 서식을 규정함

○ 전자적 발급신청 및 발급(안 제4조, 별지 제4호 내지 제5호 서식)
-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중 일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신청절차·발급절차 및 서식을 규정함

○ 서명·직인의 인영 관리(안 제5조, 별지 제6호 내지 제7호 서식)
- 아포스티유 등 발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명·직인의 관리방법 및 서식을 규정함

○ 발급수수료(안 제6조)
- 아포스티유 등 발급수수료를 1건당 1,000원으로 규정함

4.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하게 기여한 아프가니스탄 국민과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추진경과

2021. 9. ~ 2021. 9.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21. 9. ~ 10.	법제처 심사
2021. 10. 30.	국무총리령 제794호 제정
2021. 11. 1.	훈령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목적
-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특별기여자 및 그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 규정

○ 정부합동지원단의 기능
- 한국사회 이해 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교육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 지원
- 국내 교육시설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아프간인의 국내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정부합동지원단의 구성
- 지원단의 단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하고 단장을 보좌함
-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함

Ⅱ. 규칙[개정]

1. 검찰사건사무규칙(1)

가. 추진배경

○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내란·외환 범죄 등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교환을 위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 및 시정조치요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검사의 수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청 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1. 1. 1. 법무부령 제99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기록의 접수 절차 신설(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제도 폐지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은 사건이 아니라 기록으로 접수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영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관련기록과 함께 접수하도록 함
- 접수하려는 기록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편철되었는지 점검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절차 신설(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수사가 경합하는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영장 청구 및 영장 신청의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건의 열람 요청 및 열람 허용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경합하는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에는 송치요구서에 따르도록 하고, 송치요구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수사가 경합하는 범죄사실을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에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이송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중요사건 협력 절차 등 신설(안 제24조)
- 사법경찰관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등 중요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사법경찰관의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 검사가 중요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절차 등 신설(안 제99조)
- 불송치기록을 검토하여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록을 반환하도록 함
- 수사중지기록을 검토하여 한 후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록을 반환하도록 함

○ 수사사건을 조사사건으로 개편(안 제228조부터 제231조까지)
-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가 폐지되고,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입건하도록 함에 따라, 수사사건을 조사사건으로 개편하여, 수사의 개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만을 조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함

○ 시정사건 처리절차 신설(안 제232조부터 제236조까지)
-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 법령위반 등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피의자의 구제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하도록 함
- 시정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기 위한 서식을 정하는 등 시정사건의 접수, 송치요구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정함
- 시정조치의 요구, 송치요구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건관계인 등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고위공직자범죄 관련 절차 신설(안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

-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여 수리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서로 통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수사개시 여부에 대한 회신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이첩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수사의 중복 등 이첩요건에 해당하여 이첩하도록 함

○ 피해자 등의 보호 강화(안 제295조 및 제296조)

-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 과정에서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경우 등에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경우 등에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2. 검찰보존사무규칙

가. 추진배경

○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그 시행을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보존하는 기록 등의 등본을 사건기록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시정사건의 기록은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시정사건에 따른 기록의 보존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하며,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한 사법경찰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기록의 대출 및 대출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건기록과 별도의 절차에 따라 보존하던 영상녹화물을 다른 사건기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1. 1. 1. 법무부령 제99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형사소송법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규정 용어 개편
  - '사건기록'은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검찰청에서 보존하는 기록 및 관계 서류로 규정(안 제2조 제1호)
  - '결정·처리 생성 문서등'은 사법경찰관 수사기록의 결정 및 처리에 관하여 검사가 생성한 문서로 규정(안 제2조 제1의4호)
  - '처분'에서 '결정'으로 용어 변경(제3조 등)
- 시정사건에 따른 보존·관리 절차 추가(안 제15조 내지 제17조)
- '결정·처리 생성 문서등' 보존기간 및 절차 규정(안 제17조의4, 제17조의5)
- 열람·등사 절차 개편
  - 시정사건의 열람·등사 절차 규정 추가(안 제20조의2)
  -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대상, 피의자 등의 고소장 등 대상 및 피의자 등의 영장에 대한 열람·등사 절차 규정(안 제20조의3)
  -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의 필요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 절차 규정(안 제20조의4)
-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제한 사유 개편(제22조)

3.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가. 추진배경

-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되어 그 시행을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사건과 관련된 압수물 처리절차 및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대출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개정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추가하고, 가정보호사건송치·성매매보호사건송치·아동보호사건송치 등의 압수물 처리절차에 대한 준용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1. 1. 1. 법무부령 제99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수물 수리 대상 기관에 추가 (안 제2조)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 사건 관련 압수물 처리 절차 신설(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23조, 제59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72조)
- 검사가 시정조치요구 여부 등 결정을 위해 사법경찰관이 보관 중인 압수물의 대출을 요청하여 송부받은 경우의 압수물 처리 절차 신설(안 제25조)
-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대출 절차 신설(안 제27조)
- 가정보호사건송치, 성매매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송치의 경우 압수물 처리 절차 신설 (안 제57조 제5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신설 (안 제57조의2)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1)

가. 추진배경

-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 피의자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할 때 검사의 수사지휘서가 아닌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나. 추진경과

2020. 12. 31. 법무부령 제991호로 공포
2021.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영 제6조의4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사지휘서”를 각각 “검토의견서”로 한다.
- 제39조의3제2항 중 “기소중지결정이”를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로 한다.

5.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가. 추진배경

- 만취자 등이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은 직후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벌금·과태료 등 벌과금 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벌과금 등의 납부의무자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직권으로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1. 1. 21. 법무부령 제99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5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 미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

가. 추진배경

○ 출국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09호, 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됨에 따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보증금 국고귀속 통지를 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

○ 현행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ALIEN REGISTRATION CARD) 중 “ALIEN”이라는 표현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나. 추진경과

2021. 1. 21. 법무부령 제99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보증금 국고귀속 통지를 하기 위한 서식을 마련
-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를 “RESIDENCE CARD”로 변경

7.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 ’20. 10. 20. 공포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 1. 21. 시행)에 맞추어 법률에 새로 포함된 진술조력인 자격의 결격사유, 자격의 취소 및 절차를 해당 법무부령에서 삭제하고, 진술조력인 배치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0. 11. ~ 12.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21. 1. 20. 법무부령 제998호로 공포
2021. 1. 21. 시행

다. 주요내용

- 과거 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진술조력인 자격의 결격사유, 자격의 취소와 그 절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령에서 관련 내용 삭제 및 법률 및 법무부령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제2항, 제6조, 제11조, 제15조제1항제1호)
- 법률에서 진술조력인 배치의 근거를 법무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법무부령에 배치사업 관련 조문을 신설(안 제22조)

8.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가. 추진배경

○ 현행 규칙상 공증인 사무소 서류보관창고의 설비 재질 및 비치해야 할 소방용품이 한정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기술발달·상황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동일한 성능과 기능을 갖춘 재질과 소방용품을 허용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7. 3. 입법예고
2020. 12. 1. 법제처 심사 의뢰
2021. 2. 1. 법무부령 제1001호로 공포, 시행

다. 주요내용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정한 성능평가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구조체를 공증서류보관창고의 문에 적합한 구조체로 추가
- 두께 2 mm 이상의 철판 2장 사이에 두께 25 mm 이상의 세라믹파이버 보드와 두께 75 mm 이상의 고온용 실리카 보드를 삽입한 전체 두께 104 mm 이상의 구조체여야만 공증서류보관창고의 문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종래의 규정과 달리 관련 규정상 성능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구조체면 공증서류보관창고의 문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화기를 공증서류보관창고에 설치할 소화기로 규정
- 총중량 6kg 이상의 분말소화기여야만 공증서류보관창고의 소화기로 설치할 수 있었던 종래의 규정과 달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화능력단위 A급 3단위 이상의 소화기면 공증서류보관창고의 소화기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

9.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 첨부하는 송치서류 중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결과 등의 서류에 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1. 2. 3. 법무부령 제1000호로 공포·시행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1)

가. 추진배경

○ 법무부에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감찰 업무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노사업무 전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전자감독 확대 등에 필요한 인력 154명(6급 29명, 7급 51명, 8급 48명, 9급 26명), 보호관찰 강화를 위한 인력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 의료재활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4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수용자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해 필요 인력 31명(6급 4명, 7급 15명, 8급 10명, 9급 2명), 보호 외국인 관리 및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5명(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증원되는 인력 중 201명(6급 39명, 7급 65명, 8급 60명, 9급 37명)은 평가 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개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476호, 2020.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법무부 인권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나. 추진경과

2021. 3. 2. 법무부령 제100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2021년도 소요정원 반영
- 인력 증원 : 247명(388 중 1분기 반영 인력)
- 기구 신설 : 진주·포항·순천·목포교도소 분류심사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조사과 신설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체험연수과를 신설기구 평가대상에서 제외

11.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 형사사건의 사건기록 중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수수료 금액이 법원의 재판기록 중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수수료 금액보다 높아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사건기록 중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 금액과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는 한편,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자동 천공압날”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인 “구멍을 뚫고 눌러찍음”으로 대체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1. 3. 15. 법무부령 제100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 신청인(민원인)에게 유리한 수수료 적용 근거 마련
  -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대법원규칙 제2810호, 2019. 1. 1. 시행)의 수수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수수료 보다 낮은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제8조 제6항 후단에 단서 조항 신설
-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 어려운 용어인 '자동 천공압날함'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고 눌러찍음'으로 정비

1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에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나. 추진경과

2021. 4. 2. 법무부령 제1004호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위원회는 5년마다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의 변경을 검토
-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선거포상금 지급제한

1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20. 10. 20.「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피치료감호자가 수용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담당 의사의 지시로 격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필요

나. 추진경과

2021. 4. 6. 법무부령 제100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 취소 결정 통보 규정 마련(제18조의3제2항 신설)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감호의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피보호관찰자가 수용된 교정기관 또는 치료감호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마련
- 서식 제·개정
  - 개정 법률 등을 반영하여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치료감호 종료심사 신청서' 등 서식(3건) 개정
  - '가종료 취소 또는 치료 위탁 취소 통보서' 서식 제정

1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의료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에서 출원(出院)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외래진료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됨에 따라 종전의 처우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의료재활소년원에서 출원한 보호소년에게 출원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신장애 등에 대한 의료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외래진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추진경과

2021. 4. 20. 법무부령 제1006호로 공포, 4. 21. 시행

다. 주요내용

○ 소년원을 이탈한 보호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 기존에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이탈한 소년에 대해서만 처분변경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실무상 이탈한 모든 보호소년에게 처분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모든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하였을 경우 처분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장비의 사용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규정되었던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별 세부적인 사용방법을 시행규칙에서 규정, 도화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예시함

○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을 규정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기간을 정함

○ 진료기록부의 송부 및 요청에 관하여 규정

- 소년원등의 소속 의료인이 보호소년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사본 등 송부를 요청할 경우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라 해당 소년이나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는 지정법무병원의 의료인이 진료기록의 사본 등의 송부를 요청할 경우, 소년원등의 소속 의료인이 출원생이나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함

○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외래진료 기간·방법, 비용지급 등을 규정

-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신청할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의료재활소년원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지정법무병원)에서 정신건강에 관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21. 1. 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의 정비

나. 추진경과

2021. 2. 10. 입법 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21. 5. 27. 법무부령 제100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관련 조문 정비 및 과태료 부과대상 신설에 따른 의무위반사실 통보서(별제 제32호 서식) 개정

16. 인권보호수사규칙

가. 추진배경

○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검사를 인권보호관으로 배치하여 해당 검찰청의 장을 직접 보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1. 6. 9. 법무부령 제101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안 제69조 제1 ~ 2항)
- 대검 : 인권부장(겸임) → 인권정책관(겸임)
-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차치지청 : 차장검사(겸임) →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비직제 인권보호관 배치)
-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 : 지청장(겸임, 현행 유지)

○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차치지청의 인권보호관은 소속 검찰청의 장을 직접 보좌하도록 규정(안 제69조 제3항)

○ 대검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인권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인권보호관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9조 제4항)

1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3)

가. 추진배경

○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국·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나. 추진경과

2021. 6. 14. 법무부령 제101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6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신규 사업자에게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증 발급 신청 등 각종 신청문서의 전자화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서 기록물 전자화업무 등을 수행한 사업실적서를 제외

1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

가. 추진배경

○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외국인 신원정보를 국제 기준에 따라 표준화하고 외국인 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생성·관리하기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기존 정원 5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설치한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이관하면서 범죄예방데이터과로 명칭 변경

나. 추진경과

2021. 7. 1. 법무부령 제101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특별사법경찰 관련 분장사무 추가 및 관할구역 조정
-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장 분장사무에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추가
- 일부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 관할구역 조정, 6개 광역 단위로 운영

○ 벤처형조직 신설 및 소관 변경
- 외국인정보 생성 관리를 위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신설
- '범죄예방데이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서 범죄예방정책국으로 이관하고, '범죄예방데이터과'로 명칭 변경

1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법무부장관이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의 재산관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필요한 조치명령서 등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통보를 위한 서식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나. 추진경과

2021. 8. 6. 법무부령 제101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제4조의2), 재산 처분 등 불허통보서(제5조 제3항),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 불허통보서 및 변경 불허통보서(제6조 제4항)를 각 신설

2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20. 12. 15.「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 내용에 맞추어 서식 등 정비할 필요

나. 추진경과

2021. 9. 14. 법무부령 제101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서식 등 정비(제10조의2 및 별지 제13호·제14호 서식 등)
- 법률 및 시행령 내용에 맞추어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 신청서' 및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 청구서' 서식 내용에 "부과" 규정 등 추가

21. 검찰사건사무규칙(2)

가.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72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가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083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신분위장수사 허가,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또는 잠정조치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압수·수색영장 등의 청구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1. 9. 24. 법무부령 제101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신분위장수사 허가 등의 서식 및 절차 등(안 제97조의2 신설)

- 신분위장수사 허가,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또는 신분위장수사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신분위장수사 청구서,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청구서 및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도록 함
-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 신청,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사후허가 신청 또는 그 기간의 연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각각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 기각서,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후허가 신청 기각서 및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에 따르도록 함
- 신분위장수사 허가,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또는 신분위장수사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거나 그 신청을 기각했을 때에는 각각 신분위장수사 허가 청구부, 긴급 신분위장

수사 사후허가 청구부 및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도록 함

○ 잠정조치 청구 등의 서식 및 절차 등(안 제97조의3 신설)

-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또는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청구서 및 잠정조치청구서에 따르도록 함
-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또는 잠정조치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각각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 기각서 및 잠정조치신청 기각서에 따르도록 함
-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또는 잠정조치 등을 청구하거나 그 신청을 기각했을 때에는 각각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및 잠정조치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도록 함

○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등의 청구 절차(안 제302조 및 제303조 신설)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및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압수·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의뢰하는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영장청구의뢰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적도록 함
- 압수·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의뢰하는 사건의 수리 전 점검과 조치, 수리에 관한 지휘·감독 및 수리한 사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는 일반 검찰사건의 수리에 관한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등의 집행(안 제305조, 제306조, 제310조 및 제311조 신설)

-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의뢰하는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청구 또는 불청구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의뢰받은 압수·수색영장 등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에 소명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등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검찰수사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압수·수색영장 등은 강제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함

○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수색 결과 처리(안 제312조 및 제313조 신설)

- 검사가 의뢰 받은 압수·수색영장 등의 불청구결정을 한 때,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기각한 때 또는 압수·수색영장 등의 집행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의뢰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특별한 이유에 해당하여 압수·수색영장 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 영장청구서 서식 등 정비(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150호서식 등)

-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의 유효기간과의 차이로 인한 실무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의 영장청구서 서식에서 영장의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를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7499호, 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됨에 따라 임시조치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

2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4)

가. 추진배경

○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벌금형의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이 되도록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

나. 추진경과

2020. 9. 25. 법무부령 제981호로 공포
2021. 9. 26. 시행

다. 주요내용

○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에 대한 범칙금액의 상한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칙금액의 상한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 등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등록사항에 직업 및 소득금액 등을 추가하며, 입국신고서 및 사증발급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비

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3)

가. 추진배경

○ 법무부에 대체복무교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법무부 소속기관에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야간 교대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5명(6급 13명, 7급 19명, 8급 50명, 9급 53명),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연수원의 체계적인 검찰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수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을 검찰청에서 정원이체를 통해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교도소 및 구치소 야간 교대근무를 위하여 신규인력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정원 67명(6급 4명, 7급 6명, 8급 28명, 9급 29명) 및 정원 89명(6급 9명, 7급 11명, 8급 33명, 9급 36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여 정규직화하는 것을 반영

나. 추진경과

2021. 11. 23. 법무부령 제101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2021년도 소요정원 반영 등
- 인력 증원 : 141명(388명 중 3분기 반영인력, 1분기 247명 반영)

○ 검찰청 검찰사무관 정원 4명, 법무연수원으로 정원이체

○ 교정기관 야간교대 신규인력 156명 신규인력 평가대상에서 제외 후 정규직화

2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4)

가. 추진배경

○ 법무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체류외국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0명(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 및 출입국사범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5명(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2명(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정원 37명(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난민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정원 16명(5급 1명, 6급 5명, 7급 10명) 및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정원 32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며, 소년수용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정원 47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군 13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정보화 담당관이 전담하도록 하면서, 그 명칭을 정보화데이터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영

나. 추진경과

2021. 12. 14. 법무부령 제101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신설기구 및 신규인력 평가기간 연장
-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기관 평가 2년 연장
- 체류외국인 관리 정원 90명, 출입국사범 관리 정원 35명 등 신규인력 평가 1년 연장
-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정원 62명,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정원 37명, 난민심사 정원

16명,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 정원 32명 등 신규인력 평가 2년 연장

- ○ 소년원 감호전담 인력 47명 평가대상 인력에서 제외 후 정규직화
- ○ 데이터 관련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데이터담당관'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전담 처리 인력 2명을 증원

25. 난민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난민법 시행령」이 개정
- ○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보장하기 위해 이의신청서 서식 개선

나. 추진경과

- ○ 2021. 7. 29. 법무부령 1013호로 공포
- ○ 2022.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통지서로 개정하여 이의신청 각하결정통지 서식 마련
- ○ 이의신청인이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 필요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서 서식 개선

Ⅲ. 규칙[폐지]

1. 교도관점검규칙

가. 추진배경

○ 교정행정 환경의 변화로 그 내용이 교정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하게 권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교도관점검규칙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교정공무원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교정현장의 요구가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1. 12. 14. 법무부령 제1018호로 공포
2022. 1. 1. 시행

다. 주요내용

○ 부령 형식의 교도관점검규칙 폐지
○ 교정직교도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法務年鑑

04



국회업무

제1절 국회업무

제1절 국회업무

가. 정기회 및 임시회

기획재정담당관실 주무관 박창현

2021년도에는 총 9회(384회 ~ 392회)에 걸쳐 정기회 및 임시회가 개최되었다.

법무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 개혁, 인권과 질서가 조화되는 공존의 정의 구현,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실현,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조성 등 주요정책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출입국관리법」,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의 법안들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에 법사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현안보고를 통해 우리 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과 현안 과제의 추진상황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표 4-1 | 회차별 국회활동 개관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384회	'21. 2. 1. ~ 2. 28. (28일간)	【본회의】 • 총 7차례 개의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1. 2. 2.) •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1. 2. 3.) •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21. 2. 4.)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21. 2. 5.) •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21. 2. 8.) • 통과법안('21. 2. 26.)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총 8차례 개회(전체회의 5, 제1소위 2, 제2소위 1) • 업무현황보고('21. 2. 22.)
제385회	'21. 3. 2. ~ 3. 31. (30일간)	【본회의】 • 총 3차례 개의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21. 3. 5.) • 통과법안('21. 3. 24.)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대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21. 3. 25.) 【법제사법위원회】 • 총 5차례 개회(전체회의 2, 제1소위 2, 제2소위 1)
제386회	'21. 4. 1. ~ 4. 30. (30일간)	【본회의】 • 총 4차례 개의 •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21. 4. 19.)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21. 4. 20.) •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21. 4. 21.) 【법제사법위원회】 • 총 2차례 개회(전체회의 1, 제1소위 1)
제387회	'21. 5. 3. ~ 6. 1. (30일간)	【본회의】 • 총 2차례 개의 【법제사법위원회】 • 총 4차례 개회(전체회의)
제388회	'21. 6. 4. ~ 7. 3. (30일간)	【본회의】 • 총 7차례 개의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1. 6. 16.) •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1. 6. 17.) •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21. 6. 22.)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21. 6. 23.) •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21. 6. 24.) • 통과법안('21. 6. 29.)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총 9차례 개회(전체회의 6, 제1소위 2, 제2소위 1)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389회	'21. 7. 5.~7. 31. (22일간)	【본회의】 • 총 3차례 개의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21. 7. 8.) • 통과법안('21. 7. 23.)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21. 7. 24.) 【법제사법위원회】 • 총 3차례 개회(전체회의 1, 제1소위 2)
제390회	'21. 8. 17.~8. 31. (15일간)	【본회의】 • 총 1차례 개의 【법제사법위원회】 • 총 4차례 개회(전체회의 2, 제1소위 2)
제391회	'21. 9. 1.~12. 9. (100일간)	【본회의】 • 총 14차례 개의 • 정기회 개회식('21. 9. 1.)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1. 9. 8.) •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1. 9. 9.)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21. 9. 13.) •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21. 9. 14.)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21. 9. 15.) •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21. 9. 16.) • 통과법안('21. 9. 28.)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21. 10. 25.) •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21. 12. 2.)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21. 12. 3.) • 통과법안('21. 12. 9.)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총 19차례 개회(전체회의 10, 예결심사소위 5, 제1소위 8, 제2소위 1) • 국정감사('21. 10. 1. ~ 10. 21.) - 법무부('21. 10. 5.), 대검찰청('21. 10. 18.), 종합감사('21. 10. 21.) 실시
제392회	'21. 12. 13. ~ '22. 1. 11. (30일간)	【본회의】 • 총 1차례 개의 • 통과법안('22. 1. 11.)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총 6차례 개회(전체회의 4, 제1소위 1, 제2소위 1)

나. 당정협의 및 간담회

당정 협의·간담회에서는 검찰개혁 관련 논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 부동산 대책 등 현안에 대하여 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처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였다.

| 표 4-2 | 당정협의 및 간담회

구 분	일시	논의 안건	참석자
당정 협의	'21. 1. 12.	• 법무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언론공개)	• **〈당 측〉** – 윤호중 검찰개혁특위위원장, 박주민 간사 등 검찰개혁특위 위원 • **〈정부 측〉** – 법무부 차관, 정책기획단장 등
당정 협의	'21. 1. 26.	• 법무검찰개혁특위(검찰 조직문화 및 수사 관행 개선 TF 정책간담회)	• **〈당 측〉** – 송기헌(팀장), 최기상, 소병철, 김회재 의원 등 TF위원 • **〈정부 측〉**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정책기획단장 등
당정 협의	'21. 2. 3.	• 온라인그루밍법 관련 부처 의견 조율, 논의	• **〈당 측〉** – 홍익표 정책위의장, 법사위·행안위·여가위 간사 등 • **〈정부 측〉** – 법무부차관, 여가부 차관, 경찰청 차장 등
당정 협의	'21. 2. 23.	•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 개혁안 향후 추진계획)	• **〈당 측〉** – 윤호중 검찰개혁특위위원장, 박주민 간사 등 검찰개혁특위 위원 • **〈정부 측〉** – 법무부 장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 **〈청 측〉** – 민정수석 등
고위 당정 협의	'21. 3. 19.	•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논의	• **〈당 측〉** – 당대표 직무대행,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장 등 • **〈정부 측〉** –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법무·농식품·국토부장관, 국조실장 등 • **〈청 측〉** –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등
당정 협의	'21. 5. 18.	• 현안 관련 법사위 간사 간담회	• **〈당 측〉** – 박주민 간사 등 법사위 위원 • **〈정부 측〉** – 법무부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단장 등
당정 협의	'21. 8. 26.	• 정기국회 대비 법제사법위원회 워크숍	• **〈당 측〉** – 박주민 간사, 김남국, 김영배 등 법사위 위원 • **〈정부 측〉** –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 금융위원장, 법무부 차관 등

法務年鑑

05



통 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제2절 검찰업무 통계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제4절 인권업무 통계
제5절 교정업무 통계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1. 법무업무

| 표 5-1 | 법령자문

(단위 : 건)

부처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740	5,096	4,458	4,811	5,089	6,039	6,541	7,322	6,608	7,581
기획재정부	122	149	153	171	169	174	314	285	150	106
교육부	-	185	222	217	287	303	234	262	389	401
미래창조과학부	-	107	149	192	78	92	-	-	-	-
교육과학기술부	289	41	-	-	-	99	-	-	-	-
과학기술부	-	-	-	-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348	228	231	218
외교부	38	27	26	23	32	33	18	40	42	28
통일부	10	153	16	28	44	41	57	65	68	67
법무부	330	480	263	438	272	570	710	1,008	896	892
국방부	99	121	118	138	101	142	118	130	126	180
행정자치부	-	-	19	313	418	247	-	-	-	-
안전행정부	410	625	412	-	-	187	-	-	-	-
행정안전부	-	-	-	-	-	187	509	605	672	842
문화체육관광부	152	192	224	225	210	240	249	345	332	364
농림축산식품부	280	281	238	287	310	279	309	308	319	352
산업통상자원부	111	316	252	324	370	248	314	379	246	225
보건복지부	356	432	346	430	469	609	530	567	541	795
환경부	174	210	164	196	220	250	310	344	316	349
고용노동부	114	194	145	172	200	261	229	273	170	318
여성가족부	84	118	125	121	77	108	122	114	146	151
국토교통부	418	553	571	578	559	687	706	720	744	897
해양수산부	-	120	194	196	179	176	203	293	212	269
중소벤처기업부	-	-	-	-	-	-	156	190	157	140
국민안전처	-	-	2	150	139	103	-	-	-	-
방송통신위원회	62	38	35	47	70	67	91	82	75	107
국무조정실	18	25	21	10	25	31	28	29	32	50
공정거래위원회	46	51	33	34	74	132	88	141	76	62
금융위원회	99	192	169	94	198	186	231	274	188	151
국민권익위원회	9	14	10	9	11	25	26	23	50	5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	-	-	-	3	25
국가보훈처	46	64	55	60	66	86	81	72	108	122
인사혁신처	-	-	1	50	57	65	91	85	99	109

부처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법제처	14	15	10	5	8	11	12	9	18	16
식품의약품안전처	-	91	103	103	106	131	119	131	137	172
기타	459	302	382	200	340	456	338	320	65	114

| 표 5-2 | 법령해석

(단위 : 건)

부처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4	10	168	185	188	171	178	204	171	251
기획재정부	-	1	2	-	2	-	1	2	2	5
교육부	-	-	7	6	1	2	-	-	-	2
미래창조과학부	-	-	1	1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2	3	4	1
외교부	-	-	-	-	2	4	1	1	4	3
통일부	-	-	1	-	-	-	-	-	-	
법무부	-	1	-	8	17	12	10	13	11	15
국방부	-	-	-	1	2	1	3	-	2	-
행정자치부	-	-	-	6	6	2	-	-	-	-
안전행정부	-	-	5	-	-	-	-	-	-	-
행정안전부	-	-	-	-	-	-	9	6	12	27
문화체육관광부	-	2	1	-	-	-	1	3	-	1
농림축산식품부	-	-	2	-	-	1	-	-	-	2
산업통상자원부	2	2	2	-	1	1	-	1	1	3
보건복지부	-	1	1	5	2	2	2	1	1	6
환경부	-	-	3	-	-	1	-	3	1	2
고용노동부	1	-	3	-	-	1	2	3	3	1
여성가족부	-	-	4	3	1	-	-	1	2	1
국토교통부	1	-	4	5	7	4	5	9	5	9
해양수산부	-	-	-	-	-	1	4	-	-	1
중소벤처기업부	-	-	-	-	-	-	-	-	-	1
국민안전처	-	-	-	1	1	4	-	-	-	-
방송통신위원회	-	-	-	-	-	-	1	-	1	1
국무조정실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	-	-	-	-	-	1	1	-	-
금융위원회	-	-	1	1	1	1	3	1	-	1
국민권익위원회	-	-	-	-	3	-	-	1	-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	-	-	-	-	-
국가보훈처	-	-	-	-	4	-	-	-	-	-
인사혁신처	-	-	-	-	-	1	-	1	-	-
법제처	-	-	-	-	-	-	-	-	1	3
식품의약품안전처	-	-	2	-	-	-	3	-	-	1
기타	10	3	129	148	138	133	130	154	121	164

| 표 5-3 | 법령 제정·개정(정부발의안 기준)

(단위 : 건)

분류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61	59	74	55	67	66	55	48	73	52
제정	소계	7	4	7	3	5	2	1	2	8	7
	법률	2	1	1	–	3	–	–	–	–	2
	대통령령	3	1	4	2	1	2	1	1	5	2
	총리·부령	2	2	2	1	1	–	–	1	3	3
개정	소계	51	54	67	52	62	64	52	45	65	44
	법률	10	13	22	7	18	15	5	5	15	3
	대통령령	24	14	23	19	20	20	18	21	27	17
	총리·부령	17	27	22	26	24	29	29	19	23	24
폐지	법령	3	1	–	–	–	–	2	1	–	1

| 표 5-4 | 법무자료 발간

(단위 : 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발간횟수	10	8	22	18	17	18	11	8	16	16

2. 국제법무활동

| 표 5-5 | 통상관계 법률자문 및 조약 등 국제협약의 법률문제 검토

(단위 : 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횟수	38	40	56	28	14	9	14	16	13	31

| 표 5-6 | 법률관련 인사 국제 교류

(단위 : 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횟수	11	5	7	7	12	7	9	4	1	2

| 표 5-7 | 법무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단위 : 건,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횟수	26	39	48	27	29	11	18	27	53	37
인원	34	73	82	55	42	20	38	47	117	104

3. 변호사·공증

| 표 5-8 | 변호사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등록인원	14,534	16,547	18,708	20,531	22,318	24,015	25,838	27,695	29,584	31,281
개 업	12,532	14,242	15,954	17,424	18,849	20,182	21,575	23,144	24,782	26,181
비 개 업	2,002	2,305	2,754	3,107	3,469	3,833	4,263	4,551	4,802	5,100

| 표 5-9 | 공증인 인원

(단위 : 명, 개)

구 분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임명공증인		48	59	66	73	77	75	78	81	83	82
법 무 법 인	사무소	280	268	261	245	241	239	238	234	227	225
	구성원	1,211	1,183	1,170	1,029	1,000	981	946	918	882	865
합 동 법 률 사무소	사무소	36	31	29	27	25	23	20	20	19	17
	구성원	127	121	115	109	93	86	85	60	55	57
대 행 청		13	12	12	12	12	13	13	13	13	13

| 표 5-10 | 공증사무 처리 건수

(단위 : 건)

연 도 \ 구 분	사건처리건수
2012	4,027,514
2013	4,030,468
2014	3,825,991
2015	3,758,294
2016	3,745,816
2017	3,415,840
2018	3,074,532
2019	2,777,661
2020	2,425,221
2021	2,529,558

4. 국가소송

| 표 5-11 | 전체 국가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10,887	11,891	13,412	14,874	10,390	9,982	10,116	10,549	10,987	11,534
	구 수	6,018	7,171	8,025	9,350	5,841	5,192	5,227	5,570	6,082	6,515
	신 수	4,869	4,720	5,387	5,524	4,549	4,790	4,889	4,979	4,905	5,019
처리	계	3,120	3,373	3,560	4,485	5,293	4,530	4,526	4,250	4,373	4,285
	승 소	1,360	1,477	1,623	1,882	1,822	1,746	1,806	1,587	1,660	1,678
	패 소	514	522	586	606	568	546	485	471	500	451
	기 타	1,246	1,374	1,351	1,997	2.903	2,238	2,235	2,192	2,213	2,156
미 제		7,767	8,518	9,852	10,389	5,097	5,452	5,590	6,299	6,614	7,249

| 표 5-12 |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승 소	패 소	기 타	
2012	10,887 (4,869)	3,120	1,360	514	1,246	7,767
2013	11,891 (4,720)	3,373	1,477	522	1,374	8,518
2014	13,412 (5,387)	3,560	1,623	586	1,351	9,852
2015	14,874 (5,524)	4,485	1,882	606	1,997	10,389
2016	10,390 (4,549)	5,293	1,822	568	2,903	5,097
2017	9,982 (4,790)	4,530	1,746	546	2,238	5,452
2018	10,116 (4,889)	4,526	1,806	485	2,235	5,590
2019	10,549 (4,979)	4,250	1,587	471	2,192	6,299
2020	10,987 (4,905)	4,373	1,660	500	2,213	6,614
2021	11,534 (5,019)	4,285	1,678	451	2,156	7,249

* 접수란 중 ( )는 신수

| 표 5-13 | 유형별 국가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10,875	11,879	13,398	14,860	10,377	9,966	10,096	10,536	10,975	11,518
국가원고	계	1,469	1,663	2,936	4,213	2,328	2,212	2,181	2,061	2,435	2,799
	부동산	346	351	265	314	343	419	376	405	461	657
	손해배상	26	26	30	26	17	15	14	9	6	5
	기 타	1,097	1,286	2,641	3,873	1,968	1,778	1,791	1,647	1,968	2,137
국가피고	계	9,406	10,216	10,462	10,647	8,049	7,754	7,915	8,475	8,540	8,179
	부동산	2,986	2,942	2,951	2,942	2,649	2,638	2,617	2,800	2,700	2,663
	손해배상	2,980	3,668	3,786	3,536	2,017	1,793	1,749	2,010	2,081	2,379
	기 타	3,440	3,606	3,725	4,169	3,383	3,323	3,549	3,665	3,760	3,677

| 표 5-14 | 민사신청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3,753	4,231	7,113	5,731	6,220	6,983	8,134	8,974	9,519	9,895
	구 수	2,206	2,111	4,328	3,373	3,584	4,288	5,047	5,566	5,984	5,988
	신 수	1,547	2,120	2,785	2,358	2,636	2,695	3,087	3,408	3,535	3,907
처리	계	1,398	1,543	3,718	1,785	2,020	1,977	2,596	3,062	2,678	2,487
	종 결	1,220	1,318	1,234	1,394	1,512	1,336	1,762	2,314	1,907	1,513
	본안이송	77	95	2,325	222	255	355	348	255	240	180
	취 하	66	87	86	116	137	149	159	202	225	237
	각 하	17	14	30	15	17	29	36	77	55	97
	기 타	18	29	43	38	99	108	291	214	251	460
미 제		2,355	2,688	3,395	3,946	4,200	5,006	5,538	5,912	6,841	7,408

5. 행정소송

| 표 5-15 | 전체 행정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36,854	36,444	38,182	38,882	36,799	36,969	37,130	37,772	40,073	40,978
	구 수	21,346	20,289	22,317	22,775	19,239	18,246	18,326	18,709	21,463	20,768
	신 수	15,508	16,155	15,865	16,107	17,560	18,723	18,804	19,063	18,610	20,222
처리	계	16,071	13,091	14,592	13,285	18,664	18,800	18,560	16,414	18,868	16,387
	승 소	7,867	6,371	7,132	6,290	9,392	10,250	10,064	8,991	10,478	9,302
	패 소	2,047	1,865	1,702	1,740	2,056	1,814	1,811	1,687	1,807	1,719
	취 하 등	6,157	4,855	5,758	5,255	7,216	6,736	6,685	5,736	6,583	5,366
미 제		20,783	23,353	23,590	25,597	18,135	18,169	18,570	21,358	21,205	24,591

| 표 5-16 |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승 소	패 소	기 타	
2012	36,854 (15,508)	16,071	7,867	2,047	6,157	20,783
2013	36,444 (16,155)	13,091	6,371	1,865	4,855	23,353
2014	38,182 (15,865)	14,592	7,132	1,702	5,758	23,590
2015	38,882 (16,107)	13,285	6,290	1,740	5,255	25,597
2016	36,799 (17,560)	18,664	9,392	2,056	7,216	18,135
2017	36,969 (18,723)	18,800	10,250	1,814	6,736	18,169
2018	37,130 (18,804)	18,560	10,064	1,811	6,685	18,570
2019	37,772 (19,063)	16,414	8,991	1,687	5,736	21,358
2020	40,073 (18,610)	18,868	10,478	1,807	6,583	21,205
2021	40,978 (20,222)	16,387	9,302	1,719	5,366	24,591

* 접수란 중 ( )는 신수

| 표 5-17 | 유형별 행정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6,854	36,444	38,182	38,882	36,799	36,969	37,130	37,772	40,073	40,978
조세관계	4,810	5,644	6,849	7,379	6,089	5,246	4,849	5,412	5,206	4,831
공무원신분	1,623	1,681	1,582	1,645	1,515	1,611	1,635	1,799	1,999	1,978
국토도시계획	3,473	3,129	3,141	2,846	2,642	2,477	2,632	2,619	2,702	2,978
영업허가취소·정지	3,190	3,534	3,934	3,389	2,283	2,414	2,424	2,163	1,786	1,358
자격·면허·등록·인가	2,754	2,678	2,810	2,231	1,889	2,062	2,802	2,779	3,255	2,921
기타	21,004	19,778	19,866	21,392	22,381	23,159	22,788	23,000	25,125	26,912

6. 지구심의회 국가배상 신청사건

| 표 5-18 | 전체 국가배상 신청사건(협정배상 신청사건 포함)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3,011	4,517	3,976	4,149	4,738	4,558	6,064	5,860	7,371	7,394
	구수	938	885	1,130	1,057	1,059	1,140	1,629	2,001	2,408	3,603
	신수	2,073	3,632	2,846	3,092	3,679	3,418	4,435	3,859	4,963	3,791
처리	계	2,127	3,299	2,915	3,047	3,598	2,921	4,054	3,452	3,768	3,228
	인용	1,063	1,767	1,177	1,057	1,154	801	1,129	895	1,109	779
	기각	944	1,424	1,627	1,896	2,249	2,008	2,777	2,357	2,456	2,253
	기타	120	108	111	94	195	112	148	200	203	196
미제		884	1,218	1,061	1,102	1,140	1,637	2.010	2,408	3,603	4,166

| 표 5-19 | 국가배상 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협정배상 신청사건 포함)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인 용	기 각	기 타	
2012	3,011 (2,073)	2,127	1,063	944	120	884
2013	4,517 (3,632)	3,299	1,767	1,424	108	1,218
2014	3,976 (2,846)	2,915	1,177	1,627	111	1,061
2015	4,149 (3,092)	3,047	1,057	1,896	94	1,102
2016	4,738 (3,679)	3,598	1,154	2,249	195	1,140
2017	4,558 (3,418)	2,921	801	2,008	112	1,637
2018	6,064 (4,435)	4,054	1,129	2,777	148	2.010
2019	5,860 (3,859)	3,452	895	2,357	200	2,408
2020	7,371 (4,963)	3,768	1,109	2,456	203	3,603
2021	7,394 (3,791)	3,228	779	2,253	196	4,166

* 접수란 중 ( )는 신수

| 표 5-20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 신청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190	167	168	174	196	175	185	204	150	145
	구 수	61	53	56	58	50	70	58	97	63	63
	신 수	129	114	112	116	146	105	127	107	87	82
처리	계	137	111	109	124	126	109	88	141	87	53
	인 용	116	91	84	110	112	101	78	119	74	43
	기 각	16	19	20	12	14	7	9	14	11	9
	기 타	5	1	5	2	-	1	1	8	2	1
미 제		53	56	59	50	70	66	97	63	63	92

| 표 5-21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 신청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인 용	기 각	기 타	
2012	190 (129)	137	116	16	5	53
2013	167 (114)	111	91	19	1	56
2014	168 (112)	109	84	20	5	59
2015	174 (116)	124	110	12	2	50
2016	196 (146)	126	112	14	-	70
2017	175 (105)	109	101	7	1	66
2018	185 (127)	88	78	9	1	97
2019	204 (107)	141	119	14	8	63
2020	150 (87)	87	74	11	2	63
2021	145 (82)	53	43	9	1	92

* 접수란 중 ( )는 신수

7.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 표 5-22 |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백만 원)

구분 / 연도	지급총액	배 상 결 정	판 결	소송비용확정액
2012	659 / 33,869	120 / 398	198 / 127,483	341 / 5,988
2013	409 / 57,389	119 / 273	290 / 57,116	- / -
2014	745 / 203,013	85 / 180	385 / 198,872	275 / 3,961
2015	1,005 / 300,722	122 / 438	461 / 293,615	422 / 6,669
2016	960 / 236,223	91 / 275	371 / 228,695	498 / 7,253
2017	861 / 354,386	121 / 599	369 / 349,084	371 / 4,703
2018	821 / 770,075	107 / 793	319 / 762,218	395 / 7,064
2019	780 / 154,637	99 / 169	267 / 146,600	414 / 7,868
2020	763 / 72,781	94 / 210	258 / 62,530	411 / 10,041
2021	765 / 223,742	60 / 83	275 / 215.908	430 / 7,751

8. 헌법재판 현황

| 표 5-23 | 헌법재판 현황

연도	구분	접수 (신·구수)	처리											미제
			합계	위헌					합헌				각하 등	
				소계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소계	합헌	한정합헌	기각		
2012	계	2,509	1,661	74	15	7	5	47	337	140	-	197	1,250	848
	위헌법률	53	21	9	9	-	-	-	7	7	-	-	5	32
	권한쟁의	9	3	-	-	-	-	-	2	-	-	2	1	6
	헌법소원	2,447	1,637	65	6	7	5	47	328	133	-	195	1,244	810
2013	계	2,328	1,585	71	25	-	3	43	372	147	-	225	1,142	743
	위헌법률	60	22	8	7	-	1	-	14	14	-	-	-	38
	정당해산	1	-	-	-	-	-	-	-	-	-	-	-	1
	권한쟁의	9	5	-	-	-	-	-	1	-	-	1	4	4
	헌법소원	2,258	1,558	63	18	-	2	43	357	133	-	224	1,138	700
2014	계	2,712	1,888	60	11	3	15	31	255	104	-	151	1,573	824
	위헌법률	64	14	7	3	3	1	-	6	6	-	-	1	50
	정당해산	1	1	1	-	-	-	1	-	-	-	-	-	-
	권한쟁의	5	2	-	-	-	-	-	-	-	-	-	2	3
	헌법소원	2,642	1,871	52	8	-	14	30	249	98	-	151	1,570	771
2015	계	2,683	1,937	110	47	-	15	48	379	176	-	203	1,448	746
	위헌법률	87	44	22	21	-	1	-	20	20	-	-	2	43
	정당해산	1	-	-	-	-	-	-	-	-	-	-	-	1
	권한쟁의	11	2	1	-	-	-	1	-	-	-	-	1	9
	헌법소원	2,584	1,891	87	26	-	14	47	359	156	-	203	1,445	693
2016	계	2,697	1,976	101	33	1	9	58	393	179	-	214	1,482	721
	위헌법률	63	27	14	12	-	2	-	4	4	-	-	9	36
	탄핵	1	-	-	-	-	-	-	-	-	-	-	-	1
	정당해산	1	1	-	-	-	-	-	-	-	-	-	1	-
	권한쟁의	18	5	-	-	-	-	-	-	-	-	-	5	13
	헌법소원	2,614	1,943	87	21	1	7	58	389	175	-	214	1,467	671

연도	구분	접수(신·구수)	처리												미제
			합계	위헌					합헌				각하 등		
				소계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소계	합헌	한정합헌	기각			
2017	계	3,347	2,425	43	4	-	1	38	293	116	-	177	2,089		922
	위헌법률	71	11	1	1	-	-	-	10	10	-	-	-		60
	탄핵	1	1	1	-	-	-	1	-	-	-	-	-		-
	권한쟁의	15	2	-	-	-	-	-	-	-	-	-	2		13
	헌법소원	3,260	2,411	41	3	-	1	37	283	106	-	177	2,087		849
2018	계	3,349	2,447	168	57	-	59	52	379	108	-	271	1,900		902
	위헌법률	77	39	26	8	-	18	-	10	10	-	-	3		38
	권한쟁의	15	5	-	-	-	-	-	-	-	-	-	5		10
	헌법소원	3,257	2,403	142	49	-	41	52	369	98	-	271	1,892		854
2019	계	3,632	2,519	49	8	-	7	34	348	142	-	206	2,122		1,113
	위헌법률	69	18	6	5	-	1	-	11	11	-	-	1		51
	권한쟁의	16	5	2	-	-	-	2	2	-	-	2	1		11
	헌법소원	3,547	2,496	41	3	-	6	32	335	131	-	204	2,120		1,051
2020	계	4,354	3,042	81	10	-	7	64	392	162	-	230	2,569		1,312
	위헌법률	71	20	11	7	-	4	-	8	8	-	-	1		51
	정당해산	-	-	-	-	-	-	-	-	-	-	-	-		-
	권한쟁의	16	11	-	-	-	-	-	5	-	-	5	6		5
	헌법소원	4,267	3,011	70	3	-	3	64	379	154	-	225	2,562		1,256
2021	계	2,827	2,621	65	15	-	4	46	343	126	-	217	2,213		1,518
	위헌법률	38	19	8	6	-	2	-	9	9	-	-	2		70
	탄핵	1	1	-	-	-	-	-	-	-	-	-	1		-
	권한쟁의	2	1	-	-	-	-	-	1	-	-	1	-		6
	헌법소원	2,786	2,600	57	9	-	2	46	333	117	-	216	2,210		1,442

9.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통계

가. 출원 현황

| 표 5-24 | 연도별 응시원서 접수 현황

(단위 : 명)

연 도	시험구분	총 계	남 자	여 자
2014	변호사시험	2,432	1,387	1,045
2015	변호사시험	2,704	1,567	1,137
2016	변호사시험	3,115	1,816	1,299
2017	변호사시험	3,306	1,839	1,467
2018	변호사시험	3,490	1,985	1,505
2019	변호사시험	3,617	2,038	1,579
2020	변호사시험	3,592	1,986	1,606
2021	변호사시험	3,497	1,966	1,531

| 표 5-25 | 연령별 출원 현황

(단위 : 명)

연령 / 시험구분	25세 미만	25세 이상 ~ 30세 미만	30세 이상 ~ 35세 미만	35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45세 미만	45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변호사시험 (비율, %)	1 (0.03)	1,061 (30.34)	1,541 (44.07)	631 (18.04)	189 (5.4)	50 (1.43)	24 (0.69)

| 표 5-26 | 법학전공별 출원 현황

(단위 : 명)

법학전공 / 시험구분	총 계	전 공	비 전 공
변 호 사 시 험 (비율, %)	3,497	1,206 (34.49)	2,291 (65.51)

나. 합격자 현황

| 표 5-27 | 연도별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시험구분	총 계			남 자			여 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4	변호사시험	2,292	1,550	67.62	1,298	869	66.94	994	681	68.51
2015	변호사시험	2,561	1,565	61.10	1,471	893	60.70	1,090	672	61.65
2016	변호사시험	2,864	1,581	55.20	1,668	939	56.29	1,196	642	53.68
2017	변호사시험	3,110	1,593(기준)	51.22	1,720	870	50.58	1,390	723	52.01
			1,600(기준)	51.45	1,720	876	50.93	1,390	724	52.09
2018	변호사시험	3,240	1,599	49.35	1,843	906	49.16	1,397	693	49.61
2019	변호사시험	3,330	1,691	50.78	1,873	935	49.92	1,457	756	51.89
2020	변호사시험	3,316	1,768	53.31	1,809	972	53.73	1,507	796	52.82
2021	변호사시험	3,156	1,706	54.06	1,766	985	55.77	1,390	721	51.87

| 표 5-28 | 법학전공별 시험 합격 현황

(단위 : 명)

법학전공 / 시험구분	총 계	전 공	비 전 공
변 호 사 시 험 (비율, %)	1,706	475 (27.84)	1,231 (72.16)

제2절 검찰업무 통계

1. 검사 수사 사건

가. 전체 사건

| 표 5-29 |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2,401,107	2,474,033	2,463,524	2,580,756	2,672,784	2,506,404	2,401,898	2,503,478	2,397,832	2,154,158
	구 수	74,547	84,196	83,944	88,432	83,473	90,535	99,297	111,949	142,279	181,786
	신 수	2,326,560	2,389,837	2,379,580	2,492,324	2,589,311	2,415,869	2,302,601	2,391,529	2,255,553	1,972,372
처리	계	2,316,969	2,389,660	2,374,370	2,495,255	2,581,748	2,407,061	2,290,052	2,361,611	2,215,577	2,084,164
	직수 및 송치사건 기소 소계	902,552	910,158	870,320	852,314	894,616	809,882	719,980	699,111	662,077	576,547
	직수 및 송치사건 기소 구공판	196,484	182,322	191,080	187,402	209,734	202,649	196,821	205,418	219,062	193,457
	직수 및 송치사건 기소 구약식	706,068	727,836	679,240	664,912	684,882	607,233	523,159	493,693	443,015	383,090
	직수 및 송치사건 불기소 소계	1,257,938	1,297,033	1,344,779	1,460,294	1,458,816	1,367,742	1,320,937	1,381,922	1,291,658	477,541
	직수 및 송치사건 불기소 무혐의	304,120	315,513	334,419	361,070	371,611	333,716	314,565	324,017	317,251	85,493
	직수 및 송치사건 불기소 기소유예	357,854	338,628	338,350	378,723	376,137	338,971	274,936	242,471	217,206	197,405
	직수 및 송치사건 불기소 기소중지	147,858	185,052	208,340	218,047	213,833	209,989	237,460	295,726	264,868	77,564
	직수 및 송치사건 불기소 참고인중지	17,710	17,582	15,694	12,542	10,008	8,411	7,150	6,836	7,153	1,016
	직수 및 송치사건 불기소 각하	83,974	87,987	95,974	112,931	104,710	116,518	138,712	162,762	171,110	40,109
	직수 및 송치사건 불기소 기타	346,422	352,271	352,002	376,981	382,517	360,137	348,114	350,110	314,070	75,954
	직수 및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	-	-	-	-	-	-	-	-	199,901
	직수 및 송치사건 이송 소년보호	37,253	29,992	25,226	25,027	25,192	24,948	23,478	24,396	25,919	20,998
	직수 및 송치사건 이송 가정보호	3,753	6,414	9,449	20,036	22,264	18,829	19,539	23,424	19,868	22,852
	직수 및 송치사건 이송 타관	115,214	145,830	124,378	137,197	179,522	182,140	202,896	228,636	211,165	177,082
	직수 및 송치사건 이송 성매매보호	259	233	218	387	1,338	956	465	249	212	170
	직수 및 송치사건 이송 아동보호	-	-	-	-	-	2,564	2,757	3,873	4,678	8,261
	불제사건 기록반환	-	-	-	-	-	-	-	-	-	477,186
	불제사건 재수사요청	-	-	-	-	-	-	-	-	-	21,030
	중제사건 기록반환	-	-	-	-	-	-	-	-	-	98,861
	중제사건 시정조치요구	-	-	-	-	-	-	-	-	-	3,735
미제		84,138	84,373	89,154	85,501	91,036	99,343	111,846	141,867	182,255	69,994

나. 청별 사건

| 표 5-30 |

(단위 : 명)

검찰청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326,560	2,389,837	2,379,580	2,492,321	2,589,311	2,415,869	2,302,596	2,391,529	2,255,553	1,972,372
서울중앙	184,574	183,105	175,052	175,798	181,844	171,076	165,305	172,967	172,404	150,857
서울동부	77,063	78,169	76,497	76,287	73,148	71,256	73,250	76,612	68,797	57,559
서울남부	103,313	100,572	99,170	103,045	100,839	97,922	96,437	100,253	88,444	80,725
서울북부	80,196	86,491	90,907	91,109	94,269	88,617	84,968	85,674	77,905	67,668
서울서부	64,295	69,321	68,703	67,255	70,706	65,081	64,015	64,409	56,189	51,086
의정부	82,393	87,021	87,175	93,587	98,927	92,808	91,082	90,519	84,813	72,933
고양	52,782	56,961	59,494	62,921	67,051	63,366	58,324	61,366	56,262	49,303
인천	133,871	139,475	141,832	143,257	155,534	144,821	139,518	145,386	135,824	113,911
부천	52,915	53,972	55,792	60,109	64,154	58,583	58,422	58,402	56,628	48,897
수원	114,135	119,807	123,235	136,617	152,098	142,413	131,605	139,803	136,060	116,510
성남	56,576	60,269	60,984	64,293	74,402	65,256	62,303	63,293	61,240	55,355
여주	17,600	19,137	19,216	20,627	22,661	22,466	21,753	22,826	21,628	18,553
평택	30,888	31,973	34,926	38,080	43,750	41,843	39,415	42,389	44,077	37,191
안산	67,886	70,573	69,766	82,751	94,682	81,275	73,865	75,641	72,090	62,129
안양	40,836	41,395	40,557	43,780	48,460	42,634	40,669	42,096	36,288	31,245
춘천	19,895	22,126	20,227	20,663	21,007	19,579	17,631	19,230	18,802	15,227
강릉	17,794	17,736	18,166	17,941	18,893	18,226	15,779	16,365	14,251	12,525
원주	20,927	19,976	18,948	19,907	21,182	20,387	17,241	18,276	16,524	15,184
속초	7,308	7,518	7,157	7,472	7,362	7,423	6,798	7,132	6,670	6,384
영월	9,010	8,299	7,790	8,403	8,745	7,315	6,916	7,488	6,740	6,214
대전	64,623	67,572	68,139	71,061	77,084	77,375	75,308	78,099	77,509	63,022
홍성	12,971	13,773	13,732	15,991	16,407	14,722	14,584	15,264	15,348	11,810
공주	5,456	5,772	5,878	5,788	5,806	5,473	5,994	5,926	5,920	5,212
논산	7,971	8,728	8,193	8,707	8,193	8,146	7,770	7,702	7,895	6,465
서산	16,433	17,688	17,597	17,529	18,782	17,920	18,197	17,915	17,246	16,192
천안	36,999	38,163	43,292	46,263	48,295	43,913	44,222	44,056	41,842	35,269
청주	39,015	40,919	41,656	44,964	51,021	46,298	45,767	46,182	43,818	39,726
충주	14,128	13,489	13,769	15,577	17,104	14,260	13,905	14,119	14,270	12,214

검찰청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제천	6,886	7,691	7,158	7,086	6,787	6,390	5,986	5,903	5,649	5,577
영동	3,414	3,316	3,302	3,623	3,259	3,020	2,673	3,323	3,249	2,930
대구	101,075	94,367	95,746	98,787	98,506	89,621	85,753	89,907	83,411	72,927
안동	13,404	12,745	12,985	13,244	12,416	11,806	10,944	11,702	11,493	10,161
경주	13,256	14,377	12,774	13,362	12,974	12,393	10,855	11,707	10,500	9,325
포항	23,231	25,424	22,382	23,637	22,937	22,055	21,277	21,857	19,398	16,882
김천	25,732	27,104	25,438	26,971	27,520	25,274	22,493	23,189	21,835	19,046
상주	7,634	7,724	7,276	7,496	7,277	7,139	7,576	7,807	7,417	6,773
의성	3,796	4,056	3,687	3,846	4,415	3,944	4,058	4,492	4,065	4,240
영덕	3,726	3,913	3,959	4,239	4,244	4,376	4,313	4,062	4,319	3,902
대구서부	47,703	47,116	48,041	50,597	47,113	43,776	40,931	43,275	41,894	38,438
부산	133,132	135,847	138,579	138,971	134,094	90,312	78,056	84,222	74,932	63,992
부산동부	43,464	44,037	42,094	46,398	44,792	42,596	40,629	42,566	39,187	35,074
부산서부	-	-	-	-	-	37,240	42,841	45,057	42,435	36,954
울산	60,683	67,016	64,205	69,837	69,618	63,190	59,769	62,922	56,258	54,598
창원	48,574	54,548	49,294	52,880	54,616	51,915	48,384	52,698	49,897	41,694
진주	22,829	22,730	22,036	23,244	23,191	21,133	19,591	21,876	25,006	23,584
통영	22,008	22,604	22,667	24,614	26,793	24,519	20,754	20,871	20,408	16,665
밀양	6,782	6,341	6,753	7,009	6,918	6,836	6,478	8,029	6,975	6,733
거창	5,091	5,046	4,975	5,422	5,610	4,901	4,432	4,811	4,560	4,287
마산	19,111	19,963	20,829	22,187	21,268	18,875	17,839	19,253	17,355	14,717
광주	94,790	97,246	94,977	93,188	89,002	83,088	78,863	81,976	77,858	66,839
목포	23,895	25,656	24,568	25,137	25,152	22,224	21,125	21,387	20,939	19,985
장흥	3,187	3,233	3,120	3,264	3,502	3,264	3,179	3,245	3,154	2,947
순천	40,558	39,768	38,272	42,618	42,724	37,967	35,909	38,359	34,803	31,781
해남	6,879	7,263	6,619	7,106	7,081	6,992	6,490	6,483	6,218	5,945
전주	40,733	37,598	36,633	38,139	39,814	36,768	36,669	37,815	35,442	31,567
군산	30,632	27,495	26,272	26,145	26,631	26,545	24,709	24,975	23,236	20,603
정읍	8,632	8,624	8,389	8,902	8,865	9,267	8,242	8,646	8,227	8,243
남원	5,077	4,643	4,566	5,053	4,737	4,893	4,027	4,261	4,112	4,075
제주	28,793	32,346	34,134	39,537	45,049	43,096	36,708	35,463	35,837	32,522

※ 2021년은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 접수 건수 포함

다. 고소·고발 사건

| 표 5-31 |

(단위 :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724,116	758,785	743,223	768,579	744,960	729,229	782,251	850,551	843,712	522,368
	구수		47,077	58,920	58,821	62,890	59,659	60,869	68,140	78,511	100,422	116,196
	신수		677,039	699,865	684,402	705,689	685,301	668,360	714,111	772,040	743,290	406,172
처리	계		665,687	699,795	680,782	708,905	683,655	661,220	704,080	750,668	727,137	491,624
	기소	소계	149,723	158,071	152,955	147,111	144,331	135,601	135,340	140,519	135,290	110,220
		구공판	38,088	43,723	46,110	43,211	45,478	43,122	44,932	48,323	51,815	40,001
		구약식	111,635	114,348	106,845	103,890	98,853	92,479	90,408	92,196	83,475	70,219
	불기소	소계	449,344	461,758	465,207	497,561	464,421	452,450	488,050	524,399	505,758	165,338
		무혐의	167,592	167,470	169,636	175,930	174,599	166,589	179,861	187,842	186,589	54,534
		기소유예	44,070	41,160	40,706	46,201	36,880	33,939	31,958	30,678	26,436	29,287
		기소중지	73,812	84,669	84,952	87,672	84,139	80,201	82,678	88,105	72,143	21,090
		기타	163,870	168,459	169,913	187,758	168,803	171,721	193,553	217,774	220,590	60,427
	보완수사요구		-	-	-	-	-	-	-	-	-	99,634
	이송	소년보호	2,199	1,573	1,441	1,241	1,614	2,040	2,354	2,705	2,706	2,554
		가정보호	549	626	867	973	909	895	995	839	712	812
		타관	63,872	77,767	60,309	62,018	72,378	69,855	76,961	81,704	82,088	112,526
		성매매보호	-	-	3	1	2	3	1	-	5	2
		아동보호	-	-	-	-	-	376	379	502	578	538
미제			58,429	58,990	62,441	59,674	61,305	68,009	78,171	99,883	116,575	30,744

라. 주요범죄유형별 사범

| 표 5-32 | 병역사범

(단위 :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26,034	33,626	25,824	23,301	19,397	11,352	8,392	7,605	5,343	2,609
	구수		81	155	160	99	76	80	78	114	135	124
	신수		25,953	33,471	25,664	23,202	19,321	11,272	8,314	7,491	5,208	2,485
처리	계		23,345	25,888	33,461	25,729	23,229	19,318	11,272	8,274	5,221	2,565
	기소	소계	13,781	15,764	20,003	16,604	16,359	13,852	7,680	5,201	2,676	1,130
		구공판	1,675	1,627	1,834	1,899	1,786	1,623	1,293	963	816	655
		구약식	12,106	14,137	18,169	14,705	14,573	12,229	6,387	4,238	1,860	475
	불기소	소계	8,789	9,129	11,973	8,682	6,443	5,091	3,348	2,785	2,275	598
		무혐의	383	367	405	393	432	407	242	277	205	86
		기소유예	1,096	1,309	1,493	1,187	1,207	1,026	969	1,190	464	280
		기소중지	6,596	6,968	6,823	5,870	3,903	2,591	1,240	828	1,189	15
		기타	714	485	3,252	1,232	901	1,067	897	490	417	217
	보완수사요구		-	-	-	-	-	-	-	-	-	645
	이송	소년보호	-	-	-	-	-	-	-	-	-	-
		타관	775	995	1,485	443	427	375	244	288	270	192
		성매매송치	-	-	-	-	-	-	-	-	-	-
미제			81	146	165	95	72	79	80	118	122	44

| 표 5-33 | 경제사범

(단위 :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129,450	124,139	125,015	134,123	118,507	115,754	103,541	107,950	118,138	83,911
	구수		9,117	11,246	10,474	10,138	9,562	10,451	11,593	12,145	16,630	21,063
	신수		120,333	112,893	114,541	123,985	108,945	105,303	91,948	95,805	101,508	62,848
처리	계		119,048	114,372	114,950	125,059	108,785	104,756	92,204	93,090	96,994	75,724
	기소	소계	27,697	26,896	26,097	26,878	27,418	27,639	23,072	22,718	22,605	17,954
		구공판	8,277	8,479	9,146	9,208	9,114	8,897	8,667	8,492	8,519	7,028
		구약식	19,420	18,417	16,951	17,670	18,304	18,742	14,405	14,226	14,086	10,926
	불기소	소계	77,534	72,154	76,958	86,499	66,829	60,151	53,329	54,188	57,787	23,302
		무혐의	16,788	17,072	16,885	17,335	17,295	17,419	17,045	18,389	22,573	7,582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소유예	16,240	15,578	17,135	19,042	12,547	11,420	9,204	8,134	8,555	7,346
	기소중지	7,787	7,834	8,701	8,201	6,835	6,570	7,270	8,300	7,638	2,400
	기타	36,719	31,670	34,237	41,921	30,152	24,742	19,810	19,365	19,021	5,974
	보완수사요구	-	-	-	-	-	-	-	-	-	14,108
이송	소년보호	759	833	680	700	664	534	454	488	616	664
이송	가정보호	-	-	-	-	-	1	-	-	-	-
이송	타관	13,058	14,489	11,215	10,982	13,874	16,431	15,349	15,696	15,986	19,696
이송	성매매	-	-	-	-	-	-	-	-	-	-
미제		10,402	9,767	10,065	9,064	9,722	10,998	11,337	14,860	21,144	8,187

| 표 5-34 | 폭력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427,029	407,284	404,955	431,618	450,413	437,983	419,272	419,596	376,618	245,030
접수	구수	8,811	8,963	6,775	6,863	6,754	7,481	8,272	9,469	10,762	16,632
접수	신수	418,218	398,321	398,180	424,755	443,659	430,502	411,000	410,127	365,856	228,718
처리	계	418,265	399,869	397,142	424,815	443,141	429,923	410,157	407,715	360,619	238,674
처리	기소 소계	125,433	114,961	105,712	98,166	98,581	93,055	91,871	93,464	97,101	82,432
처리	기소 구공판	22,496	25,799	30,006	28,631	32,339	30,206	28,878	28,315	27,986	24,324
처리	기소 구약식	102,937	89,162	75,706	69,535	66,242	62,849	62,993	65,149	69,115	58,108
처리	불기소 소계	269,504	263,823	269,267	293,812	308,410	302,149	284,118	276,000	230,289	94,898
처리	불기소 무혐의	35,343	34,033	33,672	33,511	32,274	31,211	32,250	33,867	33,745	9,003
처리	불기소 기소유예	83,948	70,644	61,757	58,882	51,859	47,175	40,459	34,857	28,649	23,864
처리	불기소 기소중지	10,401	20,157	33,711	45,534	53,443	57,892	55,328	56,412	37,900	25,252
처리	불기소 기타	139,812	138,989	140,127	155,885	170,834	165,871	156,081	150,864	129,995	36,779
처리	보완수사요구	-	-	-	-	-	-	-	-	-	22,098
처리	이송 소년보호	12,473	7,593	6,476	6,072	6,329	7,291	6,914	6,807	5,930	5,247
처리	이송 가정보호	3,605	6,170	9,069	19,127	20,989	17,701	18,247	21,712	18,206	21,008
처리	이송 타관	7,250	7,322	6,618	7,638	8,832	9,471	8,756	9,385	8,780	12,724
처리	이송 성매매	-	-	-	-	-	-	-	-	-	-
처리	이송 아동보호	-	-	-	-	-	256	251	347	313	267
미제		8,764	7,415	7,813	6,802	7,272	8,060	9,115	11,881	15,999	6,356

| 표 5-35 | 강력사범

(단위 :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19,798	18,855	18,125	17,655	16,041	17,713	17,271	17,849	8,804	6,091
	구수		1,010	993	926	1,196	838	1,299	1,213	1,277	1,551	868
	신수		18,788	17,862	17,199	16,459	15,203	16,414	16,058	16,572	7,253	5,223
처리	계		18,789	17,391	16,826	16,763	14,726	16,449	15,965	15,224	8,061	5,782
	기소	소계	7,178	6,681	6,450	5,912	5,260	4,671	4,787	4,665	2,173	1,812
		구공판	6,926	6,403	5,796	5,158	4,810	4,382	4,514	4,504	2,135	1,790
		구약식	252	278	654	754	450	289	273	161	38	22
	불기소	소계	9,199	8,714	8,466	9,099	7,694	10,335	9,630	8,892	5,264	1,842
		무혐의	3,347	3,482	3,775	3,869	3,866	3,964	4,094	4,362	1,073	379
		기소유예	1,006	936	1,096	1,196	978	785	682	667	376	290
		기소중지	819	962	1,058	1,042	1,234	1,246	1,116	1,093	143	96
		기타	4,027	3,334	2,537	2,992	1,616	4,340	3,738	2,770	3,672	1,077
	보완수사요구		-	-	-	-	-	-	-	-	-	550
	이송	소년보호	1,145	673	593	379	384	347	284	312	167	117
		가정보호	22	24	25	49	29	26	33	19	5	4
		타관	1,245	1,299	1,292	1,324	1,359	1,066	1,224	1,331	451	1,451
		성매매	-	-	-	-	-	-	-	-	-	-
		아동보호	-	-	-	-	-	-	4	7	5	6
미제			646	1,009	1,464	1,299	892	1,315	1,264	1,306	2,625	309

※ 검찰통계사무규정 개정(2020. 5. 8.)에 따라 흉악사범에서 강력사범으로 변경

| 표 5-36 | 교통사범

(단위 :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650,966	654,364	644,397	663,726	688,128	581,769	471,945	442,188	424,448	258,499
	구수		2,689	1,960	1,870	2,528	2,456	2,941	3,317	3,234	3,630	8,108
	신수		648,277	652,404	642,527	661,198	685,672	578,828	468,628	438,954	420,818	250,391
처리	계		648,985	652,063	641,732	661,340	685,327	578,550	468,775	438,643	416,395	255,697
	기소	소계	394,315	388,961	361,137	351,980	358,119	310,143	249,514	213,543	198,716	183,680
		구공판	82,244	51,890	41,637	36,105	42,152	42,485	38,084	43,579	55,864	49,717
		구약식	312,071	337,071	319,500	315,875	315,967	267,658	211,430	169,964	142,852	133,963
	불기소	소계	243,731	253,597	270,987	299,463	314,563	255,695	208,095	213,993	205,785	45,514
		무혐의	44,250	53,248	59,968	67,463	76,786	50,160	24,020	22,971	22,992	5,486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소유예	54,666	55,688	58,600	70,892	75,315	51,319	25,329	19,752	22,055	22,612
		기소중지	9,992	11,857	14,304	14,575	15,120	14,454	16,565	19,964	17,186	8,026
		기타	134,823	132,804	138,115	146,533	147,342	139,762	142,181	151,306	143,552	9,390
	보완수사요구		-	-	-	-	-	-	-	-	-	16,117
	이송	소년보호	7,258	5,813	5,042	4,731	4,901	5,073	4,231	4,535	5,496	4,702
		가정보호	3	-	-	1	1	1	-	-	1	-
		타관	3,678	3,692	4,566	5,165	7,743	7,638	6,935	6,572	6,397	5,684
		성매매	-	-	-	-	-	-	-	-	-	-
미제			1,981	2,301	2,665	2,386	2,801	3,219	3,170	3,545	8,053	2,802

마. 주요신분별 사건

| 표 5-37 | 소년사범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120,191	102,454	91,100	91,723	88,226	85,178	76,642	76,871	74,422	57,247
	구수		1,069	1,563	1,018	921	823	1,062	1,276	1,690	1,817	3,101
	신수		119,122	100,891	90,082	90,802	87,403	84,116	75,366	75,184	72,613	54,146
처리	계		118,714	101,421	90,158	90,890	87,277	84,026	75,150	75,197	72,344	55,854
	기소	소계	8,475	8,086	6,764	6,618	6,238	5,648	5,945	6,155	6,847	5,224
		구공판	5,315	5,197	4,284	4,437	4,010	3,531	3,944	4,255	4,949	3,692
		구약식	3,160	2,889	2,480	2,181	2,228	2,117	2,001	1,900	1,898	1,532
	불기소	소계	66,766	55,541	50,897	51,086	47,718	46,166	37,873	36,499	30,331	18,365
		무혐의	6,174	5,702	5,260	6,201	5,964	5,532	5,280	5,522	5,395	724
		기소유예	44,349	35,132	31,036	30,371	26,558	25,416	20,237	19,157	15,952	13,420
		기소중지	2,537	5,349	6,490	5,322	6,707	6,566	5,031	4,889	3,081	2,948
		기타	13,706	9,358	8,111	9,192	8,489	8,652	7,325	6,931	5,903	1,273
	보완수사요구		-	-	-	-	-	-	-	-	-	4,709
	이송	소년보호	37,193	29,937	25,191	24,999	25,159	24,935	23,478	24,393	25,869	20,998
		가정보호	19	36	49	156	180	183	169	212	233	405
		아동보호	-	-	-	-	-	-	9	6	9	5
		타관	6,257	7,820	7,253	8,023	7,972	7,067	7,666	7,926	9,054	6,148
		성매매	4	1	4	8	10	27	10	6	1	-
미제			1,477	1,033	942	833	949	1,152	1,492	1,677	2,086	61,393

※ 소년범 : 20세 미만 범죄(2008. 6. 22.시행 개정소년법 나이〈19세 미만〉 미반영)

| 표 5-38 | 학생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2,194	5,536	6,047	4,947	2,972	2,264	1,061	1,360	3,082	4,731
	구수			26	137	74	76	35	17	27	39	35	153
	신수			2,168	5,399	5,973	4,871	2,937	2,247	1,034	1,321	3,047	4,578
처리	계			2,077	5,460	5,970	4,912	2,957	2,242	1,024	1,329	2,954	4,583
	기소	소계		152	215	363	274	244	148	40	27	147	298
		구공판		69	147	177	95	85	86	16	9	84	102
		구약식		83	68	186	179	159	62	24	18	63	196
	불기소	소계		1,307	3,435	3,645	3,046	1,809	1,417	534	676	1,358	1,719
		무혐의		142	344	415	463	247	163	55	95	257	75
		기소유예		841	2,431	2,353	1,829	1,007	863	288	343	716	1,231
		기소중지		71	125	179	245	211	210	90	103	138	353
		기타		253	535	698	509	344	181	101	135	247	60
	보완수사요구			-	-	-	-	-	-	-	-	-	335
	이송	소년보호		529	1,473	1,520	1,089	670	495	336	448	1,121	1,628
		가정보호		-	2	2	4	4	2	3	5	10	41
		타관		89	335	439	496	229	180	111	173	318	562
		성매매		-	-	1	3	1	-	-	-	-	-
미제				117	76	77	35	15	22	37	31	128	148

| 표 5-39 |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6,636	9,182	7,778	7,942	9,480	13,466	18,458	19,483	21,622	17,707
	구수			720	822	884	1,085	960	1,233	1,634	1,677	2,057	2,850
	신수			5,916	8,360	6,894	6,857	8,520	12,233	16,824	17,806	19,565	14,857
처리	계			6,148	8,288	7,044	7,314	8,553	12,041	17,083	17,697	18,870	16,850
	기소	소계		423	332	415	293	303	345	190	180	128	104
		구공판		375	280	354	256	274	301	147	148	111	97
		구약식		48	52	61	37	29	44	43	32	17	7
	불기소	소계		5,376	7,524	6,278	6,755	7,831	11,157	16,227	17,029	18,210	11,482
		무혐의		2,349	2,561	2,560	2,443	2,481	2,894	2,920	2,988	3,102	1,601
		기소유예		165	133	121	99	104	171	95	80	60	68
		기소중지		24	58	91	71	45	79	74	65	78	26
		기타		2,838	4,772	3,506	4,142	5,201	8,013	13,138	13,896	14,970	9,787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완수사요구		-	-	-	-	-	-	-	-	-	470
	이송	소년보호	-	-	-	-	-	-	-	-	-	-
		가정보호	-	-	-	-	-	-	-	-	-	-
		타관	349	432	351	266	419	539	666	488	532	4,794
		성매매	-	-	-	-	-	-	-	-	-	-
미제			488	894	734	628	927	1,425	1,375	1,786	2,752	857

| 표 5-40 | 외국인 사건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33,121	35,281	38,674	48,277	54,200	46,928	45,068	50,867	49,504	36,375
	구수		757	821	775	1,283	1,049	1,257	1,145	1,486	1,785	2,581
	신수		32,364	34,460	37,899	46,994	53,151	45,671	43,923	49,381	47,719	33,794
처리	계		32,365	34,561	37,615	47,280	53,001	45,867	43,671	48,866	48,071	35,128
	기소	소계	12,584	13,965	13,863	16,535	18,332	14,944	13,789	14,811	14,921	13,753
		구공판	2,208	2,451	2,894	3,979	3,985	3,974	4,162	4,927	5,221	5,028
		구약식	10,376	11,514	10,969	12,556	14,347	10,970	9,627	9,884	9,700	8,725
	불기소	소계	18,441	19,093	22,100	28,377	31,609	28,173	27,097	30,174	29,157	13,312
		무혐의	3,040	3,410	4,138	5,981	6,832	5,840	5,175	5,649	5,930	1,414
		기소유예	7,950	7,227	8,308	10,246	11,788	9,960	9,130	10,599	9,169	7,406
		기소중지	3,026	3,405	4,191	5,642	5,863	5,325	5,385	5,851	6,204	2,141
		기타	4,425	5,051	5,463	6,508	7,126	7,048	7,407	8,075	7,854	2,351
	보완수사요구		-	-	-	-	-	-	-	-	-	4,350
	이송	소년보호	29	38	31	45	48	57	61	86	164	125
		가정보호	39	96	145	314	350	303	365	480	388	478
		타관	1,266	1,366	1,468	2,004	2,649	2,386	2,320	3,312	3,439	3,105
		성매매	6	3	8	5	13	4	6	3	2	5
미제			756	720	1,059	997	1,199	1,061	1,397	1,940	1,322	1,247

| 표 5-41 |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형사사건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발생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	주한미군지위협정사건 전체범죄에 대한행사
		총계	미측 관할 제외 총계	미군인				미군속 등		
				계	미측 관할	공소권 없음	미측관할 및 공소권 없음 제외			
'12	건	344	322	264	22	158	84	80	64(76.2%)	144
	명	379	357	294	22	175	97	85	70(72.2%)	155
'13	건	365	354	273	11	134	128	92	89(69.5%)	181
	명	403	392	305	11	163	131	98	98(74.8%)	196
'14	건	405	388	286	17	146	123	119	93(75.6%)	212
	명	433	416	300	17	152	131	133	97(74.0%)	230
'15	건	387	370	265	17	138	110	122	78(70.9%)	200
	명	419	402	289	17	152	120	130	82(68.3%)	212
'16	건	388	339	293	49	170	74	95	68(91.9%)	163
	명	426	377	326	49	198	79	100	71(89.9%)	171
'17	건	374	340	265	34	153	78	109	58(74.4%)	167
	명	415	381	295	34	169	92	120	62(67.4%)	182
'18	건	351	312	296	39	186	71	55	69(97.1%)	124
	명	378	339	319	39	202	78	59	70(89.7%)	129
'19	건	444	417	395	27	212	156	49	106(67.9%)	155
	명	477	450	426	27	232	167	51	107(64.1%)	158
'20	건	541	508	392	33	231	128	149	69(54.0%)	218
	명	587	554	426	33	258	135	161	70(51.9%)	231
'21	건	457	428	313	29	161	123	144	95(77.2%)	239
	명	487	458	337	29	172	136	150	104(76.4%)	254

※ '공소권없음'은 미군인 범죄로 집계는 되었으나,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교통사고의 종합보험 가입의 사유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임

※ 2003년부터는 재판권행사율 산정 시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분모에 산입하지 않음

2. 구속영장 발부 등

| 표 5-42 | 구속영장 발부 및 처리

(단위 : 명)

연도	구분	구속영장 발부 현황					구속인원 처리현황										
		청구 및 신청	기각		발부	미집행	계	기소			소년(가정) 보호사건 송치	불기소					보완수사 요구
			검사	판사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기타	
'12	계	41,270	6,202	7,195	27,327	-	27,948	27,429	27,333	96	258	261	38	31	87	105	-
	검사	6,873	-	1,711	4,618	-	4,421	4,398	4,381	17	1	22	4	14	1	3	-
	사경	34,397	6,202	5,484	22,709	-	23,527	23,031	22,952	79	257	239	34	17	86	102	-
'13	계	38,766	5,655	5,914	26,716	-	28,298	28,040	27,953	87	118	140	33	42	65	82	-
	검사	7,327	-	1,769	5,075	-	5,476	5,440	5,424	16	-	36	1	32	3	5	-
	사경	31,439	5,655	4,145	21,641	-	22,822	22,600	22,529	71	118	104	32	10	62	77	-
'14	계	41,637	5,310	7,303	28,580	-	30,547	30,269	30,207	62	79	199	16	39	64	80	-
	검사	8,134	-	1,903	5,835	-	6,786	6,750	6,731	19	-	36	3	31	1	1	-
	사경	33,503	5,310	5,400	22,745	-	23,761	23,519	23,476	43	79	163	13	8	63	79	-
'15	계	44,110	5,695	6,831	31,153	-	33,946	33,731	33,655	76	67	148	21	37	47	43	-
	검사	7,013	-	1,528	5,142	-	6,181	6,147	6,115	32	-	34	3	27	1	3	-
	사경	37,097	5,695	5,303	26,011	-	27,765	27,584	27,540	44	67	114	18	10	46	40	-
'16	계	46,198	6,088	7,187	32,369	-	35,154	35,010	34,948	62	25	119	6	36	34	43	-
	검사	8,165	-	1,812	5,889	-	7,015	6,995	6,974	21	-	20	-	19	-	1	-
	사경	38,033	6,088	5,375	26,480	-	28,139	28,015	27,974	41	25	99	6	17	34	42	-
'17	계	41,701	6,574	6,682	28,340	-	31,355	31,185	31,126	59	19	151	6	39	40	66	-
	검사	5,919	-	1,485	4,414	-	5,706	5,670	5,658	12	-	36	-	30	3	3	-
	사경	35,782	6,574	5,197	23,926	-	25,649	25,515	25,468	47	19	115	6	9	37	63	-
'18	계	35,946	5,871	5,585	24,438	-	27,525	27,388	27,332	56	20	117	6	20	32	59	-
	검사	4,225	-	1,118	3,095	-	4,584	4,559	4,534	25	1	24	2	18	1	3	-
	사경	31,721	5,871	4,467	21,343	-	22,941	22,829	22,798	31	19	93	4	2	31	56	-
'19	계	35,345	5,683	5,587	24,018	-	26,860	26,756	26,704	52	8	96	5	16	34	41	-
	검사	3,167	-	922	2,235	-	3,645	3,628	3,604	24	-	17	1	14	1	1	-
	사경	32,178	5,683	4,665	21,783	-	23,215	23,128	23,100	28	8	79	4	2	33	40	-
'20	계	31,033	5,260	4,656	21,098	-	24,467	24,373	24,335	38	6	88	4	8	30	46	-
	검사	1,807	-	513	1,289	-	3,126	3,116	3,094	22	-	10	-	5	1	4	-
	사경	29,226	5,260	4,143	19,809	-	21,341	21,257	21,241	16	6	78	4	3	29	42	-
'21	계	28,201	6,174	3,895	18,064	-	20,973	20,897	20,861	36	3	45	-	4	21	20	28
	검사	1,217	-	330	886	-	2,351	2,320	2,302	18	-	3	-	2	1	-	28
	사경	26,984	6,174	3,565	17,178	-	18,622	18,577	18,559	18	3	42	-	2	20	20	-

3. 구속적부심사

| 표 5-43 |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2,052	1,746	2,127	2,117	2,353	2,125	1,994	1,929	1,815	1,542
	구 수	-	-	-	-	-	-	-	-	-	-
	신 수	2,052	1,746	2,127	2,117	2,353	2,125	1,994	1,929	1,815	1,542
처리	계	2,052	1,717	2,127	2,117	2,353	2,125	1,993	1,929	1,812	1,542
	석 방	439	304	441	344	355	301	240	197	118	92
	기 각	1,573	1,379	1,656	1,748	1,972	1,795	1,730	1,691	1,666	1,428
	취 하	40	34	30	25	26	29	23	41	28	22
심사중		-	-	-	-	-	-	1	-	1	-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표 5-44 | 항고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24,365	48,642	51,995	55,140	53,168	57,306	65,456	80,195	80,627	44,057
	구 수	1,804	3,447	3,327	4,386	4,505	4,825	5,435	7,936	7,651	7,738
	신 수	22,561	45,195	48,668	50,754	48,663	52,481	60,021	72,259	72,976	36,319
처리	계	22,574	45,312	47,602	50,632	48,341	51,886	57,524	72,539	72,879	40,826
	기소명령	292	176	201	121	117	96	50	60	28	17
	재기수사명령	1,795	3,060	3,606	3,436	3,067	3,646	4,402	4,695	4,706	3,017
	주문변경명령	118	103	114	90	255	240	140	135	44	39
	항고기각	19,178	37,736	39,618	42,984	40,305	42,247	43,628	52,451	57,580	35,484
	각 하	1,191	4,237	4,063	4,001	4,597	5,648	9,304	15,198	10,521	2,269
미제		1,791	3,330	4,393	4,508	4,827	5,440	7,932	7,656	7,748	3,231

| 표 5-45 | 재항고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수	계	2,244	2,651	2,936	3,110	2,669	3,754	4,300	7,312	6,447	4,616
	구 수	602	1,110	919	461	348	465	523	908	1,479	1,184
	신 수	1,642	1,541	2,017	2,649	2,321	3,289	3,777	6,404	4,968	3,432
처리	계	1,737	1,732	2,476	2,762	2,204	3,231	3,392	5,833	5,263	3,924
	기소명령	-	-	-	-	-	-	-	-	-	-
	재기수사명령	122	72	52	72	59	61	56	104	142	74
	주문변경명령	-	-	-	1	-	-	-	-	-	-
	항고기각	307	928	1,501	1,722	1,655	2,170	2,247	3,717	4,550	3,059
	각 하	1,308	732	923	967	490	1,000	1,089	2,012	571	791
미제		507	919	460	348	465	523	908	1,479	1,184	692

| 표 5-46 | 재정신청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심사중		2,652	14,688	16,037	19,377	22,165	25,061	29,406	36,793	42,005	41,370
접수	계	7,740	18,884	20,771	21,043	19,393	21,285	24,212	34,758	29,743	17,156
	공소제기명령	-	-	-	-	-	-	-	-	-	-
	고법송부	7,739	18,884	20,771	21,043	19,393	21,285	24,209	34,756	29,742	17,155
	신청취소	1	-	-	-	-	-	3	2	1	1
처리	계	7,080	14,419	18,007	19,461	16,605	18,389	19,864	27,369	24,530	17,790
	신청기각	6,911	14,231	17,738	19,184	16,392	18,014	19,586	27,085	24,209	17,571
	공소제기결정	105	118	150	160	86	171	106	97	161	111
	신청취소	64	70	119	117	127	204	172	187	160	108

5. 형의 집행

| 표 5-47 | 사형집행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2000	2001	2002	'03 ~ '07	2008	'09 ~ '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집 행 인 원	-	-	-	-	-	-	-	-	-	-	-	-
기 타 (사면·감형 등)	17	2	-	4	-	6	-	-	-	-	-	-

| 표 5-48 | 벌과금 집행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조정금액	처분금액				집행미제액
		현금집행	유치집행	기타처분 금액	계	
2012	30,812,230,452	1,411,087,487	2,937,264,777	302,088,236	4,650,440,500	26,161,789,951
2013	30,255,449,022	1,478,847,909	2,500,582,716	238,671,053	4,218,101,678	26,037,347,344
2014	30,338,793,001	1,515,336,230	2,437,519,838	212,084,718	4,164,940,786	26,173,852,215
2015	30,427,117,765	1,485,721,253	2,172,718,742	285,497,041	3,943,937,036	26,483,180,729
2016	30,973,951,033	1,477,985,331	2,702,019,260	180,568,827	4,360,573,419	26,613,377,614
2017	31,479,966,569	1,440,018,684	2,920,347,012	148,669,665	4,509,035,361	26,970,931,208
2018	32,367,440,507	1,302,533,747	3,123,518,750	652,849,501	5,078,901,998	27,288,538,509
2019	32,616,527,504	1,223,258,449	3,000,576,228	494,089,002	4,717,923,679	27,898,603,825
2020	37,922,664,770	1,277,513,057	4,242,205,364	321,135,450	5,840,853,871	32,081,810,899
2021	37,716,213,301	1,194,457,327	3,941,826,907	157,795,659	5,294,079,893	32,422,133,408

※ 조정금액은 당해년도 벌과금 조정총액에서 촉탁금액을 감액한 실조정금액
※ 기타 처분금액은 사회봉사 집행, 집행불능 결정, 공제(미결구금일수 통산)금액의 합계액
※ 집행미제액은 사회봉사집행 중, 집행정지, 순미제 금액의 합계액

6. 사 면

| 표 5-49 | 사면

(단위 : 명)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82. 1. 1.	-	11	-	-	-	-	-	징계변호사
'82. 3. 3.	-	1,419 (488)	-	545 (248)	-	238 (233)	-	12대 대통령취임 1주년
'83. 3. 15.	-		-	2	-	-	-	미문화원 방화사건
'83. 8. 12.	-	77 (1)	-	10	-	551 (257)	-	광복절
'83. 12. 23.	-	36	-	-	-	142 (66)	-	성탄절
'84. 8. 14.	-	43	-	2	-	307 (71)	364 (50)	광복절
'84. 10. 2.	-	-	-	177 (40)	-	-	-	개천절
'85. 3. 2.	-	1,615 (393)	-	512 (186)	-	-	-	대통령취임 4주년
'85. 8. 15.	-	-	-	4	-	-	-	40주년 광복절(국가유공자등)
'87. 7. 10.	-	1,819 (7)	-	-	-	401 (21)	115 (43)	7·1대통령담화관련
'88. 2. 27.	-	4,214 (788)	-	835 (185)	-	992 (665)	334 (19)	제13대 대통령취임
'88. 12. 21.	-	1,113 (20)	-	96 (5)	-	365 (31)	155 (6)	11·26 대통령특별 담화관련
'90. 4. 12.	-	1	-	-	-	-	-	김현희
'91. 2. 25.	-	914 (187)	-	565 (187)	-	-	-	대통령취임 3주년
'91. 5. 25.	-	-	-	30 (9)	-	-	-	-
'91. 12. 24.	-	1	-	-	-	1	-	-
'92. 12. 24.	-	9	-	1	-	12	2	-
'93. 3. 6.	-	34,147 (590)	-	1,076 (167)	-	2,987 (81)	2,703 (66)	제14대 대통령취임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93. 5. 28.	-	81 (75)	-	-	-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
'93. 12. 24.	-	137	-	-	-	24	26	전교조 관련
'95. 8. 15.	-	1,269 (103)	-	426 (46)	-	528 (29)	318 (23)	8·15 광복절
'95. 12. 2.	일반사면(대통령령 제14818호)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자 및 징계 공무원
'96. 2. 25.	-	1	-	-	-	-	22	대통령취임 3주년
'96. 8. 15.	-	-	-	-	-	5	6	광복 51주년 경축
'97. 10. 3.	-	1	-	-	-	8	14	개천절기념
'97. 12. 22.	-	17	-	-	-	-	8	전직대통령 등
'98. 3. 13.	-	2,058 (231)	-	1,258 (61)	-	806	30,681	제15대 대통령 취임 기념
'98. 8. 15.	-	18 (3)	-	13	-	1,402 (5)	3,406 (12)	건국 50주년 경축
'99. 2. 25.	-	2,707 (2)	-	12	-	1,088 (28)	3,501 (50)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99. 8. 15.	-	40 (1)	-	7	-	256 (9)	788 (16)	광복 54주년 경축
'00. 8. 15.	-	3,881 (58)	-	810 (8)	-	525 (3)	23,148 (163)	광복 55주년 경축
'02. 7. 10.	월드컵 경축	-	-	-	-	-	-	운전면허벌점 등 감면 4,810,000명
'02. 12. 31.	-	54	-	4	-	25	39	복역중인 외국인 51명 잔형집행 면제포함
'03. 4. 30.	-	38 (1)	-	-	-	431	955 (5)	제16대 대통령 취임(공안사범 사면)
'03. 8. 15.	-	2,363 (502)	-	675 (10)	-	170	21,417	광복 58주년 경축
'04. 5. 26.	-	1	-	-	-	6	62	부처님 오신 날 경축
'05. 8. 15.	-	2,528 (62)	-	567 (20)	-	1,483 (1)	9,515 (19)	광복 60주년경축(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4,207,152명)
'06. 8. 15.	-	46	-	19	-	27	50	광복 61주년경축(건설업체 벌점 삭제 등 4,390명)
'07. 2. 12.	-	28	-	12	-	276	118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08. 1. 1.	-	8	-	14	-	18	35	
'08. 6. 4.	-	119	-	31	-	-	-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2,828,917명)
'08. 8. 15.	-	1,401 (8)	-	178	-	1,951	8,797 (16)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 경축 (징계사면 32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취득결격기간 해제 500명)
'09. 8. 15.	-	1,947 (6)	-	375	-	-	7,145 (2)	제64주년 광복절, 건국 61주년 경축
'09. 12. 31.	-	1	-	-	-	-	-	-
'10. 8. 15.	-	25	-	15	-	2,406	47	제65주년 광복절 기념 (징계사면 5,685)
'12. 1. 12.	-	595	-	185	-	-	165	-
'13. 1. 31.	-	16	-	3	-	18	18	-
'14. 1. 29.	-	516 (1)	-	113	-	-	5,296 (1)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7,601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896,499명
'15. 8. 15.	-	877 (5)	-	246	-	1	5,403 (5)	제70주년 광복절 기념(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200,925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206,924명)
'16. 8. 15.	-	858 (6)	-	261	-	3	3,754 (6)	제71주년 광복절 기념(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420,049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422,493명)
'17. 12. 30.	-	852 (2)	-	245	-	17	5,330 (2)	2018년 신년(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650,975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652,691명)
'19. 2. 28.	-	819 (1)	-	243 (1)	-	89	3,227 (2)	제100주년 3·1절
'19. 12. 31.	-	569 (1)	-	153	-	2,159	2,293 (2)	2020년 신년(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709,822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712,422명)
'20. 12. 31.	-	556	-	153	-	8	2,307 (1)	2021년 신년(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118,923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119,608명)
'21. 12. 31.	-	642	-	131	-	369	1952	2022년신년(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980,780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983,051명, 전직 대통령 포함)

※ ( )는 국방부 소관

7. 형사보상금 지급

| 표 5-50 |

(단위 : 천원,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	7,972,000	11,000,000	14,000,000	20,000,000	24,000,000	27,500,000	33,213,000	33,213,000	37,313,000	40,000,000
보상인원	39,519	29,015	34,363	14,546	8,713	7,374	5,073	4,257	4,380	3,414
지급금액	53,178,959	57,671,711	88,165,833	52,974,617	31,768,637	36,038,809	36,736,416	40,138,487	41,906,948	44,386,945

※ 형사보상금 = 피고인 보상금 + 피의자 보상금 + 무죄비용 보상금 + 기타

8. 마약보상금 지급

| 표 5-51 |

(단위 : 천원)

종 류 \ 구 분	민간인 보상금	공무원 보상금	계
예 산 액	120,000	180,388	300,388
2020	30,100 (7)	45,480 (247)	75,580
2021	25,300 (2)	-	25,300

※ ( )는 인원

9. 해외연수

가. 검사 장기 해외연수

| 표 5-52 |

(단위 : 명)

연도 \ 지역	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스페인	러시아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이집트	네덜란드	벨기에	싱가포르	칠레	이탈리아	인도	터키	스웨덴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
2005	28	14	1	2	1	2	2	1	-	1	1	1	1	1	-	-	-	-	-	-	-	-	-
2006	50	25	2	5	2	3	3	1	-	2	1	1	1	1	1	1	1	-	-	-	-	-	-
2007	53	26	3	4	2	3	3	1	-	3	2	1	-	1	1	-	1	1	1	-	-	-	-
2008	54	21	4	5	2	3	4	2	1	4	2	1	-	2	1	-	1	1	1	-	-	-	-
2009	53	21	4	5	3	3	4	2	-	3	1	1	-	2	1	-	1	2	-	-	-	-	-
2010	54	24	4	5	2	3	3	3	-	3	2	1	1	1	1	-	-	1	-	-	-	-	-
2011	54	20	2	5	2	5	6	3	-	6	2	1	-	1	-	-	-	-	-	1	-	-	-
2012	54	23	3	5	3	3	5	2	-	4	3	1	-	1	-	-	-	1	-	-	-	-	-
2013	54	25	3	4	3	2	3	4	-	4	3	1	-	1	-	-	-	1	-	-	-	-	-
2014	52	23	2	5	3	2	5	3	-	5	2	1	-	1	-	-	-	-	-	-	-	-	-
2015	52	24	3	5	3	2	3	4	-	4	2	1	-	1	-	-	-	-	-	-	-	-	-
2016	52	20	3	5	3	4	3	2	-	4	2	1	-	1	1	1	-	-	-	-	1	1	-
2017	57	26	3	2	3	2	5	2	-	4	1	1	-	2	1	1	1	-	-	-	2	-	1
2018	57	37	1	6	1	2	2	1	-	3	1	1	-	1	-	1	-	-	-	-	-	-	-
2019	57	45	3	2	3	2	-	-	-	1	-	-	-	1	-	-	-	-	-	-	-	-	-
2020	56	41	2	2	1	2	1	-	-	1	-	-	-	3	-	1	-	-	-	-	1	-	-
2021	58	41	4	2	1	2	-	3	-	4	-	-	-	1	-	-	-	-	-	-	-	-	-

※ 타부처 주관 포함

나. 검사 외 검찰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 표 5-53 |

(단위 : 명)

지역 / 연도	계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스페인	체코	멕시코	몽골	네덜란드
2005	4	1	1	-	-	-	-	-	-	1	1	-	-	-
2006	4	1	-	-	-	-	1	2	-	-	-	-	-	-
2007	8	2	-	-	-	2	1	1	1	1	-	-	-	-
2008	7	3	-	-	-	1	1	1	-	1	-	-	-	-
2009	5	2	1	-	-	-	1	1	-	-	-	-	-	-
2010	6	3	-	-	-	1	1	1	-	-	-	-	-	-
2011	6	3	1	-	-	-	1	-	-	-	-	1	-	-
2012	5	3	-	-	-	-	1	1	-	-	-	-	-	-
2013	7	3	-	1	-	1	1	-	-	-	-	-	1	-
2014	7	3	-	-	1	-	2	1	-	-	-	-	-	-
2015	6	3	-	-	-	-	2	1	-	-	-	-	-	-
2016	4	3	-	-	-	-	-	1	-	-	-	-	-	-
2017	6	3	-	-	-	1	1	1	-	-	-	-	-	-
2018	7	3	1	-	-	-	2	-	-	-	-	-	-	1
2019	3	2	1	-	-	-	-	-	-	-	-	-	-	-
2020	2	1	-	-	1	-	-	-	-	-	-	-	-	-
2021	7	3	1	-	2	-	-	1	-	-	-	-	-	-

※ 타부처 주관 포함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1. 감호처분

가. 감호청구

| 표 5-54 | 감호종류별 청구인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44	254	156	155	118	99	77	184	65	78
보호감호	-	-	-	-	-	-	-	-	-	-
치료감호	244	254	156	155	118	99	77	184	65	78

| 표 5-55 | 죄명별 청구인원

죄명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계	-	244	-	254	-	156	-	155	-	118	-	99	-	77	-	184	-	65	-	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7	-	5	-	1	-	-	-	1	-	-	-	-	-	1	-	2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42	-	36	-	27	-	18	-	1	-	-	-	-	-	-	-	-	-	-
절도	-	14	-	7	-	11	-	5	-	10	-	8	-	2	-	16	-	2	-	-
강도	-	4	-	5	-	4	-	2	-	2	-	2	-	-	-	3	-	-	-	
살인	-	27	-	40	-	22	-	29	-	17	-	9	-	9	-	14	-	20	-	5
강간	-	16	-	13	-	6	-	4	-	4	-	1	-	2	-	2	-	-	-	1
사기	-	10	-	10	-	4	-	3	-	0	-	2	-	-	-	5	-	3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	-	-	-	-	-	-	-	-	-	-	-	-	-	-	-	-	-	-	-
상해·폭행	-	16	-	14	-	16	-	15	-	16	-	12	-	8	-	39	-	13	-	10
방화·실화	-	10	-	14	-	11	-	11	-	6	-	14	-	7	-	12	-	3	-	1
상해(폭행)치사	-	-	-	-	-	2	-	3	-	1	-	-	-	2	-	2	-	-	-	1
무고	-	-	-	-	-	-	-	-	-	-	-	-	-	-	-	-	-	-	-	
기타	-	98	-	110	-	52	-	65	-	60	-	51	-	47	-	90	-	22	-	60

나. 피보호감호자 수용

| 표 5-56 | 죄명별 수용인원

죄명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35	119	104	100	62	31	17	31	30	32
강도	43	33	32	32	18	8	5	12	13	9
절도	23	23	19	16	10	3	3	9	9	8
폭력	4	4	2	2	-	-	1	2	-	1
성폭력	64	59	48	47	32	20	8	8	8	14
기타	1	-	3	3	2	-	-	-	-	-

| 표 5-57 | 전과별 수용인원

전과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35	119	104	100	62	31	17	31	30	32
초범	8	7	6	7	3	3	-	1	3	2
2 ~ 3범	32	28	22	18	11	5	4	7	3	3
4 ~ 5범	47	39	31	32	20	10	4	8	10	5
6 ~ 7범	34	33	31	29	20	7	6	8	3	10
8 ~ 9범	8	7	8	7	4	3	2	5	8	8
10범 이상	6	5	6	7	4	3	1	2	3	4

| 표 5-58 | 동기별 수용인원

동기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35	119	104	100	62	31	17	31	30	32
이욕(利慾)(생활비, 유흥비, 허영)	120	105	101	98	62	31	17	31	30	32
원한·분노	-	-	-	-	-	-	-	-	-	-
취중	2	4	3	2	-	-	-	-	-	-
우연	-	-	-	-	-	-	-	-	-	-
기타	13	10	-	-	-	-	-	-	-	-

| 표 5-59 | 학력별 수용인원

학력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35	119	104	100	62	31	17	31	30	32
무 학	2	9	15	11	14	-	-	3	2	3
초 졸	34	40	31	36	14	7	8	11	6	6
중 졸	45	21	19	17	12	11	2	8	15	11
고 졸	52	47	38	35	22	13	7	9	7	12
대 졸	2	2	1	1	-	-	-	-	-	-

| 표 5-60 | 직업별 수용인원

직업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35	119	104	100	62	31	17	31	30	32
노 동	45	22	29	30	12	1	3	5	3	1
종 업 원	53	32	16	14	6	1	1	2	1	2
농 업	3	1	-	1	-	-	-	-	-	-
상 업	27	13	10	9	8	3	1	2	2	1
기 타	7	51	49	46	36	26	12	22	24	28

| 표 5-61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집행기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35	119	104	100	62	31	17	31	30	32
1년 미만	17	10	5	4	7	3	3	2	-	3
1년 이상~2년 미만	28	20	13	11	7	4	7	5	3	2
2년 이상~3년 미만	30	30	23	12	10	7	1	4	3	1
3년 이상~4년 미만	18	27	27	24	22	7	1	2	6	5
4년 이상	42	32	36	49	16	10	5	18	18	21

다. 피치료감호자 수용

| 표 5-62 | 죄명별 수용인원

죄명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살인	318	334	340	372	343	338	328	336	321	310
상해(폭행)치사	35	37	37	36	34	38	30	30	28	22
폭력	163	180	195	161	137	156	149	140	171	141
절도	66	64	58	68	60	59	58	62	58	51
방화	62	63	71	80	75	80	76	74	64	49
강도	40	45	54	57	52	48	48	44	44	31
성폭력	209	247	263	279	272	242	208	184	184	144
기타	128	152	131	127	120	135	141	142	146	115

| 표 5-63 | 전과별 수용인원

전과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초범	664	721	759	769	728	721	671	657	663	577
2범	112	130	121	132	133	129	126	132	135	97
3범	63	63	70	77	61	65	57	60	61	57
4범	38	44	42	40	45	35	38	37	35	31
5범 이상	144	164	157	162	126	146	146	126	122	101

| 표 5-64 | 병명별 수용인원

병명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조현병	450	480	509	533	507	519	528	543	575	509
정신지체	86	89	104	102	97	93	84	77	84	62
조울증	54	57	72	81	85	84	71	76	79	68
성격(인격)장애	38	44	38	35	27	27	23	13	10	9
간질	28	26	20	14	12	10	10	9	10	6
약물중독	71	85	176	175	130	35	46	35	19	26
기타	294	341	230	240	235	328	276	259	239	185

| 표 5-65 | 학력별 수용인원

학력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무학	59	42	41	48	44	73	70	54	53	47
초졸	129	138	143	141	139	189	163	153	153	125
중졸	202	222	230	227	202	186	173	156	161	141
고졸	444	497	494	512	475	478	475	499	378	321
대졸	187	223	241	252	233	170	157	150	271	229

| 표 5-66 | 직업별 수용인원

직업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노동	89	103	104	102	85	94	93	81	89	73
종업원	35	43	94	67	53	46	40	30	33	26
농업	32	29	28	28	27	27	31	28	25	21
상업	11	10	41	7	40	22	17	4	3	2
무직	669	732	759	745	695	693	658	664	691	599
기타	185	205	123	231	193	214	199	205	175	142

| 표 5-67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집행기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1년 미만	293	434	548	279	283	220	195	210	193	115
1년 이상 ~ 2년 미만	225	188	126	199	181	230	167	136	153	140
2년 이상 ~ 3년 미만	135	126	115	173	133	156	178	123	112	126
3년 이상 ~ 4년 미만	104	110	99	126	115	103	116	144	103	81
4년 이상	264	264	261	403	381	387	382	399	455	401

라. 피보호감호자 교육훈련 및 기능자격취득

| 표 5-68 | 교육훈련 인원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1	17	14	7	7	-	2	-	-	1
학과교육	소계	2	4	12	7	6	-	2	-	-	-
	초등반	-	-	-	-	-	-	-	-	-	-
	중등반	-	-	-	-	-	-	-	-	-	-
	고등반	1	-	2	-	-	-	-	-	-	-
	학사고시반	1	4	10	7	6	-	2	-	-	-
직업훈련	소계	9	13	2	-	1	-	-	-	-	1
	목공	-	-	-	-	-	-	-	-	-	-
	미(도)장	-	-	-	-	-	-	-	-	-	-
	조적	-	-	-	-	-	-	-	-	-	-
	타일	-	-	-	-	-	-	-	-	-	-
	배관	-	-	-	-	-	-	-	-	-	1
	전기	-	-	-	-	-	-	-	-	-	-
	보일러시공	-	12	-	-	-	-	-	-	-	-
	이·미용	-	-	-	-	-	-	-	-	-	-
	원예	-	-	-	-	-	-	-	-	-	-
	양재	-	-	-	-	-	-	-	-	-	-
	정비	-	1	1	-	-	-	-	-	-	-
	정보기기	-	-	-	-	-	-	-	-	-	-
	기타	9	-	1	-	1	-	-	-	-	-

| 표 5-69 | 기능자격취득 인원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9	13	2	-	1	-	1	-	-	-
천안교도소	소계	-	-	-	-	-	-	-	-	-	-
	1·2기능사	-	-	-	-	-	-	1	-	-	-
	기능사보	-	-	-	-	-	-	-	-	-	-
	면허	-	-	-	-	-	-	-	-	-	-
경북북부제3교도소	소계	9	13	2	-	1	-	-	-	-	-
	1·2기능사	9	13	2	-	1	-	-	-	-	-
	기능사보	-	-	-	-	-	-	-	-	-	-
	면허	-	-	-	-	-	-	-	-	-	-

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 표 5-70 | 피보호감호자 결정 인원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5	38	33	39	59	53	31	22	34	16
가 출 소	17	37	33	23	53	43	23	11	15	15
가출소취소	8	1	-	16	6	10	8	11	19	1
집 행 면 제	-	-	-	-	-	-	-	-	-	-

| 표 5-71 | 피치료감호자 결정 인원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65	268	330	354	456	320	326	269	243	299
종 료	-	2	1	4	2	3	-	-	-	3
가 종 료	255	247	275	266	394	226	246	208	186	270
가종료취소	10	19	54	84	60	91	80	61	57	26

바. 보호감호 가출소

| 표 5-72 | 감호집행 기간별 가출소 인원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5	37	33	23	53	43	26	11	15	15
3년 미만	1	5	-	-	3	1	8	6	3	3
3년이상 ~ 4년 미만	4	6	5	5	6	6	6	-	3	4
4년이상 ~ 5년 미만	4	3	8	5	12	23	6	2	2	1
5년 이상	6	23	20	13	32	13	6	3	7	7

| 표 5-73 | 죄명별 가출소 인원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5	37	33	23	53	43	26	11	15	15
절 도	3	7	9	9	10	12	3	2	5	7
강 도	7	13	9	5	20	11	10	4	8	4
폭력행위등	3	3	2	-	4	1	-	1	-	-
성 폭 력	2	14	13	9	19	17	13	4	2	4
기 타	-	-	-	-	-	2	-	-	-	-

| 표 5-74 | 전과별 가출소 인원

전과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5	37	33	23	53	43	26	11	15	15
초 범	3	2	2	-	4	2	-	-	1	2
2 ~ 3 범	3	6	10	6	9	8	-	4	2	-
4 ~ 5 범	3	14	11	5	14	13	6	1	6	3
6 ~ 7 범	3	11	8	7	17	14	10	5	3	3
8 ~ 9 범	1	1	1	4	5	3	4	-	2	5
10범 이상	2	3	1	1	4	3	6	1	1	2

사.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 표 5-75 |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종료 인원

기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	255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1년 미만	-	48	-	47	1	65	2	59	1	68	-	11	-	40	-	55	-	53	1	8
1년 이상 2년 미만	-	107	1	94	-	94	2	72	-	80	2	51	-	39	-	30	-	11	1	40
2년 이상 3년 미만	-	47	1	43	-	36	-	41	-	62	1	26	-	41	-	33	-	19	-	28
3년 이상	-	53	-	63	-	80	-	94	1	183	-	138	-	132	-	117	-	105	-	187

| 표 5-76 | 죄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죄명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	255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살인	-	33	-	33	-	42	-	27	-	77	-	48	-	35	-	23	-	48	-	43
상해(폭행)치사	-	2	-	3	-	5	-	6	-	10	-	2	-	8	-	3	-	4	-	6
폭력행위등	-	39	-	48	-	39	2	81	-	78	2	26	-	38	-	45	-	17	-	55
강간	-	7	1	9	-	31	1	16	1	50	-	56	-	54	-	50	-	23	-	46
강도	-	21	-	9	-	6	-	13	1	17	-	12	-	7	-	9	-	6	-	15
절도	-	26	-	23	-	24	1	13	-	26	-	16	-	19	-	17	-	15	-	17
방화,실화	-	18	1	17	-	10	-	10	-	32	-	11	-	19	-	16	-	17	-	16
기타	-	109	-	105	1	118	-	100	-	103	1	55	-	72	-	72	-	58	2	65

| 표 5-77 | 전과별 종료·가종료 인원

연도 / 죄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	255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초범	-	90	-	102	-	114	1	119	-	209	-	124	-	131	-	116	-	87	-	138
2범	-	28	1	29	1	37	2	33	1	43	3	25	-	29	-	25	-	26	-	48
3범	-	14	-	16	-	15	-	17	1	31	-	13	-	20	-	17	-	13	-	18
4범	-	16	-	14	-	14	1	9	-	10	-	15	-	12	-	9	-	14	1	10
5범 이상	-	107	1	86	-	95	-	88	-	100	-	49	-	60	-	68	-	48	1	49

| 표 5-78 | 병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연도 / 죄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	255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조현병	-	66	-	71	-	65	2	83	1	139	2	80	-	84	-	63	-	64	1	121
정신지체	-	17	1	17	-	11	-	16	-	27	-	19	-	16	-	16	-	17	-	23
조울증	-	13	-	14	-	11	-	15	-	24	-	14	-	23	-	16	-	10	-	21
성격(인격)장애	-	8	-	8	-	8	-	9	1	8	1	1	-	5	-	8	-	5	-	5
간질	-	3	-	4	-	7	-	7	-	4	-	2	-	-	-	1	-	1	-	4
약물중독	-	76	1	107	1	143	-	105	-	138	-	37	-	35	-	41	-	41	-	20
기타	-	72	-	26	-	30	2	31	-	53	-	73	-	89	-	90	-	50	1	69

2. 보호관찰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

| 표 5-79 |

(2021년)

구분 \ 심사위원회	계	서 울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수 원
계	10,768	2,474	1,161	1,339	1,460	1,603	2,731
가석방 (보호관찰)	8,794	2,006	902	1,147	1,151	1,428	2,160
임시퇴원	830	157	24	86	241	63	259
기타 (임시퇴원취소, 임시해제, 가해제)	1,153	311	235	106	68	112	312

나. 처분종류별 실시사건 현황

| 표 5-80 |

(2021년)

대상 \ 구분	총실시인원			종료	현원
	계	구수	접수		
계	260,933	118,395	142,538	143,245	117,688
선고유예	41	17	24	25	16
집행유예	159,180	79,839	79,378	77,545	81,629
보호처분	34,536	16,045	18,491	21,135	13,401
가석방	11,536	1,883	9,653	8,593	2,943
임시퇴원	1,491	547	944	969	522
가출소	64	40	24	25	39
가종료	934	562	372	324	610
치료명령	1,494	1032	468	668	832
치료감호기간만료	61	43	18	21	10
가정보호	10,153	3,382	6,771	7,046	3,107
성매매	243	110	133	166	77
아동학대	2,997	823	2,174	1,757	1,240
기소유예	11,533	4,128	7,405	6,838	4,695
성구매자 교육	2,374	906	1,468	1,149	1,225
전자장치부착	4,005	2,748	1,257	1,000	3,005
벌금미납	11,091	3,884	7,207	9,099	1,992
이수명령	9,200	2,449	6,751	6,885	2,315

다. 근거법률별 접수현황

| 표 5-81 |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16,860	112,878	121,517	134,364	159,636	162,360	149,282	148,054	153,310	142,538
형법	소계	56,437	57,485	60,190	63,746	76,366	81,808	85,217	78,079	85,589	79,301
	선고유예	17	13	9	22	23	16	22	11	17	23
	집행유예	51,677	52,803	55,992	59,568	70,670	74,996	78,057	69,627	77,744	69,625
	가석방	4,743	4,669	4,189	4,156	5,673	6,796	7,138	8,441	7,828	9,653
소년법	소계	41,440	34,932	27,765	26,517	24,718	25,511	24,972	21,912	22,621	19,435
	단기보호관찰	20,599	16,010	12,214	12,974	11,240	11,815	11,319	9,281	9,419	7,870
	장기보호관찰	13,018	13,692	10,956	9,570	9,538	9,594	9,224	8,619	8,437	7,381
	단독명령	6,400	3,910	3,238	2,889	2,707	2,910	3,133	2,954	3,803	3,240
	임시퇴원	1,423	1,320	1,357	1,084	1,233	1,192	1,296	1,058	962	944
치료감호법	소계	482	510	531	481	690	986	1,097	1,118	885	882
	가출소	22	61	61	40	87	78	64	34	24	24
	가종료	460	449	470	441	603	434	488	308	227	372
	치료명령	-	-	-	-	-	474	528	745	620	468
	치료감호기간만료	-	-	-	-	-	-	-	31	14	18
성폭력처벌법	소계	1,132	716	3,144	4,389	5,533	10,957	17	11,962	12,414	12,810
	선고유예	-	3	1	5	11	16	12,544	4	2	1
	이수명령	-	-	-	-	-	5,074	6	6,044	6,231	6,361
	집행유예	1,132	713	3,143	4,384	5,522	5,867	6,223	5,914	6,181	6,448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1,995	3,176	5,596	7,823	8,608	9,126	6,315	9,384	7,940	6,782
	보호처분	1,995	3,176	5,596	7,823	8,608	9,126	7,875	9,384	7,940	6,771
	집행유예	-	-	-	-	-	-	-	-	-	11
성매매처벌법	소계	646	760	910	1,619	2,274	2,835	7,875	879	840	561
	보호처분	273	335	239	390	1,050	1,443	1,274	243	204	133
	집행유예	373	425	671	1,229	1,224	1,392	521	636	636	428
기소유예	소계	5,090	5,899	7,859	11,425	14,859	13,126	753	11,082	8,378	7,849
	1급	130	199	106	190	103	96	2,301	106	52	49
	2급	4,960	5,700	7,753	4,096	3,810	3,553	148	1,835	1,123	908
	선도교육	-	-	-	7,139	10,946	9,477	2,153	9,141	7,203	6,892
성구매자교육	소계	4,807	3,058	2,658	2,847	11,763	5,817	7,213	2,457	1,430	1,468
전자장치부착법	소계	311	996	971	833	870	795	3,239	793	822	822
형사소송법(보석)	소계	-	-	-	-	-	-	-	-	-	444
벌금미납사회봉사	소계	3,465	4,059	6,718	8,554	8,530	8,282	891	7,413	9,097	7,207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1,055	1,287	5,175	5,608	4,444	1,609	7,624	1,270	1,242	2,214
	선고유예	-	-	-	-	1	1	1,219	-	-	-
	이수명령	274	414	4,454	4,356	3,219	257	-	251	258	390
	집행유예	781	873	721	1,252	1,224	1,351	-	1,019	984	1,824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	-	-	522	981	1508	1,219	1,705	2,052	2,657
	이수명령	-	-	-	149	20	31	1,029	103	158	0
	보호처분	-	-	-	301	839	1235	-	1,364	1,591	2,174
	집행유예	-	-	-	72	122	242	784	238	303	483
산업안전보건법	소계	-	-	-	-	-	-	-	-	-	1
마약류관리법	소계	-	-	-	-	-	-	-	-	-	105
스토킹처벌법	소계	-	-	-	-	-	-	-	-	-	-

※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사건을 제외한 당해연도 순수접수건

라. 기관별 보호관찰 등 대상자 접수현황

| 표 5-82 |

기관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16,860	112,878	121,517	134,364	159,636	162,360	149,282	148,054	153,310	142,538
서울	5,766	5,924	7,052	7,875	8,645	8,438	7,153	7,113	6,959	6,597
서울동부	3,065	3,167	3,191	3,626	3,964	3,718	3,397	3,579	3,732	3,526
서울남부	4,169	4,099	4,298	4,758	5,436	5,880	5,361	5,455	5,170	5,012
의정부	4,962	4,527	4,338	4,670	6,561	6,175	6,050	5,850	6,531	5,825
인천	4,640	4,414	5,315	6,092	7,633	7,895	6,856	6,295	5,975	6,093
수원	5,421	5,799	5,966	6,687	8,784	8,857	7,992	7,992	8,589	8,009
춘천	1,642	1,353	1,335	1,340	1,478	1,717	1,596	1,447	1,374	1,291
대전	4,322	4,382	4,255	4,541	4,895	5,753	5,804	5,541	6,251	5,608
청주	2,200	2,151	2,348	2,631	2,654	3,155	3,346	3,270	2,897	3,258
대구	4,612	4,164	4,056	5,975	6,351	5,843	5,204	5,637	5,700	5,488
부산	5,144	4,866	5,370	5,413	7,460	6,634	4,479	3,424	3,478	3,219
울산	3,234	2,961	4,110	3,552	3,178	4,964	4,097	4,738	5,508	4,224
창원	4,043	3,333	3,963	3,818	4,843	4,961	3,976	4,650	5,825	5,375
광주	5,504	5,270	5,159	5,577	5,355	7,899	6,872	5,608	5,982	4,692
전주	2,141	1,747	2,041	2,104	2,888	3,191	3,005	2,667	3,153	2,731
제주	1,451	1,528	1,797	1,699	2,493	3,103	2,839	2,851	2,722	2,040
서울서부	2,491	2,276	2,662	2,988	3,330	3,247	3,132	3,195	3,235	2,963
서울북부	2,364	2,439	2,294	2,898	3,152	3,014	3,328	4,076	4,019	3,570
고양	2,816	2,810	2,942	4,070	4,401	4,155	3,539	3,522	4,247	3,834
부천	2,358	2,619	2,837	2,991	3,548	4,351	4,172	4,117	3,656	3,470
성남	2,877	2,899	3,302	3,344	4,440	4,676	4,026	3,710	3,672	3,887
여주	1,507	1,277	1,109	1,172	1,422	1,588	1,321	1,255	1,414	1,412
안산	3,652	4,375	4,253	5,301	6,515	5,177	4,856	4,493	4,203	4,336
평택	1,669	1,679	1,802	2,286	3,063	2,580	2,128	2,664	2,897	2,782
안양	2,028	1,653	1,828	2,156	2,606	2,378	2,305	2,308	2,121	2,143
강릉	811	887	1,259	1,192	1,366	1,355	1,209	1,401	1,192	1,307
원주	1,583	1,194	1,214	1,562	1,780	1,561	1,499	1,530	1,432	1,207

기관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속초	437	548	548	474	630	396	497	505	560	625
영월	534	438	445	501	487	489	433	597	620	433
홍성	856	914	843	1,128	992	900	943	754	959	792
공주	431	376	421	429	547	505	478	387	466	531
논산	608	769	805	778	891	890	657	805	717	548
서산	813	914	1,191	1,205	1,079	988	926	1,082	1,443	1,449
천안	2,288	2,007	2,034	2,283	3,304	3,059	2,784	3,173	3,153	2,824
충주	912	1,042	904	1,048	1,182	1,130	915	886	962	744
제천	559	557	723	746	629	623	506	547	519	493
대구서부	2,568	2,422	2,389	3,147	3,790	3,011	3,023	3,044	2,868	3,260
안동	1,304	863	971	948	1,296	958	1031	839	773	737
경주	521	556	703	685	789	724	621	587	786	837
포항	923	1,039	1,193	1,584	2,178	2,317	1,754	1,706	2,000	1,535
구미	1,555	1,545	1,611	1,533	1,974	1,978	1,913	2,199	2,550	1,903
상주	536	533	510	608	612	657	470	643	579	517
영덕	353	260	209	308	388	336	298	332	521	400
부산동부	2,943	2,524	2,870	2,918	4,196	3,708	3,436	3,359	3,269	3,073
부산서부	-	-	-	-	-	-	3,580	2,883	3,160	2,470
진주	966	1,006	1,156	1,170	1,478	1,659	1,595	1,562	2,309	1,964
통영	1,615	1,294	1,513	1,499	2,015	2,025	1,627	1,720	1,305	1,541
밀양	335	418	421	482	544	464	473	470	592	503
거창	331	335	351	361	503	448	440	472	509	361
목포	1,567	1,560	1,603	1,755	1,932	2,366	1,772	1,311	1,294	1,868
순천	1,761	1,974	2,036	2,431	2,955	3,319	2,848	2,831	3,014	2,645
해남	683	654	738	783	788	866	851	692	581	711
군산	1,409	1,379	1,438	1,482	1,778	1,469	1,612	2,016	1,864	1,642
정읍	865	691	700	608	782	851	839	893	772	776
남원	407	351	320	335	348	324	325	399	427	510
인천서부	1,882	1,847	2,426	2,577	3,057	3,417	2,850	2,689	2,510	2,639
영동	426	269	349	240	251	218	243	283	294	308

마. 소년·성인별 실시사건 현황

| 표 5-83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240,073	227,733	223,072	227,020	260,933
소년	계			47,493	45,364	40,587	39,291	38,546
	형법	소계		727	684	777	814	746
		선고유예		5	6	3	1	1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657	606	699	742	671
			단독명령	52	60	56	54	64
		가석방		13	12	19	17	10
	소년법	소계		40,482	5	36,629	3	36,027
		보호처분	단기보호관찰	18,465	5	15,592	3	14,508
			장기보호관찰	16,721	40,108	15,693	36,281	14,756
			단독명령	3,489	18,189	3,557	15,003	5,272
		임시퇴원		1,807	16,271	1,787	15,293	1,491
	치료감호법	소계		3	3,685	3	4,403	4
	성폭력처벌법	소계		107	104	127	114	126
		선고유예		2	2	1	1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83	71	88	81	76
			단독명령	22	31	38	32	50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55	40	61	48	62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34	30	53	31	35
			단독명령	21	10	8	17	27
	성매매처벌법	소계		12	12	7	4	2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9	9	6	4	2
			단독명령	3	3	1	-	-
		소계		-	1	5	3	6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1	5	3	6
			단독명령	-	-	-	-	-
	기소유예	소계		5,894	4,173	2,750	1,821	1,294
	성구매자교육	소계		11	5	3	3	3
	벌금미납	소계		68	56	37	26	22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129	173	185	172	252
		선고유예		1	1	-	-	0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110	136	136	121	148
			단독명령	13	35	47	50	100
		이수명령		5	1	2	1	4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5	3	3	1	1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5	3	3	-	-
			단독명령	-	-	-	1	1
		소계		-	-	-	1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	-	-	-
			단독명령	-	-	-	1	-
		이수명령		-	-	-	-	-
	형사소송법(보석)	소계		-	-	-	-	1
성인	계			192,580	182,369	182,485	187,729	222,387
	형법	소계		122,762	120,652	119,625	126,227	152,800
		선고유예		26	31	26	23	38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67,840	65,058	61,578	62,042	65,154
			단독명령	46,524	46,323	47,129	54,007	76,082
		가석방		8,372	9,240	10,892	10,155	11,526
	치료감호법	소계		1,854	2,396	2,726	2,575	2,555
		가출소		169	170	137	90	64
		가종료		1,208	1,221	1,059	840	934
		치료명령		477	988	1,486	1,596	1,496
		치료감호기간만료		-	17	44	49	61
	성폭력처벌법	소계		14,342	16,245	16,011	16,763	20,126
		선고유예		24	18	6	4	2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3,575	3,690	3,534	3,547	3,761
			단독명령	4,797	4,943	5,108	5,489	7,974
		이수명령		5,946	7,594	7,363	7,723	8,389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12,186	10,425	12,064	11,151	10,091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7,849	6,820	7,998	7,083	5,859
			단독명령	4,337	3,605	4,066	4,068	4,232
		소계		-	-	-	-	11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	-	-	11
			단독명령	-	-	-	-	-
		이수명령		-	-	-	-	8
	성매매처벌법	소계		1,909	861	399	271	241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1319	691	302	133	138
			단독명령	590	170	97	138	103
		소계		2,232	1,723	1,358	1,084	1,032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1,661	1,318	999	703	597
			단독명령	571	405	359	381	435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소유예	소 계		11,132	9,515	11,016	9,330	10,932
성구매자 교육	소 계		9,226	3,942	3,135	1,885	2,371
전자장치 부착법	소 계		2,907	3,218	3,183	3,321	3,467
형사소송법(보석)	소 계		-	-	-	-	537
벌금미납	소 계		9,751	9,006	8,672	10,535	11,069
청소년 성보호법	소 계		2,211	2,076	1,841	1,728	3,037
	선고유예		-	2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828	800	728	617	704
		단독명령	1085	939	797	812	1,830
	이수명령		298	335	316	299	503
아동학대 처벌법	소 계		1,690	1,869	1,940	2,221	2,996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1,306	1,425	1,373	1,468	1,937
		단독명령	384	444	567	753	1,059
	소 계		378	441	388	436	712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183	206	206	215	349
		단독명령	150	166	182	221	363
	이수명령		45	69	127	202	296
산업안전 보건법	소 계		-	-	-	-	1
마약류관리법	소 계		-	-	-	-	105

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실시사건 현황

| 표 5-84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240,073	227,733	223,072	227,020	260,933
보호관찰	계			105,705	104,850	101,089	95,861	93,654
	형법	소계		55,951	56,842	55,325	53,472	53,340
		선고유예		31	37	29	24	39
		집행유예		47,535	47,553	44,385	43,276	41,765
		가석방		8,385	9,252	10,911	10,172	11,536
	소년법	소계		27,520	27,600	25,735	24,098	22,505
		보호처분	단기보호관찰	12,940	12,842	11,386	10,658	9,960
			장기보호관찰	12,773	12,795	12,562	11,858	11,054
		임시퇴원		1,807	1,963	1,787	1,582	1,491
	치료감호법	소계		1,814	2,336	2,637	2,492	2,490
		가출소		169	170	137	90	64
		가종료		1,208	1,221	1,059	840	934
		치료명령		437	928	1,397	1,513	1,431
		치료감호기간만료		-	17	44	49	61
	성폭력처벌법	소계		2,323	2,430	2,309	2,311	2,254
		선고유예		26	20	7	5	2
		집행유예		2,297	2,410	2,302	2,306	2,252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5,956	5,155	6,210	5,673	4,663
		보호처분		5,956	5,155	6,210	5,673	4,652
		집행유예		-	-	-	-	11
	성매매처벌법	소계		2,112	1,615	1,056	634	524
		보호처분		820	496	222	102	105
		집행유예		1,292	1,119	834	532	419
	기소유예	소계		5,340	3,740	2,796	2,023	1,502
	전자장치부착법	소계		2,907	3,220	3,183	3,321	3,467
	형사소송법(보석)	소계		-	-	-	-	538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596	596	551	481	498
		선고유예		1	1	-	-	-
		집행유예		595	595	551	481	498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1,186	1,316	1,287	1,356	1,835
		보호처분		1,076	1,180	1,140	1,212	1,623
		집행유예		110	136	147	144	212
	마약류관리법	소계		-	-	-	-	38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회봉사명령	계		53,231	51,224	49,788	51,448	65,693
	형법	소계	41,054	40,088	39,910	42,031	54,778
		보호관찰부	12,755	11,402	10,912	11,517	14,079
		단독명령	28,299	28,686	28,998	30,514	40,699
	소년법	소계	6,981	6,714	5,905	5,655	6,301
		단기보호관찰	2,804	2,643	2,095	1,817	1,914
		장기보호관찰	2,311	2,113	1,991	1,924	2,117
		단독명령	1,866	1,958	1,819	1,914	2,270
	치료감호법		43	65	92	86	69
	성폭력처벌법	소계	1,406	1,572	1,592	1,761	2,442
		보호관찰부	361	374	389	411	468
		단독명령	1,045	1,198	1,203	1,350	1,974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820	610	616	612	626
		보호관찰부	275	273	294	245	222
		단독명령	545	337	322	367	404
	성매매처벌법	소계	1,076	528	412	424	492
		보호관찰부	442	205	149	138	164
		단독명령	634	323	263	286	328
	기소유예		1,354	1,181	838	448	225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348	307	297	290	532
		보호관찰부	97	105	100	77	98
		단독명령	251	202	197	213	434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149	159	126	141	217
		보호관찰부	51	56	32	36	59
		단독명령	98	103	94	105	158
	마약류관리법	소계	-	-	-	-	11
수강명령	계		45,459	41,884	42,408	50,357	68,422
	형법	소계	26,488	24,406	25,167	31,538	45,428
		보호관찰부	8,211	6,709	6,980	7,991	9,981
		단독명령	18,277	17,697	18,187	23,547	35,447
	소년법	소계	5,981	5,794	4,989	6,528	7,221
		단기보호관찰	2,721	2,704	2,111	2,528	2,634
		장기보호관찰	1,637	1,363	1,140	1,511	1,585
		단독명령	1,623	1,727	1,738	2,489	3,002
	성폭력처벌법	소계	4,774	4,753	4,874	5,082	7,167
		보호관찰부	1,000	977	931	911	1,117
		단독명령	3,774	3,776	3,943	4,171	6,050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가정폭력처벌법	소 계	5,465	4,700	5,299	4,914	4,875
		보호관찰부	1,652	1,422	1,547	1,196	1,020
		단독명령	3,813	3,278	3,752	3,718	3,855
	성매매처벌법	소 계	965	454	301	304	265
		보호관찰부	435	199	107	71	55
		단독명령	530	255	194	233	210
	기소유예		-	-	-	-	-
	청소년성보호법	소 계	1,093	1,008	860	829	1,752
		보호관찰부	246	236	213	180	256
		단독명령	847	772	647	649	1,496
	아동학대처벌법	소 계	693	769	918	1,162	1,657
		보호관찰부	257	262	263	291	392
		단독명령	436	507	655	871	1,265
	산업안전보건법	소 계	-	-	-	-	1
	마약류관리법	소 계	-	-	-	-	56
성구매자교육			9,237	3,947	3,138	1,888	2,374
벌금미납사회봉사			9,819	9,062	8,709	10,561	11,091
이수명령			6,290	7,999	7,808	8,225	9,200
기소유예			10,332	8,767	10,132	8,680	10,499

사. 성적양호자에 대한 조치 현황

| 표 5-85 |

구분 / 연도	총 계	임시해제	부정기형종료	가출소 집행면제	가종료 집행종료	가정보호 처분종료
2017	2,840	2,811	-	-	7	22
2018	2,184	2,165	-	-	3	16
2019	877	854	-	-	2	21
2020	492	454	-	-	3	35
2021	527	497	-	-	3	27

아. 성적불량자에 대한 조치 현황

| 표 5-86 |

구분 / 연도	구인	긴급 구인	유치	제재조치							
				경고	집행 유예 취소	보호 처분 변경	임시 퇴원 취소	가석방 취소	기간 연장	보호 관찰 정지	가정 보호 등 취소
2017	1,713	24	1,594	38,752	791	1,576	118	7	49	70	194
2018	1,417	14	1,350	35,479	749	1,217	128	14	35	76	219
2019	1,231	9	1,125	33,849	694	982	122	20	36	65	201
2020	961	9	824	26,412	506	965	85	16	25	56	184
2021	807	7	705	27,472	541	909	77	20	34	36	123

자. 구인·유치대상자의 단계별 처리 현황

| 표 5-87 |

구분 / 연도	긴급구인	구인장 신청				구인장 집행	구인장 반환	구인 후석방	유치허가신청			유치	취소·변경신청				
		검찰		법원					검찰	법원			검찰	법원		심사위원회	
		기각	청구	기각	인용				기각	기각	인용		기각	기각	인용	기각	인용
2017	24	32	2,613	15	2,598	1,713	806	85	14	11	1,594	1,594	4	300	1,160	-	121
2018	14	30	2,265	23	2,242	1,417	829	51	16	24	1,302	1,343	6	241	942	2	132
2019	9	20	1,921	24	1,897	1,230	7622	77	6	15	1,080	1,125	3	236	718	1	127
2020	9	37	1,526	12	1,514	961	564	113	8	17	804	824	4	129	579	-	88
2021	7	90	1,296	12	1,284	805	572	79	14	9	708	705	3	129	465	-	80

차. 사회봉사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 표 5-88 |

구분 / 연도	개시	종료계	집행		이송	집행불능
			완전집행	부분집행		
2017	53,213	44,157	40,653	644	2,061	799
2018	51,224	41,853	38,447	609	2,023	774
2019	49,788	40,043	36,918	607	1,930	588
2020	51,448	21,609	17,821	629	2,484	675
2021	65,693	36,995	31,831	830	3,283	1,051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카. 사회봉사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 표 5-89 |

구분 / 연도	총 계		형 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기소유예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2017	53,231	44,386	41,054	33,914	6,981	5,923	43	42	1,406	1,188	820	708	1,076	945	1,354	1,237	348	293	149	136	-	-
2018	51,224	42,249	40,088	32,911	6,714	5,650	65	53	1,572	1,326	610	530	528	404	1,181	973	307	261	159	141	-	-
2019	49,788	40,279	39,910	32,214	5,905	4,805	92	74	1,592	1,262	616	517	412	344	838	733	297	226	126	104	-	-
2020	51,448	41,946	42,031	34,175	5,655	4,746	86	60	1,761	1,420	612	521	424	341	448	339	290	226	141	118	-	-
2021	65,693	35,954	54,778	29,349	6,301	3,774	69	16	2,442	1,406	626	453	492	245	225	187	532	360	217	153	11	11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타. 사회봉사명령 부과 형태 추이

| 표 5-90 |

구분 / 연도	총 계			소 년			성 인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소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소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2017	53,231	19,351	33,880	8,321	5,465	2,856	44,910	13,886	31,024
2018	51,224	17,405	33,819	7,845	5,111	2,734	43,379	12,294	31,085
2019	49,788	16,133	33,655	6,787	4,359	2,428	43,001	11,774	31,227
2020	51,448	16,324	35,124	6,292	4,004	2,288	45,156	12,320	32,836
2021	65,693	19,210	46,483	6,763	4,220	2,543	58,930	14,990	43,940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파.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 표 5-91 |

구분 / 연도	총 계	직접집행	협력집행(분야별 성격)					
			소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17	41,297	8,538	32,759	79	30,747	952	734	247
2018	39,007	6,521	32,486	48	30,325	1,089	770	254
2019	37,453	5,775	31,678	53	29,718	899	725	283
2020	18,450	6,501	11,949	7	10,057	991	678	216
2021	32,661	10,690	21,971	135	10,031	2,906	7,444	1,455

하. 수강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 표 5-92 |

구분 / 연도	개시	종료계	집행		이송	집행불능
			완전집행	부분집행		
2017	45,459	36,859	34,100	311	1,452	996
2018	41,884	34,046	31,353	293	1,439	961
2019	42,408	33,575	31,199	273	1,262	841
2020	50,357	22,359	19,045	328	2,012	974
2021	68,422	37,351	33,012	326	2,578	1,435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거. 수강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 표 5-93 |

구분 / 연도	총 계		형 법		소년법		성폭력 처벌법		가정폭력 처벌법		성매매 처벌법		청소년 성보호법		아동학대 처벌법		산업안전 보건법		마약류 관리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17	45,459	36,657	26,488	21,508	5,981	4,775	4,774	3,781	5,465	4,488	965	698	1,093	834	693	573	-	-	-	-
2018	41,884	33,309	24,406	19,607	5,794	4,510	4,753	3,703	4,700	3,801	454	331	1,008	737	769	620	-	-	-	-
2019	42,408	34,523	25,167	20,582	4,989	3,975	4,874	3,850	5,299	4,512	301	214	860	624	918	766	-	-	-	-
2020	50,357	41,672	31,538	26,643	6,528	5,305	5,082	3,978	4,914	3,922	304	237	829	621	1,162	966	-	-	-	-
2021	68,422	40,453	45,428	25,836	7,221	4,412	7,167	4,311	4,875	3,152	265	125	1,752	1,283	1,657	1,277	1	1	56	56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너. 수강명령 부과 형태 추이

| 표 5-94 |

구분 / 연도	총 계			소 년			성 인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2017	45,459	16,159	29,300	6,139	4,446	1,693	39,320	11,713	27,607
2018	41,884	13,872	28,012	5,952	4,151	1,801	35,932	9,721	26,211
2019	42,408	13,292	29,116	5,182	3,355	1,827	37,226	9,937	27,289
2020	50,357	14,679	35,678	6,724	4,143	2,581	43,633	10,536	33,097
2021	68,422	17,097	51,325	7,488	4,333	3,155	60,934	12,764	48,170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더.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 표 5-95 |

구분 / 연도	총 계	직접 집행	협력 집행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17	34,411	33,845	566	1	-	5	244	22	294
2018	31,646	30,800	846	6	64	53	140	34	549
2019	31,472	29,977	1,495	2	81	104	61	70	1,177
2020	19,373	18,811	562	1	3	56	109	57	336
2021	33,338	31,483	1,855	4	1,035	50	125	201	440

러.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

| 표 5-96 |

구분 / 6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환경조사	소 계	1,740	1,701	1,594	1,561	1,555	1,921	1,502	1,442	1,365	1,185
	소년원	1,500	1,555	1,395	1,432	1,419	1,693	1,373	1,343	1,297	1,084
	교도소	146	43	106	59	60	167	104	93	62	100
	감호소	69	103	93	70	76	60	19	6	6	1
환경개선		25	-	-	-	-	1	6	1	4	9

머. 조사

| 표 5-97 |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판결전조사	2,385	2,159	2,257	2,166	1,901	2,003	2,053	1,797	1,596	1,442
결정전조사	12,719	12,141	12,399	17,678	16,931	16,606	19,662	19,007	17,813	18,096
검사결정전조사	5,547	5,084	5,855	3,805	4,379	3,626	1,678	1,092	909	932
청구전조사	1,696	2,497	2,511	2,352	2,619	1,783	1,600	1,468	1,456	1,311
소급청구전조사	354	247	192	119	79	86	39	52	37	33
사실조회	-	-	-	-	-	-	-	-	-	176

버.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현황

| 표 5-98 |

구분 / 연도	계				소 년				성 인			
	수배 의뢰	수배해제			수배 의뢰	수배해제			수배 의뢰	수배해제		
		계	검거	기타		계	검거	기타		계	검거	기타
2017	3,196	2,315	1,682	633	1,479	1,181	997	184	1,717	1,134	685	449
2018	2,887	2,089	1,430	659	1,267	1,018	828	190	1,620	1,071	602	469
2019	2,457	1,812	1,233	579	1,035	822	675	147	1,422	990	558	432
2020	1,968	1,369	959	410	860	666	550	116	1,108	703	409	294
2021	1,743	1,273	829	444	707	539	442	97	1,036	734	387	347

※ 수배해제 사유 중 기타는 기간만료, 사망 등의 사유가 포함됨

서. 보호관찰 사안조사

| 표 5-99 |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 수	6,144	6,658	6,297	6,252	7,895	8,821	9,434	11,571	11,973	13,077

어. 보호관찰 불요결정

| 표 5-100 |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접 수	6,502	6,150	5,503	5,716	7,221	8,248	8,575	8,268	8,271	9,395
필 요	4,246	4,174	3,734	3,816	5,127	6,205	6,394	7,962	7,169	8,783
불 요	2,256	1,976	1,769	1,900	2,094	2,043	2,181	593	743	609
허 가	2,256	1,976	1,769	1,900	2,094	2,043	2,181	593	743	609

3. 갱생 보호

가. 갱생보호 실적

| 표 5-101 |

구분	총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지원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사회성 향상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129,763	1,877	4,148	12,252	13	174	8,695	23,067	29,806	9,709	15,723	24,299

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 표 5-102 |

구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지원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사회성 향상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119,540	1,494	4,041	12,140	5	169	8,450	22,795	29,446	4,202	13,815	22,983

다.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실적

| 표 5-103 |

구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지원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사회성 향상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10,223	383	107	112	8	5	245	272	360	5,507	1,908	1,316

4.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

가. 보호소년 수용

| 표 5-104 | 입·출원 인원

입·출원		성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입원	계	남	4,314	3,863	3,223	2,884	2,763	2,974	2,770	2,392	2,036	1,777
		여	665	572	484	504	476	510	539	565	504	451
	전년도 이월	남	1,202	1,197	1,175	945	928	858	924	695	693	707
		여	195	201	169	155	215	176	186	185	210	160
	송치	남	2,995	2,548	1,933	1,858	1,754	2,022	1,729	1,607	1,279	1,017
		여	435	341	295	321	241	308	333	349	272	264
	임시퇴원 취소	남	117	118	115	81	81	94	117	90	64	53
		여	35	30	20	28	20	26	20	31	22	27
	이탈학생 재수용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출원	계	남	2,954	2,685	2,275	1,961	1,900	2,029	2,064	1,700	1,330	1,244
		여	446	401	333	281	316	320	352	358	345	280
	퇴원	남	1,873	1,676	1,254	1,119	1,045	1,135	1,049	877	555	462
		여	278	243	188	164	147	194	210	183	134	99
	임시퇴원	남	1,036	941	952	786	788	832	946	747	687	692
		여	159	145	137	103	158	114	123	137	170	143
	처분변경 처분취소	남	29	48	46	43	41	36	50	58	56	64
		여	9	12	8	13	10	8	18	35	37	37
	사망	남	-	-	-	-	-	-	-	-	1	-
		여	-	1	-	-	-	-	-	-	-	-
	이탈	남	1	-	-	-	-	-	-	-	-	-
		여	-	-	-	-	-	-	-	-	-	-
	기타	남	15	20	23	13	26	26	19	18	31	26
		여	-	-	-	1	1	4	1	3	4	1

주) 1. 송치 :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인원)
2. 이탈 : 이탈 후 당해연도에 재수용 되지 않은 인원
3. 기타 : 유죄판결 등
4. 입원인원 중 "송치+임시퇴원 취소=신수용인원"

| 표 5-105 | 1일 평균 수용인원

기관 \ 연도 / 성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남	1,188	1,207	1,056	921	932	981	869	738	738	627
	여	202	173	181	192	199	185	209	208	189	155
서 울	남	270	295	270	236	234	246	204	172	206	170
	여	-	-	-	-	-	-	-	-	-	-
부 산	남	161	175	132	118	138	124	111	86	86	14
	여	1	1	1	1	1	1	-	-	-	-
대 구	남	143	128	137	130	141	137	114	94	86	89
	여	-	-	-	-	-	-	-	-	-	-
광 주	남	165	161	129	94	104	134	107	95	104	99
	여	-	-	1	-	-	-	-	-	-	-
전 주	남	126	128	123	108	92	81	91	102	103	97
	여	-	-	-	-	-	-	-	-	-	-
대 전	남	165	139	112	111	92	109	106	64	48	47
	여	14	9	10	5	6	12	15	20	21	19
청 주	남	-	-	-	-	-	-	-	-	-	-
	여	60	54	46	45	45	45	85	85	66	58
안 양	남	-	-	-	-	-	-	-	-	-	-
	여	127	109	123	141	147	127	109	103	103	78
춘 천	남	128	151	117	93	89	107	103	92	79	86
	여	-	-	-	-	-	-	-	-	-	-
제 주	남	30	30	36	31	42	43	33	33	25	25
	여	-	-	-	-	-	-	-	-	-	-
대 전	남	'07. 7. 23. 기관폐지									
	여										
창 원	남										
	여										
안 산	남										
	여										
대 덕	남										
	여										

주)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표 5-106 | 기관별 신수용 인원

기관 \ 연도 / 성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남	2,994	2,666	2,048	1,939	1,835	2,116	1,846	1,697	1,343	1,070
	여	435	371	315	349	261	334	353	380	294	291
서 울	남	552	635	489	474	442	524	482	474	453	297
	여	-	-	-	-	-	-	-	-	-	-
부 산	남	337	351	267	281	213	265	208	198	158	79
	여	46	44	44	44	54	48	38	43	51	39
대 구	남	129	88	110	143	176	162	78	73	75	142
	여	16	21	15	25	16	13	5	6	1	-
광 주	남	116	146	154	122	90	137	139	147	131	114
	여	19	40	28	36	9	28	20	39	29	22
전 주	남	109	69	16	5	-	5	3	385	350	284
	여	15	3	-	-	-	-	-	-	-	-
대 전	남	1,540	1,242	921	828	849	943	876	362	152	118
	여	10	9	4	3	15	21	8	30	11	26
청 주	남	-	-	-	-	-	-	-	-	-	-
	여	228	137	106	110	71	102	31	105	82	77
안 양	남	-	-	-	-	-	-	-	-	-	-
	여	90	113	108	122	87	114	233	150	116	123
춘 천	남	146	90	53	66	38	39	30	41	4	12
	여	3	-	6	1	3	1	9	3	-	1
제 주	남	65	45	38	20	27	41	30	17	20	24
	여	8	4	4	8	6	7	9	4	4	3
대 전	남										
	여										
창 원	남										
	여										
안 산	남										
	여										
대 덕	남										
	여										

'07. 7. 23. 기관폐지

주)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표 5-107 | 수용기간별 인원

기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399	3,005	2,531	2,171	2,138	2,275	2,328	1,943	1,546	1,396
1월 미만	1,680	1,348	969	883	773	902	830	16	11	9
3월 미만	125	96	80	62	62	47	64	705	232	97
6월 미만	796	894	769	670	676	777	773	535	652	642
6월 이상	115	149	108	91	126	115	131	240	207	189
7월 이상	16	20	19	15	13	8	12	5	4	10
8월 이상	28	15	19	28	13	20	8	11	7	10
9월 이상	26	26	29	16	14	16	25	18	11	11
10월 이상	14	11	13	16	11	12	18	9	10	9
11월 이상	10	11	20	15	12	8	20	17	18	17
12월 이상	39	25	30	30	47	19	49	64	70	48
13월 이상	139	81	77	43	71	46	85	94	81	60
14월 이상	181	114	91	86	83	90	99	78	75	108
15월 이상	138	82	132	84	75	71	87	51	73	60
16월 이상	53	72	80	58	73	59	53	32	33	56
17월 이상	23	30	37	30	37	49	37	21	18	32
18월 이상	8	21	35	26	21	23	24	15	12	11
19월 이상	4	7	19	11	11	10	7	13	7	9
20월 이상	4	3	4	7	20	3	6	4	25	18
평균수용기간(월)	4.93	5.00	5.91	5.56	6.03	5.52	5.91	6.51	7.80	8.42

※ 대상 : 퇴원 및 임시퇴원

나. 보호소년 분류처우

| 표 5-108 | 처우과정 분류인원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429	3,037	2,363	2,288	2,096	2,450	2,199	2,077	1,637	1,361
7호	소 계	111	94	108	109	83	132	141	116	139	123
	기 타	111	94	108	109	83	132	141	116	139	123
8호	소 계	1,680	1,296	925	802	762	880	801	707	405	326
	기 타	1,680	1,296	925	802	762	880	801	707	405	326
9호	소 계	975	960	768	766	713	857	741	716	622	584
	교 과	132	111	125	168	161	95	87	97	127	123
	직 업	-	77	70	102	72	243	219	236	180	106
	특성화	244	188	134	178	136	132	74	78	64	133
	기 타	599	584	439	318	344	387	361	305	251	222
10호	소 계	663	687	562	611	538	581	516	538	471	328
	교 과	174	196	118	53	31	45	34	64	69	56
	직 업	295	279	294	408	332	374	314	349	288	147
	특성화	50	36	27	13	12	8	1	-	-	-
	기 타	144	176	123	137	163	154	167	125	114	125

※ 대상 : 신수용인원

다. 보호소년 교육

| 표 5-109 | 교과교육 수료인원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89	228	139	135	154	187	208	253	300	329
초등학교	-	-	-	-	-	-	-	-	-	-
중 학 교	210	101	49	32	25	26	18	95	90	79
고등학교	179	127	90	103	129	161	190	158	210	250

| 표 5-110 | 검정고시 합격인원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688	619	670	600	676	617	447	420	409	303
초졸	3	4	3	1	-	-	-	-	-	-
중졸	283	246	224	190	152	141	76	65	45	39
고졸	402	369	443	409	524	476	371	355	364	264

| 표 5-111 | 직업훈련 수료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직 업 훈 련	523	472	497	500	640	552	633	532	458	354

| 표 5-112 | 기능자격 취득 인원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125	2,687	3,301	3,106	3,681	4,710	4,762	4,188	3,025	2,741
일 반 기 능	900	774	947	992	1,238	1,524	1,634	1,478	838	723
컴퓨터관련	1,581	1,292	1,590	1,288	1,415	1,524	1,341	1,181	793	608
외국어관련	48	-	-	-	-	-		-	-	-
기 타	596	621	764	826	1,028	1,662	1,787	1,529	1,394	1,410

| 표 5-113 | 학생 사회봉사활동 현황

구분 \ 연도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					정보화교육 봉사활동		
	소 계	PC등 수리	복지시설 방문	농촌 일손돕기	지역행사 지원 등	소 계	지역 주민	장애인
계	10,907		3,423	200	7,284	2	-	2
2012	2,546	-	837	72	1,637	2	-	2
2013	1,220	-	511	16	693	-	-	-
2014	1,477	-	480	18	979	-	-	-
2015	1,035	-	356	56	623	-	-	-
2016	1,399	-	345	9	1,045	-	-	-
2017	1,050	-	294	18	738	-	-	-
2018	1,011	-	348	6	657	-	-	-
2019	1,011	-	242	5	764	-	-	-
2020	158	-	10	-	148	-	-	-
2021	-	-	-	-	-	-	-	-

| 표 5-114 | 취업 현황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취업인원	313	273	327	234	423	417	352	303	187	208

| 표 5-115 | 상급학교 진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37	115	134	154	159	167	165	104	130	148
대 학 교	45	45	71	91	93	88	86	55	64	71
고등학교	92	70	63	63	66	79	79	49	66	77

라. 위탁소년 수용·분류심사

| 표 5-116 | 입·출원 인원

구분		성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입원	계	남	5,746	5,888	5,230	5,508	4,778	4,931	4,745	4,055	3,534	3,028
		여	1,307	1,228	1,095	1,104	1,051	1,372	1,398	1,305	1,122	1,069
	이월인원	남	392	336	341	364	348	333	338	307	276	176
		여	77	69	75	68	73	61	102	98	83	45
	신수용인원	남	5,354	5,552	4,889	5,144	4,430	4,598	4,407	3,748	3,258	2,852
		여	1,230	1,159	1,020	1,036	978	1,311	1,296	1,207	1,039	1,024
	이탈자재수용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출원	계	남	5,351	5,547	4,866	5,159	4,446	4,593	4,439	3,778	3,358	2,855
		여	1,240	1,153	1,027	1,030	992	1,270	1,300	1,223	1,077	999
	보호자위탁	남	14	8	10	29	16	14	19	11	9	3
		여	6	9	4	8	-	6	10	5	10	3
	보호시설위탁	남	440	492	429	474	430	456	438	454	481	467
		여	189	197	181	163	201	241	281	249	262	259
	소년원송치	남	2,243	2,090	1,684	1,709	1,507	1,689	1,455	1,227	1,128	806
		여	312	301	270	319	243	288	305	285	229	232
	보호관찰부보호자위탁	남	2,262	2,603	2,318	2,472	2,121	2,138	2,139	1,789	1,408	1,303
		여	599	555	494	418	461	630	591	589	462	417
	위탁변경	남	111	112	114	112	92	72	65	38	101	156
		여	40	26	25	21	18	17	14	12	43	53
	심리불개시	남	1	-	-	-	-	-	-	-	2	1
		여	-	-	-	-	-	-	-	-	1	-
	불처분	남	15	16	10	9	8	5	8	11	3	12
		여	-	2	2	2	2	1	-	2	2	1
	이탈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기타	남	265	226	301	354	272	219	315	248	226	107
		여	94	63	51	99	67	87	99	81	68	34
연말현재인원		남	336	341	364	348	333	338	307	276	176	173
		여	69	75	68	73	61	101	98	83	45	70

| 표 5-117 | 1일 평균 수용인원

기관	성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남	379	391	391	364	327	348	334	301	254	209
	여	85	80	80	72	71	95	97	95	79	75
부 산	남	78	74	73	78	70	70	66	63	45	44
	여	17	11	11	16	17	18	16	19	17	17
대 구	남	25	28	28	28	32	30	25	25	16	15
	여	5	7	7	5	6	6	6	6	5	6
광 주	남	35	41	41	37	35	43	36	27	25	20
	여	8	8	8	8	6	10	9	6	4	5
전 주	남	11	7	7	-	-	-	-	-	-	-
	여	2	2	2	-	-	-	-	-	-	-
대 전	남	20	24	24	26	35	28	33	28	28	18
	여	4	5	5	5	7	11	11	9	7	6
춘 천	남	14	11	12	9	9	15	11	12	8	8
	여	4	2	2	1	1	2	2	4	3	3
제 주	남	1	3	3	3	2	2	3	4	3	4
	여	-	1	1	1	1	1	-	1	1	1
서울심	남	195	203	203	183	144	160	160	141	129	100
	여	45	44	44	36	34	47	53	51	42	37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4. 1. 9. 전주소년원 위탁(유치) 업무 광주소년원 이전

| 표 5-118 | 기관별 위탁 인원

기관 \ 연도 / 성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남	5,352	5,552	4,889	5,142	4,430	4,598	4,407	3,748	3,258	2,852
	여	1,230	1,159	1,020	1,036	979	1,311	1,296	1,207	1,039	1,024
부 산	남	1,208	1,074	1,059	1,055	893	901	771	670	567	562
	여	250	167	195	213	211	249	186	205	218	216
대 구	남	327	336	367	368	395	344	297	278	198	195
	여	66	89	71	68	73	75	71	66	59	72
광 주	남	422	495	403	463	413	513	452	348	322	237
	여	99	105	97	110	73	110	120	73	55	60
전 주	남	144	111	1	-	-	-	-	-	-	-
	여	32	28	1	-	-	-	-	-	-	-
대 전	남	299	355	305	387	450	363	422	356	328	232
	여	56	75	57	81	102	150	140	107	93	80
춘 천	남	207	161	176	139	144	215	182	169	88	94
	여	54	33	31	18	19	34	31	51	37	40
제 주	남	30	38	44	44	27	26	36	40	48	49
	여	8	14	21	16	8	11	7	16	12	10
서울심	남	2,715	2,982	2,534	2,686	2,108	2,236	2,247	1,887	1,707	1,483
	여	665	648	547	530	493	682	741	689	565	546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4. 1. 9. 전주소년원 위탁(유치) 업무 광주소년원 이전

| 표 5-119 | 위탁기간별 인원

기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출원 인 원	6,589	6,700	5,893	6,187	5,438	5,863	5,739	5,000	4,435	3,854
10일 미만	158	124	154	166	106	124	144	70	67	151
10 ~ 20일	1,053	949	754	950	679	562	616	371	393	444
21 ~ 30일	4,200	4,392	3,874	3,850	3,326	3,851	3,573	3,134	2,862	2,413
31 ~ 40일	916	1,026	877	1,014	1,018	1,032	1,001	907	812	622
41 ~ 50일	198	145	191	160	250	238	291	400	242	199
51 ~ 60일	64	64	43	47	58	56	114	118	59	25

※ ( )는 위탁변경, 불처분, 심리불개시 등 인원

| 표 5-120 | 비행원인진단 실시인원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분 류 심 사	5,435	6,357	5,543	5,804	5,116	5,614	5,385	4,755	4,266	3,620
상 담 조 사	5,148	4,382	4,261	4,119	3,993	4,179	3,224	2,421	2,589	2,968
검사결정전조사	7	-	-	-	25	-	-	-	-	-

| 표 5-121 | 비행예방프로그램 실시인원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71,625	408,850	315,184	336,404	371,625	408,850	315,184	336,404	137,023	194,314
대안교육	소 계	30,122	23,013	23,630	36,638	49,317	54,019	50,635	48,698	17,179	19,820
	일반학생	26,814	19,739	18,359	31,298	43,305	48,410	45,180	41,557	13,430	15,854
	기소유예	2,034	2,767	4,993	5,123	5,757	5,416	4,365	4,608	2,975	2,504
	보호처분	1,274	507	278	217	255	193	1,090	2,533	774	1,462
청소년심리검사		9,445	9,377	10,020	11,046	12,473	12,933	10,868	12,322	3,871	4,488
보 호 자 교 육		8,101	8,246	9,192	8,964	9,465	13,314	12,024	10,373	4,044	4,566
법 교 육		41,674	114,298	153,956	211,331	300,370	328,584	241,657	265,011	94,750	145,620

※ 보호자교육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소년보호기관 통합 실적임

| 표 5-122 | 법원 보호처분결정별 인원

판정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6,591	6,700	5,893	6,189	5,438	5,863	5,739	5,000	4,435	3,854
1호	20	17	14	37	16	20	29	16	19	6
2호	47	59	31	42	46	47	80	73	42	52
3호	35	65	69	55	33	29	88	56	41	36
4호	1,088	1,132	1,153	1,464	1,118	1,169	1,323	1,049	786	704
5호	1,773	2,026	1,659	1,426	1,464	1,599	1,407	1,285	1,134	1,013
6호	650	689	610	637	631	697	719	703	743	726
7호	87	69	88	74	63	99	116	95	98	93
8호(1개월)	1,164	860	682	672	525	593	531	372	321	231
9호(단기)	754	837	684	714	670	774	658	607	526	453
10호(장기)	627	622	501	568	492	511	455	479	412	261
기타	346	324	402	500	380	325	333	265	313	279

주) 소년법 개정(2007. 12. 21. 2008. 6. 22. 시행)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2호처분 : 수강명령
3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4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처분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처분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기 타 : 불처분

제4절 인권업무 통계

| 표 5-123 |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실적

구분 / 연도	민·가사 법률구조(건)			형사구조(건)	법률상담(건)
	계	소송전구조	소송구조		
2008	99,043	190	98,853	25,952	1,194,603
2009	108,654	120	108,534	24,619	1,260,401
2010	113,092	115	112,977	19,579	1,281,792
2011	122,057	133	121,924	13,888	1,242,783
2012	126,898	123	126,775	13,612	1,409,916
2013	136,747	116	136,631	16,257	1,482,762
2014	143,853	98	143,755	21,546	1,505,699
2015	148,161	112	148,049	21,759	1,486,795
2016	150,088	64	150,024	21,468	1,481,186
2017	149,446	104	149,342	17,791	1,373,195
2018	154,585	187	154,398	16,770	1,320,476
2019	168,039	169	167,870	15,480	1,399,103
2020	138,998	217	138,781	11,046	1,277,453
2021	131,602	208	131,394	11,253	1,184,692

| 표 5-124 | 범죄피해자 지원활동(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실적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상담	경제·의료 지원	신변보호	기 타
2013	57,240	41,748	10,140	1,641	3,711
2014	78,977	57,071	11,867	1,082	8,957
2015	89,699	66,876	11,773	512	10,538
2016	109,484	80,763	12,247	407	16,067
2017	159,728	121,223	14,655	503	23,347
2018	184,412	139,294	15,817	538	28,763
2019	192,266	156,939	17,313	485	17,529
2020	199,406	141,123	18,416	526	39,341
2021	195,747	144,416	18,476	604	32,251

| 표 5-125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단위 : 천 원, 명)

구분 \ 예산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	9,584,000	7,929,000	7,728,000	9,773,000	9,712,000	9,870,000	9,870,000	9,870,000	10,578,000	11,520,000
보상인원	291	312	331	382	279	264	248	305	206	202
지급금액	6,250,686	7,912,273	7,070,624	9,770,720	9,257,269	9,289,429	10,175,047	11,516,297	9,567,057	9,792,147

| 표 5-126 |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연도 \ 구분	합 계	수 사	교 정	출입국	범죄예방	기타
2014	1,755	54	1,369	56	147	129
2015	1,809	26	1,545	30	125	83
2016	2,620	62	2,252	26	124	156
2017	2,782	73	2,355	26	129	199
2018	2,935	50	2,520	30	150	185
2019	3,435	78	3,942	49	111	255
2020	3,967	107	3,370	89	110	291
2021	4,062	26	3,748	101	80	107

| 표 5-127 |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구수포함)

연도 \ 구분	합 계	각 하	이 첩	기 각	인용·구제 (인용·구제율)
2015	1,820	958	543	234	85(4.7%)
2016	2,543	1,300	847	311	85(3.3%)
2017	2,641	1,380	900	281	80(3.0%)
2018	2,872	1,628	898	275	71(2.5%)
2019	3,321	1,670	1,229	360	62(1.9%)
2020	4,005	1,968	1,501	447	89(2.2%)
2021	4,030	1,973	1,557	416	84(2.1%)

제5절 교정업무 통계

1. 수용자 수용 현황

가. 수용현황

| 표 5-128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용정원			45,690	45,690	46,430	46,600	46,600	47,820	47,820	47,990	48,600	48,980
1일평균수용인원			45,488	47,924	50,128	53,892	56,495	57,298	54,744	54,624	53,873	52,368
수용내용	기결구금자	소 계	31,302	32,278	32,751	34,625	35,618	37,006	35,877	35,281	34,789	34,259
		수형자	29,448	30,181	30,727	32,649	33,791	35,382	34,380	33,813	33,392	33,548
		노역수	1,854	2,097	2,024	1,976	1,827	1,624	1,497	1,468	1,397	711
	미결구금자	소 계	14,186	15,646	17,377	19,267	20,877	20,292	18,867	19,343	19,084	18,109
		피의자	703	712	747	847	864	753	643	632	558	496
		피고인	13,483	14,934	16,630	18,420	20,013	19,539	18,224	18,711	18,526	17,613

| 표 5-129 | 인구대비 수용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인 구	1일 평균 수용인원	인구대비 1일 평균수용인원(%)	교도관 정원	교도관 대비 평균수용인원
2012	50,004,441	45,488	0.091	15,757	2.9
2013	51,141,463	47,924	0.094	15,476	3.1
2014	51,327,916	50,128	0.098	15,934	3.1
2015	51,529,338	53,892	0.105	15,887	3.4
2016	51,696,216	56,495	0.109	15,892	3.6
2017	51,779,148	57,298	0.111	15,871	3.6
2018	51,824,477	54,744	0.106	15,999	3.4
2019	51,849,861	54,624	0.105	16,101	3.4
2020	51,829,023	53,873	0.103	16,482	3.3
2021	51,638,809	52,368	0.101	16,652	3.1

| 표 5-130 | 수용자 성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46,708	48,824	51,760	54,667	57,675	55,198	54,169	54,099	53,956	52,130
수형자	소 계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남	29,863	30,525	31,661	33,122	34,281	33,905	32,932	32,384	32,404	31,651
	여	1,571	1,612	1,783	1,976	2,198	2,262	2,339	2,313	2,345	2,436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5.0	5.0	5.3	5.6	6.0	6.3	6.6	6.7	6.7	7.1
미결수용자	소 계	15,274	16,687	18,316	19,569	21,196	19,031	18,898	19,402	19,207	18,043
	남	14,263	15,376	17,008	18,026	19,488	17,520	17,340	17,863	17,580	16,436
	여	1,011	1,311	1,308	1,543	1,708	1,511	1,558	1,539	1,627	1,607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6.6	7.9	7.1	7.9	8.1	7.9	8.2	7.9	8.5	8.9

| 표 5-131 | 수형자 연령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16세 미만	16	6	3	-	2	4	1	4	1	3
18세 미만	70	55	50	47	46	45	35	41	45	63
20세 미만	251	280	270	262	290	244	248	231	2233	224
25세 미만	2,147	2,327	2,514	2,609	2,642	2,484	2,335	2,255	2,378	2,441
25세 이상	2,539	2,366	2,247	2,244	2,450	2,562	2,779	2,860	3,058	3,264
30세 이상	7,681	7,677	7,584	7,678	7,678	7,543	7,059	6,834	6,488	6,166
40세 이상	9,714	9,714	9,986	10,310	10,275	9,712	9,307	8,637	8,427	7,962
50세 이상	6,866	7,362	7,989	8,624	9,255	9,330	9,067	9,033	8,941	8,673
60세 이상	2,150	2,350	2,801	3,324	3,841	4,243	4,440	4,802	5,178	5,291

| 표 5-132 | 외국인 수용인원(국적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132	1,222	1,271	1,884	1,997	2,096	2,079	2,315	2,451	2,377
소계	기 결	769	773	770	1,123	1,232	1,320	1,338	1,416	1,445	1,386
	미 결	363	449	501	761	765	776	741	899	1,006	991
중국	기 결	482	488	492	800	852	903	805	730	700	628
	미 결	223	269	340	500	477	431	343	426	432	464
일본	기 결	4	3	4	6	8	8	7	7	6	6
	미 결	2	1	3	1	1	4	4	2	1	-
미국	기 결	30	30	34	35	37	35	37	40	34	28
	미 결	20	20	24	29	28	26	28	17	15	16
기타	기 결	253	252	240	282	335	374	489	639	705	724
	미 결	118	159	134	231	259	315	366	454	558	511

| 표 5-133 | 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절 도	4,752	4,650	4,599	4,420	4,061	3,858	3,681	3,549	3,254	2,744
폭력행위등 처벌법	2,396	2,582	2,748	2,863	2,815	2,624	2,544	2,509	2,330	2,325
사기 및 횡령	4,150	5,024	5,911	6,834	7,699	7,630	8,028	8,024	8,330	8,323
성 폭 력	5,215	5,845	6,284	6,272	5,953	5,480	5,713	5,717	5,652	5,572
마 약 류	1,295	1,380	1,344	1,553	1,890	2,133	1,329	1,996	1,595	1,849
과 실 범	1,257	1,315	1,463	1,423	1,691	1,722	1,894	1,851	2,474	2,590
강 도	3,506	3,276	3,014	2,821	2,552	2,333	2,036	1,919	1,803	1,683
살 인	3,711	3,675	3,750	3,728	3,584	3,484	3,291	3,228	3,170	3,063
기 타	5,152	4,390	4,331	5,184	6,234	6,903	6,755	5,904	6,141	5,938

| 표 5-134 | 수형자 형명, 형기별 인원

(단위 : 명)

형명·형기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징역	소 계	30,082	30,796	32,064	33,694	35,048	34,736	33,847	33,292	33,343	32,698
	1년 미만	5,322	5,078	5,312	5,724	6,362	6,050	6,169	5,611	4,402	3,978
	1년 이상	9,829	10,344	10,898	12,001	13,010	13,208	12,591	12,817	14,052	13,826
	3년 이상	6,493	6,613	6,866	6,870	6,747	6,727	6,589	6,339	6,428	6,532
	5년 이상	4,601	4,912	5,088	5,216	5,195	5,029	4,886	4,900	4,902	4,894
	10년 이상	3,317	3,299	3,335	3,283	3,127	3,071	2,927	2,901	2,784	2,643
	20년 이상	520	550	565	600	607	651	685	724	775	825
금고	소 계	84	53	60	67	86	73	87	67	86	71
	6월 미만	2	1	4	5	8	1	1	4	3	11
	6월 이상	51	32	33	37	39	31	29	27	24	16
	1년 이상	26	16	19	17	28	28	41	23	45	30
	3년이상	5	4	4	8	11	13	16	16	14	14
무기징역		1,268	1,288	1,320	1,337	1,345	1,358	1,337	1,338	1,320	1,318

| 표 5-135 | 수형자 입소 경력별 인원

(단위 : 명)

사유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무경험자		16,676	17,483	18,604	19,794	20,649	20,055	19,558	18,955	19,379	18,988
유경력자	소 계	14,758	14,654	14,840	15,304	15,830	16,112	15,713	15,742	15,370	15,099
	1 회	5,308	5,292	5,552	5,987	6,437	6,979	6,741	6,474	6,265	6,329
	2 회	2,540	2,515	2,531	2,506	2,665	2,728	2,668	2,847	2,822	2,802
	3 회	1,889	1,833	1,790	1,742	1,685	1,615	1,623	1,638	1,654	1,609
	4회이상	5,021	5,014	4,967	5,069	5,043	4,790	4,681	4,783	4,629	4,359

| 표 5-136 | 수형자 입·출소 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입소자	계	53,689	55,479	56,044	62,395	64,541	62,624	57,562	56,420	51,874	35,342
	신입소	26,145	27,333	26,573	29,357	28,330	24,851	22,421	21,827	18,609	4,243
	형확정	22,931	23,267	24,281	27,206	30,269	31,500	29,477	29,225	28,204	26,590
	기타	4,613	4,879	5,190	5,832	5,942	6,273	5,664	5,368	5,061	4,509
출소자	계	53,202	54,297	54,203	60,414	62,979	62,819	58,303	56,900	51,817	35,844
	형기종료	15,742	16,374	17,191	19,187	21,357	23,324	21,759	21,092	19,737	17,910
	가석방	6,500	6,201	5,394	5,507	7,157	8,275	8,693	8,174	7,902	9,390
	사면	374	13	282	559	479	309	-	560	206	110
	기타	16,857	17,501	16,173	15,927	14,184	12,559	11,031	10,178	8,597	3,695
	노역종료	13,729	14,208	15,163	19,234	19,802	18,352	16,820	16,896	15,375	4,739
연도말 인원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나. 미결구금자

| 표 5-137 | 미결구금자 입소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43,152	44,274	48,265	52,129	55,240	51,863	47,986	47,581	43,820	40,057
신입소		39,029	39,604	43,171	46,585	49,405	45,976	42,461	42,120	38,516	34,571
기타 (보석취소 등)		4,123	4,670	5,094	5,544	5,835	5,887	5,525	5,461	5,304	5,486

| 표 5-138 | 미결구금자 출소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41,433	42,651	46,272	50,654	53,470	53,890	47,913	47,061	43,929	41,315
구속취소		1,355	1,400	1,669	2,056	2,452	2,761	2,538	2,474	2,200	1,775
벌금		947	1,078	1,224	1,306	1,310	1,218	976	775	684	541
집행유예		9,941	10,100	11,777	12,914	12,447	11,227	8,985	8,831	7,536	6,823
보석		2,662	2,882	3,167	3,069	2,678	2,555	2,127	2,105	2,165	2,015
형확정		21,660	22,017	23,155	25,985	29,019	30,173	28,216	28,040	27,043	25,770
기타		4,868	5,174	5,280	5,324	5,564	5,956	5,071	4,836	4,301	4,391
연도말인원		15,274	16,687	18,317	19,569	21,196	19,031	18,898	19,402	19,207	18,043

※ 2011년 통계부터 교정기관간 이송·이입 인원은 제외함

다. 소년수형자

| 표 5-139 |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70	152	131	130	150	128	105	116	115	142
절 도	42	43	34	26	23	24	17	10	21	26
사기·횡령	2	1	2	10	2	12	12	9	8	6
폭력·상해	17	17	5	10	27	4	3	11	13	7
강 간 등	54	46	34	27	35	44	24	26	21	31
강 도 등	24	16	11	14	19	8	5	14	13	11
살 인	11	7	6	5	5	4	4	3	1	1
과 실 범	2	-	2	2	2	-	1	4	1	2
기 타	18	22	37	36	37	32	39	39	37	58

| 표 5-140 |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단위 : 명)

형명형기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70	152	131	130	150	128	105	116	115	142
징역형	무 기	-	-	-	-	-	-	-	-	-	-
	20년 이상	2	4	1	-	-	-	1	-	-	-
	10년 이상	5	4	3	2	2	-	-	1	-	2
	5년 이상	13	10	11	12	13	9	13	21	15	22
	3년 이상	44	39	42	48	56	47	33	45	41	47
	1년 이상	94	87	67	56	69	64	55	45	55	65
	1년 미만	12	8	7	11	8	8	2	4	2	4
	6월 미만	-	-	-	1	1	-	1	-	2	2
금고형	3년 미만	-	-	-	-	-	-	-	-	-	-
	1년 미만	-	-	-	-	1	-	-	-	-	-

| 표 5-141 |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15	122	124	118	97	113	99	97	81	42
가석방	56	53	33	27	31	28	26	35	35	11
부정기형집행 종료결정	-	-	-	-	-	-	-	-	-	-
형기종료	45	45	68	78	53	64	38	43	37	27
기타	14	24	23	13	13	21	35	19	9	4

라. 외부교통권

| 표 5-142 | 수용자 원격화상접견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 수	178,762	198,458	214,205	246,045	279,423	288,953	294,150	316,462	392,735	331,625

| 표 5-143 | 수용자 전화사용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 수	487,228	488,153	501,483	569,562	576,357	555,883	594,835	588,130	784,751	523,183

| 표 5-144 | 수용자 접견예약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 수	410,980	479,481	533,348	579,852	657,241	751,207	969,264	903,667	929,250	1,111,364

| 표 5-145 | 수용자 접견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 수	1,979,015	2,159,672	2,425,321	2,576,186	2,807,596	2,737,767	2,504,718	2,471,940	1,251,240	1,395,199

마. 재복역률 및 가석방

| 표 5-146 | 2017년 출소자의 누적 재복역률

재복역 기간	'17년 출소자의 누적 재복역률 (출소자 30,702명)	
	재복역 인원	비 율
3월 이내	97	0.3%
6월 이내	591	1.9%
1년 이내	2,386	7.8%
2년 이내	5,599	18.2%
3년 이내	7,551	24.6%

※ 조사대상인원 : 30,702명
※ 출소자 재복역률 개념
출소자 재복역률이란,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14년에 형기종료, 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

| 표 5-147 | 출소사유별·재복역기간별·성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총출소 인원		재복역 인원		재복역기간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총 계	30,702	2,276	7,551	264	97	3	494	14	1,795	52	3,213	113	1,952	82
형기종료	22,062	1,228	7,004	240	94	3	485	14	1,721	50	2,970	103	1,734	70
가석방	8,275	975	495	24	3	-	7	-	70	2	217	10	198	12
감호기간종료	-	-	-	-	-	-	-	-	-	-	-	-	-	-
가출소	42	-	12	-	-	-	-	-	-	-	6	-	6	-
사 면	323	73	40	-	-	-	2	-	4	-	20	-	14	-

※ 출소사유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 31.7%, 가석방 6.0%, 감호기간 종료 0.0%, 가출소 28.6%, 사면 12.4%
※ 재복역기간별 누적 재복역률 : 3월 이내 0.32%, 6월 이내 1.61%, 1년 이내 5.8%, 2년 이내 10.5%, 3년 이내 6.4%
※ 재복역기간별 인원 : 3월이내 97명(1.3%), 3월이상 6월이내 494명(6.5%), 6월이상 1년이내 1,795명(23.8%), 1년이상 2년이내 3,213명(42.6%), 2년이상 3년이내 1,952명(25.9%)
※ 성별 재복역률 : 남자 23.7%, 여자 11.6%

| 표 5-148 | 출소자 범수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범수				
			1범	2범	3범	4범	5범 이상
총계	출소인원	30,702	18,091	5,373	2,216	1,230	3,792
	재복역인원	7,551	2,133	1,400	938	630	2,450
	재복역률	24.6	11.8	26.1	42.3	51.2	64.6
형기종료	출소인원	22,062	10,888	4,062	2,132	1,215	3,765
	재복역인원	7,004	1,774	1,236	927	627	2,440
	재복역률	31.7	16.3	30.4	43.5	51.6	64.8
가석방	출소인원	8,275	6,900	1,285	80	7	3
	재복역인원	495	321	161	11	1	1
	재복역률	6.0	4.7	12.5	13.8	14.3	33.3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재복역인원	-	-	-	-	-	-
	재복역률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42	2	5	3	8	24
	재복역인원	12	1	-	-	2	9
	재복역률	28.6	50.0	-	-	25.0	37.5
사면	출소인원	323	301	21	1	-	-
	재복역인원	40	37	3	-	-	-
	재복역률	12.4	12.3	14.3	-	-	-

※ 범수별 재복역률 : 초범 11.8%, 2범 26.1%, 3범 42.3%, 4범 51.2%, 5범 이상 64.6%
※ 출소사유별 범수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 5범(64.8%), 가석방 5범(33.3%), 가출소 5범(37.5%), 사면 2범(14.3%)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5-149 | 출소자 연령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연령					
			20세 미만	20세 ~ 29세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60세 이상
계	출소인원	30,702	199	4,364	6,325	8,292	8,156	3,366
	재복역인원	7,551	93	1,246	1,483	2,084	2,029	616
	재복역률	24.6	46.7	28.6	23.4	25.1	24.9	18.3
형기종료	출소인원	22.062	149	2,860	4,527	6,066	6,042	2,418
	재복역인원	7,004	72	1,063	1,361	1,964	1,949	595
	재복역률	31.7	48.3	37.2	30.1	32.4	32.3	24.6
가석방	출소인원	8,275	31	1,451	1,731	2,132	2,023	907
	재복역인원	495	7	170	117	110	73	18
	재복역률	6.0	22.6	11.7	6.8	5.2	3.6	2.0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재복역률	-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42	-	-	1	18	14	9
	재복역인원	12	-	-	1	4	5	2
	재복역률	28.6	-	-	100.0	22.2	35.7	22.2
사면	출소인원	323	19	53	66	76	77	32
	재복역인원	40	14	13	4	6	2	1
	재복역률	12.4	73.7	24.5	6.1	7.9	2.6	3.1

※ 연령별 재복역률 : 20세 이내 46.7%, 20대 28.6%, 30대 23.4%, 40대 25.1%, 50대 24.9%, 60대 이상 18.3%
※ 출소사유별 연령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48.3%)는 20세 미만, 가석방(22.6%)은 20세 미만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5-150 | 출소자 죄명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죄명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행위	절도	사기·횡령	마약류	과실범	기타
계	출소인원	30,702	674	512	2,158	4,028	3,734	10,147	1,811	3,258	4,380
	재복역인원	7,551	39	129	361	1,188	1,901	1,560	762	785	826
	재복역률	24.6	5.8	25.2	16.7	29.5	50.9	15.4	42.1	24.1	18.9
형기종료	출소인원	22,062	226	334	2,141	3,432	3,232	5,588	1,810	2,280	3,019
	재복역인원	7,004	30	114	355	1,122	1,784	1,349	762	709	779
	재복역률	31.7	13.3	34.1	16.6	32.7	55.2	24.1	42.1	31.3	25.8
가석방	출소인원	8,275	445	164	4	577	456	4,331	1	961	1,336
	재복역인원	495	9	13	4	63	97	190	-	76	46
	재복역률	6.0	2.0	7.9	100.0	10.9	21.3	4.4	-	7.9	3.4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재복역률	-	-	-	-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42	2	14	13	1	12	-	-	-	-
	재복역인원	12	-	2	5	-	5	-	-	-	-
	재복역률	28.6	-	14.3	38.5	-	41.7	-	-	-	-
사면	출소인원	323	1	-	-	18	34	228	67	17	25
	재복역인원	40	-	-	-	3	15	21	-	-	1
	재복역률	12.4	-	-	-	16.7	44.1	9.2	-	-	4.0

※ 죄명별 재복역률 : 살인(5.8%), 강도(25.2%), 성폭력(16.7%), 폭력(29.5%), 절도(50.9%), 사기·횡령(15.4%), 마약류(42.1%), 과실범(24.1%)

※ 출소사유별 죄명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55.2%)·사면(44.1%)·가출소(41.7%)는 절도가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남

| 표 5-151 | 출소자 형기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형기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출소인원	30,702	1,108	9,588	15,392	3,011	837	372	225	123	46
	재복역인원	7,551	277	2,316	4,050	682	141	41	34	10	-
	재복역률	24.6	25.0	24.2	26.3	22.7	16.8	11.0	15.1	8.1	-
형기종료	출소인원	22,062	1,071	7,837	9,986	2,095	623	258	126	45	21
	재복역인원	7,004	276	2,201	3,673	647	137	34	32	4	-
	재복역률	31.7	25.8	28.1	36.8	30.9	22.0	13.2	25.4	8.9	-
가석방	출소인원	8,275	36	1,694	5,163	895	213	107	89	56	22
	재복역인원	495	1	109	346	32	4	2	-	1	-
	재복역률	6.0	2.8	6.4	6.7	3.6	1.9	1.9	-	1.8	-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재복역률	-	-	-	-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42	-	-	-	-	-	7	10	22	3
	재복역인원	12	-	-	-	-	-	5	2	5	-
	재복역률	28.6	-	-	-	-	-	71.4	20.0	22.7	-
사면	출소인원	323	1	57	243	21	1	-	-	-	-
	재복역인원	40	-	6	31	3	-	-	-	-	-
	재복역률	12.4	-	10.5	12.8	14.3	-	-	-	-	-

※ 형기별 재복역률 : 6월 미만(25.0%), 6월 이상 1년 미만(24.2%), 1년 이상 3년 미만(26.3%), 3년 이상 5년 미만(22.7%), 5년 이상 7년 미만(16.8%), 7년 이상 10년 미만(11.0%), 10년 이상 15년 미만(15.1%), 15년 이상 20년 미만(8.1%), 20년 이상(0.0%)

※ 출소사유별 형기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36.8%) 및 가석방(6.7%)은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남

| 표 5-152 | 수형자 가석방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원	6,500	6,201	5,394	5,507	7,157	8,275	8,693	8,174	7,911	9,390

2. 수용자 교육·교화 현황

가. 학과교육, 프로그램, 입상 등

| 표 5-153 | 검정고시 교육인원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761	785	720	609	556	616	639	655	647	647
고졸 검정	485	510	498	428	411	444	473	498	517	523
중졸 검정	207	228	188	147	126	150	155	144	123	114
초졸 검정	69	47	34	34	19	22	11	13	10	10

| 표 5-154 | 검정고시 합격인원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558	571	565	575	533	508	492	502	508	542
고졸 검정	390	370	390	394	383	371	364	379	425	461
중졸 검정	130	187	163	147	133	125	120	113	76	75
초졸 검정	38	14	12	34	17	12	8	10	7	6

| 표 5-155 |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인원

(단위 : 명)

소 별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교육인원	30	30	30	30	30	21	22	17	20	8
	졸업인원	5	9	6	7	6	5	7	6	8	2
천안	교육인원	-	-	-	-	-	-	-	-	-	-
	졸업인원	-	-	-	-	-	-	-	-	-	-
김천	교육인원	30	30	30	30	30	21	22	17	20	8
	졸업인원	5	9	6	7	6	5	7	6	8	2

| 표 5-156 | 수형자 문화프로그램 시행 현황

연 도	기 관	횟 수	인 원(명)	비 고
2012	51	503	78,826	
2013	51	535	68,786	
2014	51	654	58,412	
2015	52	846	55,468	
2016	52	1,285	61,110	
2017	52	1,428	63,671	
2018	38	1,322	50,873	
2019	52	917	43,018	
2020	46	361	8,983	
2021	53	425	3,836	

| 표 5-157 | 일반수형자 정신교육 및 인성교육 실적

(단위 : 명)

연 도	2012	2013	2014	2015 (집중인성)	2016 (집중인성)	2017 (집중인성)	2018 (집중인성)	2019 (집중인성)	2020 (집중인성)	2021 (집중인성)
실 시 인 원	6,789	6,202	5,763	8,604	10,066	10,525	9,909	11,566	4,917	7,176

나. 귀휴 등 사회적 처우

| 표 5-158 | 귀휴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 원	1,209	1,282	1,356	999	1,084	1,142	1,198	1,193	75	52

| 표 5-159 |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 원	4,099	4,245	4,417	4,322	4,991	5,080	4,850	4,859	134	-

| 표 5-160 | 가족만남의 날 행사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 원	11,681	11,578	11,855	12,755	14,393	11,095	8,891	9,004	59	-

| 표 5-161 | 가족만남의 집 이용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 원	1,177	1,261	1,338	1,361	1,431	1,583	1,913	1,908	27	-

다. 교정위원 활동

| 표 5-162 | 교정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4,915	4,833	4,688	4,706	4,765	4,830	4,777	4,592	4,495	4,410
교화위원	1,971	1,915	1,778	1,804	1,790	1,845	1,812	1,702	1,647	1,651
종교위원	1,942	1,967	1,924	1,895	1,931	1,910	1,891	1,864	1,835	1,775
교육위원	218	211	246	275	315	329	328	333	335	316
의료위원	112	108	98	102	98	97	91	84	77	72
취업위원	672	632	642	630	631	649	655	609	601	596

| 표 5-163 | 교화위원 현황

(2021.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교 육	법 조	사회사업	실 업	공무원	기 타
인 원	1,651	58	34	76	1,149	20	314

| 표 5-164 | 종교위원 현황

(2021.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기 독 교	불 교	천 주 교	기 타
인 원	1,775	840	583	320	32

| 표 5-165 | 교육위원 현황

(2021.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교 수	교 사	학원강사	직업훈련 강사	기 타
인 원	316	63	12	28	12	201

| 표 5-166 | 의료위원 현황

(2021.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의 사	한의사	약 사	간호사	기 타
인 원	72	63	1	2	-	6

| 표 5-167 | 취업위원 현황

(2021.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실 업	사회사업	교 육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기 타
인 원	596	404	17	56	42	77

| 표 5-168 | 교화위원 활동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상 담 (명)	1,615	1,591	2,390	1,629	1,734	1,704	1,334	2,371	219	4
교화강연(회)	6	3	8	11	15	5	3	14	-	-
자매결연(명)	186	363	515	519	341	204	306	1,101	10	33
수 용 생 활 지 원 (명)	4,440	4,619	6,992	5,867	6,726	4,434	5,363	6,068	8,491	5,130

| 표 5-169 | 종교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교리지도(명)	39,667	41,207	37,790	29,560	36,876	33,215	37,085	35,670	99	4
자매결연(명)	2,920	3,989	3,448	3,828	3,333	7,158	11,641	12,360	356	161
수용생활지원(명)	27,305	24,780	22,336	22,170	23,962	24,725	28,224	37,336	13,466	13,350
교화도서기증(권)	1,782	401	670	346	3,441	164	3,809	1,013	151	8

| 표 5-170 | 교육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교육훈련지도(명)	7,665	6,761	7,668	11,401	14,162	18,003	20,428	18.520	2,988	890
자매결연(명)	4	8	29	18	13	44	-	-	-	6
수용생활지원(명)	1	-	11	36	187	67	93	20	103	94
교화도서기증(권)	276	-	20	100	43	249	-	230	400	-

| 표 5-171 | 의료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의료지원(명)	4,970	4,762	4,731	10,716	12,310	11,566	13,295	12,410	10,288	9,752
자매결연(명)	3	2	5	9	3	-	-	-	-	-
수용생활지원(명)	19	-	-	45	115	68	120	380	676	884
교화도서기증(권)	-	-	-	-	-	-	100	-	-	-

3.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가. 교도작업

| 표 5-172 | 취업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형자 총인원		31,620	32,076	32,867	34,425	36,082	35,990	34,633	34,605	34,621	33,892
취업 불가능인원		9,053	9,140	9,085	10,458	12,154	11,613	11,510	11,662	12,612	12,924
취업가능인원	계	22,567	22,936	23,782	23,967	23,928	24,377	23,123	22,942	22,009	20,968
	취업인원	18,826	18,991	21,471	22,090	22,100	22,265	21,351	21,562	20,577	19,534
	비율(%)	83	83	90	92	92	91	92	94	93	93
	불취업인원	3,741	3,945	2,311	1,877	1,828	2,112	1,772	1,380	1,432	1,434

※ 감호작업은 제외

| 표 5-173 | 생산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획	32,913	33,789	37,699	42,082	55,541	57,033	60,056	60,893	61,374	61,603
실적	38,038	42,099	47,247	55,792	62,239	66,127	65,732	62,704	62,850	65,555
실적/계획(%)	115.6	124.6	125.3	132.6	112.1	115.9	109.5	103.0	102.4	106.4
실적 증가율(%)	△3.0	10.7	12.2	18.1	11.6	6.2	△0.6	△0.5	△0.6	4.3

| 표 5-174 | 작업형태별 생산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실 적	38,038	42,099	47,246	55,792	62,239	66,127	65,732	62,704	62,850	65,555
직영작업	실 적	22,951	22,873	24,801	30,228	34,998	38,141	37,905	34,326	37,089	38,413
	구성비 (%)	60.3	54.3	52.5	54.2	56.2	57.7	57.7	54.7	59.0	58.6
위탁작업	실 적	7,907	11,548	15,026	17,448	18,763	19,312	19,886	20,158	18,271	16,996
	구성비 (%)	20.8	27.4	31.8	31.3	30.1	29.2	30.2	32.2	29.1	25.9
외통·개방	실 적	7,004	7,020	7,217	7,914	8,330	8,456	7,807	8,114	7,357	7,489
	구성비 (%)	18.4	16.7	15.3	14.2	13.4	12.8	11.9	12.9	11.7	11.4
기타	실 적	176	658	202	202	148	218	134	107	132	2,657
	구성비 (%)	0.5	1.6	0.4	0.4	0.2	0.3	0.2	0.2	0.2	4.1

| 표 5-175 | 연도별 관수용품 등 공급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생산총액		38,038	42,099	47,247	55,792	62,239	66,127	65,732	62,704	62,850	65,555
관수용품	계	20,320	19,354	22,504	28,503	31,723	35,343	28,617	26,595	31,603	33,912
	교정기관	19,513	18,757	20,535	25,971	27,479	31,060	24,949	23,570	29,885	31,257
	법무부산하	346	296	311	205	994	74	99	1,162	211	123
	부 외 처	461	301	1,658	2,327	3,250	4,209	3,569	1,863	1,507	2,532

| 표 5-176 | 작업장려금 지급실적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급액 (천 원)	11,966,506	14,901,986	17,798,954	20,231,129	20,853,628	22,641,637	22,074,502	23,129,488	20,621,076	22,659,230
지급 연인원 (명)	4,965,893	5,022,670	4,435,528	5,634,098	5,615,637	5,874,204	4,967,883	5,187,748	5,139,172	4,870,453
1인당 1일평균 (원)	2,410	2,967	4,013	3,591	3,713	3,854	4,443	4,458	4,013	4,652

| 표 5-177 | 수용자 조위금·위로금 지급실적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급인원	5 (1)	3	-	5	5 (2)	2	5 (2)	2	4 (1)	3
지 급 액	73,735 (42,709)	11,346	-	98,729	96,308 (90,034)	20,040	145,466 (103,986)	10,287	57,328 (44,668)	41,820

※ ( )는 조위금

| 표 5-178 |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 지급실적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 급 액	599,907	700,846	630,667	687,043	449,740	405,258	167,154	151,133	105,409	52,594
지급인원	122	117	98	92	64	32	16	21	18	13
1인당 평균 지 급 액	4,917	5,990	6,435	7,468	7,027	36,241	36,520	38,348	31,306	18,558

| 표 5-179 | 최근 5년간 세입·세출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 구분	총세입액	총세출액	세계잉여금	비 고
2017	97,566	90,298	7,268	-
2018	118,233	110,222	8,011	-
2019	114,086	100,203	13,883	-
2020	118,424	107,406	11,018	-
2021	114,370	106,756	7,614	-

※ 총세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 표 5-180 | 국유재산 및 주요장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계	국유재산	공작물 등
210,580	205,235	4,078

| 표 5-181 |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생 산 작 업									비 생 산 작 업								
작 업 종 류	직영 개방지역작업			직영 집중근로 (위탁 집중근로)			직영 일반생산작업 (위탁 일반생산작업)			운영지원작업						직업훈련		
										일반운영 지원작업			취사원					
등 급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지급액	15,000	12,000	10,000	8,500 (60%)	7,500 (60%)	6,500 (60%)	4,000 (60%)	3,500 (55%)	3,000 (50%)	1,600	1,500	1,400	3,700	3,200	2,700	1,100	1,000	900

| 표 5-182 | 연도별 취업 지원 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취업	1,238	1,405	1,636	1,503	1,663	1,670	1,542	1.557	1,625	1,725

나. 직업훈련

| 표 5-183 | 직업훈련 실시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4,129	4,852	6,276	6,484	6,644	6,727	6,939	6,433	5,942	5,417
양성·향상 훈 련	3,386	3,336	3,811	3,758	3,913	3,719	4,313	4,276	4,397	4,200
숙 련 훈 련	350	249	397	360	364	457	608	637	777	720
일 반 훈 련	393	1,267	2,068	2,366	2,367	2,551	2,018	1,520	768	497

| 표 5-184 | 기술자격 취득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813	2,953	3,278	3,264	3,316	3,443	3,424	3,338	3,128	3,070
기 술 사	-	-	-	-	-	-	-	-	-	-
기 능 장	4	4	1	5	4	-	-	2	-	-
기 사	-	11	-	-	1	-	1	-	5	7
산업기사	252	158	79	50	56	92	87	60	100	85
기 능 사	2,557	2,780	3,198	3,209	3,255	3,351	3,336	3,276	3,023	2,978

| 표 5-185 |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85	95	101	87	76	77	98	99	94	78
지방대회	72	84	88	77	64	63	76	76	73	58
전국대회	13	11	13	10	12	14	22	23	21	20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1.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 표 5-186 |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계	50,322,102	54,966,229	61,652,158	66,372,908	79,987,974
	승객	45,744,545	48,888,699	55,316,870	60,054,078	73,916,823
	승무원	4,577,557	6,077,530	6,335,288	6,318,830	6,071,151
국민	소계	28,136,628	30,352,303	32,722,368	39,111,816	45,313,898
	승객	25,557,744	27,646,533	29,971,333	36,228,736	42,197,580
	승무원	2,578,884	2,705,770	2,751,035	2,883,080	3,116,318
외국인	소계	22,185,474	24,613,926	28,929,790	27,261,092	34,674,076
	승객	20,186,801	21,242,166	25,345,537	23,825,342	31,719,243
	승무원	1,998,673	3,371,760	3,584,253	3,435,750	2,954,833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계	80,407,702	88,908,420	93,548,093	14,701,831	4,559,693
	승객	75,134,915	83,558,252	87,822,137	12,777,578	2,859,950
	승무원	5,272,787	5,350,168	5,725,956	1,924,253	1,699,743
국민	소계	53,445,030	57,859,670	57,795,389	9,171,481	2,432,517
	승객	50,130,062	54,321,526	54,198,298	7,957,472	1,593,633
	승무원	3,314,968	3,538,144	3,597,091	1,214,009	838,884
외국인	소계	26,962,672	31,048,750	35,752,704	5,530,350	2,127,176
	승객	25,004,853	29,236,726	33,623,839	4,820,106	1,266,317
	승무원	1,957,819	1,812,024	2,128,865	710,244	860,859

2.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87 |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계	10,121,950	10,678,334	12,682,019	13,359,701	17,418,307
중 국	2,731,121	3,923,190	5,663,482	6,154,730	8,268,262
일 본	3,497,525	2,715,451	2,254,307	1,859,190	2,321,842
미 국	733,984	743,017	798,858	859,361	960,683
타 이 완	570,442	566,200	666,805	551,362	865,948
홍 콩	352,019	391,340	550,268	524,116	651,639
필 리 핀	126,566	133,595	162,615	412,197	566,693
태 국	334,502	313,347	412,217	375,021	474,262
말 레 이 시 아	161,970	187,322	227,434	223,782	311,686
베 트 남	110,250	114,357	141,827	199,323	299,084
인 도 네 시 아	110,209	119,179	132,547	194,472	296,377
러 시 아	104,273	119,691	164,628	191,214	238,171
싱 가 포 르	138,813	157,696	185,712	160,402	221,844
인 도	56,329	60,675	68,097	154,294	196,773
캐 나 다	119,943	122,330	135,163	147,715	178,023
오스트레일리아	121,795	114,106	129,504	134,357	153,125
영 국	104,724	106,783	113,786	124,833	136,900
독 일	86,327	86,759	89,004	101,251	111,413
프 랑 스	63,555	67,836	73,846	85,093	93,039
몽 골	61,771	65,446	63,584	81,201	82,780
우 즈 베 키 스 탄	42,133	44,326	48,777	59,453	71,299
뉴 질 랜 드	28,239	27,065	29,119	28,806	32,038
기 타	465,460	498,623	570,439	737,528	886,426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13,569,509	15,630,522	17,880,503	2,659,845	1,044,545
중 국	4,393,936	5,032,906	6,284,486	740,039	187,908
일 본	2,337,588	2,976,444	3,303,088	438,708	18,025
미 국	969,277	1,068,173	1,139,150	265,134	251,203
타 이 완	957,836	1,146,215	1,290,683	171,943	5,779
홍 콩	659,182	679,942	685,569	87,118	1,381
필 리 핀	459,588	471,532	516,503	120,171	117,316
태 국	503,777	565,784	580,191	78,878	9,351
말 레 이 시 아	308,152	383,467	409,254	48,741	4,596
베 트 남	380,929	519,448	624,640	112,938	25,359
인 도 네 시 아	231,908	250,248	280,146	67,301	46,998
러 시 아	275,779	308,665	350,093	75,117	35,235
싱 가 포 르	216,574	232,359	246,736	18,136	7,625
인 도	124,458	120,975	144,758	34,299	31,633
캐 나 다	178,761	196,859	208,280	35,437	30,201
오스트레일리아	151,583	154,390	174,681	23,559	3,717
영 국	128,046	133,149	146,132	21,124	9,337
독 일	111,077	117,173	121,989	24,543	20,381
프 랑 스	94,013	101,854	112,588	19,891	16,195
몽 골	108,139	118,783	118,977	22,535	6,511
우 즈 베 키 스 탄	81,711	89,391	95,634	17,570	16,177
뉴 질 랜 드	33,526	34,652	39,504	6,772	1,732
기 타	863,669	928,113	1,007,421	229,891	197,885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3. 항구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88 |

항구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계	10,121,950	10,678,334	12,682,019	13,359,701	17,418,307
인천공항	6,694,670	6,791,570	7,910,157	7,778,178	10,010,950
제주공항	610,609	1,035,720	1,188,019	958,601	1,327,513
김해공항	706,527	768,412	826,736	789,992	1,059,397
김포공항	1,200,431	1,080,350	1,056,803	943,451	1,029,912
부산항	259,977	244,125	223,248	460,625	850,990
인천항	364,662	416,320	465,523	543,334	621,693
청주공항	37,470	70,967	190,906	194,255	237,282
평택항	113,328	96,698	141,425	170,805	179,051
대구공항	9,962	11,961	40,523	51,145	103,339
군산항	28,877	30,859	35,035	47,844	65,265
감천항	9,384	9,800	10,070	56,558	57,818
울산항	7,928	8,593	8,429	48,852	48,071
광양항	2,452	9,651	9,622	29,080	44,614
오산공항	26,380	24,943	29,920	36,431	34,994
무안공항	4,591	23,639	32,019	37,727	34,295
양양공항	11,320	19,231	86,785	47,005	34,202
동해항	9,962	8,329	8,320	21,234	27,978
여수항	12,376	10,809	4,649	20,337	26,904
창원항	1,658	1,659	2,380	13,526	13,191
서산항	2,216	2,186	2,380	6,433	6,590
속초항	526	7,452	8,879	1,386	1,101
기타	6,644	5,060	400,191	1,102,902	1,603,157

항구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13,569,509	15,630,522	17,880,503	2,659,845	1,044,545
인천공항	9,288,559	10,789,900	11,983,837	1,899,649	721,864
제주공항	555,387	839,775	1,220,957	117,997	23
김해공항	1,062,683	1,279,277	1,375,031	154,778	4,429
김포공항	922,837	1,084,115	1,165,403	148,795	539
부산항	412,465	380,537	450,550	82,576	94,296
인천항	332,305	410,667	510,530	34,139	14,216
청주공항	61,021	68,166	89,695	5,756	12
평택항	211,138	210,495	296,933	26,151	13,771
대구공항	68,730	107,407	204,324	19,520	4
군산항	76,979	109,649	169,779	13,632	8,034
감천항	57,964	56,697	60,005	26,365	20,529
울산항	46,328	43,955	43,266	26,247	38,141
광양항	38,986	35,377	34,642	18,956	34,385
오산공항	32,599	32,306	28,809	27,188	22,331
무안공항	4,074	7,717	20,770	1,275	-
양양공항	2,446	13,699	12,113	4,724	3
동해항	31,066	28,465	28,423	6,757	6,141
여수항	26,031	31,798	59,960	18,417	37,312
창원항	13,034	13,071	13,389	7,715	9,507
서산항	7,782	8,527	8,425	2,904	3,497
속초항	11,858	4,969	5,938	516	-
기타	305,237	73,953	97,724	15,788	15,511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 오산공항은 2016년부터 평택으로 명칭 변경

4.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89 |

체류자격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계	10,121,950	10,678,334	12,682,019	13,359,701	17,418,307
사증면제(B-1)	1,066,334	1,090,907	1,426,293	1,249,506	1,556,536
관광통과(B-2)	5,524,120	5,040,354	5,335,626	4,632,593	5,833,225
단기상용(C-2)	22	-	-	-	-
단기종합(C-3)	2,102,656	2,728,573	3,725,073	3,635,898	5,026,435
유 학(D-2)	111,219	114,818	117,836	140,160	169,715
기술연수(D-3)	1,951	1,806	1,663	1,934	1,678
일반연수(D-4)	34,413	37,282	45,624	62,550	81,033
종 교(D-6)	4,083	2,362	2,323	2,292	2,348
주 재(D-7)	8,908	9,234	9,103	8,991	9,160
기업투자(D-8)	39,584	39,859	40,550	40,795	42,007
무역경영(D-9)	17,456	32,326	38,867	33,958	26,302
교 수(E-1)	8,181	8,186	7,323	7,555	7,550
회화지도(E-2)	40,848	38,572	34,567	32,299	32,158
연 구(E-3)	8,525	9,223	9,670	9,810	9,494
예술흥행(E-6)	4,162	4,368	4,710	4,596	3,996
특정활동(E-7)	35,907	36,904	39,260	43,300	46,324
비전문취업(E-9)	99,140	105,738	115,294	123,433	134,764
선원취업(E-10)	7,173	8,281	9,574	9,431	9,877
방문동거(F-1)	38,883	41,740	41,043	49,310	69,742
거 주(F-2)	19,099	24,948	30,189	35,728	43,041
동 반(F-3)	31,704	36,544	40,173	43,222	43,684
재외동포(F-4)	227,836	280,130	349,137	405,948	468,336
영 주(F-5)	70,890	87,497	101,184	118,553	134,138
기 타	618,856	898,682	1,156,937	2,667,839	3,666,764

체류자격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13,569,509	15,630,522	17,880,503	2,659,845	1,044,545
사증면제(B-1)	1,634,095	1,908,616	2,053,173	222,306	19,938
관광통과(B-2)	5,269,825	6,378,362	7,158,538	939,748	115,029
단기상용(C-2)	-	-	-	-	-
단기방문(C-3)	3,319,579	4,127,283	5,184,417	503,028	89,288
유 학(D-2)	212,295	248,472	291,007	89,414	53,366
기술연수(D-3)	1,723	1,449	1,103	321	389
일반연수(D-4)	90,357	83,538	84,653	29,048	26,718
종 교(D-6)	2,428	2,313	2,398	647	625
주 재(D-7)	8,548	8,460	9,072	2,045	1,044
기업투자(D-8)	41,984	41,886	42,442	9,252	4,574
무역경영(D-9)	18,288	9,705	8,669	3,169	2,562
교 수(E-1)	7,491	7,160	6,904	2,061	964
회화지도(E-2)	30,922	27,291	29,115	11,326	5,376
연 구(E-3)	9,618	9,508	9,212	2,569	1,618
예술흥행(E-6)	3,765	4,570	5,436	1,790	1,934
특정활동(E-7)	47,528	46,661	46,475	12,398	5,827
비전문취업(E-9)	140,072	145,174	151,116	41,992	16,732
선원취업(E-10)	10,720	11,737	11,634	6,325	4,895
방문동거(F-1)	82,857	88,747	97,159	32,329	11,306
거 주(F-2)	48,924	53,672	58,425	13,330	3,637
동 반(F-3)	40,048	38,402	40,284	13,651	9,254
재외동포(F-4)	515,587	565,636	579,522	112,752	64,246
영 주(F-5)	151,115	162,760	177,531	34,140	11,644
기 타	1,881,740	1,659,120	1,832,218	576,204	593,579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5.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 표 5-190 |

국가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중 국	1,018,074	1,070,566	1,101,782	894,906	840,193
베 트 남	169,738	196,633	224,518	211,243	208,740
미 국	143,568	151,018	156,982	145,580	140,672
태 국	153,259	197,764	209,909	181,386	171,800
필 리 핀	58,480	60,139	62,398	49,800	46,871
우즈베키스탄	62,870	68,433	75,320	65,205	66,677
일 본	53,670	60,878	86,196	26,515	28,093
인도네시아	45,328	47,366	48,854	36,858	34,188
캄 보 디 아	47,105	47,012	47,565	41,405	41,525
몽 골	45,744	46,286	48,185	42,511	37,012
네 팔	36,627	40,456	42,781	39,743	36,903
타 이 완	36,168	41,306	42,767	19,444	18,554
러 시 아	44,851	54,064	61,427	50,410	48,680
스리랑카	26,916	25,828	25,064	22,466	20,291
캐 나 다	25,692	25,934	26,789	21,794	22,830
미 얀 마	24,902	28,074	29,294	26,412	26,096
방글라데시	16,066	16,641	18,340	16,823	16,426
오스트레일리아	13,008	14,279	15,222	7,913	7,591
파 키 스 탄	12,697	13,275	13,990	12,842	12,410
인 도	11,244	11,945	12,929	10,892	11,542
영 국	6,727	6,972	7,550	5,871	6,435
기 타	127,764	142,738	166,794	106,056	113,252

6.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 표 5-191 |

체류자격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2,180,498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사증면제(B-1)	177,629	228,194	248,753	179,332	165,869
관광통과(B-2)	121,725	149,474	204,541	51,977	43,673
단기방문(C-3)	199,518	218,743	256,696	114,261	97,225
단기취업(C-4)	1,719	1,302	1,645	2,356	1,691
유 학(D-2)	86,875	102,690	118,254	101,810	111,178
기술연수(D-3)	2,705	2,461	1,964	1,634	1,654
일반연수(D-4)	49,939	59,729	63,691	52,952	53,870
종 교(D-6)	1,723	1,594	1,561	1,254	1,378
상사주재(D-7)	1,340	1,308	1,400	1,057	1,028
기업투자(D-8)	5,939	5,889	5,909	5,587	5,955
무역경영(D-9)	2,982	2,520	2,352	2,136	2,053
교 수(E-1)	2,427	2,341	2,187	2,053	2,017
회화지도(E-2)	14,352	13,749	13,910	12,621	13,403
연 구(E-3)	3,214	3,145	3,132	3,110	3,638
예술흥행(E-6)	3,704	3,633	3,549	3,011	3,285
특정활동(E-7)	21,206	21,884	21,314	19,534	20,675
비전문취업(E-9)	279,127	280,312	276,755	236,950	217,729
선원취업(E-10)	16,069	17,447	17,603	17,552	17,921
방문동거(F-1)	111,449	118,192	122,886	105,382	96,015
거 주(F-2)	40,594	41,099	43,671	43,666	42,367
동 반(F-3)	22,457	22,360	22,890	20,050	21,237
재외동포(F-4)	415,121	444,880	464,152	466,682	478,442
영 주(F-5)	136,334	142,151	153,291	160,947	168,118
방문취업(H-2)	238,880	250,381	226,322	154,537	125,493
기 타	223,470	232,129	246,228	275,624	260,867

7. 청·사무소(출장소)별 등록외국인 현황

| 표 5-192 |

사무소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1,171,762	1,246,626	1,271,807	1,145,540	1,093,891
서 울	113,921	119,496	118,335	102,859	96,888
서 울 남 부	121,990	130,854	127,223	106,526	95,393
부 산	48,752	51,849	52,323	46,147	45,022
인 천	102,281	112,056	118,283	110,849	107,902
수 원	123,675	132,472	133,871	121,265	113,145
제 주	21,689	24,841	25,668	22,943	20,717
대 구	48,647	51,947	54,698	49,605	48,331
대 전	36,771	39,186	41,593	37,511	37,309
여 수	6,004	6,576	6,817	6,673	7,349
양 주	36,774	38,212	39,806	37,291	35,822
광 주	31,564	33,479	34,535	31,372	30,501
창 원	30,815	30,911	30,854	27,472	25,985
춘 천	11,146	11,808	12,196	10,924	11,045
청 주	35,357	38,148	39,114	35,610	34,564
전 주	23,322	25,647	26,973	25,496	24,509
울 산	30,701	31,295	32,239	28,081	26,427
세 종 로 (출)	63,312	67,776	69,750	61,768	60,393
안 산 (출)	85,764	91,433	91,164	83,680	78,935
구 미 (출)	13,127	13,140	13,078	12,111	12,127
포 항 (출)	7,844	8,612	8,740	8,349	8,268
천 안 (출)	37,231	39,703	41,226	37,188	36,321
서 산 (출)	7,676	8,115	8,308	7,843	7,513
고 양 (출)	22,929	23,939	24,080	22,177	21,244
목 포 (출)	13,386	14,204	15,424	14,621	14,245
거 제 (출)	9,089	7,473	8,302	6,641	5,404
군 산 (출)	5,266	5,700	6,101	5,792	5,822
평 택 (출)	40,424	43,855	45,606	43,623	43,229
김 해 (출)	21,123	21,315	21,883	19,492	18,524
기 타	21,182	22,584	23,617	21,631	20,957

8.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 표 5-193 |

지역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1,171,762	1,246,626	1,271,807	1,145,540	1,093,891
경 기	381,628	408,526	414,318	380,144	360,412
서 울	267,153	283,984	281,876	242,623	226,569
경 남	75,136	74,304	76,123	67,239	63,148
충 남	68,280	73,174	76,375	69,622	67,462
인 천	62,596	67,869	72,259	67,648	66,364
경 북	53,364	56,969	58,119	52,469	51,100
부 산	42,837	45,738	45,999	40,366	39,420
충 북	36,656	39,537	40,714	37,060	36,045
전 남	31,221	33,042	34,638	32,906	32,656
전 북	28,588	31,347	33,074	31,288	30,331
대 구	26,442	28,033	30,191	27,798	27,230
울 산	20,513	20,002	20,450	17,884	16,827
광 주	21,279	22,815	23,825	21,323	20,934
제 주	21,689	24,841	25,668	22,943	20,717
대 전	17,431	18,184	19,109	16,895	17,292
강 원	16,949	18,261	19,069	17,332	17,384

※ 충남은 세종시(5,076명) 포함

9.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 표 5-194 |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841,308	878,665	878,439	811,211	778,670
중 국	702,932	728,539	719,269	662,845	628,491
미 국	45,177	45,011	45,655	44,039	43212
캐 나 다	15,947	15,933	16,046	15,975	16731
우즈베키스탄	31,081	34,355	36,752	31,962	32,216
러 시 아	21,264	25,302	28,020	26,871	27,488
오스트레일리아	4,617	4,624	4,783	4,430	4232
뉴 질 랜 드	2,395	2,436	2,490	2,393	2279
카 자 흐 스 탄	9,223	12,586	14,992	13,033	13,993
독 일	854	841	809	787	812
일 본	827	826	852	768	706
기 타	6,991	8,212	8,771	8,108	8,510

10.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 표 5-195 |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135,087	160,671	180,131	153,361	163,699
유 학(D-2)	86,875	102,690	118,254	101,810	111,178
한국어연수(D-41)	48,208	57,971	61,867	51,545	52,506
외국어연수(D-47)	4	10	10	6	15
증 감 률 (전년대비, %)	(16.5%)	(18.9%)	(12.1%)	(-14.9%)	(6.7%)

국가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135,087	160,671	180,131	153,361	163,699
중 국	67,133	68,994	71,719	52,102	49,033
베 트 남	27,563	45,143	57,539	57,945	63,492
몽 골	7,784	8,650	8,739	8,240	8,838
우즈베키스탄	4,793	7,840	10,499	9,077	9,504
일 본	2,464	2,676	2,887	2,193	3,876
인도네시아	1,418	1,520	1,461	1,342	1,561
파 키 스 탄	1,461	1,720	1,905	1,531	1,392
인 도	1,406	1,411	1,451	1,289	1,412
말레이시아	1,093	1,075	969	724	897
미 국	1,119	1,210	1,385	861	1,285
(타 이 완)	1,211	1,354	1,108	859	960
방글라데시	1,016	1,206	1,387	1,160	1,278
러 시 아	826	884	965	918	1,303
네 팔	1,078	1,636	2,331	2,796	2,772
필 리 핀	666	659	613	452	475
기 타	14,056	14,693	15,173	11,872	15,621

11. 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 표 5-196 |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인 원	155,457	159,206	166,025	168,594	168,611
증감률 (전년대비, %)	(2.0%)	(2.4%)	(4.3%)	(1.5%)	(0.01%)

국가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155,457	159,206	166,025	168,594	168,611
중 국	57,644	58,706	60,324	60,072	59,770
베 트 남	42,205	42,460	44,172	44,058	41,447
일 본	13,400	13,738	14,184	14,595	15,074
필 리 핀	11,783	11,836	12,030	12,002	12,041
캄 보 디 아	4,459	4,496	4,641	4,638	4,565
미 국	3,471	3,658	3,883	4,312	4,538
태 국	3,671	4,411	5,130	5,929	6,558
몽 골	2,396	2,438	2,497	2,486	2,502
우즈베키스탄	2,367	2,425	2,688	2,625	2,709
캐 나 다	1,345	1,320	1,334	1,397	1,426
러 시 아	1,367	1,494	1,668	1,800	2,041
네 팔	974	901	884	841	834
파 키 스 탄	937	968	984	979	989
타 이 완	1,072	1,213	1,394	1,472	1,596
영 국	911	969	1,045	1,120	1,200
인 도 네 시 아	748	809	905	998	1,073
방 글 라 데 시	369	368	375	361	376
기 타	6,338	6,996	7,887	8,909	9,872

12. 연도별 국적 처리현황

| 표 5-197 |

국가 \ 연도	허가 유형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귀화	10,086	11,556	9,914	13,885	10,895
	회복	2,775	2,698	2,443	1,764	2,741
중 국	귀화	4,781	4,838	4,371	7,932	5,145
	회복	245	144	181	120	185
베 트 남	귀화	3,742	4,849	3,867	4,076	4,225
	회복	57	45	39	29	13
필 리 핀	귀화	359	597	423	375	241
	회복	7	7	11	7	25
몽 골	귀화	93	99	102	145	103
	회복	17	14	6	10	3
우즈베키스탄	귀화	48	72	78	138	97
	회복	27	12	6	8	12
일 본	귀화	29	17	14	15	20
	회복	38	53	41	54	86
태 국	귀화	52	58	52	68	78
	회복	4	5	3	7	6
파 키 스 탄	귀화	51	42	48	26	34
	회복	10	2	-	-	-
기 타	귀화	931	984	959	1,110	952
	회복	2,370	2,416	2,156	1,529	2,411

13.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 표 5-198 |

구 분 \ 연 도		총계	'94~'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신청	1차	73,383	6,643	2,896	5,711	7,541	9,942	16,173	15,452	6,684	2,341
	이의 신청	34,421	2,551	1,759	3,257	5,277	3,723	3,113	4,068	5,956	4,717
심사결정	소계	74,659	5,770	3,349	6,238	10,602	9,634	6,881	9,310	11,896	10,979
	1차	45,935	3,499	2,388	4,244	6,326	5,219	4,297	5,876	8,104	5,982
	이의 신청	28,724	2,271	961	1,994	4,276	4,415	2,584	3,434	3,792	4,997
철회*	소계	20,976	1,245	408	351	815	1,245	2,412	4,264	6,230	4,006
	1차	19,805	1,167	362	278	735	1,197	2,305	4,138	5,929	3,694
	이의 신청	1,171	78	46	73	80	48	107	126	301	312

* 1차 심사의 경우 직권종료 처리 건 포함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14. 난민신청 심사결과

| 표 5-199 |

구 분 \ 연 도		총계	'94~'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심사완료		41,409	3,169	1,574	2,755	5,665	5,874	3,954	5,066	6,243	7,109
난민 인정 (보호)	소계 (보호율, %)	3,575 (8.6)	558 (17.6)	627 (39.8)	303 (11.0)	350 (6.2)	437 (7.4)	651 (16.5)	309 (6.1)	223 (3.6)	117 (1.6)
	인정 (인정률, %)	1,163 (2.8)	381 (12.0)	94 (6.0)	105 (3.8)	98 (1.7)	121 (2.1)	144 (3.6)	79 (1.6)	69 (1.1)	72 (1.0)
	인도적 체류	2,412	177	533	198	252	316	507	230	154	45
불인정		37,834	2,611	947	2,452	5,315	5,437	3,303	4,757	6,020	6,992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 인정취소 7건 및 철회 2건 포함(2013년 1건)

法務年鑑



자 료

제1절 직제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제3절 장관 연설문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제6절 인사
제7절 국외훈련·출장
제8절 국제교류 현황
제9절 상훈
제10절 위원회 현황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제1절 직제

1. 직제 연혁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	1948. 7.17.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 제정 공포	• 법무국을 법무실로 승격하고 소송수행담당관 신설
2	1948. 9.13.	대통령령 제3호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	• 과도정부 사법부(법률기초국과 법률조사국 제외)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
3	1948.11. 4.	대통령령 제21호	법무부직제 제정 공포	• 1실 4국 21과 설치
4	1950. 3.31.	대통령령 제307호	법무부직제 개정	• 3국 10과로 개편
5	1954. 9. 1.	대통령령 제936호	〃	• 법무국 조사과 폐지, 소년과 신설
6	1955. 2. 7.	법률 제354호	정부조직법 개정	• 법제처를 법제실로 개칭하고 법무부에 소속시킴
7	1955. 2.17.	대통령령 제1008호	법제실직제 제정 공포	• 법제실에 제1·2국을 두고 제1국에 운영지원과를 둠
8	1960. 7. 1.	법률 제552호	정부조직법 개정	• 정무차관·사무차관 신설, 법제실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국무원 사무국으로 이관
9	1961. 8.25.	법률 제698호	〃	• 정무차관·사무차관 폐지 기획조정관 신설
10	1961.10. 2.	각령 제177호	법무부직제 개정	•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 신설, 김포·인천·부산에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
11	1962. 5.21.	각령 제770호	〃	•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형무과를 교정과로 각 개칭, 출입국관리과를 법무국으로, 소년과를 교정국으로 각 이관
12	1962. 7. 4.	각령 제885호	공보사무담당공무원의배치및직무에관한건 제정 공포	• 공보담당 일반직 3급갑류 1인 신설
13	1963.12.14.	법률 제1506호	정부조직법 개정	•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개칭
14	1966.10.26.	대통령령 제2798호	법무부직제 개정	• 일본국 해외주재관 2명 주재
15	1967. 4.10.	대통령령 제2986호	〃	• 법무국을 법무실로 승격하고 소송수행담당관 신설
16	1967. 7. 7.	대통령령 제3139호	법무부직제 개정	• 교정국에 시설과 설치
17	1969. 3.24.	대통령령 제3829호	〃	• 기획관리실에 비상계획담당관 신설
18	1970. 2.20.	대통령령 제3900호	〃	• 비상계획담당관을 비상계획관으로 하고 그 밑에 비상계획보좌관을 둠
19	1970. 2.27.	대통령령 제4678호	〃	• 본부 각과의 계제도 폐지, 출입국관리담당관 신설. 경제기획원에 주재관(3갑) 신설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20	1970. 8.20.	대통령령 제5278호	〃	• 출입국관리담당관을 출입국관리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 밑에 입국심사과·체류심사과 설치
21	1973. 3.14.	대통령령 제6570호	〃	• 교정국장 밑에 교정기획관 신설, 비상계획관은 차관직속으로 개편
22	1973. 3.28.	대통령령 제6594호	〃	• 공보담당관(3갑)을 공보관(2갑, 2을 또는 별정직)으로 조정
23	1975. 7.16.	대통령령 제7697호	〃	• 검찰과를 검찰 제1·2·3·4과로 하고 인권옹호과를 인권과로 개편하여 법무실 이관, 출입국관리국에 기록관리과 신설
24	1976.12. 9.	대통령령 제8293호	〃	• 출입국관리국장 밑에 출입국관리심의관 신설
25	1977. 9.20.	대통령령 제8698호	〃	• 차관 밑에 감사관 신설
26	1978. 5. 2.	대통령령 제9000호	〃	• 법무실에 조사과를 신설하고 송무과를 송무제1·2과로 하며, 교정국에 보안과·직업훈련과를 신설하고 계획과를 작업지도과로 개칭
27	1981. 1. 9.	대통령령 제10160호	〃	• 보호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보호과·조정과·심사과를 설치
28	1981.11. 2.	대통령령 제10526호	법무부직제 개정	• 송무담당관 2인을 1인으로 감축하고, 법무실의 송무제1·2과를 송무과로 통합. 검찰국장 밑에 연구검사 신설. 교정국의 교정기획관을 폐지하고 관리과를 재정과로, 직업훈련과를 교육과로 개칭. 출입국관리국의 출입국관리심의관을 폐지함
29	1982. 8.11.	대통령령 제10891호	〃	• 검사로 보하게 되어있던 실·국장 및 과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송무담당관을 검사장으로 함
30	1983. 7.22.	대통령령 제11179호	〃	• 검사장으로 보하게 되어 있던 실·국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출입국관리국장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며, 법무실·검찰국·보호국 소속과장 직급을 고등검찰관에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조정. 송무담당관과 조사과를 폐지하고 법무실장 밑에 법무심의관, 교정국장 밑에 교정심의관과 교화심의관을 신설하며, 비서관 직급을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으로 조정
31	1984.12.31.	대통령령 제11592호	〃	• 교정국 소속의 소년과를 보호국 소속으로 하고, 조정과를 조사과로, 심사과를 관찰과로 하며, 교정국에 경비과를 신설함. 법무심의관의 기능 일부 조정
32	1986. 4. 3.	대통령령 제11879호	〃	• 보호국장을 고등검찰관에서 검사장으로 직급 조정하고, 별정직 전산처리사 4인(6급상당 2인, 7급상당 2인)을 전산처리사 또는 별정직으로 직렬 조정
33	1986.10.11.	대통령령 제11978호	〃	• 법무실에 섭외법무심의관, 교정국에 보안제2과를 신설하고, 보안과를 보안제1과로 개편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34	1988.12. 2.	대통령령 제12553호	〃	• 교정국 시설과를 기획관리실 시설관리담당관으로 개편
35	1990.10.29.	대통령령 제13149호	법무부직제 개정	• 법무실 송무과를 송무심의관으로 개편, 섭외법무심의관을 국제법무심의관으로 명칭 변경
36	1991. 2. 1.	대통령령 제132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법무부·법무연수원·교도소·치료감호소·소년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합 조정
37	1991. 9.30.	대통령령 제13483호	〃	• 교화심의관, 경비과 폐지(4개 지방교정청 신설에 따름), 출입국기획과 신설,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 폐지 및 입국심사과를 출입국심사과로 변경 • 서울·대구·대전·광주 지방 교정청 신설 • 영등포·수원·부산·마산교도소와 인천구치소에 분류심사과 신설 • 광주소년감별소 신설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산실 설치
38	1992. 2.15.	대통령령 제13588호	〃	• 법무실에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관계법령 정비를 위하여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신설
39	1992. 8.31.	대통령령 제13720호	〃	• 법무시설 공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기획담당관과 건설관리담당관으로 확대개편 • 청송제2교도소 신설 • 서울남부·의정부·울산보호관찰지소 신설 • 서울외국인수용소와 의정부·대산출장소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국에 조사2과, 김포·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과 신설
40	1993. 3.30.	대통령령 제1387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5항)	•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명칭변경 •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명칭변경
41	1993. 6.28.	대통령령 제1391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검사정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 법무부 기획관리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보호국장·교정국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법무실·검찰국·보호국(소년과 제외) 각 과장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법무실의법무·송무·국제법무심의관을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보함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기획과장 및 교관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연구위원 중 3인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 또는 검사"로 보함
42	1994. 1.17.	대통령령 제141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중간정책관리계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주요계장의 직위를 4급으로도 보할 수 있게 함(운영지원과 1, 기획예산담당관실 1, 교정과 1, 출입국기획과 1)
43	1994. 2. 5.	대통령령 제14157호	〃	• 공보관을 이사관·부이사관 2·3급 별정직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게 함
				• 보호국의 검찰사무직중 조사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도직), 관찰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호관찰직)을 복수직화
				• 울산구치소 신설
44	1994. 4.30.	대통령령 제142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실의 송무심의관을 송무과로 개편
				•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중 검사연구위원(3인)을 폐지하고 그 중 검사장 1인을 감축하며, 나머지 검사 2인은 교관으로 활용함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설치
45	1994. 9.17.	대통령령 제14383호	〃	• UR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법령정비의 지원 및 통상법률 관계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제법무심의관실에 검사 2인을 증원
46	1995. 3.23.	대통령령 제14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소년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	•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명칭 변경
47	1995. 4.12.	대통령령 제1458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보강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주요 과장 및 과장급 담당관의 직위를 3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4급 정원 중 3인(운영지원과장·교정과장·출입국기획과장)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 주요 기획사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을 확대하여 5급 정원 중 11인(공보관실·행정관리담당관실·시설기획담당관실·건설관리담당관실·법무과·검찰제1과·검찰제2과·보호과·소년과·보안제1과·출입국심사과)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48	1995. 7. 8.	대통령령 제147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출입국심사과를 입국심사과로 개편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구·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직급 하향조정(별정직 3급상당→별정직 4급상당)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 3과 신설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49	1995.10.19.	대통령령 제1479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교정국장의 직급을 검사장에서 검사장·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으로 복수직화
50	1996. 6.29.	대통령령 제15064호	〃	• 보호국의 소년과를 소년제1과와 소년제2과로 개편 • 서울지방교정청에 수원구치소 및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를 각각 신설 • 대전보호관찰소에 홍성지소를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과장 및 주요계장의 복수직급화 계획에 따라 본부의 4급정원 3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10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하고 소속기관의 4급정원 6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22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 중앙행정기관의 실무기획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6급 및 7급정원 11인을 감축하여 그중 9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
51	1997. 3.20.	대통령령 제15305호	〃	• 기능직공무원 25인 감축
52	1997. 8.13.	대통령령 제15459호	〃	• 소년제1과장 직급을 3·4급 복수직급화 • 대전교도소강경구치지소를 신설하고, 인천구치소 부소장을 신설 • 대구보호관찰소에 김천지소, 대전·수원보호관찰소에 사무과·관호과 신설 •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장소로 축소개편하고,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며, 대구·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심사과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과를 두고,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보호관찰, 계호, 출입국심사인력 등 222인 증원
53	1997. 8.13.	대통령령 제15462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실무·기획인력조정 및 복수직급화로 일부 직급의 정원 조정 (6·7급 26인 감, 5급 9인 증)
54	1997. 8.23.	대통령령 제15467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 4인(1급 2, 2급 2) 신설
55	1998. 2.28.	대통령령 제15711호 법무부령 제45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정	• 각부처의 조직운영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따라 기존 직제의 전문개정과 함께 법무부와 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법무부령)을 제정 • 시설기획담당관실과 건설관리담당관실을 통합하여 시설관리담당관실로 개편(정원 34인 → 26인)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실(정원 7인) 신설
				• 국제법무심의관실을 국제법무과로 명칭변경하고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변경
				• 본부 기구개편에 따라 정원 13인 감축
				• 법무연수원 자료과를 폐지하고 분장사무를 기획과로 이관(정원 7인 감축)
				•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의 관리국·교화국 폐지
56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5호 법무부령 제4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에 상임연구위원 1인 증원(2급)
57	1998. 7. 1.	법무부령 제462호	〃	• 서울소년원 대덕지원 신설
58	1998.12. 7.	법무부령 제4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교정국의 교정행정 전산업무를 보안제1과 분장사무에서 교정과 분장사무로 조정
				• 출입국관리국 기록관리과를 출국심사과로 명칭변경
59	1998.12.31.	대통령령 제1600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연수원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기획부로 통합
		법무부령 제47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대구구치소 신설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조정
60	1999. 5.24.	대통령령 제163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법무부령 제48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비상계획담당관 폐지
				• 소년분류심사원의 관호과를 교무과로 명칭변경
61	1999.12. 2.	법무부령 제488호	〃	• 출국심사과를 출국관리과로 명칭변경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 출장소 신설
62	2000. 2.28.	대통령령 제1672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규정	• 개방형임용제 실시를 위하여 교정심의관·교정연수부장·천안개방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63	2000. 3. 7.	대통령령 제167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정보화담당관실 신설 및 보호국 조사과 폐지
		법무부령 제49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보호관찰소 서울서부·수원성남·부산서부지소 신설
				• 대덕지원을 대덕소년원으로 승격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64	2000.11.20.	대통령령 제1700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서울외국인보호소를 화성으로 이전,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명칭 변경
		법무부령 제49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기획검사 설치 근거규정 신설
65	2001. 3.29.	대통령령 제1716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명칭 변경
		법무부령 제50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로 명칭 변경
66	2001. 4.23.	대통령령 제172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실에 법조인력정책과 신설
	2001. 4.24.	법무부령 제50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대구·대전·안양·광주·전주·마산·의정부·춘천교도소에출정과 신설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신설
67	2001. 9.29.	대통령령 제1737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신설
	2001.10.10.	법무부령 제50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수원교도소를 여주로 이전하고, 여주교도소로 명칭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신설
68	2002. 3.25.	대통령령 제1754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
				•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2002. 3.30.	법무부령 제51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에 따른 45인 증원 및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 본부 공보관실 소속 촬영기사의 직급을 7급 상당에서 6급상당으로 상향조정
69	2002. 5.27. 2002. 6. 8.	대통령령 제17610호 법무부령 제52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서울소년원에 창업지원과 신설 •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실무인력 50인 증원 •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인력 16인 증원 • 광주 및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 4급)
70	2002. 7.10. 2002. 8. 9.	대통령령 제17664호 법무부령 제5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안산의료소년원 신설 (2002. 10. 1.부)
				• 청주여자교도소를 확장함에 따라 계호인력 6인 증원
71	2002. 8.16. 2002. 8.16.	대통령령 제17715호 법무부령 제52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검사→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
				• 본부 교화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로 정함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72	2002.11. 9.	법무부령 제527호	〃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신설
73	2003. 5.15.	법무부령 제530호	〃	• 장관정책보좌관 신설 –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인 –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교정감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인
74	2003. 7.25. 2003. 8.22.	대통령령 제18054호 법무부령 제5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 신설 및 이에 따른 소요인력 6인 증원
75	2003. 9.29.	대통령령 제1810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 개방형직위 중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를 출입국관리국장 직위로 대체 지정하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직업훈련교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76	2003.12. 3.	대통령령 제18148호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2004. 1. 1.부)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신설 • 출입국심사업무에 필요한 인원 43인 증원
77	2003.12.30. 2003.12.31.	대통령령 제18195호 법무부령 제544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충주구치소와 포항구치소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20인 증원 • 창원소년원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5인 증원
78	2004. 1.29. 2004. 2. 9.	대통령령 제18252호 법무부령 제54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치료감호소에 약물중독재활센터 신설 및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4인 증원 • 보호관찰전담인력 45인 및 구치소·교도소의 호송·계호인력 100인 증원
79	2004. 2. 9. 2004. 2.28.	대통령령 제18275호 법무부령 제54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법무부 본부의 정책·기획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부의 6·7급 정원 중 13명을 5급으로 조정 • 법무부 소속기관의 집행기능 강화를 위하여 7급 정원 중 58명을 6급으로 조정
80	2004. 3.22. 2004. 3.22.	대통령령 제18328호 법무부령 제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4개 중앙행정기관 등에 업무혁신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 밑에 행정관리담당관을 없애는 대신 인사·조직 및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혁신인사담당관을 신설하고, 혁신인사담당관의 분장업무를 정함
81	2004. 5.24. 2004. 6.12.	대통령령 제18399호 법무부령 제55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청주외국인보호소 및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59인 증원 • 계호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원된 실무인력 92인 증원
82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감찰관을 신설하고, 일부보호감호소 및 소년교도소의 명칭을 변경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상사실무인력 및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하여 외국인고용 허가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인력 보강
83	2005. 3. 2. 2005. 3.24.	대통령령 제18729호 법무부령 제56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록연구사 6급 1인 증원 • 정책·기획업무 중심으로 실무인력구조를 재조정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범위 안에서 직급조정 - 본부 : 5급 8명 증원, 6급 6명, 7급 2명 감축 - 소속기관 : 6급 49명 증원, 7급 49명 감축
84	2005. 4.15. 2005. 5. 2.	대통령령 제18876호 법무부령 제5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설치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 • 정책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신설하며, 홍보관리관(구 공보관) 설치 및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을 설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기획관실로 명칭변경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총 3인(4급 1인, 5급 2인)을 증원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2005. 7. 4.부)
85	2005. 7. 4.	법무부령 제57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150인)(2005. 8. 15.)
86	2005. 8.12. 2005. 8.12.	대통령령 제18997호 법무부령 제57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05년도 소요정원 3인(건축주사 1, 전산주사 1, 전산주사보 1) 및 검사적격 심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2인(검사 1, 전산주사 1) 증원하고 공무원임용령중 일부개정(2005. 5. 6.)으로 "부이사관", "기술서기관"으로 직군·직렬 통합 (검찰사무직 제외) • 포항교도소 신설, 순천교도소 소록도 지소 기관 폐지
87	2006. 2. 3. 2006. 2. 3.	대통령령 제19316호 법무부령 제58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국 밑에 국적난민과와 외국적동포과를 신설하여 국제적 수준의 난민인정 업무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국의 분장사무에 이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정부출장소를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중 279인(3급 또는 4급 1, 4급 2, 5급 13, 6급 38, 7급 50, 8급 83, 9급 74, 기능직 18)과 외국국적 동포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인력 6인(4급 1, 5급 2, 6급 2, 7급 1)을 증원하는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
88	2006. 5. 3. 2006. 5. 3.	대통령령 제19465호 법무부령 제58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호·지원과 법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법무실의 인권과를 확대 개편하여 인권국에 인권정책과등 3개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소요인력 13인(2·3급 1, 3·4급 1, 3·4급 또는 검사 1, 4·5급 2, 4·5급 또는 검사 1, 5급 3, 6급 2, 7급 1, 기능10급 1)을 증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 폭주로 야기되는 외국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출입국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종로출장소를 신설하는 등 민원처리 실무인력 30인(5급 1, 6급 5, 7급 8, 8급 9, 9급 6, 기능10급 1)을 증원
89	2006. 6.12.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8호 법무부령 제58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경비교도대원 감축에 따른 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교정공무원 821인(4급 4, 5급 4, 6급 85, 7급 127, 8급 303, 9급 298)을 증원하고, 7급 정원 42인을 6급으로, 8급 정원 42인을 7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 • 법무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담당 인력 6인(5급 4, 7급 2)을 증원하려는 것임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에 성과관리팀을 신설하고, 교정국 일부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로 하는 등 4개 구치지소의 명칭을 지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0	2006. 6.30.	대통령령 제1959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국장급 직위의 계급을 삭제하고, 실·국장급 공무원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91	2006. 8. 3.	법무부령 제59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공포, 2006. 7. 1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류등급 부여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의 개방형 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92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정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로 정원을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총정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93	2007. 2. 1.	대통령령 제19860호	〃	• 장관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책보좌관을 일반직·별정직공무원보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고도화 및 정보보호와 보안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정보화담당부서의 기능 강화 및 필요인력 증원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가 개선·보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94	2007. 5. 4. 2007. 5.10.	대통령령 제20048호 법무부령 제61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과 외국인정책에 관한 업무 총괄 수행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35인(고위공무원단 2, 3·4급 1, 4급 3, 4·5급 2, 5급 8, 6급 11, 7급 5, 기능직 3)을 증원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 전담인력 28인(5급 2, 6급 6, 7급 7, 8급 8, 9급 5)을 증원하고 감사관을 폐지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감찰·감사조직을 통합하여, 감찰관 밑에 감찰기획관 및 감사기획관을 두며, 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성과기획조정관을 설치하고, 성과기획조정관 밑에 고객만족팀을 신설하며,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소속과 명칭을 인권국 및 여성정책과로 바꾸며, 2007년도 소요정원으로 인정된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인력 400인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관리인력 등 33인을 직제에 반영하며 교정기관의 수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청송교도소와 광주교도소의 보건의료과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상호 조정하려는 것임
95	2007. 7.23.	대통령령 제20180호 법무부령 제61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국의 업무조정과 기관폐지 및 신설 및 인력재배치(광주소년분류심사원 등 7개 소년보호기관을 폐지하고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남는 인력 213명 중 212명은 교정, 보호관찰 등에 재배정하고 1명은 감축) 등을 반영하는 한편, '07년도 3/4분기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176명(보호 127, 교정 25, 출입국 16, 감사 8명)을 반영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96	2007. 8.22. 2007. 9.13.	대통령령 제20236호 법무부령 제61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대변인제 도입에 따라 홍보관리관이 대변인을 겸하고 대변인의 기능 규정
97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0호 법무부령 제62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수용자의 인권신장, 새로운 교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 교정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정사무에 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개편하고 필요 인력을 소속기관 정원에서 법무부로 재배치(고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6, 6급 9, 7급 6, 기능10급 3) 하는 한편, 「상법」의 개정으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실장 및 법무심의관의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
98	2008. 2.29. 2008. 3. 3.	대통령령 제20674호 법무부령 제63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정책홍보관리관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 홍보관리관을 폐지하고 장관 직속 기구인 대변인으로 개편하고, 성과기획조정관을 폐지하고, 기획조정관을 신설하며, 정책홍보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총무과는 운영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 • 정책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장관 직속 대변인 밑으로 재편하고, 재정기획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혁신인사기획관은 창의혁신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성과관리팀과 고객만족팀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창의혁신담당관실로 이관 •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질서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총괄·추진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4급·검사 1, 5급 2, 6급 2, 기능직 1)을 신설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정책관을 정책단으로, 각 과를 팀으로 변경하고,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하는 한편, 법무실·보호국·인권국·교정국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아래의 일부 부서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 중 보호직 1명(4급)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의 수를 7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천안개방교도소장,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치료감호소장,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서울소년원 창업지원과장)에서 4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안정책단장, 치료감호소장)로 조정 • 인권옹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쉽도록 일반직(3·4급)으로 되어 있는 인권정책과장의 직급을 일반직(3·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기획관(3·4급)을 폐지한 후 정책기획평가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4급 정원 1명은 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하여 신설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정원으로 활용하되, 서기관 또는 교정관 정원 1명을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변경함 • 공무원 4명(7급 1, 기능10급 3)을 감축
99	2008. 8. 7.	대통령령 제20954호 법무부령 제64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도소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투경찰·의무경찰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정규인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교정공무원 118명(7급 24, 8급 47, 9급 47)을 증원하는 한편, 교정본부장의 분장사무 중 수형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교화팀장의 분장사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설된 수형자 사회복귀지원 관련 사무를 사회복귀지원팀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교정본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인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하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조정
100	2008.10.22.	법무부령 제6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직 5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5급으로, 기술직 6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6급으로 각각 복수직화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
10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9호 법무부령 제65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재배정 •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인권국의 구조지원과의 명칭을 인권지원과로 변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기능을 검찰국 형사기획과에서 인권국 인권지원과로 이관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위치추적관제센터 설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에 따른 결정전조사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법률」에 따른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호관찰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인권국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보직범위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인권정책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교정기획팀장 수행기능 중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기능을 수용기획팀장에게 이관 • 서울지방교정청에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산관리과를 신설 • 서울소년원의 하부조직 중 기능1이관 등에 따라 업무가 축소된 창업지원과를 폐지한 후 소년보호교육에 필요한 컨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정보관리과 신설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해소를 위해 안양·영월·공주·제천·상주·거창·해남 지역에 7개의 보호관찰지소를 신설 • 감찰기능 수행강화를 위해 정원 4명을 소속기관에서 본부 감찰담당관실로 이체, 치료감호소의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원 1명을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
102	2009. 1.29.	법무부령 제65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1209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인권국장의 보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인권국장 직위를 자율 직위로 변경,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대체
103	2009. 3.18. 2009. 3.19.	대통령령 제21350호 법무부령 제6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168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 관련 규정 정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이 가능한 경우를 가석방·임시퇴원의 취소결정, 보호관찰 가해제의 취소결정 등으로 구체화
104	2009. 5.25.	대통령령 제21502호 법무부령 제66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을 법질서담당관으로,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담당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법조인력정책과를 법조인력과로 명칭 변경 • 공공형사과를 공안기획과로 명칭 변경 • 사회보호정책과를 보호법제과로, 소년보호과를 소년과로, 법문화진흥팀을 법교육팀으로 각각 명칭 변경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여성아동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인권정책과, 인권지원과를 인권구조과로, 인권옹호과를 인권조사과로 변경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팀을 과로 변경, 교육교화팀 폐지, 기능을 사회복귀과로 이관, 경비정책팀 폐지, 보안과로 기능 이관, 외국적 동포팀 폐지, 기능을 사회통합과로 이관, 국제이민협력팀 폐지, 기능을 출입국 심사과로 이관, 급증하는 국적민원 업무적체 해소를 위한 실무인력 5명(5급 1, 6급 2, 7급 2) 증원 •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소장으로 하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신설 하부조직으로 총무과 등 8개과를 설치, 운영인력 110명(3·4급 1, 5급 8, 6급 16, 7급 18, 8급 45, 9급 15, 기능 7) 증원 • 8호 처분 여자 소년원생의 교육 내실화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를 위해 청주소년원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10명(6급 4, 7급 2, 8급 4) 증원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 해소 및 현장 밀착 지도·감독을 위해 영덕·밀양·남원보호관찰지소를 신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 전담 수행인력 61명(6급 19, 7급 21, 8급 21) 증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7명(5급 1, 6급 2, 7급 2, 8급 2) 증원, 출입국관리기관의 일부 부서명칭의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동향조사인력 40명(6급 7, 7급 20, 8급 13)과 출입국심사인력 37명(7급 14, 8급 16, 9급 7) 증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에 따라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게 변경
105	2009. 7. 6.	법무부령 제67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부서명칭을 핵심업무가 부각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명칭으로 변경, 지방교정청의 5급 과장 직위와 소속기관의 3·4급 또는 4·5급 과장 직위를 상호 이체 •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1통역지원을 위해 천안소년교도소에 국제협력과를 신설 •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를 폐지 천안소년교도소에 통합, 중복인력을 전환·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현장밀착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임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06	2009. 7.17.	법무부령 제67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삭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
107	2009.12.31.	대통령령 제21946호 법무부령 제68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영월·해남교도소, 밀양구치소 등 3개 교정시설의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134명과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인력 235명, 국가송무시스템 전담인력 3명 등 총 372명을 증원 •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5명을 일반직공무원 45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직공무원 직렬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
108	2010. 8. 2.	대통령령 제22313호 법무부령 제71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 등 기구 신설과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 집행인력 55명 등 총 109명 증원
109	2010.10.18.	대통령령 제22453호 법무부령 제7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과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인력 18명, 영월·해남교도소 및 밀양구치소 정상 운영을 위한 실무인력 78명, 출입국 안산출장소 및 천안출장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8명 등 총 339명 증원
110	2011. 5. 4. 2011. 5.11.	대통령령 제22917호 법무부령 제74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질서담당관실(기획조정실)과 법교육팀(범죄예방정책국) 통폐합, 법질서선진화과(범죄예방정책국) 신설(9. 1. 시행) •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과·고객업무 분장, 성과고객팀 신설(9. 1. 시행) • 영등포구치소·영등포교도소→서울남부구치소·서울남부교도소로 명칭변경 •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1. 4. 16.)에 따른 본부 보호관찰과 성폭력범 신상공개 인력 2명,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인력 16명,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확대에 따른 실무인력 21명,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수강명령 집행인력 7명, 구미·고양 등 2개 신설 출입국출장소 운영인력 4명 등 총 40명 증원 ※ 교정기관 전화상담원 10명 감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개방형직위에서 공모형직위로 변경, 본부 홍보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총액인건비제 시행(2014. 4. 30.까지)
111	2011. 5.30.	대통령령 제22937호 법무부령 제74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	•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인력 3명 증원
112	2011. 8.23.	법무부령 제74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4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4, 기능10급 44 → 9급 10, 8급 37, 7급 1)
113	2011.10.10. 2011.10.13.	대통령령 제23211호 법무부령 제75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인천공항출입국관리 사무소 서울역출장소 신설 및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김포출입국관리사무 소로 승격 •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를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로 명칭 변경 • 경북직업훈련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 분류심사과를 대구구치소 및 청주여자교도소 분류심사과로 이관(2012. 1. 1. 시행) • 법조인력과 변호사시험 시행인력 4명, 국제법무과 외국법자문사 관리인력 2명, 보호관찰과 성충동약물치료 집행 등 중간관리 인력 1명, 경비교도대 대체 계호 인력 235명, 교정기관 의료처우 개선인력 16명, 성폭력 범죄자 치료·재활 인력 6명, 신설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운영인력 9명,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전담인력 4명, 신설 서울역출입국출장소 운영인력 1명, 김포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에 따른 운영 및 심사인력 5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 심사 인력 3명 등 총 286명 증원 • 천안개방교도소장 : 고위공무원 → 4급,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 3·4급 → 고위공무원, 창원교도소장 : 4급 → 3·4급으로 직급 조정(2012. 1. 1. 시행) • 본부 대변인실 "온라인대변인" 지정 근거 신설
114	2012. 3.26. 2012. 3.30.	대통령령 제23675호 법무부령 제7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	• 서울서부·북부보호관찰지소 보호관찰소 승격, 울산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개 신설 및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조사과 신설 • 재정업무 담당인력 2명, 전문 감사인력 1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및 관리인력 1명, 교화방송센터 운영 인력 1명, 남북법률통합 실질화사업 추진인력 2명 등 7명 증원 • 조사인력 10명, 전자감독 확대 시행인력 11명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시설 인력 24명 등 45명 증원 •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인력 17명, 4부제 개편 소요 인력 28명, 교정직 직급구조 개선 인력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2명 등 47명 증원 • 지문관리점담 운영인력 6명, 울산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에 따른 필요 인력 3명, 복수국적 허용 심사인력 2명, 청주공항 활성화에 따른 심사인력 2명,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심사인력 21명 등 34명 증원 • 급여인력 감축 30명 감원 • 체류조사과 → 이민조사과로 명칭변경 • 사회통합과 → 이민통합과로 명칭변경
115	2012. 6.10. 2012. 7.12.	대통령령 제23857호 법무부령 제77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공항 심사인력 10명 증원
116	2012. 9.10. 2012.10.22.	대통령령 제24116호 법무부령 제7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전자발찌 비상출동 전담인력 43명, 성폭력사범 지도감독 인력 19명, 재범방지를 위한 밀착 보호관찰 인력 75명,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 증원
117	2013. 1. 8.	법무부령 제78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2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28 → 7급 4, 8급 17, 9급 7)
118	2013. 3.23. 2013. 3.23.	대통령령 제24115호 법무부령 제78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획조정관, 비상계획관 →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성과고객팀 폐지 • 정보팀 → 이민정보과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 폐지 및 총무과 신설 • 공통지원부서 정원 6명 감축(5급 1, 6급 2, 7급 1, 8급 1, 기능9급 1)
119	2013. 5.22. 2013. 6.12.	대통령령 제24537호 법무부령 제79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를 국적과와 난민과로 분리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를 경기도 과천시로 변경 •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 등 본부 정원 15명 및 소속기관 정원 125명 증원
120	2013. 9.17. 2013.10. 1.	대통령령 제24732호 법무부령 제80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관리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여성아동인권과 신설 • 치료감호소 및 소년원 등의 하부조직 중 '서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명칭 변경 • 춘천·전주·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신설 • 정부3.0 전담 및 협업과제 추진 인력 등 본부 정원 11명, 소속기관 정원 26명 증원 • 사무기능직렬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16 → 7급 6, 8급 7, 9급 3) • 안전행정부(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로 정원 이체(기능8급 △1)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21	2013.11. 5. 2013.11.13.	대통령령 제24829호 법무부령 제8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정읍교도소, 상주교도소 신설 • 정읍·상주교도소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정원 257명 증원
122	2013.12.12. 2013.12.12.	대통령령 제24949호 법무부령 제80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능직공무원 폐지 및 일반직 전환 : 1,098명(7급 25, 8급 56, 9급 1,017) • 계약직공무원 폐지 및 별정직 전환 : 2명 •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 160명 • 통합정원 감축 95명(5급 3, 6급 15, 7급 19, 8급 24, 9급 34) • 홍보 담당 인력 1명(4·5급) 증원
123	2014. 4. 1.	법무부령 제81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 →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개편 –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 통합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 • 총액인건비제 운영 출입국관리사무관(12명) 존속기한 연장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9급 9명 →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124	2014. 8.27. 2014. 9. 4.	대통령령 제25565호 법무부령 제8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부산·광주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부산동부·울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등 본부 7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49명 정원 증원 및 직급 상향 55명 • 별정직공무원 일반직(임기제) 전환 : 5명(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주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에 '청원군'을 삭제
125	2015. 1. 6. 2015. 1. 6.	대통령령 제25973호 법무부령 제83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신설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신설 • 출입국관리인력 22명, 치료감호소 의료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37명 증원 • 소속기관 정원 본부 이체(6급 1, 7급 1) •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2, 6급 11, 7급 14, 8급 25, 9급 33)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119명 → 행정직군 1명, 기술직군 118명 • 개방형직위 규정 정비(국장급 2개 직위 → 실·국장급 7개 직위 범위내)
126	2015. 2.26. 2015. 2.27.	대통령령 제26117호 법무부령 제83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설 : 대외연수과, 운영지원과 신설, 과명칭 변경(교정연수부 운영과 → 교정훈련과) 및 기구폐지(연구위원△1, 연구개발팀△1)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관리인력 6명, 용인분원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신설 인력 13명 등 소속기관 정원 19명 증원 • 직급 상향 : 본부 5 → 4·5급 2명, 소속기관 5 → 4·5급 1명, 7 → 6급 31명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과 → 사범과로 변경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규정 신설
127	2015. 5.26. 2015. 5.28.	대통령령 제26263호 법무부령 제84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 조사대 신설 • 개인정보보호 인력 1명, 특정범죄자관리과 인력 6명 등 본부 정원 7명 및 교정기관 의료인력 4명, 소년보호기관 호송인력 9명, 특정범죄자 관리 인력 23명 등 소속기관 정원 57명 증원 • 직급 상향 : 본부 5 → 4·5급 2명, 소속기관 4 → 3·4급 1명, 5 → 4·5급 4명, 6 → 5급 13명, 7 → 6급 31명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25명 → 행정직군 4명, 기술직군 21명 • 교정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8명 → 13명)
128	2015.11.30. 2015.12. 1.	대통령령 제26675호 법무부령 제85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 인력 본부 정원 1명 증원(4·5급) • 소년보호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 (의무직 5급 6명 → 7명) • 과장급 개방형직위 변경(난민과장, 치료감호소 신경과장·특수치료과장 → 군산교도소 의료과장,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사회정신과장)
129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2호 법무부령 제8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신설 • 국고손실 환수송무 인력 2명 등 본부 정원 2명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인력 2명, 공항 및 크루즈터미널 심사 인력 66명,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77명 증원 •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3, 6급 15, 7급 9, 8급 25, 9급 33)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32명→행정직군 2명, 기술직군 30명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 평택항만출장소, 오산출장소 → 평택출장소로 변경
130	2016. 2.29. 2016. 3. 2.	대통령령 제27001호 법무부령 제86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대전·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 관리과 신설 • 아동인권보호 전담 본부 정원 1명 및 치료감호소 병동 운영 인력 12명,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신설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21명 증원 • 기구 신설,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 상향 16명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31	2016. 5.10.	대통령령 제2713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2016. 5.10.	법무부령 제86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김해·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김해공항·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각각 명칭변경 • 감찰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교정기관 수용자 의료개선 인력 4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인력 4명 등 소속기관 정원 12명 증원
132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
	2016. 9. 5.	법무부령 제87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직업훈련과→보안과·사회복귀과로 통폐합 • 교정본부 및 교정기관 인력재배치 337명 • 직급상향 20명
133	2016.10.11.	대통령령 제2754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2016.10.11.	법무부령 제87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인력 12명,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인력 20명, 크루즈 심사 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69명 증원
134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통합정원 감축 85명 • 관리운영직군 28명 일반직 전환
	2016.12.30.	법무부령 제88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치료감호소 및 외국인보호소 직렬 조정 8명
135	2017. 2.28.	대통령령 제2787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민원 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보호관찰소 치료명령제도 운영 인력 37명,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30명 등 소속기관 정원 96명 증원 •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상향 28명 • 한시조직(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존속기한 연장(2017. 2. 28. → 2019. 2. 28., 2년) 및 정원 1명 감축
	2017. 2.28.	법무부령 제88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36	2017. 4.28.	법무부령 제90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 존속기한 연장(2017. 4. 30. → 2020. 4. 30., 3년)
137	2017. 5. 8.	대통령령 제2802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한시조직(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존속기한 연장(2017. 5. 31. → 2019. 5. 31., 2년)
	2017. 5.24.	법무부령 제9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38	2017. 6.20.	대통령령 제2811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소속기관 명칭 변경(성동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
	2017. 6.20.	법무부령 제90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및 급식운영 인력 26명, 소년원 정신질환 소년원생 교육 인력 15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심사 및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 인력 14명 등 소속기관 정원 79명 증원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급 상향 1명
139	2017. 8. 1. 2017. 8. 1.	대통령령 제28225호 법무부령 제90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3개 실국장 직위(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창조행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140	2017.10.20. 2017.10.20.	대통령령 제28396호 법무부령 제90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장급 이하 39개 직위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
141	2017.10.31. 2017.10.31.	대통령령 제28402호 법무부령 제91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2국, 입국재심2과, 심사13, 심사14, 심사15과 신설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기구 신설(1국 4과) 인력 198명 증원
142	2017.11.16.	법무부령 제91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임기제 보임범위 확대(23명 → 45명)
143	2017.12.29.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0호 법무부령 제91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한시조직(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존속기한 연장(2017. 12. 31. → 2019. 12. 31., 2년)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임기제 정원 1명 신설
144	2018. 2.20. 2018. 2.20.	대통령령 제28664호 법무부령 제91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신설기구 정규화(2개 부서) 및 존속기한(2개 부서) 연장 - 정규화 : 대전 및 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 존속기한 연장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2018. 2. 28. → 2020. 2. 28., 2년)
145	2018. 3.30. 2018. 3.30.	대통령령 제28736호 법무부령 제92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관찰과 신설 • 상사분야 법령 정비 등 본부 정원 11명 및 출입국기관 출입국심사 및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107명,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및 급식운영 인력 98명, 소년원생 교육·관리 인력 50명 등 소속기관 정원 263명 증원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법질서선진화과 → 보호정책과) • 소속기관 하부조직 개편 - 신설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호송과 - 폐지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연구개발과 • 한시조직(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존속기한 연장(2018. 4. 30. → 2020. 4. 30., 2년) 등
146	2018. 4. 9.	법무부령 제92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규정에 감찰관 직위를 추가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47	2018. 5. 8. 2018. 5.10.	대통령령 제28870호 법무부령 제92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속기관 명칭 변경 –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 → 6개 출입국·외국인청, 13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48	2018. 5.31.	법무부령 제92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규정에 법무심의관 직위를 추가
149	2018. 6.26. 2018. 6.26.	대통령령 제28994호 법무부령 제93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 – 보호법제과 → 치료처우과 – 소년과 → 소년보호과 • 신설기구 정규화(2개 부서) – 본부 심리치료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150	2018.10. 2. 2018.10. 4.	대통령령 제29207호 법무부령 제93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인력 30명 증원 • 신설기구 정규화(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보안관리과)
151	2018.12. 4. 2018.12. 4.	대통령령 제29326호 법무부령 제94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기관 출입국 체류센터 관리 인력 5명 증원
152	2018.12.3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42호 법무부령 제94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 인력 30명, 출입국기관 출입국심사 및 난민심사 인력 21명 등 소속기관 정원 51명 증원 • 검찰국 과장 2개 직위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일반직 또는 검사) • 평가대상 조직(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평가기간 연장(2019. 2. 28. → 2020. 2. 28., 1년) 등
153	2019. 2.26. 2019. 2.26.	대통령령 제29569호 법무부령 제94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청주소년원 의무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 신설 • 수용자 경계강화, 야간근무교대 개선 등을 위한 인력 375명 증원 • 평가대상 정원 320명 추가
154	2019. 5. 7. 2019. 5. 7.	대통령령 제29733호 법무부령 제95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및 신설기구 평가대상에 추가 •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기구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개방형직위 변경 –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 → 신경과장
155	2019. 7.29.	법무부령 제95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를 법무교육과로 명칭변경
156	2019. 8.13. 2019. 8.13.	대통령령 제30040호 법무부령 제95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 법무부 공안기획과를 공공형사과로 명칭변경 • 법무부 검찰국 내 공안사건 관련 업무내용 수정 • 소속기관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전자감독과로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규칙 일부개정	명칭변경 •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 폐지, 호송과 신설
157	2019.12.24. 2019.12.31.	대통령령 제30275호 법무부령 제96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를 신설기구평가대상에서 제외 • 교정기관 의무직 4급 공무원 정원축소 및 4·5급 공무원 정원 확대
158	2020. 2.25. 2020. 2.25.	대통령령 제30451호 법무부령 제96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인권침해 조사인력, 국제분쟁 대응인력 등 본부 인력 9명, 야간교대근무 인력 등 소속기관인력 519명 증원 • 강원북부교도소,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의정부·천안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신설, 소속기관 하부조직 14과 신설 등
159	2020. 4.28. 2020. 4.28.	대통령령 제30634호 법무부령 제97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 출입국 소속기관 총액인건비활용 관련 존속기한 3년 연장
160	2020. 6.30.	법무부령 제97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벤처형조직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신설
161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1호 법무부령 제9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송무심의관 신설, 행정소송과 이체 신설 •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 직제에 규정되어 있던 실·국장 보좌기관 관련 사항을 직제 시행규칙으로 이관
162	2020.10. 7.	대통령령 제31093호 법무부령 제98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제도 운영인력 8명 증원 • 20년 3분기 소요정원으로 야간교대근무 인력 등 80명 증원
163	2020.12.29. 2020.12.30.	대통령령 제31302호 법무부령 제99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년수용자 관리, 전자감독 관련 평가대상 정원 68명을 대상에서 제외 • 체류외국인 관련 평가대상 정원 90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 •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에 따라 '특정 범죄자 전자감독' 용어 삭제 • 부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하부조직 명칭 변경 교육지원과 → 법체험연수과 교육운영과 → 비행예방교육과
164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무 기타 → 사무와 그 밖의 수발 → 접수·발송 피복 및 급양 → 의복 및 음식 제증명 → 각종 증명 기타 형사정책 → 그 밖에 형사정책 수용관리·교정·교화·교화 기타 → 수용관리·교정·교화나 그 밖의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65	2021. 2.25	대통령령 제3147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인력 등 본부 인력 5명 증원
	2021. 3. 2..	법무부령 제100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전자감독 전담인력 등 196명 증원, 대전소년원 직급상향(5급2→4.5급2) • 치료감호소 하부 조직 명칭 변경 특수치료과 → 정신재활치료과 • 전자감독 대응 인력 101명 등 평가대상 정원 201명 추가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조사과 신설 •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체험연수과 평가대상에서 제외
166	2021. 7. 1.	법무부령 제101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사항 신설 • 벤처형조직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신설 • 벤처형조직 소관 이관 및 부서명칭 변경 기획조정실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데이터과 • 공업직 정원 조정 및 전환 배치
167	2021.11.23.	대통령령 제3213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대체복무요원 교육시설 운영·관리 인력 등 본부 정원 4명 증원
		법무부령 제101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야간교대인력 135명 등 소속기관 정원 137명 증원 • 검찰공무원 정원 4명 법무연수원으로 이체 • 교도소 등 교대근무인력 관련 평가대상 정원 156명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정규직화 • 대전소년원 하부 조직 명칭 변경 교무과 → 의료재활과
168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데이터분석 및 활용 강화를 위한 기획조정실장 분장사무 조정
		법무부령 제101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데이터 관련 업무 전담 본부 인력 2명 증원 • 법무부 본부 평가대상 조직(양성평등정책담당관) 평가기간 연장(2021. 12. 31. → 2023. 12. 31.) 등 • 소년수용자 관리 평가대상 정원 47명을 대상에서 제외 • 전자감독, 소년보호관찰 관련 평가대상 정원 99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 • 공업직 전환 배치

2.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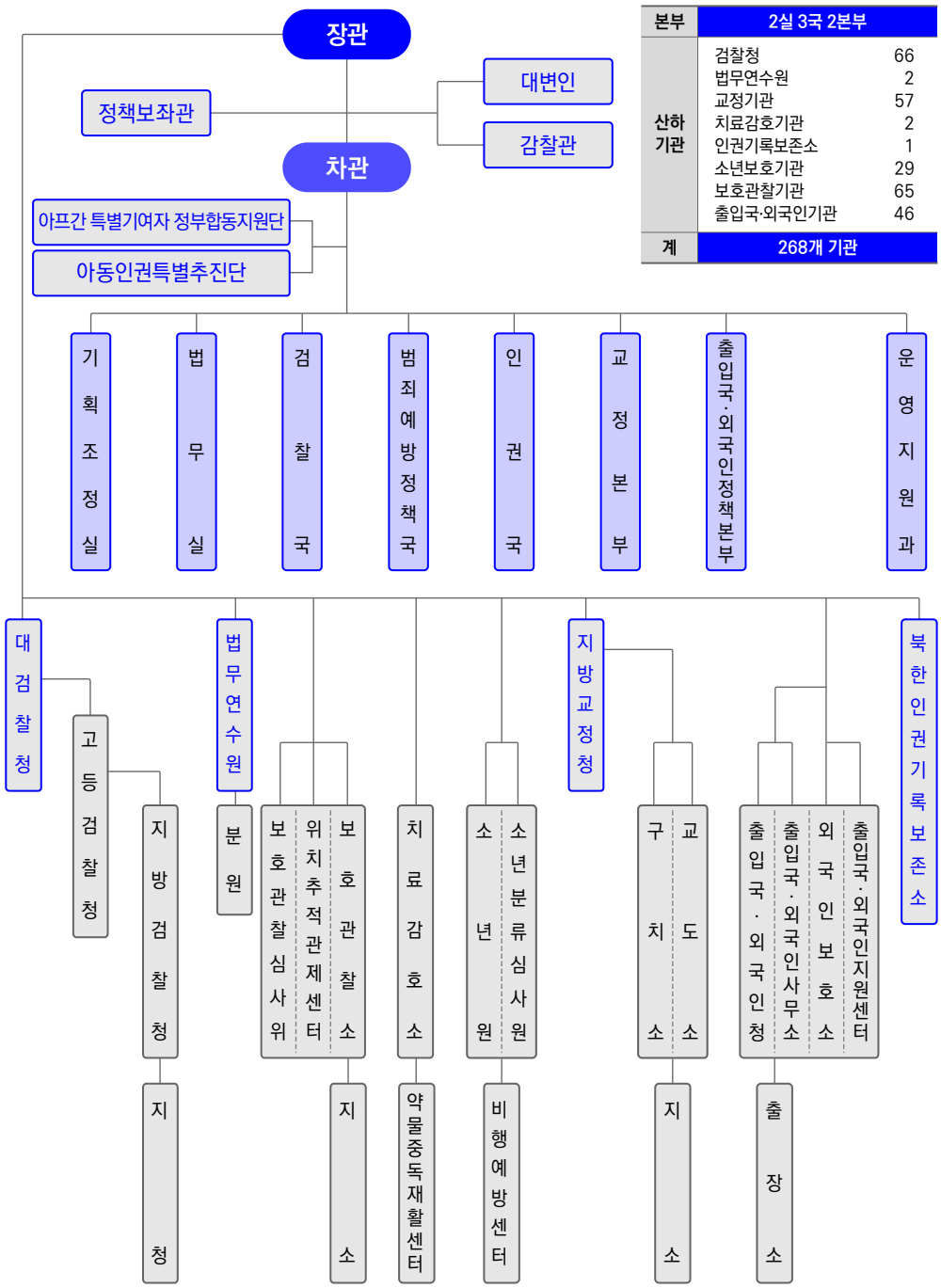

본부	2실 3국 2본부	
산하기관	검찰청	66
	법무연수원	2
	교정기관	57
	치료감호기관	2
	인권기록보존소	1
	소년보호기관	29
	보호관찰기관	65
	출입국·외국인기관	46
계	268개 기관	

3. 정원 변동표

구분 \ 연도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총 계		4,473	4,621 (+148)	4,569 (−52)	4569	4,569	4,504 (−65)	4,504	4,474 (−30)	4,556 (+82)	4,083 (−473)	3,862 (−221)	3,862	3,952 (+90)	4,403 (+451)	4,438 (+35)	4,872 (+434)	4,976 (+104)	5,197 (+221)	5,354 (+157)	6,440 (+1,086)	6,677 (+237)	6,905 (+228)
본 부			148	148	148	148	83 (−65)	83	53 (−30)	53	68 (+15)	68	68	68	170 (+102)	177 (+7)	199 (+22)	189 (−10)	189	232 (+43)	269 (+37)	314 (+45)	318 (+4)
검찰청	검 사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90 (+27)	190	190	190	190	190	220 (+30)	220	243 (+23)	243	300 (+57)	300	300	300
검찰청	일반직등	586	586	534 (−52)	534	534	534	534	534	589 (+55)	589	589	589	589	904 (+315)	903 (−1)	996 (+93)	1,089 (+93)	1,089	1,089	1,273 (+184)	1,338 (+65)	1,388 (+50)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3,372	3,372	3,372	3,372	3,372	형무소 3,372	3,372	3,372	3,372	2,914 (−458)	2,790 (−124)	2,790	2,840 (+50)	2,837 (−3)	2,836 (−1)	3,089 (+253)	3,089	3,229 (+140)	3,229	3,979 (+750)	4,066 (+87)	4,216 (+150)
소 년 원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96 (−30)	96	96	136 (+40)	164 (+28)	164	181 (+17)	181	250 (+69)	250	363 (+113)	397 (+34)	397
출입국관리 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49 (+49)	47 (−2)	59 (+12)	116 (+57)	118 (+2)	124 (+6)	148 (+24)
법무연수원		조선형무관학교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형무관학교 226	129 (−97)	129	129	138 (+9)	138	138	교도관학교 138	138	138	138	138	138

구분 \ 연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총 계	7,035 (+130)	7,568 (+533)	7,526 (−42)	8,024 (+498)	8,257 (+233)	8,556 (+299)	9,589 (+1,033)	9,938 (+349)	10,664 (+726)	10,995 (+331)	11,538 (+543)	13,210 (+1,672)	13,431 (+221)	13,561 (+130)	13,820 (+259)	13,967 (+147)	14,255 (+288)	15,216 (+961)	15,708 (+492)	18,847 (+3,139)
본 부	332 (+14)	256 (−76)	245 (−11)	248 (+3)	210 (−38)	291 (+81)	295 (+4)	295	350 (+55)	355 (+5)	360 (+5)	426 (+66)	420 (−6)	430 (+10)	429 (−1)	429	444 (+15)	444	444	444
검찰청 검 사	300	343 (+43)	343	360 (+17)	377 (+17)	377	417 (+40)	417	473 (+56)	473	473	467 (−6)	497 (+30)	527 (+30)	557 (+30)	587 (+30)	587	667 (+80)	707 (+40)	747 (+40)
검찰청 일반직등	1,388	1,457 (+69)	1,457	1,473 (+16)	1,539 (+66)	1,565 (+26)	1,565	1,866 (+301)	2,024 (+158)	2,161 (+137)	2,309 (+148)	2,996 (+687)	3,165 (+169)	3,266 (+101)	3,372 (+106)	3,489 (+117)	3,647 (+158)	3,904 (+257)	4,067 (+163)	4,886 (+819)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4,312 (+96)	4,772 (+460)	4,753 (−19)	5,179 (+426)	5,292 (+113)	5,554 (+262)	6,474 (+920)	6,474	6,776 (+302)	6,921 (+145)	7,185 (+264)	8,076 (+891)	8,076	8,074 (−2)	8,092 (+18)	8,092	8,092	8,447 (+355)	8,574 (+127)	10,780 (+2,206)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397	427 (+30)	425 (−2)	425	484 (+59)	484	484	532 (+48)	625 (+93)	652 (+27)	676 (+24)	684 (+8)	695 (+11)	695	749 (+54)	749	769 (+20)	998 (+229) 치료감호소 195포함	998	1,047 (+49)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168 (+20)	175 (+7)	166 (−9)	202 (+36)	218 (+16)	218	279 (+61)	279	340 (+61)	357 (+17)	455 (+98)	475 (+20)	492 (+17)	479 (−13)	531 (+52)	531	581 (+50)	621 (+40)	783 (+162)	795 (+12)
법무연수원	138	138	137 (−1)	137	137	67 (−70)	75 (+8)	75	76 (+1)	76	80 (+4)	86 (+6)	86	90 (+4)	90	90	135 (+45)	135	135	148 (+13)

구분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계	20,270 (+1,423)	21,211 (+941)	21,795 (+584)	21,931 (+136)	22,213 (+282)	22,603 (+390)	23,161 (+558)	23,427 (+266)	23,436 (+9)	23,360 (−76)	23,736 (+376)	23,981 (+245)	24,376 (+395)	24,788 (+412)	25,334 (+546)	25,809 (+475)	27,137 (+1,328)	28,067 (+930)	28,262 (+195)	29,091 (+829)
본 부	459 (+15)	467 (+8)	498 (+31)	491 (−7)	479 (−12)	479	488 (+9)	473 (−15)	455 (−18)	446 (−9)	436 (−10)	453 (+17)	453	455 (+2)	455	479 (+24)	507 (+28)	594 (+87)	590 (−4)	605 (+15)
검찰청 검 사	787 (+40)	827 (+40)	867 (+40)	907 (+40)	947 (+40)	987 (+40)	1,037 (+50)	1,087 (+50)	1,137 (+50)	1,207 (+70)	1,287 (+80)	1,287	1,357 (+70)	1,427 (+70)	1,507 (+80)	1,587 (+80)	1,627 (+40)	1667 (+40)	1,752 (+85)	1,847 (+95)
검찰청 일반직등	5,288 (+402)	5,823 (+535)	5,984 (+161)	6,095 (+111)	6,222 (+127)	6,424 (+202)	6,575 (+151)	6,607 (+32)	6,612 (+5)	6,520 (−92)	6,689 (+169)	6,715 (+26)	6,873 (+158)	7,029 (+156)	7,175 (+146)	7,336 (+161)	7,468 (+132)	7,685 (+217)	7,681 (−4)	7,769 (+88)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11,254 (+474)	11,515 (+261)	11,784 (+269)	11,778 (−6)	11,898 (+120)	11,901 (+3)	12,165 (+264)	12,216 (+51)	12,287 (+71)	12,245 (−42)	12,245	12,308 (+63)	12,388 (+80)	12,508 (+120)	12,700 (+192)	12,751 (+51)	13,748 (+997)	14,162 (+414)	14,280 (+118)	14,757 (+477)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1,185 (+138)	1,278 (+93)	1,293 (+15)	1,293	1,293	1,354 (+61)	1,354	1,396 (+42)	1,380 (−16)	1,368 (−12)	1,371 (+3)	1,371	1,392 (+21)	1,407 (+15)	1,431 (+24)	1,299 (−132)	1,298 (−1)	1,092 (−206)	1,092	1,102 (+10)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870 (+75)	870	930 (+60)	929 (−1)	937 (+8)	1,006 (+69)	1,062 (+56)	1,099 (+37)	1,060 (−39)	1,068 (+8)	1,154 (+86)	1,266 (+112)	1,282 (+16)	1,331 (+49)	1,390 (+59)	1,476 (+86)	1,551 (+75)	1,619 (+68)	1,619	1,702 (+83)
법무연수원	148	148	150 (+2)	149 (−1)	147 (−2)	147	156 (+9)	156	99 (−57)	99	99	99	99	99	99	99	105 (+6)	105	105	105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279 (+279)	283 (+4)	289 (+6)	289	290 (+1)	305 (+15)	324 (+19)	393 (+69)	406 (+13)	407 (+1)	455 (+48)	482 (+27)	532 (+50)	532	577 (+45)	782 (+205)	833 (+51)	1,143 (+310)	1,143	1,204 (+61)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29,738 (+647)	30,077 (+339)	30,620 (+543)	30,883 (+263)	30,968 (+85)	31,099 (+131)	31,513 (+414)	32,070 (+557)	32,607 (+537)	33,076 (+469)	33,741 (+665)	34,133 (+392)
본 부		611 (+6)	623 (+12)	630 (+7)	647 (+17)	654 (+7)	656 (+2)	666 (+10)	668 (+2)	679 (+11)	697 (+18)	752 (+55)	763 (+11)
검찰청	검 사	1,942 (+95)	1,942	1,942	1,942	1,942	2,032 (+90)	2,112 (+80)	2,182 (+70)	2,252 (+70)	2,292 (+40)	2,292	2,292
	일반직등	7,873 (+104)	7,883 (+10)	7,941 (+58)	7,870 (−71)	7,899 (+29)	7,910 (+11)	8,224 (+314)	8,337 (+113)	8,444 (+107)	8,493 (+49)	8,482 (−11)	8,480 (−2)
교 도 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15,088 (+331)	15,345 (+257)	15,623 (+278)	15,839 (+216)	15,850 (+11)	15,756 (−94)	15,701 (−55)	15,732 (+31)	15,860 (+128)	15,963 (+103)	16,338 (+375)	16,504 (+166)
소 년 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1,122 (+20)	1,128 (+6)	1,148 (+20)	1,146 (−2)	1,169 (+23)	1,181 (+12)	1,196 (+15)	1,238 (+42)	1,291 (+53)	1,339 (+48)	1,417 (+78)	1,425 (+8)
출입국외국인기관 (외국인보호소 포함)		1,738 (+36)	1,751 (+13)	1,789 (+38)	1,800 (+11)	1,809 (+9)	1,903 (+94)	1,946 (+43)	2,197 (+251)	2,330 (+133)	2,439 (+109)	2,551 (+112)	2,568 (+17)
법 무 연 수 원		105	105	105	105	107 (+2)	124 (+17)	131 (+7)	130 (−1)	130	130	130	134 (+4)
보 호 관 찰 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1,259 (+55)	1,300 (+41)	1,442 (+142)	1,534 (+92)	1,538 (+4)	1,537 (−1)	1,525 (−12)	1,574 (+49)	1,609 (+35)	1,711 (+102)	1,767 (+56)	1,955 (+188)
북 한 인 권 기 록 보 존 소								12 (+12)	12	12	12	12	12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1. 훈 령

번호	일자	제 목	주요내용	비 고
1338	1. 27.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면접관 선발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원격지 근무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적과
1339	2. 1.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 난민위원회 위원장이 심의 안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난민심의과
1340	2. 2.	보호직 공무원의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자격 정의 및 직무 • 강사 인정 심의위원회 설치 • 강사 자격인정 절차 • 강사 자격 취득자 우대 및 관리방안	보호관찰과
1341	2. 21.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중대아동학대사건 실태조사,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아동인권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개선 등 아동인권 중심의 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신설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1342	2. 25.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출입·체류하는 한 주민, 해외동포, 외국인이 범한 형사사건(변사사건 포함) 관련 업무 분장 및 사건처리절차 규정	공공형사과
1344	2. 26.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 자비구매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의 공급범위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정하도록 규정 신설 • 자비구매물품 자문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상향하고 자비구매물품 주요내용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 신설 • 자비구매물품 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범위 확대	교정기획과
1345	2. 26.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시행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 기준 마련 등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1346	3. 8.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에 따라 공무원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운영사항 일부 항목 신설, 시상 및 특전 부상 지급액 조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	혁신행정담당관실
1347	3. 23.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특별시민감사관 위촉 근거 마련 • 특별시민감사관 구성 및 임기 • 특별시민감사관 위촉장 수여 근거 마련	감사담당관실
1348	3. 29.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비공개)	•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운영지원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349	3. 29.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 난민위원회 위원장이 난민위원 및 난민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분과위원회에서 「난민법」 제2조제3호의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붙여 상정한 안건은 난민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에서 제외	난민심의과
1351	4. 1.	법무부 인권모니터링 운영 규정	• 인권 증진을 위하여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계획 또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정책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및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인권모니터링 운영 규정 신설	인권정책과
1353	4. 7.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위치가 변경된 조문 내용을 이 규정에 반영하고, 고발의 예외를 정한 일부 규정이 「출입국관리법」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삭제	이민조사과
1354	4. 27.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코로나19 현안에 대하여 책임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정시설 감염병과 관련한 종합상황 관리 및 감염차단 및 확산방지 대응 등을 위한 임시조직 신설에 관한 사항을 제정	교정기획과
1355	4. 27.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 감찰담당관실을 비롯한 관련부서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 취득 제한을 통해 주식 관련 비위 발생 사전 예방	감찰담당관실
1357	5. 25.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개정(행안부, '21. 3.)에 따라 연구 윤리 강화 및 정책연구 공개율 제고 등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	기획재정담당관실
1358	5. 20.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함	형사기획과
1359	5. 20.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	•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함	형사기획과
1360	6. 7.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처리절차 등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1361	6. 8.	법무부정책위원회 규정	• 보고·지휘체계 개편 • 정책기획단 업무에 2개 이상의 실국본부에 걸친 업무의 기획을 추가	정책기획단
1362	6. 18.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 상위 법률의 근거가 없는 '변호사인 난민위원의 수임 제한' 조항 삭제	난민심의과
1363	6. 28.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 자체평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혁신행정담당관실
1364	6. 30.	법무부 청렴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사회가 복잡·다양화되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외국인, 소외계층 등 다양한 정책고객으로 구성된 특별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법무행정의 전문가인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	감사담당관실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365	7. 9.	교정직 공무원의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일정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강사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	사회복귀과
1366	7. 13.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	• 인사혁신처와 전문직위 협의 결과 반영 – 11개 신설, 4개 변경 등 • 행정소송과 신설 등 직제 개정 반영	혁신행정담당관실
1367	8. 3.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 역량평가 실시 규정 신설 • 보호직 5급 이상 360° 역량진단 신설	범죄예방기획과
1368	8. 3.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대응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
1369	8. 5.	비행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 비행진단 및 비행예방교육 운영 세부기준 조정, 보호처분 및 부가처분 변경 신청 신설 • 비행예방 통합지시공문 기 시행사항 반영	소년범죄예방팀
1370	8. 21.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중대아동학대사건 실태조사,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아동인권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개선 등 진행 중인 업무의 안정성,연속성 확보 및 업무수행 인력의 소요정원 반영 등을 고려한 개정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1371	8. 12.	법무부 도서관리 규정	• 규정 문언의 '도서실'을 '도서관'으로 변경 •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서 출판물 발간시, 도서관에 해당 출판물 인쇄본과 디지털 파일을 납본하도록 함	법무심의관실
1372	8. 12.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경례구호 폐지 • '차려'와 '차렷'이 혼용되고 있어 '차렷'으로 통일 • 한글 맞춤법 표기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 수정	교정기획과
1373	8. 17.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 형사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	형사기획과
1374	8. 23.	보호소년 처우지침	•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제정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관련 사항 삭제, 준용 규정 삭제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개정에 따라 교육과정 및 위원회 명칭 등 변경	소년보호과
1375	8. 23.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개정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방법을 변경하고, '병원'을 '의료기관'으로 변경	소년보호과
1376	8. 23.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 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규칙명 변경	소년보호과
1377	8. 23.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 사용에 관한 지침	• 대구소년원 남성 고등학교 과정 신설에 따라 초·중등교육 소년원에 대구소년원을 추가하고 복수명칭 지정 • 천안·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반영	소년보호과
1378	8. 25.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이 이의신청을 각하하기로 하는 경우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난민심의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379	9. 1.	변호사 보수 규정	• 기존 훈령의 존속기한 만료 전에 그 기한을 개정하여 훈령을 계속 시행	국가소송과
1380	9. 26.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계열 및 과목 기준 변경, 관련 과목 추가·폐지 등	이민통합과
1381	9. 16.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칙	• 상위근거법령인 「건설사업기술진흥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 등 내용 반영 개정	시설담당관실
1382	9. 16.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 상위근거법령인 「건설사업기술진흥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 등 내용 반영 개정	시설담당관실
1383	10. 8.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기획재정담당관실
1384	10. 20.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	형사기획과
1385	10.28	법무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규정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21. 4. 20.) 및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21. 5. 6.)에 따라 자체규정 정비 • 「법무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재기한검토)에 따라 3년마다(2021. 3. 31.까지) 개선 등의 조치 필요	감사담당관실
1387	11. 11.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 효율적인 수용관리와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한 개선 • 형집행법, 감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보안과
1388	11. 16.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920호)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중 청년 1인을 포함하는 규정 신설 외 안건의 검토, 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사항을 조정	혁신행정담당관실
1389	12. 2.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 「전자장치 부착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고 소재불명된 사건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전자감독과
1390	12. 8.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등 •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1392	12. 14.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 성과관리 운영규정의 기관·부서 명칭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맞춰 현행화	혁신행정담당관실
1393	1.	소년사건의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 검사는 피의사건을 처리하며 보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결정전 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	소년범죄예방팀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394	12. 31.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 휴가·외출·외박의 범위 등 구체적 기준 마련 • 공무 외 부상·질병에 대해 기관 내 의료시설 진료 가능 규정 신설 • 대체업무 순환주기 변경 및 선임대원·숙련대원 제도 도입 •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사용시간 확대 • 겸직 신청절차 및 허가시간 등 세부기준 신설 • 복무확인서 발급 가능 규정 신설	교정기획과
1395	12. 30.	육아휴직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 직전 2년간 5급이하 육아휴직 평균인원 범위에서 별도정원(추가인력) 만큼 미리 결원보충으로 인사운영의 탄력성 확보 및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운영	혁신행정담당관실
1396	12. 30.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 ABTC 국제운영표준에 따른 카드 유효기간 개시일 변경	출입국심사과

2. 예 규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270	1. 1.	교정기관 공용차량 관리지침	• 소속기관별 차량 사정에 따라 공용차량 정수변경과 교체 요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종이절약 및 운행일지 통일성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약식 차량운행일지 서식으로 통일하며, 2021년 도입하는 대체복무교육원 공용차량의 색상·표지·특수장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2020년 12월 31일 도래 예정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복 지 과
1275	1. 29.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지침	• 취업·창업 교육의 자율적 편성 및 반기 30시간 의무 실시규정 신설 • 취업·창업교육의 석방 전교육과 통합운영규정 폐지 • 취업·창업 정기상담 대상에 신입수형자 삭제 • 취업·창업 후 직업심리검사를 포함한 분류검사 대신 직업심리검사를 시행하도록 변경 • 개인별 취업 및 창업지원계획 서식 신설 • 개인정보공개동의서 및 출소 후 취업·창업지원동의서 양식 변경 • 취업전담반 회의록 및 교육일지 서식 삭제 및 취업전담반 운영일지에 통합 기재로 변경	직 업 훈 련 과
1276	2.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 행정소송 지휘·승인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이 법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된 행정소송 지휘·승인 권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된 소송 지휘·승인 권한 관련 규정은 국가소송에 한정되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국가소송 소송행위 승인 권한이 법무부장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지휘청인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곧바로 승인을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행정소송 지휘·승인 권한이 법무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수행청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신설함	국가소송과
1278	2. 15.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 송무심의관실 신설 관련 정보공개 내부위원 및 정보공개 이의신청 검토 소관부서가 국가송무과에서 행정소송과로 변경 •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 목록(별표2)과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별표3)에 대한 일부 개정	운 영 지 원 과
1279	3. 24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 현대인의 체형에 맞는 다양한 사이즈의 규격과 자연스러운 디자인으로 변경된 수용자복을 지급함으로써 피복의 착용감과 만족도를 향상	복 지 과
1280	4. 19.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전문 공개	이 민 통 합 과
1282	12. 9.	법무부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운영지침	• 위원회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 명확화	법 무 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283	12. 22.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 「2021. 7. 2.자 검찰청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보호부 신설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 폐지 등 직제규정 변경 내용과, 2022. 3. 1.에 새로 신설되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을 수도권청으로 분류하여 반영함	검 찰 과
1284	12. 30.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 의무관 진료 시 진료 소견 및 처방에 대한 설명의무 • 지방청장의 의료인력 긴급 지원 근거 마련 • 교부허가의약품 개념 정비 • 교부허가의약품 반입절차 정비 • 가족 등에 의한 향정약품, 트라마돌 제제 및 마약성진통제 원칙적 불허 • 정신질환 수용자 이송 시 투약 유지 • 정신질환 수용자 출소 시 처방전 등 지급	의 료 과
1285	12. 30.	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양관리지침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과 교도관의 급식지급 및 대체복무요원의 급식관리 지급 근거 마련	복 지 과
1286	12. 30.	수용자 급양관리지침	• 비상식량 중 건빵의 규격 내용 명확화하고 일부 용어 수정	복 지 과

3. 주요지시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1. 5.	동절기 화재 예방 및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관련 업무처리 시 주의사항 시달	• 동절기 화재 예방 및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가족 통보 절차 준수	무	보 안 과
1. 12.	2021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정	• 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 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화상교육 운영사항 정비 등	기	이 민 통 합 과
1. 14.	2021년도 대체복무 생활관 시설 개선 공사 설계 지침 시달	• '21년도 대체복무 생활관 시설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설계 지침을 적용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21.	소년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세스 구축 계획 안내	• 정신질환 소년원생 선별 및 효율적 관리·치료를 위한 조기선별, 치료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등 처우 시스템 구축 계획 시달	정	소 년 보 호 과
1. 22.	2021. 소년보호기관 수용관리 실태 점검 계획 시달	• 소년보호기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수용관리 실태점검 계획 시달	정	소 년 보 호 과
1. 27.	교정시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영상 제작 배포 알림	•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직원 및 수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행동요령을 영상으로 제작, 비대면 교육을 통한 시설의 안전과 안정적인 수용관리 도모	무	보 안 과
1. 27.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 및 대행업무 처리 지침 제정	• 대행기관 등록대상, 교육 장소 및 횟수, 출입증 발급 및 관리절차, 대행가능 업무종류 및 행정제재 등 세부 기준 마련	기	체 류 관 리 과
1. 27.	'21년도 범죄예방 및 슬럼화 방지를 위한 외국인 밀집지역 재지정 및 관리방안 시달	• 외국인 밀집지역 재지정(61개소), 외국인 밀집지역 담당관제 지정·운영 등	기	이 민 조 사 과
1. 29.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재개 및 향후 운영방안 알림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되었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재개 등 향후 운영방안 시행	기	이 민 통 합 과
2. 1.	2021년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 방안 시달	• 전국 36개 권역별 특별단속지역 지정, 각 관서별 특별단속지역 단속·순찰 자체 시행계획 수립 등	기	이 민 조 사 과
2. 3.	2021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 「난민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21년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금액 기준 제정	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	난 민 정 책 과
2. 5.	마리나 등 불개항장 입항선박 검색 및 심사 관련 지시	•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불개항장)로 입항하는 요트 등의 선박에 대한 검색 및 심사 강화 지시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2. 8.	대체복무제 운영 개선(안) 시달	• 대체업무지 환경개선,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물품 지급, 업무분야 다양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대체업무 수행 방안 마련 • 정보통신기기 사용 개선, 외출 허가기준 완화 등 대원의 복지후생 강화로 안정적인 복무관리 방안 마련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2. 10.	천사공익신탁 기금 지원 수여계획 수립 등 지시	• 법무부 직원 월급 일부를 공제하여 기금으로 운영하는 '천사공익신탁기금' 지원 대상 선정결과에 따라 관할 관서별 기금 수여계획 수립	기	이 민 통 합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2. 16.	「대체복무요원 휴가 등 시행 기준」 변경 적용 지시	• '21. 2. 15.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및 현역병 휴가·외출 기준 완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휴가·외출 등 기준 변경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2. 17.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소속기관 현장점검 지시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여 교정시설 내 코로나 방역 대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무	의 료 과
2. 18.	간병 수용자 의료조치 관여 여부 실태점검 지시	• 간병 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전 교정시설의 의료수용동 간병 및 피간병 수용자 현황 파악	무	의 료 과
2. 19.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본계획 알림 및 미담사례 발굴 보고 지시	• 제14회 세계인의 날(2021. 5. 20.) 기본계획 시달 및 미담사례집 발간을 위한 관내 이민자 미담사례 보고 지시	기	이 민 통 합 과
2. 25.	대체복무요원 정원 조정 및 배치계획 변경(안) 시달	• 대체복무 생활관 시설점검을 통한 기관별 대체복무요원 정원 조정	무	교 정 기 획 과
2. 23.	교도작업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 검토 지시	• 신제품 개발 : 생산 방안, 시설·장비 등 소요액, 가격경쟁력 등 • 품질 개선 : 개선 방안, 가격인상 여부, 재고 처리, 공급 예정일 등	무	직 업 훈 련 과
2. 25.	벨트보호대 개선 및 시범운영 계획(안) 시달	• 정신질환 수용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사용하는 벨트보호대를 개선하여 시범운영 실시	무	보 안 과
2. 26.	전국 교정기관 공무상접견실 등 개선계획 알림	• 수사권 조정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관련, 수사기관의 교정기관 방문 및 화상조사 증가가 예상되어 시설 등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시달	무	보 안 과
3. 2.	대체복무요원 휴가 시행 철저 지시	• 연간 정기휴가 계획 수립 및 청원휴가(공가) 사유 발생 시 보고 철저 지시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3. 2.	고용노동부 합동 방역계도 준비 및 적극 참여 지시	• 2021. 3. 8.-3. 2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증가로 인한 전국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선제적 검사 및 통보의무 면제 등 계도 활동	기	이 민 조 사 과
3. 3.	2021. 4. 7. 실시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시달	• 2021. 4. 7.(수) 재·보궐선거 사항에 대한 유의사항 시달	무	보 안 과
3. 3.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서신 개선 계획 시달	•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인터넷 편지 서비스 내 변호인 여부 체크 기능 추가,	무	사 회 복 귀 과
3. 3.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및 관리 철저 지시	• 강릉교도소 폐형 인슐린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국가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교정기관에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및 관리 철저 지시	무	의 료 과
3. 5.	대체복무요원 안전사고 예방 철저 지시	•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신속한 조치 및 보고 철저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3. 8.	대체복무 생활관 시설개선 공사 관련 유의사항 시달	• 설계 완료 전에 설계도면 중 평면도 제출 • 적시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입찰기간 및 공사기간 적의 조정 • 공사비 집행 및 보고 철저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3. 8.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체복무요원 휴가 등 복귀 후 조치 방안 시달	•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휴가 복귀 시간 조정 • PCR검사 및 자가격리 등 휴가 복귀 시 조치사항 준수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3. 9.	작업장려금 활용, 국민연금·저축·적금 가입 추진 시달	•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하도록 단순보관에서 경제적 자산 형성으로 전환 • 출소 후 경제적 자립 기반, 내 집 마련 등 미래를 준비하여 실질적인 재범방지 도모	무	직 업 훈 련 과
3. 10.	대구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계획 시달	• 대구소년원 남성 고등학교 과정 신설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직원 및 학생 인원 조정 등 세부계획 시달	정	소 년 보 호 과
3. 12.	외국인 선원 온라인 상륙허가제도 시범운영 시행 알림	• '21.3.22.부터 감천항을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상륙허가를 신청하게 하는 온라인 상륙허가제도 시범운영 시행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3. 12.	국내 체류 미얀마인 특별 체류 조치 관련 지시	• 미얀마 현지 정세불안 상황을 고려, 국내 체류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특별체류 조치 시행	기	체 류 관 리 과
3. 17.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 지시	•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안내 지시	기	이 민 통 합 과
3. 19.	대구교도소 유통기한 도과 인슐린 사용 관련 조사 지시	• 대구교도소 유통기한 도과한 인슐린 사용에 대한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 지시	무	의 료 과
4. 1.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제 전면 실시	• 민원 대기시간 감소 및 민원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체류민원실 방문예약제를 전국으로 확대	기	체 류 관 리 과
4.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 입국·취업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시달	• 2021. 5. 1.-6. 30.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불법취업, 고용행위 및 알선 브로커 단속 등	기	이 민 조 사 과
4. 5.	심층면접관제도 도입 등 가석방 제도 개선방안 시달	• 선정 최저기준 완화, 심사제외 대상 최소화 등 심사기회 공정성 제고, 심층면접관 제도 등을 도입하여 가석방 심사의 내실화 도모	무	분류심사과
4. 7.	간병 수용자 의료조치 관여 금지 및 관리, 감독 철저 지시	• 간병 수용자가 간병인 본연의 행위 외 의료조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지시	무	의 료 과
4. 8.	「코로나19 관련 방문취업(H-2) 동포 애로사항 해소 방안」 추가 알림	• 방문취업(H-2) 동포가 출국하여 코로나19로 3개월 이내 입국하지 못하더라도 재입국 시까지 배우자 및 자녀 체류 허용	기	체 류 관 리 과
4. 9.	국적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의 편승 입국 업무처리 지침 변경 알림	• 장기 승선에 따른 외국인 선원 인권보호 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적선사의 외국인 선원의 편승입국 업무처리 지침 변경 알림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해수부	출 입 국 심 사 과
4. 9.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수정 알림	•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재외동포(F-4-27)'에 대하여 국내 자격변경 뿐만 아니라 재외공관 사증발급도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기	체 류 관 리 과
4. 13.	외국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E-9, H-2)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알림	• 외국인고용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 H-2) 취업활동기간 1년 직권 연장 알림	기	체 류 관 리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4. 19.	본건 상고심 중 다른 법원에서 추가 사건 진행 중인 경우 수용구분 관련 알림(통보)	• 본건에 대한 상고심 중 다른 법원에서 추가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수용구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선 기관 간 혼선을 빚는 사례 발생하여 수용구분을 정하여 시달	무	보 안 과
4. 19.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 시행	•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 확대, 참여혜택 확대, 송출국 중앙정부 귀국보증 완화 등	기, 지자체	체 류 관 리 과
4. 19.	「코로나19 관련 사증발급 통합 기준」 시행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내외적 변화를 고려, 사증발급 기준 일부 개선	기, 재외공관	체 류 관 리 과
4. 19.	대체복무요원 겸직 허가기준(안) 시달	• 겸직 신청절차 및 허가시간 등 세부기준 마련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4. 26.	변호인접견 신청방법 개선 시행 알림	• '21.5.3.(월)부터 전국 교정기관 변호인접견 신청을 변호인이 직접 예약하는 방식으로 변경·시행에 따른 변경된 신청방법 알림	무	보 안 과
4. 27.	신입수용자 속옷류 등 추가 지급 지시	• 신입수용자의 처우 개선 및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위해 신입절차 시 속옷류 추가 지급지시	무	복 지 과
5. 6.	수용자 전문상담 효율화를 위한 초기상담 운영방식 개선 계획 시달	• 스크리닝을 통해 정신건강 특이자 등 선별, 초기상담 실시 등 개선 계획 시달	무	심 리 치 료 과
5. 7.	2021년도 제56회 전국기능 경기대회 참가 지시	• 주 최 : 고용노동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교육청 • 대회기간 : 10. 4.(월) ~ 10. 11.(월), • 경기직종 : 자동차정비 등 53개 직종	무	직 업 훈 련 과
5. 10.	'SOFA협정 적용 대상자' 외 입국자에 대한 심사관련 지시	• 'SOFA협정 적용 대상자' 외 주한미군 관련자 입국 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SOFA 협정 적용 대상자 여부 확인 철저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5. 10.	소년원 기간제교사(특수교사) 채용 알림	• 소년원 학생 상담 및 특수교육 담당 기간제교사(특수교사) 채용 지시	정	소 년 보 호 과
5. 26.	소년보호기관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 소년원 직원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등 조치사항 알림	정	소 년 보 호 과
5. 27.	장마 및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 철저 지시	• 장마 및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대응 체계 수립 및 취약 시설 사전 점검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 철저 지시	무	복 지 과
5. 31.	2021. 6. 30.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거소투표신고 및 투표 등 선거업무 지침 시달	• '21. 6. 30.(수) 실시하는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 및 투표 등 선거 업무 지침 시달	무	보 안 과
6. 1.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급식운영 관리 철저 지시	•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무	복 지 과
6 .2.	신입수용자 흉부방사선 영상, 대한결핵협회 판독 의뢰 지시	• 대한결핵협회와의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흉부방사선 영상에 대해 대한결핵협회로 판독할 것을 지시	무	의 료 과
6. 3.	교정시설 하절기 수용관리 대책(안) 시달	• 혹서기 폭염으로 인한 각종 교정사고 예방	무	보 안 과
6. 9.	사회통합프로그램 맞춤형 교육계획 실시 지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 학습을 3~4단계에서 조기 병행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기	이 민 통 합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6. 10.	소년보호혁신위원회 2021 백서 제작·배포 알림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제1차~제11차 정례회의 결과 및 제1차~제8차 권고사항을 정리한 백서 배포	정	소 년 보 호 과
6. 14.	코로나19대응 하절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점검 지시	• 2021. 6. 14.-8. 31. 고용허가 사업장 1,152개 이상 (법무부 571개소, 고용부 581개소) 방문점검 등	기	이 민 조 사 과
6. 15.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운영계획(안) 시달	• 대구지방교정청 관내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 등 집중개별처우계획 수립 등	무	분류심사과
6. 16.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 민원실 등 영상 홍보 계획 알림(통보)	•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제도' 활성화 및 대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민원실 등 영상 홍보활동 지시	무	보 안 과
6. 21.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 알림(방문취업(H-2) 허용 업종 추가)	• 방문취업(H-2) 동포의 취업 허용업종에 물류터미널 운영업 등 7개 업종을 추가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기	체 류 관 리 과
6. 22.	소년원 학생 안전사고 예방 등 수용관리 철저	• 소년원 화장실 및 실습장, 운동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등 조치사항 지시	정	소 년 보 호 과
6. 29.	알코올관련노역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계획 시달	•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인권국)」 권고에 따라 알코올 중독 노역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적극 실시 등 출소 전 치료·재활 방안 마련	무	심 리 치 료 과
6. 29.	마약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 운영 개편 사항 변경(안) 시달	• 마약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사전/사후 척도 등 변경 내용 시달	무	심 리 치 료 과
6. 30.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처우 세부 조정(안)」 시달	• '21. 7. 1. 시행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처우 기준 조정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7. 1.	토요일 수용자 운동 잠정 중단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	•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토요일 수용자 운동 잠정 중단 및 유의사항 알림	무	보 안 과
7. 5.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학생 수용관리 등 철저 당부	• 상담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학생 생활지도 철저, 코로나19 방역 철저 등 하반기 인사이동 기간 수용관리 강화 지시	정	소 년 보 호 과
7. 7.	2021년 복무점검 및 복무관리 실태조사 계획 시달	•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대체복무제 운영 전반 점검 • 복무금지 분야 복무 여부 조사(병무청 합동)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7. 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소년보호기관 조치사항 알림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관련, 소년보호기관 자체 방역지침 변경·시행	정	소 년 보 호 과
7. 12.	연승줄 사용방법 개선 알림	• 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연승줄 사용 방식을 개선	무	보 안 과
7. 21.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인성교육 시행 지시	• 코로나19 상황 및 비대면 교육 장기화에 대비한 인성교육 효과성 향상 방안 마련	무	사 회 복 귀 과
7. 26.	혹서기 안정적 수용관리를 위한 냉장고 등 설치 추진 알림	• 혹서기 안정적인 수용관리와 수용자 건강유지 등을 위해 전 교정기관 수용동에 냉장고 비치	무	보 안 과
7. 20.	하절기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방안 시달	• 식중독 등 질병예방 관리 강화 • 냉방기 관리 및 화재예방 철저 • 과격한 운동 지양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7. 28.	교정기관 수용정원 조정(안) 시달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수용거실 증·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증감 수용인원을 수용정원에 반영	무	보 안 과
7. 28.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지시	•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절차에 따라 백신접종이 가능한 점을 교육 참여자 등에 안내 등 실시	기	이 민 통 합 과
8. 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관련 지시	• 강원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되어 '심각' 단계에 따른 부서별 주요 임무 및 역할 업무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8. 20.	직원 설문조사 실시 및 업무환경 등 개선방안 마련 지시	•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속직원에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 지시	무	보 안 과
8. 20.	가을철 장마 및 집중호우 대비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 철저 지시	• 가을철 장마 및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대응 체계 수립 및 취약 시설 사전 점검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 철저 지시	무	복 지 과
8. 25.	국내 체류 아프가니스탄인 특별체류 조치 지시	• 아프간 정세 불안과 공항폐쇄로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아프간인을 위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기	체 류 관 리 과
8. 26.	대체복무요원 배치 및 전보 개선(안) 시달	• 대체복무요원의 안정적인 복무생활과 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배치 및 전보 기준 마련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8. 27.	등록외국인 및 전자여행허가(K-ETA)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지시	• 입국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는 '등록외국인 및 전자여행허가자(K-ETA)'에 대해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8. 30.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 개정 알림	• 체납이 있는 영주 자격자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을 통한 성실 납부 유도	기	체 류 관 리 과
8. 31.	무사증입국 재개 국가 변경에 따른 K-ETA 업무처리 지시	• '21.9.1.부로 유럽 28개국의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재개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이 사증없이 입국할 때 필요한 K-ETA 업무처리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9. 6.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알림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류 유효기간 확대(3개월 → 6개월) 등 제도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여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개정	기, 재외공관	체 류 관 리 과
9. 9.	선박 출국심사시 병역의무자 국회여행 허가 확인 철저 지시	• 항만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국민의 출국심사 시 병역 미이행자의 국외여행 허가 여부 확인 철저	전국 항만 출입국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9. 9.	대체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시행 계획(안) 시달	• 의무 복무에 대한 보상과 소집해제 시 학업복귀 및 취·창업 지원 등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한 목돈마련 지원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9. 10.	검찰청 원격화상조사시스템 시범실시 계획 알림	• 소년보호기관 및 검찰청 간 원격화상조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운영 계획 시달	정	소 년 보 호 과
9. 13.	전국 소년보호기관 교무/분류보호과장 영상회의 개최 안내	• 소년보호기관 학생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영상회의 개최 알림	정	소 년 보 호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9. 15.	「추석 연휴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방안」 시달	• 휴대폰(테블릿PC 또는 노트북) 사용 완화휴가 등 시행 • 코로나19 감염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우 조정표에 따라 휴가 및 외출·외박 시행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9. 15.	성폭력사범심리치료 프로그램 적극 운영 방안 시달	• 미수료 출소 사례 최소화, 유지과정 적극 실시 등 운영 방안 시달	무	심 리 치 료 과
9. 28.	신입수용자 등 정신질환자 관리 철저 재강조 지시	• 정신질환 수용자 입소 증가에 따라, 교정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신입수용자 등 정신질환자 관리 철저 지시	무	의 료 과
9. 30.	교정기관 보호장비 사용 적정성 등 점검 지시	• 보호장비 사용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조치 지시	무	보 안 과
9. 30.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방지를위한 선박심사 등 강화 지시	•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방지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정보분석 철저 등 심사 강화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10. 7.	소년보호기관 색채디자인 도입 계획(안) 시달	• 소년원 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순화를 돕기 위한 색채디자인 도입 계획(안) 시행	정	소 년 보 호 과
10. 8.	소년원 직업훈련과정 안내자료 제작·배포 알림	• 소년 개인의 소질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선택을 돕기 위한 안내자료 배포 알림	정	소 년 보 호 과
10. 12.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시행	• 불법체류 외국인 대상 백신접종 후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백신접종 적극 참여를 유도	기	이 민 조 사 과
10. 20.	천안개방교도소 기능전환 세부 이행 계획 시달	• 천안개방교도소 기능전환을 위한 소관 업무별 이행사항 추진, 체계적 지도·관리 등을 통해 기능전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시	무	교 정 혁 신 추 진 단
10. 29.	정신질환 수용자 이송 시 투약 체계 유지 지시	• 정신질환 수용자 투약 체계 유지 방안 지시	무	의 료 과
11. 5.	한-싱가포르 사증면제협정 재개에 따른 K-ETA 업무처리 알림	• '한-싱가포르 간 여행한전권역' 시행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21.11.8.부터 싱가포르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이 재개 됨에 따라 전자여행허가(K-ETA) 소지자 의무화 되는 싱가포르 국민에 대한 업무 처리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11. 5.	위탁소년 교육과정 개편 계획 안내	• 초기 비행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위탁소년 교육 개편안 시달, 위탁소년 교육 운영 철저 지시	정	소 년 보 호 과
11. 12.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영상재판 추진 계획 시달	• 법원과의 원격영상재판이 전면 시행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지시	무	보 안 과
11. 15.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호 및 감염병 예방 철저	•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체 시험장 운영 및 외부 시험장 응시 관련 방역 조치사항 알림	정	소 년 보 호 과
11. 16.	대체복무제 업무 공유를 위한 법무샘 업무협업 게시판 개설 및 운영 안내	• 대체복무제 운영 기관과 본부 간의 업무소통 및 대체복무제 관련 자료 공유를 위한 게시판 개설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 정 기 획 과
11. 17.	교정기관 65세 이상 수용자 대상 폐렴구균 예방백신 접종 지시	• 전국 교정기관 65세 이상 수용자 폐렴구균 예방백신 접종 지시	무	의 료 과
11. 17.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추가접종(부스터샷) 실시 요청	• 백신 접종효과 유지 및 돌파감염 방지를 위한 추가접종 실시 요청	정	소 년 보 호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11. 18.	조기적응프로그램 대면교육 재개 지시	•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등에 따라 조기적응프로그램 대면교육 재개	기	이민통합과
11. 22.	한-인도네시아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일시 정지 해제 알림	• '21.12.1.부터 상호주의 적용으로 잠정 정지된 한-인도네시아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재개 알림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심사과
11. 25.	2022년도 수형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운영계획 알림	• 직업훈련과정 개편(단순 기능습득에서 실질 취업역량 강화로 전환) • 최근 산업 동향 수요를 반영한 훈련 종목 신설 • 취업지원 강화(실질적이고 역동성 있는 취업매칭 활동)	무	직업훈련과
11. 28.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출입국심사 관련 지시	• 최근 14일 이내 오미크론 변이 발생국에 체류·출국·경유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항공편 탑승 차단, 공항만 도착 시 입국불허 등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심사과
11. 29.	승선검색 대상 선박 지침 개정 및 승선검색 강화 지시	• 승선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선원상륙허가 및 선박검색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중 '승선검색 대상 선박' 내용을 개정하여 시달	전국 항만 출입국기관	출입국심사과
12. 1.	특별기여자(F-2-16) 체류관리 지침 제정	•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거주(F-2) 자격 부여	기	체류관리과
12. 1.	검찰청 원격화상조사시스템 전국 확대 시행 알림	• 전국 소년보호기관 및 검찰청 간 원격화상조사 전면 시행 알림, 정보시스템 등록 절차 안내	정	소년보호과
12. 2.	수용자 규율위반행위 등 대응 영상자료 제출 지시	• 교정현장에서 수용자 규율위반행위 등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채증된 영상 자료를 취합하여 교정공무원 직무 교육 자료로 활용	무	보안과
12. 2.	K-ETA 관련, SOFA 협정 대상자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인 관련 지시	• K-ETA 대상 중 SOFA 스탬프 소지자는 면제대상이나 대상자 여권에 체류자격 관련 인이 없어 발권이 거부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3 자격으로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인을 날인하거나 스티커 부착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심사과
12. 2.	일용직 방문취업(H-2) 동포 취업개시 신고제 및 처벌기준 개선안 알림	• 일용직 방문취업(H-2) 취업개시 신고위반사례 급증에 따라 최초 위반 적발 시 처분면제 등 처벌기준 개선 알림	기	체류관리과
12. 3.	비행동기가 '경제적 곤란'인 보호소년 현황 파악 요청	•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호소년에 대한 범죄예방 정책 수립 및 원호지원 기초자료 마련을 위하여 비행동기가 '경제적 곤란'인 보호소년 현황 파악 요청	정	소년보호과
12. 6.	점수제 우수인재(F-2-7)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 IT, 나노산업 등 유망산업종사자 대상 사증발급 허용 및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게 취업요건 면제 후 체류기간 5년 혜택 부여	기, 재외공관	체류관리과
12. 13.	2022년 위탁소년 교육계획 제출 요청	• 2022년 위탁소년 교육시간표 및 필수과목 강사 명단, 상담시간 활용 계획 등 제출 요청	정	소년보호과
12. 14.	TEAMS 입원 등록 시 유의사항 알림	• 보호 및 위탁(유치)소년 입원 등록 시 법원 접수 유형 파악 철저 지시	정	소년보호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12. 16.	수용자 전문상담체계 개편(안) 운영 계획 시달(통보)	• 탐색·예방·변화 등 문제해결상담 체계 도입, 상담 종류별·대상자별·주제별 상담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운영 계획 시달	무	심리치료과
12. 20.	신규 지정된 조기적응지원센터 등록 지시	• 신규 지정된 조기적응지원센터가 사회통합정보망에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	기	이민통합과
12. 24.	교정기관 무선 스마트접견 전면 시행 지시	• 교정기관 무선 스마트접견 전면 시행 지시에 따른 무선 스마트접견 장소, 수용자 계호, 단말기 관리 등 철저	무	보안과
12. 24.	변호인접견 예약 제도 전면 시행 지시	• 변호인접견 예약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22.1.3.(월)부터 변호인접견 신청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한 직접 예약 방식으로 전면 시행할 것을 지시	무	보안과
12. 27.	동포의 미성년 자녀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시행 알림	•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시행 알림	기, 재외공관	체류관리과
12. 28.	2021년 복무점검 및 복무관리 실태조사 결과 시달	• 2021년 복무점검 및 복무관리 실태조사 점검 결과 송부 및 복무관리 철저 지시	대체복무 시행기관	교정기획과
12. 28.	코로나19 관련,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알림	• 코로나19 관련, '22.1.11. ~ 4.12.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E-9, H-2) 체류기간 1년 직권 연장 알림	기	체류관리과

제3절 장관 연설문

▣ 2021년도 법무부 장관의 주요연설 현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설현황 |

일 자	주요 행사명	비 고
2. 1.	• 제68대 법무부장관 취임식	
2. 17.	•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위촉식 및 T/F 회의	
4. 1.	• 신임검사 임관식	
4. 21.	•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수여식	
4. 23.	• 제58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	
5. 12.	• 법무부-시흥시 귀화자 국적증서 공동 수여식	
5. 17.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10기 개강식 축사	영상메시지
5. 20.	•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5. 27.	•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	
6. 2.	• 스타트업 법률지원 간담회	
6. 17.	•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	
7. 29.	• 법무부 법률지원단 온라인 간담회	
8. 11.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식	
8. 12.	•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8. 23.	•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9. 14.	• 법무부-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개회사	
9. 15.	•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	
9. 30.	• 제28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축사	
10. 13.	• 법무자문위원회 위촉식	
10. 14.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무부·국방부 업무협약식	
10. 26.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격려사	
10. 27.	• 저스티스 서포터스 장관님 간담회 개회사	
10. 28.	• 제76주년 교정의 날	
11. 3.	• 2021 법무보호복지의날 기념식 격려사	
11. 10.	• 법무부 정책위원회 해단식	
12. 1.	• 법무부·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공동학술대회	
12. 3.	•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환영사	
12. 7.	• 희망커피 1호점 개업식	
12. 14.	•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 폐회사	
12. 2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신청사 개청식 축사	

• 제68대 법무부장관 취임식

Ⅰ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반갑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히 소임을 다해준 법무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정과 헌신을 다해 법무부를 이끌어주신 추미애 장관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Ⅱ

법무 가족 여러분 !

지금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해야합니다.

저 또한 법무행정 총책임자로서,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공존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Ⅲ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이 땅에 지속 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공존의 정의는 인권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권보호입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다' 엄혹했던 1948년 세계인은 한 자리에 모여 인권의 존엄을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우리사회가 함께 지켜내야 하는 가장 고

귀한 가치입니다.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무부에 묻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차 묻고 싶습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지켜내는 역할을 법무·검찰이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랜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납시다. 만일 내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생각해봅시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보장에 힘써야합니다.

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절차적 정의입니다.

이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합니다. 검찰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집행의 경우, 국민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합니다.

검(劍)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을 함께 걸어나갑시다.

셋째, 소통입니다.

법은 냉철하지만 따뜻해야합니다. 법은 높지만 낮아야합니다. 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법무행정이 돼야합니다. 항상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업무를 동부구치소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훗날 제가 업무를 마무리하는 곳도 현장일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오래된 진리를 반추해봅니다. 문자와 문서의 獄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저부터 현장에 나가 법에 호소하는 국민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습니다.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

Ⅳ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우리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합니다.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합니다.

그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해야합니다.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꾸어야 합니다. 검찰은 이제 경찰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는 물론 각종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도 펼쳐나가야합니다. 제도적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퇴보가 아닌 국가범죄 수사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 합니다.

V

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두텁게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시행해야합니다. 1인 가구,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추어 사회보장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치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모든 법무·검찰 가족이 보람을 갖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주어진 소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수많은 이정표가 돼 주십시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설레입니다. 앞으로 동고동락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회의 및 위촉식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입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한 너무 바쁘신 와중에도 1인가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건축가, 작가, 교수, 방송인, PD 등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작업을 하고 계실뿐만 아니라 1인가구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해를 갖추고 계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점에 대해서 큰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도 1인가구를 위한 여러 좋은 의견들을 주셨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가령 김경집 선생님께서는 1인가구의 개념부터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 주셨고, 노종언 변호사님께서는 앞으로 상속제도가 법정상속제에서 지정상속제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명로진 작가님과 박성연 컨설턴트님께서는 독일과 스페인의 1인가구 사례를 공유해 주셨고, 김성신 선생님과 김동욱 PD님께서는 반려동물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좋은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도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1인가구 비율은 20년 전 15%에서 이제 30%를 넘어섰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다인 가구 중심의 기존 제도들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창의적인 의견들이 1인가구 확대로 인해 변화될 미래시민사회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인가구들이 사회적으로 더불어 공존함으로써 우리 함께 “공존의 정의”를 이루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안”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신임검사 임관식

Ⅰ

신임검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을 헌신적으로 뒷받침 해 주신 가족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Ⅱ

먼저, '인권'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에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지향은 검사들이 인권보호의 눈, 적법절차를 지키는 눈, 최종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하는 눈으로 바뀌어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인권의 가치를 마음 속 깊이 새기고,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공존의 정의'는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이자, 절차적 정의를 의미합니다.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부인 유인, 압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선과 편향을 극복하고, 겸허하게 성찰하며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우리 사회에 '공존의 정의'가 살아 숨 쉴 수 있게 하는 '국민을 위한 검사'로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맡은 사건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법률가로서 기본적 소양을 키우는데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되, 늘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자세를 견지해주기 바랍니다.

무고한 자를 벌하지 않고, 진범을 놓아주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권의 틀 안에서 실체진실을 규명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며,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맡은 사건을 정성을 다해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Ⅲ

신임검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그동안 꿈꿔 왔던 검사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검(劍)은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검사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에게 지워진 책무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긴 초심을 잘 지켜나간다면 '국민을 위한 검사'로 빛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검사로서의 새 출발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수여식

I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대한민국 우수인재와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되어있고, 헌법 제2조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고, 헌법을 기초로 1948년 국적법이 제정된 이래 약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4·19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사적인 순간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자 2021년 4월 21일, “200번 째 우수인재 국적취득 기념,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부는 2011년부터 우수한 외국인재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래, 올해가 10년이 되는 해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으로 200번 째 우수인재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는 외국인 신분으로 낯선 이국 땅에 와서 각고의 노력으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을 축하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한국인(韓國人)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를 기념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II

존경하는 대한민국 우수인재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발전에 더욱 기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롭게 시작하고, 미래의 더 나은 삶과 도약을 꿈꾸는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수인재 여러분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제58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오늘 영예로운 훈장과 표창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매년 법의 날에 개최되었던 기념식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헌신하여 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포상 전수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국민 여러분들이 매우 힘겨워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 투기 사건 등 우리 사회 공정의 원칙이 흔들리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 자리를 빌어 법치의 의미와 법무부의 진정한 목표에 대해 다시금 다짐해보게 됩니다.

첫째, 민생을 위한 공정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법이 공정해야, 법이 신뢰받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포함한 경제사범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이룩하겠습니다.

둘째, 존중과 포용의 인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법은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돼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막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법 집행은 국민이 신뢰할 때 힘이 생깁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을 위해 검찰개혁을 지속하고,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모두 법무부가 지향하는 법치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인권 옹호 및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기여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시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순무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정부 포상 영예를 안으신 열두 분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을 돕고 지지하여 주신 가족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법무부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온 특권과 부조리, 불법과 반칙을 청산하고, 공공기관 부동산 투기 등의 부패범죄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탈법 행위가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이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예로운 훈장과 표창을 받으시는 수상자와 가족 분들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법무부-시흥시 귀화자 국적증서 공동 수여식

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과천에서 시흥시까지 약 30Km를 달려오면서 국내 유일의 내만갯벌과 생태공원 등 자연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시흥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어떤 연예인이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서핑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그 곳이 시흥시에 소재한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명실공히 자연생태계를 지키면서 해양레저의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시흥시의 발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흥함이 시작되는 도시, '시흥시(始興市)'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처음으로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뜻깊은 자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시흥시장님, 그리고 이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조정식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박춘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사람에게 국적증서를 드리는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정부 출범 4년"이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상호 협력을 통한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국적증서수여식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이 지역사회 주민으로" 안착하는 가교가 되어 귀화자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시흥시가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31명의 귀화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보면서, 여러분이 미래의 주인공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을 결심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귀화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긴 시간을 거쳐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Ⅲ

오늘 주인공이신 우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오늘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진정한 국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저는 귀화자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과 다양한 경험이 우리사회를 더욱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을 비롯하여 귀화자 및 귀화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10기 개강식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큰 열망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변호사님들과 예비법률가 그리고 평소 통일법제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통해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가 잘 개설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해 주신 이종엽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는 주장했습니다.
저는 반문해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평화의 여정을 묵묵히 이어가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관심,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는 용기,
서로의 동질감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곧 평화의 준비입니다.
통일·북한법제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곧 평화의 준비입니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남북간 경제 협력, 문화 교류, 스포츠 외교 못지않게 실사구시적인 남북교류이며 협력입니다. 특히 올해는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의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대한변협과 함께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4년 첫 번째 과정을 개설한 이래 지난 7년 간 400여 분의 법률가와 예비법률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가들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을 대비하는 탁월한 법률전문가들이 양성되고, 통일법제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만남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원동력이 마련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초석이 든든하게 놓일 것을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대면 활동은 감소하고 비대면 활동은 증가하는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대면으로 진행했던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였습니다. 오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정세」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통일법제 분야 최고전문가들께서 「남북한 분쟁 해결방안 및 사례」, 「통일을 대비한 입법정책 구상」, 「독일통일 30주년 시사점」,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 「북한 검찰소 검사와의 대화」에 이르기까지 기존 아카데미에서 들을 수 없었던 심화된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앞으로 6주간의 교육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정은 한반도 평화·번영과 분단 극복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통일법제 전문가로 자리매김 하시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귀한 역할들을 담당하실 수 있도록 법무부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7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제 14회 '세계인의 날'입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먼저 올해의 이민자 상 등 정부포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Ⅱ

우리나라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삶의 터전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나라였으나 현재,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공존하는 꿈과 희망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전 기념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40년 전에 입국한 25세의 젊은 외국인 청년은 가난하고 갈 곳 없는 한국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방역 최전선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에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국가 발전과 위기극복을 위해 한 마음 한뜻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 당당한 우리의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Ⅲ

안타깝게도 함께 같이했던 우리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한 팔 간격으로 거리를 두는 각자의 우리가 되었으며 한 집처럼 드나들던 지구촌은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각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업과 여행업, 서비스업도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농·어촌까지도 일손 부족현상이 심각해져 우리의 먹거리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인류는 공생을 위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고 국적과 민족에 따른 차별없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협력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통찰과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우리는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외국인정책 주무부처인 법무부 역시 국민이 공감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Ⅳ

얼마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 윤여정씨는 '무지개도 일곱가지 색이 있듯이 여러색깔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상소감을 밝혀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이 조화를 이루워 '아름다운 공존의 무지개'를 그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꿈꾸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재한 외국인이 위기 극복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혼자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는 말이 의미하듯이 우리 모두 오래도록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국민과 외국인이 화합을 통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2021년 5월 20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

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해 오신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축하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영예로운 교정대상을 수상하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상자 여러분들이 열의를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곁에서 인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가족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교정대상을 주관하고 후원해 주신 서울신문사 고광헌 사장님과 KBS 한국방송 양승동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은 수용자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자 이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오신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특히, 대상을 수상하신 이운안 교정위원님은 출소자 쉼터인 소망의 집을 운영하며 장애가 있거나 무연고로 오갈 데 없는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와 그 가족까지도 보살핀 분이십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꺼려하는 수용자를 가족처럼 품고 돌봐온 수상자 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

저는 법무부가 지향하는 인권존중의 가치와 교정교화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몇 해 전 교정대상을 수상하셨던 박종덕 교감의 미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성여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은 박종덕 교감이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나는 없었을 것이다” 윤성여 씨를 믿어주고 지지해 준 박종덕 교감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수용자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영향을 주는지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으로 부임 이후 서울동부구치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등 교정현장을 방문하며 교정공무원 및 수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현장 방문 시 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수용자의 인권이 향상되어야 교정공무원의 인권도 향상될 수 있다."라는 직원의 말을 들으며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정공무원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교정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Ⅳ

교정가족 여러분 !

교정은 범죄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동안 교정은 새로운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복역율은 미국, 호주 등 다른 나라보다 낮은 24.6%로, 많은 출소자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16,000여명의 교정공무원과 4,500여명의 교정위원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Ⅴ

교정가족 여러분 !

교정행정은 인권과 치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 놓여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신설하고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처우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시설 과밀화로 인해 수용자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교정시설 신축과 이전을 확대하고 사용자 중심의 건축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보다 인권친화적인 교정시설 설계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범 고위험군 범죄자를 비롯해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와 마약 등 중독범죄자에 대한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범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범수형자 스스로의 개선의지를 고취하고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형기의 80% 이상에서 허가되고 있는 가석방 심사기준을 5% 이상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이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내야 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임을 명심하고

인권 존중의 처우와 내실 있는 정책을 통해 공존의 정의가 실현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통 강화와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Ⅵ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

교정대상은 수용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헌신해 온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을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수용자 교화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수상을 축하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21년 5월 27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스타트업 법률지원 간담회

I

안녕하십니까, 패널 여러분. 법무부장관 박범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혁신창업의 현장에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스타트업을 이끌어 오신 패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II

저는 장관 취임 때부터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무행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민생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는 기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은 '제2의 벤처붐'을 타고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2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13개로 불어났고, 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창업과 투자, 관련 일자리 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선도형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우리 경제의 미래인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법무 전담 조직 없이 적지 않은 법적 리스크를 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는 스타트업 기업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 또 법무부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지원정책을 추진하면 좋을지 패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III

오늘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패널 여러분들께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험하신 법적 어려움이나 아쉬웠던 점,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이를 귀담아 듣고, 향후 스타트업 법률지원 정책을 펴나가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 정책의 방향이 올바로 정립되어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신 선배로서 패널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

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입니다.

먼저 오늘 「지식재산 컨퍼런스」를 함께 마련해주신 김용래 특허청장님,

그리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직접 참석해주신,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님, 이광섭 한남대학교 총장님, 이준우 충남대학교 부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청, 각 대학교 관계자분들과 법무부 법률지원단 관계자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저는 국가 법률사무 및 법제도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인재육성과 지식재산 정책의 중추인 대전지역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경제발전 및 인재육성도 법 제도의 받침을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 법무부 역시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육성을 지원해야 하는 그 소임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저도 법무부장관 취임 때부터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무행정을 강조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환경을 계기로 더욱 가속하여 전환되고 있는 온라인·디지털 경제 확산의 시대적 격변기 속에서 민생을 위한 법무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Ⅲ

지금 우리는 정보통신(ICT),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의 제4차 산업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을 계기로 탈 대면적 사회구조로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첫째, 정보통신·인공지능·디지털 분야에서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 정상적인 사회 작동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작년 공적마스크 정보의 예에 이어 최근 온라인 포탈을 통한 잔여백신 정보 제공을 통해 백신 접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도록한 예가 그 대표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율이 25.8%에 불과하는 등 특허 등 기술이 벤처기업 등을 통해 실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둘째, 디지털화·인공지능화 등으로 인해 기존 기업의 인력 수요 및 충원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채 방식의 대규모 충원이 점점 사라지고 기술업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학졸업자 10명 중 3명(67.1%)은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청년들의 취업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그 수치가 더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Ⅳ

이러한 격변기에 청년들이 기술을 활용한 벤처·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성장과 기술의 지속적 개발과 현실화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Ⅴ

오늘 저는 지식재산 및 기술정책을 주관하는 특허청장님과 함께 과학기술연구와 인재육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청년들이 지식재산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하여 그들과 성장과 국가적 발전이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제도적 개선사항을 마련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17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법무부 법률지원단 간담회

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입니다.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과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각지의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대면 회의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화상회의가 더 특별한 계기로 느껴집니다.

Ⅱ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취임한 이래,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의 순환구조 기반을 마련해야 할 법무부의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창업지원 공간을 찾아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뵈었고, 대전에 내려가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카이스트·충남대·한남대 등 관계부처 및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오늘은 법률지원단의 일원으로서 기업현장 최일선에서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Ⅲ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법무부가 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는지를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및 온라인 산업 구조에서, 생산과 고용, 소비 모든 면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적극 개발·활용하는 기업이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가 시장을 선도하며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및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기업 간 관계적 공급·수요망이 해체되고 공채 위주의 청년 고용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해 새로운 공급과 수요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의 확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이러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노력할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Ⅲ

법무부는 그동안 「상법」 등 법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여러분들과 함께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법률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법률지원단」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Ⅳ

대표적으로 현재 IT·지식재산 관련 법률지원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IT·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변호사님을 충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원스톱으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법률지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충족되도록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의 연내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Ⅴ

여러분께서는 법무부의 법률지원단 사업의 최일선에서 우리 법무부의 의지를 실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법률지원단 사업의 현황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간담회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9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식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전문위원직을 수락하시고 오늘 자리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더욱 음성화·다양화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등은 안전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면서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 등이 더욱 다양화 되고 빠르게 전파되어, 인권보호와 형사사법의 책임 주서인 법무부가 피해자 인권 관점에서 전반적인 성범죄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남녀성별과 노소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성착취물을 포함하여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 27.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가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위 TF가 신고 및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는 순간까지 인권보호 현안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만,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업무추진 시 자문을 구하고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모신 위원님들은 법조, 언론, 예술, 시민단체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십니다. 특히 금번에 디지털성범죄 중 딥페이크의 가장 큰 피해 대상인 K-POP 가수로서 자문위원으로 참석해주신 핫펠트(예명)의 용기와 참여에 감사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성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체계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이고 델타플러스 변이 등 새로운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1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I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매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을 발굴하여 국적증서를 드리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엄중한 상황으로 인하여 더 많은 후손분들과 가족분들을 모시지 못하게 돼서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살고 계시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국적증서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인요한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요한 박사님은 여러분과 같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 첫 번째로 특별귀화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환영인사를 영상으로 전해주신 보훈처장님, 광복회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존경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조께서는 자신의 삶을 버리시고, 항일 투쟁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정성과 목숨을 바친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길은 나라를 되찾겠다는 위대한 용기가 아니면 결코 갈 수 없었던 험난한 노정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이신 선조님들로 인하여 후손 여러분들이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겪었을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선조이신 독립유공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고귀한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여, 선조의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고 축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는데 온 몸을 바쳐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드리는 가슴 벅찬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기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피땀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을 독립유공자들께 국민을 대표하여 머리를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게 되면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됩니다.

법무부는 역사의 아픔과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공존(共存)의 의미를 되새기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Ⅳ

존경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며칠 전에 끝난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들이 양궁을 비롯하여 많은 종목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여자배구 한일전 경기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경기 내내 가슴을 졸였고, 선수들의 팔다리에 있는 멍자욱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5세트 경기가 끝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가슴 뜨겁고 뭉클한 기분은 저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선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들의 어렵고 힘든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코로나 위기 상황도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극복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2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개회사

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번 간담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이광섭 한남대학교 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남대학교 김정곤 학사 부총장님, 이병철 산학연구 부총장님, 이준재 취업·창업처장님, 최종근 창업지원단 부단장님, 이근국 창업지원단 창업사업화 본부장님 등 학교 관계자 여러분과 특별히 참석해 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청년 창업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오늘 저는 청년 창업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제4차 산업 환경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경제·산업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청년들이 월스트리트가 아닌 실리콘 밸리를 향한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스타트업에 인재와 자본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인재가 더이상 여의도등 전통적 산업공간 대신 “대전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 밸리를 지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청년 여러분이 창업과 기업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평상시 창업을 준비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애로 사항이나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가감 없이 말씀 주십시오.

Ⅲ

법무부는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률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스타트업에 특화한 법률지원 위해 법무부 법률지원단에 IT·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올 10월까지 청년 창업가 등 정보 수요자가 원스톱으로 창업에 필요한 모든 법률 정보를 얻고, 정보 수요자와 법률전문가 등 정보 공급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과정과 향후 운영과정에서 오늘 모여주신 청년 창업가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유익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Ⅳ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대들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진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성장으로부터 사회·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 발전의 결실을 바탕으로 다시 청년층의 도전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23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법무부-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개회사

나흘 뒤인 9월 18일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이 되는 날이고 올해는 통일독일 3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기 한 해 전에 독일은 분단과 냉전을 극복하며 통일을 달성하였고, 오늘날 유럽통합과 국제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독일이 통일될 즈음에 창설된 통일법무과를 중심으로 남북교류와 통일을 위한 법제 정비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역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남북한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간의 상속문제, 북한주민의 재산관리 문제 등은 매우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 주민간의 법률문제는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가 학술대회를 통해 이산가족 상속 문제 등 현안 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남북주민 간의 재산권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남북한 법률가회담 같은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보았듯이, 남북한이 교류협력과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상호 신뢰를 쌓고 그 바탕 위에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삶이 아닌, 타인과의 조화로운 삶"

독일인의 눈으로 독일통일을 그린 영화 '굿바이 레닌'에서, 동독 지도자가 베를린 장벽 개방 연설 중 던진 화두입니다. 저는 언제나 남북 주민간의 '공존'과 '화합'을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도 그런 날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공존'하며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혜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세미나

안녕하세요. 법무부장관 박범계입니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 화상으로 두 번째 만나게 되는 디지털성범죄 자문위원님과 일선에서 수사하느라 고생이 많은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 검사님, 법무부 간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유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 언택트·온라인 생활이 일상화 되어, 디지털에서의 다양한 범죄 유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일명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그동안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실체 없는 행위' 정도로 가볍게 여겨져 온 디지털성범죄의 잔혹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정부 각 부처는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 등 디지털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디지털 세계에서는 더욱 다양화된 플랫폼에서 한층 음성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여전히 디지털성범죄가 행해지고 있고,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최초로 N번방에 잠입하여 그 실체를 알린 '추적단 불꽃',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회 설명회·국민청원 등을 주도해 온 '리셋' 위원님이 이러한 현실을 생생하게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현재의 형사사법 대응 체계 전반을 진단해 보고, 특히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님,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조사부장님, 법무부 간부님들께도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큰 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15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제28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장관님 축사

Ⅰ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박범계입니다.

제28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먼저 오늘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주신 두 분 회장님, 이재욱 변호사님, 알렉스 킴 변호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신 세계 각지의 한인 법률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Ⅱ

우리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대응과정에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교역이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국가, 성별, 인종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찾아온 팬데믹에 온 인류가 한 마음으로 화합하여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화합과 포용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는 이 시기에, '다양성, 포용과 소속감'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Ⅲ

저는 오늘 주제인 '다양성과 포용, 그리고 소속감'이 세계한인법률가회를 대표하는 특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한인법률가회는 1987년 창설 이래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법률가들의 교류와 공감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해외 법률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전세계 20여개 국가에서 3,5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법률가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활동 범위도 회원 간 교류에 그치지 않고, 이주민 및 다문화 가정 법률지원, 청년 한인 법률가와 국내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등 다양한 공익활동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입양인,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관련 프로보노(pro-bono) 활동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인 법률가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의 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 여러분들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Ⅳ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국적·종교와 상관없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류애를 발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존중과 포용의 인권사회'는 법무부가 추구하는

핵심 정책목표 중 하나입니다.

최근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그 가족들의 특별입국을 허용하고 정착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한 것은 우리 사회가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내디딘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의 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Ⅴ

존경하는 한인법률가 여러분,

법무부는 세계한인법률가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협력해왔습니다.

먼저, 해외진출의 꿈을 가진 우리의 청년 변호사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세계한인법률가회,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청년법조인들이 해외로 나가 국제적인 안목과 실력을 갖추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해외 진출 관련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에 대한 법률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이 현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부는 세계한인법률가회의 활동을 다각도로 뒷받침하여 모국과 끈끈한 관계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Ⅵ

아무쪼록 이번 총회가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법무자문위원회 위촉식

권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새로 선임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시민법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해마다 달라지고, 코로나 같은 낯선 바이러스가 세상을 마비시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드론, 로봇,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과 개념이 수시로 등장하며 기존의 사회관계와 인간성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과거 농업혁명으로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변화가, 산업혁명으로 수백 년간 이루어진 변화가, 이제는 불과 몇십 년이면 일어납니다. 10년마다, 5년마다 세상이 급변합니다.

혹자는 법무부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법은 과거에 형성된 질서를 지키는 수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은 바뀌는 순간부터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견인합니다. 법이 미래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특히 법무부가 소관하는 법들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틀을 이루는 법들이고, 그중에서도 민사법은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누구도 미래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노력하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미래는 우리 삶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준비하고, 이미 우리 삶이 되고 있는 미래에 대처해야만 합니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법들이 이런 미래 사회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각계에서 실력 있고, 그 분야의 미래를 상징하는 선진 학자와 전문가분들을 법무부의 가장 권위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선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경험과 통찰력,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법무부가 미래시민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법이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는 '어떤 법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자문을 잘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미래시민법 포럼에 대한 법무부 안팎의 기대가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3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무부·국방부 업무협약식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 부처가 함께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법무부에서는 아동인권특별추진단,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 등 피해자 인권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국방부와 함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양성평등 조직문화와 성별·세대별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 특성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전달하고 피해자 지원 매뉴얼 등 피해자 중심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국방부와 공유하여,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격려사

먼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경기상황에도 출소자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시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출소자도 우리와 이웃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사회생활 단절과 수용생활로 인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출소자들은 갈곳을 잃고 방황하다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소자는 일자리를 통해 빈곤을 해결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정착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이처럼 취업이란 출소자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출소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실제로 제공한다는 것은 많은 고민과 용기, 그리고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용기와 결단을 몸소 실천해주신 ㈜대연산업 최병연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대표 기관으로써 출소자 취업지원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저스티스 서포터스 – 장관님 간담회 개회사

안녕하세요? 저스티스 서포터스 여러분. 법무부장관 박범계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예방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참신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청년 서포터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스토킹은 상해, 살인, 성폭력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범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의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느꼈던 점이나 범죄 예방을 위한 의견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또한, 법무부 서포터스로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마련된 사실을 널리 알려 스토킹 행위 근절을 위한 사회 인식이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제76주년 교정의 날

친애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6주년 교정의 날을 여러분과 함께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긴장되는 근무 환경에서도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많은 분들을 한자리에 모시는 성대한 축하 행사를 개최하고 싶었지만,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스튜디오로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먼저, 교정행정 발전과 수용자 교정교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로운 포상을 받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상자 여러분들이 업무와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가족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교정시설에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생활하는 오만삼천명(53,000)이 넘는 수용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선량한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고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

우리나라 교정은 정부가 수립되면서 법무부 형정국으로 출범하여 19개의 형무소에서 삼천구백삼십팔명(3,938)의 직원들이 국가의 형벌권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4개의 지방청, 53개의 교정시설, 1개의 민영교도소에서 만육천오백십삼명(16,513)의 직원들이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큰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교정은 76돌의 세월 동안 덩치만 커진 것이 아닙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정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기능 또한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었습니다.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의 비전을 세우고,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관리를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권 친화적인 형 집행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의 교정은 수용자의 인권보장 내실화를 위해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증진, 출정업무 개선, 심리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문화되고 현대화된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분류심사를 통한 교육, 직업훈련, 교도작업, 치료 등 맞춤형 처우 이외에 수용자 자녀까지 지원하는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센터 등 중간처우 시설에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업하며 교정시설 신축과 증·개축을 속도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정이 미래를 내다보는 인권옹호 중심의 법무 정책을 선도해 나감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는 조직으로 진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

대한민국 인권의 발자취는 76돌을 맞이하는 교정시설의 담장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관으로 부임하여 여러 곳의 교정현장을 돌아보며 우리 직원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중에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만난 직원이 "수용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직원의 인권과 복지도 보장된다"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수용자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교정현장의 직원들이 사회의 인권보호 추세를 악용하는 일부 수용자들에 의해 고소나 진정 등을 당하여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1년 365일 주·야간 근무를 반복하며 수많은 수용자를 혼자서 관리해야 하는 교정공무원의 업무강도와 스트레스는 다른 직업군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인권을 바탕으로 한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사명은 흔들림 없이 더욱 굳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단지성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켜내며, 수용자의 인권보호 단계를 넘어,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

인권의 상징이자 「만델라 규칙」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故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의 교도소 생활이 나에게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 소중하고 진심이 담긴 말이 인생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정가족들은 수용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뛰어난 역량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기념식의 슬로건처럼, 여러분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생활하는 수형자들을 "진심 어린 말과 행동"으로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밝은 사회로 이끌어주는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국의 모든 교정 가족 여러분께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 격려사

코로나 19 장기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출소자 사회정착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1 법무보호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신 서울지부 윤용병 법무보호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교정시설에서는 5만 여명의 출소자들이 우리 지역사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일자리, 주거, 생계, 가족관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소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이들의 건전한 사회정착이 어렵게 되며, 이들의 재범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재범방지는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공단은 출소자에게 힘이 되고, 국민에게는 안심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공단은 생활관을 1인 1실로 리모델링하여 인권친화적으로 출소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사업 또한 매년 규모를 확대하고, 출소자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법무부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공신력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상담, 직업훈련, 주거지원, 가족관계 회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 추진과 성과들은 공단 임직원, 그리고 법무보호위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는 강력범죄자의 출소와 연이은 재범으로 인해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함께 공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을 보다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개선의지가 강한 출소자들이 빠르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정신질환, 살인, 성범죄 등 고위험 출소자에 대해서도 공단이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사업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공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출소자들의 재범방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식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임직원과 법무보호위원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법무부 정책위원회 해단식

김선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입니다.

취임 직후 참석했던 회의에서는 화면 상으로만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 아쉬웠는데, 마지막 회의에서라도 이렇게 직접 뵐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도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그 즈음, 저는 참여정부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인수위원, 청와대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법무·검찰의 개혁을 위한 고민을 함께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안건들은 시간이 흘러 정책에 반영되거나 법제화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큰 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한

판사의 구속전피의자심문 의무화 등과 같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제도들이 그때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던 것들입니다.

이번 제16기 정책위원회에서도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안, 국적제도 개선 방안,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등 1년 동안 총 8개 안건에 대해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의 안건들은 법무행정 운영에 중요한 정책들로서 위원님 한분 한분의 소중한 제언들이 정책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하고, 법무행정의 총책임자로서,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공존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제16기 정책위원회에서 다룬 안건들은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에 힘이 되기 위한 법무부의 정책들이었습니다.

제16기 정책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법무부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당부를 유념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김선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법무부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법무부·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공동학술대회

Ⅰ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 시청중이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저희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님께서도 축사를 해주실 예정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까지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의 심장부인 울산의 시의회 박병석 의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고, 발표 및 토론에도 각계 각층에서 열 다섯분의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현대 산업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중대 재해에 대한 원인 규명은 오히려 한층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지난 2020년 12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곧바로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사건처리 전반의 단계별 프로세스 재점검, 예방시스템 체계 정립을 위해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토록 지시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책임에 상응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형주의나 엄벌주의만이 능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습적 중과실, 악의적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Ⅲ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은 기업의 조직문화 개선과 안전관리시스템 재정비를 통한 사전적인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든 대표적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례 등을 통해 본 중대재해처벌법상 쟁점이나 형사법적 해석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고, 아울러, 오늘의 논의가 안전에 대한 우리 모두의 근본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Ⅳ

법무부에서도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고,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박범계입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5월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두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이행하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직접 한국으로 모시지 못했으나 영상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신 단테피스 전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님, 〈세션 1〉의 발제를 맡아주신 존 보가츠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사대리님을 비롯하여, 오늘 귀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함께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만장일치로 채택된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포럼은 동 원칙의 세 가지 축인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구제에 대한 접근 보장'의 국내이행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과 인권 관련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권경영을 기업 활동의 제약으로 보는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계 구축은 코로나19 이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기업이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부는 2018년 8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기업과 인권' 분야를 별도의 장으로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인권경영의 제도화 및 피해구제에 관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맞는 인권경영이 무엇이고,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인권경영을 단계별로 실천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길라잡이」를 이번 달에 발간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올해 1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고, 특히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운영하여 사전적 사고 예방시스템 체계 정립과 함께 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기업의 인권존중 첫걸음은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에서의 논의가 인권옹호를 위해 기업과 정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인권경영을 더욱 확산시키는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무부 역시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기업과 인권' 정책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희망커피 1호점 개업식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희망커피 1호점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희망커피는 소년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희망커피의 개업을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제로캠프 관계자분들과 최불암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살면서 실수하곤 합니다. 그 실수로 인해 누군가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지만 누군가는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올해 11월 뉴욕시장으로 선출된 에릭 애덤스가 범죄로 인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흑인 소년이었다는 사실은, 방황했던 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년들에게 밝은 미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기 위해, 제로캠프와 법무부가 마음을 모아 희망커피 1호점을 개업하였습니다.

한마음으로 시작한 희망커피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소년들에게, 따뜻한 커피로 마음의 온도를 올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디딤돌이 되어 줄 것입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소년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희망커피 2호점, 3호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주신 제로캠프, 김천소년교도소, 서울구치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7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통일법제 전문가 연례회의(제49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회의) 폐회사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2021년도 위원으로 활동하시며 통일법무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독일 통일 직후인 1992년 2월 통일법무과의 전신인 특수법령과를 창설하고 지난 30년 동안 법률분야에서의 통일 준비를 끈기 있게 담당해 왔습니다.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는 특수법령과 창설과 함께 구성되어 북한법제, 남북교류협력법제 및 남북법률통합 등을 연구하고 통일 관련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해 왔습니다.

지난 30년간 그 구성과 운영방식이 조금씩 개편되었으나, 1992년 5월 "통일법 연구의 기본방향 및 향후 연구과제"를 주제로 제1차 학술회의를 개최한 이래, 전체 학술회의만큼은 매년 1~2회 개최되어 오늘 제49회 회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분단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국민들에게는 통일이 선택의 문제이자 까다롭고 귀찮은 문제로도 여겨지는 것을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다는 사실이, 통일법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가 오랜 기간 활동해왔다는 사실이 제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오늘 저는 법무부장관이기 이전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진지하게 고민해온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교류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주관한 교육프로그램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에서 '대한민국의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미국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하여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정책을 자문하는 맨스필드 재단 프랭크 자누지 대표와 대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남북관계의 법제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정치는 유동적이지만 법률은 견고합니다. 정치를 통한 약속과 합의는 법제화될 때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고 있지만 법률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가진 남북 법률가들의 만남은 정치의 약속을 법제화할 수 있는, 교류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법률가를 통한 교류협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아가는 신뢰와 그 신뢰를 담은 법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고민해온 저는 남북관계를 법제화함으로써 국제정치의 유동성 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국제정치라는 불안한 강 위에 법률로 만든 징검다리를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강연에 참여한 한국과 미국의 많은 법조인들과 전문가분들, 자누지 대표께서도 남북관계의 법제화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기에 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에 관한 남북 간의, 국제사회의 약속들을 규범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사명감을 안고 통일법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통일법제 연구를 위해 애써오신 노력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4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신청사 개청식 축사

법무보호위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정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 김천혁신도시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청사 개청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청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박상진 지청장님, 임영현 이사님, 법무보호위원전국연합회 이계환 회장님, 전국 취업지원 연합회 강선국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청사 개청은 2007년부터 추진된 12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경북지역 국토 균형개발계획의 완수를 의미하며, 공단으로서는 법무보호사업의 발전과 야심찬 도약을 다짐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예산과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공단 청사 이전과 신청사 개청을 이뤄낸 최운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 직업훈련 및 취업, 가족회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에는 늘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법무보호위원과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단 청사는 김천의 랜드마크로 인식될만큼 훌륭한 외형을 갖췄습니다.
신청사에서 출소자 지원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재범방지 중추기관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부도 공단 법무보호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곳 경북 김천에서도 보호대상자를 위한 법무보호사업이 지역사회주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운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법무보호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공사, 협력업체, 근로자 등 오늘 개청식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단의 더 밝은 미래와 큰 도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 박 범 계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1. 법무부장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 인(李 仁)	1948. 8. 2. ~ 1949. 6. 5.	
2 대	권승렬(權承烈)	1949. 6. 6. ~ 1950. 5. 21.	
3 대	이우익(李愚益)	1950. 5. 22. ~ 1950. 11. 22.	
4 대	김준연(金俊淵)	1950. 11. 23. ~ 1951. 5. 6.	
5 대	조진만(趙鎭滿)	1951. 5. 7. ~ 1952. 3. 4.	
6 대	서상환(徐相懽)	1952. 3. 5. ~ 1954. 6. 29.	
7 대	조용순(趙容淳)	1954. 6. 30. ~ 1955. 9. 15.	
8 대	이 호(李 澔)	1955. 9. 16. ~ 1958. 2. 19.	
9 대	홍진기(洪璡基)	1958. 2. 20. ~ 1960. 3. 23.	
10 대	권승렬(權承烈)	1960. 4. 25. ~ 1960. 8. 19.	
11 대	조재천(曺在千)	1960. 8. 23. ~ 1961. 5. 2.	
12 대	이병하(李炳夏)	1961. 5. 3. ~ 1961. 5. 18.	
13 대	고원증(高元增)	1961. 5. 20. ~ 1962. 1. 8.	
14 대	조병일(趙炳日)	1962. 1. 9. ~ 1963. 1. 31.	
15 대	장영순(張榮淳)	1963. 2. 1. ~ 1963. 4. 21.	
16 ~ 18대	민복기(閔復基)	1963. 4. 22. ~ 1966. 9. 25.	
19 대	권오병(權五柄)	1966. 9. 26. ~ 1968. 5. 20.	
20 대	이 호(李 澔)	1968. 5. 21. ~ 1970. 12. 20.	
21 대	배영호(裵泳鎬)	1970. 12. 21. ~ 1971. 6. 3.	
22 대	신직수(申稙秀)	1971. 6. 4. ~ 1973. 12. 2.	
23 대	이봉성(李鳳成)	1973. 12. 3. ~ 1974. 9. 17.	
24 ~ 25대	황산덕(黃山德)	1974. 9. 18. ~ 1976. 12. 3.	
26 대	이선중(李善中)	1976. 12. 4. ~ 1978. 12. 21.	
27 대	김치열(金致烈)	1978. 12. 22. ~ 1979. 12. 13.	
28 대	백상기(白翔起)	1979. 12. 14. ~ 1980. 5. 21.	
29 ~ 30대	오탁근(吳鐸根)	1980. 5. 22. ~ 1981. 4. 9.	
31 대	이종원(李鐘元)	1981. 4. 10. ~ 1982. 5. 20.	
32 대	정치근(鄭致根)	1982. 5. 21. ~ 1982. 6. 23.	
33 대	배명인(裵命仁)	1982. 6. 24. ~ 1985. 2. 18.	
34 대	김석휘(金錫輝)	1985. 2. 19. ~ 1985. 7. 15.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5 대	김성기(金聖基)	1985. 7. 16. ~ 1987. 5. 25.	
36 ~ 37대	정해창(丁海昌)	1987. 5. 26. ~ 1988. 12. 4.	
38 대	허형구(許亨九)	1988. 12. 5. ~ 1990. 3. 18.	
39 대	이종남(李種南)	1990. 3. 19. ~ 1991. 5. 26.	
40 대	김기춘(金淇春)	1991. 5. 27. ~ 1992. 10. 8.	
41 대	이정우(李正雨)	1992. 10. 9. ~ 1993. 2. 25.	
42 대	박희태(朴熹太)	1993. 2. 26. ~ 1993. 3. 7.	
43 대	김두희(金斗熙)	1993. 3. 8. ~ 1994. 12. 23.	
44 대	안우만(安又萬)	1994. 12. 24. ~ 1997. 3. 5.	
45 대	최상엽(崔相曄)	1997. 3. 6. ~ 1997. 8. 4.	
46 대	김종구(金鍾求)	1997. 8. 5. ~ 1998. 3. 2.	
47 대	박상천(朴相千)	1998. 3. 3. ~ 1999. 5. 23.	
48 대	김태정(金泰政)	1999. 5. 24. ~ 1999. 6. 7.	
49 대	김정길(金正吉)	1999. 6. 8. ~ 2001. 5. 20.	
50 대	안동수(安東洙)	2001. 5. 21. ~ 2001. 5. 23.	
51 대	최경원(崔慶元)	2001. 5. 24. ~ 2002. 1. 28.	
52 대	송정호(宋正鎬)	2002. 1. 29. ~ 2002. 7. 10.	
53 대	김정길(金正吉)	2002. 7. 11. ~ 2002. 11. 5.	
54 대	심상명(沈相明)	2002. 11. 9. ~ 2003. 2. 26.	
55 대	강금실(康錦實)	2003. 2. 27. ~ 2004. 7. 28.	
56 대	김승규(金昇圭)	2004. 7. 29. ~ 2005. 6. 29.	
57 대	천정배(千正培)	2005. 6. 30. ~ 2006. 7. 26.	
58 대	김성호(金成浩)	2006. 8. 30. ~ 2007. 9. 3.	
59 대	정성진(鄭城鎭)	2007. 9. 4. ~ 2008. 2. 28.	
60 대	김경한(金慶漢)	2008. 2. 29. ~ 2009. 9. 29.	
61 대	이귀남(李貴男)	2009. 9. 30. ~ 2011. 8. 10.	
62 대	권재진(權在珍)	2011. 8. 11. ~ 2013. 3. 10.	
63 대	황교안(黃敎安)	2013. 3. 11. ~ 2015. 6. 18.	
64 대	김현웅(金賢雄)	2015. 7. 9. ~ 2016. 11. 29.	
65 대	박상기(朴相基)	2017. 7. 19. ~ 2019. 9. 8.	
66 대	조 국(曺 國)	2019. 9. 9. ~ 2019. 10. 14.	
67 대	추미애(秋美愛)	2020. 1. 2. ~ 2021. 1. 27.	
68 대	박범계(朴範界)	2021. 1. 28. ~	

2. 검찰총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10. 31. ~ 1949. 6. 5.	임기제 (1988 ~)
2 대	김익진(金翼鎭)	1949. 6. 6. ~ 1950. 6. 21.	
3 대	서상환(徐相懽)	1950. 6. 22. ~ 1952. 3. 5.	
4 대	한격만(韓格晩)	1952. 3. 14. ~ 1955. 9.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5. 9. 30. ~ 1956. 7. 5.	
6 대	정순석(鄭順錫)	1956. 7. 6. ~ 1958. 3. 10.	
7 대	박승준(朴承俊)	1958. 3. 11. ~ 1960. 5. 4.	
8 대	이태희(李太熙)	1960. 5. 5. ~ 1961. 5. 27.	
9 대	장영순(張榮淳)	1961. 5. 28. ~ 1963. 1. 31.	
10 대	정창운(鄭暢雲)	1963. 2. 1. ~ 1963. 12. 6.	
11 대	신직수(申稙秀)	1963. 12. 7. ~ 1971. 6. 3.	
12 대	이봉성(李鳳成)	1971. 6. 5. ~ 1973. 12. 2.	
13 대	김치열(金致烈)	1973. 12. 3. ~ 1975. 12. 18.	
14 대	이선중(李善中)	1975. 12. 19. ~ 1976. 12. 4.	
15 대	오탁근(吳鐸根)	1976. 12. 7. ~ 1980. 5. 21.	
16 대	김종경(金鍾卿)	1980. 5. 28. ~ 1981. 3. 9.	
17 대	허형구(許亨九)	1981. 3. 10. ~ 1981. 12. 15.	
18 대	정치근(鄭致根)	1981. 12. 16. ~ 1982. 5. 21.	
19 대	김석휘(金錫輝)	1982. 5. 24. ~ 1985. 2. 18.	
20 대	서동권(徐東權)	1985. 2. 21. ~ 1987. 5. 26.	
21 대	이종남(李種南)	1987. 5. 27. ~ 1988. 12. 5.	
22 대	김기춘(金淇春)	1988. 12. 6. ~ 1990. 12. 5.	
23 대	정구영(鄭銶永)	1990. 12. 6. ~ 1992. 12. 5.	
24 대	김두희(金斗喜)	1992. 12. 6. ~ 1993. 3. 7.	
25 대	박종철(朴鍾喆)	1993. 3. 8. ~ 1993. 9. 13.	
26 대	김도언(金道彦)	1993. 9. 16. ~ 1995. 9. 15.	
27 대	김기수(金起秀)	1995. 9. 16. ~ 1997. 8. 6.	
28 대	김태정(金泰政)	1997. 8. 7. ~ 1999. 5. 24.	
29 대	박순용(朴舜用)	1999. 5. 26. ~ 2001. 5. 25.	
30 대	신승남(愼承男)	2001. 5. 26. ~ 2002. 1. 15.	
31 대	이명재(李明載)	2002. 1. 17. ~ 2002. 11. 5.	
32 대	김각영(金珏泳)	2002. 11. 11. ~ 2003. 3. 10.	
33 대	송광수(宋光洙)	2003. 4. 3. ~ 2005. 4. 2.	
34 대	김종빈(金鍾彬)	2005. 4. 4. ~ 2005. 10. 17.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11. 24. ~ 2007. 11. 23.	
36 대	임채진(林采珍)	2007. 11. 24. ~ 2009. 6. 4.	
37 대	김준규(金畯圭)	2009. 8. 20. ~ 2011. 7. 13.	
38 대	한상대(韓相大)	2011. 8. 11. ~ 2012. 12. 2.	
39 대	채동욱(蔡東旭)	2013. 4. 4. ~ 2013. 9. 27.	
40 대	김진태(金鎭太)	2013. 12. 2. ~ 2015. 11. 30.	
41 대	김수남(金秀南)	2015. 12. 2. ~ 2017. 5. 15.	
42 대	문무일(文武一)	2017. 7. 25. ~ 2019. 7. 24.	
43 대	윤석열(尹錫悅)	2019. 7. 25. ~ 2021. 3. 4.	
44 대	김오수(金汚洙)	2021. 6. 1. ~	

3. 법무부차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8. 7. ~ 1948. 10. 30.	
2 대	백한성(白漢成)	1948. 10. 31. ~ 1949. 6. 7.	
3 대	김갑수(金甲洙)	1949. 6. 8. ~ 1950. 3. 13.	
4 대	김윤근(金潤根)	1950. 3. 14. ~ 1951. 11.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1. 11. 30. ~ 1952. 5. 26.	
6 대	정재환(鄭在煥)	1952. 5. 27. ~ 1954. 2. 9.	
7 대	홍진기(洪璡基)	1954. 2. 17. ~ 1955. 10. 5.	
8 대	임석무(林碩茂)	1955. 10. 12. ~ 1956. 6. 12.	
9 대	배영호(裵泳鎬)	1956. 6. 23. ~ 1958. 3. 10.	
10 대	신언한(申彦瀚)	1958. 3. 11. ~ 1960. 5. 3.	
11 대	김영천(金永千)	1960. 7. 1. ~ 1960. 9. 29.	
12 대	김영환(金英煥)	1960. 8. 23. ~ 1961. 5. 15.	
	김영천(金永千)	1960. 9. 29. ~ 1962. 3. 18.	
13 대	서일교(徐壹敎)	1962. 3. 19. ~ 1963. 8. 7.	
14 대	권오병(權五柄)	1963. 8. 8. ~ 1965. 8. 27.	
15 대	이경호(李坰鎬)	1965. 8. 28. ~ 1968. 5. 23.	
16 대	김병화(金炳華)	1968. 5. 24. ~ 1969. 7. 27.	
17 대	오탁근(吳鐸根)	1969. 7. 28. ~ 1971. 8. 23.	
18 대	이선중(李善中)	1971. 8. 24. ~ 1973. 3. 8.	
19 대	김 선(金 璿)	1973. 3. 9. ~ 1974. 7. 7.	
20 대	김종경(金鍾卿)	1974. 7. 8. ~ 1977. 2. 16.	
21 대	이종원(李鐘元)	1977. 2. 17. ~ 1979. 2. 18.	
22 대	이용훈(李龍薰)	1979. 2. 19. ~ 1980. 5. 22.	
23 대	정태균(鄭泰均)	1980. 5. 26. ~ 1981. 4. 17.	
24 대	서동권(徐東權)	1981. 4. 25. ~ 1981. 12. 16.	
25 대	이영욱(李永旭)	1981. 12. 17. ~ 1982. 6. 17.	
26 대	정해창(丁海昌)	1982. 6. 18. ~ 1985. 2. 27.	
27 대	김종건(金鍾鍵)	1985. 2. 28. ~ 1985. 10. 18.	
28 대	이종남(李種南)	1985. 10. 19. ~ 1987. 5. 26.	
29 대	한영석(韓永錫)	1987. 5. 30. ~ 1988. 3. 4.	
30 대	서정신(徐廷信)	1988. 3. 5. ~ 1989. 3. 28.	
31 대	김두희(金斗喜)	1989. 3. 29. ~ 1991. 4. 17.	
32 대	조성욱(趙成郁)	1991. 4. 18. ~ 1993. 3. 3.	
33 대	신 건(辛 建)	1993. 3. 4. ~ 1993. 5. 27.	
34 대	김기석(金基錫)	1993. 5. 31. ~ 1994. 9. 15.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5 대	김종구(金鍾求)	1994. 9. 16. ~ 1995. 9. 19.	
36 대	김태정(金泰政)	1995. 9. 20. ~ 1997. 8. 6.	
37 대	원정일(元正一)	1997. 8. 8. ~ 1998. 3. 18.	
38 대	최경원(崔慶元)	1998. 3. 19. ~ 1999. 6. 8.	
39 대	김경한(金慶漢)	1999. 6. 9. ~ 2001. 5. 30.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1. 5. 31. ~ 2001. 9. 11.	
41 대	신광옥(辛光玉)	2001. 9. 12. ~ 2001. 12. 13.	
42 대	김승규(金昇圭)	2001. 12. 18. ~ 2002. 2. 7.	
43 대	한부환(韓富煥)	2002. 2. 8. ~ 2002. 8. 18.	
44 대	김각영(金珏泳)	2002. 8. 19. ~ 2002. 11. 10.	
45 대	명로승(明魯昇)	2002. 11. 18. ~ 2003. 3. 11.	
46 대	정상명(鄭相明)	2003. 3. 13. ~ 2004. 5. 31.	
47 대	김상희(金相喜)	2004. 6. 1. ~ 2005. 8. 26.	
48 대	김희옥(金熙玉)	2005. 9. 8. ~ 2006. 8. 25.	
49 대	정동기(鄭東基)	2006. 8. 25. ~ 2007. 3. 4.	
50 대	정진호(鄭振昊)	2007. 3. 5. ~ 2008. 3. 9.	
51 대	문성우(文晟祐)	2008. 3. 10. ~ 2009. 1. 18.	
52 대	이귀남(李貴男)	2009. 1. 19. ~ 2009. 7. 11.	
53 대	황희철(黃希哲)	2009. 8. 12. ~ 2011. 8. 12.	
54 대	길태기(吉兌基)	2011. 8. 22. ~ 2013. 12. 23.	
55 대	김학의(金學義)	2013. 3. 14. ~ 2013. 3. 22.	
56 대	국민수(鞠敏秀)	2013. 4. 10. ~ 2013. 12. 23.	
57 대	김현웅(金賢雄)	2013. 12. 24. ~ 2015. 2. 10.	
58 대	김주현(金周賢)	2015. 2. 11. ~ 2015. 12. 23.	
59 대	이창재(李昌宰)	2015. 12. 24. ~ 2017. 5. 21.	
60 대	이금로(李今魯)	2017. 5. 22. ~ 2018. 6. 21.	
61 대	김오수(金伍洙)	2018. 6. 22. ~ 2020. 4. 27.	
62 대	고기영(高基榮)	2020. 4. 28. ~ 2020. 12. 2.	
63 대	이용구(李容九)	2020. 12. 3. ~ 2021. 6. 3.	
64 대	강성국(姜聲國)	2021. 7. 14. ~	

4.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승준(朴承俊)	1949. 11. 14. ~ 1952. 4. 6.	
2 대	정창운(鄭暢雲)	1952. 4. 7. ~ 1955. 10. 25.	
3 대	정순석(鄭順錫)	1955. 10. 26. ~ 1956. 7. 6.	
4 대	박천일(朴天一)	1956. 7. 25. ~ 1958. 2. 28.	
5 대	소진섭(蘇鎭燮)	1959. 4. 22. ~ 1960. 5. 20.	
6 대	주운화(朱雲化)	1962. 4. 11. ~ 1963. 5. 8.	
7 대	김영천(金永千)	1963. 5. 9. ~ 1963. 12. 30.	
8 대	주운화(朱雲化)	1963. 12. 31. ~ 1964. 3. 2.	
9 대	김병화(金炳華)	1964. 3. 16. ~ 1968. 5. 31.	
10 대	이봉성(李鳳成)	1968. 6. 1. ~ 1971. 6. 4.	
11 대	김영천(金永千)	1971. 8. 24. ~ 1973. 3. 19.	
12 대	이영환(李永煥)	1973. 4. 6. ~ 1977. 2. 16.	
13 대	김일두(金一斗)	1977. 2. 17. ~ 1980. 7. 9.	
14 대	허형구(許亨九)	1980. 7. 28. ~ 1981. 3. 9.	
15 대	배명인(裵命仁)	1981. 4. 27. ~ 1981. 12. 16.	
16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2. 17. ~ 1982. 5. 23.	
17 대	이명희(李明熙)	1982. 6. 18. ~ 1985. 3. 4.	
18 대	이중근(李重根)	1985. 3. 5. ~ 1985. 3. 11.	
19 대	김세권(金世權)	1985. 5. 25. ~ 1986. 5. 1.	
20 대	정해창(丁海昌)	1986. 5. 2. ~ 1987. 5. 25.	
21 대	최상엽(崔相曄)	1987. 5. 30. ~ 1990. 3. 19.	
22 대	서정신(徐廷信)	1990. 3. 27. ~ 1991. 4. 17.	
23 대	김두희(金斗喜)	1991. 4. 18. ~ 1992. 12. 5.	
24 대	박종철(朴鍾喆)	1992. 12. 12. ~ 1993. 3. 8.	
25 대	김도언(金道彦)	1993. 3. 17. ~ 1993. 9. 15.	
26 대	송종의(宋宗義)	1993. 9. 21. ~ 1995. 9. 14.	
27 대	최명선(崔明善)	1995. 9. 20. ~ 1997. 8. 9.	
28 대	이원성(李源性)	1997. 8. 11. ~ 1999. 6. 3.	
29 대	신승남(愼承男)	1999. 6. 9. ~ 2001. 5. 25.	
30 대	김각영(金珏泳)	2001. 5. 31. ~ 2002. 2. 7.	
31 대	김승규(金昇圭)	2002. 2. 8. ~ 2002. 8. 18.	
32 대	김학재(金鶴在)	2002. 8. 19. ~ 2003. 3. 13.	
33 대	김종빈(金鍾彬)	2003. 3. 13. ~ 2004. 5. 31.	
34 대	이정수(李廷洙)	2004. 6. 1. ~ 2005. 3. 31.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4. 8. ~ 2005. 11. 23.	
36 대	임승관(林承寬)	2005. 11. 28. ~ 2007. 3. 4.	
37 대	정동기(鄭東基)	2007. 3. 5. ~ 2007. 11. 23.	
38 대	권재진(權在珍)	2007. 11. 26. ~ 2009. 1. 18.	
39 대	문성우(文晟祐)	2009. 1. 19. ~ 2009. 7. 13.	
40 대	차동민(車東旻)	2009. 7. 20. ~ 2011. 8. 3.	
41 대	채동욱(蔡東旭)	2011. 8. 22. ~ 2012. 12. 5.	
42 대	김진태(金鎭太)	2012. 12. 6. ~ 2013. 4. 4.	
43 대	길태기(吉兌基)	2013. 4. 10. ~ 2013. 12. 4.	
44 대	임정혁(任正赫)	2013. 12. 5. ~ 2015. 2. 10.	
45 대	김수남(金秀南)	2015. 2. 11. ~ 2015. 12. 1.	
46 대	김주현(金周賢)	2015. 12. 24. ~ 2017. 5. 21.	
47 대	봉 욱(奉 旭)	2017. 5. 22. ~ 2019. 6. 27.	
48 대	강남일(姜南一)	2019. 7. 31. ~ 2020. 1. 12.	
50 대	구본선(具本善)	2020. 1. 13. ~ 2020. 8. 10.	
51 대	조남관(趙南寬)	2020. 8. 11. ~ 2021. 6. 10.	
52 대	박성진(朴成鎭)	2021. 6. 11. ~	

5. 법무부 실·국·본부장

• 기획조정실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락윤(金洛潤)	1961. 9. 25. ~ 1962. 3. 8.	
2 대	이두성(李斗成)	1962. 8. 14. ~ 1966. 11. 18.	
3 대	나길조(羅吉祚)	1966. 11. 19. ~ 1969. 1. 9.	
4 대	윤두식(尹斗植)	1969. 1. 20. ~ 1972. 11. 21.	
5 대	정익원(鄭益源)	1972. 11. 22. ~ 1974. 8. 31.	
6 대	설동훈(薛東勳)	1974. 9. 1. ~ 1976. 2. 28.	
7 대	강우영(姜友永)	1976. 3. 1. ~ 1978. 2. 10.	
8 대	안경열(安慶烈)	1978. 2. 11. ~ 1981. 4. 26.	
9 대	송병철(宋炳喆)	1981. 4. 27. ~ 1981. 12. 16.	
10 대	김세권(金世權)	1981. 12. 17. ~ 1982. 6. 17.	
11 대	김양균(金亮均)	1982. 6. 18. ~ 1983. 7. 31.	
12 대	김유후(金有厚)	1983. 8. 1. ~ 1985. 3. 4.	
13 대	신 건(辛 建)	1985. 3. 5. ~ 1987. 6. 7.	
14 대	송종의(宋宗義)	1987. 6. 8. ~ 1989. 3. 28.	
15 대	지헌범(池憲範)	1989. 3. 29. ~ 1991. 4. 17.	
16 대	정성진(鄭城鎭)	1991. 4. 18. ~ 1991. 7. 31.	
17 대	김종구(金鍾求)	1991. 8. 1. ~ 1992. 7. 28.	
18 대	김태정(金泰政)	1992. 7. 29. ~ 1993. 3. 16.	
19 대	김상수(金相洙)	1993. 3. 17. ~ 1993. 9. 20.	
20 대	최경원(崔慶元)	1993. 9. 21. ~ 1994. 9. 15.	
21 대	최병국(崔炳國)	1994. 9. 16. ~ 1995. 9. 19.	
22 대	김경한(金慶漢)	1995. 9. 20. ~ 1997. 1. 22.	
23 대	신승남(愼承男)	1997. 1. 23. ~ 1997. 8. 13.	
24 대	윤동민(尹東旻)	1997. 8. 14. ~ 1998. 3. 22.	
25 대	신광옥(辛光玉)	1998. 3. 23. ~ 1999. 2. 21.	
26 대	김각영(金珏泳)	1999. 2. 22. ~ 1999. 6. 8.	
27 대	이범관(李範觀)	1999. 6. 9. ~ 2000. 7. 14.	
28 대	장윤석(張倫碩)	2000. 7. 15. ~ 2001. 5. 30.	
29 대	채수철(蔡秀哲)	2001. 5. 31. ~ 2002. 2. 7.	
30 대	정상명(鄭相明)	2002. 2. 8. ~ 2003. 3. 12.	
31 대	박상길(朴相吉)	2003. 3. 13. ~ 2004. 5. 31.	
32 대	김회선(金會瑄)	2004. 6. 1. ~ 2005. 4. 4.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3 대	이귀남(李貴男)	2005. 4. 8. ~ 2006. 2. 5.	2005. 5. 2.
34 대	황희철(黃希哲)	2006. 2. 6. ~ 2006. 3. 15.	정책홍보
35 대	박한철(朴漢徹)	2006. 3. 16. ~ 2007. 3. 4.	관리실로
36 대	박영렬(朴永烈)	2007. 3. 5. ~ 2008. 3. 10.	개편
37 대	소병철(蘇秉哲)	2008. 3. 11. ~ 2009. 1. 18.	2008. 2. 29.
38 대	김수남(金秀南)	2009. 1. 19. ~ 2009. 8. 11.	기획조정실로
39 대	최재경(崔在卿)	2009. 8. 12. ~ 2010. 7. 14.	개편
40 대	김희관(金熙官)	2010. 7. 15. ~ 2011. 8. 21.	
41 대	조성욱(曺成旭)	2011. 8. 22. ~ 2012. 7. 17.	
42 대	김주현(金周賢)	2012. 7. 18. ~ 2013. 4. 9.	
43 대	봉 욱(奉 旭)	2013. 4. 10. ~ 2013. 12. 23.	
44 대	안태근(安兌根)	2013. 12. 24. ~ 2015. 2. 10.	
45 대	진경준(陳炅準)	2015. 2. 11. ~ 2015. 12. 23.	
46 대	권익환(權益煥)	2015. 12. 24. ~ 2017. 7. 31.	
47 대	조상철(趙商喆)	2017. 8. 1. ~ 2018. 6. 21.	
48 대	강남일(姜南一)	2018. 6. 22. ~ 2019. 7. 30.	
49 대	김후곤(金煦坤)	2019. 7. 31. ~ 2020. 1. 12.	
50 대	심우정(沈雨廷)	2020. 1. 13. ~ 2021. 6. 10.	
51 대	주영환(朱映奐)	2021. 6. 11. ~	

• 법무실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갑수(金甲洙)	1948. 11. 4. ~ 1949. 7. 1.	1948. 11. 4.
2 대	민복기(閔復基)	1949. 7. 2. ~ 1949. 12. 31.	법무국 신설
3 대	홍진기(洪璡基)	1950. 4. 1. ~ 1954. 2. 17.	
4 대	배영호(裵泳鎬)	1954. 4. 6. ~ 1956. 6. 22.	
5 대	김영천(金永千)	1956. 6. 23. ~ 1960. 6. 30.	
6 대	이경호(李坰鎬)	1960. 7. 1. ~ 1965. 8. 27.	
7 대	김 선(金 璿)	1965. 10. 1. ~ 1966. 11. 18.	
8 대	이선중(李善中)	1966. 11. 19. ~ 1971. 8. 23.	1967. 4. 10.
9 대	김종경(金鍾卿)	1971. 8. 26. ~ 1974. 7. 7.	법무실로
10 대	주문기(朱文基)	1974. 9. 1. ~ 1978. 2. 10.	개편
11 대	변무관(卞務寬)	1978. 2. 11. ~ 1979. 8. 31.	
12 대	강우영(姜友永)	1979. 9. 1. ~ 1980. 6. 8.	
13 대	이길주(李桔柱)	1980. 6. 9. ~ 1981. 4. 26.	
14 대	백광현(白光鉉)	1981. 4. 27. ~ 1981. 12. 16.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5 대	이준승(李準昇)	1981. 12. 17. ~ 1982. 6. 17.	
16 대	한영석(韓永錫)	1982. 6. 18. ~ 1985. 3. 4.	
17 대	김유후(金有厚)	1985. 3. 5. ~ 1987. 6. 7.	
18 대	임상현(任尙鉉)	1987. 6. 8. ~ 1989. 3. 28.	
19 대	황길수(黃吉秀)	1989. 3. 29. ~ 1991. 7. 31.	
20 대	정성진(鄭城鎭)	1991. 8. 1. ~ 1992. 7. 28.	
21 대	문종수(文鍾洙)	1992. 7. 29. ~ 1993. 3. 16.	
22 대	신창언(申昌彦)	1993. 3. 17. ~ 1993. 9. 20.	
23 대	주광일(朱光逸)	1993. 9. 21. ~ 1994. 9. 15.	
24 대	김수장(金壽長)	1994. 9. 16. ~ 1995. 9. 19.	
25 대	김상수(金相洙)	1995. 9. 20. ~ 1995. 9. 26.	
26 대	신승남(愼承男)	1995. 9. 27. ~ 1997. 1. 22.	
27 대	공영규(孔永規)	1997. 1. 23. ~ 1997. 8. 13.	
28 대	강신욱(姜信旭)	1997. 8. 14. ~ 1998. 3. 22.	
29 대	김영철(金永喆)	1998. 3. 23. ~ 1999. 6. 8.	
30 대	송광수(宋光洙)	1999. 6. 9. ~ 1999. 8. 23.	
31 대	정충수(鄭忠秀)	1999. 8. 24. ~ 2000. 7. 14.	
32 대	명로승(明魯昇)	2000. 7. 15. ~ 2001. 5. 30.	
33 대	김영진(金永珍)	2001. 5. 31. ~ 2002. 2. 7.	
34 대	장윤석(張倫碩)	2002. 2. 8. ~ 2002. 8. 18.	
35 대	유창종(柳昌宗)	2002. 8. 19. ~ 2002. 11. 17.	
36 대	박종열(朴淙烈)	2002. 11. 18. ~ 2003. 3. 12.	
37 대	홍경식(洪景植)	2003. 3. 13. ~ 2003. 8. 4.	
38 대	이기배(李棋培)	2003. 8. 5. ~ 2004. 5. 31.	
39 대	안영욱(安永昱)	2004. 6. 1. ~ 2005. 4. 7.	
40 대	김준규(金畯圭)	2005. 4. 8. ~ 2007. 3. 4.	
41 대	한상대(韓相大)	2007. 3. 5. ~ 2009. 1. 18.	
42 대	채동욱(蔡東旭)	2009. 1. 19. ~ 2009. 8. 11.	
43 대	성영훈(成永薰)	2009. 8. 12. ~ 2010. 7. 14.	
44 대	한명관(韓明官)	2010. 7. 15. ~ 2011. 8. 21.	
45 대	정병두(鄭炳斗)	2011. 8. 22. ~ 2012. 7. 17.	
46 대	황윤성(黃允成)	2012. 7. 18. ~ 2013. 4. 9.	
47 대	강찬우(姜燦佑)	2013. 4. 10. ~ 2013. 12. 23.	
48 대	정인창(鄭仁昌)	2013. 12. 24. ~ 2015. 2. 10.	
49 대	봉 욱(奉 旭)	2015. 2. 11. ~ 2015. 12. 23	
50 대	김호철(金浩徹)	2015. 12. 24. ~ 2017. 7. 31.	
51 대	이용구(李容九)	2017. 8. 22. ~ 2020. 5. 18.	
52 대	강성국(姜聲國)	2020. 7. 6. ~ 2021. 7. 13.	
53 대	이상갑(李尙甲)	2021. 8. 6. ~	

• 검찰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민복기(閔復基)	1948. 11. 4. ~ 1949. 7. 1.	1948. 11. 4.
2 대	이태희(李太熙)	1949. 7. 2. ~ 1949. 9. 22.	신설
3 대	최병석(崔秉錫)	1949. 11. 8. ~ 1950. 4. 20.	
4 대	신언한(申彦瀚)	1950. 6. 8. ~ 1952. 7. 17.	
5 대	권오병(權五柄)	1952. 7. 18. ~ 1953. 11. 6.	
6 대	김장섭(金長涉)	1953. 11. 23. ~ 1954. 3. 23.	
7 대	박천일(朴天一)	1954. 4. 3. ~ 1956. 7. 24.	
8 대	김치열(金致烈)	1956. 9. 17. ~ 1958. 3. 13.	
9 대	김장섭(金長涉)	1958. 3. 14. ~ 1958. 8. 30.	
10 대	주운화(朱雲化)	1958. 9. 10. ~ 1960. 9. 23.	
11 대	김찬수(金纘洙)	1960. 9. 24. ~ 1961. 7. 19.	
12 대	위청용(韋靑龍)	1961. 7. 20. ~ 1961. 12. 22.	
13 대	김용제(金龍濟)	1962. 1. 26. ~ 1963. 5. 30.	
14 대	윤두식(尹斗植)	1963. 5. 31. ~ 1964. 10. 16.	
15 대	윤운영(尹雲永)	1964. 10. 17. ~ 1966. 11. 18.	
16 대	김일두(金一斗)	1966. 11. 19. ~ 1968. 5. 31.	
17 대	김성재(金聖在)	1968. 6. 1. ~ 1969. 8. 1.	
18 대	박원호(朴元鎬)	1969. 8. 2. ~ 1971. 8. 25.	
19 대	이종원(李鐘元)	1971. 8. 26. ~ 1973. 4. 5.	
20 대	서정각(徐廷覺)	1973. 4. 6. ~ 1975. 9. 30.	
21 대	허형구(許亨九)	1975. 10. 1. ~ 1979. 2. 18.	
22 대	문상익(文相翼)	1979. 2. 19. ~ 1980. 6. 8.	
23 대	배명인(裵命仁)	1980. 6. 9. ~ 1981. 4. 26.	
24 대	정해창(丁海昌)	1981. 4. 27. ~ 1981. 12. 16.	
25 대	김기춘(金淇春)	1981. 12. 17. ~ 1982. 6. 17.	
26 대	정구영(鄭銶永)	1982. 6. 18. ~ 1985. 3. 4.	
27 대	김두희(金斗喜)	1985. 3. 5. ~ 1987. 6. 7.	
28 대	김유후(金有厚)	1987. 6. 8. ~ 1989. 3. 28.	
29 대	박종철(朴鍾喆)	1989. 3. 29. ~ 1990. 3. 26.	
30 대	김도언(金道彦)	1990. 3. 27. ~ 1991. 4. 17.	
31 대	최명부(崔明夫)	1991. 4. 18. ~ 1993. 3. 16.	
32 대	김종구(金鍾求)	1993. 3. 17. ~ 1993. 9. 20.	
33 대	최영광(崔永光)	1993. 9. 21. ~ 1994. 9. 15.	
34 대	최 환(崔 桓)	1994. 9. 16. ~ 1995. 9. 19.	
35 대	김진세(金鎭世)	1995. 9. 20. ~ 1997. 1. 22.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6 대	박순용(朴舜用)	1997. 1. 23. ~ 1997. 8. 13.	
37 대	최경원(崔慶元)	1997. 8. 14. ~ 1998. 3. 18.	
38 대	신승남(愼承男)	1998. 3. 23. ~ 1999. 6. 8.	
39 대	한부환(韓富煥)	1999. 6. 9. ~ 2000. 7. 14.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0. 7. 15. ~ 2001. 5. 30.	
41 대	송광수(宋光洙)	2001. 5. 31. ~ 2002. 2. 7.	
42 대	김진환(金振煥)	2002. 2. 8. ~ 2002. 8. 18.	
43 대	장윤석(張倫碩)	2002. 8. 19. ~ 2003. 3. 12.	
44 대	홍석조(洪錫肇)	2003. 3. 13. ~ 2003. 8. 4.	
45 대	이종백(李鍾伯)	2003. 8. 5. ~ 2004. 5. 31.	
46 대	임채진(林采珍)	2004. 6. 1. ~ 2006. 2. 5.	
47 대	문성우(文晟祐)	2006. 2. 6. ~ 2008. 3. 9.	
48 대	차동민(車東珉)	2008. 3. 11. ~ 2009. 1. 18.	
49 대	한상대(韓相大)	2009. 1. 19. ~ 2009. 8. 11.	
50 대	최교일(崔敎一)	2009. 8. 12. ~ 2011. 8. 21.	
51 대	국민수(鞠敏秀)	2011. 8. 22. ~ 2013. 4. 9.	
52 대	김주현(金周賢)	2013. 4. 10. ~ 2015. 2. 10.	
53 대	안태근(安兌根)	2015. 2. 11. ~ 2017. 5. 21.	
54 대	박균택(朴均澤)	2017. 5. 22. ~ 2018. 6. 18	
55 대	윤대진(尹大鎭)	2018. 6. 19. ~ 2019. 7. 30.	
56 대	이성윤(李盛潤)	2019. 7. 31. ~ 2020. 1. 12.	
57 대	조남관(趙南寬)	2020. 1. 13. ~ 2020. 8. 10.	
58 대	심재철(沈載哲)	2020. 8. 11. ~ 2021. 2. 8.	
59 대	이정수(李正洙)	2021. 2. 9. ~ 2021. 6. 10.	
60 대	구자현(具滋賢)	2021. 6. 11. ~	

• 보호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 26. ~ 1981. 4. 26.	1981. 1. 19.
2 대	박일흠(朴一欽)	1981. 4. 27. ~ 1982. 6. 20.	신설
3 대	이병근(李秉根)	1982. 6. 21. ~ 1983. 7. 31.	
4 대	김도언(金道彦)	1983. 8. 17. ~ 1985. 3. 5.	
5 ~ 6대	임상현(任尙鉉)	1985. 3. 12. ~ 1987. 6. 7.	
7 대	변재일(卞在日)	1987. 6. 8. ~ 1989. 3. 28.	
8 대	장응수(張應水)	1989. 3. 29. ~ 1991. 4. 17.	
9 대	지헌범(池憲範)	1991. 4. 18. ~ 1992. 7. 28.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0 대	김기수(金起秀)	1992. 7. 29. ~ 1993. 3. 16.	
11 대	김태정(金泰政)	1993. 3. 17. ~ 1993. 4. 2.	
12 대	원정일(元正一)	1993. 4. 3. ~ 1993. 9. 20.	
13 대	김수장(金壽長)	1993. 9. 21. ~ 1994. 9. 15.	
14 대	김병학(金秉學)	1994. 9. 16. ~ 1995. 9. 19.	
15 대	이재신(李載侁)	1995. 9. 20. ~ 1997. 1. 22.	
16 대	송정호(宋正鎬)	1997. 1. 23. ~ 1997. 8. 13.	
17 대	김영철(金永喆)	1997. 8. 14. ~ 1998. 3. 22.	
18 대	윤동민(尹東旻)	1998. 3. 23. ~ 1999. 2. 3.	
19 대	신광옥(辛光玉)	1999. 2. 22. ~ 1999. 6. 8.	
20 대	정충수(鄭忠秀)	1999. 6. 9. ~ 1999. 8. 23.	
21 대	박종열(朴淙烈)	1999. 8. 24. ~ 2001. 5. 30.	
22 대	김종빈(金鍾彬)	2001. 5. 31. ~ 2002. 2. 7.	
23 대	조규정(趙圭政)	2002. 2. 8. ~ 2002. 11. 17.	
24 대	윤종남(尹鍾南)	2002. 11. 18. ~ 2003. 3. 12.	
25 대	정동기(鄭東基)	2003. 3. 13. ~ 2004. 5. 31.	
26 대	정진호(鄭振昊)	2004. 6. 1. ~ 2005. 4. 7.	
27 대	이승구(李承玖)	2005. 4. 8. ~ 2005. 9. 11.	
28 대	김수민(金秀敏)	2005. 9. 12. ~ 2007. 3. 4.	
29 대	이상도(李相燾)	2007. 3. 5. ~ 2008. 3. 10.	

• 범죄예방정책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기준(朴基俊)	2008. 3. 11. ~ 2009. 1. 18.	
2 대	소병철(蘇秉哲)	2009. 1. 19. ~ 2009. 8. 11.	
3 대	주철현(朱哲鉉)	2009. 8. 12. ~ 2010. 7. 14.	
4 대	김수남(金秀南)	2010. 7. 15. ~ 2011. 8. 21.	
5 대	김희관(金熙官)	2011. 8. 22. ~ 2012. 7. 17.	
6 대	이건주(李健周)	2012. 7. 18. ~ 2013. 4. 9.	
7 대	문무일(文武一)	2013. 4. 10. ~ 2013. 12. 23.	
8 대	황철규(黃喆奎)	2013. 12. 24. ~ 2015. 2. 10.	
9 대	오광수(吳桄洙)	2015. 2. 11. ~ 2015. 12. 23.	
10 대	이상호(李相虎)	2015. 12. 24. ~ 2017. 7. 31.	
11 대	고기영(高基榮)	2017. 8. 1. ~ 2018. 2. 27.	
12 대	강호성(姜鎬成)	2018. 4. 2. ~ 2021. 6. 29.	
13 대	윤웅장(尹雄章)	2021. 8. 6. ~	

• 인권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준규(金畯圭)	2006. 5. 3. ~ 2006. 8. 6.	2006. 5. 3.신설
2 대	김종훈(金鍾勳)	2006. 8. 7. ~ 2009. 2. 15.	개 방 직
3 대	조영곤(曺永昆)	2009. 2. 28. ~ 2009. 8. 11.	검 사
4 대	송찬엽(宋讚燁)	2009. 8. 31. ~ 2010. 7. 14.	검 사
5 대	박민표(朴珉豹)	2010. 8. 2. ~ 2011. 9. 4.	검 사
6 대	이명재(李明宰)	2011. 9. 5. ~ 2012. 7. 17.	검 사
7 대	봉 욱(奉 旭)	2012. 7. 26. ~ 2013. 4. 9.	검 사
8 대	안태근(安兌根)	2013. 4. 23. ~ 2013. 12. 23.	검 사
9 대	한찬식(韓璨湜)	2014. 1. 16. ~ 2015. 2. 10.	검 사
10 대	차경환(車京煥)	2015. 2. 25. ~ 2015. 12. 23.	검 사
11 대	권정훈(權政勳)	2016. 1. 13. ~ 2017. 8. 16.	검 사
12 대	황희석(黃希錫)	2017. 9. 29. ~ 2020. 1. 14.	개 방 직
13 대	이상갑(李尙甲)	2020. 8. 28. ~ 2021. 8. 5.	개 방 직

• 감찰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임채진(林采珍)	2005. 2. 1. ~ 2005. 4. 7.	직무대리
2 대	선우영(鮮于泳)	2005. 4. 8. ~ 2005. 9. 11.	
3 대	이승구(李承玖)	2005. 9. 12. ~ 2006. 2. 5.	
4 대	안종택(安鍾澤)	2006. 2. 6. ~ 2007. 3. 4.	
5 대	이복태(李福泰)	2007. 3. 5. ~ 2008. 3. 10.	
6 대	곽상욱(郭相煜)	2008. 4. 15. ~ 2009. 8. 11.	
7 대	이경재(李慶在)	2009. 9. 10. ~ 2010. 7. 14.	
8 대	안장근(安章根)	2010. 9. 1. ~ 2012. 8. 31.	개 방 직
9 대	안장근(安章根)	2012. 9. 1. ~ 2014. 8. 31.	개 방 직
10 대	김주현(金周賢)	2014. 9. 1. ~ 2015. 2. 10.	직무대리
11 대	안태근(安兌根)	2015. 2. 11. ~ 2015. 3. 15.	직무대리
12 대	장인종(張仁鍾)	2015. 3. 16. ~ 2017. 3. 15.	개 방 직
13 대	장인종(張仁鍾)	2017. 3. 16. ~ 2018. 4. 19.	개 방 직
14 대	송규종(宋奎鍾)	2018. 4. 20. ~ 2018. 7. 18.	직무대리
15 대	이정현(李定炫)	2018. 7. 19. ~ 2019. 4. 28.	직무대리
16 대	마광열(馬光烈)	2019. 4. 29. ~ 2020. 5. 10.	개 방 직
17 대	박은정(朴恩貞)	2020. 5. 11. ~ 2020. 7. 5.	직무대리
18 대	류 혁(柳 赫)	2020. 7. 6. ~	개 방 직

• 교정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윤용섭(尹用燮)	1948. 11. 8. ~ 1949. 11. 8.	1948. 11. 4.
2 대	원탁연(元鐸淵)	1949. 11. 8. ~ 1951. 8. 28.	형정국 신설
3 대	최세황(崔世璜)	1951. 8. 29. ~ 1952. 7. 18.	
4 대	신언한(申彦瀚)	1952. 7. 19. ~ 1958. 3. 11.	
5 대	이병호(李丙浩)	1958. 3. 12. ~ 1960. 9. 23.	
6 대	이홍규(李弘圭)	1960. 9. 24. ~ 1961. 6. 21.	
7 대	서일교(徐壹敎)	1961. 6. 22. ~ 1962. 3. 18.	1962. 5. 21.
8 대	이봉성(李鳳成)	1962. 3. 19. ~ 1964. 10. 16.	교정국으로
9 대	윤두식(尹斗植)	1964. 10. 17. ~ 1966. 11. 18.	개편
10 대	윤운영(尹雲永)	1966. 11. 19. ~ 1968. 12. 1.	
11 대	김덕문(金德文)	1968. 12. 2. ~ 1971. 8. 25.	
12 대	김일두(金一斗)	1971. 8. 26. ~ 1973. 4. 5.	
13 대	이종원(李鐘元)	1973. 4. 6. ~ 1975. 9. 30.	
14 대	김윤근(金潤槿)	1975. 10. 1. ~ 1977. 2. 16.	
15 대	송종진(宋鍾辰)	1977. 2. 17. ~ 1979. 2. 18.	
16 대	김석휘(金錫輝)	1979. 2. 19. ~ 1981. 4. 26.	
17 대	안경상(安景相)	1981. 4. 27. ~ 1981. 12. 16.	
18 대	김종건(金鐘鍵)	1981. 12. 17. ~ 1983. 7. 31.	
19 대	이병근(李秉根)	1983. 8. 1. ~ 1986. 5. 2.	
20 대	허은도(許殷道)	1986. 5. 3. ~ 1987. 6. 7.	
21 대	김동철(金東哲)	1987. 6. 8. ~ 1988. 8. 24.	
22 대	신 건(辛 建)	1988. 8. 25. ~ 1991. 4. 17.	
23 대	유순석(柳淳錫)	1991. 4. 18. ~ 1993. 3. 16.	
24 대	김기수(金起秀)	1993. 3. 17. ~ 1993. 5. 31.	직무대리
25 대	원정일(元正一)	1993. 6. 1. ~ 1993. 9. 20.	
26 대	김택수(金澤秀)	1993. 9. 21. ~ 1994. 9. 15.	
27 대	원정일(元正一)	1994. 9. 16. ~ 1995. 9. 19.	검사장급
28 대	박순용(朴舜用)	1995. 9. 20. ~ 1997. 1. 22.	
29 대	유재성(柳在成)	1997. 1. 23. ~ 1997. 8. 13.	
30 대	김수장(金壽長)	1997. 8. 14. ~ 1998. 3. 22.	
31 대	김경한(金慶漢)	1998. 3. 23. ~ 1999. 6. 8.	
32 대	이순길(李淳吉)	1999. 6. 9. ~ 2001. 6. 30.	일반직
33 대	김명환(金明煥)	2001. 7. 1. ~ 2002. 12. 31.	
34 대	하근수(河根洙)	2003. 1. 1. ~ 2003. 12. 31.	
35 대	양봉태(梁奉泰)	2004. 1. 19. ~ 2005. 12. 31.	
36 대	이인순(李仁焞)	2006. 1. 1. ~ 2006. 6. 25.	
37 대	승성신(承聖信)	2006. 6. 26. ~ 2007. 11. 29.	

• 교정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승성신(承聖信)	2007. 11. 30. ~ 2008. 6. 29.	
2 대	이태희(李台熙)	2008. 6. 30. ~ 2010. 6. 29.	
3 대	안동주(安東珠)	2010. 6. 30. ~ 2012. 6. 30.	
4 대	김태훈(金兌勳)	2012. 7. 1. ~ 2014. 6. 30.	
5 대	윤경식(尹慶植)	2014. 7. 16. ~ 2016. 6. 30.	일반직
6 대	김학성(金學成)	2016. 7. 1. ~ 2018. 6. 30.	
7 대	최강주(崔康柱)	2018. 7. 1. ~ 2020. 6. 30.	
8 대	이영희(李英姬)	2020. 7. 6. ~ 2021. 6. 30.	
9 대	유병철(柳炳喆)	2021. 7. 1. ~	

• 출입국관리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영환(李永煥)	1970. 9. 1. ~ 1971. 8. 25.	1970. 8. 20.
2 대	정익원(鄭益源)	1971. 8. 26. ~ 1972. 11. 21.	신설
3 대	안경열(安慶烈)	1972. 11. 22. ~ 1976. 6. 20.	
4 대	이길주(李桔柱)	1976. 6. 21. ~ 1978. 2. 10.	검사장급
5 대	정명래(鄭明來)	1978. 2. 11. ~ 1980. 6. 8.	
6 대	김용인(金用璘)	1980. 6. 9. ~ 1981. 4. 26.	
7 대	김기춘(金淇春)	1981. 4. 27. ~ 1981. 12. 16.	
8 대	정구영(鄭銶永)	1981. 12. 17. ~ 1982. 6. 17.	
9 대	박희태(朴熹太)	1982. 6. 18. ~ 1983. 7. 31.	
10 대	안태현(安泰鉉)	1983. 8. 1. ~ 1987. 2. 28.	일반직
11 대	조기현(曺麒鉉)	1987. 3. 2. ~ 1989. 4. 14.	
12 대	김우진(金宇鎭)	1989. 4. 15. ~ 1991. 6. 30.	
13 대	김시평(金時評)	1991. 7. 1. ~ 1993. 9. 30.	
14 대	홍석종(洪錫宗)	1993. 10. 1. ~ 1995. 3. 31.	
15 대	유병랑(兪炳郎)	1995. 4. 1. ~ 1997. 5. 31.	
16 대	구창덕(具昌德)	1997. 6. 1. ~ 1999. 4. 1.	
17 대	김수영(金秀永)	1999. 4. 2. ~ 2001. 6. 30.	
18 대	최수근(崔洙根)	2001. 7. 1. ~ 2003. 11. 21.	
19 대	이민희(李珉熙)	2003. 12. 5. ~ 2005. 12. 4.	계약직
20 대	강명득(姜命得)	2005. 12. 5. ~ 2007. 4. 1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추규호(秋圭昊)	2007. 7. 10. ~ 2009. 7. 10.	계약직
2 대	석동현(石東炫)	2009. 8. 12. ~ 2011. 8. 21.	검사장
3 대	이창세(李昌世)	2011. 8. 22. ~ 2013. 4. 3.	검사장
4 대	정동민(鄭東敏)	2013. 4. 10. ~ 2013. 12. 23.	검사장
5 대	한무근(韓武根)	2013. 12. 24. ~ 2015. 2. 10.	검사장
6 대	김영준(金英畯)	2015. 2. 11. ~ 2015. 12. 23.	검사장
7 대	진경준(陳炅準)	2015. 12. 24. ~ 2016. 5. 22.	검사장
8 대	김우현(金宇鉉)	2016. 5. 23. ~ 2017. 7. 31.	검사장
9 대	차규근(車圭根)	2017. 9. 4. ~ 2021. 7. 1.	일반직
1 0 대	이재유(李在兪)	2021. 7. 2. ~	일반직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1. 본 부(5급 이상)

(2021. 12. 31. 기준)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장 관	**박범계**	**2021. 1. 28.**	검 찰 사 무 관	이상우	2014. 5. 1.
차 관	**강성국**	**2021. 7. 14.**	보 호 사 무 관	김정근	2020. 2. 6.
장관정책보좌관	양선순	2021. 7. 2.	출입국관리사무관	유현송	2020. 7. 20.
〃	강상묵	2021. 2. 3.	교 정 관	임종오	2020. 9. 21.
검 사	서경원	2021. 5. 3.	행 정 사 무 관	지상균	2020. 2. 10.
〃	이동근	2021. 2. 3.	〃	김혜빈	2021. 7. 1.
감 찰 관	**류 혁**	**2020. 7. 6.**	**기획조정실장**	**주영환**	2021. 6. 11.
감찰담당관	임은정	2021. 7. 2.	정 책 기 획 관	최정석	2020. 7. 1.
검 사	임삼빈	2021. 7. 2.	검 사	정우석	2020. 2. 3.
검 사	안광현	2021. 7. 2.	검 사	김대현	2021. 8. 2.
검 사	황성민	2021. 8. 2.	행 정 사 무 관	이현정	2019. 4. 22.
검찰사무관	이기용	2019. 1. 28.	교 정 관	임용희	2021. 8. 30.
〃	남호현	2019. 12. 23.	비상안전기획관	정 일	2019. 1. 1.
〃	최병주	2020. 2. 10.	행 정 사 무 관	이동주	2020. 3. 30.
〃	김승남	2020. 2. 10.	정책기획단장	차순길	2021. 7. 2.
교 정 관	조영혁	2019. 1. 28.	검 사	정광수	2021. 7. 2.
감사담당관	유지중	2019. 7. 1.	〃	김주현	2021. 7. 2.
서 기 관	박기주	2021. 1. 25.	〃	이수창	2021. 8. 2.
〃	유정호	2021. 1. 18.	검찰사무관	김도연	2021. 2. 22.
〃	조시형	2018. 1. 15.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팀장	서지현	2020. 2. 13.
행정사무관	서혜주	2019. 1. 14.	검 사	정미란	2021. 8. 2.
〃	이상영	2018. 1. 15.	출입국관리사무관	정길수	2021. 7. 19.
〃	이준서	2019. 7. 1.	기획재정담당관	천정훈	2019. 7. 1.
〃	백영준	2020. 2. 10.	서 기 관	임성훈	2020. 8. 25.
공업사무관	최해규	2018. 7. 1.	〃	고영석	2020. 2. 10.
운영지원과장	김정열	2020. 7. 1.	행 정 사 무 관	김용갑	2019. 4. 22.
서 기 관	김홍준	2020. 2. 10.	〃	박노화	2021. 11. 8.
행정사무관	권태성	2021. 1. 25.	혁신행정담당관	김상권	2019. 7. 1.
〃	한제오	2020. 2. 10.	서 기 관	박종권	2020. 8. 25.
〃	김현우	2021. 1. 25.	행 정 사 무 관	김승권	2021. 2. 22.
〃	홍진희	2017. 8. 1.	〃	김효민	2020. 2. 10.
시설사무관	김 송	2021. 1. 3.	시 설 담 당 관	배성용	2019. 1. 1.
대 변 인	박현주	2021. 7. 2.	서 기 관	김종관	2020. 11. 7.
부대변인	권내건	2021. 7. 2.	기 술 서 기 관	엄동철	2020. 1. 1.
홍보담당관	한정진	2013. 9. 1.	시 설 사 무 관	최기용	2018. 4. 16.
홍보기획팀장	최성우	2020. 11. 26.	〃	이인환	2019. 9. 9.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	김진국	2020. 3. 30.	서기관(일반임기제)	설기석	2021. 3. 15.
〃	최명근	2021. 11. 8.	검 찰 사 무 관	고동재	2021. 8. 9.
공 업 사 무 관	장동선	2019. 12. 2.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홍정	2021. 6. 1.
보 호 사 무 관	최상현	2016. 4. 4.	행정사무관(한시임기제)	김지은	2021. 6. 14.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주양근	2020. 1. 1.	국 제 법 무 과 장	박정현	2020. 12. 7.
기 술 서 기 관	김희성	2019. 1. 1.	검 찰 사 무 관	김보경	2021. 2. 22.
〃	유상동	2020. 1. 1.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최승은	2019. 8. 7.
전 산 사 무 관	김시은	2021. 1. 25.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하영	2020. 12. 28.
〃	서종석	2018. 1. 15.	국제분쟁대응과장	한창완	2020. 8. 5.
〃	정성훈	2018. 10. 11.	검 사	유새롬	2020. 8. 5.
〃	유재두	2021. 9. 6.	서기관(일반임기제)	이현송	2020. 8. 5.
전산사무관(일반임기제)	김종철	2019. 12. 2.	〃	엄영신	2020. 8. 5.
정책성과관리팀장	조오행	2020. 11. 7.	행 정 사 무 관	권호연	2021. 8. 16.
행 정 사 무 관	이강채	2020. 3. 30.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조규현	2020. 8. 5.
〃	유재륜	2021. 8. 16.	〃	강지아	2020. 11. 16.
행복민원센터장	조상민	2021. 1. 18.	〃	황지택	2020. 11. 16.
시 설 사 무 관	양상준	2020. 2. 3.	국 가 소 송 과 장	김기수	2019. 8. 19.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윤전	2019. 11. 20.	검 찰 사 무 관	유영걸	2021. 8. 9.
행 정 사 무 관	김유호	2019. 5. 7.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윤경식	2019. 8. 6.
〃	김정원	2021. 4. 6.	〃	양윤수	2020. 12. 28.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한제희	2021. 7. 2.	〃	김창형	2020. 12. 28.
검 사	김상준	2020. 2. 3.	〃	서 려	2021. 1. 11.
전 산 사 무 관	윤정희	2021. 8. 9.	행 정 사 무 관	강형광	2021. 4. 21.
〃	강정관	2020. 8. 31.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배정범	2021. 8. 9.
〃	오은정	2021. 3. 2.	행 정 소 송 과 장	송창현	2020. 12. 28.
보 호 사 무 관	장윤정	2020. 1. 13.	검찰수사서기관	장종효	2021. 2. 22.
법 무 실 장	**이상갑**	**2021. 8. 6.**	검 찰 사 무 관	이창균	2020. 12. 28.
법 무 심 의 관	정재민	2020. 11. 2.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종균	2020. 12. 28.
서기관(일반임기제)	임성택	2019. 2. 11.	〃	박신영	2020. 12. 28.
〃	김상이	2021. 3. 15.	〃	이여진	2020. 12. 28.
〃	이세주	2021. 5. 17.	〃	신재우	2020. 12. 28.
행 정 사 무 관	김범영	2021. 2. 22.	〃	장혜명	2021. 5. 24.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고민지	2018. 2. 5.	〃	최신아	2021. 11. 8.
〃	김민지	2020. 5. 1.	통 일 법 무 과 장	장소영	2020. 9. 3.
〃	허창환	2020. 5. 1.	서기관(일반임기제)	한경태	2019. 2. 11.
송 무 심 의 관	김의래	2020. 12. 28.	검 찰 사 무 관	이해형	2019. 9. 30.
법 무 과 장	정지은	2021. 7. 2.	〃	이응현	2021. 2. 22.
검찰수사서기관	김수연	2021. 2. 22.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태희	2019. 10. 14.
〃	송 희	2021. 7. 1.	〃	이예은	2021. 4. 5.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행 정 사 무 관	장윤정	2021. 8. 16.	〃	최제웅	2021. 2. 22.
상 사 법 무 과 장	임철현	2020. 10. 26.	형 사 법 제 과 장	문지선	2021. 7. 2.
서 기 관 (일 반 임 기 제)	강신형	2021. 12. 17.	검 사	이경화	2019. 8. 6.
행 정 사 무 관	홍주영	2021. 8. 16.	〃	김진우	2021. 2. 1.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효선	2018. 7. 30.	검 찰 사 무 관	임상현	2019. 9. 30.
〃	이경미	2020. 8. 18.	〃	정태규	2021. 2. 22.
〃	윤화섭	2020. 8. 18.	〃	박상우	2021. 8. 9.
법 조 인 력 과 장	이정배	2021. 7. 2.	**범 죄 예 방 정 책 국 장**	**윤웅장**	**2021. 8. 6.**
서 기 관	이한식	2019. 2. 11.	범 죄 예 방 기 획 과 장	윤태영	2021. 8. 30.
〃	유경남	2019. 12. 23.	서 기 관	오상섭	2021. 8. 30.
검 찰 사 무 관	권정근	2021. 2. 22.	검 찰 수 사 서 기 관	서상국	2021. 8. 9.
행 정 사 무 관	최영만	2016. 5. 24.	보 호 사 무 관	김영배	2020. 7. 13.
〃	양동규	2020. 2. 10.	〃	윤현봉	2020. 1. 13.
〃	이승항	2013. 7. 29.	〃	정 윤	2019. 7. 22.
검 찰 국 장	**구자현**	**2021. 6. 11.**	〃	김경홍	2021. 1. 18.
사 법 연 수 원 부 원 장	윤대진	2020. 1. 13.	보 호 정 책 과 장	정소연	2018. 4. 2.
검 찰 과 장	주민철	2021. 7. 2.	보 호 사 무 관	이승원	2020. 1. 13.
검 사	박양호	2021. 7. 2.	〃	김동하	2020. 1. 13.
〃	최수은	2019. 2. 11.	〃	김 영	2020. 7. 13.
〃	오상연	2020. 2. 3.	행 정 사 무 관	김영남	2021. 1. 25.
〃	김봉경	2021. 2. 1.	〃	구현규	2020. 4. 1.
검 찰 수 사 서 기 관	정연철	2020. 2. 10.	치 료 처 우 과 장	송중일	2020. 1. 13.
〃	정영운	2021. 2. 22.	서 기 관	김택준	2020. 7. 6.
검 찰 사 무 관	허종욱	2021. 2. 22.	보 호 사 무 관	임합격	2020. 8. 21.
형 사 기 획 과 장	이응철	2021. 7. 2.	검 찰 사 무 관	박두길	2020. 8. 21.
검 사	정윤식	2020. 9. 3.	보 호 사 무 관	김형식	2020. 7. 13.
〃	류승진	2021. 2. 1.	소 년 보 호 과 장	이영호	2021. 8. 30.
검 찰 수 사 서 기 관	정민수	2021. 8. 9.	서 기 관	김지수	2021. 3. 29.
검 찰 사 무 관	권영한	2019. 1. 28.	행 정 사 무 관	허태구	2021. 1. 25.
〃	조기호	2021. 2. 22.	보 호 사 무 관	김인수	2021. 8. 30.
공 공 형 사 과 장	이성식	2021. 7. 2.	보 호 사 무 관	이 혁	2021. 8. 30.
검 사	이주현	2020. 9. 3.	전 자 감 독 과 장	심선옥	2021. 8. 30.
〃	오창명	2021. 2. 1.	보 호 사 무 관	김충원	2021. 1. 29.
검 찰 사 무 관	안대현	2019. 1. 28.	〃	정주호	2020. 1. 13.
〃	고영록	2018. 7. 9.	〃	홍재성	2020. 1. 13.
국 제 형 사 과 장	나욱진	2021. 7. 2.	〃	박길수	2019. 1. 28.
검 사	박성진	2020. 2. 3.	〃	이승원	2018. 1. 22.
〃	임하나	2021. 2. 1.	〃	김경홍	2020. 1. 13.
검 찰 사 무 관	고영호	2018. 7. 9.	범 죄 예 방 데 이 터 과 장	이용호	2020. 7. 6.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보 호 사 무 관	김근한	2020. 7. 13.
보 호 사 무 관	정진경	2020. 7. 13.
보 호 사 무 관	이성실	2020. 7. 13.
인 권 국 장	공 석	-
인 권 정 책 과 장	김수아	2019. 5. 29.
서 기 관	김에오	2017. 9. 29.
검 찰 사 무 관	박광수	2018. 1. 26.
행 정 사 무 관	이동훈	2021. 1. 25.
〃	이정환	2021. 2. 22.
〃	유원정	2019. 6. 3.
〃	박상희	2021. 3. 16.
인 권 구 조 과 장	김종현	2018. 9. 3.
서 기 관	김경수	2020. 2. 10.
검 찰 수 사 서 기 관	김건수	2020. 8. 21.
검 찰 사 무 관	홍지항	2020. 2. 10.
행 정 사 무 관	차유진	2021. 8. 16.
〃	홍찬주	2020. 1. 10.
〃	윤지원	2018. 2.. 5.
인 권 조 사 과 장	박현규	2021. 7. 2.
검 사	강명훈	2020. 2.. 3.
검 찰 사 무 관	조수희	2017. 9. 27.
〃	여혜진	2019. 9. 30.
여 성 아 동 인 권 과 장	김연정	2020. 12. 17.
검 찰 사 무 관	조병기	2021. 2. 22.
교 정 본 부 장	**유병철**	**2021. 7. 1.**
교 정 정 책 단 장	김진구	2021. 8. 9.
보 안 정 책 단 장	최제영	2021. 8. 9.
교 정 기 획 과 장	김문태	2021. 8. 9.
서 기 관	주기남	2021. 8. 30.
교 정 관	강홍석	2021. 1. 25.
〃	박지영	2021. 8. 30.
〃	권혁규	2021. 8. 30.
〃	조항덕	2021. 8. 30.
〃	위종진	2021. 8. 30.
〃	박승률	2020. 9. 21.
〃	김봉영	2019. 1. 28.
〃	김소영	2021. 8. 30.
직 업 훈 련 과 장	조병주	2021. 8. 9.
교 정 관	박성현	2021. 8. 30.
〃	권익광	2021. 8. 30.
행 정 사 무 관	이두형	2019. 7. 1.
사 회 복 귀 과 장	한태환	2020. 9. 21.
교 정 관	김 승	2021. 8. 30.
〃	정희동	2021. 8. 30.
〃	김도균	2021. 8. 30.
〃	김세정	2021. 8. 30.
복 지 과 장	이홍연	2021. 1. 25.
교 정 관	김찬우	2020. 9. 21.
행 정 사 무 관	신한헌	2021. 1. 25.
시 설 사 무 관	손영조	2019. 7. 1.
보 안 과 장	김재술	2021. 8. 9.
서 기 관	최종일	2021. 1. 25.
교 정 관	오원종	2021. 8. 30.
〃	김유신	2021. 8. 30.
〃	이형직	2020. 5. 18.
〃	유동윤	2021. 8. 30.
분 류 심 사 과 장	이희정	2021. 8. 9.
서 기 관	김진아	2020. 2. 10.
교 정 관	승영근	2021. 8. 30.
〃	고재익	2020. 9. 21.
의 료 과 장 (직 무 대 리)	주소연	2021. 9. 14.
교 정 관	오선호	2021. 1. 25.
〃	최장훈	2020. 9. 21.
심 리 치 료 과 장	박경선	2021. 8. 9.
교 정 관	김충원	2021. 8. 30.
〃	박경식	2020. 9. 21.
행 정 사 무 관	최형윤	2021. 1. 13.
코로나19긴급대응단 반장	조관성	2021. 8. 9.
교 정 관	문준영	2021. 8. 3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	**2021. 7. 2.**
출 입 국 정 책 단 장	배상업	2021. 9. 17.
국 적 · 통 합 정 책 단 장	유복렬	2020. 6. 26.
출 입 국 기 획 과 장	김정도	2021. 8. 9.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박주현	2019. 1. 7.
〃	이한태	2019. 1. 7.
〃	강영우	2020. 2. 25.
〃	고동중	2020. 8. 27.
출 입 국 심 사 과 장	반재열	2021. 1.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 기 관	이상목	2021. 8. 29.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류재석	2020. 7. 20.
〃	김병희	2021. 8. 9.
체 류 관 리 과 장	이승현	2021. 8. 9.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배덕환	2021. 8. 9.
〃	박지원	2021. 9. 30.
〃	박창두	2021. 8. 9.
〃	최준호	2021. 1. 1.
이 민 조 사 과 장	박재완	2021. 8. 9.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임용성	2021. 8. 9.
〃	홍동우	2019. 7. 8.
〃	주재봉	2021. 8. 9.
〃	최연준	2021. 1. 1.
이 민 정 보 과 장	이대우	2020. 12. 14.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윤철민	2019. 1. 7.
〃	임동영	2021. 1. 1.
외 국 인 정 책 과 장	송소영	2021. 9. 17.
서 기 관	김정복	2020. 1 . 1.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서석주	2018. 7. 23.
〃	김준철	2021. 3. 15.
〃	이미라	2021. 1.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국 적 과 장	이재형	2021. 9. 17.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정금심	2020. 1. 1.
〃	최종원	2021. 8. 9.
〃	홍창기	2021. 9. 24.
이 민 통 합 과 장	하용국	2021. 2. 26.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전강섭	2021. 5. 1.
〃	이향숙	2021. 8. 9.
〃	황선주	2021. 1. 1.
〃	최은숙	2021. 1. 1.
난 민 정 책 과 장	이기흠	2021. 1. 1.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홍인표	2020. 7. 20.
〃	구성림	2021. 1. 1.
난 민 심 의 과 장	이정미	2020. 4. 13.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조승래	2020. 7. 20.
〃	안재필	2021. 1. 1.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장	장희정	2021. 8. 9.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최성은	2021. 7. 19.
〃	김은호	2021. 9. 30.

2. 법무연수원(4급 이상)

직 위	직 급	성 명	발 령 일
원장	고등검사장	조남관	2021. 6. 11.
기획부장	검사장	윤대진	2021. 6. 11.
용인분원장	검사	박철완	2021. 7. 2.
교정연수부장	고위공무원	김동현	2021. 8. 9.
연구위원	검사장	황철규	2019. 7. 31.
	검사장	구본선	2021. 6. 11.
	검사	류장만	2014. 4. 28.
	검사	정진웅	2021. 8. 23.
	고위공무원	박호서	2021. 1. 25.
	이사관	허문규	2021. 2. 11.
	비상임	땅억김미	2021. 11. 8.
검사교수	검사	한석리	2021. 7. 2.
		구승모	2021. 7. 2.
		조남철	2020. 9. 3.
		김지영	2021. 2. 1.
		이재연	2021. 2. 1.
		진철민	2021. 7. 2.
		이희동	2021. 7. 2.
		최임열	2021. 7. 2.
		임세호	2021. 7. 2.
		최행관	2021. 7. 2.
		손정현	2021. 7. 2.
		정유리	2021. 7. 2.
		서영배	2020. 9. 3.
		서효원	2021. 7. 2.
		정영주	2021. 2. 1.
로스쿨 검사교수	검사	장유강	2021. 2. 1.
		최근영	2020. 9. 3.
		권재호	2020. 2. 3.
		나희석	2020. 9. 3.
		김준호	2020. 9. 3.
		김재환	2021. 7. 2.
		유종건	2021. 2. 1.
기획과장	검사	백수진	2021. 7. 2.
법무교육과장	검사	김도형	2021. 7. 2.
총무과장	서기관	강의곤	2020. 7. 20.
일반연수과장	검찰수사서기관	조현철	2021. 8. 9.
교정연수과장	서기관	박종관	2021. 8. 9.
교정훈련과장	서기관	이영일	2021. 1. 28.
운영지원과장	검찰수사서기관	곽강순	2020. 8. 21.
시설관리팀장	기술서기관	정병택	2021. 7. 12.
보호직교수	서기관	민덕희	2020. 7. 6.

3. 검 찰 청

직 위	성명	발령일
(대 검 찰 청)		
검 찰 총 장	김오수	2021. 6. 1
차 장 검 사	박성진	2021. 6.11
반부패강력부장	문홍성	2021. 6.11
형 사 부 장	김지용	2021. 6.11
공공수사부장	이정현	2020. 8.11
공판송무부장	이근수	2021. 6.11
과학수사부장	최성필	2021. 6.11
감 찰 부 장	한동수	2021.10.18
기획조정부장	예세민	2021. 6.11
대 변 인	서인선	2021. 7. 2
수사정보담당관	강지성	2021. 7. 2
인권정책관	최용훈	2021. 7. 2
인권기획담당관	김재하	2021. 7. 2
인권감독담당관	채수양	2021. 7. 2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은미	2021. 7. 2
국제협력담당관	하담미	2021. 7. 2
형사정책담당관	최지석	2021. 7. 2
정책기획과장	권상대	2021. 7. 2
정보통신과장	최두천	2020. 9. 3
수사지휘지원과장	김형록	2021. 7. 2
범죄수익환수과장	유태석	2021. 7. 2
마약조직범죄과장	홍완희	2021. 7. 2
형사제1과장	배성훈	2021. 7. 2
형사제2과장	김종우	2021. 7. 2
형사제3과장	신동원	2021. 7. 2
형사제4과장	장혜영	2021. 7. 2
공안수사지원과장	이영남	2021. 7. 2
선거수사지원과장	차범준	2021. 7. 2
노동수사지원과장	임길섭	2021. 7. 2
공판제1과장	신대경	2021. 7. 2
공판제2과장	이정우	2021. 7. 2
법과학분석과장	박주성	2021. 7. 2

직 위	성명	발령일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김동희	2021. 7. 2
디지털수사과장	신승우	2021. 7. 2
사이버수사과장	정영수	2021. 7. 2
감찰1과장	이종민	2021. 7. 2
감찰2과장	구태연	2021. 7. 2
감찰3과장	김덕곤	2021. 7. 2
양형정책관	최재아	2021. 7. 2
검찰연구관	윤수정	2020. 9. 3
〃	유관모	2020. 9. 3
〃	김영식	2021. 2. 1
〃	한강일	2020. 9. 3
〃	김수민	2021. 7. 2
〃	김현우	2021. 7. 2
〃	채희만	2020. 9. 3
〃	고아라	2020. 9. 3
〃	이주형	2021. 7. 2
〃	소재환	2021. 7. 2
〃	김진영	2020. 9. 3
〃	김 건	2021. 7. 2
〃	황병주	2020. 2. 3
〃	유병국	2021. 7. 2
〃	이주용	2020. 9. 3
〃	이은주	2020. 9. 3
〃	박지훈	2021. 2. 1
〃	정혜승	2020. 9. 3
〃	김석훈	2020. 9. 3
〃	국 원	2021. 7. 2
〃	오지석	2021. 7. 2
〃	장은희	2021. 2. 1
〃	박향철	2021. 7. 2
〃	조재철	2021. 7. 2
〃	임홍석	2020. 9. 3
〃	박준영	2021. 7. 2

직위	성명	발령일
검찰연구관	김은정	2020. 9. 3
〃	조현일	2020. 9. 3
〃	민영현	2021. 7. 2
〃	최형규	2020. 9. 3
〃	천대원	2021. 2. 1
〃	이강우	2020. 2. 3
〃	선현숙	2020. 9. 3
〃	김정국	2021. 7. 2
〃	장인호	2020. 9. 3
사무국장	박공우	2021.10.15
운영지원과장	윤재순	2020. 2.10
집행과장	김승현	2021. 2.22
검찰총장실	조순남	2021. 6. 1
수사정보담당관실	나상필	2021. 8. 9
수사지휘·지원과	최병선	2020. 2.10
디지털수사과	이인수	2020. 2.10
법과학분석과	손주근	2020. 8.21
운영지원과	박치활	2020. 8.21
운영지원과	이은상	2019. 1.28
운영지원과	김봉석	2018. 1.26
공안수사지원과	박영일	2020. 8.21
복지후생과장	강형규	2020. 2.10
감찰제1과	이택근	2020. 8.21
감찰제2과	김광수	2020. 8.21
비상안전담당관	박정호	2018. 3.28
정보통신서기관	윤미숙	2016. 5. 2
정보통신서기관	원민정	2020. 8.2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성윤	2021. 6.11
차장검사	홍종희	2021. 6.11
부장검사	이진동	2021. 7. 2
부장검사	김효붕	2021. 7. 2
부장검사	신자용	2021. 7. 2
부장검사	임현	2021. 7. 2

직위	성명	발령일
인권보호관	서성호	2021. 7. 2
검사	고석홍	2020. 9. 3
〃	곽규홍	2020. 9. 3
〃	김동주	2021. 7. 2
〃	김석우	2021. 7. 2
〃	김찬중	2020. 2. 3
〃	김춘수	2021. 7. 2
〃	김현채	2020. 2. 3
〃	김호영	2019. 8. 6
〃	박재휘	2020. 9. 3
〃	박종기	2020. 9. 3
〃	박찬일	2020. 9. 3
〃	배용찬	2020. 9. 3
〃	백순현	2021. 7. 2
〃	송연규	2020. 9. 3
〃	신교임	2021. 7. 2
〃	신배식	2020. 9. 3
〃	신봉수	2021. 7. 2
〃	신은철	2020. 9. 3
〃	신응석	2021. 7. 2
〃	양보승	2021. 7. 2
〃	오규진	2020. 9. 3
〃	오정희	2021. 7. 2
〃	위성국	2020. 9. 3
〃	윤영준	2021. 7. 2
〃	이선훈	2021. 7. 2
〃	이수철	2020. 9. 3
〃	이용일	2020. 9. 3
〃	이제관	2021. 7. 2
〃	이형관	2020. 9. 3
〃	임용규	2021. 7. 2
〃	정규영	2020. 9. 3
〃	정연헌	2020. 9. 3
〃	정종화	2021. 7. 2

직 위	성명	발령일
〃	진정길	2020. 2. 3
〃	최현기	2020. 9. 3
〃	최호영	2020. 9. 3
〃	홍승욱	2021. 7. 2
〃	황병주	2020. 2. 3
〃	정연헌	2020. 9. 3
〃	최호영	2020. 9. 3
〃	이형관	2020. 9. 3
〃	황병주	2020. 2. 3
〃	박세현	2020. 2. 3
〃	이태일	2020. 2. 3
〃	진정길	2020. 2. 3
사무국장	정연익	2020. 8.21
총무과장	성찬오	2021. 2.22
사건과장	유성희	2021. 8. 9
관리과장	정안진	2021. 2.22
소송사무과장	이상돈	2021. 8.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정수	2021. 6.11
차장검사	정진우	2021. 7. 2
차장검사	박철우	2021. 7. 2
차장검사	진재선	2021. 7. 2
차장검사	김태훈	2021. 7. 2
인권보호관	김석담	2021. 7. 2
인권보호담당관	김지용	2021. 7. 2
공보담당관	이혜은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장	위성운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	김명수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	박동진	2020. 9. 3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	유천열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	이현정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	정지영	2020. 9. 3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부장	박석재	2020. 9. 3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부장	박재영	2020. 9. 3

직 위	성명	발령일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부장	박홍규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부장	전미화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이선혁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박현철	2021. 7. 2
형사제3부장검사	서정식	2021. 7. 2
형사제4부장검사	한기식	2021. 7. 2
형사제5부장검사	박규형	2021. 7. 2
형사제6부장검사	강범구	2021. 7. 2
형사제7부장검사	이만흠	2021. 7. 2
형사제8부장검사	김 우	2021. 7. 2
형사제9부장검사	박태호	2021. 7. 2
형사제10부장검사	진현일	2021. 7. 2
형사제11부장검사	김향연	2021. 7. 2
형사제12부장검사	이덕진	2021. 7. 2
형사제13부장검사	임대혁	2021. 7. 2
형사제14부장검사	김지완	2021. 7. 2
공정거래조사부장	고진원	2021. 7. 2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김원호	2021. 7. 2
공판제1부장검사	류국량	2021. 7. 2
공판제2부장검사	정지영	2021. 7. 2
공판제3부장검사	신지선	2021. 7. 2
공판제4부장검사	이상록	2021. 7. 2
공판제5부장검사	김영철	2021. 7. 2
공공수사제1부장검사	최창민	2021. 7. 2
공공수사제2부장검사	김경근	2021. 7. 2
약식부장검사	정재훈	2021. 7. 2
반부패수사제1부장검사	정용환	2021. 7. 2
반부패수사제2부장검사	조주연	2021. 7. 2
경제범죄형사부장	유경필	2021. 7. 2
범죄수익환수부장	유진승	2021. 7. 2
(부부장)검사	정가진	2021. 7. 2
〃	강호준	2021. 7. 2
〃	김명옥	2021. 7. 2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영준	2021. 7. 2
〃	김윤용	2021. 7. 2
〃	김은경	2021. 7. 2
〃	김익수	2021. 7. 2
〃	김재성	2021. 7. 2
〃	김정훈	2021. 7. 2
〃	김지영	2021. 7. 2
〃	김진호	2021. 7. 2
〃	김희영	2021. 7. 2
〃	남수연	2021. 7. 2
〃	노만석	2021. 7. 2
〃	박 철	2021. 7. 2
〃	박경택	2021. 7. 2
〃	박상수	2021. 7. 2
〃	박순애	2021. 7. 2
〃	박윤희	2021. 7. 2
〃	배철성	2021. 7. 2
〃	소정수	2021. 7. 2
〃	손정숙	2021. 7. 2
〃	송봉준	2021. 7. 2
〃	송준구	2021. 7. 2
〃	신도욱	2021. 7. 2
〃	신동환	2021. 7. 2
〃	안창주	2021. 7. 2
〃	여경진	2021. 7. 2
〃	오미경	2021. 7. 2
〃	용태호	2021. 7. 2
〃	이상목	2021.10. 1
〃	이영규	2021. 7. 2
〃	이영창	2021. 7. 2
〃	이정화	2021. 7. 2
〃	이주영	2021. 7. 2
〃	이주희	2021. 7. 2
〃	이태순	2021. 7. 2

직 위	성명	발령일
〃	임연진	2021. 7. 2
〃	장일희	2020. 9. 3
〃	정재신	2021. 7. 2
〃	정현주	2021. 7. 2
〃	조영성	2021. 7. 2
〃	조윤철	2021. 7. 2
〃	조은수	2021. 7. 2
〃	진호식	2021. 7. 2
〃	최나영	2021. 7. 2
〃	최미화	2021. 7. 2
〃	최재만	2021. 7. 2
〃	최희정	2021. 7. 2
〃	한문혁	2021. 7. 2
〃	허성규	2021. 7. 2
〃	황성민	2021. 7. 2
〃	황수연	2021. 7. 2
〃	황정임	2021. 7. 2
〃	박기태	2021. 7. 2
〃	김봉진	2021. 7. 2
검 사	국 진	2021. 2. 1
〃	이윤환	2021. 7. 2
〃	이한울	2020. 2. 3
〃	고재린	2021. 2. 1
〃	곽금희	2021. 2. 1
〃	권영필	2021. 2. 1
〃	김경완	2021. 7. 2
〃	김경태	2021. 7. 2
〃	김동현	2021. 2. 1
〃	김민석	2021. 7. 2
〃	김민정	2021. 2. 1
〃	김민정	2020. 2. 3
〃	김방글	2019. 2.11
〃	김병철	2021. 2. 1
〃	김선진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성현	2021. 7. 2
〃	김수겸	2021. 2. 1
〃	김영석	2021. 7. 2
〃	김영신	2016. 1.27
〃	김우중	2021. 2. 1
〃	김정훈	2020.10.15
〃	김주혜	2021. 2. 1
〃	김지숙	2021. 2. 1
〃	김현서	2021. 2. 1
〃	김형섭	2021. 2. 1
〃	김희영	2021. 2. 1
〃	나영욱	2020. 2. 3
〃	남상오	2021. 3.15
〃	문승태	2021. 2. 1
〃	문정신	2021. 2. 1
〃	박경세	2021. 3.15
〃	박금빛	2021. 2. 1
〃	박병인	2021. 2. 1
〃	박상범	2020. 9.16
〃	박상선	2021. 7. 2
〃	박영상	2021. 2. 1
〃	박일규	2021. 2. 1
〃	박재훈	2021. 2. 1
〃	방준성	2021. 7. 2
〃	배관성	2021. 2. 1
〃	서민석	2021. 2. 1
〃	서성광	2021. 6. 1
〃	성기범	2021. 2. 1
〃	손수진	2021. 7. 2
〃	손정현	2019. 2.11
〃	송윤상	2021. 7. 2
〃	송정범	2021. 7. 2
〃	송찬우	2021. 7. 2
〃	송태원	2021. 8. 2

직 위	성명	발령일
〃	신현만	2021. 7. 2
〃	신희영	2019. 8. 6
〃	양귀호	2021. 7. 2
〃	양근욱	2021. 2. 1
〃	오민재	2021. 2. 1
〃	오진세	2021. 2. 1
〃	원세정	2021. 2. 1
〃	유승재	2021. 2. 1
〃	유재근	2021. 2. 1
〃	윤국권	2021. 2. 1
〃	윤성호	2021. 7. 2
〃	윤효정	2020. 2. 3
〃	이동훈	2021. 7. 2
〃	이선영	2020. 3.30
〃	이소연	2021. 8. 2
〃	이승필	2021. 7. 2
〃	이승희	2021. 7. 2
〃	이재표	2020. 2. 3
〃	이종원	2021. 2. 1
〃	이주현	2021. 8. 2
〃	이주희	2021. 2. 1
〃	이지연	2021. 2. 1
〃	이한종	2021. 2. 1
〃	이현주	2020. 2. 3
〃	이호재	2021. 2. 1
〃	임지수	2021. 2. 1
〃	임진철	2021. 7. 2
〃	장욱환	2021. 7. 2
〃	장지영	2020. 9. 3
〃	장진성	2021. 7. 2
〃	전효곤	2021. 7. 2
〃	정거장	2021. 2. 1
〃	정대희	2021. 2. 1
〃	정선희	2019. 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정한균	2021. 2. 1
〃	조도준	2020.10. 3
〃	조미경	2021. 2. 1
〃	조범진	2021. 7. 2
〃	조재철	2021.10. 7
〃	차경자	2021. 2. 1
〃	최소연	2021. 7. 2
〃	최수지	2021. 7. 2
〃	최정민	2020. 9. 3
〃	최주원	2021. 2. 1
〃	최준환	2021. 2. 1
〃	허정은	2021. 2. 1
〃	홍상철	2021. 2. 1
〃	홍정연	2020. 9. 3
〃	황보영	2021. 2. 1
〃	황영섭	2020. 9. 3
〃	황진아	2021. 8. 2
〃	안재욱	2021. 2. 1
〃	김희동	2020. 9. 3
〃	문종배	2021. 9.29
〃	이근정	2021. 7. 2
〃	양찬규	2020. 2. 3
〃	임홍주	2021. 7. 2
〃	장영준	2021. 2. 1
〃	정원석	2021. 2. 1
〃	홍성기	2021. 7. 2
〃	신비나	2019. 2.11
〃	고유진	2019. 2.11
〃	김민구	2021. 7. 2
〃	최성규	2021.11. 2
〃	문재웅	2020. 2. 3
〃	조현욱	2020. 4. 1
〃	곽중욱	2021. 7. 2
〃	문하경	2020. 2. 3

직 위	성명	발령일
〃	황선옥	2020. 2. 3
〃	성대웅	2020. 2. 3
〃	조성윤	2021. 7. 2
〃	안현선	2020. 3. 1
〃	이수경	2020. 3. 1
〃	김종훈	2020. 3. 1
〃	김승우	2020. 9. 3
〃	박신영	2021. 2. 1
〃	오대건	2021. 7. 2
〃	서수정	2021. 2. 1
〃	염호영	2021. 2. 1
〃	강진욱	2021. 1. 1
〃	김준선	2019. 2.11
〃	구민기	2021. 2. 1
〃	이정현	2020. 9. 3
〃	신은식	2021. 2. 1
〃	양준석	2020. 2. 3
〃	이은윤	2021. 7. 2
〃	김진희	2019. 2.11
〃	신은정	2020. 9. 3
〃	강일민	2021. 7. 2
〃	박지나	2019. 8. 6
〃	윤신명	2021. 7. 2
〃	홍민유	2021. 2. 1
〃	홍석기	2021. 2. 1
〃	박성욱	2020. 2. 3
〃	이윤구	2020. 2. 3
〃	변진환	2021. 7. 2
〃	장세진	2021. 2. 1
〃	정 혁	2021. 2. 1
〃	정덕채	2021. 7. 2
사 무 국 장	이갑수	2020. 8.21
총 무 과 장	김동규	2021. 2.22
사 건 과 장	김태현	2021. 8. 9

직 위	성명	발령일
집행제1과장	이형봉	2021. 2.22
집행제2과장	김상우	2021. 8. 9
기록관리과장	오영근	2021. 2.22
형사증거과장	김기성	2021. 8. 9
피해자지원과장	김규하	2021. 8. 9
공공수사지원과장	오범석	2021. 2.22
수사제1과장	허철안	2021. 2.22
수사정보과장	김동욱	2020. 8.21
수사제2과장	조경익	2020. 8.21
수사지원과장	강의구	2021. 8. 9
조사과장	이대열	2020. 8.21
조직범죄수사과장	정희섭	2021. 2.22
마약수사과장	김용권	2021. 2.22
공판과장	박영범	2020. 8.21
검사직무대리	이창영	2020. 8.21
검사직무대리	박순주	2021. 2.22
검사직무대리	이창준	2020. 8.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심우정	2021. 6.11
차장검사	성상헌	2021. 7. 2
인권보호관	신형식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임채원	2020. 9. 3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신명호	2020. 9. 3
〃	임채원	2020. 9. 3
〃	남상관	2020. 9. 3
〃	이세진	2020. 9. 3
〃	이중제	2020. 9. 3
〃	정희도	2021. 7. 2
〃	황은영	2021. 7. 2
형사제1부장	안동완	2021. 7. 2
형사제2부장	김명운	2021. 7. 2
형사제3부장	이곤호	2021. 7. 2
형사제4부장	민경호	2021. 7. 2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5부장	김윤선	2021. 7. 2
형사제6부장	최형원	2021. 7. 2
사이버범죄형사부장	이성범	2021. 7. 2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손진욱	2021. 7. 2
공판부장	강백신	2021. 7. 2
(부부장)검사	김수홍	2021. 7. 2
〃	김은미	2021. 7. 2
〃	김성원	2020. 2. 3
〃	김창희	2021. 7. 2
〃	박지용	2021. 7. 2
〃	장영일	2021. 7. 2
〃	정성현	2021. 7. 2
〃	최순호	2021. 2. 1
검사	최현주	2020. 2. 3
〃	구진미	2019. 2.11
〃	박기웅	2020. 2. 3
〃	이정규	2020. 2. 3
〃	권근환	2021. 2. 1
〃	권예슬	2020. 5.11
〃	김상범	2021. 2. 1
〃	김유나	2021. 2. 1
〃	남지민	2021. 2. 1
〃	문동기	2021. 2. 1
〃	박민지	2020. 2. 3
〃	박선영	2020. 2. 3
〃	박예진	2020. 2. 3
〃	박준웅	2021. 2. 1
〃	박진덕	2021. 2. 1
〃	백상준	2020. 2. 3
〃	성용진	2021. 2. 1
〃	송가형	2020. 2. 3
〃	송혜숙	2020. 2. 3
〃	신용섭	2021. 8. 1
〃	안인수	2021. 8. 2

직 위	성명	발령일
〃	연제혁	2021. 2. 1
〃	유주현	2021. 8. 2
〃	이선기	2021. 2. 1
〃	이승우	2021. 2. 1
〃	이정민	2020. 2. 3
〃	이희동	2021. 4. 1
〃	조소인	2021. 2. 1
〃	조종민	2020. 2. 3
〃	하일수	2021. 2. 1
〃	황경원	2021. 2. 1
〃	박수정	2018. 2. 5
〃	고건영	2019. 2.11
〃	박지환	2020. 3. 1
〃	황윤선	2019. 2.11
〃	남원석	2020. 4. 1
〃	박유나	2020. 3. 1
〃	모형민	2020. 3. 1
〃	김태환	2020. 2. 3
〃	김윤정	2019. 2.11
〃	원민영	2020. 2. 3
사무국장	이연성	2021. 2.22
총무과장	정복영	2021. 2.22
사건과장	김혜경	2021. 2.22
집행과장	조동규	2020. 8.21
공판과장	김원석	2021. 8. 9
조사과장	한생일	2021. 2.22
수사과장	이영일	2021. 2.22
검사직무대리	김도석	2018. 1.26
검사직무대리	이정국	2020. 2.1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심재철	2021. 2. 9
제1차장검사	이진수	2021. 7. 2
제2차장검사	박승대	2021. 7. 2
인권보호관	최성국	2021. 7. 2

직 위	성명	발령일
인권보호부장	황금천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철완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은심	2021. 7. 2
〃	박영준	2021. 7. 2
〃	손영배	2021. 7. 2
〃	엄희준	2021. 7. 2
〃	이성일	2021. 7. 2
〃	전영준	2020. 9. 3
형사제1부장검사	김원지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김형주	2021. 7. 2
형사제3부장검사	이동균	2021. 7. 2
형사제4부장검사	추혜윤	2021. 7. 2
형사제5부장검사	정원두	2021. 7. 2
형사제6부장검사	김기훈	2021. 7. 2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봉숙	2021. 7. 2
공판부장	조아라	2021. 7. 2
금융조사제1부장검사	문현철	2020. 9. 3
금융조사제2부장검사	김락현	2021. 7. 2
(부부장)검사	서원익	2020. 9. 3
〃	손상희	2021. 2. 1
〃	유현정	2021. 7. 2
〃	정영주	2021. 7. 2
〃	정재현	2021. 7. 2
〃	정혁준	2021. 7. 2
〃	정희선	2021. 7. 2
검사	경기수	2021. 5. 3
〃	금명원	2021. 9. 1
〃	김미선	2021. 7. 2
〃	김성수	2021. 2. 1
〃	김연희	2019. 2.11
〃	김예은	2021. 2. 1
〃	김재우	2021. 7. 2
〃	김정화	2020. 2. 3
〃	김준엽	2021. 7. 2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지훈	2021. 2. 1
〃	김하영	2021. 2. 1
〃	김현웅	2021. 7. 2
〃	김형걸	2021. 2. 1
〃	나상돈	2021. 2. 1
〃	남경우	2021. 8. 2
〃	문지연	2021. 2. 1
〃	박규남	2021. 8. 2
〃	박배희	2020. 2. 3
〃	박진섭	2021. 2. 1
〃	서세영	2021. 2. 1
〃	신헌섭	2021. 7. 2
〃	이경민	2021. 5. 3
〃	이선미	2021. 2. 1
〃	이세종	2021. 7. 2
〃	이수창	2019. 8. 6
〃	이승민	2021. 2. 1
〃	이은우	2021. 8. 2
〃	이재원	2021. 7. 2
〃	이하은	2021. 2. 1
〃	임상규	2019. 2.11
〃	정광병	2021. 2. 1
〃	정동현	2021. 2.22
〃	정성헌	2021.12.24
〃	정종헌	2021. 7. 2
〃	조상규	2020. 2. 3
〃	조혜민	2021. 7. 2
〃	주용하	2021. 2. 1
〃	진종규	2021. 8.16
〃	차동호	2021. 7. 2
〃	최대호	2021. 2. 1
〃	최성수	2019. 8. 6
〃	최재현	2021. 2. 1
〃	한상윤	2021. 8. 2

직 위	성명	발령일
〃	한연규	2021. 7. 2
〃	허세진	2020. 2. 3
〃	황진선	2020. 2. 3
〃	왕규호	2021. 8. 1
〃	윤 경	2019. 2.11
〃	임수민	2021. 7. 2
〃	박 수	2019. 2.11
〃	김동영	2021. 5. 3
〃	김민정	2021. 5. 3
〃	박진아	2019. 2.11
〃	최성겸	2020. 2. 3
〃	김병채	2020. 4. 1
〃	조아영	2021. 8. 2
〃	정성용	2020. 3. 1
〃	이수호	2021. 5. 3
〃	안태영	2020. 3. 1
〃	김구열	2020. 3. 1
〃	강 현	2021. 2. 1
〃	신승호	2019. 9. 9
사무국장	백운기	2021. 2.22
총무과장	최수종	2021. 2.22
사건과장	최성규	2021. 2.22
집행과장	서진학	2020. 8.21
조사과장	오장수	2021. 2.22
수사과장	고병훈	2021. 2.22
공판과장	강신영	2021. 2.22
검사직무대리	이 헌	2019. 9.30
검사직무대리	설우용	2021. 2.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배용원	2021. 6.11
차장검사	김남순	2021. 7. 2
인권보호관	양재혁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권도욱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공태구	2019. 8. 6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태광	2020. 2. 3
〃	손석천	2020. 9. 3
〃	이현철	2021. 7. 2
〃	정효삼	2021. 7. 2
형사제1부장	박혁수	2021. 7. 2
형사제2부장	이복현	2021. 7. 2
형사제3부장	김정환	2021. 7. 2
형사제4부장	임일수	2021. 7. 2
형사제5부장	유광렬	2021. 7. 2
조세범죄형사부장	국상우	2021. 7. 2
공판부장	박명희	2021. 7. 2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홍성준	2021. 7. 2
(부부장)검사	노정옥	2020. 9. 3
〃	윤나라	2021. 7. 2
〃	정화준	2021. 9. 9
검사	한대웅	2021. 8. 2
〃	남재현	2020. 2. 3
〃	조지현	2021. 8. 2
〃	강은선	2017. 2.20
〃	김미혜	2021. 2. 1
〃	김수희	2021. 8. 2
〃	김유나	2021. 2. 1
〃	김정연	2021. 2. 1
〃	박선민	2021. 8. 2
〃	박원영	2021. 2. 1
〃	박지현	2021. 2. 1
〃	손은선	2021. 2. 1
〃	안준석	2021. 2. 1
〃	오승은	2020. 2. 3
〃	유제민	2021. 8. 2
〃	윤인식	2020. 2. 3
〃	윤지윤	2021. 8. 2
〃	이기영	2019. 2.11
〃	이승훈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정성	2021. 4. 1
〃	이종민	2021. 2. 1
〃	이준태	2021. 2. 1
〃	이하영	2021. 8. 2
〃	이홍열	2021. 2. 1
〃	임기웅	2021. 8. 2
〃	전인수	2021. 2. 1
〃	정용진	2021. 2. 1
〃	정하은	2021. 2. 1
〃	조정복	2021. 2. 1
〃	최한나	2019. 2.11
〃	최한얼	2020. 9. 3
〃	한승훈	2021. 2. 1
〃	함덕훈	2021. 8. 2
〃	홍성표	2021. 8. 1
〃	김정은	2020. 2. 3
〃	박영수	2021. 2. 1
〃	설수현	2021. 8. 2
〃	최예지	2020. 3. 2
〃	황호용	2021. 8. 2
〃	박형수	2020. 9. 3
〃	강가람	2020. 3. 2
〃	김금이	2020. 6.11
〃	김혜주	2019. 2.11
〃	유호원	2020. 3. 2
〃	박세빈	2021. 5. 3
〃	이재연	2021.10. 6
〃	남연진	2020. 3. 2
〃	김가현	2021. 5. 3
〃	최서준	2020. 4. 1
사무국장	윤진웅	2021. 2.22
총무과장	최창환	2021. 2.22
사건과장	송영근	2020. 8.21
집행과장	이승희	2021. 2.22

직 위	성명	발령일
조 사 과 장	강재성	2021. 8. 9
수 사 과 장	하종찬	2021. 8. 9
공 판 과 장	조 호	2021. 8. 9
검 사 직 무 대 리	장영표	2021. 8. 9
검 사 직 무 대 리	이일남	2020. 8.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 사 장	이종근	2021. 6.11
차 장 검 사	양동훈	2021. 7. 2
인 권 보 호 관	박현준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정용수	2020. 2. 3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박재현	2020. 9. 3
〃	변창범	2021. 7. 2
〃	양건수	2020. 9. 3
〃	유종완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이곤형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김승언	2021. 7. 2
형사제3부장검사	이상현	2021. 7. 2
형사제4부장검사	김민아	2021. 7. 2
형사제5부장검사	조용후	2021. 7. 2
공 판 부 장	김연실	2021. 7. 2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	권유식	2021. 7. 2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상민	2021. 7. 2
(부부장)검사	김정옥	2021. 7. 2
〃	문지석	2021. 7. 2
〃	신혜진	2021. 7. 2
검 사	김동규	2019. 2.11
〃	민은식	2020. 2. 3
〃	황성아	2020. 2. 3
〃	조승우	2021. 8. 1
〃	강현정	2021. 2. 1
〃	권은비	2021. 2. 1
〃	권태환	2021. 2. 1
〃	김연주	2020. 2. 3
〃	김영민	2021. 2. 1
〃	김은혜	2020. 2. 3
〃	김자은	2019. 2.11
〃	박원석	2021. 2. 1
〃	오세진	2020. 2. 3
〃	오슬기	2021. 2. 1
〃	이상돈	2021. 2. 1
〃	전형준	2021. 2. 1
〃	정윤정	2021. 2. 1
〃	진경섭	2021. 2. 1
〃	차대영	2021. 2. 1
〃	최종경	2019. 2.11
〃	홍해숙	2021. 2. 1
〃	김지연	2020. 2. 3
〃	임주연	2020. 2. 3
〃	신석규	2020. 3. 1
〃	이호진	2020. 4. 1
〃	정경진	2019. 2.11
〃	박예주	2019. 2.11
〃	임병일	2020. 2. 3
〃	이평화	2020. 2. 3
〃	김진희	2019. 2.11
〃	황인혜	2020. 3. 1
〃	이동현	2020. 3. 1
〃	박한나	2020. 2. 3
〃	송새봄	2018. 2. 5
〃	손지혜	2020. 5. 6
〃	박윤협	2021. 5. 3
〃	조인태	2021. 5. 3
〃	권동욱	2020. 2. 3
〃	송진민	2021. 5. 3
사무국장	이영호	2021. 8. 9
총무과장	최대진	2021. 2.22
사건과장	신현미	2021. 8. 9
집행과장	이동근	2021. 2.22

직 위	성명	발령일
조 사 과 장	김지홍	2021. 2.22
수 사 과 장	이재호	2020. 8.21
공 판 과 장	전준열	2021. 2.22
검 사 직 무 대 리	홍석표	2021. 2.22
(의정부지방검찰청)		
검 사 장	최경규	2021. 6.11
차 장 검 사	이동수	2021. 7. 2
인 권 감 독 관	김지연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기정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대룡	2021. 7. 2
〃	김원학	2020. 9. 3
〃	박병규	2021. 7. 2
〃	박영진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김태운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김상현	2021. 7. 2
형사제3부장검사	하재무	2021. 7. 2
형사제4부장검사	이준동	2021. 7. 2
형사제5부장검사	이찬규	2021. 7. 2
형사제6부장검사	김해경	2021. 7. 2
공판송무부장	박성민	2021. 7. 2
(부부장)검사	김재남	2021. 7. 2
〃	김해중	2021. 7. 2
〃	김희주	2020. 9. 3
〃	윤병준	2021. 7. 2
〃	이호석	2021. 7. 2
검 사	김수길	2020. 2. 3
〃	김형철	2020. 2. 3
〃	문태권	2020. 2. 3
〃	반영기	2020. 2. 3
〃	현승록	2020. 2. 3
〃	박성원	2021. 5. 3
〃	강민욱	2021. 2. 1
〃	김민호	2021. 2. 1
〃	김신혜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준영	2021. 2. 1
〃	김태훈	2021. 2. 1
〃	나민영	2019. 2.11
〃	도윤지	2020. 2. 3
〃	문민영	2021. 2. 1
〃	박광현	2021. 2. 1
〃	박소미	2021. 2. 1
〃	박은혜	2021. 2. 1
〃	석동현	2020. 2. 3
〃	양재헌	2021. 2. 1
〃	오자연	2019. 2.11
〃	유용훈	2021. 4. 1
〃	이강천	2020. 3. 1
〃	이선미	2018. 7.19
〃	이지혜	2020. 2. 3
〃	정지희	2021. 2. 1
〃	최인혁	2021. 2. 1
〃	최재호	2020. 2. 3
〃	최하연	2021. 2. 1
〃	황수희	2019. 2.11
〃	김명섭	2021. 5. 3
〃	김은오	2020. 2. 3
〃	김해밝은	2020. 2. 3
〃	고현욱	2020. 2. 3
〃	고두성	2020. 2. 3
〃	김효준	2020. 3. 1
〃	조진희	2020. 3. 1
〃	전진우	2021. 5. 3
〃	강다롱	2020. 3. 1
〃	권민정	2021. 5. 3
〃	오소영	2021. 5. 3
〃	유수빈	2021. 5. 3
〃	유광선	2020. 2. 3
〃	노우석	2020. 3. 1

직 위	성명	발령일
〃	박상현	2021. 5. 3
〃	라 혁	2020. 2. 3
〃	노현선	2021. 5. 3
〃	정소영	2020. 2. 3
〃	천의진	2021. 5. 3
사무국장	양우덕	2021. 1. 1
총무과장	이수환	2021. 8. 9
사건과장	김윤애	2021. 8. 9
집행과장	이상남	2021. 2.22
수사과장	박종필	2020. 8.21
공판송무과장	박승주	2021. 8. 9
검사직무대리	강순석	2020. 8.21
(고 양 지 청)		
지청장	박상진	2021. 7. 2
차장검사	조용한	2021. 7. 2
인권보호관	서창원	2021. 7. 2
형사제1부장	원지애	2021. 7. 2
형사제2부장	위수현	2021. 7. 2
형사제3부장	오종렬	2021. 7. 2
공판부장	최우균	2021. 7. 2
(부부장) 검사	박향철	2021. 7. 2
〃	김윤정	2021. 7. 2
〃	김은하	2021. 2. 1
〃	안성희	2021. 7. 2
검사	윤석환	2021. 2. 1
〃	김아연	2020. 2. 3
〃	박성현	2020. 2. 3
〃	강윤제	2021. 5. 3
〃	이희윤	2021. 8. 1
〃	김동민	2020. 2. 3
〃	이현철	2021. 5. 3
〃	김다현	2021. 2. 1
〃	김미영	2021. 2. 1
〃	김소연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연수	2021. 2. 1
〃	김정현	2021. 2. 1
〃	김주성	2021. 2. 1
〃	김지영	2018. 2. 5
〃	박대웅	2021. 2. 1
〃	유상우	2019. 2.11
〃	윤가희	2020. 5.11
〃	이소연	2019. 2.11
〃	이종혁	2021. 2. 1
〃	이혜원	2021. 2. 1
〃	임재웅	2021. 2. 1
〃	임지연	2020. 2. 3
〃	정제훈	2021. 2. 1
〃	정지원	2020. 2. 3
〃	최종환	2021. 2. 1
〃	최소영	2021. 5. 3
〃	채용욱	2021. 5. 3
〃	최문석	2021. 5. 3
〃	이경준	2020. 3. 1
〃	전제희	2020. 2. 3
〃	김광제	2020. 3. 1
〃	정윤경	2020. 3. 1
사무국장	조창희	2021. 2.22
총무과장	정승원	2021. 2.22
사건과장	강석인	2020. 8.21
집행과장	이보균	2021. 2.22
수사과장	김동섭	2021. 2.22
(인 천 지 방 검 찰 청)		
검사장	이두봉	2021. 6.11
제1차장검사	조재빈	2021. 7. 2
제2차장검사	김윤섭	2021. 7. 2
인권보호관	이계한	2021. 7. 2
인권보호부장	이환기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종대	2021. 7. 2

직 위	성명	발령일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강수산나	2021. 7. 2
〃	김영익	2021. 7. 2
〃	장준희	2021. 7. 2
〃	하충헌	2020. 9. 3
〃	한태화	2021. 7. 2
형사제1부장	배문기	2021. 7. 2
형사제2부장	김창수	2021. 7. 2
형사제3부장	이장우	2021. 7. 2
형사제4부장	이정렬	2021. 7. 2
형사제5부장	최재훈	2021. 7. 2
형사제6부장	김영오	2021. 7. 2
외사범죄형사부장	장준호	2021. 7. 2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2021. 7. 2
강력범죄형사부	신준호	2021. 7. 2
공판송무1부장	이용균	2021. 7. 2
공판송무2부징	박성민	2021. 7. 2
(부부장)검사	강석철	2021. 2.23
〃	김 현	2020. 9. 3
〃	김상준	2021. 7. 2
〃	박성훈	2021. 7. 2
〃	박진석	2021. 2. 1
〃	서정민	2021. 7. 2
〃	이광우	2021. 7. 2
〃	이세희	2021. 7. 2
〃	조대호	2020. 9. 3
〃	추의정	2021. 7. 2
〃	홍승현	2021. 7. 2
〃	이기영	2019. 2. 2
〃	박종민	2021. 7. 2
검사	임찬미	2020. 2. 3
〃	허윤행	2019. 2.11
〃	서지원	2018. 2. 5
〃	조윤경	2018. 2. 5
〃	김나리	2017. 2.20

직 위	성명	발령일
〃	장지철	2020. 2. 3
〃	전유경	2020. 2. 3
〃	박진우	2021. 5. 3
〃	김한울	2020. 2. 3
〃	권민정	2020. 2. 3
〃	김남엽	2021. 2. 1
〃	김민희	2021. 2. 1
〃	김상현	2020. 2. 3
〃	김영준	2020. 2. 3
〃	김윤정	2020. 5.11
〃	김준성	2020. 2. 3
〃	김지웅	2021. 2. 1
〃	김지윤	2020. 5.11
〃	김한민	2020. 2. 3
〃	김현창	2020. 2. 3
〃	나상현	2021. 2. 1
〃	도용민	2021. 2. 1
〃	박세혁	2021. 2. 1
〃	박신우	2021. 4. 1
〃	박아름	2020. 2. 3
〃	박영우	2020. 2. 3
〃	박윤상	2020. 2. 3
〃	배한진	2020. 2. 3
〃	서성목	2019. 2.11
〃	서원준	2021. 5. 3
〃	성두경	2020. 2. 3
〃	신지원	2020. 2. 3
〃	양세동	2021. 2. 1
〃	오승환	2021. 2. 1
〃	오재완	2021. 2. 1
〃	오정은	2021. 2. 1
〃	우세호	2021. 7. 2
〃	우재훈	2021. 2. 1
〃	원선아	2019. 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윤지훈	2021. 2. 1
〃	이건표	2021. 2. 1
〃	이기명	2021. 2. 1
〃	이동형	2021. 2. 1
〃	이영진	2020. 2. 3
〃	이재인	2020. 2. 3
〃	이지륜	2020. 2. 3
〃	이현민	2021. 2. 1
〃	장성훈	2021. 2. 1
〃	정성욱	2021. 2. 1
〃	정주희	2020. 2. 3
〃	진아름	2020. 2. 3
〃	채필규	2020. 2. 3
〃	최세윤	2021. 2. 1
〃	황두평	2020. 2. 3
〃	황용범	2020. 8. 1
〃	임 송	2021. 5. 3
〃	윤세희	2021. 5. 3
〃	전영경	2020. 2. 3
〃	황근주	2020. 2. 3
〃	이동헌	2020. 3. 1
〃	김한솔	2020. 3. 1
〃	최은민	2021. 5. 3
〃	이홍석	2020. 2. 3
〃	장진우	2021. 5. 3
〃	한지현	2021. 5. 3
〃	손성훈	2020. 2. 3
〃	김세윤	2020. 2. 3
〃	안형균	2021. 5. 3
〃	목찬수	2020. 4. 1
〃	박세진	2020. 3. 1
사무국장	윤권호	2021. 8. 9
총무과장	김수호	2020. 2.10
사건과장	임승철	2021. 8. 9

직 위	성명	발령일
집행과장	정 기	2021. 8. 9
조사과장	양인식	2021. 2.22
수사과장	김철곤	2021. 8. 9
마약수사과장	도춘성	2021. 2.22
공판송무과장	주웅일	2021. 8. 9
검사직무대리	이형근	2021.11. 1
검사직무대리	장종철	2021. 2.22
검사직무대리	장병철	2021. 8. 9
(부 천 지 청)		
지청장	김형근	2021. 7. 2
차장검사	이종혁	2021. 7. 2
인권보호관	김종호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송지용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강세현	2021. 7. 2
형사제3부장검사	이일규	2021. 7. 2
공판부장	김 중	2021. 7. 2
(부부장)검사	김지언	2021. 7. 2
〃	박종선	2021. 7. 2
검사	송성광	2020. 2. 3
〃	황재동	2018. 2. 5
〃	이현정	2021. 5. 3
〃	임두환	2020. 2. 3
〃	조영주	2019. 2.11
〃	이채훈	2018. 2. 5
〃	최혜경	2019. 2.11
〃	홍준기	2021. 5. 3
〃	강형윤	2020. 2. 3
〃	김동욱	2021. 2. 1
〃	박종호	2021. 2. 1
〃	백희진	2021. 2. 1
〃	신수민	2021. 2. 1
〃	유재승	2020. 5.11
〃	유한실	2020. 2. 3
〃	유희경	2020. 2. 3

직위	성명	발령일
〃	이원창	2020. 8. 1
〃	이정환	2021. 2. 1
〃	이지은	2019. 2.11
〃	장유나	2021. 2. 1
〃	전화정	2021. 2. 1
〃	정영지	2021. 2. 1
〃	조한이	2021. 2. 1
〃	변형기	2021. 5. 3
〃	전은석	2021. 8. 1
〃	이강우	2020. 2. 3
〃	송채은	2021. 5. 3
〃	윤용석	2020. 2. 3
〃	황윤재	2020. 2. 3
사무국장	권영갑	2020. 8.21
총무과장	전병후	2021. 8. 9
사건과장	김탁환	2020. 8.21
집행과장	강중원	2021. 2.22
수사과장	신상성	2021. 8. 9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김관정	2021. 6.11
차장검사	박재억	2021. 6.11
검사	고병민	2021. 7. 2
〃	김정호	2020. 9. 3
〃	김지헌	2021. 7. 2
〃	류원근	2020. 9. 3
〃	명점식	2021. 7. 2
〃	박규은	2020. 9. 3
〃	송경호	2021. 7. 2
〃	윤원상	2020. 9. 3
〃	이병대	2020. 9. 3
〃	한윤경	2021. 7. 2
〃	김영태	2019. 8. 6
〃	정성윤	2020. 2. 3
사무국장	김정호	2021. 2.22

직위	성명	발령일
총무과장	장병인	2021. 1. 1
사건과장	윤재원	2021. 2.22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신성식	2021. 6.11
제1차장검사	양중진	2021. 7. 2
제2차장검사	최재민	2021. 7. 2
인권보호관	윤철민	2021. 7. 2
인권보호부장	정경진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강신엽	2020. 9. 3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완규	2020. 9. 3
〃	김종칠	2021. 7. 2
〃	윤중기	2020. 9. 3
〃	윤춘구	2020. 9. 3
〃	최헌만	2021. 7. 2
〃	하신욱	2021. 7. 2
형사제1부장	김형석	2021. 7. 2
형사제2부장	최우영	2021. 7. 2
형사제3부장	최명규	2021. 7. 2
형사제4부장	이지형	2021. 7. 2
형사제5부장	신태훈	2021. 7. 2
형사제6부장	김병문	2021. 7. 2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정진	2021. 7. 2
공공수사부장	김종현	2021. 7. 2
공판부장	최대건	2021. 7. 2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장	이 춘	2021. 1. 1
(부부장)검사	김기윤	2021. 7. 2
〃	김재화	2021. 7. 2
〃	김태형	2021. 7. 2
〃	박경섭	2021. 7. 2
〃	손정현	2021. 7. 2
〃	신건호	2021. 2. 1
〃	신재홍	2021. 7. 2
〃	오세문	2021. 7. 2
〃	유정현	2021. 7. 2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유현	2021. 7. 2
〃	장진영	2021. 7. 2
〃	정은혜	2021. 7. 2
〃	조상원	2021. 7. 2
〃	차순길	2021. 7. 2
〃	최용락	2021. 7. 2
검 사	김대현	2019. 2.11
〃	강현욱	2019. 2.11
〃	김대철	2019. 2.11
〃	송민주	2019. 2.11
〃	송보형	2019. 2.11
〃	윤재희	2021. 5. 3
〃	이종광	2019. 2.11
〃	송현탁	2019. 2.11
〃	조재익	2019. 2.11
〃	류수헌	2019. 2.11
〃	박달재	2021. 5. 3
〃	유제일	2021. 5. 3
〃	김지수	2019. 2.11
〃	공민진	2021. 2. 1
〃	구승기	2020. 2. 3
〃	권인표	2020. 2. 3
〃	김보경	2021. 2. 1
〃	김성훈	2021. 2. 1
〃	김윤진	2020. 2. 3
〃	김인선	2020. 2. 3
〃	김정환	2019. 2.11
〃	김지훈	2021. 2. 1
〃	민경재	2020. 2. 3
〃	박광호	2020. 2. 3
〃	박상용	2021. 2. 1
〃	박성종	2021. 2. 1
〃	박성현	2021. 2. 1
〃	박소영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박형건	2020. 2. 3
〃	서아람	2021. 8. 2
〃	서혜선	2019. 2.11
〃	석수민	2020. 9. 3
〃	성재호	2021. 2. 1
〃	송민경	2021. 2. 1
〃	신병우	2019. 2.11
〃	신재욱	2021. 8. 1
〃	안성민	2021. 2. 1
〃	안화연	2021. 2. 1
〃	양서원	2020. 2. 3
〃	오준근	2021. 8. 2
〃	유재덕	2021. 2. 1
〃	윤기형	2020. 2. 3
〃	윤오연	2020. 2. 3
〃	이동우	2021. 2. 1
〃	임성수	2020. 2. 3
〃	전세정	2021. 8. 2
〃	전우진	2021. 2. 1
〃	전종택	2021. 2. 1
〃	조규웅	2021. 8.11
〃	주영선	2019. 2.11
〃	진동화	2021. 2. 1
〃	천재인	2021. 2. 1
〃	하지수	2019. 2.11
〃	한은지	2020. 2. 3
〃	함재원	2021. 2. 1
〃	현동길	2019. 2.11
〃	홍정연	2021. 2. 1
〃	이종민	2019. 2.11
〃	박영식	2019. 2.11
〃	전옥길	2021. 5. 3
〃	임헌준	2020. 3. 1
〃	허정훈	2020. 2. 3

직 위	성명	발령일
〃	문성은	2020. 4. 1
〃	강희윤	2021. 5. 3
〃	임풍성	2019. 2.11
〃	구재훈	2020. 2. 3
사무국장	윤득영	2021. 8. 9
총무과장	백상홍	2020. 8.21
사건과장	조병민	2020. 8.21
집행과장	장정호	2021. 2.22
조사과장	김한영	2020. 8.21
수사과장	이기우	2020. 8.21
공판과장	신광섭	2021. 2.22
검사직무대리	김성곤	2020. 8.21
검사직무대리	최현태	2021. 2.22
검사직무대리	권선기	2021. 8. 9
(성 남 지 청)		
지청장	박은정	2021. 7. 2
차장검사	박하영	2021. 7. 2
인권보호관	박주현	2021. 7. 2
형사제1부장	김윤후	2021. 7. 2
형사제2부장	손찬오	2021. 7. 2
형사제3부장	박건욱	2021. 7. 2
공판부장	이유선	2021. 7. 2
(부부장)검사	김형원	2021. 7. 2
〃	윤동환	2021. 7. 2
〃	이정민	2021. 7. 2
검사	김현경	2020. 2. 3
〃	심지원	2021. 5. 3
〃	유승진	2020. 2. 3
〃	홍등불	2020. 2. 3
〃	김민정	2019. 2.11
〃	서지현	2018. 7.19
〃	김광락	2020. 2. 3
〃	김민아	2018. 2. 5
〃	김벼리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의회	2020. 3. 1
〃	김정호	2021. 2. 1
〃	김지혜	2020. 2. 3
〃	손아지	2019. 2.11
〃	신주희	2021. 2. 1
〃	심기하	2021. 2. 1
〃	이병래	2021. 2. 1
〃	이수정	2021. 8. 2
〃	이재원	2021. 2. 1
〃	장재정	2021. 2. 1
〃	전영우	2021. 2. 1
〃	정민희	2018. 2. 5
〃	정수진	2019. 5. 8
〃	정승원	2021. 2. 1
〃	정아름	2021. 2. 1
〃	정연우	2021. 2. 1
〃	정지수	2021. 2. 1
〃	최지은	2019. 2.11
〃	허수진	2021. 8. 2
〃	김용석	2020. 3. 1
〃	이섬연	2020. 3. 1
〃	박근영	2021. 8. 1
〃	김태훈	2020. 3. 1
사무국장	박영서	2021. 2.22
총무과장	김권태	2020. 8.21
사건과장	남기주	2020. 8.21
집행과장	임용희	2021. 8. 9
수사과장	김용관	2020. 8.21
검사직무대리	이후석	2019. 9.30
(여 주 지 청)		
지청장	김기준	2021. 7. 2
부장검사	강선주	2021. 7. 2
검사	이명희	2020. 2. 3
〃	김미리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상직	2021. 2. 1
〃	김재현	2020. 2. 3
〃	박강일	2021. 2. 1
〃	배상아	2021. 2. 1
〃	우만우	2020. 2. 3
〃	이권석	2021. 2. 1
〃	이영준	2021. 2. 1
〃	이휘소	2018. 2. 5
〃	구자원	2020. 2. 3
사 무 과 장	이창환	2021. 2.22
수 사 과 장	김덕수	2021. 2.22
(평 택 지 청)		
지 청 장	박윤석	2021. 7. 2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유정호	2021. 7. 2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박은혜	2021. 7. 2
검 사	김세현	2020. 2. 3
〃	김동직	2018. 2. 5
〃	이정아	2020. 2. 3
〃	김윤환	2021. 2. 1
〃	김진규	2021. 2. 1
〃	서지혜	2021. 2. 1
〃	심기호	2021. 2. 1
〃	이상윤	2021. 2. 1
〃	이재희	2021. 2. 1
〃	임여은	2021. 2. 1
〃	정정교	2021. 2. 1
〃	함석욱	2021. 2. 1
〃	조하림	2020. 2. 3
〃	박선영	2020. 2. 3
〃	이영훈	2020. 2. 3
〃	정성욱	2020. 2. 3
〃	이동원	2020. 2. 3
〃	최민혁	2020. 2. 3
사 무 과 장	정해영	2021. 2.22

직 위	성명	발령일
수 사 과 장	정진수	2021. 2.22
(안 산 지 청)		
지 청 장	이정환	2021. 7. 2
차 장 검 사	전무곤	2021. 7. 2
인 권 보 호 관	김호삼	2021. 7. 2
형 사 1 부 장 검 사	김준섭	2021. 7. 2
형 사 2 부 장 검 사	김진호	2021. 7. 2
형 사 3 부 장 검 사	곽영환	2021. 7. 2
공 판 부 장	강민정	2021. 7. 2
(부 부 장) 검 사	나하나	2021. 7. 2
〃	유지연	2021. 7. 2
〃	정유리	2021. 7. 2
〃	진혜원	2021. 7. 2
〃	최재봉	2021. 7. 2
〃	노선균	2020. 9. 3
검 사	장태형	2021. 2. 1
〃	정정화	2020. 2. 3
〃	서민욱	2020. 2. 3
〃	박동준	2020. 2. 3
〃	박경남	2020. 2. 3
〃	오광일	2020. 2. 3
〃	최예원	2020. 2. 3
〃	서소희	2020. 2. 3
〃	오보미	2020. 2. 3
〃	이상미	2020. 2. 3
〃	한경우	2021. 8. 1
〃	강인선	2020. 2. 3
〃	강정욱	2021. 2. 1
〃	고은진	2021. 2. 1
〃	김나경	2021. 2. 1
〃	김민영	2021. 2. 1
〃	김수진	2021. 2. 1
〃	김정선	2021. 2. 1
〃	김종민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류범선	2020. 5.11
〃	박기태	2021. 2. 1
〃	박성환	2020. 3. 1
〃	박조민	2021. 2. 1
〃	성인욱	2019. 2.11
〃	송선민	2018. 2. 5
〃	송수연	2017. 2.20
〃	안수진	2020. 3. 1
〃	이경선	2020. 2. 3
〃	이안나	2021. 2. 1
〃	이영광	2021. 2. 1
〃	정우성	2021. 2. 1
〃	정해빈	2021. 2. 1
〃	조아영	2021. 5. 3
〃	조진희	2021. 2. 1
〃	최근영	2020. 9. 3
〃	홍혁기	2021. 5. 3
〃	유수미	2021. 5. 3
〃	최정훈	2020. 2. 3
〃	윤상훈	2020. 3. 1
〃	박창구	2021. 5. 3
〃	김한민	2020. 3. 1
사무국장	김근모	2021. 2.22
총무과장	소상은	2021. 8. 9
사건과장	서문석	2021. 8. 9
집행과장	임영필	2021. 8. 9
수사과장	정재권	2021. 8. 9
검사직무대리	양기용	2021. 8.15
(안양지청)		
지청장	형진휘	2021. 7. 2
차장검사	김봉현	2021. 7. 2
인권보호관	오세영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김선문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하동우	2021. 7. 2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3부장검사	오기찬	2021. 7. 2
(부부장)검사	이윤희	2021. 7. 2
〃	허 훈	2021. 2. 1
검사	최수경	2018. 2. 5
〃	전해창	2021. 5. 3
〃	최영준	2020. 2. 3
〃	유지혜	2020. 2. 3
〃	손명지	2019. 2.11
〃	김승연	2021. 2. 1
〃	류주태	2021. 2. 1
〃	박민희	2020. 2. 3
〃	박지영	2020. 2. 3
〃	서정화	2020. 2. 3
〃	심요한	2021. 2. 1
〃	안상현	2021. 2. 1
〃	이선화	2021. 2. 1
〃	이주연	2020. 2. 3
〃	이지은	2021. 2. 1
〃	이혜진	2021. 2. 1
〃	이혜현	2021. 2. 1
〃	장 진	2021. 2. 1
〃	전진표	2020. 2. 3
〃	홍현준	2021. 2. 1
〃	서정효	2021. 8. 1
〃	최우혁	2019. 2.11
〃	김현수	2018. 2. 5
〃	정세연	2018. 2. 5
사무국장	이운연	2021. 1. 1
총무과장	조민호	2020. 8.21
사건과장	이재성	2021. 2.22
집행과장	채희수	2021. 2.22
수사과장	최용호	2020. 8.21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고경순	2021. 6.11

직위	성명	발령일
차장검사	박지영	2021. 7. 2
인권보호관	이은강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조광환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윤원기	2021. 7. 2
(부부장)검사	이승학	2021. 7. 2
〃	박혜란	2021. 7. 2
〃	이선녀	2021. 7. 2
검사	전혜현	2020. 2. 3
〃	이자경	2018. 2. 5
〃	안창보	2020. 3. 1
〃	김성훈	2021. 8. 1
〃	김형아	2021. 2. 1
〃	송미루	2021. 2. 1
〃	신영민	2021. 2. 1
〃	이지은	2021. 2. 1
〃	최두헌	2021. 2. 1
〃	허용준	2020. 2. 3
〃	홍지예	2021. 8. 2
〃	박종현	2021. 8. 1
사무국장	이홍용	2021. 2.22
총무과장	홍승모	2021. 8. 9
사건과장	김창옥	2020. 8.21
수사과장	김종훈	2021. 8. 9
집행과장	임경석	2021. 2.22
(강릉지청)		
지청장	정희원	2021. 7. 2
형사부장검사	조영희	2021. 7. 2
검사	김지혜	2020. 2. 3
〃	김병진	2021. 2. 1
〃	이지영	2021. 2. 1
〃	이윤석	2020. 2. 3
〃	주은혜	2020. 2. 3
〃	민경원	2018. 2. 5
〃	안세영	2020. 2. 3

직위	성명	발령일
〃	박재성	2018. 2. 5
〃	최정수	2020. 2. 3
사무과장	김재섭	2021. 2.22
수사과장	왕선중	2021. 2.22
(원주지청)		
지청장	박기동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민병권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김태헌	2021. 7. 2
검사	최명수	2021. 2. 1
〃	신가현	2020. 2. 3
〃	손재용	2020. 2. 3
〃	안덕중	2020. 2. 3
〃	김은성	2021. 2. 1
〃	김진영	2021. 2. 1
〃	박제연	2021. 2. 1
〃	장혜수	2020. 2. 3
〃	전성환	2019. 2.11
〃	한윤석	2021. 2. 1
〃	홍철의	2021. 2. 1
〃	황익진	2020. 2. 3
〃	이가은	2020. 2. 3
사무과장	김승호	2021. 2.22
수사과장	이경태	2020. 8.21
(속초지청)		
지청장	조두현	2021. 7. 2
검사	김상순	2021. 2. 1
〃	조영민	2021. 2. 1
〃	김진호	2020. 2. 3
〃	하언욱	2020. 2. 3
사무과장	김재주	2020. 8.21
(영월지청)		
지청장	김용자	2021. 7. 2
검사	남도현	2021. 2. 1
〃	정기하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연재	2020. 2. 3
〃	이재연	2020. 2. 3
사 무 과 장	이태영	2020. 8.21
(대 전 고 등 검 찰 청)		
검 사 장	여환섭	2021. 6.11
인 권 보 호 관	양석조	2021. 7. 2
검 사	장성철	2021. 7. 2
〃	김경우	2021. 7. 2
〃	김재호	2020. 9. 3
〃	박철웅	2021. 7. 2
〃	송승섭	2020. 9. 3
〃	이승영	2020. 9. 3
〃	이영림	2020. 9. 3
〃	정병대	2020. 9. 3
〃	최용규	2020. 9. 3
사 무 국 장	유승준	2020. 2.10
총 무 과 장	박상락	2021. 2.22
사 건 과 장	송재동	2021. 8. 9
(대 전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노정환	2021. 6.11
차 장 검 사	허정수	2021. 7. 2
인 권 보 호 관	김용규	2021. 7. 2
인 권 보 호 부 장	김희경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문수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성훈	2021. 7. 2
〃	이영재	2020. 9. 3
〃	이종구	2019. 8. 6
〃	이종찬	2021. 7. 2
〃	최영의	2020. 9. 3
형 사 제 1 부 장	최영아	2021. 7. 2
형 사 제 2 부 장	박대범	2021. 7. 2
형 사 제 3 부 장	김호준	2021. 7. 2
형 사 제 4 부 장	김영남	2021. 7. 2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권현유	2021. 7. 2

직 위	성명	발령일
특허범죄조사부장	박승환	2021. 7. 2
공 판 부 장	허성환	2021. 7. 2
(부 부 장) 검 사	박건영	2021. 7. 2
〃	이규원	2021. 7. 2
〃	강정영	2021. 7. 2
〃	김지혜	2021. 7. 2
〃	변수량	2021. 7. 2
〃	신금재	2021. 7. 2
〃	양성필	2021. 7. 2
〃	유민종	2021. 7. 2
〃	이동현	2021. 7. 2
〃	이상혁	2021. 7. 2
〃	정유선	2021. 7. 2
검 사	조아라	2019. 2.11
〃	송명진	2020. 2. 3
〃	김승곤	2020. 2. 3
〃	우옥영	2020. 2. 3
〃	이성화	2020. 2. 3
〃	이주훈	2018. 2. 5
〃	김현중	2021. 8. 1
〃	김지은	2019. 2.11
〃	김보민	2021. 5. 3
〃	윤기선	2020. 9. 3
〃	전원영	2020. 3. 1
〃	고려진	2020. 2. 3
〃	강성기	2021. 8. 2
〃	강화연	2020. 2. 3
〃	김병욱	2021. 2. 1
〃	김세관	2020. 2. 3
〃	김진용	2021. 2. 1
〃	김진혁	2020. 9. 3
〃	김희송	2021. 8. 2
〃	단정려	2021. 2. 1
〃	박정선	2020. 2. 3

직위	성명	발령일
〃	박준석	2021. 2. 1
〃	서민우	2020. 2. 3
〃	서하나	2021. 2. 1
〃	송혜경	2021. 2. 1
〃	심재신	2021. 2. 1
〃	오흥식	2021. 2. 1
〃	유시동	2021. 2. 1
〃	이라영	2021. 2. 1
〃	이세원	2020. 9. 3
〃	이수현	2020. 2. 3
〃	정경영	2021. 8. 2
〃	정우준	2020. 2. 3
〃	조수영	2020. 2. 3
〃	최 웅	2021. 2. 1
〃	최은미	2020. 2. 3
〃	최재순	2019. 2.11
〃	최지윤	2021. 2. 1
〃	호승진	2017. 2.20
〃	홍동기	2020. 2. 3
〃	임은정	2017. 2.20
〃	정초롱	2020. 2. 3
〃	원현호	2019. 5. 8
〃	김종원	2020. 4. 1
사무국장	신범수	2021. 2.22
총무과장	안문용	2021. 2.22
사건과장	김재영	2021. 2.22
집행과장	윤병득	2021. 2.22
조사과장	이규승	2021. 2.22
수사과장	김봉석	2021. 2.22
검사직무대리	이은승	2021. 2.22
(홍성지청)		
지청장	김민형	2021. 7. 2
형사부장검사	김영미	2021. 7. 2
검사	고기철	2020. 2. 3

직위	성명	발령일
〃	안동찬	2020. 2. 3
〃	김태현	2021. 2. 1
〃	오영민	2021. 2. 1
〃	이성호	2021. 2. 1
〃	성혜진	2020. 2. 3
〃	공소정	2020. 2. 3
사무과장	이동영	2021. 8. 9
수사과장	이전철	2020. 8.21
(공주지청)		
지청장	권성희	2021. 7. 2
검사	홍석원	2019. 2.11
〃	박영웅	2021. 2. 1
〃	이재영	2020. 2. 3
〃	신충섭	2020. 2. 3
사무과장	오후균	2021. 8. 9
(논산지청)		
지청장	이준호	2021. 7. 2
검사	김가연	2020. 2. 3
〃	손현진	2020. 2. 3
〃	박상준	2021. 2. 1
〃	이성직	2019. 2.11
〃	최우석	2021. 2. 1
사무과장	최봉진	2020. 8.21
(서산지청)		
지청장	허 정	2021. 7. 2
형사부장검사	어인성	2021. 7. 2
검사	손성민	2020. 2. 3
〃	김병준	2021. 2. 1
〃	김봉수	2021. 2. 1
〃	박보영	2021. 2. 1
〃	백가영	2021. 2. 1
〃	천재영	2021. 2. 1
〃	한웅세	2021. 2. 1
〃	박지향	2020. 2. 3

직위	성명	발령일
사무과장	김대윤	2021. 8. 9
수사과장	배의봉	2021. 8. 9
(천안지청)		
지청장	강형민	2021. 7. 2
차장검사	김성동	2021. 7. 2
인권보호관	손우창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조홍용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한진희	2021. 7. 2
형사제3부장검사	조석규	2021. 7. 2
(부부장)검사	이상민	2021. 7. 2
〃	서효원	2020. 9. 3
〃	송명섭	2021. 7. 2
검사	신지나	2019. 2.11
〃	신승재	2021. 5. 3
〃	남정하	2021. 5. 3
〃	정혜라	2019. 2.11
〃	김녹원	2021. 2. 1
〃	김미경	2020. 2. 3
〃	김선태	2021. 2. 1
〃	김지원	2021. 2. 1
〃	김찬우	2021. 2. 1
〃	노경은	2020. 2. 3
〃	박숙영	2021. 2. 1
〃	박자영	2021. 2. 1
〃	손정아	2021. 2. 1
〃	유종건	2019. 2.11
〃	이대성	2020. 2. 3
〃	이재원	2021. 2. 1
〃	임명환	2021. 2. 1
〃	임현진	2021. 2. 1
〃	정다은	2021. 2. 1
〃	정효민	2021. 2. 1
〃	조정호	2020. 2. 3
〃	탁광진	2021. 2. 1

직위	성명	발령일
〃	한두현	2021. 2. 1
〃	황수이	2021. 2. 1
〃	양경문	2020. 3. 1
사무국장	박형석	2021. 2.22
총무과장	이동진	2021. 8. 9
사건과장	어성국	2021. 8. 9
집행과장	김두빈	2021. 8. 9
수사과장	조형식	2020. 2.10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철희	2021. 6.11
차장검사	송 강	2021. 7. 2
인권보호관	김경수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석우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강승희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배창대	2020. 9. 3
형사제1부장검사	단성한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정태원	2021. 7. 2
형사제3부장검사	김용식	2021. 7. 2
(부부장)검사	기노성	2021. 7. 2
〃	소창범	2021. 7. 2
〃	이시전	2021. 7. 2
〃	조영찬	2021. 7. 2
검사	신기창	2020. 2. 3
〃	김가람	2021. 2. 1
〃	민애리	2021. 5. 3
〃	최희선	2018. 2. 5
〃	유선문	2021. 8. 1
〃	강민정	2021. 7. 2
〃	구지훈	2021. 2. 1
〃	김기왕	2021. 2. 1
〃	김민정	2021. 2. 1
〃	김성태	2021. 2. 1
〃	김창섭	2021. 5.19
〃	신지원	2021. 7. 2

직 위	성명	발령일
〃	안희경	2021. 2. 1
〃	이경환	2021. 2. 1
〃	이상민	2021. 7. 2
〃	정선제	2021. 1. 1
〃	최상훈	2021. 7. 2
〃	최용보	2019. 2.11
〃	최진혁	2021. 7. 2
〃	최혜경	2020. 2. 3
〃	하경준	2021. 2. 1
〃	이승민	2021. 5. 3
〃	박진현	2021. 2. 1
〃	고영인	2020. 3. 1
사무국장	박순우	2021. 2.22
총무과장	홍흥표	2021. 8. 9
사건과장	김득호	2021. 8. 9
집행과장	전명관	2021. 2.22
수사과장	이창희	2021. 8. 9
검사직무대리	신익수	2020. 8.21
(충주지청)		
지청장	김성훈	2021. 7. 2
형사부장검사	송정은	2021. 7. 2
검사	김진혁	2021. 2. 1
〃	이수경	2021. 2. 1
〃	김정윤	2020. 2. 3
〃	박현우	2020. 2. 3
〃	박종현	2020. 2. 3
사무과장	조현곤	2020. 8.21
(제천지청)		
지청장	정수진	2021. 7. 2
검사	박민지	2021. 2. 1
〃	박종환	2021. 2. 1
〃	신종화	2021. 2. 1
사무과장	이기우	2021. 8. 9
(영동지청)		
지청장	김종필	2021. 7. 2
검사	김성진	2021. 2. 1
〃	김원재	2020. 2. 3
사무과장	변의복	2021. 2.22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권순범	2021. 6.11
차장검사	박종근	2021. 6.11
인권보호관	손준성	2021. 7. 2
검사	양요안	2019. 8. 6
〃	박봉희	2021. 7. 2
〃	백찬하	2021. 7. 2
〃	이재구	2020. 9. 3
〃	최성완	2020. 9. 3
〃	배성효	2020. 2. 3
사무국장	김정옥	2020. 8.21
총무과장	유정민	2021. 2.22
사건과장	구영한	2021. 2.2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후곤	2021. 6.11
제1차장검사	정대정	2021. 7. 2
제2차장검사	이창수	2021. 7. 2
인권보호관	우남준	2021. 7. 2
인권보호부장	이준식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노상길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영일	2021. 7. 2
〃	장봉문	2021. 7. 2
〃	채석현	2020. 2. 3
형사제1부장검사	유도윤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이정섭	2021. 7. 2
형사제3부장검사	김제성	2021. 7. 2
형사제4부장검사	조민우	2021. 8. 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정현승	2021. 7. 2
반부패수사부장	김남훈	2021. 7. 2
강력범죄형사부장	박혜영	2021. 7. 2

직 위	성명	발령일
공 판 제 1 부 장	백승주	2021. 7. 2
공 판 제 2 부 장	김재혁	2021. 7. 2
(부 부 장) 검 사	권내건	2021. 7. 2
〃	나의엽	2021. 7. 2
〃	박석용	2021. 7. 2
〃	최원석	2021. 7. 2
〃	한상훈	2021. 7. 2
검 사	이진희	2017. 2.20
〃	권경호	2019. 2.11
〃	김민정	2021. 7. 2
〃	장준혁	2021. 7. 2
〃	김시한	2020. 3. 2
〃	이로운	2021. 8. 1
〃	이인원	2020. 3. 2
〃	이형철	2020. 4. 1
〃	김슬아	2018. 7.19
〃	강용묵	2021. 7. 2
〃	공도운	2021. 2. 1
〃	곽계령	2021. 7. 2
〃	구재연	2019. 2.11
〃	권오장	2021. 7. 2
〃	김다락	2021. 2. 1
〃	김도형	2021. 7. 2
〃	김동휘	2020. 2. 3
〃	김상이	2020. 2. 3
〃	김서영	2021. 2. 1
〃	김소정	2021. 8. 2
〃	김승미	2020. 2. 3
〃	김영주	2021. 7. 2
〃	김윤식	2021. 2. 1
〃	김재환	2021. 7. 2
〃	김정화	2021. 2. 1
〃	김한준	2021. 7. 2
〃	나혜윤	2020. 2. 3

직 위	성명	발령일
〃	남철우	2020. 9. 3
〃	박대한	2021. 2. 1
〃	박민규	2021. 2. 1
〃	박수민	2021. 2. 1
〃	박형철	2021. 2. 1
〃	배석희	2019. 2.11
〃	신기련	2021. 2. 1
〃	양효승	2021. 7. 2
〃	이건웅	2021. 7. 2
〃	이경아	2019. 2.11
〃	이동근	2019. 8. 6
〃	이소현	2021. 7. 2
〃	이웅희	2021. 2. 1
〃	이준석	2020. 9. 3
〃	이현석	2021. 7. 2
〃	이현진	2021. 7. 2
〃	인 훈	2020. 9. 3
〃	정수희	2021. 2. 1
〃	차병곤	2021. 2. 1
〃	차호동	2021. 7. 2
〃	최여련	2020. 9. 3
〃	최혜민	2020. 2. 3
〃	하용만	2021. 7. 2
〃	오나영	2021. 5. 3
〃	이승재	2021. 7. 2
〃	김대성	2020. 3. 2
〃	정현혁	2021. 5. 3
〃	전여민	2021. 7. 2
사 무 국 장	정동진	2021. 2.22
총 무 과 장	금광식	2021. 2.22
사 건 과 장	노한열	2021. 2.22
집 행 과 장	소진호	2021. 2.22
수 사 과 장	김재복	2020. 8.21
조 사 과 장	나성훈	2021. 2.22

직 위	성명	발령일
공 판 과 장	전정규	2021. 2.22
검 사 직 무 대 리	이준호	2021. 2.22
검 사 직 무 대 리	송난화	2021. 8. 9
(대 구 서 부 지 청)		
지 청 장	이준엽	2021. 7. 2
차 장 검 사	허인석	2021. 7. 2
인 권 보 호 관	최인상	2021. 7. 2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황우진	2021. 7. 2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임예진	2021. 7. 2
형 사 제 3 부 장 검 사	손상욱	2021. 7. 2
(부 부 장) 검 사	이재연	2021. 7. 2
〃	정명원	2021. 7. 2
검 사	오재준	2020. 2. 3
〃	박철량	2018. 2. 5
〃	유소영	2020. 2. 3
〃	장우진	2021. 8. 1
〃	정은경	2019. 3. 1
〃	박재형	2021. 5. 3
〃	공현진	2020. 8. 1
〃	권영우	2021. 2. 1
〃	김도환	2020. 5.11
〃	김동진	2021. 2. 1
〃	김소영	2020. 9. 3
〃	김준호	2017. 2.20
〃	박은혜	2019. 2.11
〃	서강원	2019. 2.11
〃	석초롱	2021. 2. 1
〃	신영삼	2020. 2. 3
〃	원상환	2020. 2. 3
〃	임영하	2021. 2. 1
〃	최민준	2018. 2. 5
〃	최자윤	2021. 2. 1
〃	탁동완	2021. 2. 1
〃	정민섭	2019. 5. 8
〃	도예진	2021. 5. 3
〃	우희준	2020. 3. 1
〃	우승민	2020. 3. 1
〃	박노산	2020. 2. 3
사 무 국 장	노희동	2021. 2.22
총 무 과 장	이창우	2020. 8.21
사 건 과 장	도손철	2020. 8.21
집 행 과 장	이상화	2021. 8. 9
수 사 과 장	최순근	2021. 8. 9
(안 동 지 청)		
지 청 장	장형수	2021. 7. 2
검 사	김태헌	2021. 2. 1
〃	류재현	2021. 2. 1
〃	조예림	2021. 2. 1
〃	장현구	2020. 2. 3
〃	이상범	2020. 2. 3
사 무 과 장	김종기	2020. 2.10
수 사 과 장	권기창	2020. 8.21
(경 주 지 청)		
지 청 장	김태은	2021. 7. 2
형 사 부 장 검 사	정 현	2021. 7. 2
검 사	이자희	2018. 2. 5
〃	홍영기	2020. 2. 3
〃	안제홍	2020. 2. 3
〃	김혜리	2021. 2. 1
〃	이영주	2020. 2. 3
〃	이태훈	2021. 2. 1
사 무 과 장	권재영	2020. 8.21
수 사 과 장	김상학	2020. 8.21
(포 항 지 청)		
지 청 장	고형곤	2021. 7. 2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장재완	2021. 7. 2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원신혜	2021. 7. 2
검 사	이아람	2020. 2. 3

직위	성명	발령일
〃	윤장훈	2020. 2. 3
〃	최진우	2020. 2. 3
〃	정다미	2020. 2. 3
〃	최종윤	2020. 2. 3
〃	권예리	2020. 2. 3
〃	윤지언	2021. 2. 1
〃	이해영	2021. 2. 1
〃	조운형	2021. 2. 1
〃	최정훈	2020. 2. 3
〃	김나연	2020. 2. 3
사무과장	김진룡	2020. 8.21
집행과장	강동배	2021. 8. 9
수사과장	김경희	2020. 8.21
(김천지청)		
지청장	박상진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조희영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공준혁	2021. 7. 2
검사	차민형	2019. 2.11
〃	오승식	2020. 2. 3
〃	김용휘	2021. 2. 1
〃	배성재	2021. 2. 1
〃	심동선	2021. 2. 1
〃	양준열	2019. 2.11
〃	왕은진	2020. 2. 3
〃	유경준	2021. 2. 1
〃	정세연	2021. 2. 1
〃	한채란	2021. 2. 1
〃	허강녕	2020. 2. 3
〃	정고운	2020. 2. 3
사무과장	주도경	2021. 2.22
수사과장	이광호	2021. 8. 9
(상주지청)		
지청장	김승호	2021. 2.26
검사	이형우	2021. 2. 1
〃	정주미	2020. 2. 3
〃	황성규	2021. 2. 1
〃	이수영	2020. 2. 3
사무과장	황재화	2021. 8. 9
(의성지청)		
지청장	김상민	2021. 7. 2
검사	박상환	2021. 2. 1
〃	안창인	2020. 2. 3
사무과장	권오성	2020. 8.21
(영덕지청)		
지청장	안동건	2021. 7. 2
검사	박 현	2021. 2. 1
〃	김필수	2020. 2. 3
사무과장	정준화	2021. 8. 9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재연	2021. 6.11
차장검사	김양수	2021. 6.11
인권보호관	주상용	2021. 7. 2
검사	강종헌	2020. 9. 3
〃	심재계	2020. 2. 3
〃	권기환	2021. 7. 2
〃	김 훈	2021. 2.26
〃	김유철	2021. 7. 2
〃	박승환	2020. 9. 3
〃	서정식	2020. 9. 3
〃	손준호	2020. 9. 3
〃	유일석	2021. 7. 2
〃	이용민	2020. 9. 3
〃	정의식	2020. 9. 3
〃	하종철	2021. 2.26
사무국장	박천홍	2020. 8.21
총무과장	정병옥	2021. 2.22
사건과장	정의곤	2021. 8. 9
(부산지방검찰청)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장	이수권	2021. 6.11
제 1 차 장 검 사	박영빈	2021. 7. 2
제 2 차 장 검 사	박찬록	2021. 7. 2
인 권 보 호 관	이병석	2021. 7. 2
인 권 보 호 부 장	강대권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백재명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류지열	2021. 7. 2
〃	박용호	2021. 7. 2
〃	박혜경	2021. 7. 2
〃	홍보가	2020. 9. 3
형사제1부장검사	안병수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박광현	2021. 7. 2
형사제3부장검사	정보영	2021. 7. 2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구미옥	2021. 7. 2
공공외사수사부장검사	이준범	2021. 7. 2
반부패강력수사부장검사	최 혁	2021. 7. 2
공 판 제 1 부 장 검 사	임세진	2021. 7. 2
공 판 제 2 부 장 검 사	홍용화	2021. 7. 2
(부 부 장) 검 사	최수봉	2021. 7. 2
〃	김공주	2021. 7. 2
〃	김보성	2021. 7. 2
〃	김태훈	2020. 9. 3
〃	류장만	2013. 4.23
〃	손은영	2021. 7. 2
〃	윤경원	2019. 8. 6
〃	윤원일	2021. 7. 2
〃	윤재슬	2021. 7. 2
〃	이재만	2021. 7. 2
〃	이치현	2021. 7. 2
〃	최현철	2021. 7. 2
검 사	조현웅	2019. 2.11
〃	이창희	2018. 2. 5
〃	류미래	2021. 5. 3
〃	박찬영	2019. 2.11
〃	김용제	2019. 2.11
〃	양정훈	2021. 8. 1
〃	신승헌	2020. 4. 1
〃	신건수	2020. 3. 1
〃	최진석	2020. 3. 1
〃	곽병수	2021. 2. 1
〃	권준택	2021. 2. 1
〃	김경목	2021. 2. 1
〃	김나영	2017. 3. 1
〃	김민수	2021. 2. 1
〃	김민주	2021. 2. 1
〃	김세희	2019. 2.11
〃	김수지	2020. 2. 3
〃	김은정	2020. 2. 3
〃	김진혁	2021. 2. 1
〃	김태겸	2021. 2. 1
〃	박가희	2020. 2. 3
〃	박건태	2020. 2. 3
〃	박보경	2021. 2. 1
〃	박슬기	2021. 2. 1
〃	박인우	2019. 2.11
〃	손유빈	2020. 2. 3
〃	송인호	2020. 2. 3
〃	송형진	2020. 2. 3
〃	신미량	2018. 2. 5
〃	신정수	2021. 8. 2
〃	심형석	2020. 2. 3
〃	안홍균	2020. 2. 3
〃	양익준	2021. 2. 1
〃	엄영욱	2020. 2. 3
〃	이경민	2019. 2.11
〃	이승현	2020. 2. 3
〃	이자영	2018. 2. 5
〃	이지영	2019. 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형석	2020. 2. 3
〃	이희준	2021. 2. 1
〃	정선철	2020. 2. 3
〃	정일권	2019. 2.11
〃	조재학	2020. 2. 3
〃	진을종	2020. 2. 3
〃	최완영	2021. 2. 1
〃	최지예	2019. 2.11
〃	추창현	2021. 2. 1
〃	하준호	2021. 2. 1
〃	한지혁	2020. 9. 3
〃	황나영	2021. 2. 1
〃	임대현	2021. 5. 3
〃	정유정	2020. 2. 3
사무국장	정순철	2021. 2.22
총무과장	서맹웅	2020. 2.10
사건과장	성원석	2021. 2.22
집행과장	이승호	2021. 2.22
조사과장	정상훈	2021. 2.22
수사과장	신창우	2020. 8.21
조직범죄수사과장	김문규	2021. 8. 9
마약수사과장	한광익	2021. 2.22
공판과장	이태언	2021. 2.22
검사직무대리	조병웅	2021. 2.22
〃	윤희창	2021. 8. 9
〃	안태성	2021. 8. 9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박세현	2021. 7. 2
차장검사	박성민	2021. 7. 2
인권보호관	임종필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김훈영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이영화	2021. 7. 2
형사제3부장검사	조만래	2021. 7. 2
(부부장)검사	엄재상	2020. 9. 3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동원	2021. 7. 2
〃	천헌주	2021. 7. 2
〃	허지훈	2021. 2. 1
검사	권영주	2021. 2. 1
〃	이용정	2018. 2. 5
〃	김현곤	2019. 2.11
〃	최유리	2019. 2.11
〃	박중화	2020. 9. 3
〃	고형근	2020. 3. 1
〃	김민수	2021. 5. 3
〃	이승호	2021. 8. 1
〃	김태엽	2021. 2. 1
〃	김필수	2020. 2. 3
〃	서동범	2021. 2. 1
〃	이가희	2020. 3. 1
〃	이대헌	2020. 2. 3
〃	이선균	2021. 2. 1
〃	이한별	2021. 2. 1
〃	장려미	2020. 2. 3
〃	정영서	2021. 2. 1
〃	정인혜	2021. 2. 1
〃	정정욱	2020. 2. 3
〃	최혜진	2021. 2. 1
〃	이수진	2020. 9. 3
〃	한주동	2020. 2. 3
〃	이종옥	2020. 2. 3
사무국장	권영준	2021. 2.22
총무과장	양근석	2021. 8. 9
사건과장	조용욱	2020. 8.21
집행과장	권경원	2020. 8.21
수사과장	오익환	2021. 8. 9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권순정	2021. 7. 2
차장검사	김도완	2021. 7. 2

직 위	성명	발령일
인권보호관	성상욱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권방문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박기환	2021. 7. 2
형사제3부장검사	서현욱	2021. 7. 2
(부부장)검사	조재철	2021. 7. 2
〃	김주현	2021. 7. 2
〃	류남경	2021. 7. 2
〃	박성민	2021. 7. 2
검사	양진선	2021. 2. 1
〃	황호석	2020. 9. 3
〃	김혜원	2021. 5. 3
〃	김은영	2020. 3. 1
〃	문선주	2019. 2.11
〃	김규현	2020. 3. 1
〃	김소현	2021. 2. 1
〃	김정선	2021. 2. 1
〃	김지아	2020. 2. 3
〃	김태희	2020. 9. 3
〃	김해슬	2020. 2. 3
〃	문지원	2021. 2. 1
〃	박상훈	2021. 2. 1
〃	박세미	2020. 5.11
〃	안태민	2021. 2. 1
〃	이정훈	2020. 9. 3
〃	임성환	2021. 2. 1
〃	장정윤	2021. 2. 1
〃	조 철	2021. 2. 1
〃	임성열	2020. 3. 1
〃	김다혜	2019. 5. 8
사무과장	박춘광	2021. 2.22
수사과장	최정철	2021. 2.22
집행과장	정인석	2019. 9.30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주형	2021. 6.11

직 위	성명	발령일
차장검사	정영학	2021. 8.23
인권보호관	구상엽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 신	2020. 9. 3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재호	2021. 7. 2
〃	도상범	2021. 7. 2
〃	황성연	2020. 9. 3
형사제1부장검사	장윤태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원형문	2021. 7. 2
형사제3부장검사	김현아	2021. 7. 2
형사제4부장검사	최준호	2021. 7. 2
형사제5부장검사	이승훈	2021. 7. 2
공판송무부장검사	권나원	2021. 7. 2
(부부장)검사	남계식	2021. 7. 2
〃	유효제	2021. 7. 2
검사	임아랑	2019. 2.12
〃	허태훈	2020. 2. 3
〃	윤효선	2020. 2. 3
〃	신의호	2020. 2. 3
〃	장송이	2019. 2.11
〃	이정호	2020. 2. 3
〃	진세언	2019. 2.11
〃	김수영	2021. 5. 3
〃	신상우	2019. 2.11
〃	장영롱	2019. 2.11
〃	임정빈	2019. 2.11
〃	홍찬양	2021. 5. 3
〃	어원중	2020. 3. 1
〃	오희원	2021. 5. 3
〃	길선미	2021. 2. 1
〃	김미선	2021. 2. 1
〃	김미수	2019. 2.11
〃	김미지	2020. 9. 3
〃	김범준	2021. 2. 1
〃	김석순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승기	2021. 2. 1
〃	김정원	2021. 2. 1
〃	김현우	2020. 2. 3
〃	김희진	2019. 2.11
〃	남소정	2021. 2. 1
〃	박민경	2021. 2. 1
〃	박지연	2019. 2.11
〃	안도은	2021. 2. 1
〃	안주원	2021. 2. 1
〃	우경진	2021. 2. 1
〃	이창헌	2021. 2. 1
〃	정성두	2021. 2. 1
〃	최윤희	2021. 2. 1
〃	허성호	2021. 2. 1
〃	이희진	2020. 2. 3
〃	박효정	2020. 3. 1
〃	이광세	2020. 2. 3
사무국장	박원길	2021. 2.22
총무과장	안병훈	2021. 8. 9
사건과장	이동희	2021. 2.22
집행과장	조상범	2021. 2.22
공공수사지원과장	이태득	2021. 2.22
수사과장	김주현	2021. 2.22
검사직무대리	김순덕	2021. 8. 9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노정연	2021. 6.11
차장검사	장동철	2021. 7. 2
인권보호관	변필건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충한	2020. 9. 3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정훈	2021. 7. 2
〃	이영준	2020. 9. 3
형사제1부장검사	김정헌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김진남	2021. 7. 2
형사제3부장검사	신종곤	2021. 7. 2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4부장검사	이승형	2021. 7. 2
공판송무부장검사	황보현희	2021. 7. 2
(부부장)검사	김미은	2021. 7. 2
〃	김현우	2021. 7. 2
검사	김동율	2020. 2. 3
〃	김희연	2019. 2.11
〃	노영진	2020. 2. 3
〃	박은석	2020. 3. 1
〃	최영권	2021. 8. 1
〃	이윤정	2020. 3. 1
〃	김선형	2021. 5. 3
〃	김희영	2016. 1.27
〃	강상혁	2021. 2. 1
〃	김경년	2020. 2. 3
〃	김대근	2021. 2. 1
〃	김대양	2021. 2. 1
〃	김현지	2021. 2. 1
〃	류경환	2021. 2. 1
〃	류정인	2021. 2. 1
〃	박혜진	2021. 2. 1
〃	배상윤	2020. 2. 3
〃	송민하	2021. 2. 1
〃	이리원	2021. 2. 1
〃	이주현	2020. 2. 3
〃	장아량	2020. 2. 3
〃	장우혁	2021. 2. 1
〃	정일두	2019. 2.11
〃	최인성	2021. 2. 1
〃	염준범	2020. 3. 1
〃	오혜림	2020. 3. 1
〃	김용기	2021. 5. 3
사무국장	김종일	2021. 2.22
총무과장	편영길	2021. 2.22
사건과장	김천교	2019. 9.30

직위	성명	발령일
집행과장	전영배	2021. 2.22
조사과장	정영호	2021. 8. 9
수사과장	조승래	2021. 8. 9
검사직무대리	김종철	2021. 2.22
(마산지청)		
지청장	정우식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김상균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이희찬	2021. 7. 2
검사	정재연	2018. 2. 5
〃	강지원	2020. 2. 3
〃	김청아	2019. 2.11
〃	금성호	2021. 2. 1
〃	김동욱	2021. 2. 1
〃	김문주	2020. 2. 3
〃	김홍도	2021. 2. 1
〃	오종혁	2021. 2. 1
〃	이대희	2021. 2. 1
〃	조경민	2021. 2. 1
〃	하연지	2021. 2. 1
사무과장	이종흔	2021. 8. 9
수사과장	박준형	2021. 2.22
(진주지청)		
지청장	김창진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김형원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장준호	2021. 7. 2
검사	김용선	2020. 2. 3
〃	이승철	2020. 2. 3
〃	박선하	2019. 2.11
〃	고병무	2019. 2.11
〃	김수현	2021. 2. 1
〃	박동진	2021. 2. 1
〃	설제민	2021. 2. 1
〃	이정훈	2021. 2. 1
〃	정기훈	2021. 2. 1

직위	성명	발령일
〃	최형욱	2021. 2. 1
사무과장	조형식	2021. 8. 9
집행과장	정성길	2021. 2.22
수사과장	강정봉	2021. 2.22
(통영지청)		
지청장	김수현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조용우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송영인	2021. 7. 2
검사	오정헌	2020. 2. 3
〃	박상희	2020. 2. 3
〃	김병희	2021. 2. 1
〃	김한나	2021. 2. 1
〃	박진형	2021. 2. 1
〃	성진영	2020. 2. 3
〃	이충용	2021. 2. 1
〃	장근보	2021. 2. 1
〃	정종일	2021. 2. 1
〃	홍유정	2021. 2. 1
사무과장	채상훈	2021. 8. 9
수사과장	고성준	2020. 8.21
(밀양지청)		
지청장	최청호	2021. 7. 2
검사	문승철	2021. 2. 1
〃	최건호	2021. 2. 1
〃	이동욱	2020. 2. 3
사무과장	성주경	2021. 2.22
(거창지청)		
지청장	이진용	2021. 7. 2
검사	이희욱	2020. 2. 3
〃	김태완	2021. 2. 1
〃	김남용	2019. 2.11
사무과장	노희창	2020. 8.21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종태	2021. 6.11

직 위	성명	발령일
인 권 보 호 관	박억수	2021. 7. 2
검 사	강여찬	2021. 7. 2
〃	박소영	2020. 9. 3
〃	방봉혁	2020. 9. 3
〃	안성수	2020. 9. 3
〃	유두열	2021. 7. 2
〃	이주일	2021. 7. 2
〃	임관혁	2021. 2.26
〃	정유미	2021. 7. 2
〃	황의수	2021. 7. 2
총 무 과 장	황세일	2021. 8. 9
사 건 과 장	명관호	2021. 8. 9
(광 주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박찬호	2021. 6.11
차 장 검 사	정진용	2021. 7. 2
인 권 보 호 관	이정봉	2021. 7. 2
인 권 보 호 부 장	이태일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강길주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강남수	2021. 7. 2
〃	김 환	2021. 7. 2
〃	김종철	2020. 9. 3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반종욱	2021. 7. 2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박순배	2021. 7. 2
형 사 제 3 부 장 검 사	장윤영	2021. 7. 2
형 사 제 4 부 장 검 사	황정현	2021. 7. 2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임유경	2021. 7. 2
반부패강력수사부장검사	박진성	2021. 7. 2
공 판 부 장 검 사	유옥근	2021. 7. 2
(부 부 장) 검 사	고은별	2021. 7. 2
〃	박대환	2021. 7. 2
〃	이동원	2021. 7. 2
〃	임승철	2021. 7. 2
〃	정광수	2021. 7. 2
〃	최종필	2021. 7. 2

직 위	성명	발령일
〃	최종혁	2021. 7. 2
〃	최태은	2020. 9. 3
검 사	이승주	2020. 2. 3
〃	권재호	2020. 2. 3
〃	김상문	2019. 2.11
〃	김태호	2020. 2. 3
〃	박상희	2020. 2. 3
〃	박현규	2020. 2. 3
〃	최은영	2017. 2.20
〃	정종원	2020. 2. 3
〃	전수진	2020. 2. 3
〃	김지혜	2019. 2.11
〃	박연주	2020. 3. 1
〃	김효진	2021. 5. 3
〃	방지형	2019. 2.11
〃	오연택	2018. 2. 5
〃	전종현	2020. 8. 1
〃	조정연	2020. 3. 1
〃	이준명	2020. 3. 1
〃	홍기영	2021. 5. 3
〃	강송훈	2021. 2. 1
〃	고승우	2021. 2. 1
〃	김규완	2021. 2. 1
〃	김도희	2021. 2. 1
〃	김수민	2021. 2. 1
〃	김정화	2020. 2. 3
〃	김지윤	2021. 2. 1
〃	김치훈	2021. 2. 1
〃	김호경	2021. 8. 2
〃	나광윤	2021. 2. 1
〃	문호섭	2021. 2. 1
〃	박지영	2021. 2. 1
〃	반 지	2020. 2. 3
〃	신철민	2021. 2. 1

직위	성명	발령일
〃	심우석	2021. 8. 1
〃	안지영	2020. 2. 3
〃	엄상준	2021. 8. 2
〃	유지연	2021. 2. 1
〃	이정우	2021. 2. 1
〃	이주현	2020. 2. 3
〃	이혜미	2021. 2. 1
〃	이혜진	2021. 2. 1
〃	임지혜	2021. 2. 1
〃	장유강	2020. 2. 3
〃	정미란	2021. 2. 1
〃	최윤미	2019. 3. 1
〃	허창환	2021. 2. 1
〃	홍희영	2020. 9. 3
〃	주재현	2020. 3. 1
〃	황지홍	2020. 2. 3
사무국장	윤성진	2021. 8. 9
총무과장	김재정	2021. 2.22
사건과장	구형석	2021. 8. 9
집행과장	박종섭	2021. 8. 9
조사과장	고재훈	2021. 8. 9
수사과장	김중근	2021. 2.22
공판과장	김금숙	2021. 8. 9
검사직무대리	이재수	2021. 8. 9
(목포지청)		
지청장	윤중현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허 준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주혜진	2021. 7. 2
검사	이부용	2020. 2. 3
〃	신명은	2020. 2. 3
〃	정재훈	2020. 2. 3
〃	이거량	2021. 2. 1
〃	가혜리	2021. 2. 1
〃	김시현	2021. 2. 1

직위	성명	발령일
〃	백지은	2021. 2. 1
〃	봉진수	2020. 2. 3
〃	신재성	2021. 2. 1
〃	양현세	2021. 2. 1
〃	이영호	2021. 2. 1
사무과장	최이석	2020. 8.21
수사과장	서용기	2021. 8. 9
(장흥지청)		
지청장	임선화	2021. 7. 2
검사	김마로	2020. 2. 3
〃	천안문	2021. 2. 1
사무과장	임을빈	2020. 8.21
(순천지청)		
지청장	김도균	2021. 7. 2
차장검사	노진영	2021. 7. 2
인권보호관	박정의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김수민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황현아	2021. 7. 2
형사제3부장검사	권찬혁	2021. 7. 2
(부부장) 검사	이방현	2021. 7. 2
검사	오흥세	2019. 2.15
〃	고영하	2021. 2. 1
〃	박경화	2020. 2. 3
〃	은종욱	2020. 2. 3
〃	이수행	2021. 8. 2
〃	고명아	2020. 9. 3
〃	양재영	2020. 2. 3
〃	구민하	2021. 5. 3
〃	하보람	2020. 9. 3
〃	오신환	2020. 2. 3
〃	최선희	2020. 2. 3
〃	정지선	2020. 3. 1
〃	김동현	2021. 5. 3
〃	김도윤	2021. 5. 3

직 위	성명	발령일
〃	송동민	2020. 3. 1
〃	남대주	2020. 9. 3
〃	박건영	2021. 7. 2
〃	이수환	2021. 2. 1
〃	이진순	2021. 2. 1
〃	정재인	2021. 2. 1
〃	채원재	2021. 2. 1
〃	허윤희	2020. 9. 3
〃	홍준현	2021. 2. 1
〃	류광환	2020. 3. 1
〃	전정우	2020. 3. 1
사무국장	이영철	2021. 8. 9
총무과장	이정배	2021. 8. 9
사건과장	이혜영	2021. 2.22
집행과장	강병철	2020. 8.21
수사과장	김영석	2021. 2.22
(해남지청)		
지청장	김일권	2021. 7. 2
검사	김경회	2020. 2. 3
〃	김주현	2020. 2. 3
〃	장민수	2021. 2. 1
사무과장	권점용	2021. 2.22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문성인	2021. 6.11
차장검사	김형수	2021. 7. 2
인권보호관	권기대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서종혁	2020. 9. 3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신현성	2021. 7. 2
〃	전계광	2020. 9. 3
형사제1부장검사	김지연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최재준	2021. 7. 2
형사제3부장검사	홍승표	2021. 7.23
(부부장)검사	장혜영	2021. 7. 2
검사	김춘성	2020. 2. 3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은정	2020. 2. 3
〃	전다솜	2021. 5. 3
〃	권하늘	2021. 5. 3
〃	강재하	2021. 2. 1
〃	김민정	2021. 2. 1
〃	김지혜	2021. 2. 1
〃	김힘찬	2021. 2. 1
〃	민경찬	2020. 3. 1
〃	박동주	2019. 2.11
〃	박재호	2021. 2. 1
〃	신혜원	2021. 2. 1
〃	안미현	2020. 9. 3
〃	온정훈	2021. 2. 1
〃	이경석	2021. 2. 1
〃	이은정	2021. 2. 1
〃	이인영	2020. 3. 1
〃	장대규	2019. 2.11
〃	정지영	2017. 2.20
〃	조윤영	2021. 2. 1
사무국장	김태경	2021. 8. 9
총무과장	배영철	2021. 2.22
사건과장	윤석인	2021. 8. 9
집행과장	양헌규	2021. 8. 9
수사과장	이승환	2021. 2.22
검사직무대리	정근휘	2020. 8.21
(군산지청)		
지청장	박기종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이완희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김승걸	2021. 7. 2
검사	임현철	2018. 2. 5
〃	김지혜	2020. 2. 3
〃	조 혁	2020. 2. 3
〃	장기영	2020. 2. 3
〃	황종현	2020. 2. 3

직 위	성명	발령일
〃	조윤정	2020. 2. 3
〃	이지은	2019. 2.11
〃	김연중	2020. 2. 3
〃	김준소	2021. 2. 1
〃	김호중	2021. 2. 1
〃	박수영	2021. 2. 1
〃	천대우	2021. 2. 1
사무과장	서영욱	2021. 8. 9
집행과장	유청수	2021. 8. 9
수사과장	전 희	2021. 8. 9
(정읍지청)		
지청장	이병주	2021. 7. 2
검사	김태영	2020. 2. 3
〃	박혜진	2020. 2. 3
〃	박상우	2021. 2. 1
〃	황준성	2021. 2. 1
사무과장	박현섭	2021. 2.22
(남원지청)		
지청장	신승희	2021. 7. 2
검사	김유완	2020. 2. 3
〃	최윤영	2021. 2. 1
사무과장	정인호	2021. 2.22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원석	2021. 6.11
차장검사	김선화	2021. 7. 2
인권보호관	문영권	2021. 7. 2
형사제1부장검사	이동언	2021. 7. 2
형사제2부장검사	김도연	2021. 7. 2
형사제3부장검사	용성진	2021. 7. 2
(부부장)검사	최선경	2020. 9. 3
〃	박종선	2021. 7. 2
〃	한상형	2021. 7. 2
검사	김지은	2020. 2. 3
〃	정수정	2018. 2. 5

직 위	성명	발령일
〃	허 정	2020. 2. 3
〃	이환우	2019. 2.11
〃	조동훈	2020. 2. 3
〃	박채원	2019. 2.11
〃	이경문	2020. 3. 1
〃	이준희	2019. 2.11
〃	반동호	2020. 3. 1
〃	손세희	2021. 5. 3
〃	원경희	2020. 2. 3
〃	고은실	2021. 8. 2
〃	권다송이	2021. 2. 1
〃	김효진	2021. 2. 1
〃	문승기	2021. 2. 1
〃	왕선주	2021. 2. 1
〃	이태협	2020. 9. 3
〃	장태원	2021. 2. 1
〃	전철호	2021. 2. 1
〃	한승진	2019. 2.11
사무국장	박상욱	2021. 2.22
총무과장	이원형	2021. 2.22
사건과장	장석경	2021. 2.22
집행과장	오영준	2021. 2.22
수사과장	송재영	2020. 8.21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	2021. 6.11

4.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 보호관찰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이형재	2019. 11. 13.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장	송인선	2021. 1. 18.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허명금	2020. 2. 3.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장	노일석	2020. 7. 6.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김종말	2020. 1. 13.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태호	2020. 1. 13.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황진규	2021. 8. 30.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이법호	2020. 1. 13.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김영갑	2020. 1. 13.	수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	2021. 8. 30.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김경렬	2020. 7. 6.	춘천보호관찰소 소장	최종철	2020. 7. 6.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관찰과 과장 행정지원과 과장	황진규 김남중 김세훈	2021. 1. 4. 2021. 1. 18. 2021. 1. 18.	대전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 과장 관찰과 과장	이영면 김준성 안성준	2021. 1. 18. 2021. 1. 18. 2021. 1. 18.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장	이영미	2021. 1. 18.	청주보호관찰소 소장	김시종	2020. 1. 13.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상록	2020. 7. 6.	대구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 과장 관찰과 과장	안병경 홍정원 권용목	2021. 8. 30. 2020. 7. 6. 2021. 1. 18.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부산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 장 관찰과 장	양봉환 김용현 김송수	2021. 1. 18. 2021. 1. 18. 2020. 7. 6.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변병귀	2021. 1 .18.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권기한	2020. 7. 6.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지소장	이승욱	2020. 7. 6.
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 흡	2019. 1. 21.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지소장	이국희	2020. 7. 6.
광주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 장 관찰과 장	공 석 김양곤 최 걸	2020. 8. 18. 2021. 8. 31.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지소장	정성수	2020. 7. 6.
전주보호관찰소 소장	정기조	2020. 8. 18.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지소장	배점호	2020. 7. 6.
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기환	2021. 1. 18.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김원진	2020. 1. 13.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센터장	문희갑	2021. 8. 30.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지소장	천원기	2020. 1. 13.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센터장	황남례	2020. 7. 6.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김정렬	2020. 1. 13.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지소장	김용수	2020. 1. 13.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지소장	유주숙	2021. 8. 30.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소년원		
원장	성우제	2019. 7. 22.
행정지원과장	최상혁	2020. 8. 25.
교무과장	김택수	2019. 4. 15.
분류보호과장	최오수	2021. 8. 30.
호송과장	이재완	2020. 7. 13.
의무과장	이민재	2020. 10. 26.
부산소년원		
원장	전상호	2021. 8. 30.
행정지원과장	차효석	2021. 8. 30.
교무과장		공석
분류보호과장	박해영	2021. 1. 18.
의무과장	시현욱	2019. 2. 18.
대구소년원		
원장	조성민	2021. 1. 18.
행정지원과장	구영립	2021. 8. 30.
교무과장	권혁귀	2020. 1. 13.
분류보호과장	김달곤	2020. 7. 6.
의무과장	조태욱	2018. 1. 1.
광주소년원		
원장	윤일중	2021. 8. 30.
행정지원과장	이양근	2020. 7. 13.
교무과장	문승주	2021. 1. 18.
분류보호과장	이두관	2021. 1. 18.
의무과장	정길영	2001. 2. 28.
전주소년원		
원장	장재원	2021. 8. 30.
행정지원과장	최봉범	2020. 1. 13.
교무과장	조태진	2021. 8. 30.
분류보호과장	박상문	2020. 1. 13.
의무과장	김학성	2019. 7. 1.
대전소년원		
원장	염정훈	2021. 8. 30.
행정지원과장	김주형	2021. 8. 30.
교무과장	조동기	2021. 1. 18.
분류보호과장	우종한	2021. 1. 18.
의무과장	장재호	2012. 11.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청주소년원		
원장	유상운	2021. 8. 30.
행정지원과장	송명호	2020. 1. 13.
교무과장	김종준	2020. 7. 13.
의무과장	전승화	2005. 10. 26.
안양소년원		
원장	김태섭	2021. 8. 30.
행정지원과장	정태근	2021. 8. 30.
교무과장	차영환	2020. 7. 13.
의무과장	최원석	2015. 7. 30.
춘천소년원		
원장	배종상	2021. 1. 18.
행정지원과장	신승학	2021. 1. 18.
교무과장	안덕배	2020. 7. 13.
분류보호과장		공석
의무과장		공석
제주소년원		
원장	신원식	2021. 1. 18.
행정지원과장	김도연	2021. 8. 30.
교무과장	김선철	2021. 8. 30.
의무과장	최병선	2018. 10. 19.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원장	최우철	2021. 8. 30.
행정지원과장	천영민	2019. 8. 13.
교무과장	이헌구	2021. 1. 18.
분류심사과장	권을식	2021. 8. 30.
호송과장	김원수	2021. 8. 30.
의무과장	박정환	2011. 4. 8.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황철주	2021. 1. 18.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강종모	2020. 1. 13.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박종국	2021. 1. 18.
치료감호소		
소장	조성남	2019. 2. 11.
의료부장	장소영	2019. 4. 1.
행정지원과장	오유진	2021 7. 12.
감호과장	민명식	2021. 8. 30.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4급 이상)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보 존 소 장	심 경 보	2020. 07. 01.
검 찰 수 사 서 기 관	배 은 호	2021. 02. 22.

6.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지방교정청		
청장	신경우	2021. 8. 9.
총무과장	윤창식	2021. 8. 9.
보안과장	강군오	2021. 8. 9.
사회복귀과장	백금태	2021. 1. 25.
분류센터장	허만혁	2021. 8. 30.
대구지방교정청		
청장	구지서	2021. 8. 9.
총무과장	한천용	2021. 1. 25.
보안과장	주정민	2021. 8. 30.
사회복귀과장	김영광	2021. 8. 30.
대전지방교정청		
청장	정병헌	2021. 8. 9.
총무과장	박상용	2021. 8. 30.
보안과장	윤순풍	2021. 8. 9.
사회복귀과장	정재열	2021. 8. 9.
광주지방교정청		
청장	신용해	2021. 8. 9.
총무과장	최국진	2021. 1. 25.
보안과장	유기용	2021. 8. 9.
사회복귀과장	서호성	2021. 8. 30.
서울구치소	오우정	2021. 8. 30.
소장	유태오	2021. 8. 9.
부소장	강기천	2021. 1. 25.
총무과장	정혜리	2021. 1. 25.
보안과장	이성호	2021. 8. 30.
의료과장	이병연	2019. 8. 1.
분류심사과장	임정인	2021. 1. 25.
시설과장	강동헌	2021. 7. 12.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대전교도소		
소장	서호영	2021. 1. 25.
부소장	박석규	2021. 8. 30.
총무과장	한희도	2021. 8. 30.
보안과장	조진호	2021. 8. 30.
의료과장	이준호	2009. 2. 17.
분류심사과장	김선희	2021. 8. 30.
논산지소장	박대철	2021. 8. 30.
대구교도소		
소장	오광운	2021. 8. 9
부소장	정원수	2021. 8 30
총무과장	박은옥	2021. 8. 30
보안과장	안경수	2021. 8. 30
의료과장		
분류심사과장	이현주	2021. 8. 30
광주교도소		
소장	민낙기	2021. 8. 9.
부소장	윤대하	2021. 8. 30.
총무과장	심성일	2021. 8. 30.
보안과장	김남진	2021. 8. 30.
의료과장	박일웅	2006. 8. 16.
안양교도소		
소장	정유철	2021. 8. 9.
부소장	김광희	2021. 8. 30.
총무과장	김수철	2020. 11. 7.
보안과장	최창호	2021. 8. 30.
의료과장	최광섭	2005. 11. 7.
부산구치소		
소장	김영식	2021. 1. 25.
부소장	황진석	2021. 8. 30.
총무과장	김수희	2021. 8. 30.
보안과장	조형근	2021. 8. 30.
의료과장	안재진	2019. 9. 2.

직위	성명	발령일
수원구치소		
소장	김명철	2021. 1. 25.
부소장	공석	
총무과장	이규성	2021. 8. 30.
보안과장	정영모	2021. 8. 30.
의료과장	조재관	2020. 2. 24.
평택지소장	정 진	2021. 8. 30.
서울동부구치소		
소장	우희경	2021. 1. 25.
부소장	허덕환	2021. 8. 30.
총무과장	정인식	2021. 8. 30.
보안과장	이도곤	2021. 8. 30.
의료과장	강승원	2021. 9. 13.
인천구치소		
소장	최규철	2021. 8. 9.
부소장	김병호	2021. 8. 30.
총무과장	윤양호	2021. 8. 30.
보안과장	김희곤	2021. 8. 30.
의료과장	공석	
서울남부구치소		
소장	류기현	2020. 1. 15.
부소장	제환국	2021. 8. 30.
총무과장	강성헌	2021. 8. 30.
보안과장	윤상륜	2021. 8. 30.
의료과장	박종민	2016. 9. 26.
천안개방교도소		
소장	박진성	2021. 8. 9.
의료과장	윤완중	2019. 1.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소장	김도형	2021. 8. 9.
의료과장	곽연우	2016. 10. 5.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장	장종선	2021. 8. 30.
부소장	송진수	2021. 8. 30.
총무과장	김지명	2021. 8. 30.
보안과장	박정민	2021. 8. 30.
의료과장	한주섭	2002. 1. 21.
시설과장	홍성운	2021. 7. 12.
전주교도소		
소장	김남주	2021. 8. 9.
총무과장	김용국	2020. 12. 25.
보안과장	지경선	2021. 8. 30.
의료과장	공석	

직위	성명	발령일
여주교도소		
소장	최진규	2021. 8. 9.
의료과장	공석	
부산교도소		
소장	박수연	2021. 8. 9.
의료과장	윤종철	2015. 7. 14.
의정부교도소		
소장	신동윤	2021. 8. 9.
의료과장	주재호	2021. 9. 13.
창원교도소		
소장	오세홍	2020. 9. 21.
의료과장	이승기	2006. 8. 16.
순천교도소		
소장	박삼재	2021. 8. 9.
의료과장	박경철	1996. 9. 1.
서울남부교도소		
소장	남준락	2021. 8. 9.
의료과장	김신욱	2021. 8. 2.
포항교도소		
소장	김철민	2021. 8. 9.
의료과장	우재택	2019. 8. 7.
진주교도소		
소장	최철경	2021. 8. 9.
의료과장	이진철	2007. 12. 13.
목포교도소		
소장	한성주	2021. 8. 9.
의료과장	강 철	1990. 6. 26.
대구구치소		
소장	서 민	2021. 8. 9.
의료과장	이재광	2005. 11. 7.
군산교도소		
소장	홍순철	2021. 1. 25.
의료과장	장성용	2006. 4. 17.
청주교도소		
소장	양원동	2021. 8. 9.
의료과장	박현우	2018. 8. 27.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천안교도소		
소장	류동수	2021. 8. 9.
의료과장	신준식	2016. 9.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소장	이남구	2021. 8. 30.
의료과장	최창학	2011. 1. 1.
춘천교도소		
소장	김일환	2021. 1. 25
의료과장	이중구	2007. 5. 28
원주교도소		
소장	박진홍	2021. 8. 9.
의료과장	김영진	2015. 6. 18.
안동교도소		
소장	육근우	2021. 8. 9.
의료과장	이석균	2017. 9. 18.
경북북부제2교도소		
소장	배경석	2021. 8. 9.
의료과장	계영남	2019. 7. 22.
청주여자교도소		
소장	서수원	2021. 1. 25
의료과장	박병철	2018. 3. 13.
김천소년교도소		
소장	박동수	2021. 8. 9.
의료과장	최인환	2008. 1. 24.
공주교도소		
소장	양동석	2021 8. 9.
의료과장	송혜정	2021. 3. 24.
경북북부제3교도소		
소장	고상길	2021. 8. 30.
의료과장	공 석	
울산구치소		
소장	최재우	2021. 8. 9.
의료과장	서보균	2020. 3. 9.
정읍교도소		
소장	김학봉	2021. 1. 25.
의료과장	김득종	2021. 1. 4.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제주교도소		
소장	이효선	2021. 8. 30.
의료과장	박재홍	2018. 8. 20.
홍성교도소		
소장	김응분	2021. 8. 9.
의료과장	윤성로	1994. 11. 12.
서산지소장	장승구	2021. 8. 9.
경주교도소		
소장	서보균	2021. 8. 9.
의료과장	조윤철	2012. 1. 9.
통영구치소		
소장	차광식	2021. 8. 9.
의료과장	정원석	2017. 2. 6.
밀양구치소		
소장	윤영주	2021. 8. 30.
의료과장	전윤식	2014. 5. 12.
상주교도소		
소장	안영삼	2021. 1. 25.
의료과장	박순록	2017. 8. 21.
강릉교도소		
소장	김경화	2021. 8. 9.
의료과장	김일환	2017. 1. 1.
영월교도소		
소장	김현우	2021. 1. 1.
의료과장	김건도	2015. 6. 23.
장흥교도소		
소장	김종곤	2021. 8. 9.
의료과장	김규정	2020. 2. 17.
해남교도소		
소장	이민열	2021. 8. 9.
의료과장	최영기	2017. 4. 10.
충주구치소		
소장	장원재	2021. 8. 9.
의료과장	한윤석	2020. 1. 20.
강원북부교도소		
소장	손용대	2021. 1. 25.
의료과장	손승재	2021. 12. 20.

7.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외국인보호소/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청장	공 석	
지원국장	공 석	
심사1국장	공 석	
심사2국장	이문한	2021. 1. 1.
총무과장	김용규	2021. 8. 9.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장	안규석	2021. 10. 12.
총무과장	은기범	2021. 9. 17.
관리과장	이취경	2021. 8. 9.
이민특수조사대장	김종복	2021. 8. 9.
출입국정보화센터장	진우석	2020. 1.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청장	김종민	2021. 10. 12.
관리과장	임은진	2021. 8. 23.
이민특수조사대장	오점근	2021. 8. 29.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청장	이규홍	2021. 9. 17.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청장	공 석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	공 석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김기영	2021. 8. 9.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이춘용	2021. 1. 1.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강수근	2021. 1. 1.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김진영	2021. 8. 9.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이호원	2020. 7. 20.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황택환	2020. 7. 20.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공 석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김진성	2021. 8. 9.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임채임	2021. 1. 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박찬순	2021. 8. 9.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정성경	2020. 7. 20.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구본준	2021. 1. 1.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강성환	2021. 3. 1.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	길강묵	2021. 1. 18.
청주외국인보호소 소장	김기락	2021. 8. 9.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	류인성	2021. 1. 1.

제6절 인사

• 총 괄

(2021. 1 ~ 12월)

구 분		계	승 진	전 보	신규임용	면 직
계		15,265	3,527	8,641	1,886	1,211
검 사		1,386	0	1,206	101	79
일반직	소 계	13,879	3,527	7,435	1,785	1,132
	본 부 (연 수 원)	387 (54)	81 (1)	235 (48)	31 (0)	40 (5)
	검 찰 청	3,697	707	2,496	241	253
	보 호 기 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1,701	403	836	325	137
	지 방 교 정 청 (구 치 소 , 교 도 소)	6,844	1,901	3,327	995	621
	출 입 국 · 외 국 인 기 관 (출 입 국 · 외 국 인 청 , 출 입 국 · 외 국 인 사 무 소 , 외 국 인 보 호 소)	1,196	434	493	193	76

제7절 국외훈련·출장

• 검 사

(2021. 1 ~ 12월)

직급 \ 기간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88	58	17	13
검 찰 총 장	-	-	-	-
검 사	88	58	17	13

• 일반직

(2021. 1 ~ 12월)

기관 \ 기간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73	17	4	52
본 부	19	3	-	16
검 찰 청	45	7	4	34
교 정 기 관	2	1	-	1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1	1	-	-
출입국·외국인기관	6	5	-	1
법 무 연 수 원	-	-	-	-

제 8 절 국제교류 현황

1. 외국 주요인사 법무부 방문 현황

(2021. 1. 1. ~ 12. 31.)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2. 4.	인도네시아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이민국주재관	수기토 위하라자	• 귀임인사차 본부장 예방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3. 11.	베트남	주한 베트남대사관 공사	트란 투렁 투이 등 3명	• 보호외국인 송환관련 협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4. 14.	우즈베키스탄	주한 우즈베키스탄대사관 참사관	타쉬마토브 루스탐 등 3명	• 출입국관련 업무협약 체결 검토를 위한 논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5. 4.	인도	주한 인도대사관 공관차석	바갓 수린더 등 3명	• 국내 체류 인도인의 현안 관련 논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5. 13.	IOM	IOM 한국대표부 대표	스티븐 헤밀턴 등 2명	• 신임 한국대표 출입국본부장 예방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6. 4.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대사	남스라이 에르투야 등 2명	• 현안 논의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예방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6. 8.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노동부장관	노짐 후사노프 등 5명	• 재한 우즈베키스탄인 불법체류 방지 및 송환 관련 협력 논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6. 23.	대만	주한 대만대표부 2등서기관	황가의 등 2명	• 양국 이민청간 이민정책 등 공유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7. 29.	카자흐스탄	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 참사관	아슬란 아스카 등 3명	•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논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9. 15.	미국	주한 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	바이런 싸오 등 3명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관련 협조 요청	인 권 국
10. 7.	포르투갈	이민청장	실바 페르난두 등 4명	• 양국 간 코로나 대응 상황 및 이민정책 등 공유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0. 13.	UN대테러실	UN 대테러센터장	자항기르 칸 등 3명	• 대한민국의 우수한 국경관리 시스템 공유 및 인사파견 논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2. 중요 국제회의 참가 현황

(2021. 1. 1. ~ 12. 31)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 22.	화상회의	• CCPCJ 준비회의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1. 25.	화상회의	• 한미인신매매협의회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1. 25. ~ 1. 29.	화상회의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소규모기업) 제35차 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2명	법 무 실
1. 27.	화상회의	• 한-중 FTA 후속협상 서비스분과 회기간 회의	사무관 김하영 외 1명	법 무 실
2. 1. ~ 2. 3.	화상회의	• 제6차 ANDEX 회의	임동규 출입국관리사무관 등 2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2. 8. ~ 2. 12.	화상회의	•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0차 회의	서기관 엄영신 외 1명	법 무 실
2. 17.	화상회의	• UN 범죄예방·형사사법총회 화상준비회의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2. 18.	화상회의	• 21년 APEC 산하 기업인 이동 실무그룹 회의	배덕환 출입국관리사무관 등 3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2. 24.	화상회의	• 재정착난민 실무회의	이기흠 서기관 등 3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2. 26. ~ 3. 4.	화상회의	• WTO 전자상거래협정 소그룹 회의(전자서명 및 인증, 온라인 소비자 보호, 종이 없는 무역 관련)	국제법무과장 외 3명	법 무 실
3. 1. ~ 3. 5.	화상회의	•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2021년도 일반사무정책이사회	국제법무과장 외 3명	법 무 실
3. 7. ~ 3 9.	화상회의	• UN 범죄예방·형사사법총회 화상회의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3. 8. ~ 3. 12.	화상회의	• OECD 뇌물방지작업반 정례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3. 10. ~ 3. 12.	화상회의	• GCM(이주글로벌컴팩트) 이행점검회의	유복렬 국적통합정책단장 등 3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3. 17.	화상회의	• WTO 전자상거래협정 소그룹 회의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련)	국제법무과장 외 1명	법 무 실
3. 22. ~ 3. 26.	화상회의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신속중재) 제73차 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2명	법 무 실
3. 23.	화상회의	•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통신작업반 회의	사무관 김하영 외 1명	법 무 실
4. 6. ~ 4. 9.	오스트리아 (화상회의)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전자상거래) 제61차 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3명	법 무 실
4. 6. ~ 4. 8.	화상회의	• UNODC 제7차 사이버범죄 전문가 그룹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4. 7.	화상회의	• WTO 전자상거래협정 소그룹 회의 (전자계약)	사무관 김하영	법 무 실
4. 7. ~ 4. 8.	화상회의	• 제11차 아시아노동 이주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김은호 출입국관리사무관 등 3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4. 12. ~ 4. 14.	화상회의	• OECD 뇌물방지작업반 임시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4. 15.	화상회의	• IGC(정부간이민협의체) 1차 고위급회의	이은경 출입국관리사무관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4.19. ~ 4. 23.	화상회의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선박경매) 제38차 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2명	법 무 실
4. 22.	화상회의	• IGC(정부간이민협의체) 실무회의	윤동운 출입국관리주사보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4. 27.	화상회의	• 한-우즈벡 무역협정 제1차 협상	사무관 김하영	법 무 실
4. 28.	화상회의	• IGC(정부간이민협의체) 실무회의	손가희 출입국관리주사보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5. 4. ~ 5. 6.	화상회의	• PC-OC 유럽평의회 회의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5.4. ~ 5.7.	오스트리아 (화상회의)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간이도산) 제58차 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2명	법 무 실
5. 10.	화상회의	• IGC(정부간이민협의체) 실무회의	김예은 출입국관리주사보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5. 10. ~ 5. 12.	화상회의	• UNODC 사이버범죄 신규협약 성안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5. 13.	화상회의	• 한-중 FTA 후속협상 서비스분과 회기간 회의	사무관 김하영	법 무 실
5. 17. ~ 5. 21.	화상회의	• CCPCJ 회의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5. 18.	화상회의	• IGC(정부간이민협의체) 실무회의	이취경 출입국관리사무관 등 2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5. 20.	화상회의	• IGC(정부간이민협의체) 실무회의	김주현 출입국관리주사보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5. 26.	화상회의	• IGC(정부간이민협의체) 실무회의	김주현 출입국관리주사보 등 2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6.1 ~ 6.5	화상회의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6차 협상	전문위원 임세영 외 1명	법 무 실
6. 2. ~ 6. 4.	화상회의	• 유엔 반부패회의(UNGASS)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6. 3.	화상회의	• UN 반부패회의(UNGASS) 중 OECD 특별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6. 8.	화상회의	• OECD 경쟁위원회 제3작업반(협력과 집행) 제133차 회의	사무관 김하영 외 1명	법 무 실
6.10.	화상회의	• OECD 경쟁위원회 제135차 정기회의	사무관 김하영 외 1명	법 무 실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6. 11.	화상회의	• IGC(정부간이민협의체) 2차 고위급회의	임연주 출입국관리사무관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6. 14. ~ 6. 18.	화상회의	• UNCAC 제12차 이행점검그룹회의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6. 15. ~ 6.18.	화상회의	• OECD 뇌물방지작업반 2분기 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6.22 ~ 6.24.	화상회의	• 한-칠레 FTA 제5차 개선협상	사무관 김하영 외 1명	법 무 실
6. 23.	화상회의	• ATCR(재정착에 관한 연례 3자 협의회)	김예은 출입국관리주사보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6.28. ~ 7.16.	오스트리아 (화상회의)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1명	법 무 실
7.7, 7.12, 7.14. ~ 15.	화상회의	• UNCITRAL 본회의	서기관 엄영신 전문위원 김아주 전문위원 문희조	법 무 실
7. 13.	화상회의	• 아·태지역 형사사법포럼 관련 회의	국제형사과장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7.16.	화상회의	• WTO 전자상거래협정 소그룹 회의	사무관 김하영	법 무 실
7.26. ~ 7.29.	화상회의	• 국제해사기구(IMO) 제108차 법률위원회	국제법무과장 외 2명	법 무 실
7. 28.	화상회의	• 아세안 초국가범죄에 관한 고위급회의(SOMTC)	국제형사과장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7.29.	화상회의	• 한-칠레 FTA 개선협상 회기간 회의	전문위원 임세영	법 무 실
8.18.	화상회의	• 한-중 FTA 후속협상 서비스분과 회기간 회의	사무관 김하영	법 무 실
8. 18.	화상회의	• APEC 제1차 산하 실무그룹 회의	서명규 출입국관리주사보 등 2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8.31. ~ 9.1	화상회의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7차 협상	사무관 김하영 외 1명	법 무 실
9. 2.	화상회의	• IGC(정부간이민협의체) 실무회의	송지연 출입국관리주사보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9. 4. ~ 9.9.	오스트리아	• UNCAC 이행점검회의	검사 임하나	검 찰 국
9. 14. 9. 17.	화상회의	• OECD 뇌물방지작업반 임시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9. 18.	화상회의	• APEC 제1차 산하 실무그룹 회의	서명규 출입국관리주사보 등 2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9. 21.	화상회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집행자문위원회(ACE) 회의	사무관 김하영	법 무 실
9. 25. ~ 10. 3.	그리스	• 그리스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평가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9. 27. ~ 10. 1.	화상회의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신속중재) 제74차 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1명	법 무 실
9. 29.	화상회의	• APCCA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관리·재무 이사회	유병철 교정본부장 외 2명	교정본부
10. 4. ~ 10. 8.	화상회의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소규모기업) 제36차 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2명	법 무 실
10. 5. ~ 10. 6.	화상회의	• OECD 뇌물방지작업반 3분기 정례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10. 11. ~ 10. 15.	화상회의	•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관할권 작업반 제1차 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1명	법 무 실
10. 11. ~ 10. 17.	오스트리아	• UN초국가범죄방지협약 작업반 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10. 13. ~ 10. 14.	화상회의	• 랜섬웨어 국제 대응 화상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0. 13. ~ 10. 14.	화상회의	• 한-칠레 무역협정 개선협상 지식재산분과 회기간 회의	법무관 공보영	법 무 실
10. 15.	이탈리아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128차 정기총회(화상회의) 참석	법무부차관 강성국	법 무 실
10. 18. ~ 10. 22.	화상회의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선박경매) 제39차 회의	국제법무과장 외1명	법 무 실
10. 28.	화상회의	• IGC(정부간이민협의체) 실무회의	유지영 출입국관리주사보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1. 5.	화상회의	• 한·미 FTA 서비스투자 이행위원회	전문위원 임세영	법 무 실
11. 10. ~ 11. 12.	화상회의	•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 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11. 14.~11. 19.	스위스	• 유엔 인권이사회(HRC) 인권·민주주의·법치 포럼	전문위원 장현주 외 2명	인권국
11. 18.	화상회의 (싱가포르)	• APCCA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실무자 웹세미나	교위 권유진 외 2명	교정본부
11. 20. ~ 11. 25.	프랑스	• 유럽평의회 공조담당자회의	검사 박성진	검 찰 국
11. 15 ~ 11. 19.	화상회의	•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1차 공식회의	전문위원 김아주	법 무 실
11. 22. ~ 11. 26.	화상회의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전자상거래) 제62차 회의	사무관 최승은 외 2명	법 무 실
11. 27. ~ 12. 2.	스위스	• IOM 총회	이재형 서기관 등 2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1. 29.	화상회의	• OECD 경쟁위원회 제2작업반(경쟁과 규제) 제72차 회의	사무관 김하영 외 2명	법 무 실
12. 1. ~ 12. 3.	화상회의	• OECD 경쟁위원회 제136차 정기회의	사무관 김하영 외 1명	법 무 실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2. 7. ~ 12. 8.	화상회의	• UNODC 재범방지 표준(안) 회의	사무관 윤현봉	범죄예방정책국
12. 4. ~ 12. 12.	화상회의	• OECD 뇌물방지작업반 4분기 정례회의	검사 이진희	검찰국
12. 7. ~ 12. 11.	오스트리아(온라인)	• UNCITRAL 제5실무작업반 제59차 회의	사무관 김효선	법무실
12. 8. ~ 12. 16.	프랑스 이집트	• 유엔부패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검찰국장 국제형사과장 검사 임하나	검찰국
12. 9.	화상회의	•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사전회담	서지현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 팀장	기획조정실
12. 13. ~ 12. 17.	화상회의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간이도산) 제59차 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2명	법무실
12. 14. ~ 12. 15.	화상회의	• GCR(난민글로벌콤팩트) 고위급회의	유지영 출입국관리주사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2. 14.	오스트리아(화상회의)	• 한·EU FTA 서비스무역위원회	사무관 김하영	법무실

제9절 상훈

1. 총 괄

• 검사 및 일반직

(2021. 1 ~ 12월)

직급 / 상훈	계	정무직(등)	검사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104	-	64	17	28	61	270	614	798	243	9
청조근정훈장	0	-	-	-	-	-	-	-	-	-	-
황조근정훈장	0	-	-	-	-	-	-	-	-	-	-
홍조근정훈장	30	-	5	10	15	-	-	-	-	-	-
녹조근정훈장	144	-	-	-	-	26	118	-	-	-	-
옥조근정훈장	210	-	-	-	-	-	-	184	26	-	-
근 정 포 장	192	-	4	5	9	12	88	61	13	-	-
대통령표창	54	-	5	1	2	12	15	9	10	-	-
국무총리표창	50	-	5	-	-	6	20	10	9	-	-
모범공무원	190	-	-	-	-	-	-	178	12	-	-
법무부장관표창	1,234	-	45	1	2	5	29	172	728	243	9
유관기관표창	0	-	-	-	-	-	-	-	-	-	-

• 기 관

(2021. 1 ~ 12월)

기관 / 상훈	계	법무부	검찰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교정기관	출입국·외국인기관
법무부장관표창	84	6	22	21	19	8	8

2. 훈장·포장·표창자 명단

• 법무부소속 공무원(훈장 이상)

(2021. 1 ~ 12월)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홍조근정훈장	대전지방교정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천수	2021. 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영길	〃	〃
	영월교도소	부이사관	이승철	〃	〃
	수원고등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성범	〃	〃
	수원고등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인주	〃	〃
	대구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강태수	〃	〃
	대구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묵진	〃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손순혁	〃	〃
	부산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강철중	〃	〃
	제주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정남수	〃	〃
	전주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동현	〃	〃
	수원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강성식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최종필	〃	〃
	서울소년원	일반직고위공무원	성우제	2021.12.31.	우수공무원
	경북북부제1교도소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동환	2021.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부이사관	최병록	〃	〃
	인천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박호문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박정학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백중	〃	〃
	울산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윤두한	〃	〃
	부산고등검찰청	검찰부이사관	남대우	〃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찰부이사관	이종학	〃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찰부이사관	정태운	〃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이강윤	〃	〃
	수원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최원서	〃	〃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방봉혁	2021. 2. 5.	검찰업무수행 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조재빈	〃	〃
	광주지방교정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신용해	2021.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한석리	2021. 4.23.	법의 날 기념 유공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홍종희	〃	〃
	연세대학교	교수	김남철	〃	〃
	중앙대학교	교수	장재옥	〃	〃
녹조근정훈장	부산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최성근	2021. 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이형채	〃	〃
	대구소년원	서기관	황계연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윤양선	〃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기관	이상달	〃	〃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황명렬	〃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기관	심준섭	〃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기관	윤상용	〃	〃
	인천구치소	교정관	김성호	〃	〃
	여주교도소	교정관	이재희	〃	〃
	대구교도소	교정관	김종택	〃	〃
	안동교도소	교정관	박형소	〃	〃
	안동교도소	교정관	이병두	〃	〃
	경주교도소	서기관	최종수	〃	〃
	대전교도소	교정관	김기주	〃	〃
	대전교도소	교정관	유영하	〃	〃
	청주교도소	교정관	하재석	〃	〃
	공주교도소	교정관	신판호	〃	〃
	공주교도소	교정관	이문환	〃	〃
	광주교도소	교정관	서치진	〃	〃
	군산교도소	교정관	이형수	〃	〃
	순천교도소	교정관	손기창	〃	〃
	정읍교도소	교정관	양주영	〃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정관	이상현	〃	〃
	대구구치소	서기관	이동희	〃	〃
	대구구치소	교정관	김종규	〃	〃
	대구구치소	교정관	신승구	〃	〃
	진주교도소	교정관	김용기	〃	〃
	장흥교도소	교정관	유대종	〃	〃
	서울구치소	교정관	백명기	〃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교정관	이건승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안양교도소	교정관	김영흥	〃	〃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관	전재범	〃	〃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관	김성진	〃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김기태	〃	〃
	서울남부구치소	간호사무관	한인욱	〃	〃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김남용	〃	〃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이헌호	〃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신현민	〃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서기관	홍혁표	〃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전창엽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홍우	〃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충현	〃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차경수	〃	〃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송덕준	〃	〃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노영구	〃	〃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김호성	〃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찰사무관	임병영	〃	〃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박성재	〃	〃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양동석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송영수	〃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사무관	김선호	〃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사무관	신동익	〃	〃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금광식	2021.12.31.	우수공무원
	서울소년원	서기관	문용수	2021.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춘천소년원	서기관	권영효	〃	〃
	제주소년원	서기관	민근기	〃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보호사무관	정석철	〃	〃
	청주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관	김수희	〃	〃
	대전소년원	서기관	김영운	〃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서기관	이인숙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김필호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송한용	〃	〃
	대전보호관찰소	서기관	박동식	〃	〃
	안양교도소	교정관	김한곤	〃	〃
	안양교도소	교정관	남기성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안양교도소	교정관	김종택	〃	〃
	춘천교도소	교정관	김한진	〃	〃
	여주교도소	교정관	권중기	〃	〃
	대구교도소	교정관	변재필	〃	〃
	진주교도소	교정관	이남석	〃	〃
	진주교도소	교정관	조만규	〃	〃
	진주교도소	교정관	하재수	〃	〃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관	김인수	〃	〃
	대전교도소	교정관	곽문헌	〃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정관	손광섭	〃	〃
	전주교도소	교정관	신용옥	〃	〃
	부산교도소	교정관	정광진	〃	〃
	청주교도소	서기관	김재익	〃	〃
	청주교도소	교정관	정창관	〃	〃
	대구구치소	교정관	박수용	〃	〃
	대구구치소	교정관	서을규	〃	〃
	군산교도소	교정관	황일택	〃	〃
	군산교도소	교정관	장광호	〃	〃
	군산교도소	교정관	전운선	〃	〃
	군산교도소	교정관	김동근	〃	〃
	군산교도소	교정관	소승섭	〃	〃
	서울구치소	교정관	강춘성	〃	〃
	서울구치소	교정관	권남현	〃	〃
	서울구치소	교정관	김미정	〃	〃
	부산구치소	교정관	손태식	〃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교정관	이규익	〃	〃
	수원구치소	교정관	손창만	〃	〃
	수원구치소	교정관	노상훈	〃	〃
	수원구치소	교정관	권회숙	〃	〃
	원주교도소	교정관	장명봉	〃	〃
	원주교도소	교정관	방명석	〃	〃
	원주교도소	교정관	진기복	〃	〃
	강릉교도소	교정관	조대복	〃	〃
	인천구치소	교정관	김효중	〃	〃
	인천구치소	교정관	최승각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치료감호소	간호사무관	김석송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이경숙	〃	〃
	해남교도소	교정관	서정애	〃	〃
	해남교도소	교정관	이강은	〃	〃
	밀양구치소	교정관	이봉우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이연희	〃	〃
	창원교도소	교정관	황인호	〃	〃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보호사무관	서종철	〃	〃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보호사무관	김석영	〃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강영춘	〃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김종래	〃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박신구	〃	〃
옥조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이남형	〃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황대성	〃	〃
	상주교도소	교정관	이원칠	〃	〃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김용태	〃	〃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최동익	〃	〃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최장열	〃	〃
	대검찰청	검찰사무관	이시동	〃	〃
	대전고등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김용대	〃	〃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이경희	〃	〃
	대검찰청	기술서기관	강병홍	〃	〃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오문수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조정근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흥주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최봉규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현문정	〃	〃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이영욱	〃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찰사무관	이경태	〃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찰사무관	용득중	〃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찰수사서기관	김종기	〃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사무관	故 윤석원	〃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사무관	한대섭	〃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사무관	최수성	〃	〃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양헌규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문병완	〃	〃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정형모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한상문	〃	〃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정재기	〃	〃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윤병구	〃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유재완	〃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찰사무관	김현호	〃	〃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이기우	〃	〃
	법무부	행정주사보	윤순옥	2021. 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소년원	보호주사	이호경	〃	〃
	치료감호소	열관리운영주사보	김재형	〃	〃
	화성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주사	김경수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	강진호	〃	〃
	춘천교도소	교감	김재옥	〃	〃
	춘천교도소	교감	신영섭	〃	〃
	인천구치소	교감	신현하	〃	〃
	인천구치소	교감	오성택	〃	〃
	인천구치소	교감	이준궁	〃	〃
	인천구치소	교감	정해옥	〃	〃
	여주교도소	교감	고송원	〃	〃
	여주교도소	교감	민경산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이달호	〃	〃
	영월교도소	교위	연용흠	〃	〃
	대구교도소	교감	신재영	〃	〃
	대구교도소	교감	심재현	〃	〃
	대구교도소	교감	이승욱	〃	〃
	대구교도소	기계운영주사	황영균	〃	〃
	안동교도소	교감	김창식	〃	〃
	안동교도소	교감	박성수	〃	〃
	경주교도소	교위	이채은	〃	〃
	울산구치소	교감	편도장	〃	〃
	포항교도소	교감	김창년	〃	〃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감	김종문	〃	〃
	대전교도소	교감	박승래	〃	〃
	대전교도소	교감	이기환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대전교도소	통신운영주사	최영호	〃	〃
	청주교도소	교감	이만희	〃	〃
	공주교도소	교감	강석화	〃	〃
	공주교도소	교감	신혁주	〃	〃
	공주교도소	교감	양홍석	〃	〃
	공주교도소	교감	왕명용	〃	〃
	공주교도소	교감	윤경숙	〃	〃
	공주교도소	교감	이성규	〃	〃
	공주교도소	공업주사	심희택	〃	〃
	충주구치소	교감	안찬웅	〃	〃
	충주구치소	교감	전성섭	〃	〃
	충주구치소	교감	정진호	〃	〃
	충주구치소	교감	지용호	〃	〃
	광주교도소	교감	노경숙	〃	〃
	광주교도소	교감	문일섭	〃	〃
	광주교도소	교감	배영수	〃	〃
	전주교도소	교감	정석근	〃	〃
	순천교도소	교감	김홍수	〃	〃
	순천교도소	교감	서진석	〃	〃
	순천교도소	교감	조동원	〃	〃
	정읍교도소	교감	주래길	〃	〃
	청주교도소	교감	박일섭	〃	〃
	청주교도소	전문경력관 나군	유제천	〃	〃
	대구구치소	교감	김기화	〃	〃
	대구구치소	교감	김상하	〃	〃
	대구구치소	교감	김태승	〃	〃
	대구구치소	교감	이두열	〃	〃
	대구구치소	교감	심홍섭	〃	〃
	진주교도소	교감	박재원	〃	〃
	진주교도소	교감	서종덕	〃	〃
	천안개방교도소	교감	양희옥	〃	〃
	천안개방교도소	교감	함동찬	〃	〃
	천안개방교도소	교감	정길수	〃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감	유기세	〃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감	이상황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서울구치소	교감	안외섭	〃	〃
	서울구치소	교감	정윤권	〃	〃
	서울구치소	교감	황중현	〃	〃
	서울구치소	교감	황진	〃	〃
	부산구치소	교감	김상진	〃	〃
	부산구치소	교감	박병익	〃	〃
	부산구치소	교감	박재식	〃	〃
	부산구치소	교감	송희봉	〃	〃
	부산구치소	공업주사	김동주	〃	〃
	수원구치소	교감	박용보	〃	〃
	수원구치소	교감	이병철	〃	〃
	안양교도소	교감	조희정	〃	〃
	안양교도소	교감	황선미	〃	〃
	의정부교도소	교감	김석희	〃	〃
	원주교도소	전문경력관 나군	박경호	〃	〃
	강릉교도소	교감	정평환	〃	〃
	강릉교도소	전기운영주사	오병걸	〃	〃
	밀양구치소	교감	김덕수	〃	〃
	천안교도소	교감	맹흥주	〃	〃
	천안교도소	교감	양해문	〃	〃
	천안교도소	교감	임광수	〃	〃
	천안교도소	교감	채태종	〃	〃
	김천소년교도소	교감	박순연	〃	〃
	김천소년교도소	교감	신기철	〃	〃
	경북북부제1교도소	운전주사보	성상환	〃	〃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감	김만태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김영곤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장학수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유승만	〃	〃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류성현	〃	〃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송병옥	〃	〃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송진한	〃	〃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윤재한	〃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안석열	〃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장철호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신동식	〃	〃
	법무부	전산주사	김일중	〃	〃
	상주교도소	교감	박인식	〃	〃
	상주교도소	교감	현경만	〃	〃
	서울동부구치소	사무운영주사보	심현숙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김춘선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유춘걸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이민균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김지완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박규태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윤성주	〃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	안진갑	〃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	김효겸	〃	〃
	춘천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최하영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방송통신주사	故 홍유기	〃	〃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이제곤	〃	〃
	부산지방검찰청	운전주사보	김영진	〃	〃
	부산지방검찰청	운전주사보	임수민	〃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열관리운영주사보	차종원	〃	〃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용철	〃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방호주사보	유성암	〃	〃
	전주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김미금	〃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찰주사	서정철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허영진	〃	〃
	수원지방검찰청	운전주사보	이상규	〃	〃
	수원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음숙자	〃	〃
	화성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주사	박동신	2021.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출입국관리주사	김상용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	김문모	〃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행정주사	김은경	〃	〃
	치료감호소	간호조무주사	지면배	〃	〃
	치료감호소	간호조무주사보	노진환	〃	〃
	안양교도소	교감	이정식	〃	〃
	안양교도소	교감	서성욱	〃	〃
	춘천교도소	교감	이정태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대구교도소	교감	김재중	〃	〃
	대구교도소	교감	장현덕	〃	〃
	김천소년교도소	교감	배경환	〃	〃
	대전교도소	교감	변상술	〃	〃
	대전교도소	교감	정상근	〃	〃
	대전교도소	공업주사	김건수	〃	〃
	목포교도소	교감	문홍권	〃	〃
	순천교도소	교감	임동호	〃	〃
	제주교도소	교감	김남경	〃	〃
	광주교도소	교감	정승일	〃	〃
	광주교도소	의료기술주사	구성선	〃	〃
	전주교도소	교감	장병근	〃	〃
	전주교도소	운전주사보	김기갑	〃	〃
	부산교도소	교감	고석현	〃	〃
	부산교도소	교감	원용정	〃	〃
	부산교도소	운전주사	김수한	〃	〃
	청주교도소	교감	양현우	〃	〃
	청주교도소	교감	김진도	〃	〃
	청주교도소	교감	최기락	〃	〃
	청주교도소	교감	정정태	〃	〃
	청주교도소	교감	이동원	〃	〃
	청주교도소	교감	김광열	〃	〃
	청주교도소	전문경력관 나군	최성호	〃	〃
	대구구치소	교감	서유교	〃	〃
	대구구치소	교감	김성년	〃	〃
	군산교도소	교감	박명익	〃	〃
	군산교도소	교감	이익재	〃	〃
	군산교도소	교감	김순철	〃	〃
	군산교도소	교위	김정태	〃	〃
	안동교도소	교감	권혁대	〃	〃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이승민	〃	〃
	청주여자교도소	건축운영주사보	안영길	〃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감	정원기	〃	〃
	홍성교도소	교감	정운	〃	〃
	서울구치소	교감	김주환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서울구치소	교감	김형근	〃	〃
	서울구치소	교감	정서진	〃	〃
	부산구치소	교감	장양수	〃	〃
	의정부교도소	교감	권영출	〃	〃
	의정부교도소	교감	서정제	〃	〃
	인천구치소	교감	한희수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운전주사보	최종선	〃	〃
	영월교도소	교감	정우상	〃	〃
	천안교도소	교감	정창수	〃	〃
	천안교도소	교감	김두연	〃	〃
	천안교도소	전문경력관 나군	원종오	〃	〃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감	김덕진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권오정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박주원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이재복	〃	〃
	창원교도소	교위	허종화	〃	〃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서용석	〃	〃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용성만	〃	〃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김창권	〃	〃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최송배	〃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문병연	〃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윤영수	〃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지승오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김금자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김창희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박양호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백윤종	〃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	김석호	〃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방호주사보	이성학	〃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한광수	〃	〃
	인천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조영자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전형근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장기동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신명화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병기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김춘옥	〃	〃
	부산지방검찰청	운전주사보	김태중	〃	〃
	울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장광수	〃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사무운영주사	이미라	〃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운전주사보	심재열	〃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찰주사	정재훈	〃	〃
	의정부지방검찰청	운전주사보	최창섭	〃	〃
	대구지방검찰청	운전주사보	김홍근	〃	〃

• 외부인사 및 단체

(2021. 1 ~ 12월)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국민훈장무궁화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소순무	2021. 4.23.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모란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성남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백남홍	2021. 7. 7.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
국민훈장동백장	안동교도소	교정위원	조중래	2021.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천안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김지만	2021. 7. 7.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	김갑식	2021. 4.23.	법의 날 기념 유공
홍조근정훈장	연세대학교	교수	김남철	〃	〃
	중앙대학교	교수	장재옥	〃	〃
국민훈장목련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법무보호위원	윤용병	2021.11. 3.	갱생보호 지원 유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	유병선	2021. 4.23.	법의 날 기념 유공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조익성	2021. 6.24.	법질서 및 보호관찰 유공
국민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법무보호위원	방석철	2021.11. 3.	갱생보호 지원 유공
	창원교도소	교정위원	신정기	2021.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부산구치소	교정위원	박용하	〃	〃
	장흥교도소	교정위원	김영지	〃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한병성	2021. 7. 7.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양성훈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사단법인 경주범죄피해자자원센터	고문	이정우	2021.11.30.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이상진	2021. 4.23.	법의 날 기념 유공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전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	故 전홍열	2021. 6.24.	법질서 및 보호관찰 유공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김기성	〃	〃
대통령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	법무보호위원	서성국	2021.11. 3.	갱생보호 지원 유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법무보호위원	설대호	〃	〃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노춘미	2021.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천안교도소	교정위원	임금순	〃	〃
	대구교도소	교정위원	김준호	〃	〃
	공주교도소	교정위원	최영호	〃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의정부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김규호	2021. 7. 7.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구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이승홍	〃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최수천	〃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동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조훈	〃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박세홍	〃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고양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이재호	〃	〃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2021.11.30.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
	사단법인 의성군위청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	함희목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신	2021. 4.23.	법의 날 기념 유공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이두식	〃	〃
	농협중앙회	전무이사	유찬형	2021. 6.24.	법질서 및 보호관찰 유공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김경구	〃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박철수	〃	〃
	셀트리온 복지재단			〃	〃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학원장	오키프 다니엘 브랜든	2021. 5.20.	외국인 정착 지원 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조삼혁	〃	〃
	사단법인 너머			〃	〃
국무총리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위원	김나현	2021.11. 3.	갱생보호 지원 유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법무보호위원	이삼구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위원	유동근	2021.10.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김천소년교도소	교정위원	강희락	〃	〃
	천안개방교도소	교정위원	문경수	〃	〃
	제주교도소	교정위원	현경훈	〃	〃
	영월교도소	교정위원	전찬식	〃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이정현	2021. 7. 7.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마산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황현심	〃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이명희	〃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한점이	〃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임정옥	〃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울산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재현	〃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조춘자	〃	〃
	사단법인 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위원장	김요순	2021.11.30.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
	사단법인 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	김재우	〃	〃
	사단법인 성남광주 하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송안태	〃	〃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사무처장	김지한	〃	〃
	(주)농협은행	부행장	지준섭	2021. 6.24.	법질서 및 보호관찰 유공
	동국대학교	교수	이창한	〃	〃
	(주) 케이티앤지	경영정책실장	이승준	〃	〃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안양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	소미경	〃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법무보호위원	이재연	〃	〃
	(주)노루페인트			〃	〃
	법문화교육센터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최병규	2021. 5.20.	외국인 정착 지원 유공
	(주)디케이알텍	대표이사	김현기	〃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	회장	김영배	〃	〃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처장	이명숙	〃	〃
	사회복지시설 여수다문화복지원			〃	〃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동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제10절 위원회 현황

1. 총 괄

(2021. 12월 현재)

소 관 별	계	기 획 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 예방 정책국	감찰관실	인권국	교정 본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운 영 지원과
위원회 수	68	22	8	13	3	1	6	3	8	4

2. 위원회 개요

연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 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1	법무부정책위원회 (분과위 : 법무시설건축협위, 중앙급식관리위, 외국인인권보호및권익증진협위)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 (훈령 제1361호)	법무행정운영에 관한 장관 자문	공석	공석	정책 기획단	기획조정실
2	법무부 직장방위협의회	예비군법 14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3조	대비정규전 작전활동 및 예비군 법무부 직장분대 운영의 유기적 협조 조정	법무부 장관	13명	비상 안전	
3	법무부 예산집행심의 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규정 (훈령 제1096호)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기획 조정 실장	11명	기획 재정	
4	법무부 정책연구심의 위원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훈령 1357호)	법무부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기획 조정 실장	15명	기획 재정	
5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추천 심사	법무부 차관	9명	혁신 행정	
6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5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14명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7	법무부 근무성적평가 위원회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 법무부소속 공무원평가 등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조정	장관이 임명	5명 이상		기획조정실
8	법무부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3조	공무원의 고충 심사	인사과장	9명		
9	법무부 보통승진심사 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공무원의 승진 심사	장관이 임명	3명 이상		
10	법무부 성과급심사 위원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	성과급 심사	장관이 임명	3~7명		
11	법무부 교육훈련심의 위원회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조의3	위탁교육 훈련대상자 선발, 심의 등	법무부 차관	5명 이상		
12	법무부 적극행정 위원회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1388호)	법무부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14명		
13	법무부 자체규제심사 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1296호)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규제 범위·대상·존속기한 등에 대한 심사 및 입안부서(각 실·국·본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 분석의 타당성 심사	법무부 차관, 전용일(교수)	8~15명	행복민원	
14	법무부 갈등관리심의 위원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훈령 1077호)	법무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장관 자문	정정화(교수)	12명		
15	법무부 민원조정 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	민원인 폭언·폭행·협박 등 법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과 관련한 사항	기획조정실장	8~11명		
16	법무부 자체평가 위원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평가계획·평가결과 그밖에 당해 기관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윤종설(연구위원)	24명	정책성과	
17	법무부 정책실명제 심의 위원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기획조정실장	6명		
18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6조(훈령 1275호)	정보화 의견수렴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발전방향 등 자문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7명	정보화데이터	
19	법무정보화 추진위원회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7조(훈령 1275호)	법무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주요사항을 심의	기획조정실장	3명 이상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20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제14조(훈령 1360호)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기획조정실장	5명	양성평등	기획조정실
21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훈령 1390호)	법무부 내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자문	법무부 차관, 김엘림(교수) 공동위원장	15명		
22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1368호)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대응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 등 자문	변영주(영화감독)	10명	디지털성범죄등대응TF	
23	법무자문위원회(특별분과위 : 형사법개정, 형사소송법개정, 남북법령연구, 국제법무자문, 집단소송제개선, 채무자 회생법)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1조, 제2조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권영준(교수)	20명	법무심의관실	법무실
24	주택임대차위원회(주택임대차실무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심의	법무부 차관	9명		
25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제92조, 제9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변호사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심의	법무부 장관	8명	법무과	
26	공증인징계위원회	공증인법 제85조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6명		
27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제38조, 제40조	비위 행위를 저지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	법무부 장관	8명	국제법무과	
28	본부배상심의회	국가배상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결정	법무부 차관	6명	국가소송과	
29	공익신탁자문위원회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	박준(교수)	6명	상사법무과	
30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제14조	변호사시험시행 관련 주요사항 심의	법무부 차관	14명	법조인력과	
31	검사 징계위원회	검사징계법 제4조, 제5조	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 및 의결	법무부 장관	6명	검찰과	검찰국
32	검찰인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5조	검찰인사 등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변호사	10명		
33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9조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2조, 제3조, 제4조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변호사	8명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34	검사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	직무성과금 지급등급·지급인원·지급액 심의	법무부 차관	4명		검찰국
35	검사파견심사위원회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예규 1238호)	검사 외부기관 파견 필요성 심사 승인	법무부 차관	6명		
36	마약류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6조	마약류보상금지급 신청인의 자격, 지급액,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검찰 국장	4명	형사기획과	
37	사면심사위원회	사면법 제10조의 2	법무부 장관의 사면 상신권 행사의 적정성 심사·자문	법무부 장관	8명		
38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훈령 제1384호)	특정경제사범의 관리 업무에 관한 심의·자문	법무부 차관	10명		
39	국가보안유공자심사 위원회	국가보안법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4조	상금·보로금지급 및 보상 대상자 심의·결정	검찰 국장	6명	공공형사과	
40	보안관찰처분심의 위원회	보안관찰법 제12조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6명	공공형사과	
41	공안사범자료관리 협의회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제271호) 제3조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관리	검찰 국장	10명		
4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부령 제1004호) 제8조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신고·제보 활성화 유도	검찰 국장	4명		
43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 규정 (훈령 제1330호)	범죄수익 환수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	검찰 국장	4명	국제형사과	
44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고검 차장 검사	각 9명	보호관찰과	범죄예방정책국
45	법교육위원회	법교육지원법 제4조	법교육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차후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손종학 (교수)	16명	보호정책과	
46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및 보호감호 가출소·취소 등 심사·결정	법무부 차관	8명	치료처우과	
47	법무부감찰위원회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자문	한기정 (교수)	12명	감찰관실	감찰관실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48	인권정책자문단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훈령 제1152호)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	인권국장(주재)	29명	인권정책과	인권국
49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범죄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법무부 장관	18명	인권구조과	
50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법무부 차관	14명		
51	범죄피해구조본부 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사건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6명		
52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	법무부 차관	7명	여성아동인권과	
53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훈령 제1076호)	법무행정분야의 여성, 아동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조정	정익중(교수)	14명		
54	가석방심사위원회	형집행법 제119조	수형자의 가석방자 적격여부 심사 및 결정	법무부 차관	8명	분류심사과	교정본부
55	교화방송 자문위원회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8조 1호(예규 1208호)	교화방송 전문성강화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	강재형(방송인)	8명	사회복귀과	
56	교정개혁위원회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규정 제1조(훈령 1307호)	교정행정 정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 등	하태훈(교수)	15명	교정혁신추진단	
57	법무부 투자이민협의회	투자이민협의회규정 제1조(훈령 제1239호)	투자이민제도 운영관련 법무부 장관 자문	법무부 차관	10명	체류관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58	법무부이민정책자문위원회	법무부이민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훈령 제1068호)	중요 이민정책의 입안 등에 있어 전문가 의견 청취	김동욱(교수)	14명	외국인정책과	
59	외국인정책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국무총리	28명		
60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위원회 에서 위임한 안건 처리	법무부 차관	28명		
61	국적심의위원회	국적법시행령 제28조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 및 대한민국 국적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31명	국적과	
62	법무부 사회통합자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4명	이민통합과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63	난민위원회	난민법 제25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 제12조	난민불인정결정 및 취소·철회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법무부 차관	14명	난민심의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64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훈령 제1284호)	출국금지·정지 및 그 연장 결정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에 앞서 그 적정성을 심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5명	출입국심사과	
65	법무부 보안심사위원회	법무부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훈령 제1348호)	제반 보안대책의 수립 및 제규정 제정	법무부 차관	8명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66	법무부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자부 고시 제2020-197호)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	법무부 차관	5명		
67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14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획조정실장	5명		
68	법무부 기록물평가 심의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법무부 기록물평가 심의회운영 지침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의 적정 여부 평가,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등 필요한 사항을 평가 심의	기획조정실장	10명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 소속기관

(2021.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269개 기관(본부 1, 소속 268)	34,133
법무부	2실 3국 2본부	763
검찰청	대검찰청 1, 고등검찰청 6, 지방검찰청 18, 지청 41	10,772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1, 용인분원 1	134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6	42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18, 지소 39, 위치추적관제센터 2	1,913
치료감호소	치료감호소 1, 약물중독재활센터 1	443
소년원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8	982
교정기관	지방교정청 4, 구치소 11, 교도소 39, 지소 3	16,504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외국인청 6,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 출장소 24, 외국인보호소 2,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1	2,568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12

• 소속단체

(2021.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3개 단체	1,29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1, 지부 18, 출장소 41, 지소 75, 법문화교육센터 1	80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1, 지부 19, 지소 7, 교육원 1	365
정부법무공단	본부 1	125

法務年鑑



부 록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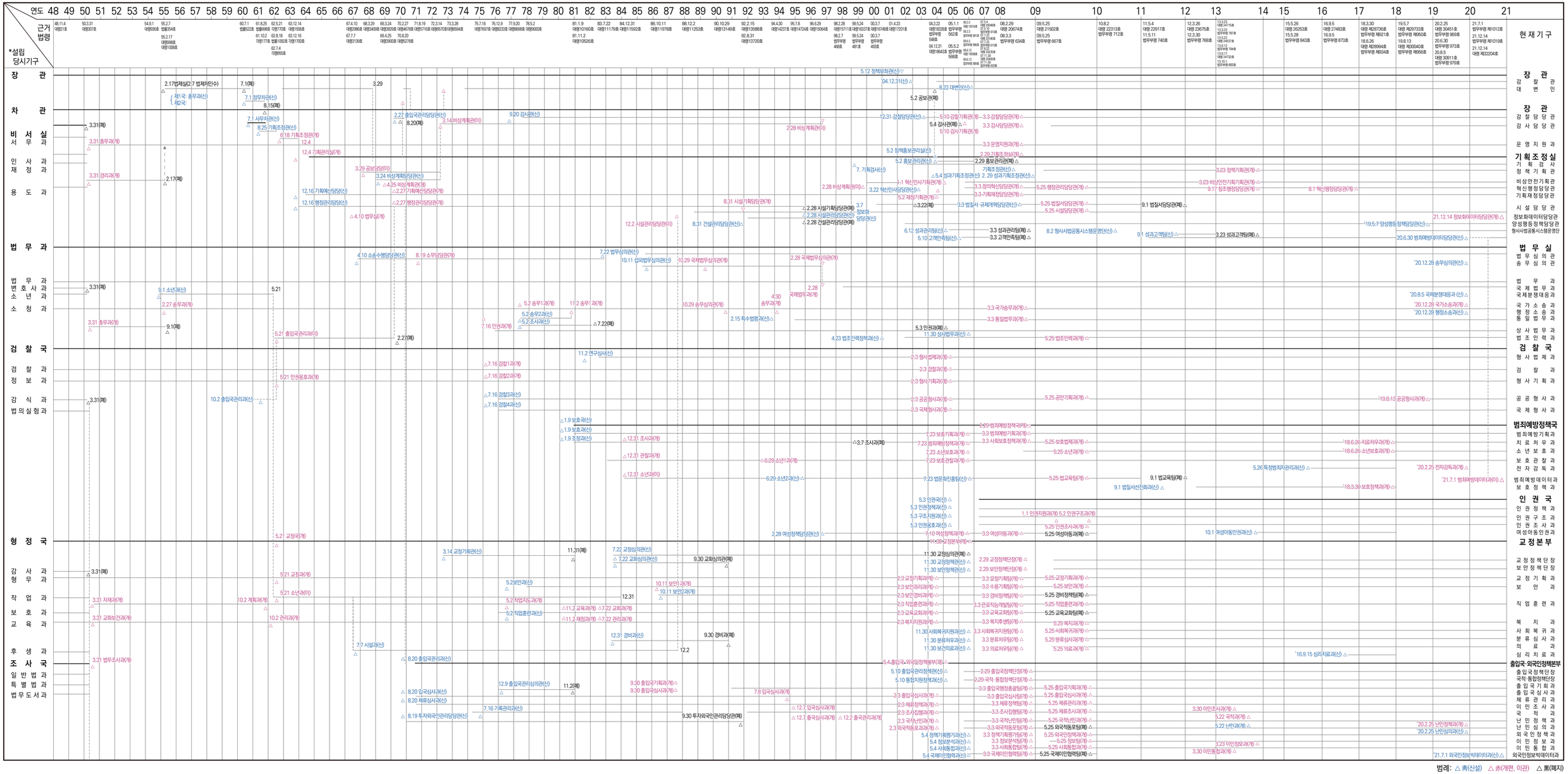
연도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근거 법령
*설립 당시기구
장 관
차 관
비 서 실
서 무 과
인 사 과
재 정 과
용 도 과
법 무 과
법 무 과
법 번 호 사 과
소 년 과
소 청 과
검 찰 국
검 찰 과
정 보 과
감 식 과
법 의 실 험 과
형 정 국
감 사 과
형 무 과
작 업 과
보 호 과
교 육 과
후 생 과
조 사 국
일 반 법 과
특 별 법 과
법 무 도 서 과
현재기구
장 관
감 찰 관
대 변 인
장 관
감 찰 담 당 관
감 사 담 당 관
운 영 지 원 과
기획조정실
기 획 검 사
정 책 기 획 관
비상안전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시 설 담 당 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법 무 실
법 무 심 의 관
송 무 심 의 관
법 무 과
국 제 법 무 과
국제분쟁대응과
국 가 소 송 과
행 정 소 송 과
통 일 법 무 과
상 사 법 무 과
법 조 인 력 과
검 찰 국
형 사 법 제 과
검 찰 과
형 사 기 획 과
공 공 형 사 과
국 제 형 사 과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지 료 처 우 과
소 년 보 호 과
보 호 관 찰 과
전 자 감 독 과
범죄예방데이터과
보 호 정 책 과
인 권 국
인 권 정 책 과
인 권 구 조 과
인 권 조 사 과
여성아동인권과
교 정 본 부
교정정책단장
보안정책단장
교 정 기 획 과
보 안 과
직 업 훈 련 과
복 지 과
사 회 복 귀 과
분 류 심 사 과
의 료 과
심 리 치 료 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
국적·통합정책단장
출 입 국 기 획 과
출 입 국 심 사 과
체 류 관 리 과
이 민 조 사 과
국 적 과
난 민 정 책 과
난 민 심 의 과
외 국 인 정 책 과
이 민 정 보 과
이 민 통 합 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범례: △ 靑(신설) △ 赤(개편, 이관) △ 黑(폐지)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21.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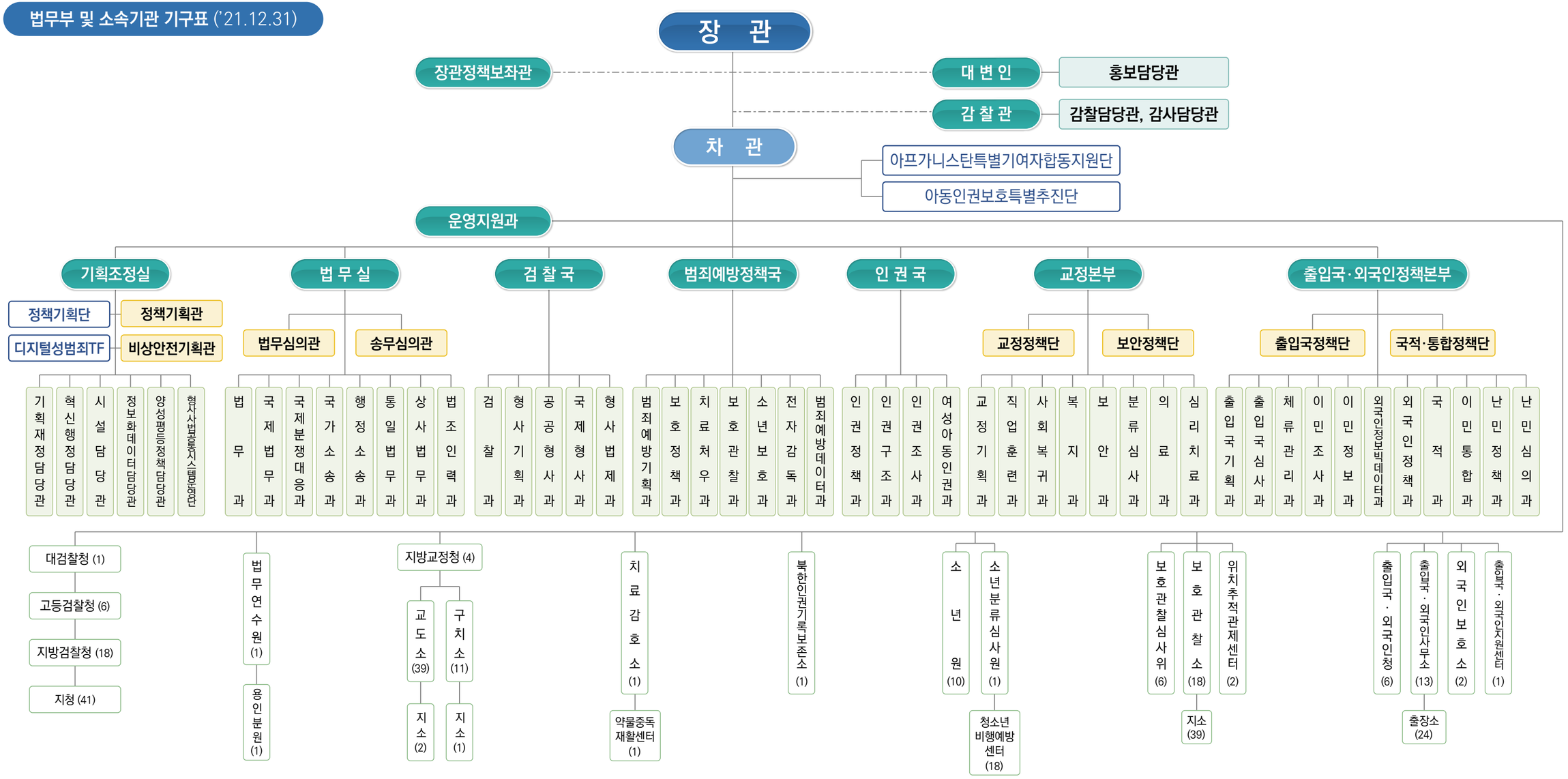

법무연감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기획조정실장	검사장	주영환

편집위원

기획조정실	부이사관	천정훈
법무실	검사	정지은
검찰국	검사	김봉경
범죄예방정책국	부이사관	이법호
감찰관실	검사	안광현
인권국	부이사관	정소연
교정본부	부이사관	남준락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	김정도
장관정책보좌관	검사	양선순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운영지원과	부이사관	김정열
법무연수원	검사	백순길
정책기획단	검사	차순길

편집실무위원

기획조정실	사무관	김용갑
법무실	사무관	유희원
검찰국	사무관	허종욱
범죄예방정책국	사무관	김동하
감찰관실	사무관	이기용
인권국	서기관	조시형
교정본부	교정관	이민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관	박주현
대변인실	서기관	최성우
운영지원과	서기관	김정복
법무연수원	사무관	이병흔
정책기획단	사무관	김도연

法 務 年 鑑

발 행 일 2022년 5월

발행기관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TEL : (02) 2110-3765
FAX : (02) 2110-031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 (02) 786-2999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012-10

2021

법무연감

법무부